

大典會通 研究

- 卷首 · 吏典編 -

翻譯 · 註譯 및 解說者 李 鍾 日
前 先任研究委員 · 文學博士

한국법제연구원

修正版 發刊辭

大典會通 吏典編은 朝鮮王朝時代의 官僚組織과 그 運用에 관한 여러 가지 事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韓國法制研究院에서는 1993년 12월 31일 이 책의 卷首編과 吏典編을 譯註·解說하고 原本을 影印하여 發刊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制限的인 時間 탓으로 충분히 校正하지 못하여 상당한 誤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곧 賣盡되어 誤謬를 바로 잡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誤字 誤譯을 일부 바로 잡아 1996년 12월 31일에 이르서야 訂正版을 發行한바 있습니다. 우리 研究院에서는 위 吏典編 이외에도 1994년부터 1997년까지 大典會通의 戶典編·禮典編·兵典編·刑典編·工典編 등에 대한 註釋 및 解說과 索引集을 發刊하여 전통법제연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몽튼 조선시대가 양반관료사회였던 만큼 吏典編은 舊法體系上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占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吏典編 앞에 있는 卷首編은 지금의 憲法 前文과도 같은 것임으로 그 중요성이 至大한 것입니다. 지금 이 책(卷首·吏典編)의 再版인 訂正本 마저 賣盡되고 없으므로 이번에 약간의 修正·補完을 더하여 三版인 修正本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大典會通은 初刊本의 發刊辭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朝鮮시대 의 종합적인 법령집으로서 朝鮮전기의 世祖-成宗代의 經國大典, 朝鮮후기의 英祖-正祖代의 續大典과 大典通編 등이 모두 網羅되어 있으며 그 후 純祖·憲宗·哲宗代로부터 高宗初 까지의 보충적인 법령도 있습니다. 그 構成은 각 항목마다 原(經國大典)·續(續大典)·增(大典通編)·補(大典會通 편찬시 보충부분) 등으로 표시하여 新舊 法令을 모두 포함시키되 效率적으로 配合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儒敎的인 孝思想에 따라 祖宗成憲遵守의 原則이 적용되어 先代의 법률을 합부로 고치거나 폐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거의 그 대로 차곡차곡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제사회등 하부구조와 정치문화등 상부구조의 변화가 거듭될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변화는 어떤 형식을 취하였던 간에 法典에 反映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과의 끊임없는 交流

속에서 先進 文物과 制度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法制度의 변화를 加速化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가 많아도 역사의 줄기에는 長期 持續의 인 요소가 있기 마련이고 이른바 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이란 格言 그대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전통은 영구히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存續하게 될 것입니다.

大典會通은 日帝 36년간에도 “舊朝鮮의 慣行”이란 이름으로 재판의 準據가 되어 왔고 光復後 그 일부가 대한민국의 法律로 繼承하였으며 나머지 상당 부분이 慣習法의 형태로 規範化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現行法體系가 유럽 특히 독일 계통의 大陸法體系에 속하여 우리의 傳統法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할지 모르나 우리의 法意識 속에서 綿綿히 흐르는 전통적인 道德律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現行法體系 속에 內在하여 있음을 아무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家族法과 婚姻法을 비롯한 親族·相續法의 여러 규정은 거의 전통 법제의 테두리를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公法分野에 있어서도 예컨대 大典會通 吏典編에 있는 取才試驗에 관한 규정은 현행 공무원법상의 특별채용시험 내지 승진시험규정에 比定될 수 있고, 署經에 관한 규정은 현재의 공무원 임용전 신원조사, 考課에 관한 條項은 근무성적평정제, 褒貶에 관한 條項은 포상과 징계 제도에 각각 比定될 수 있으며 解由에 관한 규정은 현행 공무원의 재무에 관한 책임규정에 각각 比定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直系尊屬에 대한 暴行 傷害 등을 무겁게 처벌한 것등 현행 刑事法規 속에서도 전통법제로부터 계승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의 譯註·解說者인 文學博士 李鍾日은 금년 봄에 우리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후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과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에서 한국법제사 및 古法典 講讀을 맡고 있으며 공동연구자였던 法學博士 鄭肯植은 작년에 우리 연구원을 떠나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동대학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연구원을 떠난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999년 2월 27일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徐承完

訂正版 發刊辭

大典會通 卷首·吏典의 翻譯·註釋 및 解說書는 1993年 12月 發刊한지 몇 달되지 않아 전부 賣盡되어 再版發刊을 計劃하였으나 여러 가지 事情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미루어 오다가 最近 同書의 需要急增으로 不得已 약간의 訂正을 가하여 서둘러 再版을 發刊하게 된 것입니다.

大典會通은 周知하다시피 朝鮮時代 500年間の 綜合法典으로서 成宗代의 經國大典(原)·英祖代의 續大典(續)·正祖代의 大典通編(增)과 正祖이후 高宗初까지의 追加法令을 총망라 한 것으로 日帝下에서도 舊朝鮮의 慣行이란 이름으로 裁判의 準據가 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慣習法으로서 그 一部는 現行性を 維持하고 있는 것입니다.

大典會通의 卷首는 大典會通·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의 序文과 箋文, 英祖御製의 勅勅題辭와 勅諭文, 그리고 正祖御製의 題辭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最高의 文章家가 起草한 것으로서 그 時代의 情神과 法思想을 반영함과 동시에 立法趣旨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大典會通의 吏典內容은 內外命婦·京官職·外官職·土官職·京衙前·取才·薦舉·諸科·除授·限品敍用·告身·署經·政案·解由·褒貶·考課·祿牌(보수표)·差定·遞兒·老人職·追贈·贈諡·給假·改名·相避·鄉吏·雜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翻譯書가 아니라 책머리에 朝鮮時代의 法典編纂史를 실었고, 官階官職에 대한 解說과 清顯職任用的 特殊節次 및 銓選

法과 銓郎의 通淸, 庶族의 官階進出과 陞班問題 등에 대한 解說을
결들인 研究書입니다.

끝으로 言及할 것은 譯註 및 解說의 擔當者이며 주로 韓國法制史
를 연구한 文學博士 李鍾日을 평소 끊임없이 指導하여 주신 學術院
會員 겸 民族文化推進會 會長(前 成均館大學校 大學院長 · 漢文學會
會長) 李佑成 博士에게 감사드린다.

1996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發刊辭

우리나라 傳統社會의 法制는 유교적인 宗成憲尊重의 原則에 따라 편찬되어 根本的인 改廢없이 朝鮮國初에 만든 法典을 계속하여 追加·補完하여 왔으므로 朝鮮後期에 이르러 그 量이 방대하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法制가 그대로 現行韓國法制로 成文化된 것은 아니지만 實定法制定의 토대가 되는 文化遺産으로서, 또한 慣習法으로 남아서 우리의 現實生活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우리의 傳統法制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높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法制處에서는 우리의 傳統法制에 대한 認識提高를 위하여 1962년 10월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國譯한 이래 1980년대까지 大典續錄과 後續錄(成宗, 明宗代), 受教輯錄(肅宗代), 典錄通考(肅宗代), 續大典(英祖代), 大典通編(正祖代) 등 역대 법전과 百憲總要(正祖代), 六典條例(高宗代)를 비롯한 많은 법전 提要書 및 法制史 자료를 국역한 바 있다. 이러한 국역사업은 1990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의 발족과 더불어 본 연구원의 사업으로 되었다. 그러나 개원 초기의 본 연구원의 제반사정으로 미루어 오던 중 금년에 들어 와서야 우선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국역본 중 法制處本을 토대로 그동안의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1993년 5월 주석본을 출간한 바 있다.

이어서 조선시대의 종합법전인 大典會通의 解題와 註釋 및 解說을 하도록 방침을 세워 3개년 사업으로 연구서 출판을 계획하였으며 이번에 제1차년도 사업으로 卷首와 吏典編을 완성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제1부 解題編에서는 조선시대의 法典編纂史를 정리하였는데 태조, 태종연간의 經濟六典의 元典과 續典에서 세종대의 六典謄錄 편찬을 거쳐서 세조, 성종연간의 經國大典으로 재정비할 때까지의 과정과 이어서 성종, 중

종연간의 前後續錄 및 숙종대의 受教輯錄과 典錄通考의 편찬을 거쳐서 영조대의 續大典, 정조대의 大典通編으로 편찬되었던 과정을 서술하고, 그 후 고종 2년 大典會通으로 집대성하기까지의 모든 법전편찬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대전회통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제2부의 譯註편에서는 대전회통의 卷首와 吏典을 번역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주를 달아서 이해의 편의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전회통의 내용중 상당한 분량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국역본 중 법제처본을 비롯한 先行譯註本과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성과를 보태어 翻譯과 註釋에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대전회통 연구에 역점을 둔 것은 제3부 해설편이다. 우리의 전통법전인 대전회통의 吏典은 전통사회의 기본적인 통치조직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양반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므로 관료조직과 그 운용에 관한 법제연구가 전통사회연구의 전제가 되고 있음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고법전의 주석서에서는 단순한 번역과 간단한 각주를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일반인은 물론 법학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원에서는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 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파악하여 학계와 일반인에게 우리 선조들의 축적된 법제경험을 알려주려고 시도하게 된 것이다.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 있어서도 대립과 갈등, 분쟁 등 제반모순이 없을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많은 관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하여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였던 것인데, 비록 통치이념과 체제는 달랐지만 오늘날에 비추어 보아도 참고되고 거울로 삼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전통사회의 기본법전인 대전회통에 나타난 주요 사항을 골라서 법조의 연혁과 법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그 적용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 등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史料에서 찾아서 분석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記述하도

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일안에 많은 史料를 섭렵하다 보니 사료해독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을까 두렵다. 학계의 아낌없는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본 연구가 현대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격려하여 주신 본연구원의 자문위원인 韓國法史學會 會長 朴秉濠 교수와 한문학의 대가이신 前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院長(한문학회 회장) 李佑成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서의 원고작성은 연구위원 문학박사 李鍾日과 선임연구원 鄭肯植의 공동집필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노고를 아울러 치하한다.

1993년 12월 31일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張明根

일러두기

- 이 책은 『大典會通』 卷首 및 吏典編의 譯註와 解説을 하고 조선시대의 종합법전으로서의 大典會通에 대한 解題를 한 연구서이다.
- 解題는 조선전기의 經濟六典 元續典과 謄錄을 집대성한 經國大典으로부터 前後續錄 및 受教輯錄·典錄通考를 거쳐 조선후기의 法典인 續大典과 大典通編을 편찬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受教를 추가하여 조선시대의 모든 法典을 종합한 大典會通 기타의 補典 편찬 경위 및 그 내용을 요약하였다.
- 譯註의 底本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高宗 2年(1865) 刊行의 木版本이다.
- 翻譯은 原文 내용을 살리기 위하여 그 당시의 용어를 풀어 쓸 때에도 괄호 또는 註釋으로 原文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 翻譯과 註釋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原史料와 대조하였고 또한 先行譯註書를 참고하였다.
- 原典의 본문은 굵은 활자로 하고 原註는 작은 활자로 하였으며 原細註는 原註보다 더 작은 활자로 하되 〈 〉 안에 넣었다.
- 解説은 法典의 내용 중 법조문의 沿革과 법제정 또는 보완시 및 그 후의 적용과정에서 크게 논의가 있었고 政治社會史的으로 영향이 컸던 항목들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사료에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目次

第1部 大典會通 解題

第1章 朝鮮時代の法典編纂	14
1. 經濟六典과 續六典의 編纂	14
2. 經國大典의 編纂	16
3. 經國大典 制定 後의 續錄과 補典	26
4. 續大典과 大典通編의 編纂	27
5. 大典通編 編纂 後의 法規提要書의 發刊	30
6. 大典會通과 六典條例의 編纂	32
第2章 大典會通의 性格과 概要	35
1. 大典會通의 性格	35
2. 吏典	36
3. 戶典	41
4. 禮典	50
5. 兵典	56
6. 刑典	65
7. 工典	68
第3章 甲午改革 以後의 大典會通의 適用問題	71
1. 官制改革과 法制의 近代化	71
2. 刑典의 適用問題	73

第2部 大典會通 卷首·吏典 譯註

大典會通 卷首	81
大典會通 序文	81
大典會通을 올리는 箋文	83
經國大典 序文	86
經國大典을 올리는 箋文	89
英祖御製의 續大典卷首의 後孫에 대한 勅勅 題辭	91
英祖御製의 續大典에 관하여 諸官들에게 다시 勅諭하는 간단한 글	93

8 目次

續大典 序文	94
續大典을 올리는 箋文	97
正祖御製의 大典通編의 題辭	100
大典通編 序文	101
大典通編을 올리는 箋文	104
大典會通 凡例	107
大典會通 吏典	110
吏典目錄	110
內命婦	111
外命婦	111
京官職	112
東班官階/119	
正一品衙門/121	
正二品衙門/125	
正三品衙門/132	
正四品衙門/144	
正五品衙門/146	
從六品衙門/148	
各 陵/154	
耆老所/120	
從一品衙門/125	
從二品衙門/130	
從三品衙門/144	
從四品衙門/145	
從五品衙門/147	
各 殿/153	
權設職/158	
奉朝賀	158
內侍府	159
雜 職	160
外官職	162
京 畿/166	
慶尙道/169	
黃海道/172	
咸鏡道/174	
忠清道/168	
全羅道/171	
江原道/173	
平安道/175	
土官職	176
京衙前	177
取 才	182
薦 舉	184
諸 科	186
除 授	188
告 身	194
署 經	195

政 案	196
解 由	196
褒 貶	197
考 課	199
祿 牌	207
差 定	207
遞 兒	209
老人職	209
追 贈	211
贈 諡	213
給 假	214
改 名	216
雜 令	222

第 3 部 大典會通 吏典 解說

- 官階·官職研究 -

第 1 章 內·外命婦의 官階·官職 序說	227
1. 內命婦	227
2. 外命婦	229
3. 官階·官職의 行守法	231
4. 封君의 功臣	237
5. 遞兒職	240
6. 久任官	243
7. 賊吏 및 改嫁女子孫의 官職	244
8. 臺諫의 署經	254
第 2 章 清顯要職 任用의 特殊節次	261
1. 弘文錄의 都堂錄	262
2. 大提學 圈點	285
3. 翰林 回薦·圈點 및 召試	297
第 3 章 銓選法의 銓郎의 通清	320
1. 朝鮮 前期의 銓選法의 銓郎權	320
2. 朝鮮 後期의 銓選制의 變動의 吏郎通清法의 革罷	337

3. 1894年 甲午改革에 따른 新官制	361
第4章 庶族의 官界進出과 陞班問題	363
1. 庶族의 概念과 限品敍用 및 專門職	363
2. 庶族數의 增加와 許通論議	383
1) 庶子孫의 累增現狀	383
2) 16·17世紀 庶族에 對한 官職許通 論議와 그 成果	388
3. 18·19世紀 庶族의 疏通運動과 仕路擴大 및 陞班化	404
1) 18·19世紀 庶族의 疏通運動	404
2) 庶族의 仕路擴大化와 陞班化	423
附 錄 朝鮮後期 兩班官僚의 任用·昇進·轉補 事例分析	435
1. 序 言	435
2. 朝鮮王朝의 官階·官職體系와 人事權의 行使者	436
3. 朝鮮後期 官階·官職의 除拜陞遷 事例分析	443
4. 結 論	451

第 1 部

大典會通 解題

- 第 1 章 朝鮮時代の 法典 編纂 /14
- 第 2 章 大典會通의 性格과 概要 /35
- 第 3 章 甲午改革 以後의 大典會通의 適用問題 /71

『大典會通』은 朝鮮時代の 歷代 法典을 총괄한 종합적인 법전으로서, 1910년 이후의 일제 치하에서도 舊朝鮮의 慣行이란 이름으로,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나 재판의 준거가 되는 등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의 前近代社會에 있어서는 法과 禮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때로는 法이 禮의 하위규범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제정된 법령이 무시되거나 통치권자의 恣意로 모든 행정의 행하여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보다 더 遵法精神이 강하여 상하 모두 법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으려 무척 노력하였다. 물론 그 당시에 위법과 탈법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여하간 전근대사회의 법전체제는 周禮의 天官·地官·春官·夏官·秋官·冬官의 6官 體制에 맞추어 吏·戶·禮·兵·刑·工의 6典 體制로 되어 있었는데, 東洋의 다른 나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唐, 宋, 元, 明律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百里不同風하고 千里不同俗”이란 말 그대로 독자적인 법속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많았다. 즉 『高麗史』 「志」에 나타나 있듯이 고려 법제는 唐律을 주로 繼受한¹⁾ 것이었고, 조선의 儀章法制는 太祖의 즉위 교서에 나타나 있듯이 고려의 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²⁾ 그러나 太祖 즉위년에 공포된 官制에 의하면 최고의 政務機關인 都評議使司의 소속기관으로서 檢詳條例司가 설치되어 우리의 고유한 법전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³⁾

1) 『高麗史』 권76-1 「百官志」1, 권81-1 「兵志」1, 권84-1 「刑法志」1 등.

2) 『太祖實錄』 권1-43, 太祖 元年 7月 28日.

3) 위의 註와 같음.

第1章 朝鮮時代의 法典 編纂

1. 經濟六典과 續六典의 編纂

조선시대의 法令은 教旨와 傳旨 또는 受教와 受判 등을 成文化한 國왕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영구히 보존 준수하여야 할 근본적인 법규와 일시적이고 지역적인 규정이 있었다. 전자를 經久之法 혹은 典이라 하고, 後者를 權宜之法 또는 錄이라 하였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은 상대적이므로 법전 편찬시마다 혼란이 있었다.⁴⁾

결국 都評議使司의 命에 따라 檢詳條例司에서는 太祖 6年 12月 甲辰에 李成桂의 위화도 회군(고려 禡王 14年 戊辰) 이후부터의 合行條例를 모아 『經濟六典 元典』 또는 『元六典』이라 하였는데 흔히 撰進을 주관한 趙浚의 이름을 따서 趙浚의 『經濟六典』이라고도 하였다. 元六典은 法文에 吏讀로 吐를 달았으므로 『吏讀六典』 또는 『方言六典』이라고도 하였다.

元六典은 定宗 元年 8月 癸卯에 頒布 施行하였으나, 그 후에도 새로운 法令(受教, 受判 등)의 제정이 계속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생겨서 太宗 7年 8月 癸亥에 續六典 修撰所를 설치하고,⁵⁾ 晉山府院君 領議政 河崙을 책임자로 하여 太祖 7年 戊寅 이후부터 太宗 7年 丁亥까지의 受教, 條例를 모아⁶⁾ 法典化 작업을 시작하여 同王 12年에 비로소 續典을 편찬하는 한편 元六典도 吏讀를 除去하고 순 한문으로 재정비하여 『經濟六典 元集詳節』 3卷과 續集詳節 3卷을 撰進

4) 田鳳德, 『經濟六典拾遺』(亞細亞文化社, 1989) 解題 pp.8~9 朴秉濠, 『韓國法制史攷』(法文社, 1987) p.402, pp.406~407.

5) 정종 2년 4월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개칭하고 의정부에 檢詳이라는 실무관료를 두었다. 또 태종은 즉위 이후 門下府를 의정부로 흡수 통합하였다.

6) 박병호, 『앞의 책』, p.400 : 그러나 『李朝法典考(朝鮮總督府 中樞院 1936)』 p.18에서는 태종 8년까지의 수교, 조례를 찬수하였다고 했다.

하여 그 이듬해에 頒布하였다. 그 후 『元集詳節』을 『元六典』, 『續集詳節』을 『續六典』 또는 河崙의 『續六典』이라 하였다. 그러나 속육전은 元六典과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太宗 15年 8月 丁丑에 원육전과 어긋나는 속육전의 條文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권30-16). 또 방언을 제거시킨 하륜의 순한문식 원육전은 이해하기 어려워 世宗 13年 5月 丙子에는 黃喜의 건의에 따라 이두육전의 板本을 보수하여 간행하였다(『세종실록』, 권52-20).

太宗의 원전 尊重主義는 世宗 때도 이어져서 (『세종실록』, 권34-14, 세종 8년 12월 壬戌 및 『앞의 책』 권42-18 세종 10년 11월 丁丑) 祖宗成憲尊重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이와 같은 祖宗成憲尊重의 원칙은 世宗代에서 보면 太祖의 원육전뿐만 아니라 太宗의 속육전도 祖宗의 成憲이 되고, 文宗代에서 보면 太祖·太宗의 元·續典뿐만 아니라 世宗의 續六典도 祖憲이 됨으로 그 범주가 넓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太祖의 경제육전에 후속하는 역대의 속전은 舊法을 改廢하는 新法이 아니라, 舊法을 보충하는 增補版에 불과한 것이었다.⁷⁾

속전의 편찬 작업을 위하여 世宗 4年 8月 乙未에는 元典修撰色을 두고, 星山府院君 李稷과 左議政 李原을 책임자(都提調)로 하여(『세종실록』, 권21-4) 太宗 8年 戊子 이후의 條例를 정리하여 『續六典』 6冊과 『謄錄』 1冊을 撰進하였는데, 이 新續六典을 찬진자의 이름을 따서 李稷의 『續六典』이라고 하였다. 세종 10년 11월 丁丑에는 이직 등이 이를 改修하여 속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올렸으나(『세종실록』 권42-18), 세종은 개수한 속육전에 만족하지 못하여 河演 등에게 改撰을 명하였다(『세종실록』, 권42-18). 하연의 改撰 續六典은 세종 11년 3월 甲子에 원전과 함께 인쇄하여 반포하였다(『세종실록』, 권43-25). 이러한 개찬 속육전에 관해서도 세종은 만족하지 못하여 詳定所 提調 황희에게 再改撰을 명하였는데 황희는 세종 15년 정월 戊午에 新撰 속육전을 찬진하였다. 이 때에 일시 所用되는 非經久之法도 정리하여 등록 6권을 찬진하여 世宗은 鑄字所에 명하여 인쇄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권59-2). 黃喜의 속육전은 태조 7년 戊寅 이후 세종 14년 壬子까지의 조례를 수록한 것이고(『세종실록』 권34-14, 『문종실록』 권6-14), 『六典謄錄』은 일시 소용되는 權宜之法 중에서 필요한 조례를 모은 것으로서 이 육전등록의 출현은 앞서 세종 8년 12월 乙未에 이직 등이 원전등록 1

7) 전봉덕, 『앞의 책』 해제 p.8.

冊을 찬진한 이래(『세종실록』, 권34-14) 속육전 편찬시에 등록을 편찬하는 것이 慣例化하였는데,⁸⁾ 黃喜의 속육전 6권 찬진시에도 육전등록 6권을 함께 찬진한 것이다.

다음 文宗 때에도 同王 元年 2月 丁亥에 司憲府의 건의에 따라 세종 15년 癸丑 正月로부터 세종 32년 庚寅에 이르기까지 18년간의 전교 및 수교 중 永爲 遵守之事를 모아 續典을 撰集 廣布할 것을 계획하였고(『문종실록』, 권6-14), 같은 해 9月 辛亥에는 集賢殿에 명하여 『續謄錄』의 撰修를 시작하도록 하였다(『문종실록』, 권9-37). 그러나 文宗은 속전과 속등록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逝去하였다.

2. 經國大典의 編纂

世祖는 즉위 이후 國基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經濟六典, 元·續典 및 謄錄과 그 후의 教旨, 判旨, 條例 등을 검토 刪定하여 만세에 준수할 成文法典을 만들고자, 六典詳定所에 명하여 법전편찬이 착수되었다. 세조 4년 戊寅 閏2월에 六典詳定官들은 각자 만든 法典을 올렸는데 世祖는 이를 친히 筆削하여(『세조실록』, 권11-25) 同王 5年 己卯 4월에 前工曹判書 崔恒을 喪中에서 起復시켜 육전의 수찬을 命하여(『세조실록』, 권16-13) 실생활에 직접 관계 있는 조항부터 편찬에 착수하도록 하여 同王 6年 庚辰 7월에 원, 속육전, 등록, 판지, 조례 가운데 새로이 戶典을 만들어 이를 『經國大典』이라 命名하여⁹⁾ 開版하였다(『세조실록』, 권21-4). 그 다음 同王 7年 辛巳 7월에는 刑典을 撰定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¹⁰⁾

世祖는 13年 丁亥 2월에 高靈君 申叔舟·領議政 韓明澮·綾城君 具致寬·延

8) 전봉덕 『앞의 책』 해제 p.17.

9) 현재 전하여져 내려오는 經國大典 戶典에 없는 조항으로 科田遞受條를 비롯한(『세조실록』, 권28-28, 권37-31) 몇 개 조가 있고, 또 내용이 다른 조항도 상당수 있다(『세조실록』, 권23-13, 권30-10, 권34-42, 권33-16, 권23-1, 권46-38, 권41-1 등).

10) 현존의 經國大典 刑典에 없거나 내용이 다른 조항이 약간 있다(『세조실록』, 권25-3, 권30-28, 권39-13, 권33-30, 『성종실록』, 권166-8, 권11-15).

城君 朴元亨 등을 상정소에 불러서 新撰 經國大典 중 남은 4典을 勘校시켰으며 同年 6月 詳定所 堂上 등이 각각 新撰大典을 갖고 入啓하였으므로, 承旨들에게 駁議 考定하도록 한 후 同年 7月에는 세조가 친히 逐條審議를 하고 宗親, 大臣 및 承旨들과도 論議하는 등(『세조실록』, 권43-22)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同年 12月 일응 審議를 마쳤으나, 다음 해인 세조 14년 戊子 9월 세조가 薨去하여 頒行하지는 못하였다.¹¹⁾

그 다음 睿宗 元年 己丑 9月 丁未에 六典 全部의 編纂을 마친 후, 詳定所 提調 崔恒·右議政 金國光 등이 新撰 經國大典을 올렸으며(『예종실록』, 권7-24), 다음 해인 庚寅 正月 初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예종실록』, 권8-20). 그러나 睿宗은 同王 元年 11月 戊申에 薨去하여 刊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成宗이 繼位한 후 同王 元年 庚寅 2月 戊午에 大典의 校正에 착수하여 蓬原君 鄭昌孫, 高靈君 申叔舟, 上黨君 韓明滄, 綾城君 具致寬, 青松君 沈滄, 昌寧君 曹錫文, 左議政 尹子雲, 戶曹判書 徐居正, 工曹判書 梁誠之 등에게 戶典·工典의 校定을 명하고 이틀 후 靈城君 崔恒, 領議政 洪允成, 上洛君 金碩, 吏曹判書 韓繼美 등을 추가하여 吏典과 戶典의 校定을 다시 명하였다(『성종실록』, 권3-4~7). 이해 4월에 또 다시 院相 및 여러 承旨들에게 考校를 命하고 李克墩·崔灝·金紐 등에게는 更校를 命하여(『성종실록』, 권4-18) 同年 11月 ‘新定 經國大典을 이듬해인 成宗 2年 辛卯 正月 初 1일부터 遵用’ 할 것을 명하였다(『성종실록』, 권8-7). 이것을 『辛卯大典』이라고 하는데, 그 編纂年度를 기준으로 『己丑大典』이라고도 한다.¹²⁾

그러나 辛卯大典¹³⁾도 역시 脫漏가 많아서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增修,

11) 윤국일 『經國大典 研究』(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p.74에서는 『성종실록』 권5-11과 『세조실록』 권47-29를 근거로 세조 12년 丙戌에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고 하고 이를 丙戌大典이라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의 실록기사에는 법전편찬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그 이전에 완성된 戶典과 刑典만이 시행되어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을 뿐이다.

12) 윤국일, 『앞의 책』 pp.86~97.

13) 辛卯大典은 項目設定 및 條文內容 등에 있어서 현존 경국대전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해당조항을 例示하면 성종실록 권22-4, 권10-11, 권9-5(『吏典』), 권25-6, 권6-10(『戶典』), 권11-25, 권17-6, 권13-19(『禮典』), 권9-5, 권17-7(『兵典』), 권18-12, 권12-14(『刑典』) 등이다.

改定の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禮曹에 명하여 '종래 행하여졌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교, 조례로서 대전에서 빠진 것'을 조사시킨 결과 成宗 2年 辛卯 5月 校正廳은 「凡限品授職人 法前過限除授者 勿追奪」을 비롯한 130件的 누락 조문을 啓聞하였다(『성종실록』, 권10-19).¹⁴⁾ 이외에 各曹各官에서도 今後 시행되어야 할 條項을 보고하였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增補改定해야 할 것을 골라 改修하여 同王 5年 甲午 正月에 新定 經國大典이라 命名하고, 頒行하여 같은 해 2月 初 1日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36-6). 이것을 『甲午大典』이라 한다. 그러나 辛卯大典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된 條文 가운데는 일시 혹은 한 지방에만 시행될 성질의 것 등이 섞여 있어서 甲午大典에서 어느 정도 載錄하였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¹⁵⁾ 辛卯大典에서 누락된 130개 조문 중 상당수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물론 이때에 진행된 增補作業은 단순히 누락된 法條文을 보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既成 條文에서 不合理한 것을 수정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누락된 조문 모두를 大典에 수록한 것은 아니고 일부 大典에 수록하지 않은 조문은 續錄이란 이름으로 따로 편찬하였다. 그리하여 成宗 5年 甲午 1月에 새로운 經國大典이 완성되어 72개조로 된 속록과 함께 반포되었던 것이다.¹⁶⁾ 해당 조문을 大典에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대전과 별도로 속록을 만든 것은 祖宗成憲의 遵守를 주장하는 일부 관료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⁷⁾ 비록 甲午大典은 지금 完帙로서는 전해 오고 있지 않으나 해당 법조문 내용은 성종실록 곳곳에서 散見된다.¹⁸⁾

14) 『李朝法典考』 (앞의 책) pp.53~65.

15) 『위의 책』 p.65.

16) 윤국일, 『앞의 책』 p.98.

17) 『성종실록』 권18-12, 성종 3년 5월 乙丑.

18) 『성종실록』에서 散見되는 갑오대전 법조문의 卷面은 다음과 같다.

「吏典」: 권82-13, 권156-1, 권143-3, 권68-12, 권47-5, 권80-6, 권91-14, 권42-3, 권14-14, 권54-15, 권74-12, 권122-7, 권84-24, 권42-1, 권39-7, 권98-12, 권101-6.

「戶典」: 권82-8, 권67-7, 권66-14, 권108-1, 권111-8, 권48-13, 권92-20, 권94-5, 권58-12.

「禮典」: 권100-11, 권91-15, 권92-19, 권73-3, 권94-18, 권104-16, 권96-6, 권125-2, 권150-10, 권67-7, 권107-14, 권48-13, 권124-6, 권163-24, 권168-2, 권90-13, 권44-10, 권86-9, 권79-8, 권54-16, 권77-18, 권168

그러나 成宗 12年 9月 侍讀官 金訶이 大典에 難解한 곳이 많으므로 註解를 加하자고 하였고, 또 知事 徐居正이 관리가 奉行하기 어려운 것은 法令이 통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자 國王은 近年에 수교가 빈번하여 大典과 모순되는 것도 있을 것이므로 다시 改正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성종실록』, 권 133-7). 그리하여 곧 勸校廳이 설치되어 成宗 13年 11月 및 12月과 14年 正月에 걸쳐 改修할 곳에 관한 논의를 거듭하게 되었다.¹⁹⁾ 하지만 大典의 교정을 마친 후에도 大臣들의 논의가 분분하자 成宗은 同王 15年 6月 承政院에 傳教하기를 “大典에 添錄된 것은 모두 속전에서 따온 것이며, 이는 또한 先王代에 이미 行하여졌던 法인데 여러 宰相들이 각자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분분하니 大典이 어느 때에 확정되겠는가(『성종실록』, 권167-12)”라고 하여 토의를 종결시키고자 하였다. 같은 해 7月 丁亥에는 承旨들이 大典의 일부조항에 대한 修正을 건의하자 成宗은 大典 編纂이란 新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교와 속록의 用語(내용)를 移載한 것이니 그간에 비록 改正할 곳이 있다고 해도 속히 완성하라고 하였다(『성종실록』, 권168-3). 또 勸校錄의 보고에 대한 承旨들의 反對에 대해서도²⁰⁾ 成宗은 “이번에 大典을 勸校하도록 한 것은 단지 조종조의 수교와 속록을 첨가하여 수록하도록 한 것이며, 신법을 創作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작은

-11. 권65-15, 권81-8

『兵典』: 권83-15, 권45-10, 권67-7, 권104-16, 권47-7, 권89-23, 권42-3, 권127-2, 권89-14, 권57-8, 권59-38

『刑典』: 권144-2, 권61-1, 권93-7, 권57-8, 권40-12, 권94-6, 권58-12, 권51-12, 권56-3, 권96-11, 권90-2, 권82-26, 권38-9, 권66-12, 권144-2, 권125-10, 권168-2, 권95-7, 권57-1, 권142-15, 권39-12, 권163-23, 권75-5, 권39-4, 권95-7, 권141-5, 권68-9, 권116-3, 권122-10, 권79-1, 권88-20

그리고 「속록」에 해당하는 것은 『성종실록』 권74-5, 권74-12, 권134-20, 권93-19, 권56-3, 권68-6, 권95-7, 권141-5 등이다. 윤국일, 『앞의 책』, pp.99~109 참조 이들 조문은 현존 경국대전과 일치하는 것도 많으나, 다른 점도 적지 않다.

19) 『성종실록』 권148-5, 권148-9, 권149-8, 권149-15, 권150-8.

20) 勸校廳의 보고 내용은 公私賤女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 세종조에는 無贖身으로 從良하였으나 세조 때에는 贖身從良으로 고쳤으므로, 奴婢主가 불허할 때에는 곤란하니 法文에 노비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승지들은 이를 반대한 것이다(성종실록 권168-3).

폐단이 있다고 하여 구법전의 法文을 가변이 고치면 되겠는가(『성종실록』, 권 168-4)"라고 하였다. 결국 成宗 15年 12월에 大典의 감교를 전부 마치고 인쇄·반포하여 同王 16年 乙巳 正月 初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173-4, 173-21). 이것을 『乙巳大典』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經國大典이란 바로 이 乙巳大典을 말하는 것이다. 乙巳大典의 版本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21)

- 史庫本 : 萬曆 41年刊, 前後續錄 合本 5冊, 奎章閣 所藏
- 萬曆本 : 萬曆 31年刊, 4冊, 李宗翰本, 金民禧本 등이 있음
- 大邱本 : 前後續錄, 合本 5冊, 禮信文庫 所藏
- 芸閣本 : 前後續錄, 合本 6冊, 奎章閣 所藏
- 平壤本 : 顯宗 9年 3月, 平壤府刊本, 奎章閣 所藏

그 후 英祖 20年 甲子에 續大典이 편찬되었고, 正祖 9年 乙巳에 經國大典 및 續大典 편찬 후의 수교 등을 찬수, 증보한 『大典通編』이 편찬되었으며, 高宗 2年 乙丑에 大典通編을 증보한 『大典會通』이 편찬되었는데, 종합 법전인 大典會通 속의 「原」이란 바로 乙巳大典을 의미하였고, 「續」이란 續大典, 「增」은 大典通編, 「補」는 大典會通 편찬시에 추가된 법문을 뜻하였다.22) 아 물론 乙巳大典을 刊行한 때에는 속록이 별도로 없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成宗이 大典의 감교는 단지 祖宗朝의 수교와 속록을 添錄하는 것이라 한 점에 비추어, 甲午大典의 속록을 을사대전의 본문에 포함하여 수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23)

經濟六典의 원, 속전과 등록, 그리고 經國大典인 신묘대전, 갑오대전 등이 完本으로는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경국대전 즉 을사대전이 이들 법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取捨한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성종실록에서 散見되는 갑오대전 시행 당시의 법조문을 을사대전의 그것과 대조하여 보면 꼭 같은 것도

21) 韓祐勳, 『經國大典 註釋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解題 pp.17~18.

22) 『李朝法典考』(앞의 책) p.68.

23) 윤국일, 『앞의 책』 p.114.

상당히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적지 않다. 다음에 甲午大典의 법조문 등을 증보 수정하여 을사대전으로 법제화한 과정을 몇 개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²⁴⁾

먼저 吏典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校書館은 太祖 元년에 校書監이라 하여 經籍을 印頒하는 등의 임무를 맡기고 判書 2人을 비롯한 여러 官員을 두었는데, 太宗 원년에 이를 校書館으로 고치고 提調 2人(2인 중 1인은 大提學例兼)과 判校 1人(他官兼), 校理, 別坐, 別提,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등 官員을 두었다. 世祖 때에는 고려 때의 호칭에 따라 典校署라 하였다가 成宗 15년에 校書館으로 復稱하였으며,²⁵⁾ 이는 辛卯大典과 甲午大典에서는 典校署라 하던 것을 乙巳大典에서 校書館으로 法制化하였음을 의미한다(『성종실록』, 권162-12).

둘째, 官制는 太祖 즉위 때 제정 공포된 후, 定宗 2年 庚辰 4月の 改革으로 都評議使司를 議政府로 고치고 中樞院을 三軍府와 承政院으로 나누어 政務와 軍務를 구별하였으며(『정종실록』, 권4-5), 太宗 元年 辛巳 7月에는 門下府를 폐지하여 일부는 의정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郎舍를 分立하여 司諫院을 신설하였으며, 三軍府를 承樞府로 改稱하였고²⁶⁾, 承政院도 이때 承樞府로 통합된 듯 하다.²⁷⁾ 그리고 太宗 5年 正月에는 六曹 중심체제로 官制를 대폭 개정하면서 승추부를 兵曹에 소속시켰는데(『태종실록』, 권9-1), 아마 이때 承政院을 다시 독립시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⁸⁾ 아뭏든 그후 약간의 修正을 거쳐 世祖 12年 丙戌 正月에 다시 官制를 대폭 改定하였다(『세조실록』, 권38-4). 그러나 이를 수록한 成宗 때의 辛卯大典과 甲午大典에는 官司名과 人員만이 기록되어 있고 관직의 직무권한을 기재하지 않았음은 成宗 13年 10月の 대전 감교 때에 밝힌

24) 윤국일, 『위의 책』, pp.114~122와 『李朝法典考』, pp.68~70 및 韓祐勳, 『經國大典 註釋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解題 참조.

25) 『東國文獻備考』 권220-31 「職官考」7 校書館條.

26) 『태종실록』 권2-2, 太宗 원년 7월 庚子.

27) 『정종실록』 권4-5, 정종 2년 4월 辛丑에는 '改中樞院承旨爲承政院承旨'라 하였던 것을 註26의 실록 기사에서는 '都承旨爲承樞府知申事 承旨爲代言'이라 하였다.

28) 『태종실록』 권10-28, 太宗 5년 12월 갑자에 '黃喜 承政院知事'란 기사가 있다.

영의정 盧思愼의 건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성종실록』, 권147-2), 현존 經國大典(乙巳大典)과 그후에 편찬된 法典의 원전 중 吏典에는 관직과 그 직무권한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 養賢庫는 人材養成用 錢穀을 관장하는 倉庫로서 고려 때부터 설치되어 조선초기에도 그대로 있었는데, 대전 편찬시에 分豐儲倉으로 그 이름을 고쳤으므로 辛卯大典과 甲午大典에는 고친 이름인 분풍저창으로 기록되었으나, 成宗 14年 12月 성균관 博士인 孫執經 등의 上書에 의하여 양현고로 復稱하여 乙巳大典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성종실록』, 권161-4).

넷째, 老人職에 관한 규정은 甲午大典에 없던 것을 成宗 7年 11月 이조의 건의에 따라 을사대전에서 법제화 된 것이며(『성종실록』, 권73-3), 久任官에 관한 규정은 甲午大典 속록에도 있었는데, 成宗 8年 8월의 國王의 지시에 따라 그 수가 감축된 후에(『성종실록』, 권83-23) 거의 그대로 乙巳大典에 등재된 것이다.²⁹⁾

다섯째, 守令七事에 관해서는 甲午大典과 乙巳大典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그 순서가 약간 달랐으며(『성종실록』, 권38-7과 現存大典비교), 甲午大典에서는 父母의 나이가 70세이면 遠邑의 守令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그 里數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成宗 5年 5月, 申叔舟 등의 건의에 따라 그 거리를 300리로 정하였고(『성종실록』, 권42-3), 乙巳大典에서는 이를 수록 법제화한 것이다.

그 다음 禮典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大臣이 죽었을 때의 會葬之禮에 관한 규정은 甲午大典에 없던 것을 成宗 15年 2月 국왕의 지시에 따라 法制化한 것으로 乙巳大典 편찬시에 수록한 것이다(『성종실록』, 권163-16).

둘째, 甲午大典 속록에는 宗親의 자녀에 대한 혼인연령 규정이 없어서 갖난 애를 두고 議婚하여 강제로 禮幣를 납부하게 하는 일도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나이가 10세가 되어야 의혼할 수 있도록 하자는 成宗 9年 6월의 예조의 건의에

29) 『세조실록』 권21-17, 세조 6년 8월 己未에各司의 久任員數가 규정되고 있다. 이때 규정된 久任員數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甲午大典 續錄에 등재된 듯하다. 또 『성종실록』 권83-23 성종 8년 8월 辛酉에 기록된 구임원수는 현존 경국대전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 법제화되어 乙巳大典에서 이를 수록한 것이다(『성종실록』, 권93-19).

그리고 兵典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火藥 匠人은 전투에도 직접 참가하는 군사와 다름없는 자들이는데도³⁰⁾ 체아직 자리가 3석 뿐이므로 成宗 8年 正月의 병조의 건의에 따라 우선 화약장인을 破陣軍이라 호칭하고, 그들의 체아직을 7석으로 증원하도록 하였는데(『성종실록』, 권75-29), 乙巳大典에서 이를 수록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둘째, 文班인 承文院 判校, 奉常寺正 通禮院 左·右通禮 등은 임기가 차면 당상관으로 올라 가는데, 武班인 경우에만 당상관으로 올라 가는 벼슬자리가 없으므로,³¹⁾ 成宗 6年 12月 壬寅에 있었던 國王의 傳旨에 따라 武官인 좌통례와 訓練院 正 등도 임기가 만료되면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주도록 하여 乙巳大典에서 이를 수록 법제화한 것이다(『성종실록』, 권62-12).

셋째, 兵船을 망실한 경우에는 무명으로 변상시킨다는 규정이 甲午大典에 있었으나 병선을 불태운 경우에는 변상시키는 법이 없었으므로 成宗 12年 3月 병조의 건의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도 변상시키는 규정을 두어서 乙巳大典에서 수록, 법제화한 것이다(『성종실록』, 권127-2).

또 刑典에 속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官에 신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노비를 매매한 者를 처벌하는 규정이 甲午大典에는 없었으나, 成宗 9年 3月の 형조의 건의에 따라 이를 辛巳大典에 의거하여³²⁾ 治罪하고 그 노비와 매매 대금을 官에서 몰수한다는 규정을 두어 乙巳大典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성종실록』, 권90-2).

둘째, 甲午大典에는 移住시킨 백성이 도망친 경우에, 妻子는 영락한 역참의 노비로 하고 本人은 붙잡아 斬刑에 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成宗 9年 7月 國王의 지시에 따라 도망친 이주민에 대해서는 甲午大典의 규정대로 처분할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받아들인 戶首에 대해서도 온 가족을 변방으로 이사시키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웃 사람과 권농관은 王命 위반죄로 論罪하고 5명 이상이 流亡한 경우에는 수령을 파직시킨다고 하였다(『성종실록』, 권94-6). 이것

30) 윤국일, 『앞의 책』, p.119 참조.

31) 한우근 외4, 『경국대전』 (앞의 책) 해제 p.15.

32) 辛巳大典이란 세조 7년 7월에 만든 刑典을 말한다.

이 乙巳大典에서 법제화된 것이다.³³⁾

셋째, 매우 추울 때나 너무 더운 때에 刑杖을 사용하면 반드시 人命을 상하게 할 것이므로 成宗 12年 10月の 王命에 따라 11月 初 1일부터 正月 末日까지와 5月 初 1일부터 7月 末日까지는 綱常, 賊盜에 관한 죄로 決杖 60 이상 受刑할 者에 대해서는 法대로 시행하되,笞 이하는 贖錢으로 대신하게 하고, 여자의 경우 장 90 이하는 속전을 받고 장형을 면하게 하며, 잡범으로서 결장 100 이하는 속전을 내게 하되, 이때 집이 가난하여 속전을 낼 수가 없어 스스로 受杖하기를 원하는 者은 들어준다고 하였다(『성종실록』, 권134-9, 10). 이것이 乙巳大典에서 그대로 法制화된 것이다.

넷째, 甲午大典에서는 大小 官人이 公私婢를 娶하여 妻妾으로 삼은 者의 子女를 그 아버지가 장례원에 신고하여 사실 조사와 대장 등록 후 병조에 공문을 보내어 補充隊에 소속시키며, 그 子女의 나이가 16세가 되도록 신고하지 않은 者와 등록 뒤에도 立役하지 않는 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게 하여 選賤한다고 하고 신고자에게는 상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無制限의 신고를 허용한다면 兄弟나 3寸 간에도 신고하여 노비로 사역하는 수도 있게 됨으로 成宗 6年 7月 장례원의 건의에 따라 同姓 3寸 아내의 친족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성종실록』, 권57-9, 10), 乙巳大典에서 이를 수록 法制化하였다.

中宗 6年 辛未에 經國大典(乙巳大典)을 重刊하여 『辛未大典』이라고도 하였다.³⁴⁾ 그리고 經國大典 刑典에서는 大明律을 그대로 依用하여 우리 刑法典의 일부로 하였으므로,³⁵⁾ 여기서 大明律에 관한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大明律은 조선국초부터 法典 편찬에 앞서 刑律로서 適用된 것인데, 太祖 4년에는 大明律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두를 섞어서 고쳐 쓴 大明律直解가 출간되었다. 大明律直解는 大明律을 原文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官制官司名 職名 親族 호칭을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代置하고, 贖刑, 徒流遷徙地方에 관한 규정을 改作하는 등 우리 법전으로 만들어 시행한 것이었다.³⁶⁾

33) 한우근, 『위의 책』, 해제 p.16 및 윤국일, 『앞의 책』, pp.120~121.

34) 『이조법전고』, (앞의 책) p.71 ;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10월 戊子.

35) 『경국대전』 권5, 형전 用刑條.

大明律은 朱元璋이 稱帝하기 前인 吳王 元年(1367) 12월에 처음 반포한 것인데, 唐律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서 이듬해 吳王(주원장)이 稱帝한 직후, 洪武 元年(1368) 윤 11月 改正에 착수하여 唐律에 따라 名例·衛禁·職制·戶婚·廩庫·擅興·盜賊·鬪訟·詐僞·雜犯·捕亡·斷獄으로 編別하여 洪武 7年(1374) 2월에 606條의 律을 완성하였다. 그 다음 洪武 9年(1376) 10월에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고, 洪武 22年(1389) 8월에는 唐律式의 編目を 바꾸어 다시 名例·吏·戶·禮·兵·刑·工의 7分法을 취하여 460條로 개편하였다. 여기에 대한 개정은 洪武 30年(1397)에 있었는데, 오늘날 전해 오는 大明律은 바로 이때 개정 반포된 것이다.³⁷⁾

요컨대 大明律은 唐律을 이어 받아 宋元代의 풍부한 法制經驗을 토대로 편찬된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 禎王 14年 戊辰 9月 典法司에서 大明律의 準用을 건의하였고,³⁸⁾ 恭讓王 4年 7月 朝鮮太祖 즉위 시에 그 準用이 결정되어(『태조실록』, 권1-44), 太祖 4年 그것을 이두로 直解하여 印出 반포하였던 것이다.³⁹⁾ 그러나 明律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法制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론이 있어서⁴⁰⁾ 구체적인 조문 분석 작업에 들어간 후, 太宗 2年 9月 癸未에 流罪收贖之法을 제정하여 明律과의 調和를 도모하였고(『태종실록』, 권4-9), 太宗 4年 10月 丙申에는 明律에 의거하여 笞·杖·枷·鎖의 制를 정하여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 관리들에게 가르쳐서 一笞一律이라도 반드시 法律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태종실록』, 권8-26). 그후 형벌에 대한 贖罪金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여 世宗 7年 3月 己卯에는 형조의 건의에 따라 이를 완화하였다(『세종실록』, 권27-33). 그리하여 大明律은 우리의 刑事法으로서 世祖, 成宗 年間に 제정 공포된 經國大典 刑典과 함께 구한말 光武 9年(1905) 刑法大全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效力을 지속하였다.⁴¹⁾

36) 박병호, 『앞의 책』 p.416.

37) 박병호, 『앞의 책』 p.418.

38) 『高麗史』 권84-34 『刑法志』, 禎王 14년 9월.

39) 『이조법전고』 (앞의 책) pp.110~111.

40) 『태조실록』 권13-13, 태조 7년 4월 丁酉.

41) 박병호, 『앞의 책』 p.418 및 『이조법전고』 (앞의 책) p.128.

3. 經國大典 制定 後의 續錄과 補典

甲午大典과 함께 반포된 續錄 중 原典化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대개 乙巳大典 속에 수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續錄의 법 조문과 그 이후의 새로운 敎令을 정리하여 『大典續錄』을 편찬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成宗 23年 7月 丙申에 편찬이 완료된(『성종실록』, 권267-17) 大典續錄의 序文에 의하면 「成宗 23年 國王은 廣川君 李克增, 右贊成 魚世謙, 吏曹參議 李諱, 禮曹參議 安瑚, 兵曹參知 金首孫, 刑曹參議 金諶, 工曹參議 金斌, 戶曹參判 權健 등에게 명하여 經國大典 반포 이후의 敎令으로 항구적인 법이 될 만한 것을 뽑아 모아서 올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극증 등은 王命에 따라 번잡한 것을 刪削하고 약간의 증감을 하여 『大典續錄』 또는 『大典前續錄』이라 하였다.

또 中宗 38年 8月 上旬에 편찬된 大典後續錄의 序文에 의하면 같은 해 中宗은 領議政 尹殷輔, 左議政 洪彦弼, 右議政 尹仁鏡, 左贊成 柳灌, 工曹判書 柳仁淑, 戶曹判書 成世昌 등에게 명하여 大典續錄 이후 50여년 간의 受敎科條를 모아서 輕重을 가려 刪削하도록 하되 舊章의 본뜻은 잊지 않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편찬 반포된 것을 『大典後續錄』이라 한다.

大典後續錄 편찬 후 7년이 지난 明宗 5年 國王은 通禮院 左通禮 安璋, 奉常寺正 閔荃通 등으로 하여금 經國大典의 難解한 곳과 文脈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 註釋을 加하게 한 후 兵曹判書 鄭士龍, 參判 沈通源, 參議 李夢弼 등에게 質正하도록 하고, 영의정 沈連源, 左議政 尙震, 右議政 尹漑 등이 이를 다시 修正하여 明宗 10年 『經國大典註解』라는 이름으로 頒布하였다. 그 후 30년이 지난 宣祖 18년에는 『詞訟(決訟)類聚』를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원래 全羅道 觀察使 金泰廷의 父가 郡守로 있을 때에 『決訟要覽』을 모아 審理·判決을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 책은 그 후 裁判을 하는 者에게 指針이 되었는데 그 후 肅宗 때 이를 다시 補完하여 『詞訟(決訟)類聚補』라는 이름으로 출판하였다.⁴²⁾

中宗 38年 大典後續錄 반포 이후 계속되는 內憂外患으로 새로운 수교, 조례를 편찬할 경황이 없었던지 法典 편찬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후 150년이 지난 숙종

42) 『이조법전고』 (앞의 책) pp.137~138.

8年 11월에 이르러서야 承旨 徐文重의 건의에 따라 國王은 備局 堂上 李翊에게 그 일을 맡겨 주관하게 하였다(『숙종실록』, 권13 下-22). 吏曹判書 李翊, 禮曹判書 尹趾完, 兵曹判書 趙師錫, 刑曹判書 徐文重, 副提學 崔錫鼎 등은 王命에 의하여 大典後續錄 편찬 이후의 中外 官司의 수교를 모아 정리하여 續錄의 綱條를 모방, 분류, 分載하였고, 영의정이 金壽恒·金壽興·南九萬 등으로 서로 이으면서 이들의 총괄 하에서 전후 모순되는 教令도 刪削하지 않고 竝錄하여 6卷으로 나누어 『受教輯錄』이라는 이름으로 편찬하여 숙종 24년에 이를 반포하였다. 이때에 전후 모순되는 수교는 뒤의 것이 有效한 것으로 하였다.⁴³⁾

그 후 숙종 27年 國王은 領議政 崔錫鼎, 左議政 李世白, 右議政 申琬 및 備局 郎廳 李彥經 등에게 命하여, 經國大典을 주로 하고 前後續錄과 수교집록의 여러 法條文을 大典 각조 밑에 순차로 分屬시켜 일견 考據의 편의에 제공토록 하였다. 이 책은 숙종 32년 『典錄通考』라는 이름으로 開版하였는데 그 凡例에 ‘大典은 經書와 같고, 三錄은 傳註와 같으므로 經國大典을 제일 위에 쓰고 三錄은 한 글자 낮추어 써서 輕重의 구별을 나타낸다’라 하여 大典을 중요시함과 동시에 前後續錄과 受教輯錄은 大典의 註釋書 내지 補充法規임을 명확히 하였다.

4. 續大典과 大典通編의 編纂

17세기의 조선은 戰爭 및 전후 복구와 당쟁의 와중에서 法典 편찬이 정제될 수밖에 없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英祖는 탕평책을 내걸고 體制 정비를 위한 法典 改修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同王 4年 12月 都承旨 朴文秀의 續典 편찬 건의에 대해서 英祖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우선 經國大典, 前後續錄, 受教輯錄, 典錄通考 등을 卿大夫 등이 熟知하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續典의 편찬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 후 承旨들은 經國大典을 비롯하여 前後續錄, 受教輯錄, 典錄通考 등을 承政院의 各房에 두고, 또한 기타의 수교를 모아 이를 검토하여 法으로서 遵守해야 할 것을 가려뽑아 集錄하였으며, 承旨 이외에 判書도 골라 釐正을 주관시켜 일용 편찬을 마치고 英祖 15年 7月 『增補典錄通考』라는 이름으로 반포하도록

43) 『受教輯錄』 凡例 및 『이조법전고』 (앞의 책) pp.138~139 참조.

하였다.⁴⁴⁾ 그러나 이 책은 現存하지 않으며, 開版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增補典錄通考는 續大典 편찬의 준비 자료로 되었고 續大典 편찬 작업은 그 이듬해인 英祖 16年 4月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영조실록』, 권 51-18).⁴⁵⁾

經國大典을 편찬하여 永世 遵守할 法典으로 정했지만, 시세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事件이 발생할 때 時宜에 순응하는 일시적인 편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政爭의 激化로 일시적인 수교가 많아져서 大典의 빛이 가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英祖는 위 增補 전록통고를 토대로 大典의 뜻에 반하지 않는 수교를 새로 補完하여 大典에 準하는 항구적 法典인 續大典을 기초하도록 하여 英祖 20年 甲子 8月 國王이 친히 序文을 지었다(『영조실록』, 권 60-7). 『續大典』은 같은 해 12月 편찬을 마치고 다음해 5月, 校書館에 刊行을 명하여 英祖 22年 4月 인쇄, 반포하였다.⁴⁶⁾

續大典 卷首 敎書에 의하면 앞으로는 明律, 經國大典 및 續大典에 해당 條文이 없는 경우에만 法制定을 품의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지만, 續大典 반포 후에도 法을 실제 運用하는데 있어서 經國大典·續大典·國朝五禮儀·典錄通考 등으로 典章이 多岐하여 취급상 불편하므로, 이를 하나의 書冊으로 편집하자는 의견이 正祖 5年 2月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明律이나 典禮를 모두 大典속으로 통합하면 더욱 번잡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무튼 처음에는 承政院에서 총괄하여 여러 典章을 檢校하려 하였으나, 正祖 5年 8月 國王은 大小章典은 예조의 직무에 속하므로 예조참의 柳義養을 釐正 당상으로 예조正郎 李家煥을 郎廳으로 임명하여 자료 수집을 전담시켰다. 그후 『續五禮儀』, 『春官志』, 『秋官志』, 『國朝寶鑑』, 『文獻備考』 등의 增補, 校正에 매달려 大典의 찬집은 진척되지 않다가 正祖 8年 3月 國王은 纂輯 堂上 金魯鎮·嚴璠·鄭昌順·李時秀·金載瓚 등에게 法典 纂輯의 진척상황을 묻고, 新法典은 原·續·增으로 구별하여 載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찬집당상 등은 각자 연구하여 찬집청에 모여서 같이 의논한 후

44) 『備邊司謄錄』, 105冊, 영조 15년 7월 14일.

45) 典錄通考의 내용을 이루면서, 또한 續大典 편찬 자료였던 受敎輯錄도 보완을 거듭하여 영조 19년 新補受敎輯錄이란 이름으로 편찬하였다.

46) 『이조법전고』(앞의 책) pp.157~158.

총재인 三議政들에게 질의하고, 經國大典의 條文은 原字, 續大典의 그것은 續字, 新增의 것은 增字를 기록하여 併記하였다. 正祖 9年 2月 23日 國王은 '大典通編의 찬집은 考閱에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原, 續典의 合編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속대전 편찬 이후의 新增條文은 신중히 살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 특히 刑典이 그러하다. 또한 兵典이 가장 詳密하면서도 별로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 각조 판서와 고관들은 소관 사항을 逐條 審査하여 총재인 大臣들에게 보내고, 大臣들은 각자 의견을 붙쳐 보고하라'고 하였다. 正祖 9年 6月 『大典通編』의 印版을 시작 同年 9月 220部를 인쇄하였는데 모두 723條였다.⁴⁷⁾ 正祖實錄의 記事에 의하면 國王은 奉朝賀 金致仁 등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經國大典과 續大典 二典 및 古今의 受教를 取하여 한 책으로 통합하여 部目을 나누고 條目을 배열하되 일응 經國大典 元典을 준수하게 하여 原(경국대전), 續(속대전)과 增補(대전통편)로 표시하였고, 橫으로 보게 하던 것을 縱行으로 하여 條文을 증가 시켰는데 吏典이 212條, 戶典이 73條, 禮典이 101條, 兵典이 265條, 刑典이 60條, 工典이 12條 등 무릇 723條다.⁴⁸⁾

續大典과 大典通編의 제정 의의에 관해서는 卷首(책머리)에 있는 英祖의 勅書 및 正祖의 題辭와 두 책의 序文, 箋文 등에 나타나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正祖는 이해 9月 10日 仁政殿에 나가서 印本을 親受하여 文官과 蔭官에게는 正3品 堂上官인 通政大夫 이상, 武官은 從2品 이상을 지낸 者에게 頒賜하였다고 한다.⁴⁹⁾

47) 『이조법전고』(앞의 책) pp.161~170.

48) 『정조실록』 권20-28, 정조 9년 9월 丁巳.

49) 『이조법전고』(앞의 책) p.174.

5. 大典通編 編纂 後의 法規提要書의 發刊

18세기 후기의 조선왕조는 法으로서 政論을 통일하여 當쟁을 蕩平하고자 하였으므로 法의 연구가 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所期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刊行된 法典(大典通編)만으로는 불충분하였으며, 財政運用에 관한 規定, 大明律과 우리 法典의 관계조문 및 五禮儀, 志類 기타의 法典과의 關係사항 등을 명백히 하는 法規의 提要書가 必要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난 것이 『典律通補』와 『百憲摠要』이다.⁵⁰⁾

『典律通補』는 正祖 9年 11月 具允明이 撰進한 것으로서 同年 12月 大臣과 校正堂上, 戶曹 및 宣惠廳의 堂上 등의 質問과 訂正을 거쳐서 正祖 11年 2月 王의 批旨를 얻었으나, 釐正의 必要性이 있다는 備邊司의 주장으로 官版으로서의 刊行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朝鮮總督府 編纂의 『朝鮮圖書解題』에 의하면 正祖 9年 乙巳 大典通編 成立後 王命에 의하여 修正을 加해서 正祖 11年 丁未에 公刊되었다고 하였다.⁵¹⁾ 그러나 官版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筆寫本으로서 公布된 것으로 추정된다.⁵²⁾ 典律通補는 經國大典을 비롯하여 續大典, 大典通編 및 明律을 주로 수록하였고, 또한 五禮儀, 喪禮補編, 通文館志, 大典註解, 無冤錄, 決訟類聚 및 大典通編 편찬 후의 수교 등을 아울러 載錄하였다. 특히 典律通補의 別編에는 行政實務에 필요한 書式을 포함하고 있는데 外交文書의 書式에는 紙質, 길이, 每行의 字數, 文字의 書法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國勢를 明白하게 하는 民總에는 正祖 9年의 戶口數가 기록되어 있고, 軍總에는 平安道와 咸鏡道를 除外한 良役의 대상 총 인원수 및 그 徵稅數를 기록하였다. 또 田總에는 土地의 넓이(結數) 및 그 징세수를 기록하였고, 穀總에는 全國 倉庫에서 欸급하고 있는 還穀 및 儲置米의 數를 나타냈으며, 廐驛馬總에는 八道의 驛馬數 및 司僕寺의 馬數를 기재하고 있다. 기타 各道의 戰船의 數·土地의 量田法 등을 기록하였고, 또 城堞·八道의 途程·中原과 일본의 路程·工匠名色·籌法·商除(나눗셈)·斛作法·諸尺圖 등도 기록되어 있어서 실무에 편의를 제공하였다.⁵³⁾

50) 『위의 책』 pp.174~175.

51) 『朝鮮圖書解題』(朝鮮通信社, 1932) p.79.

52) 『李朝法典考』, pp.176~177.

53) 『위의 책』 pp.176~183.

『百憲摠要』는 大典通編의 편찬에 따른 副産物이었다. 이 책은 編纂者의 姓名, 年月日, 序文, 凡例 등의 기재가 없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편찬된 條項은 거의 法典內의 것이나 法典에 없는 수교도 있었다. 또 紀年, 王代, 陵園墓와 수교가 正祖 때까지 만으로 되어 있어 正祖 때의 法典編纂의 草案이라 볼 수도 있다. 백헌총요도 版行本이 없고 어느 것이나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백헌총요의 內容은 經國大典, 明律, 三錄(前後續錄과 受教輯錄), 典錄通考, 續大典, 기타 수교 등을 類別하여 通記하였고, 그 밑에 出典과 受教年月 등을 나타내었다.⁵⁴⁾

『萬機要覽』은 純祖 8年 5月 王命에 의하여 備邊司 有司堂上⁵⁵⁾ 沈象奎가 戶曹判書 徐榮輔와 協議하여 만든 책으로서, 財用編은 서영보가 담당하였고, 軍政編은 沈象奎가 주관하여 상세하게 조사해서 成冊하여 同王 8年 6月 20日에 王에게 進達하였다. 純祖實錄에 의하면 純祖 8年 5月 乙丑에 國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備邊司 有司堂上 沈象奎를 불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서울과 地方의 還穀 帳簿, 軍制·田結 등에 관한 요점을 골라서 분류하여 冊子를 만들어 오라. 그리고 환곡장부에는 減損分과 超過分 등의 名目, 軍制에는 分番納布 등의 節目, 田結에는 旱田, 水田 등의 多少를 상세히 기록하여 편람으로 함이 좋겠다.⁵⁶⁾

그리고 同王 8年 6月 20日에 만기요람의 財用編 草本 4권이 완성된 후 純祖와 徐榮輔 및 沈象奎 간에 반복되는 질문과 응답이 있었는데, 財用に 중점을 두고 編纂하였으며, 軍政도 財政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⁵⁷⁾ 같은 해 8月 1日에는 순조가 서영보와 심상규를 불러서 지난번에 올린

54) 『위의 책』 pp.184~189.

55) 『萬機要覽』 「軍政編」1. 備邊司에 의하면 備邊司는 명종 乙卯年에 설치하였는데, 時, 原任 議政이 겸직하는 都提調와 軍事를 아는 宰臣과 吏, 戶, 禮, 兵曹 判書가 겸하는 提調가 있는데, 有司堂上은 3인으로 提調 중에서 軍務를 아는 자를 뽑아서 임명한다.

56) 『순조실록』 권11-12. 순조 8년 5월 乙丑.

冊子(財用編 4卷)를 방금 읽어보았다는 것과 그 나머지 冊子(軍政編)는 언제 완성되며 몇卷이나 될 것인가를 물었다. 서영보가 대답하기를 지금 정서를 시작하였으며 권수는 10冊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거기 대하여 순조는 만기요람 諸篇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를 물었고, 서영보는 재용편에서는 經費의 出納之政, 군정 편에서는 戎務(兵事)의 節制之方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貢物篇에 관하여 서영보는 공물의 수효가 너무 많다고 하였고 심상규는 양역의 폐단과 均役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였으며, 여기 대하여 순조는 그 변통 방법을 물었다. 이어서 그들은 收取體制 全般(租庸調)과 군정 내지 병사문제에 관하여 토의하였다.⁵⁸⁾ 여하간 정치를 행함에는 財力이 가장 중요하지만 국가재정만을 생각하여 民力을 헤아리지 않고 苛斂誅求한다면 인심이 離散되고 반면 나라의 재력이 고갈되면 나라를 보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호조판서 서영보와 備邊司堂上 심상규가 主가 되어 재정, 군정의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편찬한 것이 만기요람이라 할 수 있다.⁵⁹⁾

6. 大典會通과 六典條例의 編纂

정조 9년 대전통편 반포 이후에 공포된 節目과 式例를 수집하여 법전화 하여야 할 것은 매년 纂輯堂上을 임명하여 大典通編補를 편찬하도록 하였으나, 정조 재위 시에는 간행을 하지 못하였다. 순조 2년 7월 정조 때 편찬하였던 審理錄 16권의 印刊을 명하였고, 동왕 8년에는 만기요람을 편찬하여 군정과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의 사정은 免稅地가 대상토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고 戶籍의 紊亂과 脫稅, 脫役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곡도 각지방 관리들의 冒用으로 매년 감소되었다. 한편 일반 서민들은 관리들의 수탈과 重稅, 重役, 重賦를 견디지 못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고, 그러한 모순의 누적으로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나서 중세 사회체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57) 『승정원일기』 1950冊 순조 8년 6월 20일.

58) 『순조실록』 권11-20, 순조 8년 8월 甲午朔.

59) 『이조법전고』(앞의 책) pp.191~198.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철종 14년에는 三政釐整廳을 설치하여 田制, 軍政 및 還穀 등 三政을 정리하여 新政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해 12월 철종이 서거하고 고종이 즉위하여 바로 관제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먼저 의정부를 강화하여 비변사를 흡수하는 등 국가최고정무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개혁은 본래 삼정이정청의 결의에 기초한 것이지만, 정치권 쇄신하는 데는 법전의 修明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종 2년 3월 16일 領議政 趙斗淳의 건의에 따라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이 해 9월 25일 편찬을 완료한 후 『大典會通』이란 이름으로 간행하였다.⁶⁰⁾

대전회통 편찬 때 보완된 條文은 冠頭에 補字를 기록하였는데,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및 補典을 아울러 한 부의 書冊으로 하여 이들 법전 전부를 회통하여 편성한 것이다. 편찬 지침은 卷首에 있는 凡例에 있으므로 重言을 피한다. 대전회통의 원본은 목판본으로서 大型 韓紙로 인쇄된 것이었다. 그후 고종 7년에 補刊되었는데 이때 慶尙監營에서도 開版 印出하였다. 이것을 嶺南版이라 하였다. 고종 23년에 형조 所用의 대전회통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경상도 監司에게 印出하여 上送할 것을 명하였으나, 판본이 불에 타버려서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改版 印出을 명하였다. 대전회통의 인출은 京版 2회, 嶺版 2회였다. 민간에서는 光武年間に 張燾가 편집한 新舊刑事法規大畧속에 大典會通을 合冊하여 융희 원년 8월에 假洋裝으로 출판하였고, 1913년에는 朝鮮古書刊行會에서 대전회통을 양장으로 편집하여 출판하였다. 그런데 대전회통은 옛날에는 시행되었으나 이미 死文化된 조문도 재록하여 실무에 임하는 관리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또한 대전회통의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실무자를 위한 例規集이 필요하여 纂輯 諸臣들로 하여금 6조 및 諸司의 현행사례들을 선집하여 재록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六典條例』라 하였는데 특히 법전상의 財政에 관한 규정은 난해한 곳이 많았으므로, 補助法令으로써 이들 細則과 慣例를 편집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영의정 조두순은 대전회통 반포후 고종 2년 12월 17일 육전조례의 찬집을 건의하여 國王(趙大妃)의 允許를

60) 환곡 999만여石의 자본으로 700여만石을 貸出 10%인 70여만石이의 取. 不時費用充當.

34 第1部 大典會通 解題

받았다. 六典條例는 2년간의 작업 끝에 고종 4년 5월 인쇄를 마치고 京外 各衙門에 나누어 주었다.⁶¹⁾

61) 『위의 책』 pp.208~209.

第2章 大典會通의 性格과 概要

1. 大典會通의 性格

조선왕조는 군주주권 국가였다. 비록 중국 天子의 冊封을 받은 임금인 통치하였으나, 책봉은 외교상의 형식적인 儀式일 뿐 대내외적으로 국가원수이며 주권자인 군주가 국가를 대표하였고, 군주의 권위 하에서 양반관료 집단이 통치권을 실제상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²⁾ 물론 관료들이 정무를 수행할 때에는 왕명에 의거하여야 하지만 왕명을 發하는 데는各司의 관료들로부터 啓聞 혹은 上疏가 있어야만 하였고 이것을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기타의 고관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한 후 그 議案을 국왕이 裁可하여 담당 관아에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만약 국왕이 이러한 관료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명령한 사항에 대해서는 執務機關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例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국왕은 諸臣의 稟議가 不可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再三 議政府에 내려서 再議, 三議에 부쳤다.⁶³⁾ 물론 국왕은 稟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유 없이 관료들의 건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三司를 비롯한 양반관료들의 계속적인 주장에 밀려 대개 국왕도 견딜 수 없게 된다. 특히 19세기 외척 정치 시대에는 외척인 집권 관료들의 뜻대로 통치권이 행사되고 국왕은 尸位에 불과하게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 시대의 법전이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반포된 왕명을 모은 책자이다. 이러한 왕명을 教旨라고 하며 왕명을 받은 관아에서는 이를 受教라고 하였다. 『大典會通』은 조선왕조의 종합적인 법전(수교집)으로서 周禮 이래의 동

62) 조선왕조를 군주전제정치체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태종 정권과 세조 정권 등 변혁기에 일부 그러한 요소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양반관료통치체제였다.

63) 조선총독부 중추원, 『大典會通』 解題 1939(이하 會通解題라 한다) p.15.

양적인 육전 분류체제를 취하여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의 구별이 없고, 다만 宮中과 府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또한 일반 백성에 대한 포고나 관리들에 대한 訓諭, 儀禮, 禁制 등도 일괄하여 규정하였고, 조종의 遺法(成憲)은 변경할 수 없다는 유교적인 도덕을 때문에 死文을 그대로 두었으며, 혹은 대외적인 체면을 중시하여 실행 불가능한 규정을 두는 등 名實이 不副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대전회통은 내용이 복잡하였지만 조선왕조 시대의 각종제도와 습관 등을 알아보는 데는 매우 긴요한 바가 있다. 요컨대 이 법전은 현대적인 법률 측면으로부터 본다면 일종의 행정법전이라 할 수도 있는데 관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編別은 周官의 경우와 같이 관청별로 나누어 그 事務分掌에 따라서 각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各典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⁶⁴⁾

2. 吏 典

吏典에는 東班(문반)관료의 조직과 그 운영 및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 국초에 이르기까지의 정부의 중심은 門下府와 都評議使司였다. 문하부는 百官의 庶政을 통괄하는 관서로서 領府事, 左右侍中, 侍郎贊成事(2품 이상) 등의, 宰臣이 있었고 諫諍·駁正·教旨·啓牋 등을 담당하는 左右諫議大夫, 直門下, 內史, 舍人(3품 이하) 등 郎舍가 있었다. 도평의사사는 判事(좌우시중이 겸임) 同判事⁶⁵⁾, 使(判中樞府事が 겸임), 副使⁶⁶⁾ 등의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가의 최고 정무는 이 도평의사사의 의결을 거쳐 문하부를 비롯한 六曹 및 기타의 官司에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도평의사사가 후일 議政府로 되었으며 의정부는 문하부까지 흡수 통합하였던 것이다. 三司(후일의 三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財政機關으로서 領三司事 判三司事 등의 관료가 있었다. 中樞院은 啓覆·出納·兵機·軍政·宿衛·警備 등의

64) 위의 『회통해제』 pp.24~25.

65) 同判事의 定員은 11명으로 門下府와 三司의 정2품 이상 官이 겸한다.

66) 副使의 정원은 15명으로 中樞使 이하 中樞學士 이상이 겸한다.

직무를 관장하였고, 判事·使·知事 등의 관원이 있었다. 이·병·호·형·예·공 등 6조의 직무는 대체로 경국대전 이후에 규정된 6조의 직무 그대로였으나 장, 차관의 명칭이 典書와 議郎으로 되어 있었다. 기타 藝文館, 春秋館은 敎命과 國史를 논의하는 학술기관으로서 監館事(시중 이상이 겸무)·大學士·知館事·學士·同知館事·編修官 등의 관원이 있었다.⁶⁷⁾

정종 2년 4월 도평의사사를 고쳐서 의정부로 하고 중추원을 義興三軍府라 하였다. 태종 원년 7월에는 문하부를 폐지하고 그 事務를 의정부로 이관하였으므로 의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졌다. 그리하여 태종 5년 정월 관제를 개혁, 의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6조로 이관하고 각조의 2인 장관인 典書(정 3품)의 직급을 올려 單數 장관인 判書(정 2품)로 개칭하였다.⁶⁸⁾ 같은 해 3월에는 6조의各司別 分掌事務를 정함과 동시에 대소 관서를 각조에 소속시켜 6조 중심 정무체제를 완비하였다.⁶⁹⁾ 그후 국왕이 각조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6曹 直啓制) 종래 재상 중심 정무체제(議政府 署事制)에서 군주 중심의 정무체제로 변화되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⁰⁾ 태종 8년 정월에는 좌의정 成石璘이 의정부의 일반 국무를 6조에 귀속시켜 정치의 중심을 6조로 옮길 것을 건의하였고,⁷¹⁾ 성석린 이외에 河崙도 의정부를 개혁하여 6조로 하여금 국사를 임금께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므로, 예조판서 僕眉壽로 하여금 선례를 참고하여 보고하도록 한 결과, 예조에서는 육조장관 합하에서 각조가 職事를 임금께 직접 보고하고 왕지를 직접 받아 施政할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의정부에서는 軍國 중대사가 있을 때에 회의하여 임금께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왕은 星山府院君 李稷, 호조판서 朴信, 總制 李玄 등과 먼저 의논하고, 다음으로 영의정 성석린, 좌정승 하륜, 우정승 南在, 贊成事 李叔蕃, 예조판서 설미수 등과 의논하여 모두의 찬성으로 이른바 6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⁷²⁾ 따라서 의정부의 권한 축소에 맞추어 관제도 개혁하여 영부

67) 『태조실록』, 권1-45 태조 원년 7월 丁未.

68) 『태종실록』 권9-2, 태조 5년 정월 壬子.

69) 『위의 책』 권9-5, 태종 5년 3월 丁酉.

70) 군주중심 정무체제는 태종정권과 세조정권의 특징이다.

71) 『태종실록』 권15-2, 태종 8년 정월 壬子.

사 1, 판부사 2, 동판부사 2, 속인 1을 두되 參贊 1, 知府事 2, 參知府事 2를 혁파하였고 檢詳條例司(법제처)를 혁파하여 예조에 병합하였다. 그러나 권한이 6조에 분산되다 보니 모든 일들이 適期에 품의 되거나 承命하지 못하여 많이 지체되었다고 한다.⁷²⁾ 그리하여 태종 18년에는 좌의정이 判吏禮兵曹事를 겸하도록 하였고, 우의정이 判戶刑工曹事를 겸하도록 하였다가 결국 세종대에는 의정부 署事制로 회귀하였다. 즉 동왕 18년에는 태조의 成憲대로 6조는 각각 일반 국무를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되 吏, 兵曹의 除授(관원임용) 및 병조의 用事 등과 형조의 사형 이외 刑獄에 관한 것은 해당 曹에서 임금께 직접 보고하여 시행하며 의정부에서는 사후 심사하도록 하였다.⁷³⁾ 의정부 서사제(大臣中心制)는 文宗, 端宗대까지 지속되었다가 世祖代에 이르러 다시 6조직계제(국왕중심제)로 바뀌고 士林政治가 난숙하던 중종 11년 6월에는 또다시 의정부서사제로 바뀌었다. 중종 28년경까지는 의정부서사제가 그대로 지속된 것 같으나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增補文獻備考에서는 의정부서사의 法이 復立되었다가 곧 혁파되었다고 하였고, 末松保和는 중종 11년에 부활된 의정부서사제가 후대로 계속되었다고 하였으며, 韓忠熙는 중종 29년경 6조직계제로 이행되었다고 하였다.⁷⁴⁾ 그러나 중종대에 설치된 備邊司가 점차 군무를 총괄하게 되고 나아가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최고 정무기관이 되었으므로, 의정부의 대신이든 6조의 卿宰이든 비변사의 합좌를 통해서만 주요정책결정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일반 서정은 의정부와 6조에서 각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관제와 관직은 세조 12년 정월에 개정된 후 큰 변동 없이 1876년 개항기를 맞게 되었다.⁷⁵⁾ 조선시대의 관직은 관료들의 入仕 경로에 따라 文蔭武 3班으로

72) 『태종실록』 권27-24, 태종 14년 4월 庚申.

73) 『태종실록』 권27-25 (위와 같은 연월일).

74) 『증보문헌비고』 권216-12, 13 「職官考」3 議政府條.

75) 위의 註 및 韓忠熙, 「朝鮮前期의 權力構造 研究」, 『國史館論叢』 30집(국사편찬위, 1991) pp.40~43.

76) 1876 丙子條約 체결후 외국과의 교섭이 빈번하여 의정부와 예조로서는 難局 處理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1880.12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고 總理大臣을 두어 영의정이 겸직하였으며, 甲午改革으로 1894 6. 28 4府 8衙門의 새로운 통치기구가 설치되었다.

나누었고, 직무내용에 따라 동(문), 서(무) 양반으로 나누었으며 근무지에 따라 京官과 外官으로 나누었다. 외관은 八道の 觀察使(무관은 병마, 수군절도사) 밑에 府使·牧使·郡守·縣令·縣監(武官은 節制使·僉節制使·同僉節制使·萬戶·節制都尉) 등 수령이 있었는데, 문관인 方伯과 수령은 당연직으로 무관직을 겸하여 專任 武職者인 무관 위에 군림하였다. 경관, 외관을 막론하고 문관들은 경서와 시문에는 능하였으나, 행정실무에 어둡고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재정과 軍務 등 업무 파악도 어려워 吏胥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그 자리를 지탱하기 어려운 처지였다.⁷⁷⁾ 양반관료와 이서의 중간에 위치한 품관으로서 醫·譯·律·象·算 등 전문기술관료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리 품계가 높아져도(堂上官이 되어도)⁷⁸⁾ 양반관료들로부터 下待 받았다.

임용된 관원은 근무 성적과 出仕 日數에 따라서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空席이 없을 때에는 官階만 올려 주고 遞兒職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다.⁷⁹⁾ 官階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 31資級으로 되어 있으며, 정3품 通政大夫(무관일 경우에는 折衝將軍)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고, 정3품 通訓大夫(무관은 禦侮將軍) 이하를 堂下官이라 하며, 당하관 중에서 종6품 宣務郎(무관은 秉節校尉) 이상을 參上官 또는 參內官이라 하고, 정7품 務功郎(무관은 迪順副尉)이하를 參下官 또는 參外官이라 한다.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직이 있는데,⁸⁰⁾ 이를 準職이라 한다. 국왕의 特旨가 없는 한 당하관이 준직을 거치지 않고 당상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 및 어모장군을 資窮이라 하는데, 조선후기 대다수의 관료들이 資窮으로 한평생을 마쳤던 것이다. 그리고 參上官이 되어야 수령 등 책임있는 보직을 받을 수가 있다.

77) 李瀼『星湖僿說』 권10 pp.49~50 人事門 胥徒褒貶.

78) 醫, 譯官 중에는 장관급인 2품 이상 품계까지 오른 자도 상당히 많다(例, 光海君 때 許浚과 肅宗 때 張炫 등은 1품).

79) 체아직은 祿俸만 있고 職事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다. 특수한 임무(암행어사 등)를 위하여 체아직(司果, 司正 등)을 주는 경우도 있다(해설편 참조).

80) 『성종실록』 권62-12 성종 6년 12월 壬寅 “傳旨吏兵曹曰, 大典文班則 承文院判校, 奉常寺正, 通禮院左右通禮, 仕滿例陞堂上官而武班則獨無陞堂上之路, 今後右通禮, 陞爲左通禮, 仕滿後陞堂上官, 訓練院正仕滿, 亦許陞堂上官, 永爲恆式”.

조선왕조 시대는 신분사회였으므로 아무리 근무 성적이 좋고 장기 근속하였더라도 신분상에 하자가 있으면 승진이 제한된다. 이를 限品敍用이라 하는데, 첩의 자손과 독직관리(賊吏)의 아들 및 손자 등은 淸顯의 관직임용이 배제되고 승진에도 제한이 있었다.⁸¹⁾ 또 相避制度가 있어서 근친관계에 있는 자가 同一官衙 또는 상호관련이 있는 관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하였다. 또 재정을 맡았던 관리는 解由法의 적용으로 轉任 때에, 재직 중 취급하였던 재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解由狀(責任解除證明書)이 있어야만 他職에 취임할 수 있었다.

관료를 임용하는 데는 임명장(告身)을 주었다. 4품 이상의 임명장은 국왕의 명의로 된 教旨(官教)로서 「施命之寶」라는 國璽를 찍었다. 그리고 5품 이하의 임명장은 奉教(왕지를 받들어 임명)로 되어 있고 문관의 경우에는 「吏曹之印」, 무관의 경우에는 「兵曹之印」이란 도장을 찍었다.⁸²⁾

관료를 임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科擧 이외 특별전형시험인 取才와 숨은 인재를 발탁하는 薦擧제도가 있었고, 또 父祖의 음덕으로 관원이 되는 蔭敍제도가 있었다. 취재는 공신 및 2품 이상의 子·孫·壻·弟·姪과 實職 3품의 자, 손 및 기타 淸要職인 者의 子 등에게 講, 製述 등 간단한 시험으로 등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수령이나 外敎官, 驛丞, 渡丞 및 錄事, 書吏 등을 특별 임용할 때에도 취재를 행하였다. 그리고 천거는 京外 東西班 3품 이상인 자에게 매 3년 春孟月에 각각 3인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만약 천거된 자가 臧汚, 敗常 등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추천한 사람도 같이 처벌되었다. 또 5품 이하의 일정한 관원을 임명할 때에는 사헌부에서 內外 4祖와 본인에게 흠결이 없는 지를 조사하여 署經을 해주어야만 하였다. 각도 都事 및 수령은 초임인 경우 비록 4품 이상인 자라도 署經이 있어야만 하였다.

81) 이러한 억제조치는 18세기말을 과도기로 하여 19세기에 이르면 많이 완화되어 19세기 후기에는 법적으로는 거의 差待가 解消된다. 자세한 것은 李鍾日, 「18, 19 세기의 서얼소통운동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58집, 1987.

82) 임명장의 형식은 禮典에 규정되고 있다.

3. 戶 典

호전에는 各官衙의 經費, 戶籍, 土地制度, 祿科, 家宅, 農蠶, 倉庫, 會計, 解由, 魚塩, 稅貢, 漕運, 徭賦, 備荒, 徵債, 進獻 기타 재정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각관아는 재정경제상으로는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으로 이를 운영하였는데, 국가로부터 分給된 稅源으로부터 스스로 징수하여 지출하였던 것이다. 收支상황을 일정한 簿冊에 등재하여 그 품목, 수량을 종횡의 패선 위에 列記하였으므로 橫看이라 하였다. 그 당시의 수입, 지출예산은 一年主義가 아니었고 豫算表에 해당하는 부책은 이를 매년 계속 사용하였다. 貢案도 각아문에서 사용하는 공물의 품목, 수량을 기재한 부책이다. 각 관아의 경비는 횡간과 공간으로서 징수, 지출되었으나 후일 貢物 징수에 폐단이 생겼으므로 大同法을 만들어 現物 收納 대신 토지에 과세하여 그 수입으로서 現물을 매입하였다. 대동법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또 영조 25년에는 度支定例를 만들어 經費 사용의 품목, 수량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토지상의 생산물 이외에 人丁의 役務도 주요한 收取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人丁 파악에 역점을 두었다. 人丁은 또한 국방력의 기초인 병력 자원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국초부터 戶口 搜括정책을 펼쳐서 호적의 정비에 온 국력을 쏟았던 것이다.⁸³⁾ 그리고 경국대전을 비롯한 여러 법전에서도 호전에 戶籍條를 두어서 매 3년마다 인구를 조사하여 戶籍簿를 작성, 호조와 한성부 또는 각감영 그리고 각 고을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호적은 5戶를 1統으로 하였고, 통에는 統首(統主)를 두었으며, 법제상으로는 5통이 1리로 되어 있으나 보통은 10수 개 통을 1리로 하여⁸⁴⁾ 리에 里正을 두었다. 또 몇 개 리 내지 십 수 개 리가 모여서 면이 되었으며, 면에는 面任 및 勸農官이 있었다. 그리고 몇 개 면 내지 수십개 면으로서 州府郡縣을 이루었는데 중앙정부에서 5년 임기로 임명된

83) 李鍾日, 「조선전기의 戶口, 家族, 財産相續制 研究」, 『國史館論叢』 14집, 1990 pp.1~37 및 李樹健, 「조선초기 戶口 研究」, 『한국사논문선집』, 조선전기편, 일조각, 1983.

84) 현존하는 조선후기의 여러 곳의 호적대장을 살펴보면 1統은 거의 5戶로 되었으나 1리는 십수개 統으로 된 경우가 많았다.

수령이 관내 행정, 군무, 교육, 사법, 세무 등 제반 권한을 행사하였다.⁸⁵⁾ 호적 부에는 戶主의 신분과 성명, 나이, 본관, 호주의 부, 조, 증조, 외조의 신분 성명, 외조의 本貫, 모 및 처의 姓貫과 나이, 처의 부, 조, 증조, 외조의 신분과 성명 그리고 妻外祖의 本貫 등이 기록되어 있다. 기타 자녀를 포함한 동거 가족(형제, 자매, 조모, 조카, 孫 등)의 신분과 성명, 나이 등도 기록되어 있고, 노비가 있을 경우에는 노비의 이름과 나이도 기록되어 있다. 1663년도 서울 北部 戶籍을 살펴보면 양반 戶는 玄天, (양반들은 모두 노비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顯만으로 표시된 경우는 없다) 常民戶의 경우에는 作 또는 作賤(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천민호의 경우에는 賤으로 표시되어 있다.⁸⁶⁾ 기타의 현존 조선시대의 호적에는 그러한 顯作賤의 표시가 없으나, 호주의 職役이 幼學, 生員, 進士 또는 官人이고 처 또는 모의 姓 다음에 氏를 쓰고 본관을 籍이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일응 양반 호로 추정되며, 호주의 신분이 기술적이거나 吏胥이고 그 부녀자의 성을 金姓, 李姓 등으로 기재하였으면 中人戶로 볼 수 있다. 또 호주의 직역이 正兵, 保人 등으로 기록되고 부녀자를 金召史, 李召史로 기록하였으면 常民戶로 볼 수 있다. 賤人戶에는 노비라는 표시가 있고 소유주까지 명시되어 있다.⁸⁷⁾ 이와 같이 호적은 나라의 중요한 公簿였으므로 만약 호구 조사 때 漏戶, 隱丁을 하거나 나이를 증감시킨다든지 신분직역을 속이는 일들이 발각될 때에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호구조사를 담당하였던 관원에 이르기까지 엄중히 처벌하였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고려의 田柴科체제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 고려 후기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강자는 약자의 땅을 兼併하고 국공유지를 사유지처럼 分占, 상속시켜 결국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私田이 광역화하였으며 경작 농민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⁸⁸⁾ 그리하여 고려말에는 토지제도의 개혁론이 대두되어

85) 『경국대전』 권1 吏典 外官職條에 의하면 관찰사의 임기는 360일이고 수령의 임기는 1800일이다. 다만 堂上守丞과 가족을 帶同하지 않은 수령의 임기는 900일이다. 그러나 실제상 수령의 임기는 준수되지 않았다.

86)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北部帳 戶籍.

87) 18세기 이후의 호적에는 常民과 賤民이 신분상으로 거의 혼효되어 있고(예를 든다면 夫가 良人이나 妻가 婢인 경우 등) 官人 중에서도 처의 신분 표시가 金姓 또는 李召史로 되어 있어, 관인이라 하여 모두가 양반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科田法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⁸⁹⁾ 조선국초에서는 麗末의 토지개혁론자가 그대로 실세로서 정무에 참여하였으므로 麗末의 과전법이 대체로 승계되었다. 과전법은 토지국유제를 전제로 하여 前現職 관료 및 기타 일정한 사람들에게 收租權을 부여한 것인데, 세조 12년에 職田法으로 바꾸어 현직관료들에게 한하여 科田(수조권)을 주었으므로, 관료들은 퇴직 후를 걱정하여 在職 중 심한 收奪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종 3년 官收官給制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職田稅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토지국유제의 再確立을 도모한 것이었다.⁹⁰⁾ 그러나 양반관료들의 수조지는 전국 각처에 널리 분포되고 있었으며 그 양도 매우 많았다.⁹¹⁾ 그리고 직전제(직전세)도 성종14·15년경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일시 정지되거나 감액되기도 하였고, 명종 11년경에 이르러 그것이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공사전의 구별이나 租와 稅의 구별도 애매하여지고 토지의 사적 占有와 竝作半收의 관행만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⁹²⁾

토지는 그 用途, 肥瘠 등에 따라서 田畝, 垆 등으로 나누고 다시 常耕田(正田), 續耕田, 加耕田, 火田, 陳田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토지를 측량하여 量案(土地臺帳)에 등록하였다. 이 양안은 또한 田案, 導行冊, 鐵券臺帳이라고도 하여 地目, 地番, 地形, 面積, 結負, 境界, 起主名 등을 기록하여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⁹³⁾

88) 『고려사』 권78-1, 「志」, 32, 食貨 1.

89) 『위의 책』, 권78-38, 「志」, 32, 食貨 1, 공양왕 3년 5월.

90) 收租權(上級所有權)을 近代的인 私的所有權이라 하기는 어렵고, 科田이 公田이나 私田이나 하는 점에 논의가 있으나 科田法下에서였건 職田法下에서였건 토지에 예속된 농민들은 자기 땅이란 의식하에서 대대로 경작하여 왔는데, 이들 民田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耕作權 또는 使用收益權이라 하기 보다는 중세 게르만(German) 法上의 下級所有權과 비슷한 것인지 모르겠다.

91) 『세조실록』 권7-17, 세조 3년 3월 丙戌에서는 端宗朝의 節臣들이 갖고있던 많은 토지를 빼앗아 소위 功臣들에게 재분배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로 미루어 同一人의 땅이 各道各郡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2) 李載堧, 「田制」, 『韓國史』 10(국사편찬위원회) pp.223~252에서는 公私田의 구별 및 租와 稅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93) 앞의 『회통해제』 p.39.

조선 국초에는 서울과 개성에 있어서 문무양반 및 서민에 대하여 각 계급에 따라 宅地를 급여하였고, 고려이래 폐단이 심하였던 屯田을 폐지하였으며 墓地의 限度를 정하였고 토지를 측량하였다. 태종 때에도 전국 토지를 측량하였지만 세종 25년에는 토지개량과 동시에 田制詳定所를 두고 토지 등급을 조사하여 田分 6等制와 隨等異尺制를 만들었다.⁹⁴⁾ 전답의 측량단위에 관하여 조선전기에서는 곡물 수확량을 전제로 하는 結負束把制를 취하였으나,⁹⁵⁾ 조선중기 이후에는 곡물의 씨앗의 파종 면적을 뜻하는 斗落(石落, 升落)制를 취하였다.⁹⁶⁾ 이것은 16세기 중엽 이후에는 토지의 생산물 보다는 토지 그 자체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모든 토지 소유권이 국왕에게 있다는 王土思想에서 토지 사유제의 보편화로 땅 넓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제 땅넓이 보다는 수확량을 맞추기 위한 수등이척제도 인조 12년, 3남 지방을 量田할 때부터 폐지하고 1等田尺으로 통일하였던 것이다.⁹⁷⁾

대전회통(경국대전 및 속대전) 호전에 의하면 국왕의 親耕地인 籍田과 國官有地인 諸田에 관한 규정이 있다. 籍田은 民田으로서 경작 농민에게는 貢賦 이외의 잡역 및 요역을 감면하여 주었다. 제전 중에는 官屯田, 馬田, 院田, 津夫田, 氷夫田, 守陵軍田 등 自耕 無稅地가 있고 國行水陸田, 祭享供上諸司菜田, 內需司田, 惠民署種藥田 등도 無稅地로서 경작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생산물을 해당 官司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寺田, 衙祿田, 公須田, 渡田, 崇義殿田, 水夫田, 長田, 副長田, 急走田 등에서는 그 땅의 관리자가 각자 收稅하여 사용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官房田과 軍屯田 및 衙門田이 신설되었는데 군둔전과 아문전은 國營地였고 궁방전은 各官家의 莊園이었다. 여기에는 免稅地와 有稅地의 2종이 있

94) 『위의 책』, p.40.

95) 『경국대전』 戶典 量田註에 1平方尺이 1把, 10파가 1束, 10속을 1負, 100부가 1結이라 하였으나, 1等 田尺은 약 0.99m, 2등 전척은 약 1.07m, 3등 전척은 약 1.18m, 4등 전척은 약 1.33m, 5등 전척은 약 1.56m, 6등 전척은 약 1.98m 등으로 차등을 두어 결국 수확량에 맞추어 자(尺)의 길이를 정하였다(周尺 1尺을 0.207m로 환산).

96) 이종일, 「조선전기의 호구, 가족, 재산상속제 연구」 『앞의 논문』 pp.66~74.

97) 『續大典』, 권2 「戶典」 量田.

었다. 궁방전 및 아문전의 면세지에도 1결당 23斗 이내의 稅米를 수세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田稅, 대동미 및 부가세 등을 합한 액수이다.⁹⁸⁾ 또 功臣 賜牌 田은 공신들의 奉祀孫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땅이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私田化하여 임의로 처분되고 있었다고 하겠다.⁹⁹⁾

토지는 법규로 금지된 곳 이외에는 누구도 開墾할 수 있으며, 그 개간자에게 개간지를 사용, 收益할 수 있게 하였다. 지주가 땅을 방치하여 荒地로 된 땅, 즉 陳田에 대해서도 개간을 청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허가하였다. 또 空地와 田圃에는 누구나 집을 지을 수가 있었지만 垞地 넓이는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최고 30負, 최하 2負)¹⁰⁰⁾ 조선국초 科田分給 시기에는 토지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세종 때부터 부모의 喪葬, 宿債收贖, 自存不能의 경우에는 토지의 매매를 허용하였다. 토지 매매 시에는 반드시 관에 출원하여 등록세 및 납세자 변경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 移轉登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속대전 시행 후에는 토지의 경작인 내지 점유자에게 증점을 두어서 그들을 起主라 하여 移轉登記와 같은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문건의 引渡와 토지의 점유 및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바로 매매가 성립되었다. 그 후 고종 30년에 이르러 토지매매에는 查證, 認證 등 登記와도 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¹⁰¹⁾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토지소유권은 상급소유권자(수조권자)와 하급소유권자(起主, 즉 경작인 및 점유자)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매매 당사자가 노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¹⁰²⁾ 分財記에도 거의 경작인의 표시가 있었으므로,¹⁰³⁾ 起主(경작인 및 점유자)를 단순히 소작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租稅制度도 고려의 그것을 계승하였고, 멀리 당대의 租庸調제도에 그

98) 『경국대전』 및 『속대전』 권2 戶典, 諸田, 註 및 앞의 『회통해제』, pp.41~42.

99) 宗土化하였을 때에는 宗中決議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나, 실제상 宗孫임의로 처분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100) 『경국대전』 및 『대전통편』 권2 戶典 給造家地.

101) 앞의 『회통해제』, pp.42~43.

102) 『朝鮮社會史資料』2, (公州)하, (국사편찬위원회, 1991) pp.1168~1266.

103) 註 96.

연원을 두었다고 하겠다. 즉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와 丁男의 賦役(庸) 및 戶別로 供出하게 하는 各地의 토산품인 貢物(調)등이 그것이다. 田稅는 세종 25년 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量田尺을 만들어 토지측량을 한 후 田品 6등 과 年分 9등으로 나누어 세율을 정하여 上上년에는 1등전의 세율을 1결당 30斗로 하고, 年分과 田品에 응하여 점차 減輕시켜서 6등전 下下년에는 1斗5升을 납부하도록 하였다.¹⁰⁴⁾

수령은 매년 9월 15일 전에 그 해의 풍흉을 심사하여 등급을 나누어서 觀察使에게 보고하였고, 관찰사는 이를 다시 심사하여 국왕에게 啓聞하였다. 監司의 上啓에 따라 의정부와 6조가 합의하여 稅額을 결정하였는데, 감세 혹은 면세는 경작자의 신고에 의하여 권농관, 수령, 관찰사가 이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호조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재조사한 후 감면을 결정하되 만약 허위 보고한 자가 있으면 처벌하였다.¹⁰⁵⁾ 그러나 田分6等, 年分9等の 田稅法은 실제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으므로 인조 13년부터는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1結당 米4斗로 고정하였다(永定法).¹⁰⁶⁾

그 후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전시대책으로서 三手米法을 만들어 전 1결에 미 2斗2升을 거두었는데 그 후 이것이 항구적인 地稅가 되었다. 光海君즉위년에는 공물 징수의 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으므로 대동법을 만들어 貢納制를 폐지하고 그 대신 稅米를 토지에다 부과하였다. 먼저 1608년 경기도에 宣惠廳 지청(경기청)을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1624년에 강원도, 1652년에 충청도, 1657년에 전라도, 1677년에 경상도, 1708년에 황해도에 각 선혜청 지청을 설치하여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도 他道에 준하여 공물의 價額과 民役을 감안하여 전 1結當 米12斗를 과세하였다. 영조 20년에는 坊役事目を 공포하여 結役價를 정하여 토지에 과세하여 1결당 미3두로 하여 民役을 대신하게 하였다. 동왕 26년에는 均役廳을 설치(영조 29년에는 선혜청에 합병)하여 다음해부터 良布 1匹을 減하고 부족분을 토지에 과세하여 1결에 錢 50文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結錢이라고 한다. 고종 3년에는 海邊防備를 위하여 砲糧米

104) 유원동, 「국가재정」,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0).

105) 앞의 『회통해제』 pp.43~44.

106) 유원동, 「국가재정」, 『앞의 글』 p.483.

를 신설하여 이것을 토지에 부과하였는데, 1결당 미 1두를 징수하였다. 稅米에는 여러 가지 名目の 附加稅가 있어서 그 부담이 날로 커졌다. 이들 地稅중 田稅는 호조가 관할하여 각사에 충당한 후 餘米가 있으면 軍資監에 납입하였다. 또 대동미는 각지방관의 수요액을 각 고을에 留置하였고, 서울 각사의 공물값의 年間 수요액을 선혜청에서 계산하여 액수를 정하여 각도에 할당, 米豆 및 錢을 선혜청에서 거두어 이를 貢人에게 지급하여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 餘米는 각지에 비축하였다.¹⁰⁷⁾

관료들의 奉公에 대한 反對給付로서 조선초기에는 과전법에 의하여 토지를 품계에 따라 나누어주었으나, 세종 때는 관료들에게 祿俸을 주도록 하고 매년 1년을 4季로 구분하여 각계절 初에 3개월 분의 祿을 주었으나 숙종때 이르러 월급제로 하여 매월 25일부터 29일 간에 다음달 분의 녹봉을 지급하였다.¹⁰⁸⁾ 문무관료들의 봉급은 이조와 병조의 요청에 따라 호조의 명령으로 廣興倉에서 지급하였고, 內官의 급료는 內侍府의 통고에 의하여 호조의 명령으로 豐儲倉에서 지급하였으며, 掖庭署 소속 關內外 각 아문의 將校, 吏隸, 工匠 및 잡직의 급료는 호조의 명령으로 군자감에서 지급하였다. 어느 경우나 보수 지급의 총책임은 호조에 있었으므로, 호조에서는 各倉監에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충분히 精査하였던 것이다. 지방관의 봉급은 대중소간의 4등으로 나누어 대동법 실시 후에는 대동미로서 지급하였다. 물품의 지출은 호조에서 발하는 지급명령 이외에 승정원의 承傳帖印을 검사하여 감찰이 담당하였는데 그 출납시에는 해당 관원과 감찰이 각각 그 文書 및 封庫에 직함을 쓰고 서명날인하였던 것이다.¹⁰⁹⁾

조선시대의 通貨는 태종 때 楮貨(지폐)를 만들어 布와 병행하여 통용하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은 저화를 싫어 하여 여전히 布, 米로서 교환수단을 삼았다. 그 후 인조때 동전을 주조하여 常平通寶라 하였으나 잘 통용되지 않았다. 그 후 숙종 4년에 다시 상평통보를 주조하여 무명베와 아울러 통용하였다. 이때 주조된 엽전(상평통보)의 화폐가치는 그 400文이 銀 1양에 해당하였다.¹¹⁰⁾ 상평통보

107) 앞의 『회통해제』 pp.44~45.

108) 『위의 책』, p.46.

109) 『위의 책』, pp.46~47.

110)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정월 乙未.

의 전국적인 유통은 그로부터 약 20년 후인 18세기초였음은 현존 여러 고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111)

公私의 債務는 본인이 사망하여도 처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이를 징수할 수가 있었다. 債權은 證人과 증서작성자가 있는 문건이 있으면 징수를 허용하였는데 그 출소기한은 1년간이었다. 채권의 이자는 연 2분을 초과할 수가 없었고, 10년을 지나도 1년분의 이자 이상을 징수할 수가 없었다. 사채를 징수하는 자가 토지를 代償으로 하거나 채무자의 처를 강제로 노비로 삼으면 죄가 된다.112)

商人 중에는 점포를 갖고 물건을 파는 坐賈와 각 시장을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行商의 2종이 있었다. 좌고는 서울과 함경도의 6鎮에만 있었고 기타 지방에는 없었다. 서울의 좌고에게는 官에서 점포를 만들어 빌려주었으며, 상인들은 그 대가로 궁중과 여러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의 조달 의무를 부담하였고,113) 6진에서는 국경 밖의 野人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점포를 개설하여 무역을 허가하였다. 행상은 陸商과 水商이 있었으며 육상은 路引稅를 납부하였고 수상은 船稅를 납부하였다. 工匠 및 巫女도 역시 公簿에 등록하여 세를 받았다. 기타 板商은 호조와 歸厚署에 세를 바쳤고 蔘商도 인삼을 수출할 때 납세하였다.114)

조선국초 軍糧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도에 軍田을 두고 軍자창을 설치하여 곡물을 저장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곡물을 오랫동안 창고에 두면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쌀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또 농민은 흉년을 만나면 다음 해 봄까지 매우 궁하였으므로, 軍자창에 저장하였던 곡물을 이들 농민에게 대출하여 가을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창고의 곡식은 새것으로 바뀌어지고 농민들의 춘궁을 救할 수 있었다. 이것을 還穀 또는 還上이라 하였다. 이자(耗)는 처음에는 쥐, 새, 습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목적으로 1石당 1두 5승으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이자가 국가의 財源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각군에서는 창고를 설치하여 환곡에 필요한 기본적인 곡식을

111) 李鍾日, 「公州鄉校文書解題」, 『조선사회사자료』 2, 公州 下 (앞의 책) pp.1381 ~ 1388.

112) 앞의 『회통해제』 pp.48~49.

113) 유원동, 「상업」, 『한국사』 10, (앞의 책) p.292에 의하면 조달 물품의 대가로서 나라에서는 극히 명목상의 米布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114) 앞의 『회통해제』 p.49.

分置하고 이를 대출하여 그 이자으로써 不時的 경비와 새 사업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환곡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겼다. 또 물가조절을 위하여 常平倉을 설치해서 布와 곡물을 갖추어 곡가가 오르면 포의 값을 올려서 곡식과 바꾸었고 곡가가 내려가면 포의 값을 내려서 팔아 물가를 조절하였다. 115)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 이래로 漕運에 편리한 지방에 창고를 두고 稅穀을 이곳에 모아서 서울로 수송하였다. 116) 漕運時에는 各倉의 관원이 漕船을 감독하였고, 各軍현 監官 및 담당자가 배를 같이 탔으며, 30척을 한 組로 하여 순서대로 列을 지어 發船하였다. 전라도 元山과 충청도 安興 以南의 漕船은 원산과 안흥에서 점검을 받았고, 또 어느 漕船도 한강에 이르면 戶曹 堂上官의 점검을 받았다. 漕運船이 難破되면 해당 지방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가서 救助하여 피해 곡물을 건조시키고, 손해의 정도를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 이때에 낚은 배에 곡식을 실어 破船하게 한 자와 곡식을 훔친 자 및 곡식에 물이 들어가게 한 자는 처형하였고, 50척 이상의 배를 무사히 운송하게 한 押領者는 포상하였다. 117)

漁場과 鹽田은 조선국초부터 官有로 하여 호조 및 소재지 道와 州府郡縣의 公簿에 등록하여 私占을 금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 빈민에게는 어장에서의 고기잡이를 허용하고 잡은 물고기는 進上하는 것 이외에는 곡식과 바꾸어 먹도록 하였다. 염전은 國營으로 하여 서울에서 먼 곳에서는 염창을 설치하였고 만들어진 소금은 곡식과 바꾸어 軍資에 충당하였다. 인조대 및 숙종대 이후 물고기, 소금, 선박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영조 26년 均역청을 설치하여 良布를 半減할 때 물고기, 소금, 선박의 삼세를 均역청에 이관하여 減布의 부족 분으로 충당하였다. 118)

115) 『위의 책』 pp.49~51.

116) 金昌洙, 「交通과 運輸」, 『한국사』 10, (앞의 책) pp.463~469.

117) 앞의 『회통해제』 pp.51~52.

118) 『위의 책』 p.52.

4. 禮 典

예전은 科擧, 敎育, 의례, 혼인 및 친족, 상속, 獎勵, 頒水, 惠恤, 雅俗樂, 度僧, 公文書式 등을 규정한 법전이다.

1) 科擧 : 과거에는 관원 임용시험으로서 文科, 武科, 雜科가 있는데 무과에 관한 사항은 兵典에 규정하고 있으며, 문과와 잡과에 관한 것과 문과의 전 단계로서 일종의 자격시험인 生員, 進士시험에 관한 사항은 禮典에 규정하고 있다. 잡과에는 譯科, 醫科, 陰陽科, 律科가 있으며 전문 기술관(中人)의 임용시험이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至上으로 삼았던 文官 통치사회였으므로 문과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그 예비시험 내지 선비로서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生員, 進士시험도 중요시하였지만, 이를 小科라 하였고 문관임용 시험인 문과를 大科라 하였다.¹¹⁹⁾ 문과는 매 3년(子, 卯, 午, 酉年)마다 정기로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式年 大比라 하였다. 式年試 이외에도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增廣試, 庭試 등을 실시하였고, 또 임시로 시행하는 別試, 謁聖試, 春塘臺試 기타가 있었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문무과, 生員進士試 및 잡과를 함께 시행하였고 기타의 임시 시험에는 문, 무과만 시행하였다. 式年 문과시험에 있어서는 수험인원과 급제자수를 미리 정하여 初試, 覆試, 殿試의 3단계로 나누어 製述과 經書를 시험하였는데 초시는 이조, 복시는 예조, 전시는 승정원 소관으로 시행하였다. 전시는 합격자의 등수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복시에 합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及第者가 되었던 것이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거의 같은 수의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나 기타의 임시적인 문과 시험의 급제자는 몇 명 되지 않았으며, 詩, 賦, 表, 策 등 시험방법은 대략 식년시와 같았다. 生進試는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시험과목은 生員시에 있어서는 經書의 疑와 義였으며 進士試에 있어서는 詩賦였다. 陞

119) 生員, 進士試에 관하여 다음 論文이 있다.

宋俊浩, 「李朝 生員, 進士試의 研究」(연구보고서, 1969)

曹佐鎬, 「李朝司馬試考」, 『成大論文集』14, 16집(1969, 1971)

李鍾日, 「朝鮮後期の 司馬榜目分析」, 『法學史研究』11호(1990)

文科에 관해서는 宋俊浩, 「朝鮮時代の 文科에 관한 研究」(연구보고서, 1975)가 있다.

補, 4學合製, 公都會 등 특별시험에 합격하면 소과 초시 합격과 같이 취급되어 바로 복시 응시가 가능하였고, 또 名賢의 자손이나 기타 특별한 고급관료의 자손들에게는 초시 합격만으로 생원, 진사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19세기 후기에 이르면 世子와 同甲(甲戌生)이란 이유만으로 특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¹²⁰⁾ 문과 시험은 때로는 승진 시험을 겸하기도 하였는데,¹²¹⁾ 특히 현직 문관만을 상대로 시험을 보여 參上官 내지 堂上官으로 특진시키기도 하였다. 이를 文科重試라 한다. 잡과에도 초시와 복시가 있었으며 기술직 및 행정직의 특별임용 시험인 取才(試)도 있었다.

2) 儀章·服制 : 의장, 복제는 官等과 身分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모양과 색깔이 품계에 따라 달랐다. 喪服은 친족의 遠近에 따라 3년(만2년), 期年(만1년), 大功(9개월), 小功(5개월), 시마(3개월)로 나뉘어 입었다.

3) 事大·交隣 :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비록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바치는 불평등 외교를 행하였으며 반대로 倭人과 女眞人으로부터는 進上品을 받고 回賜品을 주었다. 전자를 사대, 후자를 교린이라 하였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상품에 상당하는 양의 물품을 回賜品이라는 이름으로 받아 왔으므로, 실제상은 국제무역과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공적인 무역 이외에도 봄, 가을 두번씩 中江, 義州, 會寧, 慶源에 무역시장을 열어서 私人간의 교역도 허용하였다. 일본과는 부산포, 제포, 염포등지에서 교역하였다.¹²²⁾

120) 李鍾日, 「조선후기의 司馬榜目 분석」, 『앞의 글』 pp.32~40.

121) 文科, 甲科의 장원 급제자는 중6품, 차석(榜眼)과 삼석(探花郎)급제자는 정7품, 乙科 급제자는 정8품, 丙科 급제자는 정9품으로 임명하였으며, 이미 官階를 갖고 있는 자의 경우 장원은 4階, 차석, 삼석인 갑과급제자는 3계, 정3품당하관은 당상관, 을과급제자는 2계, 병과급제자는 1계씩 각각 승진시켰다. 또 문과급제자(을·병과)의 출생 신분에 따라 뚜렷한 양반집 자제는 승문원(피원), 향반은 성균관(국자), 서얼은 교서관(운각)에 분관하였다.

122) 李鉉淙, 「對明關係, 倭人關係, 女眞關係」,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pp.298~447.

4) 祭禮·奉祀 : 제례에는 매년 宗廟를 비롯한 社稷, 各壇, 殿陵, 名川 등의 제사와 祈雨祭, 祈雪祭, 祀告祭, 奉常寺祭, 國祖 檀君祭, 箕子祭, 高麗太祖祭 기타 제사가 있었다.¹²³⁾ 또 陵寢과 壇所의 奉審에 관하여 관할 관찰사로 하여금 韃遜여부와 잡목, 잡초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수리하도록 하였다. 陵役에는 犯葬, 개간, 경작 등을 금지하였고 범법자는 물론 해당 관찰사와 수령까지 처벌하였다.¹²⁴⁾

종묘의 각실과 왕비의 부모에 대해서는 忌日과 四仲月의 俗節에 祭官 및 奠物을 보내서 제사하였고, 문, 무, 음관 2품 이상인 實職者에 대해서도 사람을 보내서 弔祭하게 하였다.¹²⁵⁾ 家庭에 있어서의 奉祀는 문무 6품관 이상은 3대, 7품관 이하는 2대, 庶人은 부모만을 제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조선후기 하대로 내려올수록 奉祀 代數가 올라가서 일반 士庶人에 이르기까지 4대 奉祀하는 집이 늘어났다. 제사는 17세기 중엽 이후 嫡長子가 서로 이어서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적장자가 없을 때에는 衆子가, 중자 조차도 없을 때에는 妾子가 봉사하였으며, 적첩자 모두가 없을 때에만 관에 보고하여 同宗의 조카뻘 되는 사람을 양자로 하여 선조의 奉祀者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말 이후에 이르면 그러한 법규정을 무시하고 친자가 있는데도 서출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문에서 양자를 세워 봉사자로 삼아 재산을 상속시켰으므로, 곳곳에서 분쟁이 代를 이어가며 지속되었다.¹²⁶⁾ 양자는 동성동본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나 收養子, 侍養子에 관한 규정(형전, 私賤, 양자녀조)에 異姓양자를 배제한다는 것이 없고, 또한 조선전기에는 그 실례도 있었지만, 조선후기의 사대부가문에서는 異姓養子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5) 婚 嫁 : 혼인은 納幣의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며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어야만 허용되었으나, 양가의 부모 중에 宿疾이 있거나 50세 이상일 때에는 관에 告하여 12세라도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후 이러한 예외 규정이

123) 『태조실록』, 권1-51 태조 원년 8월 庚申.

124) 앞의 『회통해제』 pp.57~58.

125) 『위의 책』, p.58.

126) 조선후기의 이러한 社會相을 풍자하는 말로서 '몸으로 만든 자식보다, 붓으로 만든 자식(양자)이 더 행세한다'는 俗言이 있었다(李鍾日, 『朝鮮後期の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5, 1989).

남용되어 早婚의 풍속이 만연되었다. 동성동본 불혼의 원칙이 조선후기에는 철저히 준수되었으나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풍속이 많이 남아서 사대부가문에서도 同姓同本婚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¹²⁷⁾ 또 사대부 가문에서의 改嫁 금지도 조선후기에는 거의 확립된 관습으로 되었으나 조선전기에는 改嫁 사례가 적지 않았다.¹²⁸⁾

6) 喪葬 : 장례에는 國葬, 禮葬, 私葬 등의 구별이 있었는데, 國葬은 왕, 왕비, 왕세자의 장례이며 禮葬은 왕비의 부모, 嬪, 貴人, 大君, 王子君 및 그 부인, 公主, 翁主, 儀賓, 2품 이상의 종친, 종1품 이상의 문무관 및 功臣에 대한 장례로서 棺槨과 擔車를 나라에서 下賜하였다. 私葬은 私家에서 행한 장례인데 가난하여 장사 지낼 수 없는 자에게는 棺을 官給하였다. 墳墓는 厚葬의 폐단이 있었으므로 신분에 따라 이를 제한하였다.¹²⁹⁾

7) 璽寶·用印·文書 : 국왕의 印章은 경국대전의 규정에는 7종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角形으로서 外交, 敎命, 敎書, 敎旨, 科擧 등에 쓰였다. 각 衙問의 인장도 역시 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아문의 명칭을 나타냈고, 품계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¹³⁰⁾ 私人間에도 手決 이외에 인장도 썼다.

문서의 취급은 엄중하게 하였는데 춘추관의 時政記 및 승정원의 문서는 매 3년마다 인쇄하여 해당 아문, 의정부 및 史庫에 비치하였고,各司 및 地方官의 문서는 분류하여 계통을 세우고 색인을 붙여서 보존하였다. 象曆書는 매년 관상감에서 인쇄하여 종친 및 문무관과 지방관에게 반포한 후 紙代를 받았다. 또 大典 등을 인쇄할 때에는 고관 및 각 아문에 하사하여 영구보존 하도록 하였다.¹³¹⁾

127) 李鍾日 「朝鮮前期 士大夫層의 血統에 대하여」,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創作과 批評社, 1990) p.653.

128) 『성종실록』 권82-10, 성종 8년 7월 壬午.
『安東權氏成化譜』에는 前夫, 後夫로 明記되어 있다.

129) 앞의 『회통해제』 p.60.

130) 『위의 책』 p.60.

131) 『위의 책』 p.61.

8) 獎 勵 : 獎勳條를 두어서 孝子, 順孫, 節婦에게 관직 또는 물건으로 포상하거나 兵役을 면제(復戶)하여 주었다. 다섯 아들이 등과 하였을 때에는 그 父에게 歲米를 주었고, 그 父가 죽었을 때에는 追贈하고 致祭하였다. 또 증찬은 15세가 되면 宗學에 입학시켰는데 시험을 보여 不通者를 벌하고 殿講에 純通한 자를 加資하였다. 그러나 宗學은 속대전에서는 혁파되었다. 문신인 中直大夫 이하인 자는 매년 춘추 의정부에 모아서 表箋詩文 중 한 가지를 시험 보여 수석인 자에게는 품계를 높였고 총명한 年少의 문관은 매식년 간택하여 1經을 강습시켜서 殿講, 또는 考講하되, 연속 3차 통과하면 考課 1상에 준하도록 하고 3차 불통하면 考課의 上 한 번을 삭제하는 등으로 학업을 권장하였다. 通訓大夫 이하의 문관 중 문학이 특이한 자를 대제학이 뽑아서 왕에게 보고하여 휴가를 주어 湖堂에서 독서하도록 하였고, 玉堂 등 文名있는 堂下 문신을 대제학으로 하여금 뽑아서 보고하도록 한 다음 매년 4번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성적을 임금께 보고하여 상벌을 내리게 하였다. 또 매월 승문원에서 당하 문신을 뽑아 임금께 보고하여 글씨를 시험하여 상벌을 내렸으며, 예조에서도 당하문신을 뽑아서 임금께 보고하여 경서 및 제술로서 시험 보여 상벌을 내렸다. 전문 기술 관료들에 대해서도 시험을 보여 상벌을 내렸다.

9) 頒 氷 : 매년 늦여름에各司, 증찬 및 문무 당상관과 內侍府 당상관, 그리고 70세 이상의 閑散 당상관들에게 어음을 나누어 주었다.

10) 惠 恤 : 1품관으로서 70세 이상이면서도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는 几杖을 하사하였고, 당상관으로서 관직을 마친 자 및 공신의 부모, 처와 당상관의 처로서 70세 이상이 된 자는 예조와 本邑에서 매월 酒肉을 보냈다. 士族의 딸로서 나이 근 30이 되도록 가난하여 시집을 못간 경우에는 예조에서 임금께 보고하여 資財를 주었다. 또 춥고 배고픈 거지로서 族親이 없는 자와 노인으로서 돌볼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衣料를 주었다. 遺失小兒를 거두어 양육한 자에게도 의료를 官給하였으며 기타 가난한 병자와 죄수인 有疾者 등에게는 의료 혜택을 하였다. 흉년에 버려진 3세 이전의 어린애는 수양하여 아들로 삼거나 노비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 반드시 官에 고하여 公證을 받아야 했다.

11) 寺社와 度僧 : 조선왕조는 崇儒排佛策을 써서 절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古刹을 수리할 때에도 예조를 통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승려가 되려는 자는 3개월 이내에 禪宗 또는 教宗에 고하여 誦經을 시험해야 하며 예조를 통하여 임금께 보고해야 하였다. 또한 官에서는 丁錢(正布 30필)을 거둔 후에 度牒을 발급하였다.

12) 京外官의 迎送, 相見, 會坐 : 예조에서는 중앙관과 지방관의 영송 절차와 相見禮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서관이 5, 6품을 영송할 때에는 階下에서 하고, 3, 4품에 대해서는 中門內에서 하며, 2품에게는 중문외에서, 1품에게는 大門外에서 국궁하면서 영송한다. 참서관 또는 당서관도 상급자를 영송할 때에는 품계에 따라 혹은 계하에서 혹은 중문 내외에서 국궁하면서 영송한다. 吏胥인 錄事나 書吏는 당서관을 영송할 때에는 伏地한다. 지방관인 경우 비록 당서관일지라도 같은 품계 혹은 하위 품계인 使臣(中央官)을 영송할 때에는 대문내 혹은 중문내로 나아가 국궁한다. 이때 향리는 5리 밖에 나가서 伏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土官과 校生은 대문 밖에서 영송하였다. 상견례는 하관이 앞으로 나아가서 再拜하고 상관은 不答하였다. 길에서 上下官이 만났을 때에는 하관이 말에서 내렸고 상관은 말을 탄 채로 지나갔으며, 동급자는 馬上에서 서로 揖하였다. 그러나 상하관이 모두 당서관일 때에는 비록 관등의 차등이 있더라도 모두 말에서 내려 서로 揖하였다. 또 각사의 관원은 길에서 우연히 인사담당자인 銓郎을 만날 때에는 말머리를 돌려서 隱避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방관과 使臣(중앙관)의 상견례는 王使를 예우하는 의미에서 同級이라도 수령이 먼저 재배하였고 사신이 答拜하였다. 이때 토관과 교생은 階上에서 재배하였으나 향리는 庭下에서 재배하였다.

관료들의 會坐는 최고 품계인 자가 북, 그 다음이 동, 그 다음이 서, 최하 품계인 자가 남 또는 異廳에 앉도록 되어 있었다. 예컨대 사헌부의 경우 대사헌은 북, 執義는 동, 掌令과 持平은 서, 監察은 이청에 앉도록 되어 있었다. 사신인 중앙관과 지방관의 會坐時에는 같은 품계일지라도 중앙관이 상좌에 앉았다.

또 같은 지방관일지라도 監營이나 兵營에 속한 관원이 공무로 각 수령과 만날 때에는 우대 받았다. 예컨대 비록 문준무비의 사회였지만 종3품인 虞候가 諸邑을 巡行할 때에는 東坐하고 상급자인 堂上 수령이 西坐하였으며 동급자인 堂下 수령은 南行에 앉았다.132)

13) 雜令 : 잡령에는 종묘, 사직의 大祭齋戒日, 國忌齋戒日 및 正日, 임금의 生日과 그 前後日, 왕비 및 왕세자의 생일, 과거의 殿試日, 죄인의 行刑日 등 집행할 수 없는 날을 규정하였으며, 집행할 수는 있으나 用刑할 수 없는 날과 刑杖을 쓸 수 없는 날 등이 규정되어 있고, 또 4館 新來者가 免新時에133) 선배들로부터 받는 困辱之弊를 엄중히 금지하는 등도 雜令 속에 규정하고 있다. 또 잡령 중에는 燕行使節團 및 派日通信使의 수행원인 譯官과 醫官 寫字官 畫員 등의 T/O가 규정되고 있다.

끝으로 禮典에는 用文字式과 諸般 書式이 규정되어 있는데 2품 아문과 승정원, 掌隸院, 사간원, 宗簿寺, 中外諸將 등은 임금께 直啓할 수 있으나 기타의 아문에서는 屬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급한 일이면 각아문의 提調가 直啓할 수 있었다. 또 공문서식은 동등하거나 품계가 낮은 관원에게는 關文을 쓰고 높은 관원에 대해서는 牒문을 올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禮典의 말미에 각종 공문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5. 兵 典

兵典에는 軍制, 驛馬, 武科, 侍衛, 番上, 給保, 成籍, 復戶, 免役, 軍器, 烽燧 기타의 軍事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 軍制, 成籍, 番上, 給保 등 : 고려 말의 三軍都摠府를 조선 태조 2년 義興三軍府로 개칭하였는데 태종 9년에 이를 다시 鎮撫所로 하였고 세종 28년에 또 다

132) 『경국대전』, 권3 예전, 京外官會坐等.

133) 免新이란 관청에 新任되는 官員이 선배들에게 베푸는 피로연을 말하는데, 이때 선배들은 장난으로 신참 관원에게 온갖 모욕을 준다.

시 三軍義興府로 고쳤으며 문종 원년에 이를 고쳐 義興, 龍驤, 虎賁, 忠佐, 忠武 등 5衛로 하였다. 세조 때에 五衛都摠府를 설치하여 5위를 총괄하게 하였다. 5위는 의흥위를 中衛로 하여 甲士 및 補充隊를 거기에 소속시켰고, 용양위를 左衛로 하여 別侍衛 및 隊卒을 거기에 소속시켰으며, 호분위를 右衛로 하여 族親衛와 彭排를 소속시켰고, 충좌위를 前衛로 하여 忠義衛, 忠贊衛, 破敵衛를 소속시켰으며, 충무위를 後衛로 하여 忠順衛, 壯勇衛 및 正兵을 거기에 소속시켰다. 每衛에는 5部, 每部에는 4統이 있었고, 5인을 1伍로 하였으며, 5오를 1隊로, 5隊를 1旅(統)로 하였다. 伍長은 兵卒을, 隊正은 오장을, 旅帥(統將)는 대정을, 部將은 통장을, 衛將은 부장을 각각 통솔하였다. 병사는 각지의 丁年者(16-60세)를 뽑아서 각위에 分屬시켜 번갈아 가면서 番上시켰는데, 每戶 1丁을 뽑아 군무에 복무시키고 1保 혹은 2保(2인 내지 4인)의 保人(奉足)을 주었다. 특히 兩界의 甲士는 2보에다 1정을 더하여 5인의 보인을 주었고 水軍은 1보1정 즉 3인의 보인을 주었다. 또 納粟帖과 空名帖을 받은 자는 實職에 임용될 수 없게 하였다.

訓練院을 설치하여 군사의 試才, 무예의 단련, 武經習讀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고, 후에 能磨兒廳을 설치하여 諸將官의 兵書考講, 勸課 등의 일을 관장시켰다. 또 후일에는 傭兵의 길이 열려서 軍丁의 현역 복무가 점차 감소하고 保布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더구나 나라의 재정이 날로 궁핍하여져서 休番者를 증가시켜 그들로부터 布 또는 錢을 거두어 番布, 番錢이라 하여 군비에 충당하였다.¹³⁴⁾

5위에는 衛將 15인, 上護軍 8인, 大護軍, 12인 護軍 4인, 副護軍 69인, 司直 11인, 副司直 102인, 司果 21인, 部將 25인, 副司果 183인, 司正 20인, 副司正 250인, 司猛 15인, 副司猛 208인, 司勇 24인, 副司勇 460인 등이 있었다.¹³⁵⁾ 이는 경국대전의 총원수 3232인¹³⁶⁾보다 1805인이 적은 1427인이다. 임진왜란 후 군제를 개혁하여 訓練都監 등을 창설하고 5위에 實人員을 常備하는 제도를 고쳤으며 단지 그 官制만을 존속시켜 위장, 부장 등은 實職으로 두고 侍衛, 城內巡察

134) 앞의 『회통해제』 pp.62~64 및

『경국대전』, 권4 「兵典」, 給保 및 京官職.

135) 『대전회통』 권4 「兵典」, 京官職, 5衛.

136) 『경국대전』 권4 「兵典」, 京官職, 5衛.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을 뿐 기타의 군직은 이름만을 남겨서 달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遞兒職이라 하는데 주로 文官이 자리를 옮기면서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직무는 없으나 녹봉을 주기 위하여 임명하거나,¹³⁷⁾ 직무는 있으나 녹봉이 없는 자에게 임명하였는데, 이를 軍銜체아라 하였다. 기타 檢書官, 의관, 역관, 雲臺官 등 中庶官僚들에게도 때로는 체아직에 임명하였다. 또 공신과 그의 적장자손을 우대하기 위하여 직무는 없으나 녹봉만을 주기 위하여 임명하는 체아직도 있었다. 또 번상하는 군사들에게도 일정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체아직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체아직을 받은 군사는 소속 衛와 部를 칭하였으며 그 이외의 者는 위만 칭하고 부는 칭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군제는 5위 대신 五軍營中心制였는데 훈련도감을 中營, 守禦廳을 前營, 禁衛營을 左營, 御營廳을 右營, 摠戎廳을 後營으로 하여 수도권을 수비하게 하였다. 또 扈衛廳 및 龍虎營으로 宮中 호위를 맡게 하였고, 숙종 때 북한산성을 축성하고 經理廳을 두었으나, 正祖時의 대전통편에서 이를 폐지하고 摠戎廳에 소속시켰다. 치안기관인 捕盜廳을 두어 도적을 잡고 도성내 순찰의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숙종 때에는 開城府에 管理營을 설치하였고, 江華府에 鎮撫營을 설치하였다.¹³⁸⁾ 鎮撫營은 정조 때 統禦營에 합쳤다가 다시 水營에 소속시켰다. 또 정조 때에는 水原府를 留守府로 승격시키고 留守가 壯勇外使를 겸직하였는데 순조 때 장용영을 혁파하고 摠理營으로 개칭하였다.¹³⁹⁾ 또 兼司僕과 內禁衛, 두 衙門을 합하여 禁軍廳으로 하였다.¹⁴⁰⁾

지방에는 각도에 감영과 병영 및 수영을 두었고 몇 개 도를 통할하는 統營을 두었으며, 州府郡縣에는 鎮營을 두어서 兵馬節度使, 水軍統禦使, 水軍統制使, 水軍節度使, 防禦使,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萬戶, 節制都尉를 두고 觀察使, 수령이 겸직하거나 專任 무관을 따로 임명하여 통솔하도록 하였다.

137) 이러한 경우 文蔭武 종1품은 上護軍, 정2품은 大護軍, 종2품은 護軍, 堂上 정3품은 副護軍, 堂下 정3품에서 5품까지의 春坊 및 三司의 관원은 司直, 6품은 司果, 參下官은 司猛, 司勇 등에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138) 管理營과 鎮撫營의 長은 使(종2품)로서 開城 留守와 江華留守가 각각 겸직하였다.

139) 摠理營의 長인 使(정2품)도 水原留守가 겸직하였다.

140) 『속대전』 권4, 「兵典」, 京官職.

군역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남자의 의무로서 국민개병제였지만, 현직관료나 吏胥 기타 官의 役務를 부담하는 자는 병역이 면제되었고, 또 職役이 없는 자일지라도 조선 중기 이후에는 士族들이 幼學이란 명목으로 병역에서 빠졌으며, 심지어 庶族들조차도 校生이란 이름으로 상당수가 병역을 지지 않게 되어 貧弱한 良民들만이 부담하는 苦役이 되고 말았다. 군역 복무 대상자는 6년마다 軍籍簿에 등록하였는데 병조에서는 그 總數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實役에 복무하는 番上의 군사는 서울에서는 5부에서, 지방에서는 병마절도사가 點呼하여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와 도총부에서 또 點考한다. 徵番의 通牒은 각 軍門에서 감영에 전달하고 감영에서는 병영에 이를 전달하였다. 그때 番上하지 못하는 자는 身役 대신 米布를 납부하였다. 후일 나라에서는 이들의 번상을 停止시키고 대신 米布를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조 이후 19세기말까지 병력의 총수는 將卒, 保人을 모두 합하여 京營 25만 여명, 개성과 강화를 합하여 6만 여명, 각도 71만 명, 모두 100여만 명이었지만 실제 복무하는 자는 경영 5000여명 각도 2만 여명에 불과하였고 기타 인원은 군역 대신 保布番錢을 납부하게 하여 군비에 충당하였다.¹⁴¹⁾

2) 武科 및 試取 : 무과 시험에도 문과와 마찬가지로 式年試, 增廣試, 庭試, 謁聖試, 別試, 重試, 勸武科, 外方別科 등 여러 종류가 있었고, 또 이들 시험에는 初試, 覆試, 殿試의 3단계가 있었다. 수험생은 有職者의 추천이 있어야만 하였고 여러 賤人들은 응시할 수 없었다. 초시는 훈련원 및 병마절도사가 이를 시행하였고 복시는 병조와 훈련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전시는 승정원에서 맡았다. 시험과목은 木箭, 鐵箭, 片箭, 騎射, 貫革, 騎槍, 擊毬, 柳葉箭, 鳥銃, 鞭芻, 講書 등 11과목이다. 무과급제 출신자는 別侍衛와 訓練院權知로 나누어 임명하였다.¹⁴²⁾ 무관채용시험으로서 문과의 취재에 해당하는 試取가 있는데 무과에 응시하기 위한 시험,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다시 관직에 임명하기 위한 시험, 解官한 사람을 다

141) 앞의 『회통해제』 pp.64~66.

142) 武科 급제자수는 『경국대전』 권4, 병전, 試取武科式年註에 28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수백, 수천 명씩 뽑았으므로 任官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武科及第者는 文科 급제자의 分館 경우와 같이 별시위 또는 훈련원 權知로 나누어 배치된 후 극소수 인원만 신분에 따라 양반인 경우는 宣傳官廳에, 中庶人인 경우에는 部將이나 守門將 등으로 추천되었다.

시 관직에 임명하기 위한 시험, 녹봉이 없는 군관에게 녹을 주기 위한 시험 등 몇 가지가 있었다. 시험과목은 式年武科의 경우와 같았다. 기타 各衛 및 各隊에서 그 소속 職事에 따라 시험과목, 방법 등을 정하여 試取하였으며 禁軍·騎士·各營將官·別武士 기타 軍官으로 임용하였다.¹⁴³⁾

3) 馬政 및 驛 : 교통은 나라의 맥락으로서 내외의 연락은 馬와 驛에 의거하였다. 말은 육상 교통의 필수기관이 되었으므로 馬政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말을 키우기 위하여 목장을 설치하였고 서울에서는 司僕寺 지방에서는 監牧官을 두고 목장 및 馬政을 관장시켰다. 도로에는 역을 두고 馬匹을 갖추어 公用으로 왕래하는 官人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조선시대의 목장 중 큰 곳으로는 경기도의 箭串 목장, 강화 목장, 수원 및 남양 목장, 충청도의 서산·태안·홍주 목장, 전라도의 제주·홍양·순천·나주 목장, 경상도의 울산·동래·절영도 목장, 황해도의 연평도·백령도 목장, 함경도의 도련포 목장, 평안도의 가도·신미도 목장 등이었다. 특히 제주목장에서는 매년 500여필의 말을 바쳤고 기타의 목장에서는 32필을 진상하였는데, 사복 시에서는 각 군현에 600여필의 말을 나누어주어서 사육하게 하였고 이듬해 봄에 환납하게 하는 규칙을 정하였다. 말을 사육할 수 없는 군현에서는 代錢을 납부하게 하였다.¹⁴⁴⁾

역은 서울에서는 청파역, 노원역 등이 있었으며 上中下 3등의 말을 갖추어 역리 역졸 역호를 두고 병조에서 이를 직할하였고, 경기에서는 良才역을 비롯한 40개소, 충청도에는 66개소, 경상도는 150개소, 전라도는 53개소, 황해도에는 27개소, 강원도는 77개소, 함경도는 57개소, 평안도는 43개소, 총계 510여개의 역을 두었고, 왕래의 빈도에 따라 大中小路로 나누었다. 역의 등급에 따라 驛土와 역리, 역졸 및 말의 수요에 차등을 두고 각각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그 수입으로 그 역의 제반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역로에 따라서 察訪이란 관원을 두고 소관 역들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역마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尙瑞院으로부터 馬

143) 앞의 『회통해제』 pp.66~67 및

『경국대전』 및 『속대전』 권4 「병전」, 試取 및 武科.

144) 馬政과 驛制에 관한 전문 연구서로서

南郁泳, 『韓國馬政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6)와

趙炳魯, 『朝鮮時代 驛制研究』 (동국대학교, 1990,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牌를 지급 받았으며 마패에는 말의 필수가 새겨져 있는데 품계와 직책에 따라 乘用馬數와 말의 등급이 각각 정하여졌다.¹⁴⁵⁾

4) 符信 : 부신 중 중요한 것은 병력을 움직이는 發兵符로서 圓形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이라 쓰여 있다. 가운데로 반을 쪼개어 右符를 관찰사, 절도사 및 諸鎮將(수령 겸직)에게 頒給하고 左符는 궁중에 비치하여 두었다. 병력을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좌부 및 敎書를 내려서 左右符를 合驗한 후 병력 동원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諸鎮에는 관찰사와 절도사가 좌부를 받아서 교서와 함께 보내 발병토록 하였다. 긴급할 때에는 兵符(좌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발병하고 뒤에 보고한다. 그 외 나라의 급한 일에는 宣傳標信을 썼고 靑문에 들어오는 데는 信符를 썼다. 또 問安 標信과 擲奸標信 및 命召, 密符, 通符 등이 있었고 大將牌, 傳令牌, 衛將牌, 巡將牌, 木馬牌 등이 있었다.

5) 烽燧 : 邊境의 정황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 木覓山과 각도의 山頂에 烽燧煙臺를 두고 연기와 불로 신호하여 정보가 서울로 집중되도록 하였다. 즉 평시에는 1炬, 적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는 2炬, 국경 가까이 적이 왔을 때에는 3炬, 국경을 적이 침범했을 때에는 4炬, 접전하였을 때에는 5炬로 신호하였다.¹⁴⁶⁾ 서울에서는 守直禁軍이 병조에 고하고 지방에서는 伍長이 鎮將에게 고하였으며 병조에서는 당직을 정하여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을 통하여 임금께 보고하였다. 만약 변란이 있을 때에는 비록 밤일지라도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목덕산에는 5개소의 봉수대가 있으며 매소에 군졸 4인과 오장 2인을 항상 근무하도록 하였다.

145) 『속대전』 권4, 「병전」, 驛馬 및 「六典條例」 권7, 「馬色」, 給馬條에 의하면, 대체로 大君과 議政은 5馬牌, 정2품 이상은 4마패, 종2품과 정3품 당상관은 3마패, 당하관은 2마패(다만, 暗行御史는 2마패 또는 3마패)를 지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田鳳德, 「暗行御史制度研究」 『韓國法制史研究』 (서울대 출판부, 1968) p.123에 의하면, 암행어사에게 실제 지급된 마패는 2마패 뿐이라 하였다(성종실록 권239-6 참조).

146) 1炬란 봉화와 연기가 한 가닥 올라가는 것을 말하며, 2炬란 두 가닥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

6) 侍衛와 屬衛 및 番次都目 : 무릇 觀兵式과 講武, 巡幸, 수렵, 제사를 위하여 임금이 거동할 때에는 侍衛條件에 관하여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각 군영에 공문으로 시달한다. 大小의 朝賀 및 宴會時에는 衛將이 각기 부하를 거느리고 宮庭에 정렬하며 병조와 도총부 이하에서의 관직자로서 군무를 띤 자 및 司僕은 임금 옆에 侍立하고 내금위와 별시위는 階上에 배열한다. 조선 후기에는 임금의 陵行 및 郊外에서의 숙박시에는 포수 200인이 호위한다. 또 임금이 거동하는 길에는 標信 없는 자가 호위 행렬에 출입할 수 없게 한다.147)

임금의 大閱兵時에는 雜色軍과 各品の 伴尙을 모두 5위에 소속시킨다. 忠順衛에는 원래 임금의 외척이나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의 실직 顯官을 지낸 사람, 문무과 출신, 생원 진사 기타 有蔭子孫婿弟姪 등 양반들이 이에 배속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常民 출신 자손도 여기에 소속될 수 있게 하였으므로148) 결국 양반들이 그들과 섞이기를 꺼리어 결국 층순위는 中庶人 내지 상민 상층부의 兵種이 되고 말았다. 또 忠義衛는 공신자손이 여기에 속하는데 妾子孫 承重者도 또한 入屬이 가능하였고, 忠贊衛는 原從功臣 및 그 자손과 첩자손의 승증자가 입속하였다. 이와 같은 양반들의 병종도 조선후기의 下代로 내려올 수록 차츰 양반들의 嫡出 자손들의 입속 기피행위로 말미암아 庶子孫 들의 兵種化 경향마저 나타내고 있었다.149) 여하간 이들 병종에 속한 사람들은 매년 2회 또는 4회의 정규인사150) 때 체아직을 받거나 일정한 복무기간을 마치면 官階를 받았다.151)

7) 復戶와 免役 : 內禁衛와 別侍衛는 率丁 10口 혹은 田 10結 이하인 경우에, 또한 諸色軍士는 술정 5구 또는 전 5결 이하인 경우에는 貢賦를 면제(復戶)

147) 『속대전』 및 『대전통편』 권4, 병전, 侍衛.

148) 『위의 책』 권4, 병전, 屬衛.

149) 李鍾日, 「朝鮮時代 庶孽身分變動史研究」, (1987,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8~99.

150) 경국대전에서는 정규 인사이동이 양 都目이었으나 속대전에서는 4都目으로 되었다.

151) 『경국대전』 및 『속대전』 권4, 「병전」, 番次都目.

하여 주었다. 復戶는 군사뿐만 아니라 양반 관료들에게도 허용하였는데 대소관 인으로서 80세 이상된 자와 왕족 및 왕의 외척들도 일정한 범위 내의 술정과 전결이 있는 자에게 貢賦를 면제하였고, 90세 이상인 자는 田丁多少 간에 그것을 면제하였다. 또 實行職 2품 이상으로서 田里에 퇴거한 자에게도 그것을 면제하였다. 152)

군사로서 나이가 60세가 된 자 및 惡疾者와 廢疾者 등은 모두 力役을 면제(免役)한다. 또 악질과 폐질이 있는 부모 및 나이 70 이상인 부모가 있는 자 중의 한 아들과 부모가 90 이상인 모든 아들도 면역된다. 왕의 외척이나 훈공있는 자의 자손은 代數를 한정하여 면역하고 대왕의 자손은 代數를 限定하지 않고 면역한다. 153)

8) 軍器와 兵船 등 : 軍器는 서울에서는 軍器寺에서, 지방에서는 各鎭에서 제조하며, 군사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군기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는 병조, 지방에서는 수령 및 절도사가 항상 검찰한다. 또 해마다 함경도와 평안도로 下3도 및 강원도에서 箭竹을 보냈는데, 이를 받은 절도사가 屬鎭에 나누어주고 만 들어진 화살 수와 將士에게 지급한 수를 임금께 보고하였다. 하3도와 황해도의 총, 화약, 鉛丸 등에 관한 月課米는 상평청에서 관리하였다. 각 고을의 군기는 절도사가 불시에 추출하여 조사하되 잘못이 있는 수령을 논죄하였다. 154)

여러 포구의 軍船 및 장비는 수군절도사가 매년 그 수를 기록하여 병조에 보고하고 병조에서는 임금께 啓聞한다. 각도의 戰船과 兵船이 연한이 차면 부패와 손상 여부를 수군절도사가 직접 심사하여 임금께 보고한다. 155) 각도의 병선 중에는 수군 80인승의 大猛船과 60인승의 中猛船 및 30인승의 小猛船이 있었으나 그후 戰船, 防船, 兵船 등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수도 변경되었다. 경국대전 에 의하면 경기도에 대맹선 16척, 중맹선 20척, 소맹선 14척 및 無軍소맹선이 7척이었고, 충청도에 대맹선 11척, 중맹선 34척, 소맹선 24척 및 無軍소맹선이

152) 『위의 책』 復戶(貢賦를 면제하는 것).

153) 『위의 책』 免役.

154) 『위의 책』 및 『대전통편』 軍器.

155) 『위의 책』 兵船.

40척이었으며, 경상도에는 대맹선 20척 중맹선 66척, 소맹선이 105척 및 무군 소맹선이 75척이었고 전라도에는 대맹선 22척, 중맹선 43척, 소맹선 33척 및 무군 소맹선이 86척이었다. 강원도에는 소맹선 14척과 무군소맹선 2척이었고, 황해도에는 대맹선 7척, 중맹선 12척, 소맹선 10척, 무군소맹선 10척이었으며 영안도에는 중맹선 2척, 소맹선 12척, 무군소맹선 9척이었고, 평안도에서는 대맹선 4척, 중맹선 15척, 소맹선 4척, 무군대맹선 1척, 무군중맹선 3척, 무군소맹선 16척 등이었다.¹⁵⁶⁾ 그러나 이러한 병선의 종류와 그 정수는 조선 중기에 이미 실제와 맞지 않게 되고 말았다. 여하간 속대전에 보이는 軍船의 종류와 그 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강원도와 영안도에서는 병선이 없어졌다).¹⁵⁷⁾

<표 1>¹⁵⁸⁾

종류 \ 도별	京畿	忠清	慶尙	全羅	黃海	平安	계
戰 船	4	9	55	47	2		117
防 船	10	21	2	11	26	6	76
兵 船	10	20	66	51	9	5	161
龜 船	1	1	9	3			14
伺候船	16	41	143	101	5	12	318
艍船	3				21	1	25
汲水船	9				6	4	19
探 船			2				2
海鵲船				1			1
小猛船					1		1
挾 船					17	1	18
別小船					1		1
追捕船					23		23
계	53	92	277	214	111	29	776

156) 『경국대전』 권4, 「병전」, 諸道兵船.

157) 『속대전』 위와 같음.

158) <표 1>중 네 번째에 나오는 龜船은 주로 主鎭과 巨鎭에만 있다. 壬辰倭亂 때 만 들어졌다.

9) 雜 令 : 각아문에서 收布色目¹⁵⁹⁾을 充定할 때에는 반드시 本道와 해당 수령의 關文이 있어야 한다. 서울의各司에서는 지방 고을로 직접 關文을 보낼 수 없다. 그러나 군병의 도망이나 휴가未歸에 관한 사항은 例外이다. 또 포도청에서 賊人을 잡기 위해서는 지방 고을에 직접 관문을 보낼 수 있었다. 또 軍門의 군사를 사사로이 사역시킨 자는 大將 및 提調는 罷職하고 中軍 이하는 失律로 논죄한다. 그리고 邊將으로서 군무를 기피한 자는 병졸로 강등시킨다. 그러나 邊將, 邊帥의 부모가 75세가 된 자에게는 직책을 바꾸어 준다. 새로 통제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방어사, 변방의 첨사, 영장이 된 자, 신규임용된 지방 무관직인 자는 현직, 전직 대신과 將臣, 6조 판서와 병조의 당상관 및 郎官과 臺官 등에게 부임 인사를 하여야 한다.

6. 刑 典

형전에는 각종 형벌법규 및 소송절차와 賤妾 및 공사 노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刑罰法規 : 형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大明律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대명울의 刑은 笞, 杖, 徒, 流, 死의 5刑 20種이고 律은 456個條였지만¹⁶⁰⁾ 우리나라는 중국과 풍속, 습관이 달랐으므로 중국법률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贖錢의 경우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금속화폐의 유통이 17세기말 이후였으므로 조선전기에는 贖錢 대신 贖布로 할 수밖에 없었고, 流刑에 있어서도 중국의 里數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2) 裁判機關 및 訴訟節次 : 재판은 서울에서는 형조 및 漢城府에서 또 지방은 관찰사와 수령이 담당하였는데,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을 맡았던 관원이 경질된 후 2년 이내에 抗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긴급한 사건은 관원의 경질을 기다리지 않고, 上級官司(수령의 경우는 관찰사) 또는 他司에 抗訴할 수

159) 收布色目이란 稅布를 징수할 경우의 名目이다.

160) 앞의 『회통해제』 p.70.

있었다. 여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사헌부에 上訴하였고, 또 거기에도 불복일 때에는 국왕에게 上言하였다.¹⁶¹⁾ 형사범에 관해서는 官憲이 능동적으로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 심판하고 형을 집행하였다. 물론 관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인을 체포할 수 있었고 逃亡犯人이나 賊徒 기타 도적을 잡은 자에 대해서는 상을 주었으며 이들 범인을 알면서도 관에 고하지 않은 자는 처벌되었다. 審理는 비밀로 하였으며 상소 또는 上言(申聞鼓)을 범인 자신이 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였으므로 범인의 근친자나 노비가 대행하는 수가 많았다.

법률에 해당 조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類推解釋을 하여 죄를 정한 후 국왕에게 보고하여 科刑하였다. 競合犯에 관하여는 무거운 것에 따라 처단하였고 재범에 대하여는 加重 처벌하였다. 특히 3범 이상일 때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형(絞, 斬)까지 처하였다. 刑訊에 있어서는 拷問이 허용되었으나, 庶人 범죄자 및 盜犯者가 아닌 士族범인의 경우에는 국왕의 允許가 있어야만 하였다.¹⁶²⁾ 또 濫刑을 금지하였으며 고문 치사하게 한 관리는 처벌되었다.¹⁶³⁾ 그리고 사헌부와 관찰사는 죄수의 유치장을 감찰하여 시설 미비, 侵虐 등의 사례가 있으면 담당관리를 처벌하였다.¹⁶⁴⁾ 형사재판의 시한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30일내, 流刑과 徒刑에 해당하는 범죄는 20일 이내, 杖刑과 笞刑에 해당하는 범죄는 1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도록 하였다.¹⁶⁵⁾

人命을 중시하는 인도적 견지에서 死罪에 관하여서는 세번 覆審하도록 하였고,¹⁶⁶⁾ 영조 때부터는 烙刑과 刺字刑 및 壓膝刑 등 잔인한 형벌을 금지시켰다.¹⁶⁷⁾ 또한 유교적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叛逆罪와 綱常罪를 특히 엄하게 다스렸는데 이들 범죄에 관해서는 緣坐法이 적용되어 범인뿐만 아니라 범인의 부자형제와 처첩 및 자녀까지 처벌하거나 노비화하였고 그들이 살던 집을 파괴하고 塚地를 파서 못을 만들었다. 또한 그들이 살던 邑號(州府郡 등)를 강등하

161) 『앞의 책』 pp.71~72.

162) 『경국대전』 권5, 「형전」, 推斷.

163) 『위의 책』 권5, 「형전」, 濫刑.

164) 『위의 책』 권5, 「형전」, 恤囚.

165) 『위의 책』 권5, 「형전」, 決獄日限.

166) 『속대전』 권5, 「형전」, 殺獄.

167) 『위의 책』 권5, 「형전」, 推斷.

였고 그 수령을 파직하였다.168)

조선시대는 신분사회였으므로 신분의 존비에 따라 囚禁, 科刑을 달리 하였다. 문무관 및 內侍府의 인원, 그리고 士族의 부녀자, 僧人 등을 구속수감할 때에는 임금에게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하며 다만 死罪를 범하였을 때에는 먼저 구속수감하고 나중에 보고하였다. 또 議政은 惡逆을 직접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잡혀서 심문 받지 않았다. 그리고 王子君이나 대신을 추하게 욕하거나 常賤人이 士族을 구타하였을 때에는 邊遠充軍 또는 徒3년 등으로 엄하게 처벌하였다.169)

3) 公·私賤 : 형전에는 공, 사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公賤은 各官司에 소속된 공노비를 말하며 사천은 사인에게 소속된 사노비를 말한다. 공천은 選上奴婢, 女妓, 醫女 이외는 身貢(奴婢貢布)을 납부하였다. 공천인 納貢노비 중에서는 匠人이 많았다. 사천도 주인집에서 사역되는 率居奴婢와 身貢을 바치는 外居奴婢가 있었다. 특히 외거노비는 토지에 예속된 경작 농민이 많았는데 일종의 農奴的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선시대 지배층의 주된 재산은 이들 노비와 토지였는데 田畝의 臺帳上(量案)起主 명의가 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양반들은 토지에 예속된 경작농민인 그들 외거노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토지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170)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인 양반들은 그들 자녀들에게 노비와 토지를 均分하여 상속시켰으며, 다만 적서자녀 간에는 심한 차별이 있어 良賤의 첩자녀 들은 嫡出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만 상속받았다. 또한子和女간의 상속분도 17세기 말 이후부터는 많은 차등이 생겼고, 18세기 후기 이후에는 같은 적출자 사이에서도 長子와 次子 사이에는 차등이 생겨났다.171)

168) 『위의 책』 권5, 「형전」, 推斷.

169) 『경국대전』 및 『속대전』 권5, 「형전」, 囚禁 및 推斷.

170) 金容燮,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1 (일조각 1982) pp.194~206.

171) 李鍾日, 『조선전기의 호구, 가족, 재산상속제연구』 『앞의 책』 pp.63~77.

7. 工 典

공전에는 도로, 교량, 營繕, 度量衡, 院宇, 舟車, 栽培, 鐵場, 工匠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橋路, 營繕, 院宇, 舟車 등 : 都城 안의 도로를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어 길의 폭과 길 양쪽의 도랑 넓이를 규정하였다. 만약 길을 侵占 또는 掘取하거나 더러운 물건을 버린 자가 있으면 그 자와 해당 部의 관리 및 소속 坊의 管領을 처벌한다고 하였다. 지방도로는 매 10리마다 작은 장승(里程標)을 세웠고, 또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우는 한편 驛을 두었다. 8도의 路程은 중국의 周尺을 썼으며 6尺을 1步, 360보를 1里, 30리를 1息이라 하였다. 또 10釐가 1分, 10분이 1寸, 10촌이 1尺이었다.¹⁷²⁾

궁궐은 典涓司가, 官衙 건물은 각사의 관원이 分掌하여 看守하였고, 그 건물에서 비가 새거나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공조에 보고하고 수리한다. 공조에서는 매년 춘추로 이를 순찰하고 살펴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단순한 수리는 할 수 있었으나 관청건물의 改築이나 大修理 등 營繕은 원칙적으로 국왕에게 보고한 후 施工하도록 하였다.¹⁷³⁾

서울 근교와 지방의 큰길가에는 公務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院宇를 설치하였는데, 그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을 院主로 지정하여 원의 일을 맡겼다. 그들에 대한 감독은 한성부와 각도에서 행하였다. 또 各河川에는 渡船場을 두었고 도선장에는 선박과 津夫가 있었으며 특히 조선 후기에는 各津의 官船을 등록시키고 그 수를 정하여 각 軍門에 분속시켜서 別將을 差出하여 검찰하게 하였다. 나룻배를 타고 지정된 도선장이 아닌 곳으로 멋대로 건너는 자에 대해서는 大夫와 士庶를 막론하고 定配律로 논죄하였다.¹⁷⁴⁾

2) 度量衡 : 度는 길이, 量은 부피, 衡은 무게를 의미한다. 조선 세종 때 도

172) 『경국대전』 및 『속대전』 권6, 「공전」, 橋路 및 度量衡(周尺의 길이는 後述).

173) 『위의 책』 권6, 「공전」, 營繕.

174) 『위의 책』 권6, 「공전」, 院宇 및 舟車.

량형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공조에서는 原器를 제작하여 각지에 보냈으며, 매년 가을 私家에서 쓰는 用器를 검사하여 낙인을 찍었다. 度器에는 黃鍾尺,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布帛尺, 量田尺의 구별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영조 척은 陽氣, 軍器, 形具, 船舶, 家屋, 城塞 기타의 營造物 내지 器械의 제조에 사용되었다.¹⁷⁵⁾ 주척은 가장 오래된 자로서 춘추시대의 것이 발굴되어 중국 北京 故宮 박물관에 보존된 바가 있었는데, 그 길이는 0.231m라 한다.¹⁷⁶⁾

우리 나 세종 때 그 길이를 石柱에 새겨서 서울 水標橋 上部에 세웠으며 순조 때 그 石標를 다시 세웠는데 曲尺으로 6寸7分이라 한다.¹⁷⁷⁾ 경국대전에 의하면 주척 1척의 길이는 황종척으로 6寸6釐, 영조척 1척은 황종척 8촌9분9釐, 조례기척 1척은 황종척 8촌2분3釐, 포백척 1척은 황종척 1척3촌4분8釐라 하였다.¹⁷⁸⁾

量器는 세종 때 영조척을 기준으로 斛斗升을 만들었으며 10勺이 1合, 10합이 1升, 10승이 1斗, 15두가 小斛, 20두가 大斛이라 하였는데, 20두 용적의 대곡은 길이가 2척, 넓이가 1척1촌2분, 깊이가 1척7촌5분으로 積이 3920촌이었고, 15두 용적의 곡은 길이 2척, 넓이 1척, 깊이가 1척4촌7분, 적이 2940촌이었다. 斗는 길이 7촌, 넓이 7촌, 깊이가 4촌, 적이 196촌, 升은 길이 4촌9분, 넓이 2촌, 깊이가 2촌, 적이 19촌6분, 합은 길이 2촌, 넓이 7분, 깊이가 1촌4분, 적이가 1촌9분6厘로 更定하였던 것이다.¹⁷⁹⁾ 그 다음 무게(衡之制)는 黃鍾의 管에 들어가는 물의 무게를 88分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0釐를 1分, 10분을 1錢, 10錢을 1兩, 16양을 1斤으로 하였고, 큰 저울(大稱)은 100근, 중간 저울(中稱)은 30근 혹은 7근, 작은 저울(小稱)은 3근 혹은 1근으로 하였다.¹⁸⁰⁾

3) 栽植, 鐵場, 柴場, 京役吏, 工匠 등 : 각 지방의 漆木, 桑木, 果木 및 楮

175) 앞의 『회통해제』 p.76.

176) 『대전회통』(朝鮮總督府 中樞院, 1939) 권2 「호전」 p.2 量田, 註. 그러나 경국대전상의 주척은 1척이 20.7cm인 듯하다.

177) 앞의 『회통해제』 pp.76~77 및 註 176.

178) 『경국대전』 권6, 「공전」, 度量衡 및 註 176.

179) 『세종실록』 권113-36, 세종 28년 9월 壬辰 및 註 178.

180) 註 178.

田, 莞田, 箭竹의 所産을 장려하여 그 本數 및 個所를 成籍하여 公造와 所在道 郡邑에 비치하여 두고, 그 성적을 考査하여 上納을 내렸다.

철의 산지에는 冶場을 두고 冶匠人을 成籍하여 公造와 本도, 本읍에 비치하고 농한기에 吹鍊하여 上納하게 하였다.

각관청에 柴場을 주어서 採取하게 하였고 여러 고을의 향리 중 일정 수를 매년 윤번제로 상경시켜서 이를 公造에서 各관청으로 나누어 주어서 炭木을 바치도록 하였다.

또 서울과 지방의 工匠을 成籍하여 公造와 本司 및 本도와 本읍에 비치하여 두고 여러 관청별로 소속 수를 규정하여 필요한 물품의 조달 또는 收稅取貢토록 하였다.¹⁸¹⁾

181)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권6, 公造, 裁植 鐵場 柴場 京役 吏 工匠 京工匠 外工匠.

第3章 甲午改革 以後의 大典會通의 適用問題

1. 官制改革과 法制的 近代化

대전회통의 내용 중 吏典 부문은 고종 31년 6월의 官制 개혁으로 상당부분 實效性을 잃게 되는데, 이른바 갑오개혁으로 불리우는 그 때의 改定 官制에 의하면 의정부에는 總理大臣 1인, 左右贊成 각 1인, 司憲 5인, 參議 5인, 主事 31인 등을 두도록 하였고, 부총리격인 좌우찬성은 都察院長과 中樞院長을 각각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참의는 각 局長으로 임명되었다. 또 중앙 행정 각부에 해당하는 6조도 8衙門으로 바뀌고 內務, 外務, 度支, 法務, 學務, 工務, 軍務, 農商 등 각아문에서는 장관인 大臣 1인과 차관인 協辦 1인, 국장인 參議 5인에서 10인을 두었으며, 각국에는 主事(課長格) 약간 명씩을 두었다.¹⁸²⁾

官秩도 1·2품만 正從으로 구분하였고 3품에서 9품까지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¹⁸³⁾ 그리고 종전의 당상관(정3품상 이상)과 당하관(정3품하 이하), 참서관(종6품 이상)과 참하관(정 7품 이하)의 구분 대신에 勅任官(정, 종1·2품) 奏任官(3품에서 6품까지), 判任官(7품에서 9품까지) 등으로 나누었으며,¹⁸⁴⁾ 그 임명형식도 칙임관은 教旨, 署名, 御璽 등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주임관은 御璽만으로 국왕 명의로 임명하는데 반하여 판임관은 주관하는 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承宣院¹⁸⁵⁾에서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추천한 大臣 명의로 서명, 날인하여 「奉教職牒」을 成給하는 것이다.¹⁸⁶⁾ 물론 종전에도 4품 이상인 문무관의 임명은 국왕의 명의로 「教旨(官教)」로 하였고 5품 이하인 문관의 임명은 이조에서, 무관의 임명

182) 『고종실록』 권31-40, 고종 31년 6월 28일.

183) 『위의 책』 권32-1, 고종 31년 7월 2일.

184) 『위의 책』 권32-8, 고종 31년 7월 14일.

185) 종래의 承政院,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

186) 『고종실록』 권32-6, 고종 31년 7월 11일.

은 병조에서 각각 判書 이하 佐郎까지의 명의로 된 「奉教」로 하였다.¹⁸⁷⁾

고종 31년 7월 14일에 제정된 各府, 各衙門의 통행규칙에 의하면 대신(장관)과 협판(차관)은 칙임관으로 되어 있고, 참의와 4품에서 6품까지의 주사는 주임관, 7품에서 9품까지의 주사는 판임관으로 되어 있으며, 참의는 국장, 4품 주사는 次長(국장이 있을 때에는 차장을 두지 않고 차장이 있을 때에는 국장을 두지 않음)이 된다고 하였다. 국장은 대신의 명령을 받아 그 직권을 행사하고 各課의 사무를 관리하였으며, 각과에는 과장 1인을 두되 주사로서 보하며 국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를 分掌한다고 하였다.¹⁸⁸⁾ 이점은 종전의 각조 당상관과 낭관(정랑, 좌랑)들이 각각 국왕의 分身으로서 독자적으로 고유권한을 행사하던 것과¹⁸⁹⁾ 다르며 현대적 관료기구에 접근하고 있다.

고종 31년 7월 15일 고종실록에 있는 官秩과 品俸月表를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고종실록』, 권32, p.18).

또한 甲午改革으로 적어도 法制形式上으로는 門閥과 班常等級이 혁파되고, 貴賤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게 되었으며, 문무간의 尊卑之別도 폐지하였다.¹⁹⁰⁾ 죄인의 경우 본인 이외의 어떠한 친족도 緣坐之律을 적용받지 않게 하였으며, 寡女의 再嫁도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고, 공사 노비에 관한 법률을 일체 혁파하여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하였다.¹⁹¹⁾ 그리고 고종 31년 7월 新式貨幣發行章程의 제정을 비롯하여,¹⁹²⁾ 고종 32년 3월의 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內閣官制(勅令 제38호), 法官養成所規程(勅令 제49호)

187) 『경국대전』 권3, 「예전」, 文武官 4품 이상 告身式 및 문무관 5품 이하 고신식.

188) 『고종실록』 권32-12, 고종 31년 7월 14일.

189) 官은 王의 분신이요, 吏는 判의 분신이라 하여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판과 리의 구분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官과 官의 상하관계는 그렇게 엄격한 上命下服관계가 아니었다. 『중종실록』 권76-8, 중종 28년 9월 壬戌에도 「凡注擬人物之時, 雖堂上, 郎官同議………」라 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190) 그러나 그 후에도 오랫동안 門閥과 班常등급이 社會慣行上으로 존속하였으며 法制的 實際上으로도 그 등급이 완전히 철폐된 것이 아니었다(『고종실록』 권39-24).

191) 『고종실록』 권31-44, 고종 31년 6월 28일.

192) 『위의 책』 권32-5, 고종 31년 7월 11일(10分=1錢, 10전=1兩, 5량=本位貨, 단, 銀貨는 100兩爲準).

등등 많은 법령이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대전회통의 이전 뿐 아니라 호전과 병전·형전 기타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상당기간동안 대전회통의 일부조항은 실정법 또는 관습법으로 남아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표 2〉

官別	官 品	官 階	官 職	品俸月表
	無 階		大君, 王子君	350 元
勅 任 官	正1品	大臣輔國崇祿大夫 上輔國崇祿大夫	嫡王孫, 總理大臣 宗親君, 國舅, 都尉	300 元
	從1品	崇政大夫	各衙門大臣, 議政府左右贊成	200 元
	正2品	資憲大夫	各府衙 協辦 議政府都憲, 警務使	150 元
	從2品	嘉善大夫	曾經正憲, 嘉義	120 元
奏 任 官	3 品	通政大夫	各府衙 參議	80 元
	4 品	奉正郎	" 主事, 警務副管	40 元
	5 品	通善郎	" "	35 元
	6 品	承訓郎	" "	30 元
判 任 官	7 品	務功郎	" "	25 元
	8 品	通仕郎	各衙門 主事, 警務官 書記官, 總巡	20 元
	9 品	從仕郎	各府衙 主事	15 元

2. 刑典의 適用問題

갑오개혁 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대전회통 형전이 실정법으로서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대전회통 형전의 적용에 관한 기사는 고종 光武 9년까지 있다

가 그 이후에는 광무 11년 4월 4일 「대전회통 禁制條 潛賣禁物 重者律 處絞」(『고종실록』, 48-19)에 관한 것 이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행위시가 광무 3년이었으므로 결국 광무 9년 4월 29일 법률 제 2호 형법대전 제정 이후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전혀 대전회통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⁹³⁾

여하간 갑오개혁 이후의 대전회통 형전의 적용사례를 보면

- 建陽 元年 11月 4日, 度支部 米倉庫 被盜時 主事 閔容薰을 大典會通 捕盜編, 有錢穀 各司 晝夜直官員 不謹被盜者律에 의거 파직(『高宗實錄』, 권34-59)
- 光武 元年 10月 19日, 泰陵外案山 犯葬罪人 朴孝承을 大典會通 禁制條 陵寢 火巢外案山禁標內偷葬者 減死定配律 而懲役處斷例에 의거 流終身律施行 特爲 減等(『高宗實錄』, 권36-23)
- 光武 2年 8月 14日, 被告 亂言者(姓名 및 事件內容 省略)등을 大典會通 推斷條 및 大明律 名例에 의거 杖(또는 笞)一百 流三千里(또는 終身)에 處함 (『高宗實錄』, 권37-51)
- 光武 2年 8月 25日, 罪人 金鴻陸을 大典會通 禁制條 憑藉被人居間 受賂者 減死定配에 의거 笞一百 流終身(『高宗實錄』, 권37-52)
- 光武 2年 10月 12日, 孕胎 罪人 金召史를 大典會通 推斷條에 의거 刑推를 면제하고, 笞刑을 加한 후 收贖 發配(『高宗實錄』, 권38-17)
- 光武 3年 3月 24日, 前郡守 尹甲炳을 大典會通 倉庫條에 의거 公金流用罪로 懲役에 處함 (高宗實錄 권39-14)
- 光武 3年 11月 10日, 被告 申錫麟을 大典會通 禁制條 漏洩本國事情者律에 의하여 笞一百 流三年에 處함(『高宗實錄』, 권39-81)
- 光武 3年 4月 24日, 同年 12月 6日, 同月 13日, 被告 등을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干犯於上 情理切害者律 또는 凡亂言者律에 의하여 絞刑 또는 笞一百 流15년에 각각 處함(『高宗實錄』 권39-20, 88, 91)
- 光武 3年 5月 8日, 罪人 金吉伊(常民)를 大典會通 姦犯條 士族妻女 劫奪者

193) 『고종실록』 권45-45, 고종 광무 9년 4월 29일 記事에 의하면 그날 「頒示中外」라 하였으나 官報揭題 日字는 광무 9년 5월 29일이었다.

勿論姦未成律에 의거 絞刑에 處함(高宗實錄 권39-24)

- 光武 4年 2月 9日, 被告 朴喜宅, 同 尹世鏞을 大典會通 禁制條 本國事情 漏洩者律에 의거 流3年에 各處하고 被告 姜盛馨, 同 尹世鏞을 大典會通 推斷條 亂言者干犯於上 情理 切害 知而不告者 減一等律에 의거 終身刑에 各處함(『高宗實錄』, 권40-7, 8)
- 光武 4年 5月 27日, 被告 安駟壽를 大明律 賊盜編 謀反 大逆條 凡謀反及大逆 共謀者 不分首從律 및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干犯於上 情理切害者律에 의거 絞刑에 處함(『高宗實錄』, 권40-46)
- 光武 5年 5月 29日, 被告 金大雄을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若干犯於上 情理切害者律 및 大明律 祭祀編 禁止師巫邪述條에 의거 斬刑에 處함(『高宗實錄』, 권41-34)
- 光武 5年 10月 9日, 被告 河元泓 등이 國事犯亡命人 朴泳孝 등과 通謀하여 外兵을 빌려 政府를 顛覆하고 守舊黨員을 屠殺하고자 한 犯行에 대하여 大明律 賊盜編 謀叛條에 의거 斬刑에 處함, 또 被告 吳大鉉이 大靜鄉長으로서 衆民의 强要에 못이겨 騷擾를 일으켜서 殺人을 하게 된 데 대하여 大明律 人命編 謀殺人造意者律 및 大典會通 推斷條 軍服騎馬作變官門者律에 의하여 絞刑에 처함(『高宗實錄』, 권41-62)
- 光武 6年 7月 22日, 被告 嚴錫祚를 大典會通 禁制條 陵寢火巢外案 禁標內 偷葬律에 의거 情狀參酌하여 本律에 減2等하고 懲役 10年에 處(流刑으로 바꿈)함(『高宗實錄』, 권42-43)
- 光武 7年 8月 21日, 笞刑 3·40度만에 사람을 致死하게 한 官吏를 大典會通 官吏濫刑致死者律에 의거 笞一百에 處하고 永久히 敍用하지 않도록 함(『高宗實錄』, 권43-35)
- 光武 7年 10月 17日, 被告 李基東이 사람을 해치고자 亂言하면서 凶器를 携帶하고 禁中에 擅入한 行爲에 대하여 大典會通 亂言者律 및 大明律 持刀入宮 殿門內者律에 의거 絞刑에 處함이 마땅하나 國王의 命令으로 特減 1等하여 從犯과 함께 流配함(『高宗實錄』, 권43-43)
- 光武 7年 12月 9日, 被告 尹孝定이 비록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於上 情理切害者 爲從律 및 大明律 賊盜編 謀叛條 謀背本國 潛從他國者律에 의거

斬刑에 處함이 마땅하나 被告는 閔妃 殺害犯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므로 특별히 釋放함(『高宗實錄』, 권43-58)

- 光武 8年 3月 9日, 朴泳孝系 開化派인 被告 金益珍을 大典會通 禁制條 漏泄本國事情 關係重者律에 의거 絞刑에 處하고 同派 被告 吳聖模를 大明律 賊盜編 凡謀反共謀者 不分首從律 등에 의거 斬刑에 處하며 從犯인 被告 安明善을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者律에 의거 笞一百, 終身懲役刑에 處함(『高宗實錄』, 권44-21)
- 光武 8年 3月 11日, 被告 金錫求를 大明律 謀反 及大逆知而不首者律에 의거 笞一百, 流終身に 處하고 被告 兪星濬을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者律에 의거 笞一百 流三年에 처함(『高宗實錄』, 권44-26)
- 光武 9年 5月 3日, 法部大臣의 上奏는 光武 6年 7月 25日의 平理院 裁判長의 품의에 準據한 것으로 被告 金亨集을 大典會通 推斷條 凡亂言若干犯於上情理切害者律 및 同典 禁制條 漏泄本國事情關係重者律 등에 의거 斬刑에 處함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임금은 允許하였다(『高宗實錄』, 권45-46).

이상 각 사례들은 전부 法部大臣의 上奏에 의거한 임금의 允許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였던 것이며, 법무대신의 上奏 또한 거의 재판기관의 품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이 아직 안된 상태였다. 또한 재판장도 종래의 문관인 행정관이 교대로 맡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황제를 호칭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입장을 선언한 光武時代에도 여전히 대명률을 대전회통과 함께 적용하였다. 그리고 갑오개혁으로 班常의 等級을 革罷하였다고 하지만¹⁹⁴⁾ 위의 아홉 번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상의 차등은 그후에도 엄연히 존재하여 그것이 형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즉 피고가 常民이었기 때문에, 士族女인 寡婦에 대한 강간미수 행위로 -비록 수치심으로 同女가 자살하였지만- 사형당하였던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전회통의 이전은 갑오개혁으로 많이 死文化되었

194) 『고종실록』 권31-44 고종 31년 6월 28일.

고 형전은 광무 9년 4월 29일 刑法大畧의 반포(官報는 5월 29일)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기타의 법전도 새로운 法令制定에 의거 상당 부분 그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예전과 호전 일부는 조선왕조가 멸망한 이후에도 舊朝鮮의 관행으로서 우리의 풍속과 습관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준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第 2 部

大典會通 卷首・吏典 譯註

大典會通 卷首 /81

大典會通 吏典 /110

11

大典會通 卷首

大典會通 序文

우리 나라의 經濟六典과 經國大典은 멀리 周나라의 六官制度(周禮)를 모방하였고, 가까이는 大明會典의 六部에 준거하였으며 위로는 虞나라의 惇典과 夏나라의 關和와 더불어¹⁾ 文華와 質朴이 서로 순환하였던 夏殷周의 三統(文質三統)²⁾과도 같이 百代 후에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대개 禮樂과 刑政은 옛 것에 의거하여 새로 개혁해야 하는 것이며, 그 法의 큰 줄기를 세우고 細則을 정하는 所以는 大聖인이 전수하는 精一心法³⁾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 太祖 康獻大王이 대업을 창업하신 이래 世宗과 世祖께서 큰 터전을 이으시기까지, 前聖과 後聖이 창작하시고 繼述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모아 한 책으로 통합하시어 金科玉條가 찬란하게 갖추어졌으므로, 헤아려서 加減할 필요가 없었으나, 英祖 20년에 續大典을, 또 正祖 9년에 大典通編을 계속해서 간행한 것은 특별히 시세의 변동에 따라 법제를 맞춘 작은 변통이었을 뿐이었다. 오히려 百王의 지혜를 넘는 슬기로 列聖朝의 규범을 계승하여 서술하심에 있어서 빠

-
- 1) 惇典은 『書經』 「周書」 洛誥에 ‘其大惇典 殷獻民’이라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蔡沈의 註(集傳)에 의하면 惇을 厚로, 典을 典章으로, 풀이하여 周初에 殷나라 遺民과 함께 그 典章을 크게 厚待(重視)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大典會通(序文)에서 虞之惇典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요순시대의 典章을 의미한다. 또 關和는 『書經』 「夏書」 五子之歌에 있는 「關石和鈞」의 略語로 夏代の 典章을 의미한다. 註 58 참조
 - 2) 文質三統이란 夏正人統, 殷正地統, 周正天統 등 夏殷周 3대의 正朔을 의미하는데, 夏는 忠을 숭상하고 殷은 質을 숭상하며 周는 文을 숭상하여 문과 질이 왕조의 변혁에 따라 순환한다고 한다.
 - 3) 精一心法이란 『書經』 「虞書」 大禹謨에 ‘惟精惟一允執厥中’(오직 정성을 하나로 모아 진실로 중도를 취한다)라 한데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지고 흩어진 문장이 조금도 없었다. 오직 祖宗成憲을 존중하여 옛날에 시행되었다가 지금은 폐지된 것도 남기고 깎아내지 않음으로써 공경하고 삼가하는 뜻을 덧붙였다. 父祖의 과업을 자손이 계승하는(作室肯堂)⁴⁾ 아름다움을 무궁하도록 전할 것이로다.

高宗 2년 봄 相臣의 筵奏에 의하여 乙巳(正祖 9년, 1785) 이후의 教旨와 格式(律令) 중 미처 간행되지 못한 것에 관하여 刊行局을 개설하여 보완하고 편집하되, 同·異 條例는 보완하고 편집하되 양 聖朝의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옛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름을 大典會通이라 하였다. 판본이 완성되어서 臣 炳學의 이름이 總裁로 되어 있으므로 서문을 쓰도록 명하시니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큰 소리로 말씀드리기를 우리 전하가 처음 다스리심에 여러 가지 제도가 모두 잘 시행되고 제사에 공경하시며, 官人들을 독려하시고 財賦가 모자라면 절제하시며, 兵政이 해이하여지면 힘써 기강을 세우셨다. 또 刑을 善用하라는 말씀과 山林의 調和(衡虞之諧)⁵⁾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법전(章典)을 修明하신 것인데, 이 책을 보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명료하여 前代를 빛내고 後代에 전할 大經大法이 盡善盡美하였다. 詩經에 이르기를 어긋나지도 말며 잊지도 말고 옛법을 따르라 하였는데, 무릇 우리들 현직의 여러 관료들이 옛것을 따르고 永遠히 지키며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업적이 이루어지며, 만 가지 法規가 배 풀어질 것이다. 이는 진실로 옛날의 미덕을 도로 회복하는 것이며 왕명에 부응하여 그 뜻을 천하에 퍼는 셈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모두 살펴 보면 우리 전하께서 학문에 밝으시고 천성이 高明, 博厚하시며 文理가 치밀하고 알차시어 광대한 德化(大化)⁶⁾를 망라하여 그것을 집성한 것이다. 이는 실로 精一心法이 전수된 것에 연유하였으므로, 만세를 위하여 太平을 열고 生民을 위하여 법도의 기준을 세움이 여기에 있으니 오호라! 성대하도다.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臣 金炳學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쓴다.

4) 作室肯堂의 뜻은 『書經』, 『周書』, 大誥의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에서 나온 것으로서 父業子承을 의미한다.

5) 衡虞는 『漢書』에 의하면 山林을 관장하는 관원이었다.

6) 大化는 『書經』, 『周書』, 大誥에 있는 말을 원용한 것으로서 蔡沈의 註(集傳)에 化者化其固滯라 하여 응색한 것을 변화시켜 크고 넓게 함을 뜻하였다.

大典會通을 올리는 箋文⁷⁾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臣 趙斗淳,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臣 李裕元,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臣 金炳學, 崇祿大夫 行龍驤衛 上護軍 兼奎章閣 提學 臣 金學性, 崇祿大夫 議政府 右贊成 臣 鄭基世, 資憲大夫 行龍驤衛 大護軍 兼知春秋館事 臣 南秉吉, 資憲大夫 南綾君 兼弘文館 提學 臣 洪鍾序, 資憲大夫 行龍驤衛 大護軍 兼藝文館 提學 臣 朴珪壽 등은 진실로 황송하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聖人의 마음으로 성인의 政事를 행하시어 백성들을 500년 동안 키우고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유한 법규로 우리의 法書를 편집함에 있어 80년간의 법식(敎式)을 받들어 보태고 모았으니 條貫이 더욱 조화되고 거듭 빛났습니다.

이번에 대전회통을 모아서 편집한 공덕을 생각하오면, 실로 정조께서 제작하신 성과에 속한 것으로 세조 때에 비롯된 경국대전을 이어서서 크고 작은 것을 모두 빠뜨리지 않으셨고, 영조의 속대전을 널리 修明하여 본과 末을 갖추어 실었습니다. 한 임금의 법규가 모두 완성되었는데 天地와 四時의 법칙을 본 받아서 만민의 준칙이 여기에 있으며, 前後續錄과 受教輯錄이 섞여 있습니다. 비록 처음 만들어 전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혁될 때에는 다시 고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潤色의 기교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처음과 끝을 크게 밝혔으며, 또 세월의 흐름을 생각하면 오히려 律例의 증가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추이와 발전은 자연적인 것이며 王旨로서 될 수 없고, 董仲舒의 법제 개혁도 時宜에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大綱領을 끌어내는 것은 心法의 전수와 같고, 小節目의 변경과 같은 것에는 마땅히 典章이나 관례상의 증거를 갖추어 원용하여야 합니다.

태조 甲戌年과 세종 庚戌年⁸⁾의 법전은 앞뒤가 바뀌고 뒤섞여서 간혹 옛날에

7) 나라에 吉事나 凶事가 있을 때 임금이나 왕후에게 써 올리는 四六體의 글이다.
8) 『增補文獻備考』 卷135, 「刑考」에 '本朝經國元典 續典, 太祖 甲戌成(태조 3년)

없던 것이 지금 있기도 합니다. 乙巳大典⁹⁾이 편찬된 때도 점점 멀어져 가서 註를 포함하고 疏를 갖추어 진실로 萬代 무궁하도록 물려 줄 것을 도모하자면 한 통의 追刊本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唐要¹⁰⁾를 여러 번에 걸쳐 모아서 綴하여 빠진 글을 취하고, 明典을 가장 많이 수집하여 비로소 完帙을 이룩하였습니다. 믿음은 金石의 계책처럼 되어 관리들이 奉行하는 데 현혹됨이 없고, 소상함은 象魏之懸(법률을 성문에 높이 내거는 것)¹¹⁾과도 같으나 백성들의 가벼운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면 주상 전하는 지극한 효성으로 잘 계승하시어 옛 典章을 어긋나지도 않게 하시고 잊지도 않으시며, 여러 법도를 확고하게 하시니 蕭何와 韓非子의 법률을 차례 대로 정하는 것이요,¹²⁾ 九功¹³⁾이 때 맞추어 잘 정돈되었으며 伯夷의 禮秩과 垂의 技工이 모두 조화되었습니다.¹⁴⁾ 官方을 맑게 하여 인사행정이 공평하게 되었으며, 貢納制가 정리되어 稅賦의 수취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禮樂刑政이 先哲, 先王께서 후세에 물려 주신 규범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겠습니까. 父祖의 왕업을 계승하시어 개척하여 나가는 것은¹⁵⁾ 바로 後嗣를 이은 임금께서 삼가 지켜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님 앞에서 상소하여 마침내 옛 법전을 보완하여 撰輯하라는 말씀이 계시니, 經筵 석상에서의 왕명을 헤아리고 절충하여 엄격하게 간추리는 데 힘썼습니다. 廟堂(의정부)에서 보고하여 임금의 결정으로 반포한 것은 원류를 잘 탐구하여 科條가 丹青과 같이

經濟六典, 世宗庚戌成(세종 12년)'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經國元典續典이란 鄭道傳의 朝鮮經國典(태조 3년)과 經濟文鑑(태조 4년)을 의미한듯 하다.

9) 成宗 16年 乙巳에 시행된 經國大典을 말한다.

10) 唐要是 唐會要를 뜻하며 唐代의 政治의 要綱을 收輯한 것이다. 모두 100卷으로 宋 玉溥 撰이며, 淸의 乾隆帝가 儒臣에게 명하여 補訂하였다. 卷首 30卷은 皇帝에 관한 사항으로 帝號·皇妃·封禪·祭祀 등을 수록하였고 그 다음 70卷은 輿服·官號·省號·尙書省·諸司·御史臺·史館·選部·貢舉·諸使로 나누었다.(《四庫提要》史政書類).

11) 象魏之懸은 『周禮』天官 大宰에 있는 말이다.

12) 蕭何는 漢高祖 때의 法律家 겸 宰相이고 韓非子는 戰國時代 韓의 법률가이다.

13) 九功은 『書經』, 『虞書』 大禹謨에 있는 水火金木土穀의 6府와 正德, 利用, 厚生의 3事를 말한다.

14) 『書經』, 『虞書』 舜典에 의하면 伯夷는 舜代의 禮官이고 垂는 工匠이다.

15) 原文은 「堂構菑畬」인데, 이는 『書經』, 『周書』, 大誥의 「若考作室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 厥父菑闕子乃弗肯播 矧肯獲」에서 나온 말이다.

빛나도록 한 것이며, 모든 것을 깊이 살펴 본 후에 筆削이 법규에 맞도록 하여 임금님의 결재를 받았던 것입니다.

삼가 純祖, 憲宗, 哲宗 三朝의 법제를 가능한 한(이목이 미치는 한) 모아서 原, 續, 增의 諸篇과는 별도로 나누어 표시하여, 손바닥 보듯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번거로운 것을 깎아 내고 요점을 모았으니 오히려 적은 보충이라 할 수 있으나, 범례를 만들어 前代의 法規를 삼가 준수하였고 堯舜과 夏殷周代 이래 이와 같이 잘 알려져 있는 법이 또한 충분히 일관되고 있으며, 법도를 한결 같이 하라는 祖宗의 교훈은 거의 이 책에 자못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刊行의 일을 마치고 정성껏 임금께 바칩니다. 시경의 關雎編과 麟趾編의 뜻을 본받으시어 이끌어 주시고 공평하게 하여 주소서. 새겨진 판본을 살펴 보니(涓娟蠖濩)¹⁶⁾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加減한 것을 살펴 보면 道가 공자의 魯論(논어)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회통(모아서 변통한 것)을 본즉 의리를 복희씨의 易에서 취하였습니다.

앞드려 생각하오니 臣 등은 論撰할 재주가 없으나 진실로 왕명에 부응하여 그 뜻을 천하에 펴고 문장을 빛나게 하였으니, 백대를 기다리는 뜻을 可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옛 것을 계승하였을 뿐 창작하지 않았으므로 어찌 감히 한 마디 말이라도 贊할 수 있겠습니까. 편찬된 대전회통 6권을 삼가 箋文을 붙쳐서 올리면서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 斗淳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 올립니다. 同治 4년(고종 2년, 1865) 11월 일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 臣 趙斗淳 등은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16) 涓娟蠖濩는 楊雄의 甘泉賦에 있는 蠓涓娟蠖濩와 같은 것으로서 張晞은 이를 刻鏤之形(板本の 모습)이라 풀이하였다.

經國大典 序文

예로부터 임금의 천하와 국가를 차지함에 있어, 창업한 군주는 초창기의 經綸에 두서가 없어서 典故에 매달릴 겨를이 없었고, 왕업을 계승한 군주(守文之君)¹⁷⁾는 옛 章典을 준수하여 제도를 만드는 일이 없게 된다. 비록 漢高祖가 일을 계획함에 있어 빠뜨린 것이 없었다고 하지만 三章의 법으로 대략적인 법규의 모습만을 남겼고, 역사가들은 당나라가 모든 법제를 완비하였다고 하지만(萬目俱張)¹⁸⁾ 육전이 만들어진 것은 오히려 중엽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하물며 漢唐보다 못한 나라에 있어서라.

공손히 생각하니, 세조께서 천명을 받아 즉위하여(握符)¹⁹⁾ 중흥하시니 그 공이 창업주와 守成主의 것을 겸하시어, 文이 밝아지고 武가 안정되었으며 禮가 갖추어지고 樂이 부흥하였으나, 오히려 부지런히 잘 다스림을 도모하시고 널리 제도를 만드시면서 일찌기 좌우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종의 깊은 인덕과 두터운 혜택으로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법전에 두루 실려 있으니, 이름하여 경제육전의 元六典과 續六典 및 謄錄이라 하였다. 또 여러 번 내리신 교지가 있으니, 법이 불미한 것은 아니나 관리가 용렬하고 어리석어 받들어 시행하는데 어리둥절 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법조문이 번잡하고 전후가 모순되어 하나로 크게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헤아려 加減하여 변통한 것을 모아서 刪定하여 만세의 成法을 만들고자 하시고, 寧城府院君 崔恒·右議政 金國光·西平君 韓繼禧·右贊成 盧思愼·刑曹判書 姜希孟·左參贊 任元濬·右參贊 洪應·同知中樞府事 成任 및 戶曹判書 徐居正에게 명하시어 여러 조문을 한데 모으고 상세히 덧붙쳐 채택하여 차례대로 편찬해서 책을 만들되, 번잡하고 불필요한 것은 깎아 내어 精簡하게 되도록 애썼으며, 무릇 조치할 것은 모두 임금에게 보고

17) 守文之君은 文物, 制度를 先代로부터 이어받은 守成之君을 말한다.

18) 萬目俱張은 모든 法制가 完備되고 있음을 뜻한다.

19) 握符란 임금될 자의 징표로서 하늘이 내린 符瑞를 갖고 있는 것, 또는 왕위에 오르는 것을 뜻한다.

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永順君 溥와 河城府院君 鄭顯祖에 명하시어²⁰⁾ 출납을 관장하게 하였고 서책이 완성되자 6권으로 정리하여 바치니 이름을 경국대전이라 정하여 주셨다. 刑, 戶 2典은 이미 반포하여 시행되었으나 나머지 4전은 교정을 마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승하하시고(八音遽遇)²¹⁾ 성상(睿宗)께서 선왕(世祖)의 뜻에 따라 하던 일을 끝마치시고 中外(京鄕)에 반포하셨다.

신(徐居正)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천지가 광대하여 만물 중 하늘이 덮고 땅이 실지 않은 것이 없으며, 四時의 운행으로 만물이 생육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성인 법제를 지으심에 만물 중 혼쾌히 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성인이 지으신 법제도는 천지와 四時의 운행법칙과 같은 것이다. 옛날부터 법제정의 융성함이 成周만한 것이 없는데, 周官은 6卿으로서 천지와 四時에 짝 맞추었으며,²²⁾ 6卿의 직관은 하나라도 비워서는 안된다.

우리 태조 康獻大王은 하늘의 뜻과 인심에 순응하여 집안을 일으켜 나라를 세웠으며, 법리를 확립하고 세칙을 마련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시니(立經陳紀)²³⁾ 그 규모가 넓고 遠大하였다. 정종, 태종, 세종께서 서로 이어서 자손들을 위하여 좋은 규범(법제)을 남겨 주시어(貽謀燕翼)²⁴⁾ 제도가 밝게 갖추어졌다. 세조께서 거룩한 생각과 英明한 지혜로 만드신 법제가 훌륭하여 법칙에 맞고 千古에 탁월하였다.

전하(예종)께서는 총명하시어 時憲이 잘 준수, 시행되도록 하시고 금과옥조로 삼아서 구슬에 새긴 듯 영원히 빛나게 하시니 아름답고 거룩하도다.

그 육전이라 함은 곧 주나라의 육경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요, 그 좋은 법의 아름다운 뜻은 곧 周의 詩인 關雎와 麟趾편에서 나온 것으로서 文華와 質朴의

20) 永順君 溥는 세종의 5남인 廣平大君의 아들이므로 세조의 조카이며, 鄭顯祖는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의 남편으로 세조의 유일한 사위였다.

21) 八音은 金石絲竹 등 8종의 악기를 말하며, 八音遽遇은 갑자기 음악이 끊어지는 것, 즉 갑작스런 國喪을 당한 것을 말한다.

22) 周禮의 天官(吏) 地官(戶) 春官(禮) 夏官(兵) 秋官(刑) 冬官(工)의 6卿을 말한다.

23) 立經陳紀란 훌륭한 법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뜻이다.

24) 貽謀燕翼이란 자손을 위하여 좋은 규범을 남겨주는 것을 말한다.

加減(調和)이 알맞아 찬란하게 빛나니(文質彬彬),²⁵⁾ 누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제작이 周官, 周禮와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천지, 사시에 맞추어도 어긋나지 않고 前聖에 비추어 생각하여도 그릇되지 않으며 百世 이후의 성인에게 갖다 주어도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이어갈 聖子神孫이 成憲에 따라 잘못하지 않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밝은 다스림이 어찌 成周의 융성함에만 비할 뿐이겠는가. 억만년 무궁할 왕업이 더욱 더 유구하고 길어질 것이다.

成化 5년(睿宗元年) 己丑(1469) 9월 하순 正憲大夫 戶曹判書 兼藝文館 大提學 同知經筵事 臣 徐居正이 두손 모아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삼가 서문을 쓴다.

25) 文質彬彬이란 文華와 質朴함이 적당하게 調和되어 갖추어졌음을 말한다. 『論語』 「雍也」에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也'라 하였다.

經國大典을 올리는 箋文

翰忠 衛杜 協贊 靖難 佐翼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寧城府院君 兼領春秋館事
臣 崔恒 等은 진실로 황송하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성인이 천하를 經綸하는 데는 반드시 덕을 쌓아 백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 王者가 때에 맞추어 법조문을 加減함은 대개 범규범을 만대에 물
려 주려는 계책을 위해서 입니다. 이제 大典을 정하는 실로 좋은 때를 만나서
가만히 생각하오면 治國은 天道와 같이 하되, 政事는 時俗에 따라 변혁해야 하
는 것입니다. 國都와 향촌을 구획하여 경영함에 있어서 주나라는 六卿의 官職으
로 나누었고(體國經野)²⁶⁾ 번거롭고 가혹함을 제거한 것은 한나라의 約法三章이
었으니, 모두가 설치하고 실시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영구히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응성하는 우리 왕조가 크게 천명을 받아(誕膺景
命)²⁷⁾ 명철한 임금들이 계승하시어 百王의 규모를 넓히시고, 綱紀²⁸⁾가 모두 배
풀어져 드디어 일대의 制作을 새롭게 하셨으나, 되돌아 보건대 纂錄이 지나치게
繁亂하여 奉行하는 자가 그 浩穰함을 걱정하였습니다.

세조 惠莊大王은 거룩하시고 문무를 겸하시어 여러 간신을 소탕하여 세상을
안정시킴에 있어서 어려움을 두루 겪으시고, 六龍을 타고 왕위에 오르시어 처음
과 끝을 크게 밝혔습니다. 높이 이룬 공덕은 더욱 성대하고 아름답고 큰 智謀로
(秩秩大猷)²⁹⁾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일에는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며, 다스림에는
진실로 답습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이에 옛 법전의 기재사항을 취하고 또한
새로 만든 科條를 참작하여 이를 모아서 변통하였는데, 옛 典章에 관점을 두고

26) 體國經野는 國都와 鄉村을 구획하여 경영한다는 것인데, 周禮의 '體國經野 設官
分職'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다.

27) 『書經』 「武成」篇의 '誕膺天命'(크게 천명을 받아)이란 말을 원용한 것이다.

28) 綱紀는 나라를 다스리는 大法과 細則을 말한다.

29) 秩秩大猷는 『詩經』 「小雅」 巧言과 『後漢書』 「文苑上」 傅毅傳에 있다.

모든 것을 임금님의 판단으로 裁定하였습니다. 細碎한 것은 모두 버리고 큰 법도를 이끌어 내는데 힘썼으며, 간명한 것으로서 번잡한 것을 제어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만들 것을 기대하였으니, 한결같이 명확하여 장차 무궁한 법규로서 계시 될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성스럽고 존경스러움이 날로 높으시고, 총명하심이 때로 더 하시어 이른바 선왕이 만드신 方法을 계승하여 터를 닦으시어(底法之作室肯構),³⁰⁾ 그르치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며 마땅히 멀리 바라 보면서 승양하고(越印),³¹⁾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도모하며 잘 繼述하셨습니다. 몸소 萬機를 총람하시는 자리에 임하시는 始初에 육전의 撰修를 급선무로 하여 그 요점을 추려 내고, 그 강령을 이끌어 내어 선왕의 뜻을 이어 받았고, 時俗에 맞고 실용하기에 적합하게 하여 민중의 심정에 합치시켰으니, 실로 이는 국가를 경영하는 훌륭한 章典이요, 어찌 오로지 백성들을 법도에만 얽어 매어 두는 것이 될 뿐이겠습니까(納民於軌物).³²⁾

臣 등은 용렬함을 무릅쓰고 외람되이 편찬을 맡아 밤낮으로 헤아리고 생각하였으나, 天地의 正道(天經地緯)에 어찌 털끝 만한 도움이라도 되었겠습니까. 다만 삼가 지휘를 받들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살펴 보시고 준수할 것을 申飭하시며 후인을 啓導하여 모두가 잘못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손에게 남기실 좋은 계책인 법규를 다시금 우러러 보면서, 成憲을 거울삼아 영원히 허물이 없게 하여서, 왕업을 후세에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撰修한 경국대전 6권을 삼가 전문을 붙여 올리오니 감격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 최항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드립니다. 成化 5년(예종 원년) 己丑(1469) 9월 輸忠 衛杜 協贊 靖難 佐翼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寧城府院君 兼領春秋館事 臣 崔恒 等은 전문을 올립니다.

30) 『書經』 「大誥」篇의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弗肯堂 矧肯構’(만약父가 집을 짓고자 方法을 마련하여 놓았으나 그 아들이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는가)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31) 越印도 『書經』 「大誥」篇에 있는 말로서, 멀리 바라보며 승양한다는 뜻이다.

32) 『春秋左氏傳』 隱公 5년春에 ‘君將納民於軌物者也……… 不軌 不物 謂之亂政’이라 하였다.

英祖御製의 續大典卷首의 後孫에 대한 勅勅 題辭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있는 곳에 법전이 있었다. 경국대전은 우리 나라의 典章으로 법문을 만들게 된 연유가 서문에 자세하게 쓰여 있고, 금과옥조는 책을 펼치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나 같은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감히 增撰 하겠는가. 이번의 속전은 단지 전, 후속록과 수교집록의 三錄을 편집한 것일 뿐이다. 대개 옛날부터 법이 오래되면 번잡함이 생기는 것이다. 漢初의 입법은 불과 삼장이었는데도 漢文帝가 가혹한 형벌을 삭제하였으니 그 번거로웠음을 가히 알 수 있다.³³⁾ 그 代數가 얼마되지 않아도 이러한 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물며 우리 왕조는 3백여년이나 되어 법에서 枝葉이 생겨났으니 어찌 한나라 때의 것에 견주어 말할 수가 있겠는가.

법문이 날로 번잡하고 강령이 점점 문란하여 관리가 멋대로 농간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리하여 續典을 찬수하려는 것이지만 지금 억측하여 생각해 낸 것이 아니고 옛날 현종, 숙종 양조의 先正臣³⁴⁾들이 건의한 것이니, 이제 또 겨를이 없다면 어느 때를 다시 기다리겠는가. 특히 纂輯聽을 설치하여 속육전을 만들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詞臣³⁵⁾에게 명하여 특히 그 글을 짓게 하였는데 지금의 머리글은 의미가 심장한 것이다. 지난날의 문서를 살펴보니 漢宋의 것이 重厚하다고 하나 어찌 漢宋을 본받겠는가. 마땅히 祖宗朝의 것을 본받아야 한다.

열성조의 큰 덕과 후세에 남긴 법규가 仁厚하였으나, 세대가 내려 와서 習俗이 나빠지고 옛 풍속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속전의 大要가 바로 여기

33) 馬端臨, 『文獻通考』下 (北京, 中華書局, 1984 影印本) 卷163 刑考2에 해당記事가 있다.

34) 金壽恒, 金壽興, 南九萬, 崔錫鼎, 李世白, 申琬, 李翊, 尹趾完, 趙師錫, 徐文重 등을 의미한 듯하다.

35) 詞臣이란 文學 侍從之臣을 말한다. 여기서는 春秋館의 職을 겸한 관료를 의미한다.

에 있는데, 그 요점이 무엇인고 하니 寬과 厚가 그것이다. 기타 조절하고 꾸미는 것은 관료들에게 남겨진 것이다(節文).³⁶⁾ 아! 후손들이여! 이를 엄두에 둔다면 어찌 細節을 궁구하겠는가. 마땅히 큰 뜻을 살피야 할 것이다. 이른바 이 책의 六典節目은 어찌 나의 뜻으로만 된 것이며 또한 어찌 백성들의 공만으로 된 것이겠는가. 옛날 후한의 東平王은 집에 있으면서 善을 즐겼고, 蜀漢의 昭烈帝는 아들에게 善하도록 諭勅하였다.³⁷⁾ 寬과 厚는 그 본 바탕이 선이다.

지금 내가 여기서 또한 깨우쳐 줄 것은 유약하고 겁 많은 것이 선이 아니라 본성이 착한 것이 선이라는 점이다. 이것을 省察하여 오직 성실하고 공경해야 한다. 欽仰하고 恤慰하는 것이 곧 敬이며 본 받고 준수하는 것이 또한 誠이다. 형전을 가필하고 삭제하면서 이어서 이 글을 쓴다. 오호라! 이 마음은 蒼天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 아! 나의 후예들은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言教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訓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式體訓勅).³⁸⁾

甲子(閏逢困敦)³⁹⁾ 仲秋 上旬에 題하노라.

資憲大夫 戶曹判書 兼知春秋館事 臣 徐宗玉이 왕명을 받들어서 쓴다.

36) 『孟子 集注』, 「離婁上」에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라 하여 禮의 본질은 인과 의를 조절하고 꾸미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37) 後漢의 東平王은 劉蒼이고, 蜀漢의 昭烈帝는 劉備이다.

38) 式體란 각종의 장애물을 밀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39) 『爾雅』, 「釋天」에 '太歲在甲曰閏逢, 在子曰困敦'이라 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영조 甲子年은 1744년이다.

英祖御製의 續大典에 관하여 諸官들에게 다시 勅諭하는 간단한 글

이번에 대전의 속전을 만든 것은 깊은 뜻이 있다. 일시적인 칙령이 곧 수교(법률)가 됨으로서 律文이 수시로 들쭉날쭉하게 되니 관리가 봉행하기에 현혹되고 小民이 어찌할 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을 모아서 속전을 완성함에 있어서 그 번잡한 것을 깎아 내고 그 요지를 바르게 하였다. 이 속전을 반포한 후에도 다시 前鞞을 밝게 된다면 纂輯의 뜻이 어찌 남아 있겠는가. 이후로는 비록 飭教가 있더라도 법전에 실어서 항구적인 條文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육조를 비롯한 京外의 관료들은 스스로 거행하는 것은 좋으나, 법전에 混錄하지 않도록 하여 그 浩繁함이 없게 하라.

관계되는 법조문은 明律 및 경국대전, 속대전과 대조하여 살펴 보고, 거기에 의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고하여 법률로 정하라. 만약 각자 자기 뜻에 따라 멋대로 법을 엄하게 하거나 너그럽게 하는 자가 있으면 비변사와 승정원에서 잘 살펴서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인습에 따라 혼잡하게 되지 않게 신칙하며 한편으로는 반포된 속전을 믿도록 하라. 같은 해 季冬에 또 題하노라

通訓大夫 行世子侍講院 司書

臣 鄭夏彦이 왕명을 받들어 쓴다.

續大典 序文

무릇 聖王이 다스리는 도리는 그 근본이 옳음에 있고, 그를 보필하는 데는 또한 五刑과 五服으로서 였으니⁴⁰⁾ 舜임금의 조정에서 널리 인재를 구하여 이미 司徒로서 임명하였고 다시 皐陶가 作士(廷尉)가 되었던 것이다.⁴¹⁾ 그러나 5륜을 베푸는 것은 너그럽게 해야 하고, 5형에 복역시키는 것은 밝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성인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고르게 하는데(道齊)⁴²⁾ 어찌 그렇게 깊고도 멀었던가.

공손히 생각하오면 우리 태조께서 왕업의 토대를 처음으로 개창하심에 큰 규범과 넓은 계책이 夏殷周 三代의 모습 그대로였고, 법도를 제작하여 경제육전 원전과 속전이 있었으니, 거룩한 자손들이 서로 이어서서 정성껏 옛 법전을 준수하였으나, 고금의 민속이 달라지고 법이 오래 되면 폐단이 생겨서 바꾸지 않을 수가 없어서 수시로 헤아려서 거기에 맞추도록 힘썼다. 아! 우리 열성조의 깊고 큰 인덕이여! 우리 세종의 六典臚錄은 元續二典에 의거하였고, 세조는 육전을 절충하여 경국대전을 지으셨으며 성종의 속록과 중종의 후속록은 실로 경국대전을 보충한 것이다. 우리 肅宗 때에 이르러 受教輯錄과 典錄通考를 거듭 편수하여 너그럽고 엄하게 加減한 것이 비록 다른 것 같으나, 형벌을 가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바로 이끈 것은 선왕과 후왕이 같은 바였다.

이제 우리 전하(영조)께서 즉위하신 지 20년이 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시고 부지런히 하시며, 조종의 心法을 잘 이어서서 오로지 너그러움과 밝음으로 五倫과 五刑을 닦으셨으나 옛 憲章과 新條文이 간혹 크게 차이가 있어서

40) 5刑은 笞·杖·流·徒·死刑이고 5服은 天子와 諸侯·卿·大夫·士의 服, 5等の 喪服 또는 5刑의 罪에 복역하는 것이다.

41) 作士는 王莽 때의 官名으로 秦漢代의 廷尉에 해당한다. 정위는 刑獄을 맡은 관명이다.

42) 道齊는 『論語』 爲政篇의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耻,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耻且格」에서 나온 말이다.

(徑庭)⁴³⁾ 번잡하고 간명한 것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가볍고 중한 것을 적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에 臣 徐宗玉, 金若魯, 李宗城, 李日暉, 金尙星, 具宅奎 등에게⁴⁴⁾ 명하시어 그 일을 관장하게 하시고, 수교를 모아서 분류하고 합류하여 일대의 법전을 제정하였으며, 또三公에게 명하사 그것을 총령하게 하였으니, 편집하고 모아서 엮은 것은 비록 여러 신하의 손으로 되었으나 그 取捨와 裁制는 모두 임금께 여쭙어 王旨로서 한 것이다. 임금님의 뜻이니 조심하고 조심하여서 공경하고 삼가하는 뜻을 남겨라. 아! 우리 거룩하신 祖王과 父王을 본받으시고 드디어 그 책을 속대전이라 이름지으셨다. 臣 元景夏가 현재 館閣의 직임을 맡았으므로 서문을 쓰도록 명하셨기에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리기를, 무릇 武王과 周公의 효가 뚜렷하다 함은 사람의 뜻을 잘 계승하고, 사람의 일을 잘 따르는데 불과한 것이라 하였다.

아! 우리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시며 선왕의 정치를 받들었고, 좋은 법도는 周官에 따르시어 크게 밝히고 크게 이으셨다(丕顯丕承).⁴⁵⁾ 진실로 시경의 關雎와 麟趾편의 교화를 본 받았으니 이는 공자가 말씀하신 바 선왕의 뜻과 일을 繼述하신 것이며 효를 나타낸 지극한 것이다. 하물며 壓膝刑과 烙刑을 배제하고 全家徙邊의 형을 줄여서 德意가 충만하니 가히 大命을 받아 이으심 이로다. 그러한 즉 漢文帝가 肉刑을 제거한 것은 진실로 아름답다 하기에 부족하고 요순의 無刑之治를 臣은 장차 손잡고 기다리겠다. 비록 聖哲한 임금이 위에 계셔도 밝게 살피는 관료와 慈惠로운 민중이⁴⁶⁾ 받들어 周旋하는 일이 없다면, 오류이 이완되고 오형이 문란하여져서 制治를 할 수 없게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書經에 이르기를 인명을 존중하는 덕이 민심에 스며 들어서 이에 백성들은 관리의 뜻을 犯하지 않았다고 하였다(不犯于有司).⁴⁷⁾ 신은 감히

43) 徑庭은 小路와 뜰의 合稱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莊子).

44) 『英祖實錄』 권59 및 권60, 英祖 20년 6월~10월에 보이는 이들의 관직은 金若魯·李宗城·徐宗玉 등이 判書(戶·禮·刑), 金尙星이 參判(刑)이었고, 李日暉와 具宅奎 등도 堂上官(備邊·纂輯)이었다.

45) 『書經』 「周書」 君牙篇의 ‘嗚呼丕顯哉, 文王謨, 丕承哉, 武王烈’에서 나온 말이다.

46) 師는 스승, 군사, 官名 등의 여러 뜻이 있으나 『書經』 「虞書」 大禹의 ‘摠朕師’의 師(백성, 민중)와 같은 뜻으로 풀다.

전하를 위하여 외우노라.

嘉善大夫 行忠武衛 副司直兼藝文館 提學 臣 元景夏는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쓴다.

47) 『書經』 「虞書」 大禹謀에 ‘皐陶曰…… 罪疑惟輕，功疑惟重，與其殺不辜，寧失不經，好生之德，洽于民心，茲用不犯于有司’라 하였다.

續大典을 올리는 箋文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臣 金在魯,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世子傅 臣 宋寅明, 輸忠竭誠奮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豐原府院君 臣 趙顯命 등은 진실로 황송하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법을 세우고 세칙을 만든 것은 비록 창업과 전수에 근본이 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야 함과 동시에 반드시 先王의 뜻을 이어 서술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을 모아 속전 6편을 蒐輯하여 간행하였습니다.

생각하옵건대 경국대전은 실로 우리 나라의 成憲으로서 周官의 법도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두 임금께서⁴⁸⁾ 모아서 편수하신 것으로서 夏나라의 關石⁴⁹⁾도 거기에 남아 있는 만민의 준칙이 되는 책입니다. 橫看이 直敍로⁵⁰⁾ 되어 있어 법의 형식이 모두 구비되었고, 법의 줄기는 간략하나 활용을 浩繁하게 하여 제반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니, 한 임금의 定制요, 백대로 내려 갈 큰 법규가 된 것입니다. 다만 세대가 점차로 내려오며 따라 연계되는 法命이 거기 따라 변동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므로 열성조가 계승할 때에 속편을 두번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속종께서 在位하실 때에도 또 受教輯錄을 완성하였으니, 비록 법례가 점점 갖추어졌음은 다행이나 오히려 典書의 완성이 정체되어 선후의 憲章간에 간혹 節目上의 모순이 있게 되고, 중간 연혁 역시 기재사항의 누락이 많았으나 당시에는 겨를이 없어 고치지 못한 채로 述作할 것을 오늘날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48) 世祖와 睿宗을 의미한다.

49) 夏나라의 關石은 關門通過의 稅金單位에 관한 節目. 註 58 참조.

50) 橫看이란 매년의 支出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형으로 列記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중앙관청의 경비명세서의 法式이다. 直敍는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공손히 생각하오면 至行, 純德하시고 英謨, 毅烈하신 주상전하께오서는 몸소 曾參과 閔損의 효도를 행하시고⁵¹⁾ 요순의 정치를 힘껏 베푸셨습니다.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리신 지 20년이 되었으나 부지런히 공을 세우시고 폐단을 보완하셨습니다. 백년을 소급하여 國禮를 修撰하시어 이를 마치시면서 五禮儀를 이미 정하셨고, 나라의 法制를 살피시어 육전을 改修하셨습니다. 職官과 課試의 변통은 고례를 참고하였고 軍旅와 貢賦의 更張은 이번 법전 속에 갖추었습니다. 全家徙邊之律을 줄여서 가족 중 일부를 남기는 법으로 하시어 상하 차별없이 고루 사랑을 베푸셨고, 免稅流來에 관한 법규를 바르게 하사 宮中과 府中이 일체가 되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법을 검토하시면서 거의 잠자리를 잇을 정도로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임금님의 재결에 따랐으며 子游와 子夏의 문장⁵²⁾에 감히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三后⁵³⁾가 이루신 사업을 이어받아 一代의 항구적인 법전을 이룩하시니 今文과 古文의 더하고 뺀 것이 비록 다르나 선왕과 후왕의 법리는 같습니다. 임금께서 친필로 머리글(題辭)에 쓰신 수십자는 깊숙이 간직할 勅訓이며 또 직접 쓰신 권두언의 몇백 마디는 保佑하시는 뜻을 품은 지성입니다. 처음으로 책 이름을 내려주시니 앞으로 다가 앉아 밝은 명령을 겨우 받들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신하가 올린 글을 상고하시면서 先正臣의 格言을 再感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편찬 작업을 마치고 임금께 올리는 정성을 감히 나타내는 바입니다. 시경 인지편의 지극한 教化(至化)⁵⁴⁾는 조종의 心法으로 서로 전하여질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 줄 큰 규범은 자손의 법전으로 여기에 남아 있게 되어 임금이 정무를 마치신 후 취침 전에 독서할 시간에 보시도록(乙丙之覽)⁵⁵⁾ 마땅히 備置될 것이고, 집무시간에 더욱 더 힘쓸 수 있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庚甲之猷).⁵⁶⁾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신 등은 모두 아는 것이 없는데도 외람되이 편찬을 말

51) 曾參과 閔損은 孔子의 弟子로서 孝行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52) 子游와 子夏는 공자의 제자로서 문학이 뛰어났다고 한다.

53) 三后를 세종, 세조, 성종으로 보는 견해(법제처, 역주《續大典》 1965)도 있으나, 세조, 예종, 성종이거나 성종, 중종, 숙종일 수도 있을 것이다.

54) 至化는 王者의 信義와 仁厚함을 뜻한다.

55) 乙丙之覽이란 임금이 정무를 마치고 취침전에 독서하는 것을 뜻한다. 乙은 밤10시, 丙은 밤12시를 의미한다.

56) 庚은 아침 8시, 甲은 밤 8시이니 庚甲은 執務時間內임을 뜻한다.

아서 임금님의 敎命을 받들어 宣揚하는 데는 비록 부끄러움이 있으나(縱有慙於對揚)⁵⁷⁾ 典章을 상고하며 경전에 맞추었으므로 준수하기에는 거의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편찬된 속대전 6권을 삼가 전문을 붙쳐서 올리면서 매우 감격스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 在魯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乾隆 9년 11월 일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 世子師 臣 金在魯 등은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57) 縱은 雖와 같고 對揚은 『書經』 說命下의 '敢對揚天子之休命'에서 나온 것으로서 君命에 부응하여 그 뜻을 천하에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正祖御製의 大典通編의 題辭

경제육전·경국대전·속록·후속록·수교집록·속대전 등은 우리 나라의 典章이다. 그러나 그 책 내용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관리들이 그 浩繁함을 꺼렸다. 그리하여 편찬국을 개설하여 法令을 모아서 이름을 大典通編이라 하였는데 선왕의 법을 준수하여 修明하였을 따름이다. 내가 무엇을 撰述하였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儀式은 文王의 典章을 본받는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어긋나지 않고 잊지 않으며 모두 옛 章典을 따른다고 하였으니, 나는 이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또 나의 자손대대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

때는 내가 즉위한지 9년 되는 重陽節이다.

大典通編 序文

왕 8년 臺臣의 말이 있었는데 즉위 후의 受教로 律令格式이 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분류하여 책으로 엮어서 시행하기 편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속전이 甲子年에 완성되었으나 선왕의 敎令 중 갑자 후의 것이 오히려 많은데, 감히 가까운데 있는 것만 오로지 취하고 먼데 있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또 원전, 속전이 각각 판 책으로 되어 있어 살펴보기 어려움으로 내가 일찌기 그것을 걱정하였다. 마땅히 두 법전과 新舊 受教를 모아서 한책으로 통합하고자 두셋 卿宰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맡게 하고 大臣이 그것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책이 완성되어 이름을 大典通編이라 하시고 臣 李福源에게 서문을 쓰도록 명하셨으니,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말씀 올리기를 육전의 명칭은 주례에서 비롯되어 그 후 수천년 동안 고치지 않은 것은 대개 天地, 四時에서 형상을 취하여 직관에 관한 현장을 지었으며 六은 자연의 數이고 典은 當然의 법칙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는 聖君이 만드시고 明君이 繼述하시어 정연하게 잘 갖추어 있으며, 신라와 고려의 누습을 모두 씻고, 경제육전에서 비롯하여 경국대전으로 大成하였으나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에서 여러 가지를 섞어 모았고 典錄通考에서 이를 회통하였다. 우리 聖祖께서 속전을 만드심으로써 한 임금의 제작의 성대함과 열성조의 덜고 보태는 뜻이 찬란하게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원전은 大全(完編)이 되고 속전이 補編이 되어 編帙이 달라서 서로 聯屬되지 않고, 단지 그 補則만 보아서 그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갑자년으로부터 58)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의 말씀 중 關和에 속한 것이 59) 또한 한 두 가지가 아

58) 1744년 즉 영조 20년을 뜻한다.

59) 關和는 『書經』 「夏書」 五子之歌篇에 있는 關石和鈞의 略語이다. 그 뜻은 度量衡으로 모든 것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일을 公平하고 바르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關石은 원래 관문 통과시의 세금 단위에 관한 節目 또는 저울을 의미하며 和鈞은 무게를 고르게 한다는 것으로 때로는 夏代의 法制를 의미하기도 한다.

니지만, 諸司의 謄錄이 산만하여 통일된 법칙이 없어서 흐름을 찾아 보면, 간혹 근원이 애매하고 지난일을 상고하면서 간혹 미래의 것을 빠뜨렸으며 거행함에 현혹되기 쉬운 것 등 황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부득이 이 通編을 만들어야만 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 聖上이 즉위하시어 다스리려는 시초부터 밤낮으로 조심하시고 오직 제도에 專念하시며 하늘의 戒律을 살피셨다. 또 법은 반드시 先代의 것을 거울 삼으시고 謀策은 반드시 후대에 남기도록 하였다. 經筵 席上에서는(屢黈)⁶⁰⁾ 강론하시고 정청의 堂上에서 다스리면서 궁중과 부중, 도시와 시골에서(政事)를 행하시는 것은 비단 현재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옛날까지를 생각하였고, 또 일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차 만세에 물려주려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이름을 통편이라 한 것은 여러 편을 한 편으로 통합시킨 때문이다. 비록 한 편이 되었지만 原續과 增補로 표시해서 구별하여 선후를 나타내었고, 부문을 나누고 조목을 열거한 것은 경국대전 원전에 따라 거기에 일치시킴으로서 근본과 始源을 중하게 하였다. 관직수에 증감이 있었고 법이 시대에 따라 변혁됨이 있었는데, 감하고 변혁된 것을 또한 쓴 것은 옛 것을 남겨서 보고자 함이오, 옆으로 보게 된 것을 고쳐서 직행으로 한 것과, 繁文을 刪削하여 比類에 따르게 한 것은⁶¹⁾ 상고하여 조사하는 것을 편하게 함이다. 이 책이 한번 출판되어 前聖과 後聖의 良法과 아름다운 제도가 질서 정연하게 모두 기재되어 간결하면서도 빠진 것이 없고 상세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며, 수첩의 同異와 조례의 창제 및 인습이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여 손바닥 가리키듯 분명해서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이 살피서 행함에 典故를 살피거나 胥吏에게 묻지 않아도 되었다.

이는 실로 우리 성상께서 문리를 치밀하게 살피신 일이 政教에 넘쳤고, 아울러 편찬에도 미쳤으며 大體를 가르쳐 주셨고, 細目을 稟裁하시어 작은 卷帙로서 이같은 대전을 이룩하셨으니 盛大하지 않는가. 비록 성인의 心法의 精微함과 治化의 융성함은 실로 禮樂政刑의 사이에 깃들여, 그 뜻을 알게 되면 비단 준수하

60) 屢黈은 임금의 거처하는 곳 또는 경연청을 뜻한다.

61) 比類란 近類와 같은 것이니 比類에 따른다고한 것은 類推解釋을 허용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는데 반드시 힘쓸 뿐만 아니라 장차 미루어 밝혀 보는 것을 더욱 넓힐 것이고, 그 뜻을 해득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하여 오로지 유사한 사례만 살펴서 고찰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율령과 격식도 오히려 그 때에 변동이 있을까(出入)⁶²⁾ 두려운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망연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이다. 여러 현직 관료들은 지금의 임금님의 법제를 講究하여 분명히 하는데 뜻을 두어서 비단 그 글을 익힐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뜻을 해득하는데 힘쓴 후에 거의 무궁하도록 전하고 시행하는데 폐단이 없게 하여 영원히 우리 聖上이 법전편찬을 특별히 명령한 큰 뜻을 천하에 떨쳐야 한다.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臣 李福源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쓴다.

62) 出入은 『莊子』 「知北遊」의 ‘汪然勃然 莫不出焉 油然漻然 莫不入焉’에 있어서의 출입과 같이 여러가지로 변함을 뜻한다.

大典通編을 올리는 箋文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致仕 奉朝賀 臣 金致仁, 崇政大夫 行龍驤衛 副司直 兼判義禁府事 臣 金魯鎮, 正憲大夫 漢城府判尹 臣 鄭昌聖, 資憲大夫 行江華府留守 兼 鎮撫使 三道水軍統禦使 臣 嚴璫 등은 진실로 황송하고 두려워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올립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前聖과 後聖이 서로 이어서 온갖 법도를 정하심에 지금의 글과 옛글이 모두 들어 있으니 이에 하나로 회통하여 父祖가 행하신 바에 따라서 시행하게 된(率乃攸行)⁶³ 것인데 이는 繼述한 것이지 창작한 것은 아닙니다.⁶⁴ 이에 원, 속편을 살펴 보면 大典은 우리 조종조의 큰 법규로서 세조가 창작하신 국가 경영의 大計이며 빛나는 통치에(煥乎綱維)⁶⁵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속전은 영조가 계술의 孝를 다하여 비유하건대 거문고 줄을 개조함과 같이 周官의 제도를 모방하여 육전의 조례가 크게 갖추어져서 夏府에서 關和를 秘藏하여 둔 것처럼 한 임금의 법규범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책이 편별로 각각 나누어져서 참고하고 근거를 삼는데 있어서 서로 엇갈려서 매번 어려웠던 것입니다. 戴記⁶⁶가 비록 儀禮에서 나왔지만 누가 능히 흐름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근원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공자의 十翼(易)이 古經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대개 本體(原理)로 인하여 그 작용을 表徵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列聖朝의 수교가 모두 등재되었으나 간간이 모순된 것이 많아서 시행하기 어려웠고 전후속록과 수교집록 등 여러 법서가 다른 책으로 되어 있으니 어찌 이것이 條貫上으로⁶⁷ 쉽게 현혹되지 않겠으며, 어떻게 옛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63) 率乃攸行은 『書經』 「商書」 太甲上篇의 「率內祖攸行」과 「같은책」 「周書」 君牙編의 「率內祖考之攸行」에서 나온 말이다.

64) 원문은 「述而不作」인데 『論語』 「述而」篇에 있다.

65) 煥乎綱維란 빛나는 통치, 또는 훌륭한 법도를 뜻한다.

66) 戴記는 戴氏가 정리한 禮記로서, 前漢의 戴德이 모은 禮記 85편을 大戴禮記라 하고 그의 조카 戴聖이 모은 49편을 小戴禮記라 하였다.

67) 條貫은 일을 하여가는 도리, 條理, 일의 경로, 법률 내용의 표준이 되는 사회통

까. 정사는 반드시 들을 살펴서 중간으로 절충해야 하는 것이니 마치 오늘을 기다려서 과연 하나로 통합하여 후세에 남기도록 한 것 같습니다.

공손히 생각하면 주상전하께서는 9년간 재위하시면서 여러 공적이 모두 넓혀졌습니다(庶績咸熙).⁶⁸⁾ 人事(銓衡)를 간소화하였으며 兵事를 잘 다스렸고, 법령이 완비되었으며(畢張治具),⁶⁹⁾ 池澤과 橋梁을 수선하였고 부역을 減輕시켰으며 폐단의 근원을 깊이 변혁하셨습니다. 요순시대의 법을 공경하면서 법전을 군읍으로 반포하시니 주례가 그 속에 다 있고, 禮官(秩宗)⁷⁰⁾에게 의식을 모아주니 옛 典章으로 인하여 잘못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선왕의 아름다운 업적을 이어 받아서 盡善盡美하시며⁷¹⁾ 문왕의 계책과 무왕의 공렬은 무궁한 법도(圖)로서 천명하고자 하셨으며 금과옥조는 항구적인 법제가 되도록 하였고, 聖念을 베푸시어 선왕의 성현을 거울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은 왕명을 받아서 나누어 찬수하면서 옆으로 보게 된 것을 바꾸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주로 핵심적인 것을 간추리는 데 힘썼으며, 古例를 今例로서 참조하여 크고 작은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도와 같이 하여서 그 길을 돌아보면 한 가지입니다(顧其揆則一也).⁷²⁾ 때 맞추어 시행하면서 어찌 다시 그것을 들로 나누겠습니까. 틈난 것과 누락된 것을 보충하고, 여러 조문의 사이에 절목을 세우며 선후가 뒤섞인 것은 동그라미 셋으로 표를 하였으며, 보태고 깎아 내는 데는 모두 임금님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격식은 舊典을 따랐고, 법령이 一字를 굿듯이 갈끔하고 분명하나(較若畫一)⁷³⁾,

님 등을 의미한다.

68) 庶績咸熙는 『書經』 虞書 「堯典」篇에 있는 말인데 蔡沈의 註에 이르기를 熙는 廣也라 하였다.

69) 畢張治具는 韓愈의 「進學解」의 「方今聖賢相逢 治具畢張」에서 나온 말인데 法畧을 고루 펼쳤다는 뜻이다.

70) 秩宗은 『書經』 「虞書」 舜典篇의 「咨伯, 汝作秩宗」에서 나온 말인데 蔡沈의 註에 의하면 「秩, 序也. 宗, 祖廟也. 秩宗, 主敍次百神之官」이라 하여 秩宗은 祭祀를 주관하는 禮官을 의미하였다.

71) 盡善盡美는 『論語』 「八佾」篇에 있는데 「韶, 盡美矣 又盡善也」(순임금의 음악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라 하였다.

72) 其揆一也는 『孟子』 離婁下編의 「先聖後聖 其揆一也」에 있는 것으로서 그 註에 「范氏曰 言 聖人之生, 雖有 先後, 遠近之不同, 然其道則一也」라 하였다.

73) 較若畫一은 『宋書』 「武帝紀」중의 「鑄削煩苛, 較若畫一」과 같은 用例로서 一字를 굿듯이 갈끔하고 분명한 것을 뜻한다.

감히 이 책은 자못 상세하며 육으로 나누는 절목이 찬란하여 빠진 글도 채울 수 있기를 가만히 바란다고 하겠습니까(尙幸闕文猶及).⁷⁴⁾ 1년 이상 걸려서 겨우 全帙을 완성하여 오늘 감히 임금께 바치오니 오직 三代의 禮를 加減하여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⁷⁵⁾ 法이 이와 같아 또한 흠족합니다. 아마 일부를 거행하여도 경건하게 하면 정치가 손바닥 안에서 운용되는 것 같을 것입니다.⁷⁶⁾ 詩經의 麟趾와 關雎편에 담긴 마음 그대로 장차 永世토록 법을 물려 줄 것을 기약하면서 큰 규범을 후손에게 남기는(鴻謨貽燕)⁷⁷⁾ 날에는 이 해에 책을 편찬한 것을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책 머리에 새로운 題辭로서 통편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殿號까지 밝혀주시니 資政의 故事를⁷⁸⁾ 본받아 준수할 따름입니다.

엿드려 생각하옵건대 신들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책을 편찬하기에는 재능이 부족한데도 때에 따라 제작함에 있어서 한마디의 도움말이라도 어찌 하였겠습니까. 經世의 계획은 백대에 물려줄 법칙이 되는 것이므로 편찬된 대전통편 6권을 삼가 전문을 덧붙쳐 올립니다. 감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臣 致仁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말씀 올립니다.

乾隆 50년(정조 9년, 1785) 월 일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致任 奉朝賀 臣 金致仁 등은 삼가 전문을 올립니다.

74) 闕文猶及은 『論語』 「衛靈公」篇의 '吾猶及史之闕文也'에 있는 말인데 이는 옛날 좋은 史官이 글썽에 있어서 의문이 있으면 비워 두었다가 후일 知者가 채워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75) 原文은 「三代損益可知」로서 『論語』 「爲政」篇의 '殷因於夏禮 所損益 可知也。周因於殷禮 所損益 可知也'에서 나온 것이다.

76) 原文은 「猶運諸掌」으로 『孟子』 公孫丑上篇의 '有天下 猶運之掌'의 用例와 같은 것이다.

77) 貽燕은 『詩經』 「大雅」 文王有聲篇의 '貽厥孫謨。以燕翼子'에서 나온 말이다.

78) 資政故事란 宋眞宗이 資政殿을 신설하여 前職宰相을 大學士(大資)로 임명하고, 기타의 학자 判料들을 學士(資政)로 임명하여 연구하도록 한 것이다.

大典會通 凡例

1.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을 합쳐서 분류하고, 대전통편 이후의 受敎와 稟奏, 定式(格式 또는 定例) 중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첨가하고 보충하여 한 책으로 하였다.
1. 육전은 舊例와 같이 하되, 먼저 경국대전을 수록하여 原字를 쓰며 다음으로 속대전을 수록하여 續字를 쓰고, 다음으로 대전통편을 수록하여 增字를 쓴 다음 새로 보충하여 合錄한 조문의 첫머리에 補字를 써서 음각하여 표시함으로써 선후를 구별하였다.
1. 三典은 모두 본문을 載錄하였고 비록 의심나고 회미하더라도 감히 바꾸지 않았으나, 그 빠지고 잘못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간간이 바로 잡았다.
1. 부문을 나누고 조목을 열거하는 것은 모두 舊例에 따랐다. 官에는 증감이 있고 격식에는 변천되어 온 내력이 있는데, 삭감한 것과 변혁한 것도 갖추어 쓴 것은 本始를 중하게 여긴 것이다. 다만 今革·今廢 등의 글자로서 주를 달았다.
1. 원(경국대전), 속(속대전), 증(대전통편)의 삼전은 항구적인 법서로서 지금 감히 증감할 바가 아니므로, 衙門의 合屬과 官階의 變通 등은 모두 舊制를 남겨 두고 (추가된 것만) 단락마다 보자로서 註를 달아 근엄한 법규가 되게 하였다.
1. 各條文 밑에는 삼전의 例에 따라 受敎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으나, 大刑政과 大變通에 관계됨과 같은 것은 특히 수교의 年條를 썼다.
1. 대전통편 이전에 이미 適用되었으나 대전통편에 들어 있지 않은 것도 또한 補字를 써서 첨가하여 넣었다.
1. 아문의 陞降, 79) 법제의 變通, 잘못된 사례의 시정과 일시적인 조치로서

창설한 규칙 및 인습 등은 모두 別單으로 자세히 列記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주로 간단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힘썼다.

1. 삼전의 법식 중 확실하게 변통된 것 이외에는 비록 지금 준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일지라도 감히 경솔하게 廢, 革 등의 글자로 주를 달지 않음으로써 신중한 뜻을 남겼다.
1. 각전의 법식 중 혹시 지금 것과 옛 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곳이 있으면 일응 지금의 법식에 따라 등재 수록하였다.
1. 某衙門, 某法制 중 이번에 변혁하는 것은 本典 이외 비록 他典에 자주 나오더라도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 今革 두 글자로 일일이 주를 달지 않았다.
1. 卷首에 있는 영조께서 지으시고 쓰신 글은 자주 模寫하여 眞本이 마멸되기 쉬우므로 이번에 삼가 舊版을 받들어 각인하였으며, 정조께서 지으신 題辭(머리글)도 역시 삼가 印刻하여 대전통편의 舊序의 머리에 실었다.

79) 官司의 장관의 직급인상 또는 인하를 의미한다.

奉教 總裁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臣 趙斗淳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臣 李裕元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左議政 兼領經筵事 監春秋館事 臣 金炳學

纂 輯

崇祿大夫 行龍驤衛 上護軍 兼奎章閣 提學 臣 金學性

崇祿大夫 議政府 右贊成 臣 鄭基世

資憲大夫 行龍驤衛 大護軍 兼知春秋館事 臣 南秉吉

資憲大夫 南綾君 兼弘文館 提學 臣 洪鍾序

資憲大夫 行龍驤衛 大護軍 兼藝文館 提學 臣 朴珪壽

校 正

禦侮將軍 行龍驤衛 副司果 臣 李教鉉

禦侮將軍 行龍驤衛 副司果 臣 任孝直

監 印

資憲大夫 行龍驤衛 大護軍 兼知春秋館事 臣 南秉吉

禦侮將軍 行龍驤衛 副司果 臣 李冕光

禦侮將軍 行龍驤衛 副司果 臣 鄭顯裕

大典會通 卷之一

吏典目錄

內命婦	外命婦
京官職	奉朝賀
內侍府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取諸科
薦舉	限品級用
除授	署經由
告身	解考課
政褒貶	差人職
祿遞	老贈
追給	改鄉
相雜	

大典會通卷之一

仁政殿¹⁾ 編輯

吏典²⁾ [原] 屬衙門은 (忠翊府) 內侍府, 尙瑞院(宗簿寺) 司饗院, 內需司, 掖庭署 등이다. [增] 忠翊府는 이번에 革罷하고 [補] 宗簿寺는 이번에 宗親府로 소속시켰다.

【內命婦】³⁾ 【原】

嬪 正1品 [補] 王命이 있으면 無階로 된다. 貴人 從1品, 昭儀 正2品, 淑儀 從2品, 昭容 正3品, 淑容 從3品, 昭媛 正4品, 淑媛 從4品, ○尙宮 以下는 宮人職에 관한 것이다. 尙儀 正5品, 尙服 尙食 從5品, 尙寢 尙功 正6品, 尙正 尙記 從6品, 典賓 典衣 典膳 正7品, 典設 典製 典言 從7品, 典贊 典飾 典藥 正8品, 典燈 典彩 典正 從8品, 奏宮 奏商 奏角 正9品, 奏變徵 奏徵 奏羽 奏變宮 從9品

【世子宮】 良娣 從2品, 良媛 從3品, 承徽 從4品, 昭訓 從5品, ○守閨 以下는 宮人職에 관한 것이다. 守則 從6品, 掌饌 掌正 從7品, 掌書 掌縫 從8品, 掌藏 掌食 掌醫 從9品

【外命婦】 【原】 부인의 작위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庶孽⁴⁾ 및 再嫁者⁵⁾에게는 작위를 봉하지 않으며 改嫁者에 대하여는 주었던

- 1) 仁政殿은 高宗이 常住하던 昌德宮中の 正殿이다.
- 2) 吏典에는 東班의 官階, 官職과 官司 및 官吏의 任命, 轉補, 陞進 기타 人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原] 표시는 成宗 16년에 頒行된 經國大典(乙巳大典)을 나타내고, [續]은 英祖 20년에 편찬된 續大典(甲子續典), [增]은 正祖9년에 增修된 大典通編, [補]는 高宗2년에 증보된 大典會通을 의미한다.
- 3) 內命婦는 國王 또는 世子の 後宮과 宮中에서 봉사하는 女官들에게 준 封爵이다.
- 4) 庶孽은 妾의 자녀와 그 후손을 말한다. 서열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李相佰, 「庶孽禁錮始末」, 『李相佰 著作集』(乙酉文化社, 1978 번각본).

작위를 追奪한다. ○왕비의 어머니, 세자의 딸 및 2품 이상의 종친의 妻는 모두 邑號를 쓴다. [補] 宗親의 경우 大君과 王子君의 부인 이외에는 邑호를 쓰지 않는다.

公主 임금의 嫡出女, 翁主 임금의 庶出女, 府夫人 왕비의 어머니 正1品, 奉保夫人 임금의 乳母 從1品, 郡主 王世子の 嫡출녀 正2品, 縣主 왕세자의 서출녀 正3品

【宗親⁶⁾의 처】 府夫人 正1品 大君의 妻, 郡夫人 正1品 王子君의 妻 ○郡夫人 從1品, 縣夫人 正·從2品, 愼夫人 正3品 堂上官, 愼人 正·從3品, 惠人 正·從4品, 溫人 正·從5品, 順人 正6品

[補] 이상은 文武官 命婦例에 의하여 작위를 봉한다.

【文武官의 妻】 貞敬夫人 正·從1品, 貞夫人 正·從2品, 淑夫人 正3品 堂上官, 淑人 正·從3品, 令人 正·從4品, 恭人 正·從5品, 宜人 正·從6品, 安人 正·從7品, 端人 正·從8品, 孺人 正·從9品

【京官職】 【原】 무릇 職銜은 官階를 먼저 쓰고 官司를 다음에 쓰며 宗親府, 儀賓府 및 忠勤府의 堂上官은 官司를 호칭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官職을 쓴다. 예컨대 領事와 같은 부류를 호칭할 때에는 領字를 官司 위에 둔다. 官階가 높고 관직이 낮으면 行이라 하고, 官階가 낮고 관직이 높으면 守라 한다.

李泰鎮, 「庶孽差待考」 『歷史學報』 27輯, 1965

朴天主, 「朝鮮前期 庶孽의 社會的 地位」 『史學研究』 30號, 1980

前問恭作, 「庶孽考」 『朝鮮學報』 5,6輯, 1953, 1955

李鍾日 「朝鮮時代庶孽身分變動史研究」(東國大, 1987, 博士學位論文)의 4편이 있다.

- 5) 再嫁는 초기의 經國大典(甲午大典) 편찬시까지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고 있었으나, 그후 많은 논의를 거듭한 결과 사실상 금지되었다(『成宗實錄』 권82 성종 8년 7월 壬午癸未 및 『成宗實錄』 권134 성종 12년 10월 乙丑). 물론 재가가 허용된 시기인 태종 때에도 再嫁女의 封爵은 追奪되었다(『太宗實錄』, 권9 태종 5년 5월 丙子).

- 6) 종친은 왕의 자손 또는 有服親을 벗어난 일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왕의 4代 이내의 자손을 뜻한다.

7品 이하는 2階를 뛰어 넘어 守職을 줄 수 없고,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 수직을 줄 수 없다. 行字와 守字는 官司 위에 둔다. 兵曹도 같다.

○封君 왕비의 父 및 2품 이상의 종친, 공신, 功臣承襲者 등에게 封君한다. ○承襲者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君을 封하여 준다. ○무릇 단순히 功臣이라 말할 때에는 原從功臣은 포함되지 않는다. 및 3품 이하의 종친은 모두 邑號를 쓴다. 儀賓도 같다.

○6품 이상은 근무일수(仕)가 900일, 7품 이하는 근무일수가 450일이 차면 관직을 옮기고 宗親府, 儀賓府, 敦寧府의 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원, 尙瑞院의 直長 이하, 通禮院의 相禮 이하, 司憲府, 司諫院의 관원, 遞兒職을 받은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무일수가 찬) 의정부, 육조의 堂下官은 모두 승진시키고(陞敘) 그외의 官員은 同級の 官職에 전입시키되(平敘) 賢能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와 7품 이하의 관원은 그러하지 않다. 또 官階를 올리며 無祿官도 같으나 堂上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품 이상은 五考三上인 자에게, 7품 이하는 三考二上인 자에게 관계를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7) 無祿官은 義禁府 堂下官과 提舉, 提檢, 別坐, 別提, 別檢 등이다. 근무일수가 360일이 차면 祿官으로 敍用한다. 8)

○재임중에 喪을 당한 자, 잘못없이 관직에서 물러난(作散) 자, 言官이 公罪로써 관직에서 물러난 자는 다시 관직을 받은 경우에 전의 근무일수를 합산한다. 병조도 같다.

○의정부, 육조, 한성부, 승정원, 장례원, 홍문관, 성균관, 세자시강원의 당하관과 여러 道の 都事, 守丞 가운데

7) 五考三上이란 관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다. 즉 長官이 부하 관료의 근무성적을 매년 6월과 12월 두번 평가하여 上, 中, 下로 성적을 매긴다. 따라서 5번 평가하여 3번 상을 받으면 五考三上이요, 3번 평가하여 2번 상을 받으면 三考二上이 되는 것이다.

8) 無祿官은 祿俸이 없는 관료로서 36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祿官으로 任用한다는 것이다.

결원이 있으면 구임원⁹⁾을 제외하고 비록 근무일수가 차지 않은 자라도 뽑아서 任用하며, 사헌부, 사간원의 경우는 구임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언론에 慷慨한 자를 널리 뽑아 임용후보자로 왕에게 注擬한다.¹⁰⁾

○승문원의 관원으로서 寫字나 吏文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 홍문관의 관원, 여러 도의 敎官과 체아직 등 이외의 자는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4품 이상의 품계로 올라갈 수 없고 병조도 같다. 나이가 20세 미만인 자에게는 東班職을 줄 수 없다. 諸科 合格者는 그러하지 않는다.

○臧吏의 아들과 손자에게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개성부,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경연, 세자시강원,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관찰사, 도사, 수령 등의 관직에 임용되지 못한다. 失行부녀 및 再嫁女의 所生者는 동, 서반의 관직에 임용하지 못하며, 증손대에 이르러 비로소 위의 各官司 이외의 관직에 임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무릇 관직을 除授한 후 3품 이하의 관원과 무록관은 이조에서 그 사람의 이력을 갖추어 왕에게 보고하고 (啓聞)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에 公文을 보내어(移文) 사실 여부를 밝히게 한다. 병조도 같다.

【續】大夫의 階 가운데 東班의 嘉靖은 嘉義로, 宗班의 昭德은 綏德으로 (增) 宜德으로 고친다. 正義는 昭義로, 儀賓의 光德은 靖德으로, 崇德은 明德으로 고친다.

○宰相으로서 軍務를 담당하라는 왕명을 받은 자는 품계에 따라 軍職의 호칭을 달리한다. 議政은 都體察使, 1품 이하는 都巡察使, 중2품은 巡察使, 3품은 察理使라 한다.

9) 久任員은 所定의 임기가 없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官職者를 의미한다. 職務의 성격상 자주 교체하는 것이 부적당한 戶曹와 兵曹의 正郎, 宣惠廳의 낭청, 司僕寺 判官 등이 이에 속한다.

10) 注擬란 缺員 1席 당 3倍數로 국왕에게 임용후보자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議政이 재상으로 임명받기 전에 大提學을 겸하였던 자는 계속하여 겸직한다.

○대제학을 圈点으로 뽑을 때에는 전임자가 없으면 文衡을 거친 議政에게 史官을 보내어서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¹¹⁾

○대제학을 거친 사람이 비록 提學으로 낮게 임용되어도 사퇴할 수 없다.

○副提學을 뽑을 때에는 비록 현직 銓官일지라도 3인의 후보자 속에 넣어 왕에게 상신한다(啓請備擬).¹²⁾

○弘文館 正字(정9품)를 뽑을 때 복수의 후보가 없으면 1인을 올린다(單付).

○副提學과 都承旨가 전에 이미 經筵의 同知事를 겸직하여 좌석 배치에 지장이 있으면 經筵의 同知事를 해임한다. [增] 부제학과 도승지가 춘추관의 동지사를 겸직한 경우에는 춘추관의 修撰官을 해임한다. 여러 승지도 같다. 도승지가 예문관의 提學을 겸하였으면 당연 겸직인 直提學을 해임한다.

○經筵의 特進官은 文官, 蔭官, 武官인 2품 이상인 자로서 뽑아 올린다(抄啓). 홍문관 부제학(玉堂 長官)이 抄啓를 주관한다.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당상관을 역임하지 않은 자는 뽑힐 수 없다.

○武臣으로 재주와 局量, 멀리 내다 보이는 식견이 있는 자를 가려서 당상관은 正卿, 亞卿, 判尹, 左·右尹, 承旨 후보자로 상신하고 通訓大夫 이하의 당하관은 寺正과 各曹 郎官으로 서로 바꾸어 임명한다. 이조판서(長官)가 아니면 함부로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다. [增] 武承旨 후보자를 상신할 때에는 지방관이라도 啓請¹³⁾한다.

11) 大提學 圈点에 관해서는 解說編에서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史官은 承政院 注書(정7품)와 藝文館 檢閱(정9품) 등 춘추관 記事官 겸직자를 의미한다.

12) 副提學 이하 弘文館의 官員을 선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解說編 참조. 銓官은 吏曹와 兵曹의 人事 담당 관료를 말한다.

13) 국왕에게 임용 후보자를 上申하는 것.

○蔭官인 당상관 이상인 자는 여러 曹의 參判 參議와 한성부의 左右尹 장례원 判決事 등으로, 당하관인 자는 寺正에 충원하기 위하여 通淸例에 따라 3배수 후보자를 갖추어 추천한다.

○이조의 郎官은 삼사를 거친 자 가운데에서 두루 뽑아 쓰며 通淸을 주장하는 폐단을 없앤다.¹⁴⁾ 假郎廳의 임명에서는 왕의 재가를 받지 않는다.

○翰林 圈點은 弘文錄의 예에 따라 실시하되 參外人員 중에서 榜目을 살펴 후보자를 골라 써내면 현직 한림과 전직 한림이 함께 모여 (增) 3인 이상 권점을 행하여 차점 이상자를 골라서 만일 권점의 점수가 부족하면 대신과 館閣의 당상관이 다시 모여 圈點한다. 宋나라의 館職 召試의 예를 모방하여 領事, 監事와 館閣 및 春秋館의 당상관, 玉堂人員들이 科次를 참고하여 三下 이상인 자를 뽑고 뽑힌 자들은 시험의 등급에 따라 관직을 받는다.¹⁵⁾ 권점에 든 자 가운데 喪을 당한 자와 파직된 자는 추후에 召試하고, 焚香, 回薦, 應講 등의 옛 법규를 모두 폐지한다.

○四館의 7품 이하 관원(參外)은 免新의 선후를 막론하고¹⁶⁾ 실제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승급시켜 전보한다. 비록 선임의 위치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는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문과에 급제한 자라도 分館하기 전에는¹⁷⁾ 세자시강원

14) 銓郎通淸의 弊 등에 관하여서는 解說編 참조.

15) 翰林圈點과 弘文錄 및 宋朝 館職 召試例에 관해서는 해설편 참조.

16) 四館이란 藝文館, 承文院, 成均館, 校書館을 말하며 免新이란 신입관료가 처음 出仕하여 선배관료를 대접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선배들로부터 많은 곤욕을 당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침으로서 관료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免新이라 한다.

17) 文科 及第者는 甲科 이외는 그 신분에 따라 뚜렷한 양반집 자제는 承文院(槐院 分館), 鄉族의 자제는 成均館(國子館), 庶族은 校書館(芸閣分館) 등에 배치하며 權

의 說書로 임용되지 못한다.

○宗代가 다하기 전에는 원래 嫡庶의 차이가 없으므로 그 자손들이 문과에 급제하면 홍문록에, 무과에 급제하면 宣傳官으로 추천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¹⁸⁾

○환관과 의관, 역관 등에게는 輔國의 官階를 줄 수 없다.

○元子の 輔養官 3인은 정1품 이하 종2품 이상으로, 元孫의 보양관 2인은 종2품 이하 정3품 통정대부 이상으로 하되 이조에서 대신에게 문의한 후 왕의 재가를 받아 임용한다(啓下).

○王世孫의 師傅는 종1품 중에서 뽑는다.

○王世孫 講書院의 관원 4인은 모두 홍문관 관원으로 겸임하고, 1인씩 入直하여 侍講한다. [增] 후에는 左翊善, 左贊讀을 實職으로 하고 侍從 중에서¹⁹⁾ 선발하여 임명한다.

【增】이조의 낭청(正郎과 佐郎)은 이조의 당상관들이 선발하여 임용후보자로 上申하고 당하관인 淸宦 후보자는 낭청들로 하여금 종전대로 通淸 또는 不許通을 정하도록 하되 이조의 당상관과 正郎, 佐郎들이 가부를 상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正郎, 佐郎들이 근무에 임하지 않을 때에는 이조판서가 다른 당상관들과 상의하여 通淸한다. 숙종 을축년(1685)의 下敎이다.

○銓郎法을 부활한다. 여러 사람들의 (전랑법 부활) 청원을 일시적으로 들어주되, 때에 따라서 변혁(폐지)할 수도 있다. 정조 즉위년인 병신년

知(시보)로 근무시킨다.

18) 宗代未盡之前이란 국왕의 玄孫代까지이며 그 5代孫 이후부터는 일반양반가문과 마찬가지로 庶族인 경우에는 淸宦인 弘文館의 官員이나 吏, 兵, 禮曹의 郎官, 翰林, 臺諫, 世子侍講院의 官員, 宣傳官 등으로 임용될 수 없었다(19세기 후기부터는 庶族도 通淸됨).

19) 侍從은 弘文館의 副提學 이하 官員(玉堂), 承政院의 注書 등 국왕의 측근에서 근무하는 淸官을 말한다.

(1776)의 하교이다.²⁰⁾

○諮議는 6품으로 승진한 후라야 臺官 후보로 추천될 수 있다.

○祭酒, 贊善, 進善, 司業, 諭善, 勸讀 등의 관직은 實職이 있는 자이면 겸직이 되고, 실직이 없는 자라면 그것이 실직이 된다.

○元子の 師傅는 정2품인 자로, 元孫의 사부는 종2품인 자로 임명한다. 왕손의 스승의 관제와 근무월수는 敎官의 예에 따른다.

○代理聽政할 때에는 세자시강원의 實職과 兼職인 관료는 모두 춘추관의 관직을 겸직한다.

○義禁府의 知事가 1품으로 승진하면 判事로 임명된다. 현직판사가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승진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부제학이 홍문관의 제학으로 임명되면 부제학은 면직(遞)되고, 홍문관의 제학이 부제학으로 임명되면 홍문관의 제학은 면직된다. 성균관의 同知事와 大司成도 또한 같다.

○의금부(金吾)의 당상관이 刑曹의 관료로 임명되면 의금부 당상관은 면직되고 형조의 당상관이 의금부 관료로 임명되면 형조 당상관직을 면직한다. 三司의 장관은²¹⁾

의금부의 摠管을 겸직하지 못한다. ○將臣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장관을 겸직하지 못한다.

○도승지가 정2품 資憲大夫로 승진하면 兼都承旨로 발령받는다.

○무신인 의금부 판사는 병조판서를 거친 자라야 임용된다.

○大臣을 임명할 때에는 현직 대신이 없으면 전임대신

20) 銓郎法에 관해서는 解說編 참조.

21) 三司의 장관은 홍문관 부제학,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등이다.

이 입궐하여 前에 만든 대신 후보자 명단을 임금에게 올려서 낙점을 받는다. 대신 후보자 명단에 없는 사람을 보태어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직 大臣의 출근을 기다려 시행한다.

【補】銓郎法을 혁파한다. 정조 기유년(1789)의 하교이다.

○內閣(奎章閣)의 提學이 대신으로 임명되면 本閣의 대제학으로 승진시킨다.

○留守가 諭善으로 임명되면 그대로 겸직시킨다.

○經筵의 日講官은 제학과 부제학의 후보자로 내정되었던 사람 중에 뽑아서 임금의 결재를 받아 임명한다.

○水原과 廣州의 留守는 간혹 전임대신 중에서 임명한다.

○宗姓 2품 이상을 宗正卿으로 품계에 따라 임명한다(下批). 大君, 王子君은 領宗正卿으로, 大臣, 上輔國崇祿大夫와 정1품은 判宗正卿, 종1품, 정2품은 知宗正卿, 종2품은 宗正卿이 된다.

○무장으로 官階가 정2품인 자는 바로 병조판서로 추천되고, 병조판서가 1품으로 승진하면 또한 의금부 판사로 추천된다.

【東班官階】 【原】

正一品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 上輔國崇祿大夫 [補] 新增 ○國舅, 宗親, 儀賓²²⁾ ○[原] 종친은 顯祿大夫, 興祿大夫이며, 儀賓은 綏祿大夫, 成祿大夫이다. 輔國崇祿大夫

從一品 崇祿大夫, 崇政大夫 [補] 宗親, 儀賓도 같다. ○[原] 宗親은 [原] 昭德 [續] 綏德 [增] 宜德大夫, 嘉德大夫이며 儀賓은 [原] 光德 [續] 靖德大夫 또는 [原] 崇德 [續] 明德大夫이다.

正二品 正憲大夫, 資憲大夫 [補] 종친과 의빈도 같다.

22) 國舅는 임금의 장인, 宗親은 임금의 4대손까지의 동성동본의 친족, 儀賓은 임금의 사위를 말한다.

○〔原〕 종친은 崇憲大夫, 承憲大夫이며 의빈은 奉憲大夫, 通憲大夫이다.

從二品 嘉義 [原] 嘉靖 大夫, 嘉善大夫 [補] 종친과 의빈도 같다. ○〔原〕 종친은 中義大夫 [原] 正義 [續] 昭義大夫이며, 의빈은 資義大夫, 順義大夫이다.

正三品 通政大夫 [補], 종친 의빈도 같다. ○〔原〕 종친은 明善大夫이며 의빈은 奉順大夫이다. 이상은 堂上官이다.

正三品 通訓大夫 [補] 종친, 의빈도 같다. ○〔原〕 종친은 彰善大夫이며, 의빈은 正順大夫이다.

從三品 中直大夫, 中訓大夫 [補] 종친, 의빈도 같다. ○〔原〕 종친은 保信大夫, 資信大夫이며, 의빈은 明信大夫, 敦信大夫이다.

正四品 奉正大夫, 奉列大夫 [補] 종친도 같다. ○〔原〕 종친은 宣徽大夫, 廣徽大夫이다.

從四品 朝散大夫, 朝奉大夫 [補] 종친도 같다. ○〔原〕 종친은 奉成大夫, 光成大夫이다.

正五品 通德郎, 通善郎 [補] 종친도 같다. ○〔原〕 종친은 通直郎, 秉直郎이다.

從五品 奉直郎, 奉訓郎 [補] 종친도 같다. ○〔原〕 종친은 謹節郎, 慎節郎이다.

正六品 承議郎, 承訓郎 [補] 종친도 같다. ○〔原〕 종친은 執順郎, 從順郎이다.

從六品 宣敎郎 宣務郎

正七品 務功郎

從七品 啓功郎

正八品 通仕郎

從八品 承仕郎

正九品 從仕郎

從九品 將仕郎

【耆老所】 【續】

태조조,

숙종조,

영종조,²³⁾ 기로소에 들었다. 국초에 文臣인²⁴⁾ 정2품의 실직에 있는 자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蔭職과 武官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增] 정2품 實職者 가운데 70 이상인 자가 없으면 중2품인 실직자 가운데 1, 2인을 왕에게 추천하여 거기에 들어 가도록 하였다. ○槐院(承文院)과 國子監(成均館)의 7품 이하자(參外) 각 1인을 뽑아 守直官으로 하고 수직관의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正一品衙門】

【宗親府】 【補】 역대 국왕의 계보(御譜)와 초상화(御眞)를 경건하게 받들고(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璿源諸派를 통할한다. 大君과 王子君이 있을 때에는 無階衙門이 된다. [原] 종친은 정원이 없으며 양첩소생은 1등급을 낮추고 천첩소생은 또 1등급을 낮춘다. ○承襲職은父가 사망한 후에 授與하며 親盡하면 문무관 자손의 예에 따라 벼슬할 수 있다.²⁵⁾ [補] 宗正卿은 諸君과 宗姓인 2품 이상의 朝官 중에서 정원에 관계 없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 都正 1인을 加設하여 宗姓인 文官을 뽑아 임명하되 다른 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다. 典籤은 대군이 있을 때에는 자체에서 임용(自辟)하고 典簿는 대군과 왕자군이 있을 때에는 자체에서 임명하며 主簿는 항상 자체 임명한다. 直長은 생원과 진사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다른 官司의 예에 따라 승진할 차례가 되면 전보(換差)시킨다. 參奉과 忠義衛인 郎廳 각 1인도 또한 宗姓人으로서 항상 자체임용한다. 참봉은 차례대로 승진시키고 忠義衛인 郎廳은 모두 45개월 근무하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兼郎廳 1인은

23) 太祖는 60세에, 肅宗은 59세에 각각 기로소에 들어갔다고 하며, 英祖는 51세에 들어가서 83세 薨去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로소에 출입하면서 老臣들과 사귀었다.

24) 여기서의 文臣이란 文科及第者인 관료를 말한다.

25) 親盡이란 國王으로부터 4대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며 國王의 玄孫代까지는 宗親으로서의 명예적인 君, 正, 守, 令 등의 官爵이나, 宗正卿 등 宗親府의 官職에만 임명될 뿐이다. 5代孫 이후부터는 일반 양반과 마찬가지로 政務職을 비롯한 여러 實職인 벼슬을 할 수 있다.

郎廳의 전직자(前銜人)로서 단독 추천하여 자체 임명한다.

大君 王의 적자 **君** 왕의 서자 **領宗正卿** [補] 새로 둔다. 대군과 왕자군이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다. **君** 정1품 **判宗正卿** 정1품 [補] 새로 둔다. **君** 종1품 大君을 承襲한 嫡長子에게 初授한다. **君** 정2품 世子の 衆子, 大君을 承襲한 적장손, 王子君을 承襲한 적장자에게 初授한다. **知宗正卿** 정2품에서 종 1품까지 [補] 새로 둔다. **君** 종2품, 세자의 衆孫, 大君의 衆子와 承襲 嫡長曾孫, 王子君의 승습 嫡長孫에게 初授한다. **宗正卿** 종2품 [補] 새로 둔다. **都正** 정3품 **正** 정3품, 세자의 衆曾孫, 大君의 衆孫, 王子君의 衆子, 承襲 嫡長曾孫에게 初授한다. **正** 1인 정3품, 朝官이며 원래 宗簿寺에 속하였다. [補] 다시 둔다. **副正** 종3품, 대군의 中宗손, 왕자군의 中宗손에게 初授한다. **守** 정4품, 왕자군의 中宗손에게 初授한다. **典籤** 1인 정4품, 朝官이다. **副守** 종4품 **令** 정5품 **典簿** 1인 정5품, 朝官이다. **副令** 종5품 **監** 정6품 **主簿** 1인 종6품, 朝官으로 원래 宗簿寺에 속하였다. [補] 옮겨 둔다. **直長** 1인 종7품, 朝官으로 원래 宗簿寺에 속하였다. [補] 옮겨 둔다. **參奉** 1인 종9품, 朝官이다. [補] 새로 둔다.

【議政府】 【原】 百官을 거느리고 一般政事를 공평히 하며 陰陽을 섭리하고 국가를 경영한다. 堂下官은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舍人에 결원이 있으면 檢詳을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승진·임명한다. [補] 都相(都提調)은 전직 대신이 겸하고, 堂上官은 정원없이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용하되, 26) 吏曹·戶曹·禮曹·兵曹·刑曹의 判書와 三營의 大將, 摠戎使, 四都留守, 大提學, 扈衛大將, 左·右捕將이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다. 그 중 4인은 有司堂上이라 하였고 그 외의 8인은 8道の 旬管堂上을 겸직으로 임명하였다. 前職將臣은 堂上官으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현직 대신의 아들이 (의정부의) 堂上官이면 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26) 高宗 2年, 비변사를 의정부에 합쳐서 公事色이라 하여 中外軍國機務를 관장시켰는데 원래의 비변사 都提調를 都相이라 하였고, 비변사 當상관도 거의 그대로 公事色의 當상관이 되었다.

한다. (의정부의) 堂上官을 으레히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堤堰司】〔續〕 각도의 제방, 수리시설의 補修를 담당한다. ○都提調 3인은 정1품으로 현직 3公이 겸직하고, 提調 2인은 종2품 이상으로 備邊司 堂上官 중에서 겸직으로 임명하며 郎廳 1인은 종6품으로 備邊司 郎廳이 겸직한다.〔補〕 提調 1인은 의정부 有司堂上 중에서 겸임하며, 낭청은 公事官이 겸직한다. 高宗 乙丑年(1865)에 移錄하였다.

領議政, 左·右議政 各 1人 정1품 左·右贊成 各 1인 종1품 左·右參贊 各 1인 정2품, 舍人 2인 정4품, 檢詳 1인 정5품 公事官 11인 종6품, 원래 備邊司 郎廳에 속하였다.〔補〕 옮겨 둔다. ○문관 2인은 侍從 중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고, 무관 9인은 參上官 5인, 參外官 4인을 임명하되, 參外官은 근무일수가 20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司錄 1인 정8품〔原〕 2인〔增〕 1인을 임시로 줄인다.

【忠勳府】 【原】 여러 공신들의 관부이다. 堂上官은 定數가 없다.〔增〕 堂上官은 3인이며 有司를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며, 親功臣이 없으면 承襲君중에서 뽑는다.〔補〕 兼都事는 1인으로 공신의 嫡長인 忠義衛로서 6품 이상의 관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자체적으로 임용하되 단일후보자(單望)로 한다.

君 정1품 親功臣, 王妃의 父는 君字위에 府院 二字를 더한다. 君 종1품 君 정2품 君 종2품 經歷 종 4품,〔原〕 1인〔續〕 감한다.

都事 1인 종5품〔增〕 功臣의 자손

【儀賓府】 【原】 公主와 翁主에게 장가든 자의 관부이다.

僉尉 이상은 정수가 없다. 尉 정1품, 尉 종1품, 公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尉 정2품 尉 종2품, 翁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副尉 정3품 郡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僉尉 정·종3품 縣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처음 제수한다. 經歷 종4품,〔原〕 1인〔續〕 감한다. 都事 1인 종5품

【敦寧府】 【原】 王의 親族과 外戚의 관부이다. 宗姓 9촌, 異姓 6촌 이상, 王妃의 同姓 8촌, 異姓 5촌 이상친, 世子嬪의 同姓 6촌, 異姓 3촌 이상친, 이상의 촌수 내의 姑, 姉, 妹, 姪女, 孫女의 남편에게 제수한

다. 先王과 先后的 親族도 같다. ○大君의 사위, 公主의 아들에게는 처음 종7품을 제수하고, 公主와 王子君의 사위, 翁主의 아들에게는 종8품을 제수한다. 대군·왕자군의 良妾의 사위는 각 1등급을 내리고, 賤妾의 사위는 또 1등급을 내린다. [增] 都正 1인을 더 두며 大院君의 奉祀孫으로 세습하게 하되 만약 陞資하면²⁷⁾ 품계에 따라 同知事, 知事를 더 둔다. [補] 宗姓은 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都正 이상의 관직은 宗親과 儀賓을 그 품계에 따라 임용 제청한다.

領事 一人 정1품, 왕비의 父로서 처음 관직을 임명받는 자에게도 제수한다. [增] 왕비의 부가 관직이 낮거나 벼슬하기 전이면 먼저 都正에 임명된 후 제수한다. **判事** 1인 종1품 **知事** 1인 정2품 **同知事** 1인 종2품 **都正** 1인 정3품 **正** 정3품 [原] 1인 [增] 削減한다.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종4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判官** 1인 종5품 [原] 2인 [續] 1인을 삭감한다. **主簿** 1인 종 6품 [原] 2인 [續] 1인을 삭감한다. **直長** 1인 종7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增] 1인을 다시 둔다. **奉事** 종8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參奉** 1인 종9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備邊司】 [續] 중앙과 지방의 軍國機務를 總領한다. ○明宗代에 창설하였다. ○都提調는 現職議政과 前任議政이 겸직하고 提調는 定員이 없으며 임금에게 보고하여 뽑되 吏·戶·禮·兵·刑曹의 判書,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대장, 開城, 江華의 留守, 大提學이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며, 그중 4인은 有司堂上이라고 하며(副提調가 있으면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다) 8인은 8道旬管堂上을 겸직한다. [增] 禁衛大將, 守禦使, 摠戎使도 (提調)를 겸직하는 것이 定例化하였다. ○현직대신의 아들이 提調가 될 경우 교체하도록 하되 定例化한 겸직이면 그렇지 않다. [補] 지금은 의정부에 속한다.

都提調는 정1품, 提調는 종2품 이상, 副提調 1인은 정3품이다. 郎廳 12인은 종6품인데, 4인은 문관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兵曹 武備司의 郎官이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고, 3인은 侍從 중에서 뽑아서 임금의 재가를 받는다. 武官

27) 陞資는 官階(資級)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陞品과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같은 종3품이지만 中訓大夫가 中直大夫로 되는 것이 陞資이다.

은 8인으로 간혹 參外官이 겸직하되 參外官의 근무일수가 15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從一品衙門】

【義禁府】 【原】 왕명을 받들어 推鞠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堂上官 4인은 다른 관직자로 겸직한다. 堂下官은 10인이다. [續] 經國大典의 經歷과 都事는 이제 모두 參上·參外都事라 하며 參外都事도 7품 이하의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한다. [增] 經國大典의 經歷과 都事는 모두 10인이었는데 그 품계에 따라 그 직급을 인상 또는 인하한다. 續大典에서는 경력을 없애고 10인을 參上·參外都事 각 5인으로 하고 參上都事 1인은 무관의 자리로 하며 參外都事는 생원 진사가 아니면 임명할 수 없다. [補] 참외도사는 奉事의 예에 따라 차례대로 7품으로 승진시킨다.

判事 종1품 知事 정2품 同知事 종2품 [增] 이상은 1인 또는 2인을 임명하여 4인을 정원으로 한다. 經歷 종4품 [續] 삭감한다. 都事 5인 종6품 [原] 종5품 [續] 품계를 낮춘다. 都事 5인 종8품 [續] 종9품 [補] 품계를 올린다.

【正二品衙門】

【吏曹】 【原】 文選(文官人事)과 勳封, 考課에 관한 政事를 관장한다. 堂下官은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文選司】 宗親 文官 雜職 贈職 등의 除授와 告身 祿牌 文科 生員 進士 賜牌 差定 取才 改名과 臧汚 敗常人的 錄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28) 【考勳司】 宗宰 功臣의 封爵과 謚號 享官 老職 內·外命婦의 封爵帖 鄉吏給帖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考功司】 문관의 功過 勤怠 休暇와 모든 관사의 아전의 근무일수, 향리자손의 辨理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補] 參判은 經筵官 후보자(同知事)로 추천된 사람으로써, 參議는 國子監(成均館)의 官僚(大司成)로 추천된 사람으로서 임용후보자를 삼는다. ○正郎과 佐郎은 일시적으로 감원하며 왕이

28) 여기에 나열된 사항들은 거의 吏典에서 별도 항목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臧汚 敗常人的 錄案에 관하여서는 解說編 참조.

親政할 때에 다시 뽑는다.

判書 1인 정2품 參判 1인 종2품 參議 1인 정3품 正郎 2인 정5품 [原] 3인 [增] 1인을 일시적으로 줄인다. 佐郎도 같다. 佐郎 2인 정6품

【戶曹】 【原】 戶口 貢物 賦役 田糧 食貨에 관한 政事

를 관장한다. 【版籍司】 戶口 土田 租稅 賦役 貢獻 農事와 蠶業의 勸獎,

豐凶의 조사 및 賑貸, 斂散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會計司】 서울과 지방의 관아에서 비축한 물자와 세입·세출의 회계, 解由·虧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經費司】 서울의 각 관아의 경비지출과 계산(支調) 및 일본인에 대한 식량지급(糧料)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算員은 30인으로 하고 算士 이하는 遞兒職으로²⁹⁾ 하며 兩都目에³⁰⁾ 근무일수가 514일이 차면 官階(資級)를 올려주고 종6품이 되면 관직을 떠나게 하며 그래도 근무하기를 원하면 근무일수가 900일이 될 때 官階를 올려주되 정3품에서 그치게 한다. 관직을 떠나지 않는 者는 모아서 재능을 시험하여 遞兒職에 임명한다. ○教授 別提 訓導는 해당분야의 전문가(本業人)를 골라서 임명하고 그외의 教授 訓導도 같다. [增] 경비사를 지금은 【別例房】이라 한다. 또 【前例房】이 있어서 祭享과 進上, 使行의 方物·禮葬(用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版別房】은 수시로 특별 매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別營色】 訓練都監의 軍兵에 대한 給料支給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別庫色】 貢物의 支出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歲幣色】 節使의 세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應辦色】 외국 사신의 접대용 물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銀色】 금·은을 분장한다. ○郎官 2인은 자체 임명하고 久任員으로 한다.³¹⁾ ○算員 30인을 지금부터 56인으로 한다.

判書 1인 정2품 參判 1인 종2품 參議 1인 정3품 正郎 3인 정5품 佐郎 3인 정6품 算學教授 1인 종6품 兼教授 1인 종6품 [補]

29) 체아직에 관해서는 解說編 참조.

30) 兩都目이라 함은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年 2회 정규 인사이동(승진포함)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1) 久任員은 일정한 임기가 없이 장기근속하도록 한 관원이다.

새로 둔다. 別提 1인 종6품 [原] 2인 [續] 1인은 줄인다. 算士 1인
 종7품 計士 1인 종8품 [原] 2인 [續] 1인은 줄인다. 算學訓導 1인
 정9품 會士 1인 종9품 [原] 2인 [續] 1인은 줄인다.

【禮曹】 【原】 禮樂 祭祀 宴會 朝聘 學校 科擧에 관한
 政事를 관장한다. 堂下官은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稽制司】 儀式

制度 朝會 經筵 史官 學校 科擧 印信 表箋 冊命 天文 漏刻 國忌 廟諱 喪葬 등
 의 사무를 분장한다. 【典享司】 宴會 祭祀 祭物 飲膳(술과 안주) 醫藥 등의 사
 무를 분장한다. 【典客司】 中國使臣과 일본과 여진인의 영접과 地方의 朝貢用物
 品 宴設下賜品 등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增] 여진인에 대한 영접은 이제 폐
 지한다.³²⁾

判書 1인 정2품 參判 1인 종2품 參議 1인 정3품 正郎 3인
 정5품 佐郎 3인 정6품

【兵曹】 【原】 武選(武官人事) 軍務 儀衛 郵驛 兵甲 器
 杖 門戶 자물쇠에 관한 政事를 관장한다. 堂下官은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³³⁾ ○【武選司】 武官 軍士 雜職의 임명과 告身 祿牌 附過
 (관료의 과실을 기록) 給假 및 武科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乘輿司】
 鹵簿³⁴⁾ 輿輦 養馬 里程과 驛 補充隊³⁵⁾ 皂隸 羅將 伴尙³⁶⁾ 등의 사무를 분장
 한다. 【武備司】 軍籍 馬籍 兵器 戰艦 軍士의 점검과 사열 武藝의 訓練 宿衛
 巡綽(순찰) 城堡의 鎮戍(수비) 防禦와 征討 軍官과 軍人의 파견 교대근무
 給保 給假 侍丁³⁷⁾ 復戶³⁸⁾ 火砲 烽燧 改火 禁火 符信 更籤³⁹⁾ 등에 관한 사

32) 만주족(여진인)이 세운 淸나라가 17세기 중엽이후의 조선의 宗主國이 되었으
 므로 중국 사신 이외 女眞의 使人은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交隣對象國은
 倭만 남게 되었다.

33) 兵曹의 당하관은 正郎과 佐郎 각 4인인데 吏曹의 正郎, 佐郎과 함께 銓郎이라고
 하여 인사추천권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文科及第者인 文官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34) 鹵簿는 임금의 거동 때의 儀仗

35) 補充隊는 양반의 賤妾子女를 免賤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근무시키는 특수부대

36) 伴尙은 大君, 王子君, 堂上官과 功臣의 수행원인 驅從을 말한다.

37) 侍丁은 老父母를 봉양하도록 兵役을 면제하여 준 壯丁을 말한다.

38) 復戶는 戶役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戶典 註 99·229, 兵典 註 653 參

무를 분장한다. ○〔增〕 武選司를 지금부터 【政色】이라 하고 乘輿司를 지금부터 【馬色】이라 하며 立馬 路文 草料에 관한 일을 겸무한다. 또 다음의 관청을 설치한다. 【一軍色】은 龍虎營과 扈輦隊의 保布를 분장한다. 【二軍色】은 騎兵 步兵의 保布와 대궐내의各司의 雇立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有廳色】 忠順 忠贊 忠壯衛의 籤兵과 餘丁의⁴⁰⁾ 番布를 담당한다. 【都案色】 別騎兵의 保布를 관리한다. 【結束色】 궐내와 왕의 거동(動駕) 시에 잡인을 물리쳐서 정숙하게 하는 일을 분장한다. ○正郎 2인은 자체에서 임명하되 一·二軍色에서 뽑는다.

判書 1인 정2품 參判 1인 종2품 參議, 參知 각 1인 정3품
正郎 4인 정5품 佐郎 4인 정6품

【刑曹】 【原】 法律 事件審理 訴訟 奴隸에 관한 政事를

관장한다. 【詳覆司】 死罪를 상세히 覆審하는 일을 분장한다. 【考律司】 律令을 살피고 조사하는 일을 분장한다. 【掌禁司】 刑罰과 治獄 禁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掌隸司】 奴婢의 장부와 捕虜 등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明律 이하의 遞兒職과 教授 別提 訓導의 선임은 戶曹과 같이한다. ○律學取才에서 次點을 받은 자를 지방관서로 임명한다.⁴¹⁾ 〔增〕 兼教授는 義禁府에서 法律適用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判書 1인 정2품 參判 1인 종2품 參議 1인 정3품 正郎 3인 정5

照.

39) 更籤은 夜間에 순찰하는 將兵이 갖고 다니는 표찰.

40) 籤兵은 實役に 복무하는 軍兵을 말하고 餘丁은 實役 대신 軍布를 바치는 奉足을 말한다.

41) 『增補文獻備考』 권186 選舉考3, 明宗 23年條와 『같은 책』 권187, 選舉考4, 仁祖 11年條에 의하면(前者에 있던 上上이 後者에서는 없어지고, 대신 前者에 없던 圈更이 後者에서 追加되었다.) 각종 과거시험(諸科)의 종합성적은 上上(後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 次上, 次中, 次下, 圈更(이상 有圈), 更, 外(이상 無圈) 등 14등급으로 보통 三下 이상을 합격자로 하나 필요에 따라 次點인 자까지 합격시키며, 때로는 圈更, 更까지 합격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여기서도 次下까지 합격시키되 그대신 次上, 次中, 次下의 성적을 받은 자는 지방관서로 임용한다는 것이다. 시험과목별로는 製述의 경우 上上-下下까지 9등급이고 講書는 通·略·粗·不通 등 4등급이다.

품〔原〕4인〔續〕1인을 줄인다. 佐郎 3인 정6품〔原〕4인〔續〕1인을 줄인다. 律學教授 1인 종6품 兼教授 1인 종6품〔增〕 새로 둔다. 別提 2인 종6품〔續〕1인을 줄인다.〔增〕 옛날 대로 둔다. 明律 1인 종7품 審律 1인 종8품〔原〕2인〔續〕1인을 줄인다. 律學訓導 1인 정9품. 檢律 1인 종9품〔原〕2인〔續〕1인을 줄인다.

【工曹】 【原】 산림 沼澤 工匠 營繕 도자기와 冶金에 관한 政事를 관장한다. 【營造司】 宮室 城池 관청의 청사 屋守 土木工事 皮革 담요 등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攻治司】 각종 공예품의 제작 金銀 珠玉과 銅錫鐵의 加工 陶器 기와 도량형(權衡) 등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山澤司】 山林 沼澤 나루터 교량 궁중의 정원 種苗 植木 炭木 石 舟車 筆墨 무쇠 漆器 등에 관한 일을 분장한다.

判書 1인 정2품 參判 1인 종2품 參議 1인 정3품 正郎 3인 정5품 佐郎 3인 정6품

【漢城府】 【原】 서울의 戶籍大帳 市場과 商店 家舍 田土 四山 道路 橋梁 도랑(溝渠) 逋欠⁴²⁾ 負債 鬪毆 晝間 巡察 檢屍 車輛 故失牛馬⁴³⁾ 烙契⁴⁴⁾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判官 이상 1인은 久任으로 한다.

判尹 1인 정2품 左·右尹 各 1인 종2품 庶尹 1인 종4품 判官 1인 종5품〔原〕2인〔續〕1인을 줄인다. 主簿 2인 종6품〔續〕1인을 새로 둔다.〔增〕1인을 더 둔다. 參軍 정7품,〔原〕3인, 1인은 通禮院 引儀가 겸직한다.〔續〕2인을 줄인다.〔增〕모두 삭감한다.

【水原府】 【補】 華城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한다.〔原〕 都護府, 正祖朝 癸丑年(1793)에 留守를 두었으며, 지금 移錄한다.⁴⁵⁾

留守 2인 정2품, 1인은 京畿觀察使가 겸직한다. 判官 1인 종5품, 檢

42) 《經國大典 註解》 後集上 吏典에서 「車馬通行曰橋 人行涉曰梁」이라 하였고 「大曰溝 小曰渠」라 하였으며, 「官物을 빌려서 잃어 버리거나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을 逋欠」이라 하였다.

43) 故失牛馬란 牛馬를 죽이거나 망실하는 것을 말한다.

44) 烙契란 烙印과 契券을 말한다.

45) 外官職편에서 京官職편으로 옮겨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律 1인 종9품

【廣州府】 【補】 南漢山城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한다.

〔原〕 牧使, 宣祖朝 丁丑年(1577)에 府尹으로 올리고 正祖朝 乙卯年(1795)에 留守를 두었으며 지금 移錄한다.

留守 2인 정2품 1인은 京畿觀察使가 겸직한다. 判官 1인 종5품 檢律 1인 종9품

【從二品衙門】

【奎章閣】 【增】 역대 국왕이 지은 글과 쓴 글씨 및 遺言, 그리고 현 국왕의 초상화와 글 및 글씨 등을 관리

한다. 提學은 弘文館 大提學 및 弘文館·藝文館의 提學의 候補者로 추천된 사람으로서, 直提學은 弘文館의 副提學 후보자로 뽑힌 사람으로서 추천·임용하되, 모두 다른 관직자로서 겸직하며, 비록 지방관이라도 역시 겸직한다. 直閣은 弘文館의 관원을 역임한 자로, 待教는 翰林圈點을 통하여 승정원의 注書와 世子侍講院의 說書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자로서, 奎章閣에서 圈點하여 이조에 移牒하면, 이조에 추천·임용하되, (直閣과 待教는) 다른 實職이 있으면 그것이 겸직이 되고, 다른 實職이 없으면 (直閣과 待教가) 實職이 된다. 提學 이하의 관직에 결원이 있으면 前任者를 檢校로 임명하여 임시로 일을 보게 한다.

○閣監 2인은 품계에 따라 軍銜遞兒職에 임명하여 임금의 초상화 봉안소를 지키도록 한다. 司卷 2인은 5품으로 하여 왕명의 전달과 稟啓 등의 일을 맡도록 한다. 檢書官 4인은 5품으로 하고, 參外官은 품계에 따라 군함체아직에 임명하여 閣臣을 도와서 文書의 교정과 筆寫를 한다. 領籤 2인은 5품으로 하고 王이 지은 詩文의 筆寫와 校正 및 이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監書는 6인으로 왕이 재가한 문서(啓下文書)와 口傳을 기록한 것(應製文字)을 분장·관리하도록 한다. 寫字官 8인, 畫員 10인은 예비인원으로서 待命시키되 奎章閣에 소속시킨다. 檢律 1인은 9품으로 하고 刑曹의 檢律로서 待命하게 한다. 〔補〕 檢書官은 30개월이 차면 승진 또는 전보(遷轉)시키고, 46) 兼檢書

官은 定數가 없다. ○司卷, 領籤, 監書는 이제 폐지한다.

提學 2인 종2품에서 종1품까지 直提學 2인 정3품 당상관에서 종2품까지 直閣 1인 종6품에서 정3품까지 待敎 1인 정9품에서 정7품까지로 한다.

○(外閣) 校書館 【原】 經書와 史籍의 인쇄·반포와 香祝·

印章의 임무를 관장한다. 모두 문관으로 임용하며 篆文에 精熟한 자 3인을 품계에 따라 겸직으로 임명한다. 提調 2인, 別坐·別提 모두 4인으로 한다. ○博士 이하는 또 의정부 司錄 1인과 奉常寺 直長 이하 1인이 겸직하며 차례로 승진 또는 전보시키되 1년의 두 차례 인사이동 때에 2인씩 퇴임시킨다. [續] 提調는 2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大提學이 겸직하는 것이 定例이다. [增] 提調 2인은 규장각의 提學이 겸임하고, 副提調 2인을 더 두어, 규장각의 直提學이 겸직하게 한다. 兼校理 1인은 규장각의 直閣이 겸임한다. 參外 兼官 1인은 규장각 待敎를 품계에 따라 임명한다. ○校理는 校書館에서 스스로 골라서 임용한다. ○司準 10인은 종8품이고, 唱準은 遞兒職이며, 司勸 1인은 종9품이고 補字官은 체아직이다. ○香室은 대궐내 正殿의 서쪽에 있으며 校書館 參外官 1인이 교대로 숙직을 하되, 校書館에 參外官이 없으면 成均館 參外官이 代直한다. 祝文書寫인 忠義衛 3인은 禮房承旨가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또한 교대로 숙직하게 하되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승진 또는 전직시킨다. [補] 향실숙직을 하는 參外官 가운데 근무일수가 가장 많은 자는 郵官으로 뽑아서 보낸다. 47) ○判校는 당상관으로 승격한다. ○司錄의 겸직은 지금 폐지한다.

判校 1인 정3품 (原) 타관이 겸직한다. [續] 삭감한다. [補] 다시 둔다. 校理 1인 종5품 兼校理 1인 종5품 [續] 더두어 3인으로 한다. [增] 2인을 줄인다. 別坐 종5품 [續] 삭감한다. 別提 정·종6품 [續] 삭감한다. 博士 2인 정7품 著作 2인 정8품 正字 2인 정9품 副正字 2인 종9품

46) 『經國大典註解』(明宗時) 後集 上, 史典 遷轉條에 「遷 登也, 轉移也」라 하여 遷轉이란 승진과 전보를 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47) 郵官은 察訪의 별칭으로 각 驛을 감독하는 종6품관이다. 때로는 종9품인 驛丞을 郵官이라고도 하였으나 『續大典』에서 역승을 모두 察訪으로 승격시켰으므로 여기서는 察訪만을 의미한다.

【司憲府】 【原】 現實政務를 논평하고 모든 官僚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함을 풀며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한다.

大司憲 1인 종2품 執義 1인 종3품 掌令 2인 정4품 持平 2인 정5품 監察 13인 정6품 [原] 24인 [續] 11인을 줄여서 문관 3인, 무관 5인, 蔭官 5인으로 한다.

【開城府】 【原】 옛 도읍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한다.

留守 2인 종2품, 1인은 경기도 관찰사가 겸직한다. 經歷 1인 종4품

都事 2인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教授 2인 종6품 [原] 1인 [增] 개성부의 文官 중에서 유수가 스스로 골라서 임금께 보고하여 임명한다. [補] 삭감한다.

分教官 1인 종9품 [增] 새로 둔다. 개성부의 生員 進士로 유수가 스스로 골라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용한다. [補] 幼學이라도 임용한다. ○分監役도 같다. ○分教官·麗陵參奉, 分監役 등은 각 15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차례대로 승진시킨다. 分奉常寺의 直長과 主簿는 각각 10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 승진시킨다. 檢律 1인 종9품 [增] 새로 둔다.

【江華府】 【續】 江華島를 다스리는 일을 관장한다. [增]

경국대전에서는 都護府인데, 光海君 戊午年(1618)에 府尹으로 승격시키고, 仁祖朝 丁卯年(1627)에 留守를 두었다.

留守 2인 종2품, 1인은 경기도 관찰사가 겸직한다. 經歷 1인 종4품

分教官 1인 종9품 [增] 강화부의 生員·進士 또는 幼學 중에서 유수가 스스로 골라서 임금에게보고하여 임명한다. 檢律 1인 종9품 [增] 새로 둔다.

【忠翊府】 【原】 原從功臣의 관부이다. [增] 지금부터 忠勳府 소속으로 한다.

都事 2인 종5품

【正三品衙門】

【承政院】 【原】 王命의 出納을 관장한다. 당하관은 모두 文官을 임용한다. [續] 承旨를 지방관으로 모두 任用 提請해서는 안된다. ○注書는

추천 순서에 따라 承政院에서 3인의 후보자를 정하여 吏曹로 보내어 뽑아서 임명하도록 하되, 후보자가 3인이 되지 않으면, 2인의 후보자 또는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여도 무방하다. ○注書가 유고하면 假注書를 뽑아서 임명한다. [增] 六承旨房의 명단 기재난은 빈칸으로 두고, 六房名만을 列記하여 임금에게 올려서 임금이 吏戶禮兵刑工房에 배치할 승지이름을 기입하여 빈칸을 채워서 分房한다. 만약 六曹 堂上官과의 相避關係者가 있으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담당 房을 바꾸고 왕의 特旨가 있을 때에도 房을 바꾼다.

○檢律 1인은 왕의 재가를 얻어서 대기시킨다. [補] 都承旨는 弘文館 直提學을 겸임하는 것이 定例이며 弘文錄에 등재되지 못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

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各 1인 정3품 注書 2인 정7품 事變假注書 1인 정7품
[續] 새로 둔다.

【掌隸院】 【原】 노비에 관한 簿籍과 소송사무를 관장한다. 司議 이하는 모두 久任官이다. [增] 지금 고쳐서 刑曹 소속으로 한다.
判決事 1인 정3품 司議 3인 정5품 司評 4인 정6품 [續] 司議 2인을 줄인다. 司評 2인을 줄인다.

【司諫院】 【原】 諫諍과 論駁을 관장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大司諫 1인 정3품 司諫 1인 종3품 獻納 1인 정5품 正言 2인 정6품

【經筵】 【原】 (임금에게) 經書를 講讀하며 論評하고 思考하는 일을 관장한다. 他官으로 겸직하며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領事와 參贊官은 비록 문관이 아니더라도 겸직시킨다. [增] 侍講官 이하는 弘文館 直提學 이하 관료가 품계에 따라 겸직한다.

領事 3인 정1품 議政 知事 3인 정2품 同知事 3인 종2품 參贊官 7인 정3품 承旨, 副提學 侍講官 정4품 侍讀官 정5품 檢討官 정6품 司經 정7품 說經 정8품 典經 정9품

【弘文館】 【原】 궁중의 經籍을 관장하고 文翰에 專力하

며⁴⁸⁾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일을 맡는다. 모두 문관을 임용하고, 提學 이상은 他官이 겸직한다. ○모두 경연관을 겸직한다. ○副提學에서 副修撰까지의 관료는 또 知製教를 겸직한다(文官 6품 이상을 골라서 임용한다). 直提學 이하의 관직에 결원이 있으면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차례로 승진 또는 전보한다. [增] 차례대로 승진 전보하는 법은 이번에 폐지한다. ○知製教는 副提學 이하의 관원이 겸직하는 것을 內知製教라고 하며, 大提學과 吏曹判書가 서로 상의하여 6품 이상 관료를 별도로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한 자를 外知製教라고 한다. 知製教는 通政大夫에 이르기까지 겸임하며, 奎章閣 直提學 이하의 관원은 또한 現職者와 前任者 모두 知製教를 겸임한다. [補] 典翰은 應教를 거친 사람으로 弘文館에서 圈點하여 吏曹에 보내서 임용, 제청토록한다. 典翰을 거치면 應教 이하의 관직에 임용될 수 없다. 副提學과 典翰은 실적이 따로 있으면 그것이 겸직이 되고, 실적이 따로 없으면 그것이 실적이 된다. 또한 전임 副提學과 典翰을 뽑아서 檢校로 임명한다. 提學이 都承旨에 임명되면 提學을 체직하고, 都承旨가 提學으로 임명되면 都承旨를 체직한다. 都承旨가 副提學을 겸임하면 定例대로 겸임한 直提學은 解免한다. ○奎章閣 檢書官은 前職者 가운데 2인을 弘文館 에서 兼檢書官으로 본관에서 스스로 뽑아서 軍衛遞兒職으로 임용한다.⁴⁹⁾

領事 1인 正1品 議政 [增] 領議政 大提學 1인 正2品 提學 1인 從2品 副提學 1인 正3品 直提學 1인 正3品 [補] 都承旨 겸임 典翰 1인 從3品 應教 1인 正4品 副應教 1인 從4品 校理 2인 正5品 副校理 2인 從5品 修撰 2인 正6品 副修撰 2인 從6品 博士 1인 正7品 著作 1인 正8品 正字 2인 正9品

【藝文館】 【原】 辭命(辭令)을 制撰하는 일을 관장한

다.⁵⁰⁾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提學 이상의 관원은 타관이 겸직한다. 大提學

48) 『經國大典 註解』, 後集 上 吏典 治文翰條에 「治攻也, 攻即專力也」라고 하였다.

49) 軍衛遞兒職에 관해서는 解說편 참조.

50) 辭命은 원래 諸侯간에 쓰이는 修辭와 言語로서, 간혹 辭令과 混用되기도 한다.

이 文翰을 주관한다. 奉敎 이하의 관원을 처음 임용할 때에는 議政府는 吏曹 弘文館 春秋館 및 藝文館과 함께 通鑑·左傳·諸史 중에서 講讀을 시켜 合格한 者를 임용하고, 1년의 두 차례 인사이동 때 2인씩 퇴관시킨다. ○官階가 낮은 자는 그 官職에 준하여 官階를 올려 주고 차례대로 승진 또는 전보시킨다. 成均館, 承文院, 校書館의 博士 이하와 訓練院 參軍 이하도 같다.

領事 1인 정1품 議政〔增〕 領議政 大提學 1인 정2품 提學 1인 종2품 直提學 1인 정3품 都承旨가 겸직한다.〔補〕 이번 에 폐지한다. 應敎 1인 정4품, 弘文館 直提學에서 校理까지의 옥당인원 가운데에서 골라서 겸직시킨다. 奉敎 2인 정7품 待敎 2인 정8품 檢閱 4인 정9품

【世子侍講院】 【原】 세자를 모시고 經史를 講讀하며

道義를 바르게 啓導하는 일을 관장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

다. 副賓客 이상은 他官이 겸직한다.〔續〕 贊善과 進善은 學問과 德行이 士林間에 名望이 있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뽑되 간혹 단일 후보를 추천하여 임명하기도 한다. 諮議는 別薦으로 임용하되 합당한 자가 없으면 廟堂(의정부)에 문의하여 幼學이라도 구애받지 않고 뽑아서 임용한다.〔增〕 贊善, 進善은 간혹 他官이 겸직하기도 한다. 찬선은 비록 종1품에 이르러도 역시 겸직한다. ○侍講院은 경국대전에서는 從3品 衙門이었으나 正祖 甲辰年(1784)에 輔德이 堂上官으로 승격하여 正3品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正3品 衙門으로 移錄한다.

師 1인 정1품 영의정 傅 1인 정1품 의정 貳師 1인 종1품 贊成 左·右賓客 각1인 정2품 左右副賓客 각1인 종2품 贊善 1인 정3품〔續〕 새로 둔다. 輔德 1인 정3품〔原〕 종3품〔增〕 품계를 올린다. 兼補德 1인 정3품〔續〕 새로 둔다. 進善 1인 정4품〔續〕 새로 둔다. 弼善 1인 정4품 兼弼善 1인 정4품〔續〕 새로 둔다. 文學 1인 정5품 兼文學 1인 정5품〔續〕 새로 둔다. 司書 1인 정6품 兼司書 1인 정6품〔續〕 새로 둔다. 說書 1인 정7품 兼說書 1인 정7품〔續〕

辭命은 널리 應對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辭命(辭令)을 制撰한다는 것은 각종 外交 文書의 작성과 敎旨 등 문장을 짓는 것을 통칭한다. 『經國大典 註解』 後集 上 史典 「制撰辭命條」에는 制 裁也, 撰 述也라 하였다.

새로 둔다. 諮議 1인 정7품 [續] 새로 둔다.

【世孫講書院】 【續】 世孫을 모시고 講讀하는 일을 관장한다. [增] 師·傅는 他官이 겸직하며, 勸讀은 學問과 德行이 士林間에 名望이 있는 자를 3명을 뽑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되 간혹 단일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한다. ○講書院은 續大典에서는 從4品衙門이었으나 이제 諭善의 품계에 따라 正3品衙門으로 移錄한다.

師·傅 각1인 종1품 左右諭善 각1인 堂下3품에서 종2품까지로 품계에 따라 임명한다. [增] 새로 둔다. 左右翊善 각1인 종4품 [增] 우익선은 他官이 겸직한다. 左右勸讀 각1인 종5품 [增] 새로 둔다. 左右贊讀 각1인 종6품 [增] 우찬독은 타관이 겸직한다.

【成均館】 【原】 儒學의 教育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同知事 이상은 他官이 겸직한다. 知事가 업무를 주관하며 直講 이상 1인은 久任官이다. ○博士 이하는 또 議政府 司錄 1인 및 奉常寺의 直長 이하 2인이 兼任하고 순차로 승진 또는 전보시키되 1년의 두차례 인사이동 때에 3인을 退官시킨다(7월에 2인을 퇴관시킨다). [續] 祭酒·司業은 學問과 德行이 士林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임용후보자로 뽑되 간혹 단독후보로 추천하여 임용한다. [補] 直講·典籍 중 각 1인은 자체에서 뽑아 임용한다.

知事 1인 정2품 [增] 大提學이 定例대로 겸직한다. 同知事 2인 종2품 大司成 1인 정3품 祭酒 1인 정3품 [續] 새로 둔다. [增] 1, 2품도 또한 겸직한다. 司成 1인 종3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司藝 2인 정4품 [原] 3인 [續] 1인을 줄인다. 司業 1인 정4품 [續] 새로 둔다. 直講 4인 정5품 典籍 13인 정6품 [補] 4인은 종8품인 承文院의 參外官이다. 博士 3인 정7품 學正 3인 정8품 學錄 3인 정9품 學諭 3인 종9품

【尙瑞院】 【原】 璽寶·符牌·節鉞에 관한 일을⁵¹⁾ 관장한

다. [補] 直長은 정기인사이동 때마다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승진시킨다.

正 1인 정3품 都承旨가 겸임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直長 1인 종7품 副直長 1인 정8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春秋館】 【原】 現實政事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한다. 모

두 문관을 임용하며 타관이 겸직한다. 修撰官 이하는 承政院·弘文館의 副提學 이하와 議政府 舍人·檢詳, 藝文館 奉教 이하 및 侍講院의 堂下官 2인, 司憲府 執義 이하, 司諫院·承文院·宗簿寺·六曹의 堂下官 각1인이 겸직한다. [增] 修撰官 이하는 奎章閣 直提學 이하의 관원이 품계에 따라 겸직한다. [補] 兩司와 刑曹 堂下官의 겸직은 이번에 폐지한다.

領事 1인 정1품 領議政 監事 2인 정1품 左·右議政 知事 2인 정

2품 同知事 2인 종2품 修撰官 정3품 編修官 정3품에서 종4품까지

記注官 정·종5품 記事官 정6품에서 정9품까지

【承文院】 【原】 事大·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한다.⁵²⁾

모두 문관을 임용하며 都提調 3인은 議政이 겸임하며 提調 副提調는 定員이 없다. 정1품은 都提調라 하고 2품 이상은 提調라고 하며, 通政은 副提調라고 한다(이하 같다). 參校 이하는 또 他官이 겸직하며 정원이 없다. 吏文習讀官은 20인이다. ○判校는 堂上官으로 올려 준다. 校檢 이상 1인은 久任官이다. ○博士 이하는 또 奉常寺 直長 이하 1인이 겸직하여 차례대로 승진 또는 전보하며 1년의 두 차례 인사이동 때에 2인씩 퇴관하게 한다. ○校檢 이상에 결원이 있으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차례대로 승진 또는 전보시킨다. [續] 參外官은 6월 인사이동 때 2인, 12월 인사이동에서 1인을 6품으로 승진시킨다. ○上席博士가 실제로 有故하면 次席博士가 分館한다.⁵³⁾ ○製述官 2인으로 1인은 文官, 1인은 蔭官이며, 吏文

51) 璽寶는 國王의 도장(國璽)을 말하는데 玉으로 만든 것을 璽, 금으로 만든 것을 寶라 한다. 符牌는 兵符와 馬牌 巡牌 등을 말하고, 節鉞은 軍事責任者(留守 監司 兵·水使 포함)에게 國王이 내리는 信票 및 도끼(또는 도끼 모양의 手旗)를 의미한다(『經國大典 註解』, 後集 上 吏典 참조).

52) 事大는 中國과의 外交를 말하고 交隣이란 日本과 女眞간의 外交를 말한다. 다만 淸이 中國을 征服한 이후에는 交隣은 對日外交만을 의미하게 된다.

學官 3인은 모두 蔭官을 뽑아 임명하며⁵⁴⁾ 근무일수가 45개월이 차면 승진 또는 전보한다. ○寫字官 40인은 글씨 전문가를 뽑아서 임명한다. [增] 參校 이하의 他官兼職者와 吏文習讀官 및 校檢 이상 자는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승진 또는 전보하는 것을 지금 모두 폐지한다. [補] 都提調는 전·현직 議政이 定例대로 겸직한다.

判校 1인 정3품 參校 3품 [原] 2인 敎訓⁵⁵⁾ 겸한다. [續] 삭감한다. 校勘 4품 [原] 1인 敎訓이 겸한다. [續] 삭감한다. 校理 5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校檢 1인 정6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博士 2인 정7품 著作 2인 정8품 正字 2인 정9품 副正字 2인 9품

【通禮院】 【原】 禮節과 儀式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兼官

6인은 臚唱⁵⁶⁾ 능한 자를 뽑아 품계에 따라 충원·임용한다. 左通禮가 堂上官으로 승진하여⁵⁷⁾ 결원이 생기면 右通禮는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좌통례로) 승진 임용한다. <[增] 우통례가 승진. 임용되면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승진소요연수가 차면 당상관으로 승진시킨다. [續] 假引儀는 임용의 차례에 따라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승진시키고, 兼引儀는 근무일수가 30개월이 차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增] 參上 引儀 6인 중 2인은 전직 兼引儀로서 臚唱을 잘하는 자를 추천받아서 임명하여 御前에서의 唱에 대비하게 한다.

左右通禮 각1인 정3품 相禮 1인 3품 翊禮 1인 3품 [續] 새로 둔다. 奉禮 정4품. [原] 1인이다. [補] 삭감한다. 贊儀 1인 정5품

53) 分館이란 문과급제자의 신분제에 따라 承文院, 成均館, 校書館으로 나누어 權知(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槐院分館, 國子分館, 芸閣分館 등)

54) 文科及第한 官僚를 文官이라 하며, 文武科及第者 이외의 官僚들은 모두 蔭官이라 한다. 따라서 生員進士試 合格者로서 入仕한 자도 蔭官이다. 蔭官에는 門蔭, 襲蔭, 功蔭, 薦蔭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隱逸로서 천거되어 入仕한 薦蔭은 文科及第者 이상으로 대접받아서 榮達한 사람이 많다.

55) 『世宗實錄』 卷 29-28, 世宗 7年 9月 丁巳의 「吏文敎訓人 稱訓導官, 學習人 稱學官」에서의 敎訓과 같은 뜻으로 본다. 즉 事大文書에 쓰이는 독특한 用語와 文體(吏文)를 가르친 敎官을 敎訓人 또는 訓導官이라 하였다.

56) 臚唱은 각종 儀式에서 목소리를 가다듬어 唱名 또는 唱讀하는 것을 말한다(榜目에 있는 이름을 부르거나 笏記를 읽는 등).

57) 通禮院 左通禮, 奉常寺 正·承文院 判校와 같이 바로 堂上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3품 堂下官職을 准職이라 한다(『經國大典』 吏典 諸科).

引儀 8인 중6품 [原] 8인 [續] 2인을 줄인다. [補] 복구한다. 兼引儀 6인 중9품 [續] 새로 둔다. 假引儀 6인 중9품 [續] 새로 둔다.

【奉常寺】 【原】 祭祀와 諡號의 議定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都提調, 提調는 각 1인이며⁵⁸⁾ 正 이하는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正은 당상관으로 승진하며 主簿 이상 6인은 久任官이다. [增] 判官 1인은 자체 임용하되 久任官이다.

正 1인 정3품 副正 중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1인 중4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判官 1인 중5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主簿 2인 중6품 直長 1인 중7품 [增] 承文院 參外官이 겸임한다. 奉事 1인 중8품 [增] 成均館 參外官이 겸임한다. 副奉事 1인 정9품 [增] 成均館 參外官이 겸임한다. 參奉 1인 중9품 [增] 校書館 參外官이 겸임한다.

【宗簿寺】 【原】 王室族譜의 편찬과 宗室의 비위를 糾察하는 임무를 관장한다. ○都提調는 2인으로 宗室 尊長이 되고, 提調는 2인이다. [增] 都提調는 大君·王子君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다. 都提調가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提調 1인을 宗班에서 추천하여 임명하며, 主簿는 문관을 뽑아 임명하고, 直長은 生員, 進士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다. 他官司에서 서열에 따라 승진되면 보직을 바꾸어 준다. [補] 지금은 宗親府에 속한다.

正 1인 정3품 僉正 1인 중4품 [續] 삭감한다. 主簿 1인 중6품 直長 1인 중7품

【司饗院】 【原】 왕의 식사와 궐내의 음식공급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都提調 1인, 提調 4인, 副提調 5인으로 1인은 承旨가 겸임하고 提舉, 提檢은 모두 4인이다. ○主簿 이상 1인은 久任官이다. [續] 正은 國婚(嘉禮)時에 뽑아 임명하고, 提舉, 提檢은 외국사신을 접대하는 잔치가 있을 때 뽑아 임명한다.

正 1인 정3품 提舉 정·중3품 提檢 정·중4품 僉正 1인 중4품

58) 보통 도제조, 제조라고 읽으나, 일부자료(『경국대전연구』,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에서는 도제주, 제주라고 기록되고 있어서 李佑成 先生에게 문의하였던 바 조선시대의 관행상 도제주, 제주라고 읽었다고 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3인 종6품 [原] 1인 [續] 1인을 더한다 [補] 또 1인을 더한다. 直長 2인 종7품 奉事 3인 종8품 參奉 종9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內醫院】 【原】 왕의 약을 조제(和)⁵⁹⁾하는 일을 관장한다. 都提調, 提調는 각 1인이며, 副提調도 1인으로 承旨가 겸임한다. ○遞兒職으로 하고 일년에 두 차례 인사이동(兩都目)을 한다.

正 1인 정3품 僉正 1인 종4품 判官 1인 종5품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原] 3인 [續] 2인을 줄인다. 奉事 2인 종8품 副奉事 2인 정9품 參奉 1인 종9품

【尙衣院】 【原】 왕의 衣服과 궁중의 財貨·金銀寶貨 등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한다. 提調는 2인이고, 副提調는 1인으로 승지가 겸임한다. 別坐·別提는 모두 2인이며, 主簿 이상 1인은 久任官이다. [續] 正은 宮中에서 冠禮가 있을 때 선임한다.

正 1인 정3품 僉正 1인 종4품 別坐 정·종5품 [續] 삭감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1인 종6품 別提 1인 종6품 [原] 2인 정·종6품 각1인 [續] 1인을 줄인다. 直長 1인 종7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司僕寺】 임금의 가마와 외양간과 목장을 관장한다. 提調는 2인으로, 判官 이상 2인은 久任官이다. [續] 提調는 2인으로 1인은 議政이 겸임한다. ○理馬는 4인으로 정6품이고, 馬醫는 3인으로 정7품이다. [增] 理馬 4인은 체아직으로서 6품이 1인, 8품이 2인, 9품이 1인이다. [補] 僉正, 判官, 主簿 1인은 자체에서 골라 임용한다.

正 1인 정3품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1인 종4품 判官 1인 종5품 主簿 2인 종6품

【軍器寺】 【原】 兵器의 제조를 관장한다. 都提調 1인, 提調 2인, 別坐, 別提는 모두 2인이며, 주부이상 2인은 久任官이다. [續] 提調 2인 중 1인은 兵曹判書·參判 중에서 선임하며, 1인은 武將 중에서 선임한다. [補] 正을 堂上官으로 올리고, 僉正, 判官은 자체에서 골라 임용한다.

59) 『經國大典 註解』, 後集 上 吏典 「和御藥條」에서 和는 調也라 하였다.

正 1인 정3품 [續] 삭감한다. [補] 복구한다. 副正 1인 종3품 [續] 삭감한다 [補] 복구한다. 僉正 1인 종4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別坐 정·종5품 [續] 삭감한다. 判官 2인 종5품 別提 정·종6품 [續] 삭감한다. 主簿 2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副奉事 1인 정9품 參奉 1인 종9품

【司贍寺】 【原】 楮貨의 提調와 外居奴婢의 貢布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提調는 1인이고, 주부 이상 1인은 久任官이다. [增] 이번에 혁파한다.

正 1인 정3품 副正 1인 종3품 僉正 1인 종4품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軍資監】 【原】 軍需品の 비축을 관장한다. 都提調, 提調는 각 1인이며, 주부 이상 8인은 구임관이다. [續] 提調는 호조판서가 定例대로 겸임한다. [補] 判官과 奉事는 자체에서 골라 임용하며, 奉事 이상의 승진·임용에 관한 법은 廣興倉註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正 1인 정3품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종4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判官 1인 종5품 [原] 3인 [續] 2인을 줄인다. 主簿 종6품 [原] 3인 [續] 2인을 줄인다. 直長 종7품 [原] 1인 奉事 종8품 [原] 1인 ○이상은 업무량(仕)에 따라 加設하며, 혹은 2인 혹은 3인으로 하여 3인의 임용후보자를 갖춘다. 副奉事 정9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參奉 종9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掌樂院】 【原】 音階와 音律을 교육하고 校閱하는 일을

관장한다. 提調는 2인으로 한다. 음률을 이해하는 자로서 僉正 이하 2인을 품계에 따라 겸임시키며, 주부 이상중 1인은 구임관으로 한다. [增] 음률을 이해하는 자가 품계에 따라 겸직하는 것을 이번에 폐지한다. ○典樂 2인 정6품, 副典樂 1인 종6품, 典律 2인 정7품, 副典律 2인 종7품, 典音 2인 정8품, 副典音 4인 종8품, 典聲 10인 정9품, 副典聲 23인 종9품, 樂師·樂生·樂工·管絃 盲은 체아직으로 하고, 장악원에서 1년에 네 번 추천장으로 이조에 보고하여 職牒을 받도록 한다. [補] 副典樂 1인을 더 둔다.

正 1인 정3품 僉正 1인 종4품 主簿 2인 종6품 [原] 1인 [續] 1인을 더

둔다. 直長 종7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觀象監】 【原】 天文·地理·曆數·占籌·測候·刻漏 등

의 일을 관장한다. 提調 2인 ○取才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서 判官 이상인 者 中에서 1인은 구임관으로 하고, 구임관과 教授·訓導 이외의 자는 체아직으로 하며 일년에 두 차례 인사이동을 한다. 주부 이상은 모두 과거 합격자를 임명한다.⁶⁰⁾ ○天文學習讀官은 10인으로 종6품이 되면 퇴관시킨 후, 守令取才(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하여 합격한 자를 敍用한다. 天文·地理·命課 등에 정통한 자를 肄習官이라 하여 각전공분야의 일을 보게 하며⁶¹⁾ 前歷이 있으면 無祿官의 예에 의하여 任用한다. ○三學 즉 天文과 曆數 및 占籌에 모두 능통한 자는 특별히 顯官에 임용하여⁶²⁾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禁漏는 30인으로 근무일수가 많은 자는 官職에 임명하여 종6품이 되면 퇴관시키되 그대로 재직하는 자에게는 西班 종6품 체아직 한 자리를 준다. ○일식과 월식을 推算한 자⁶³⁾에게는 서반 체아직 한 자리를 따로 준다. ○命課盲에게는 서반 9품 체아직 두 자리를 줄 수 있는데,⁶⁴⁾ 일년에 네번 인사이동하여 서로 바꾸어 임명하되 근무일수가 400일이 되면 官階를 올려주며, 賤人은 종6품에서 그친다. [續] 兼教授는 때로는 參外官으로 임명하고 근무일수가 45개월이 차면 승진 또는 전보한다. [補] 天文學 地理學 命課學 등 三學에서 윤회하여 임명되던 겸교수 자리를 命課學에 전속하게 하고 6品자리로 한다.

領事 1인 정1품 영의정 正 1인 정3품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

한다. 僉正 1인 종4품 判官 1인 종5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主簿 1인 종6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天文學教授 1인 종6품

60) 여기서의 과거합격자(出身者)는 雜科(陰陽科)合格者를 의미한다 文·武科 合格者는 及第者 또는 及第出身者라 하고 生員·進士試 合格者는 入格者라 하며, 단순히 出身者라고만 할 때에는 雜科合格者를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었다(『經國大典 註解』 卷3 禮典) 따라서 正, 副正, 僉正, 判官, 主簿 등은 모두 雜科 合格者였음을 알 수 있다.

61) 金良洙, 『朝鮮後期 曆算家譜 9種 解題』(한국문화사, 1991, 영인본) p.4.

62) 『經國大典 註解』 前集 吏典 p.2에 「顯官, 謂東西班正職也」라 하였다.

63) 『위의 책』 後集 下 吏典 p.19에 「日月食述者, 日月食推算之入」이라 하였다.

64) 命課盲은 운명과吉凶을 점치는 장님을 말한다.

地理學教授 종6품 [原] 1인 [補] 혁파한다. 天文學兼教授 3인 종6품 [續] 새로 둔다. [增] 3인 가운데 한 자리는 전과 같이 天文學에 속하고, 한 자리는 天文·地理·命課 三學을 돌아가면서 임용하고, 한 자리는 禁漏官과 晝員을 교대로 임용하되 근무일수가 차면 승진 또는 전보한다. 地理學兼教授 종6품 [續] 1인 [增] 혁파한다. 命課學兼教授 1인 종6품 [續] 새로 둔다 [增] 혁파한다. [補] 복구한다. 直長 2인 종7품 奉事 2인 종8품 副奉事 1인 정9품 [原] 3인 [續] 2인을 줄인다. 天文學 地理學 訓導 각1인 정9품 命課學 訓導 1인 정9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參奉 2인 종9품 [原] 3인 [續] 1인을 줄인다.

【典醫監】 【原】 醫藥의 宮內供給과 下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提調 2인 ○취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서 判官 이상인 자 중 1인은 久任官으로 한다. 구임관과 教授, 訓導 이외는 遞兒職으로 하고 일년의 두 번 인사이동 때 取才시험에서 次點을 얻은 자는 地方官署로 임용한다.⁶⁵⁾ ○主簿 이상은 醫科科學合格者로 임명한다. ○習讀官은 30인이다.

正 1인 정3품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1인 종4품 判官 1인 종5품 主簿 1인 종6품 醫學教授 1인 종6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直長 2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副奉事 2인 정9품 [原] 4인 [續] 2인을 줄인다. 醫學訓導 1인 정9품 參奉 2인 종9품 [原] 5인 [續] 3인을 줄인다.

【司譯院】 【原】 여러 나라의 언어(외국어)의 통역을

관장한다. 都提調 1인, 提調 2인 ○教授·訓導 외에는 체아직으로 하고 일년에 두 번 인사이동한다. 취재시험에서 차점을 얻은 자는 지방관서로 임용한다. ○漢學習讀官 30인 ○단지 여진어만 해득하는 자는 2품으로 나누어 1년씩 서로 교체한다. ○중앙과 지방의 여러 語學의 訓導는 근무일수가 900일에 차면 바꾼다. [續] 主簿 이상은 모두 科學(譯科)에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

正 1인 정3품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1인 종4품 判官 1인 종5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主簿 1인 종6품 漢

65) 註 41 參照.

學教授 4인 종6품, 2인은 文官이 겸직한다. 直長 1인 종7품 [原] 2인 [續] 1인을 줄인다. 奉事 2인 종8품 [原] 3인 [續] 1인을 줄인다. 副奉事 2인 정9품 漢學訓導 4인 정9품 淸學 [補] 女眞學은 경국대전에서는 倭學 아래에 있었으나 이번에 차례를 올린다. 蒙古·倭學訓導 각 2인 정9품 參奉 2인 종9품

【從三品衙門】

【繕工監】 【原】 土木과 營繕을 관장한다. 提調 2인, 判官 이상 1인은 久任官이다. [續] 假監役은 임명순서에 따라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實職官으로 승진시키며, 假官의 근무일수를 通計하여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올려 준다. [增] 提調 1인은 호조판서가 정례대로 겸임한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正3品衙門이었으나 이번에 副正의 품계에 따라 從3品衙門으로 移錄한다.

正 정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1인 종3품 僉正 종4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1인 종6품 直長 종7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奉事 2인 종8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奉事 1인 정9품 參奉 종9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監役官 3인 종9품 [續] 새로 둔다. 假監役官 3인 종9품 [續] 새로 둔다.

【正四品衙門】

【宗學】 【原】 宗室에 대한 교육의 임무를 관장한다. ○成均館 司成 이하와 典籍 이상으로 겸직시킨다. [續] 이번에 혁파한다.

導善 1인 정4품 典訓 1인 정5품 司誨 2인 정6품

【修城禁火司】 【原】 궁성과 도성의 修築 및 궁궐·관청과 洞里的의 각 民家の 화재에 대한 消防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都提調 1인, 提調 2인과 提檢 4인으로 4인 중 3인은 司僕寺의 正, 軍器寺의 正, 繕工監의 正이 겸임하며, 別坐 6인 중 4인은 義禁府 經歷, 兵曹·刑曹·工曹 正郎 각 1인이 겸임한다. 別提는 3인으로 1인은 漢城府 判官이 겸임한다. [續] 이번에 혁파한다.

提檢 정4품 別坐 정·종5품 別提 정·종6품

【豐儲倉】 【原】 쌀·콩, 초둔(등우리)⁶⁶⁾, 종이 등의 물건을 관장한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입관이다. [續] 이번에 혁파되어 長興庫에 소속시킨다.

守 1인 정4품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副奉事 1인 정9품

【廣興倉】 【原】 여러 관원의 祿俸을 관장한다.⁶⁷⁾ 주부 이상

1인은 구입관이다. [補] 令은 實職者 중 守令을 거친 사람으로서 하고 奉事는 參外의 實職者 중에서 戶曹에서 스스로 임용한다. 奉事 이상은 근무일수가 차면 차례대로 승진 임명하되, 主簿에 이르면 詞訟官으로 임용하고 6개월이 차면 令을 가설하여 승진 임용한다. ○加設된 令 이하에 결원이 있으면 다시 奉事를 뽑아서 임명한다.

守 1인 정4품 令 1인 종5품 [補] 새로 둔다. 主簿 종6품 [原] 1인

直長 종7품 [補] 새로 둔다. 奉事 종8품 [原] 1인 ○加設令 이하는 근무일

수에 따라 옮겨주되 2인의 임용후보자를 갖추게 한다(備二員). 副奉事 정9품 [原] 1인[補] 삭감한다.

【從四品衙門】

【司籩寺】 궁중창고의 米穀과 궁내에 공급되는 장(醬)

등의 물품을 관장한다. 提調는 1인이다. 주부 이상 1인은 구입관이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3품 아문이었으나, 이번에 僉正의 품계에 따라 移錄한다.

正 정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1인 종4품 主簿 1인 종6품 直長 종7품 [原] 1인 [補] 삭감한

다. 奉事 1인 종8품 [補] 새로 둔다.

【司宰監】 【原】 궁중의 어류, 육류, 소금, 땀나무, 햇빛

66) 부들이나 띠같은 풀로 엮어서 비나 햇빛을 가리우고 덮는 등우리를 말한다(『세종실록』 권5-1, 권19-21).

67) 『經國大典 註解』 後集 上 吏典 祿俸條에 米穀曰祿 布帛曰俸이라 하여 관원의 보수가 米穀과 布帛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등의 일을 관장한다. 提調는 1인이다. 주부이상 1인은 구임관이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3품 아문이었으나, 이번에 僉正의 품계에 따라 移錄한다. ○횃불(炬火)은 이번에 없앤다.

正 정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1인 종4품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續] 새로 둔다. 參奉 종9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典艦司】 【原】 서울과 지방의 선박을 관장한다. ○都提調, 提調는 각 1

인이며 提檢 이하는 5인이다. ○水運判官 2인, 海運判官 1인이 本司에 속한다.

[續] 本司를 혁파하고 水運判官만을 남겨둔다. [增] 이번에 判官을 모두 혁파한다.

提檢 종4품 別坐 정·종5품 別提 정·종6품

【典涓司】 【原】 궁궐을 청결히 하고 수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提調는 1

인, 선공감의 提調가 겸임한다. 提檢, 別坐, 別提는 모두 5인이며, 直長 이하와 錄事는 체아직으로 하되 일년에 네 번 인사이동한다. [續] 전연사를 이번에 폐지하고 錄事만 체아직으로 한다.

提檢 종4품 別坐 정·종5품 別提 정·종6품 直長 2인 종7품 奉事 2인 종8품 參奉 6인 종9품

【正五品衙門】

【內需司】 【原】 궁중용의 쌀, 옷감 및 잡물과 노비를 관

장한다. 別좌·別제는 모두 2인이며, 典需·副典需와 別좌·別제는 서로 바

꾸어 가면서 임명한다. 書題(書吏)는 20인이고, 典會 이하에서 書題까지는 체아직으로 하되 일년에 네 번 인사이동한다. 근무일수가 514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 주고 종6품이 되면 퇴임시킨다. 그 가운데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며 일에 밝은 자 3인을 임금의 特旨로 계속 근무시켜서 체아직에 임명할 수 있으나, 관계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補] 노비제는 혁파한다.

典需 1인 정5품 別坐 정·종5품 副典需 1인 종6품 別提 정·종

6품 典會 1인 종7품 典穀 1인 종8품 典貨 2인 종9품

【從五品衙門】

【昭格署】 【原】 玉清, 上清, 太清 등 3淸의 별들에 대한 제사를 관장한다.⁶⁸⁾ ○提調 1인, 별제 2인, 승과 別提는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續] 이번에 혁파한다.

승 1인 從5품 別提 정·종6품 參奉 2인 從9품

【宗廟署】 【原】 王陵과 祭閣(사당)을 지키는 일을 맡는다. 都提調, 提調 각 1인, 直長 이하 1인은 구입관이다.

승 2인 從5품 [原] 1인 [續] 1인을 더하여 문관을 뽑아 임명한다. 直長 1인 從7품 奉事 從8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奉事 1인 從9품

【社稷署】 【原】 社稷壇과 그 담의 청소를 관장한다. 都提調, 提調 각 1인

승 3인 從5품 [原] 1인 [續] 1인을 더하여 문관을 뽑아 임명한다. [補] 또 1인을 더하여 蔭官을 뽑아 임명한다. 直長 從7품 [續] 1인 [補] 삭감한다. 參奉 從9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景慕宮】 【增】 宮廟를 지키는 일을 맡는다. 都提調, 提調 각 1인

승 3인 從5품 [增] 1인, 문관을 뽑아 임명한다. [補] 2인을 더하되 모두 蔭官을 뽑아 임명한다. 直長 從7품 [增] 1인 [補] 삭감한다. 奉事 從8품 [增] 1인 [補] 삭감한다.

【濟用監】 【原】 중국으로 보내는 직물(布), 인삼과 回賜品인 의복 및 각종 비단(紗·羅·綾·段)·布貨·물감·염색·직조 등의 일을 관장한다.⁶⁹⁾ 提調는 1인, 주부 이상 4인은 구입관이다. [增] 인삼·紗·羅·綾·段·布·貨·織造에 관한 것은 이번에 폐지한다. [補] 경국대전에는 정3품 아문이나 이번에 判官의 품계에 따라 移錄한다.

正 從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從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

68) 玉清, 上清, 太清 등 3淸이란 道教에서 말하는 天上의 별들의 세계를 가리킨다.

69) 中國 天子에게 보내는 물품을 進獻品이라 하고, 國王에게 올리는 물품을 進上品이라 하였다. 또한 天子가 國王에게 답례로 보내는 물품을 賜與品 또는 下賜品이라 하였다.

正 종4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判官 1인 종5품 主簿 2인 종6품 [原] 1인 [補] 1인을 더한다. 直長 종7품 [原] 1인 [補] 삭감한다. 奉事 1인 종8품 副奉事 1인 정9품 參奉 종9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平市署】 【原】 시장의 점포를 단속하고 度量衡을 통일시키며 물가를 조절하는 일을 관장한다. 提調 1인 令 1인 종5품 主簿 1인 종6품 [增] 새로 둔다. 直長 1인 종7품 奉事 종8품 [原] 1인 [增] 삭감한다.

【司醞署】 【原】 궁중으로 술과 단술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續] 이번 에 혁파한다. 令 1인 종5품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典牲署】 【原】 祭物에 쓸 家畜을 기르는 일을 맡는다. 提調 1인 [補] 경국대전에서는 종6품 아문이었으나, 正祖 丁巳年(1797)에 判官을 새로 두었으므로 종5품 아문으로 移錄한다. 判官 1인 종5품 [補] 새로 둔다. 主簿 종6품 [原] 1인 [補] 삭감한다. 直長 1인 종7품 奉事 종8품 [原] 1인 [補] 삭감한다. 副奉事 1인 정9품 [補] 새로 둔다. 參奉 종9품 [原] 2인 [續] 삭감한다.

【五部】 【原】 서울의 관내 각 동리에 거주하는 사람의 犯法事件과 교량·도로·頒火⁷⁰⁾·禁火와 里門의 경계 수비와 집터의 측량, 檢屍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5部는 中, 東, 南, 西, 北이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종6품 아문이었으나 正祖 辛亥年(1791)에 參上都事를 고쳐서 令을 두었으므로 이번에 종5품 아문으로 옮겨 적는다. ○都事는 生員과 進士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다. 各令 1인 종5품 [原] 종6품, 주부 각 1인이다. [續] 주부를 고쳐서 都事 각 1인을 둔다. [補] 都事를 고쳐서 令을 둔다. 各都事 1인 종9품 [續] 종8품 奉事 각 1인 [補] 고쳐서 도사를 둔다. 參奉 종9품 [原] 각 2인 [續] 삭감한다.

【從六品衙門】

【內資寺】 【原】 궁중으로 공급되는 쌀·국수·술·간장·

70) 頒火는 불씨를 나누어 주는 것.

기름·꿀·채소·과일과 궁중연회 직조 등의 일을 관장한다. 提調는 1인이다. 주부 이상 4인은 구임관이다. [增] 궁중연회와 織造는 이번에 폐지한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3품 아문이었으나 이번에 주부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正 정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종4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內贍寺】 【原】 各宮·各殿으로 공급하는 물품과 二品 이상 관원에게 하사하는 술 및 일본인과 여진인에게 보내는 음식물과 직조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提調는 1인이며, 주부 이상 4인은 구임관이다. [增] 2품 이상에게 술을 하사하는 것과 일본인, 여진인에게 음식과 직조물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에 폐지하고 기름과 식초 및 素饌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3품 아문이나, 이번에 주부의 품계에 따라서 옮겨 적는다.

正 정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종4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禮賓寺】 【原】 손님⁷¹⁾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宗室 重臣에 대한 음식대접을 하는 일 등을 맡는다. 提調는 1인이다. 提檢·別坐·別提는 모두 6인이며, 주부 이상 1인은 구임관이다. [續] 提調는 호조판서가 定例대로 兼한다. [增] 提調는 호조판서·참판 중에서 추천 임용을 한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3품아문이었으나 주부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正 정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副正 종3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僉正 종4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提檢 정·종4품 [續] 삭감한다. 別坐 정·종5품 [續] 삭감한다. 判官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別提 정·종6

71) 여기서의 손님은 외국사신뿐만 아니라 국내의 大臣(정승)까지 손님으로 인정하여 접대한다고 하였다(윤국일, 『앞의 책』 p.210).

품 [續] 삭감한다. 主簿 2인 종6품 [原] 1인 [補] 1인을 더한다. 直長 1인 종7품 奉事 8품 [原] 1인 [補] 삭감한다. 參奉 2인 종9품 [原] 1인 [續] 1인을 더한다.

【典設司】 【原】 帳幕의 공급을 관장한다. 提調는 1인, 提檢 이하 5인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4품 아문이었으나 이번에 별제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守 정4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提檢 정·종4품 [續] 삭감한다. 別坐 정·종5품 [續] 삭감한다. 別提 2인 정·종6품 [增] 종6품 別檢 1인 종8품 [增] 새로 둔다.

【義盈庫】 【原】 기름·꿀·밀납·소찬(素物)·후추 등의 물건을 관장한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입관이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종5품 아문이었으나 이번에 주부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令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1인 종6품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長興庫】 【原】 돛자리, 油菴⁷²⁾, 종이 등 물건을 관장한다. 직장 이하 1인은 구입관이다. [續] 提調 1인을 새로 둔다. [補] 경국대전에서는 종5품 아문이었으나 주부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令 종5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主簿 2인 종6품 [原] 1인 [補] 1인을 더둔다. 直長 종7품 [原] 1인 [補] 삭감한다. 奉事 1인 종8품

【氷庫】 【原】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맡는다. 提調 1인, 別坐 이하 4인 [補] 경국대전에서는 종5품 아문이었으나 별제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別坐 종5품 [續] 삭감한다. 別提 2인 정·종6품 [增] 종6품 동·서빙고 각 1인, 別檢도 같다. 別檢 2인 정·종8품 [增] 종8품

【掌苑署】 【原】 대궐내 정원과 그 곳의 꽃과 과실에 관한 일을 맡는다. 提調 1인, 別提 2인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6품아문이었으나 이번에 별제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掌苑 정6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別提 2인 정·종6품 [增] 종6품 奉

72) 유둔은 두꺼운 종이에 기름을 먹여서 방석처럼 깔고 앉게 만든 물건이다.

事 1인 종8품 [續] 새로 둔다.

【司圃署】 【原】 園圃와 채소를 관장한다. 提調 1인, 別提 이하 7인 [補] 경국대전에서는 정6품 아문이었으나 별제의 품계에 따라 옮겨 적는다.

司圃 정6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別提 2인 정·종6품 [增] 종6품
直長 1인 종7품 [續] 새로 둔다. 別檢 정·종8품 [續] 삭감한다.

【養資庫】 【原】 성균관 유생들에게 쌀, 콩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관장한다. 주부는 구입관이다.

主簿 1인 종6품, 성균관 典籍이 겸직한다. 直長 1인 종7품, 성균관 博士가 겸직한다. 奉事 1인 종8품 성균관 學正이 겸직한다.

【司畜署】 【原】 여러 가지 가축을 사육하는 일을 맡는다. 提調 1인 [續] 提調는 호조판서가 겸직하는 것을 정례로 한다. [增] 이번에 이를 혁파하고 호조에 속하게 한다.

司畜 1인 종6품 [續] 삭감한다. 別提 2인 종6품

【造紙署】 【原】 表, 箋, 咨文의 用紙 및 여러 가지 종이의 제조를 관장한다. 提調 2인 [續] 提調 1인을 줄인다. [增] 다시 두고 1인은 摠戎使가 겸직한다.

司紙 종6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別提 3인 종6품 [原] 4인 [續] 2인을 줄인다. [補] 1인을 더 둔다.

【惠民署】 【原】 의약으로 庶民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는다. 提調 2인 ○취재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者로서 직장 이상자 1인은 구입관으로 한다. 구입관 이외에는 체아직으로 하고 일년에 두번 인사이동을 한다. 채용시험에서 낮은 점수(차점자)를 받은 者는 지방관서로 임용한다. [續] 提調중 1인을 줄인다. [增] 줄인 인원을 다시 둔다.

主簿 1인 종6품 醫學教授 1인 종6품 [原] 2인으로 1인은 文官이 겸직한다. [續] 겸직 인원을 삭감한다. 直長 1인 종7품 奉事 1인 종8품
醫學訓導 1인 정9품 參奉 4인 종9품

【圖書署】 【原】 도표작성과 그림 그리는 일을 맡는다.

提調 1인 ○善畫 1인, 종6품, 善繪 1인 종7품, 畫史 1인 종8품, 繪史 2인 종

9품, [增] 提調는 예조판서가 겸하는 것이 정례이다. ○篆字官 2인을 새로 둔다. ○畫員 30인은 본서에서 이조로 1년에 4번 薦狀으로 보고한 후, 이조로부터 직첩을 받는다.

別提 종6품 [原] 2인 [增] 삭감한다. 兼教授 1인 종6품 [補] 새로 둔다.

【典獄署】 【原】 獄에 수감된 罪囚를 관장한다. 副提調는 1인으로 承旨가 맡는다.

主簿 1인 종6품 奉事 종8품 [原] 1인 [續] 삭감한다. 參奉 2인 종9품 [原] 1인[續] 1인을 더 둔다.

【活人署】 【原】 都城內의 病人을 救療하는 일을 맡는다. 提調는 1인이며, 參奉·醫員은 체아직으로 하고 일년에 두번 인사이동을 한다.

別提 2인 종6품 [原] 4인 [續] 2인을 줄인다. 參奉 2인 종9품

【瓦署】 【原】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일을 관장한다. 提調 1인

別提 2인 종6품 [原] 3인 [續] 1인을 줄인다.

【歸厚署】 【原】 棺槨의 製造와 판매 및 禮葬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맡는다. ○提調 1인 [增] 본서를 혁파하고 繕工監에 소속시킨다. 別提 6인 종6품 [續] 4인을 줄인다.

【四學】 【原】 관내 유생의 교육을 관장한다. 中·東·南·西學에서는 성균관 典籍 이하가 겸직한다. [增] 典籍이 겸직하는 정례는 이번에 폐지한다.

教授 각 1인 종6품 [原] 각 2인 [續] 각 1인을 줄이고 1인은 侍從을 겸직으로 임명한다.⁷³⁾ 各訓導 1인 정9품 [原] 각 2인 [續] 각 1인을 줄인다.

73) 侍從은 玉堂(홍문관의 官員), 翰林(예문관의 奉敎, 待敎, 檢閱), 注書(承政院의 官員) 등 국왕의 측근에서 근무하는 清宦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玉堂의 判料만을 지칭한다.

【各殿】 【續】 慶基殿 參奉은 근무일수가 360일이 차면 서울의 참봉과 서로 바꾸고, 濬源殿 참봉은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서울의 참봉으로 승진·임용한다. [增] 경기전 참봉과 서울 참봉의 交流法은 이번에 폐지하고 근무일수를 헤아려서 승진 또는 전보시키는 것은 永禧殿과 長寧殿의 예에 따르고, 肇慶廟도 같다. 濬源殿의 참봉은 이번에 모두 승으로 승격한다. ○英祖 辛卯年(1771)에 특별히 慶基殿 북쪽에 肇慶廟를 세우고 경기전의 예대로 관원을 두고, 지금부터 서열을 각전의 첫머리에 두도록 한다.

肇慶廟⁷⁴⁾ 全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別檢 1인 종8품

文昭殿⁷⁵⁾ [原] 都提調 2인, 王의 尊屬宗親으로 임명한다. 提調 2인 參奉 2인 종9품 [續] 이번에 폐지한다.

延恩殿⁷⁶⁾ [原] 提調는 文昭殿 提調가 겸직한다. 參奉 2인 종9품 [續] 이번에 폐지한다.

慶基殿⁷⁷⁾ 全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濬源殿⁷⁸⁾ 永興에 있다. 令 2인 종6품 근무일수에 따른 승진전보법은 各陵註에 상세히 있다. [補] ○이번에 再任用된 사람은 본래 정하여진 근무월수내에서 승진 또는 전보된다.

永禧殿⁷⁹⁾ 京城에 있다. [補] 都提調, 提調 각1인을 더 둔다. 令 2인 종5품 [續] 1인 [補] 1인을 더 둔다. 參奉 1인 종9품

長寧殿⁸⁰⁾ 江華에 있다. 令 1인 종5품 別檢 1인 종8품

萬寧殿 江華에 있다. [續] 別檢 1인과 參奉 1인을 둔다. [增] 이번에 長寧殿에 합친다.

華寧殿⁸¹⁾ 水原에 있다. 【補】 提調 1인을 留守가 兼職한다. 令 1인을 判官이 겸직한다.

74) 全州李氏始祖의 位牌奉安所.

75) 太祖妃 韓氏의 魂殿.

76) 德宗의 魂殿.

77) 全州李氏始祖와 太祖의 肖像畫 奉安所.

78) 朝鮮王朝 癸祥을 기념하던 殿閣으로 태조의 초상화를 奉安.

79) 太祖, 世祖, 元宗, 肅宗, 英祖, 純祖의 초상화를 奉安.

80) 肅宗의 초상화를 奉安.

81) 正祖의 초상화를 奉安.

長生殿 【增】王室의 棺을 제작 보관한다.⁸²⁾ ○都提調 1인은 領議政이 겸직한다. 提調 3인은 戶·禮·工의 三曹 判書가 겸직하며 郎廳 3인은, 戶·禮·工 3조 郎官이 겸직한다.

【各陵】 【續】 참봉은 각 2인으로 하되 한자리는 別檢·直長·丞으로 하여 文官과 蔭官을 나누어 뽑아 수시로 바꾸어가면서 임명한다. 奉事 역시 중간에 바꾸어 뽑아서 임명하였으나 지금은 이를 폐지한다. ○德陵 이하 8능은 모두 함경도인을 뽑아 임명하되 근무일수가 30개월이 되면 濬源殿 참봉으로 승진 임명한다.〔增〕德陵과 安陵의 능이름이 비록 다르지만 같은 陵이며, 定陵과 和陵도 또한 같다. 그래서 비록 8陵이라지만 실제로는 6陵이다. 6릉 참봉은 12인으로 7인은 그대로 참봉으로 있게 하고, 5인은 奉事 3인, 直長 1인 別檢 1인으로 나누어 임명하되, 別檢은 문관으로 임명한다. 濬源殿 참봉 2인은 모두 승으로 하고 참봉이 차례대로 승진한다. 봉사와 직장은 근무일수가 60개월이 차면 승으로 승진하고, 별검도 근무일수가 30개월이 차면 승으로 승진한다. 승은 근무일수가 30개월이 차면 인사이동시기를 기다려서 京官職으로 전보된다.〔補〕別檢을 直長으로 한다. ○淑陵의 奉事와 定陵의 參奉은 임시로 승을 삼되 直長으로 차례대로 승진시켜서 근무일수가 30개월이 차면 내직으로 옮겨준다.

德陵⁸³⁾ 咸興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安陵⁸⁴⁾ 德陵과 같은 언덕에 있다. 參奉 1인 종9품〔補〕宗親府가 함경도내에 있는 宗姓을 스스로 골라서 임용하고 45개월이 되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智陵⁸⁵⁾ 安邊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淑陵⁸⁶⁾ 文川에 있다. 奉事 1인 종8품 參奉 1인 종9품

82) 『東園秘器』를 풀이한 말이다. 東園은 漢代의 官署名으로 小府에 속하며 凶器(棺)를 만들어 보관하였으며, 거기서 만든 棺을 秘器라고 하였다(後漢書 和熹, 鄧皇后紀注辭源).

83) 太祖의 高祖父 穆祖의 陵.

84) 太祖의 高祖母 平昌 李氏의 陵.

85) 太祖의 曾祖父 翼祖의 陵.

86) 太祖의 曾祖母 登州 崔氏의 陵.

義陵⁸⁷⁾咸興에 있다. 奉事 1인 종8품 參奉 1인 종9품

純陵⁸⁸⁾咸興에 있다. 奉事 1인 종8품 參奉 1인 종9품

定陵⁸⁹⁾咸興에 있다. 參奉 1인 종9품

和陵⁹⁰⁾ 定陵과 같은 언덕에 있다. 參奉 1인 종9품 ○이상의 모든 룡의 관원은 吏曹에서 함경도내 사람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여 임금의 落點(결정)을 받아 임명하면 해당관원은 謝恩肅拜를 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한다.

健元陵⁹¹⁾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補] 宗親府가 大君, 王子君의 奉祀孫을 스스로 골라 임용하되 연령과 生員·進士·幼學인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齊陵⁹²⁾ 豐德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貞陵⁹³⁾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厚陵⁹⁴⁾ 豐德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獻陵⁹⁵⁾ 廣州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英陵⁹⁶⁾ 驪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顯陵⁹⁷⁾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莊陵⁹⁸⁾ 寧越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思陵⁹⁹⁾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光陵¹⁰⁰⁾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敬陵¹⁰¹⁾ 高陽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87) 太祖의 祖父 度祖의 陵.
 88) 太祖의 祖母 文川 朴氏의 陵.
 89) 太祖의 父 桓祖의 陵.
 90) 太祖의 母 永興 崔氏의 陵.
 91) 太祖陵.
 92) 太祖妃 神懿王后 安邊 韓氏의 陵.
 93) 太祖妃 神德王后 谷山 康氏의 陵.
 94) 定宗과 妃 安定王后 慶州 金氏의 陵.
 95) 太宗과 妃 元敬王后 驪興 閔氏의 陵.
 96) 世宗과 妃 昭憲王后 靑松 沈氏의 陵.
 97) 文宗과 妃 顯德王后 安東 權氏의 陵.
 98) 端宗陵.
 99) 端宗妃 定順王后 礪山 宋氏의 陵.
 100) 世祖와 妃 貞熹王后 坡平 尹氏의 陵.

昌陵 ¹⁰²⁾	高楊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恭陵 ¹⁰³⁾	坡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宣陵 ¹⁰⁴⁾	廣州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順陵 ¹⁰⁵⁾	坡州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靖陵 ¹⁰⁶⁾	廣州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溫陵 ¹⁰⁷⁾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禧陵 ¹⁰⁸⁾	高陽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泰陵 ¹⁰⁹⁾	楊州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孝陵 ¹¹⁰⁾	高陽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康陵 ¹¹¹⁾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穆陵 ¹¹²⁾	楊州에 있다.	別檢	1인	종8품	參奉	1인	종9품
章陵 ¹¹³⁾	金浦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長陵 ¹¹⁴⁾	交河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徽陵 ¹¹⁵⁾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寧陵 ¹¹⁶⁾	驪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崇陵 ¹¹⁷⁾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明陵 ¹¹⁸⁾	高陽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 101) 德宗陵.
 102) 睿宗과 繼妃 安順王后 淸州 韓氏의 陵.
 103) 睿宗妃 章順王后 淸州 韓氏의 陵.
 104) 成宗과 繼妃 貞顯王后 坡平 尹氏의 陵.
 105) 成宗妃 恭惠王后 淸州 韓氏의 陵.
 106) 中宗陵.
 107) 中宗妃 端敬王后 居昌 慎氏의 陵.
 108) 中宗繼妃 章敬王后 坡平 尹氏의 陵.
 109) 中宗繼妃 文定王后 坡平 尹氏의 陵.
 110) 仁宗과 妃 仁聖王后 羅州 朴氏의 陵.
 111) 明宗과 妃 仁順王后 靑松 沈氏의 陵.
 112) 宣祖와 妃 懿仁王后 羅州 朴氏 및 繼妃 仁穆王后 延安 金氏의 陵.
 113) 元宗과 妃 仁獻王后 綾城 具氏의 陵.
 114) 仁祖와 妃 仁烈王后 淸州 韓氏의 陵.
 115) 仁祖繼妃 莊烈王后 楊州 趙氏의 陵.
 116) 孝宗과 妃 仁宣王后 德水 張氏의 陵.
 117) 顯宗과 妃 明聖王后 淸風 金氏의 陵.

翼陵 ¹¹⁹⁾	高陽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懿陵 ¹²⁰⁾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惠陵 ¹²¹⁾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元陵 ¹²²⁾	楊州에 있다.	別檢	1인	종8품	參奉	1인	종9품
弘陵 ¹²³⁾	高陽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永陵 ¹²⁴⁾	坡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健陵 ¹²⁵⁾	水原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仁陵 ¹²⁶⁾	廣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綏陵 ¹²⁷⁾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景陵 ¹²⁸⁾	楊州에 있다.	直長	1인	종7품	參奉	1인	종9품
睿陵 ¹²⁹⁾	高陽에 있다.	參奉	2인	종9품			

【園】 【增】 正祖 丙申年(1776)에 永祐園으로 봉하고 守奉官 2인을 두었다.
 동왕 己亥年(1779)에 이를 고쳐서 別檢과 參奉을 두었다. [補] 己酉年(1789)
 에 園號를 顯隆園이라 정하고 令과 參奉을 두었다.

顯隆園¹³⁰⁾ 水原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各園】 【增】 英祖 癸酉年(1753)에 처음으로 園을 封하는 禮法을 시행하
 고 守奉官을 두었다.

順康園¹³¹⁾ 楊州에 있다. 守奉官 2인 종9품

-
- 118) 肅宗과 繼妃 仁顯王后 驪興 閔氏 및 繼妃 仁元王后 慶州 金氏의 陵.
 119) 肅宗妃 仁敬王后 光州 金氏의 陵.
 120) 景宗과 繼妃 宣懿王后 咸從 魚氏의 陵.
 121) 景宗妃 端懿王后 靑松 沈氏의 陵.
 122) 英祖와 繼妃 貞純王后 慶州 金氏의 陵.
 123) 英祖妃 貞聖王后 達城 徐氏의 陵.
 124) 眞宗과 妃 孝純王后 豐壤 趙氏의 陵.
 125) 正祖와 妃 孝懿王后 淸風 金氏의 陵.
 126) 純祖와 妃 純元王后 安東 金氏의 陵.
 127) 文祖와 妃 神貞王后 豐壤 趙氏의 陵.
 128) 憲宗과 妃 孝顯王后 安東 金氏 및 繼妃 孝定王后 南陽 洪氏의 陵.
 129) 哲宗과 妃 哲仁王后 安東 金氏의 陵.
 130) 正祖의 生父 莊祖의 무덤 후에 隆陵이라 함.
 131) 元宗 生母 仁嬪 金氏의 무덤.

昭寧園¹³²⁾ 楊州에 있다. 守奉官 2인 종9품

綏吉園¹³³⁾ 楊州에 있다. 昭寧 園의 관원이 兼察한다.

徽慶園¹³⁴⁾ 楊州에 있다. 令 1인 종5품 參奉 1인 종9품

【各墓】 【增】 各墓의 守衛官은 忠勳府가 功臣의 嫡長子孫인 忠義衛 중에서 스스로 후보자를 選拔하되 이조가 임용 후보자를 상신하여 임명한다. 근무일수 30개월을 헤아려 바꾼다.

順懷墓¹³⁵⁾ 高陽에 있다. 守衛官 2인

昭顯墓¹³⁶⁾ 高陽에 있다. 守衛官 2인

愍懷墓¹³⁷⁾ 始興에 있다. 守衛官 2인

懿昭墓¹³⁸⁾ 楊州에 있다. 守衛官 2인

孝昌墓¹³⁹⁾ 楊州에 있다. 守衛官 2인

【權設職】 【續】 모두 司果 이하의 遞兒祿을 받는다.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6품으로 승진한다.

大君 師傅 종9품 [增] 王子 師傅 종9품 [增] 王孫 敎傅 종9품 [增]
內侍 敎官 종9품 [續] 2인 [增] 혁파한다 童蒙敎官 4인 종9품

【奉朝賀】 【原】 15인 ○功臣은 某君 奉朝賀라고 부르며, 나머지는 某官某職 奉朝賀라고 한다. 이조와 병조에서 녹봉을 나누어 준다.

【實行正1品職者】 공신은 정3품직 녹봉으로 하고, 공신의 嫡長子孫 및 일반인은 종4품직 녹봉으로 한다. 【實行從1品職者】 공신은 종3품직 녹봉으로 하고 공신의 적장자손은 종5품직 녹봉으로 하며 일반인은 정7품직 녹봉으로 한다. 【實行正2品職者】 공신은 정4품, 공신의 적장자손은 정6품, 일반

132) 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무덤.
133) 眞宗의 生母 靖嬪 李氏의 무덤.
134) 純祖의 生母 綏嬪 朴氏의 무덤.
135) 明宗의 외아들인 順懷世子의 무덤, 후에 順昌園이라 함.
136) 仁祖의 長子 昭顯世子의 무덤, 후에 昭慶園이라 함.
137) 昭顯世子嬪 姜氏의 무덤, 후에 永懷園이라 함.
138) 英祖의 孫子 懿昭世孫의 무덤, 후에 懿寧園이라 함.
139) 正祖의 世子 文孝世子의 무덤, 후에 孝昌園이라 함.

인은 종7품직 녹봉으로 한다. 【實行從2品職者】 공신은 종4품, 공신의 적장자손은 종6품, 일반인은 종8품직 녹봉으로 한다. 【實行正3品堂上官職者】 공신은 정5품, 공신의 적장자손은 정7품, 일반관인은 정9품직 녹봉으로 한다. [增] 경국대전에서는 통정대부 이상으로 퇴직하여 散官이 된 자에게 녹봉을 주기위한 官職이었으나, 지금은 致仕(고령으로 퇴직)한 후라야 비로소 봉조하에 임명되며 정원이 없다.

【內侍府】 【原】 왕궁내에서의 음식물 감독, 명령의 전

달, 宮門의 守直, 청소의 임무를 맡는다. 모두 140인으로 일년에 4번 인사이동을 한다. ○4품이하의 문무관의 근무일수에 관한 규례에 따라 官階를 올려주고, 3품 이상은 국왕의 특명이 있어야 승진시킨다. <原從功臣은 정례대로 通訓大夫까지 官階를 올려준다> 長番者와 出入番者는 날마다 근무일수 1일로 쳐준다 <出番 때에도 역시 근무일수로 쳐준다.>140) 읽은 책을 講論하며 성적이 通이면 특별근무일수를 2로 쳐주고 略通이면 1로, 粗通이면 半으로, 不通이면 근무일수 3을 삭감한다<誦의 경우도 같다.>141) 四書 중 스스로 선정한 一書의 세 곳과 小學, 三綱行實의 두 책의 세 곳을 講論하여 5곳을 通한 자에게는 官階를 올리고 講學을 면제하여 준다<나이가 35세가 되어도 면제하여 준다.> ○聽講日은 특별근무일수를 1로 쳐주고, 매월 한번에 세 곳을 강론하면 전항의 규례에 따라 출근일수를 쳐준다. 정기 인사이동 때마다 강론하는 사람은 일곱 곳, 암송하는 사람은 여덟 곳, 모두를 通하거나 암송하는 경우 6품 이상이면 準職에, 7품 이하의 守職에 임명하고, 4通 3略 이상자로서 마땅히 관직에 임명되게 될 경우는 승진 임용한다.142) 나머지는 근무일수만 쳐준다<비

140) 長番이란 일단 番上을 하면, 交代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出入番이란 교대로 당번이 되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번의 경우 근무하러 들어 가는 것을 入番이라 하고 非番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出番이라 하는데, 당번(入番) 때는 물론이고 비번(出番) 때에도 근무일수를 쳐준다는 것이다.

141) 講經(書) 시험의 성적 등급으로서 通, 略通, 粗通, 不通이 있는데 通이란 정통(통달)한 경우이고 略通은 대강 통하는 것이며 粗通은 조잡하게 통하는 것 즉 겨우 불통을 면하는 것이다. 不通은 전연 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42) 準職은 堂下正3品에 해당하는 官職으로서, 원칙적으로 準職을 거쳐야만 堂上官으로 승진될 수 있다. 守職은 下位官階者가 上位官職에 임용되는 경우인데 行職의

록 6곳을 통하고 7곳을 암송해도粗가 있으면 근무일수만 쳐준다). ○尙膳 2인 중2품 尙醢 1인 정3품 尙茶 1인 정3품 尙藥 2인 중3품 尙傳 2인 정4품 尙冊 3인 중4품. 1인은 鷹坊遞兒職으로하고 2인은 大殿의 薛里¹⁴³⁾로서 酒房의 對客堂上 및 王妃殿의 承傳色 섭리 등의 체아직으로 이에 그치고 승진하지 못한다. 尙孤 4인 정5품으로 大殿 응방·弓房·王妃殿의 酒房·文昭殿薛里·世子宮長番 등의 체아직이며 이에 그치고 승진하지 못한다. 尙帑 4인 중5품으로, 大殿의 廂庫·燈燭房多人·薛里·監農·世子宮薛里도 체아직이며 이에 그치고 승진하지 못한다. 尙洗 4인 정6품으로 大殿의 掌器·掌務·火藥房·司鑰房·掌內苑·王妃殿의 燈燭房·文昭殿의 進止·世子宮의 酒房·嬪宮의 薛里·酒房의 체아직이며 이에 그치고 승진하지 못한다. 尙燭 4인 중 6품으로 大殿 門差備¹⁴⁴⁾, 왕비전 문차비, 掌務, 世子宮의 燈燭房의 체아직으로 하며, 이에 그치고 승진하지 못한다. 尙炬 4인 정 7품으로 세자궁 문차비, 각궁의 섭리, 문차비의 체아직이며 이에 그치고 승진하지 못한다. 尙設 6인 중7품 尙除 6인 정8품 尙門 5인 중 8품 尙更 6인 정9품 尙苑 5인 중 9품

【增】大殿 長番 定員이 없다. 出入番 42인 王妃殿 出入番 12인 世子宮 長番 정원이 없고, 대전 장번이 겸한다. 出入番 20인 嬪宮出入番 8인 ○여러 곳에서 上直하는 어린 환관은 90인

【雜職】 【原】 모두 일년에 4번 인사 이동하며 馬醫·道流·畫員의 官階는 正職과 같다. ○正職에 임용될 때에는 官階를 1階 내린다. 【增】 경국대전의 잡직의 태반은 이번에 폐지되었으므로 여러 雜職의 첫머리에 掖庭署를 옮겨 두고 종전대로 등재, 수록한다. 校書館·司僕寺·掌樂院·圖畫署의 현존 인원 수도 역시 액정서 아래에 옮겨 적고, 나머지는 分番·근무일수·계산·퇴임·유임 등의 법과 각색의 체아직은 모두 생략(刪節)하고 다만 정원, 품계 등을 종전대로 기록하며, 번잡한 것을 생략하되 옛 것을 남기려고 하였다. (雜職階) 정6품 供職郎·勳職郎 중6품 謹任郎·效任郎 정7품 奉務郎 중7품 承務郎

반대 경우이다. 그러나 堂下官階者가 堂上官職에 임명될 수는 없다.

143) 섭리는 몽고어로서 助員이란 뜻이다(설리라고 읽는 사람도 있으나 섭리가 정확한 듯하다(윤국일, 『앞의 책』 p.230).

144) 門差備는 궁문에 番을 서는 환관의 직명.

정8품 勲功郎 중8품 赴功郎 정9품 服勤郎 중9품 展勤郎

【掖庭署】 【原】 왕명의 전달과 알현 및 임금의 쓰는 붓과 벼루의 공급과 궐문의 자물쇠와 열쇠 관리, 대궐 뜰의 설비 등의 임무를 맡는다. ○大殿 司謁 2인, 司鑰 3인, 書房色 2인, 王妃殿의 사약 2인, 세자궁의 사약 2인, 別監 數는 刑典을 보라. ○사알·사약·서방색은 2교대로 나누어 근무시키고, 근무일수가 600일이 차면 官階를 올려주되, 정6품에서 그친다. 別監도 2교대로 나누어 근무시키고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官階를 올리되 <다만 入直한 일수만 계산한다> 중7품에 이르면 퇴임시킨다. 비록 특별히 품계를 올려 7품에 이르더라도 근무일수가 찬 후에 퇴직하도록 한다.

司謁 1인 정6품 大殿 사알의 체아직이다.

司鑰 1인 정6품 大殿 사약의 체아직이다.

副司鑰 1인 중6품 大殿 사알, 사약의 체아직이다.

司案 2인 정7품 大殿 서방색과, 왕비전 사약의 체아직이다.

副司案 3인 중7품 1인은 대전 書房色과 王妃殿 사약의 체아직이며, 1인은 大殿 別監의 체아직이고, 1인은 大殿 洗手·수라간(水賜間) 別監 및 세자궁 사약의 체아직이다.

司鋪 2인 정8품 大殿 洗手, 수라간 別監, 世子宮 司鑰의 체아직이다. 副

司鋪 3인 중8품, 2인은 대전 別監의 체아직이고, 1인은 文昭殿 別監, 王妃殿 別監의 체아직이다.

司掃 6인 정9품, 3인은 대전 別監의 체아직이고, 3인은 왕비전 別監, 문소전 別監, 세자궁 洗手, 수라간 別監의 체아직이다.

副司掃 9인 중9품, 4인은 대전 別監의 체아직이며, 5인은 왕비전 別監, 문소전 別監, 세자궁 別監, 세수·수라간 別監의 체아직이다. [續] 세손궁 사약은 대전서방색·사약이 兼察한다. [增] 지금부터 액정서에서 사알 1인, 사약 2인, 부사약 3인, 사안 2인, 부사안 1인을 1년에 4차례 추천장을 이조에 올려 職牒을 받게 한다.

【工曹】 장인의 수는 工典을 보라. ○工造 1인 중8품, 工作 2인 중9품, [續] 이번에 폐지한다. [增] 무보수인 散職(散料)으로 내린다.

【校書館】 守藏 諸員 44인, 粧冊 諸員 20인 ○司準 1인 중8품, 司勸 1인 중9품 ○校書館·司贍寺·造紙署가 협의(和會)하여 바꾸어 가면서 임명한다. 工造 4인 중8품, 工作 2인 중9품. [增] 지금 폐지한다.

【司饗院】 飯監과, 各 色掌의 定數는 刑典을 보라. ○宰夫 1인 중6품, 膳夫 1인 중7품, 調夫 2인 중8품, 飪夫 2인 중9품, 烹夫 7인 중9품. [增] 이번 에 모두 폐지하고 各殿 各宮의 飯監 이하 各色은 체아직으로 하되 또한 수시로 가감하고 아울러 무보수인 散職으로 내린다.

【尙衣院】 工製 4인 중7품, 工造 1인 중8품, 工作 3인 중9품. [續] 이번 에 폐지한다. [增] 무보수인 散職으로 내린다.

【司僕寺】 馬醫 10인 ○安驥 1인 중6품, 調驥 1인 중7품, 理驥 1인 중8품, 保驥 1인 중9품. [續] 牽馬陪 11인 중7품 [增] 견마배는 이번에 10인을 더하고, 安驥 이하는 강등하여 무보수인 산직으로 내린다.

【軍器寺】 工製 5인 중7품 [續] 1인을 줄인다. 工造 2인 중8품 [續] 1인을 줄인다. 工作 2인 중9품 [續] 삭감한다. [增] 무보수인 산직으로 내린다.

【繕工監】 工造 4인 중8품, 工作 4인 중9품. [續] 이번에 폐지한다. [增] 무보수인 산직으로 내린다.

【掌樂院】 樂師·樂生·樂工의 定數는 禮典을 보라. ○典樂 1인 정6품, 副典樂 2인 중6품, 典律 2인 정7품, 副典律 2인 중7품, 典音 2인 정8품, 副典音 4인 중8품, 典聲 10인 정9품, 副典聲 23인 중9품.

【昭格署】 道流 15인 ○尙道 1인 중8품, 志道 1인 중9품 [續] 이번에 혁파한다.

【掌苑署】 別監 20인 ○愼花 1인 중6품, 愼果 1인 중7품, 愼禽 1인 정8품, 副愼禽 1인 중8품, 愼獸 3인 정9품, 副愼獸 3인 중9품

【圖畫署】 畫員 20인

【外官職】 (지방관직) 【原】 官階 및 轉官과 加階·行守法 등은 모두 중앙관(京官)과 같이 한다. 觀察使·都事는 근무일수가 360일¹⁴⁵⁾, 守令은 근무일수가 1800

145) 현종 10년 2월, 관찰사의 임기(瓜限)를 2년으로 하였다.

일, 堂上官인 外官과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는 守令 및 訓導는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바꾼다. 임지를 옮긴 수령은 전임지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자리를 옮긴다. 농번기에는 옮기지 않으나 남은 임기가 春分전에 50일 이하가 모자라는 자는 옮긴다. [增] 훈도는 이번에 폐지한다.

○崇義殿의 官職으로 奉祀 1인을 임명한다. ○京畿 이외의 여러 陵과 殿의 參奉은 관찰사가 本道人을 뽑아서 임금에게 추천하여 임명한다. [增] 즉 함경도 소재의 陵과 殿이다.

○教授는 牧 이상은 文臣, 都護府는 生員, 進士 가운데에서 골라서 임명한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영안도 [增] 함경도의 洪原 이북과 平安道の 博川 이서의 敎官은 임명할 때 1資級을 올린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守令과 敎官이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는 者는 守令이나 敎官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만큼 任用하지 않으며 任用할 때에는 다시 外官으로 임명한다. [增] 교관에 관한 것은 이번에 폐지한다.

○연령이 65세 초과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堂上官과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는 지방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增] 任期(瓜限)가 3년인 者는 67세를 정년으로 한다. [補] 任期가 6년인 자는 68세까지로 하고, 3년인 자는 70세를 정년으로 하되 73세가 되면 교체한다. 父母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는 300리가 넘는 먼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續】 정2품 이상인 관찰사는 중앙관직(京職)을 겸직으로 임명한다. 府尹이나 牧使를 겸한 관찰사는 그러하지 않다. ○무릇 任期(瓜限)는 觀察使와 都事는 임명일(拜辭日)¹⁴⁶⁾

146) 拜辭日이란 관원이 임명장을 받은 후 임금에게 숙배(辭朝)하는 날을 말한다.

부터 계산하고 節度使, 營將, 虞候도 같다. 守令과 察訪은 임지도착일부터 계산한다. 邊將도 같다. ○관찰사는 만 2년을 임기로 하되 경기관찰사는 1년으로 한다. ○前任 관찰사가 잡혀 올라갔을 때에 대신 부임하는 신관찰사는 15일내에, 또 전임자의 身故로 인하여 대신 부임하는 신관찰사는 10일 이내에 임금에게 숙배하고 부임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긴 자는 문책한다. 節度使와 邊方의 守令도 같다. [增] 경기관찰사도 또한 만2년을 임기로 한다.

○관찰사는 잡아오라는 王命이나 臺諫의 有罪報告가 없는 한 비록 죄가 있어 파직되더라도 定例대로 封啓하며¹⁴⁷⁾ 都事가 代行하지 못한다.

○각도 관찰사는 公事에 관계되면 비록 타도의 수령일지라도 狀啓로 파면을 건의할 수 있다.

○鄉試를 관장할 때에는 각 道의 都事는 도내인으로 임명하지 못한다.

○관찰사와 절도사를 거친 자는 그 道의 수령으로 임명될 수 없다.¹⁴⁸⁾ 같은 도의 남북 또는 좌우의 兵馬節度使가 남북 또는 좌우도로 바꾸어서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은 구애되지 않는다.

○邊地와 沿海인 고을의 수령은 문무관을 교대로 임명한다. 충청도의 泰安·舒川·庇仁·藍浦·瑞山과 전라도의 濟州·長興·咸平·大靜·旌義, 경상도의 金海, 황해도의 豊山·長淵·遂安·康翎, 함경도의 慶興·慶源·穩城·富寧·甲山·吉州, 평안도의 江界·定州·宣川·寧邊·楚山·雲山·碧潼 등이다. [增] 황해도의 장연, 함경도의 6읍, 평안도의 선천 벽동에서의 문무관 교대임명제는 이번에 폐지한다. [補] 전라도 장흥에서의 문무관 교대임명제도 또한 폐지한다.

○변방의 수령으로서 資級이 오른 자가 10개월 전에 轉官을 도모하면 올라간 資級을 회수한다. 만 10개월이 되

147) 封啓란 소관 사무에 관한 일을 密封한 文書로 임금에게 上啓하는 것을 말한다.

148) 따라서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사람은 타도의 수령으로는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실례도 적지 않다.

기 전이라도 죽은 경우에는 올라간 資級을 거두지 않는다. ○변방의 수령을 陞資할 때에¹⁴⁹⁾ 이조판서는 직접 후보자를 선임 하고 이조참판은 의정부(廟堂)에 문의하여 후보자를 선임한다. [增] 변방수령을 陞資할 경우라 함은 문신은 초산, 강계, 삼수, 갑산, 길주, 종성, 부령, 온성의 수령을 通政大夫로 올리고, 무신은 회령, 교동의 수령을 嘉善大夫로 올리는 등이다. [補] 水軍統制營의 中軍도 같다. ○강화도 교동은 그러하지 않다.

○都事·守令으로서 임지인 고을의 殘薄한 것을 싫어하여 그 자리를 면하고자 부임하지 않는 자와 부임 후에 그 자리를 기피하여 교체를 도모하는 자는 각각 그 지역에 3년 기한으로 定配한다. [補] 守令의 職印을 던지고 돌아온 수령도 또한 그 지역에 정배한다.

○황해도와 강원도의 營將을 겸한 수령은 堂上官으로 임명한다.

○營將 또는 城將을 겸한 수령이나 獨鎭인 고을의 守令¹⁵⁰⁾ 및 沿邊·沿海의 고을에서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지 않은 수령은 面看交代한다.¹⁵¹⁾ 비록 파직이나 拘引되어 조사를 받더라도 本職과 겸직의 印章과 符節을 그대로 수여하고 檢관을 새로 뽑지 않는다. [增] 경기지방의 營將 또는 城將을 겸한 수령이나 獨鎭인 고을의 수령이 拘引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兼官은 뽑되 대체할 수령은 임명하지 않는다. [補] 외지의 수령도 같으며, 邊地는 그렇지 않다.

○勅使를 대접하는 沿路의 수령이 私的인 이유로 기피당한 때에는 교체하지 않는다. 兼官으로 하여금 대신 使臣을 보살피게 한다.

149) 陞資란 官階(資級, 散官, 散階)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150) 『大典會通』 권4 兵典, 外官職에 의하면 節度使(主鎭) 밑에 節制使·僉節制使(이상 巨鎭)와 同僉節制使·節制都尉 및 萬戶(이상 諸鎭) 등이 있는데, 巨鎭은 대개 府尹, 牧使, 府使 등이 겸하여(專任武官인 僉使도 있음) 郡守·縣令·縣監 등이 겸하는(專任武官인 萬戶가 있음) 諸鎭을 몇 개씩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防禦使 기타 獨鎭을 겸한 守令은 이러한 鎭官體制에서 독립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獨鎭은 감영·병영·수영에 속하지 아니한 독립된 鎭營이다(『世祖實錄』 권34, 世祖 2年 7月 辛未).

151) 面看交代란 新舊守令이 서로 對面하여 事務를 인수·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善治守令으로서 정3품의 관직에 임명될 자가 만약 5·6품이면, 먼저 4품으로 임명한 후 정3품직(準職)에 임명한다.

○수령이 이동대상자로 추천되었을 때에는 근무월수를懸註한다. 나이가 많은 자는 이동대상자로 추천될 수 없다. [增] 수령을口傳으로 선임할 때에는 地方에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文官·蔭官·武官으로 나이가 70이 된 자는 察訪으로 선임할 수 없다. <[補] 72세를 한도로 하여 선임하는 것을 허용한다.>

【增】 각도에 兼察訪 1, 2인을 각각 두어 不法行爲를 살펴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京畿内の 迎署·良才驛, 湖西의 成歡驛, 嶺南의 幽谷·黃山驛, 湖南의 參禮驛, 海西의 金郊驛, 關東의 銀溪驛, 關北의 高山驛, 關西의 大同·漁川驛 [補] 慶安驛은 추가하고 ○良才驛은 이번에 혁파한다.>

【補】 江陵大都護府使는 他府使를 거친 자 중에서 선임하고, 義城과 臨陂縣令 및 谷城縣監 등은 전에 수령을 거친 자 중에서 선임한다. 物資가 많고 地域이 넓은 읍으로서 邑號가 강등된 곳도 같다. ○수령을 역임하지 않은 자는 비록 내외의 將職을 거쳤더라도 邊地의 수령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京畿】

觀察使 1인 종2품 都事 1인 종5품

府尹 종2품 [原] 1인 廣州 [補] 留守로 하여 京官職에 소속시킨다.

牧使 3인 정3품 驪州 坡州 楊州

都護府使 8인 종3품 富平 南陽 利川 仁川 長湍 通津 [原] 縣

監[續] 승격 喬桐 [原] 縣監[續] 승격시켜 水使가 겸하게 한다. [增] 이번에 혁파한다. [補] 복구한다. 竹山 [原] 縣監 [續] 승격 ○江華 [原] 都護府使 [續] 留守로 하여 京官職에 소속시킨다. ○水原 [原] 都護府使[續] 留守로 하여 京官職에 소속시킨다 ○[原] 豐德[補] 혁파한다

郡守 10인 종4품 楊根 安山 朔寧 安城 麻田 高陽 金浦 [原]
縣令[續] 승격 交河 [原] 縣監[續] 승격. 加平 [原] 縣監[續] 승격 永平
[原] 縣令 [續] 승격

判官 종5품 [原] 5인 左道水運 右道水運 <모두 무보수이다. 察訪·教授·訓導·審藥·檢
律·驛丞·渡丞도 같다> 廣州 驪州 水原[續] 4인을 감한다. 즉 右水運 廣州 驪州 水
原 등이다. [增] 左右運도 아울러 삭감한다.

縣令 4인 종5품 龍仁 振威 陽川 始興 [原] 衿川 현감[補] 승격한다.

察訪 6인 종6품 [原] 3인[續] 3인을 더한다. 重林道·慶安道·桃源道는 驛丞을
승격한다. [增] 慶安道 찰방은 成均館 參外官으로 補한다. [補] 參上官으로 보
한다.

迎曙道 屬驛은 碧蹄·馬山·東坡·靑郊·狻猊·中連

迎華道 [原] 良才道 屬驛은 樂生·駒興·金嶺·佐贊·分行·無極·康福·加
川·菁好·長足·同化·海門 [補] 良才 ○菁好·長足·同化를 삭감한다.

平丘道 屬驛은 緣楊·安奇·梁文·奉安·娛賓·雙樹·田谷·白冬·仇谷·甘
泉·連洞

重林道 屬驛은 慶信·盤乳·石谷·金輪·終生·南山

桃源道 屬驛은 仇和·白嶺·玉溪·丹棗·湘水

慶安道 屬驛은 德豐·楊花·新津·安平·阿川·吾川·留春

縣監 8인 종6품 砥平 抱川 積城 果川 漣川 陰竹 陽城 陽智
教授 종6품 [原] 11인을 위의 州·府에 둔다. 다른 道도 같다. [續] 삭감한다.

訓導 종9품 [原] 26인을 위의 郡·縣에 둔다. 다른 道도 같다. [續] 삭감한
다.

審藥 종9품 [原] 1인 [增] 삭감한다.

檢律 1인 종9품

驛丞 종9품 [原] 3인 [續] 모두 찰방으로 올린다.

渡丞 종9품 [原] 7인. 碧瀾은 右道水運判官이 겸한다. 漢江·臨津·路梁·洛
河·三田·楊花 [續] 別將으로 고쳐 兵曹에 移屬한다. [增] 碧瀾·洛河를 모두
혁과한다. 나머지 5渡는 兵典을 보라.

【崇義殿】 【原】 [增] 고려 4王의 사당으로 麻田에 있다. 使 종3품 [續] 삭
감한다 守 종4품 [續] 삭감한다 令 종5품 監 종6품 [增] 모두 왕씨가 세습한

다. 麗陵參奉 1인 중9품 [增] 새로 둔다. 근무일수가 30개월이 되면 교체한다. 왕씨를 뽑아서 임명한다. [補] 차례대로 分奉常寺의 直長으로 승진시킨다.

【忠淸道】

觀察使 1인 중2품 都事 1인 중5품

牧使 4인 정3품 忠州 淸州 公州[續] 관찰사가 겸한다. 洪州

都護府使 1인 중3품 淸風 [原] 郡守[續] 승격

郡守 14인 중4품 林川 丹陽 泰安 韓山 舒川 沔川 天安 瑞

山 槐山 沃川 溫陽 大興 [原] 현감[補] 승격 報恩 [原] 현감[補]

승격 德山 [原]현감 [補]승격

判官 1인 중5품 公州 ○[原] 4인 忠州 淸州 洪州등에도 둔다. [續] 위 3곳을 삭감한다.

縣令 1인 중5품 文義

察訪 5인 중6품 [原] 3인[續] 2인을 더하여 利仁道 및 金井道는 驛丞을 察訪으로 승격한다. [增] 栗峯道の 찰방은 승문원 參外官으로 補한다.

連原道 屬驛은 丹月·仁山·坎原·新豐·安富·可興·用安·黃江·水山·長林·令泉·吾賜·泉南·安陰 등이다.

成歡道 屬驛은 新恩·金蹄·廣程·日新·敬天·平川·丹平·惟鳩·金沙·長命·延春 등이다.

利仁道 屬驛은 龍田·恩山·楡楊·宿鴻·藍田·靑化·豆谷·新谷·靈楡 등이다.

金井道 屬驛은 光時·海門·靑淵·世川·龍谷·夢熊·下川·豐田 등이고 時興道 驛丞에 속하는 역은 昌德·日興·汲泉·順城·興世·長時·花川 등이다. [續] 時興道 驛丞을 폐지하여 그 驛丞에 속한 역은 본도의 찰방에게 속한다.

栗峯道 屬驛은 長楊·台郎·雙樹·猪山·時化·德驛·增若·嘉和·土坡·順陽·化仁·會同·新興·原巖·舍林·田民 등이다.

縣監 34인 중6품 鴻山 堤川 平澤 稷山 懷仁 定山 靑陽 延

豐 陰城 淸安 恩津 懷德 鎭岑 連山 魯城 [原] 尼山[增] 山을

城으로 한다. [補] 尼를 魯로 한다. 扶餘 石城 庇仁 藍浦 鎭川 結城

保寧 海美 唐津 新昌 禮山 木川 全義 燕岐 永春 永同
黃澗 青山 牙山

教授 종6품 [原] 4인 [續] 삭감한다. 訓導 종9품 [原] 50인 [補] 삭감한다.

審藥 2인 종9품 1인은 절도사 道에 둔다. 檢律 1인 종9품 驛丞 종9
품 [原] 3인 [續] 2인은 察訪으로 승격하고 1인은 혁파한다.

【太一殿】 【原】 太一星이 있는 곳을 따라 사당을 옮겨 두고 참봉 2인으로
한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慶尙道】

觀察使 1인 종2품 都事 1인 종5품

府尹 1인 종2품 慶州

大都護府使 2인 정3품 安東 昌原 [原] 도호부사 [增] 승격

牧使 3인 정3품 尙州 晉州 星州

都護府使 14인 종3품 大丘 [續] 관찰사가 겸임한다. 金海 寧海 密

陽 善山 靑松 蔚山 [原] 군수 [續] 승격 東萊 [원] 현령 [속] 승격

巨濟 [原] 현령 [續] 승격 居昌 [原] 현감 [續] 승격 河東 [原] 현감

[續] 승격 仁同 [原] 현감 [續] 승격 順興 [續] 전에 혁파된 것을 다시 둔

다. 漆谷 [增] 새로 둔다.

郡守 13인 종4품 陝川 草溪 淸道 永川 醴泉 榮川 興海 梁

山 咸安 金山 豐基 昆陽 咸陽 [原] 군수 [續] 도호부사로 승격

[補] 도호부사를 다시 군수로 내린다.

判官 1인 종5품 大丘 [續] 새로 둔다. ○[原] 5인 慶州 安東 尙州 晉州 星

州 등에 둔다. [續] 위 다섯 곳 모두 삭감한다.

縣令 5인 종5품 盈德 慶山 固城 義城 南海

察訪 11인 종6품 [原] 5인 [續] 6인을 더한다. 松羅道 昌樂道 自如道 沙斤道

召村道 黃山道는 역승을 찰방으로 승격한다. [增] 金泉道 省峴道 自如道の 찰

방은 승문원 참외관으로 補한다. [補] 金泉道 및 自如道の 찰방은 모두 참상관

으로 補한다.

幽谷道 屬驛은 聊城 德通 守山 洛陽 洛東 仇彌 雙溪 安溪 大隱 知保 召溪

延香 洛源 上林 洛西 長林 洛平 安谷 등이다.

安奇道 屬驛은 鐵坡 靑路 雲山 琴召 松蹄 靑雲 文居 和睦 角山 密陽 등이다. [續] 梨田坪을 더한다.

長水道 屬驛은 靑通 阿火 毛良 沙里 押梁 牛谷 富平 靑景 仇於 華陽 義谷 仁庇 鏡驛 朝驛 등이다. [補] 山驛을 더한다. 押梁驛은 省峴道로 옮긴다.

松羅道 屬驛은 柄谷 大松 望昌 酒登 峯山 陸驛 南驛 등이다.

昌樂道 屬驛은 平恩 昌保 瓮泉 幽洞 通明 安郊 道深 竹洞 宣安 등이다.

沙斤道 屬驛은 有麟 安澗 臨水 蹄閑 正谷 新安 新興 正守 橫浦 馬田 栗元 碧溪 小南 平沙 등이다.

召村道 屬驛은 常令 平居 富多 知南 背屯 松道 丘虛 官栗 文和 永昌 東溪 良浦 浣沙 烏壤 德新 등이다.

黃山道 屬驛은 仍浦 奴谷 輪山 渭川 德泉 堀火 肝谷 河月 蘇山 休山 新明 등이다. [補] 德山 龍駕 金洞 水安 無訖을 더한다.

金泉道 屬驛은 秋豐 踏溪 安彦 茂溪 安林 金陽 扶雙 東安 八鎭 茂林 高平 楊原 勸賓 星奇 揚川 琴川 文山 作乃 長谷 省草 등이다. [補] 琴川은 星峴道로 옮긴다.

省峴道 屬驛은 龍駕 雙山 內野 一門 凡於 榆川 舌化 金洞 良洞 水安 溫井 鰲西 無訖 幽山 買田 西芝 등이다. [續] 押梁 및 金泉역을 더한다. [補] 龍駕 金洞 水安 無訖을 黃山道로 옮기고 良洞을 自如道로 옮긴다.

自如道 屬驛은 近珠 昌仁 大山 新豐 巴水 春谷 靈浦 金谷 德山 省法 赤項 安民 報平 南驛 등이다. [補] 良洞역을 더하고 德山역은 黃山道로 옮긴다.

縣監 33인 중6품 開寧 三嘉 宜寧 河陽 龍宮 奉化 清河 彦陽 漆原 鎭海 眞寶 聞慶 咸昌 知禮 安義 [原] 安陰 高靈 玄風 山淸 [原] 山陰 丹城 軍威 比安 義興 新寧 禮安 延日 長鬢 靈山 昌寧 泗川 機張 熊川 慈仁 [續] 새로 둔다 英陽 [續] 새로 둔다.

教授 중6품 [原] 12인 [續] 삭감한다. **訓導** 중9품 [原] 55인 [續] 삭감한다. **倭學訓導 1인** 중9품 [原] 2인 釜山浦와 齊浦에 둔다. [增] 齊浦는 이번에 혁파한다. **譯學 2인** 중9품 [增] 統營에 한학과 외학 각 1인을 둔다. **審藥**

3인 종9품 그 중 1인은 경상좌도 절도사도에, 1인은 경상우도 절도사도에 둔다. 檢律 1인 종9품 驛丞 종9품 [原] 6인 [續] 모두 찰방으로 승격한다.

【崇德殿】 【增】 新羅 始祖廟로서 慶州에 있다. 參奉 1인 本道の 朴氏 姓을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되 다른 殿 參奉의 근무일수에 준하여 근무시킨 후 교체한다.

【全羅道】

觀察使 1인 종2품 都事 1인 종5품

府尹 1인 종2품 全州 [續] 관찰사가 겸한다.

牧使 4인 정3품 羅州 濟州 光州 綾州 [原] 綾城縣令 [續] 승격

都護府使 7인 종3품 南原 長興 順天 潭陽 礪山 [原] 군수 [續]

승격 長城 [原] 현감 [補] 승격 茂朱 [原] 현감 [續] 승격

郡守 13인 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光 珍島 樂安 淳昌

錦山 珍山 金堤 大靜 [原] 현감 [補] 승격 旌義 [原] 현감 [補] 승격

判官 2인 종5품 全州 濟州 ○[原] 5인으로 羅州 光州 南原 등에도 둔다. [續] 위 세곳을 삭감한다.

縣令 5인 종5품 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 6인 종6품 [原] 3인 [續] 3인을 더한다. 景陽道 碧沙道 濟原道는 역승을 승격 [增] 제원도 찰방은 승문참외관으로 補하고 葵樹道 景陽道는 성군관 참외관으로 補한다. [補] 濟原道는 참상관으로 補한다.

參禮道 屬驛은 半石 烏元 葛潭 蘇安 林谷 良才 鶯谷 居山 川元 瀛原 扶興 內才 등이다.

靑巖道 屬驛은 丹巖 永申 仙巖 申安 綠沙 加里 永保 景申 光利 烏林 靑松 등이다.

碧沙道 屬驛은 可申 波靑 楊江 洛昇 鎮原 通路 綠山 別珍 南利 등이다.

濟原道 屬驛은 所川 達溪 丹嶺 玉包 등이다.

葵樹道 屬驛은 昌活 東道 應嶺 引月 潺水 知申 良栗 洛水 德陽 益申 蟾居 등이다.

景陽道 屬驛은 德奇 加林 人物 黔富 昌新 大富 등이다.

縣監 26인 中6품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康津 玉果 高山 泰仁 沃溝 南平 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求禮 谷城 雲峯 任實 長水 鎮安 同福 和順 興陽 海南 ○〔原〕 珍原에도 둔다.〔續〕 진원을 혁파한다.

教授 中6품 〔原〕 8인 〔續〕 삭감한다. 訓導 中9품 〔原〕 49인 〔續〕 삭감한다. 譯學 6인 中9품 〔增〕 左水營에 漢學과 倭學 各 1인을 둔다. 右水營에 漢學과 倭學 各 1인을 둔다. 濟州에 漢學과 倭學 各 1인을 둔다. 審藥 3인 中9품 그중 1인은 절도사도에, 1인은 濟州에 둔다. 檢律 2인 中9품 1인은 濟州에 둔다. 驛丞 中9품 〔原〕 3인 〔續〕 모두 찰방으로 승격한다.

【黃海道】

觀察使 1인 中2품 都事 1인 中5품

牧使 2인 中3품 黃州 海州 〔續〕 관찰사가 겸한다

都護府使 6인 中3품 延安 平山 瑞興 豐川 谷山 〔原〕 군수 〔續〕 승격 瓮津 〔原〕 현령 〔續〕 부사로 승격하고 水使가 겸한다.

郡守 7인 中4품 鳳山 安岳 載寧 遂安 白川 信川 金川 〔續〕 새로 둔다.

判官 1인 中5품 海州 ○ 〔原〕 2인으로 黃州에도 둔다. 〔續〕 황주를 삭감한다.

縣令 2인 中5품 新溪 文化 ○ 〔原〕 牛峯 〔續〕 우봉을 혁파한다.

察訪 3인 中6품 〔原〕 2인 〔續〕 1인을 더한다. 麒麟道の 驛丞을 察訪으로 승격 〔增〕 麒麟道 찰방은 承文院 參外官으로 補한다.

金郊道 屬驛은 興義 金巖 寶山 安城 龍泉 劔水 洞仙 所串 敬天 丹林 등이다. 〔補〕 所串 丹林을 삭감한다.

靑丹道 屬驛은 金谷 深洞 望汀 金剛 文羅 金洞 新行 維安 南山 〔補〕 南山을 제외한다.

麒麟道 屬驛은 茶滿 元山 延陽 眞木 朴山 文羅 安山 位羅 所串 所坪 新興 등이다.

縣監 6인 中6품 長連 松禾 康翎 殷栗 兎山 長淵 〔原〕 현감 〔續〕

도호부사로 승격한다. [補] 현감으로 내린다 ○ [原] 江陰 [續] 혁파한다.
教授 종6품 [原] 6인 [續] 삭감한다. **訓導** 종9품 [原] 18인 [속] 삭감한다.
譯學 訓導 3인 종9품 [原] 1인을 황주에 둔다 [增] 2인을 더하여 1인을
 海州에, 1인을 瓮津에, 둔다 **審藥 2인** 종9품 [原] 1인 [增] 1인을 더하여
 절도사도에 둔다. **檢律 1인** 종9품 **驛丞** 종9품 [原] 1인 [續] 찰방으로
 승격한다.

【江原道】

觀察使 1인 종2품 **都事 1인** 종5품

大都護府使 1인 정3품 **江陵**

牧使 1인 정3품 **原州** [增] 관찰사가 겸한다.

都護府使 7인 종3품 **淮陽 襄陽 春川 鐵原 三陟 寧越** [原] 군
 수 [續] 승격 **伊川** [原] 현감 [續] 승격

郡守 6인 종4품 **平海 通川 旌善 高城 杆城 平昌**

判官 1인 종5품 **原州** ○ [原] 2인으로 江陵에도 둔다. [續] 강릉을 삭감한다.

縣令 3인 종5품 **金城 蔚珍 歙谷**

察訪 4인 종6품 [原] 2인 [續] 2인을 더한다. **平陵道 祥雲道**는 역승에서 승격
 [增] **保安道** 찰방은 成均館 참의관으로 補한다. [補] 참서관에 속한다.

銀溪道 屬驛은 豐田 生昌 直木 昌道 新安 龍潭 林丹 玉洞 乾川 瑞雲 山陽
 原川 方川 含春 水仁 馬奴 富林 嵐校 林川 [補] 林丹 富林 林川은 삭감하고 文
 山 圓通을 더한다.

平陵道 屬驛은 冬德 大昌 丘山 木界 安仁 樂豐 新興 史直 交柯 龍化 沃原
 興富 守山 德神 達孝 [補] 達孝를 삭감하고 新立을 더한다.

祥雲道 屬驛은 連倉 五色 降仙 麟丘 竹泡 清澗 雲根 明波 大康 高岑 養珍
 朝珍 登路 巨豐 貞德 [補] 五色을 삭감하고 元巖을 더한다.

保安道 屬驛은 安保 泉甘 仁嵐 原昌 富昌 連峯 蒼峯 葛豐 烏原 安興 丹丘
 由原 安昌 神林 新興 楊淵 延平 藥水 平安 碧吞 好善 餘糧 臨溪 高丹 橫溪 珍
 富 大和 方林 云交

縣監 8인 종6품 **平康 金化 狼川 洪川 楊口 麟蹄 橫城 安峽**

教授 宗6품 [原] 7인 [續] 삭감한다. 訓導 宗9품 [原] 19인 [續] 삭감한다.

審藥 1인 宗9품 檢律 1인 宗9품 驛丞 宗9품 [原] 2인 [續] 모두 찰방으로 승격한다.

【咸鏡道】 [原] 永安道라 한다

觀察使 1인 宗2품 都事 1인 宗5품

府尹 1인 宗2품 咸興 [原] 군수 [續] 부윤으로 승격하고 관찰사가 겸한다.

大都護府使 1인 正3품 永興 [原] 부윤 [續] 강등

牧使 1인 正3품 吉州 [原] 吉城 현감 [續] 승격한다.

都護府使 18인 宗3품 安邊 [原] 대도호부사 [續] 강등 鏡城 북도절도

사가 겸한다. 慶源 會寧 鍾城 穩城 慶興 富寧 北青 [原] 남도

절도사가 겸한다. [增] 이번에 폐지한다. 德源 定平 甲山 三水 [原]

군수 [續] 승격 端川 [原] 군수 [續] 승격 明川 [原] 현감 [續] 승격 茂

山 [增] 새로 둔다. 長津 [補] 새로 둔다. 厚州 [補] 새로 둔다.

郡守 2인 宗4품 文川 高原

判官 2인 宗5품 咸興 [增] 늘려 둔다. 鏡城 ○[原] 7인 永興 慶源 會寧

鍾城 穩城 北青에도 둔다. [續] 위 6곳을 삭감한다.

察訪 3인 宗6품

高山道 屬驛은 南山 朔安 火燈 奉龍 鐵關 良驥 通達 隘守 和原 酒泉 蓬臺 平原 德山 등이다. [續] 草元을 더한다. [補] 酒泉을 삭감한다.

居山道 屬驛은 咸原 新恩 平浦 五川 濟人 施利 谷口 基原 麻谷 嶺東 臨溟 雄平 明元 古站 終浦 熊耳 虛川 積生 [續] 磁石 亢 黃水 呼麟 許麟 惠山을 더한다.

輪城道 屬驛은 吾村 朱村 要站 石堡 懷綏 寧安 豐山 樂山 鍾慶 撫安 鹿野 撫寧 德明 馬乳 燕基 阿山 江陽 雄撫 [續] 茂山 新豐 麻田 永康을 더한다. [補] 要站을 삭감한다.

縣監 2인 宗6품 洪原 利原 [原] '原'은 '城'이었다.

教授 宗6품 [原] 13인 [續] 삭감한다. 訓導 宗9품 [原] 9인 [續] 삭감한다. 譯

學訓導 1인 宗9품 [增] 새로 둔다. 審藥 3인 宗9품 그중 1인은 남도절

도사도에, 1인은 북도절도사도에 둔다. 檢律 1인 종9품

【平安道】

觀察使 1인 종2품 都事 1인 종5품

府尹 2인 종2품 平壤 관찰사가 겸한다. 義州 [原] 목사 [續] 승격

大都護府使 1인 정3품 寧邊 [原] 절도사가 겸한다. [增] 이번에 겸직을 폐지한다.

牧使 2인 정3품 安州 定州

都護府使 14인 종3품 江界 昌城 成川 朔州 肅川 龜城 中和 [原] 군수 [續] 승격 慈山 [原] 군수 [續] 승격 宣川 [原] 군수 [續] 승격 鐵山 [原] 군수 [續] 승격 龍川 [原] 군수 [續] 승격 楚山, '楚山'은 경국대전에서는 '理山'으로 되어 있다. [原] 군수 [續] 승격 三和 [原] 현령 [續] 승격 咸從 [原] 현령 [續] 승격

庶尹 1인 종4품 平壤

郡守 12인 종4품 祥原 德川 价川 嘉山 郭山 順川 熙川 碧潼 雲山 博川 渭原 寧遠

判官 종5품 [原] 6인, 平壤 寧邊 安州 義州 江界 定州 [續] 모두 삭감한다.

縣令 6인 종5품 龍岡 永柔 甑山 三登 順安 江西

察訪 2인 종6품

大同道 屬驛은 生陽 安定 肅寧 安興 嘉平 新安 雲興 林畔 良策 所串 義順 [續] 車輦을 더한다.

魚川道 屬驛은 所古 開平 長洞 平田 加莫 狄餘 立石 城干 從浦 滿浦 北洞 央土 古理 牛場 古延 碧團 昌州 大朔 小朔 方山 草州 [續] 平田 加莫 滿浦 碧團 小朔을 삭감하고 隨營 郡八 下北洞 八館 龜州를 더한다. [補] 方山을 삭감한다.

縣監 5인 종6품 陽德 孟山 泰川 江東 殷山

教授 종6품 [原] 11인 [續] 삭감한다. 訓導 종9품 [原] 31인 [續] 삭감한다. 譯

學訓導 6인 종9품 [原] 2인 1인은 平壤에, 1인은 義州에 둔다. [增] 4인을 더하여 1인은 安州에, 1인은 宣川에, 1인은 江界에, 1인은 義州에 둔다(淸學

이다). 審藥 2인 중9품 그중 1인은 절도사도에 둔다. 檢律 1인 중9품

【崇仁殿】 【續】 [增] 箕子廟는 평양에 있다. [補] 참봉 2인을 둔다. 1인은 吏曹에서 평안도가 천거한 淸南·淸北의 道民과 암행어사가 추천한 사람을 윤번으로 임명하고, 1인은 관찰사가 鮮于氏인 사람 3인을 골라 임용후보자로 吏曹에 보고하여 임용하게 한다. 근무일수가 30개월이 되면 臨時奉事로 하여 단일후보자로 임용하고, 또 15개월이 되면 臨時直長으로 하여 단일후보자로 임용 추천하며, 또 15개월이 되면 臨時丞으로 승진시켜서 30개월이 된 후 인사이동시기를 기다려서 內職으로 옮긴다. ○令 이하에 결원이 있으면 다시 참봉으로 임용한다.

令 중6품 [續] 중5품 [補] 차례대로 올려주는 임시 관직으로 삼는다. 參奉 2인 중9품 [續] 監 중6품 [增] 鮮于氏가 세습한다. [補] 고쳐서 둔다.

【崇靈殿】 【增】 東明王廟는 평양에 있다. [補] 殿官의 후보자 추천과 차례대로 승진하는 법은 승인전 주에 상세히 있다. ○直長으로서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이 없으면 도내의 前職蔭官이나 參上文官을 승으로 추천하여 임용하도록 한다. ○兩殿 直長 이하는 모두 임금에게 肅拜·謝恩하는 禮를 생략하고 바로 근무시킨다.

令 1인 중6품 [補] 승격하여 둔다. 參奉 1인 중9품 [增] 2인으로 관찰사가 평안도인을 추천 상신하면 吏曹에서 임명하고, 다른 參奉의 근무일수에 준하여 근무시킨 후 교체한다. [補] 1인은 승으로 승격시킨다.

【土官職】 【原】 轉官·승진·근무일수는 京官과 같다. <6품 이상의 승진에는 京官의 2배를 근무해야 한다>. 관찰사는 본도인을 임용후보자로 상신한다<西班은 節度使>. 土官이 京官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내린다<병조도 같다>. ○知印과 六房은 京中의 錄事의 例에 의하고 또 主事는 書吏의 例에 의하여 근무일수가 만료하면 官階를 올려서 退職시켜 土官職에 임명한다. ○義州의 譯學生徒 중 근무일수가 많은 2인에게 土官職을 제수한다. [續]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관직의 前回の 임명장은 1인이 모두 받아서 상경하여 吏曹에서 심사 받은 후 새로운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모두 봉하여 下送하면 관찰사와 절도사가 조사한 후 해당자를 불러서 직접 전수한다. ○土官은 비록 退官될 차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60이 되어야 비로소 퇴직하게 한다.

【土官階職】 정5품 通議郎 都務, 중5품 奉議郎 掌簿, 정6품 宣職郎 校簿, 중6품 奉職郎 勘簿·都轄, 정7품 熙功郎 典事, 중7품 注功郎 掌事, 정8품 供務郎 管事, 중8품 直務郎 給事, 정9품 啓仕郎 參事, 중9품 試仕郎 攝事

【咸興府】〔原〕永興府 ○ 都務司 都務·勘簿·管事 각 1인, 典禮署 掌簿·典事·給事·攝事 각 1인, 諸學署 戎器署 司倉署 營作署 勘簿·管事·攝事 각 1인, 收支局 掌事·攝事 각 1인, 典酒局 給事·攝事 각 1인, 司獄局 攝事 2인, 四部·仁興·禮安·義興·智安 各 攝事 2인 <平壤도 같다>

【平壤府】 都務司 都務·校簿 各 1인, 典事 2인, 典禮署 掌簿·勘簿·典事·給事·攝事 各 1인, 諸學署 戎器署 司倉署 營作署 勘簿·管事 各 1인, 攝事 各 2인, 收支局 掌事·給事·攝事 各 1인, 典酒局 給事·參事·攝事 各 1인, 司獄局 攝事 2인,

【寧邊大都護府】 【鏡城都護府】 都務司 都務·校簿 典事 各 1인, 典禮署 掌簿·典事·給事·攝事 各 1인, 戎器署 司倉署 營作署 勘簿·管事·攝事 各 1인, 收支局 掌事·攝事 各 1인, 典酒局 給事·攝事 各 1인, 司獄局 攝事 2인,

【義州牧】 【會寧】 【慶源】 【鍾城】 【穩城】 【富寧】

【慶興】 【江界都護府】 都轄司 都轄·典事 各 1인, 典禮署 勘簿·給事·攝事 各 1인, 戎器署 司倉署·掌事·攝事 各 1인, 典酒局 給事·攝事 各 1인, 司獄局 攝事 1인,

【京衙前】¹⁵²⁾

【錄事】 【原】 녹사는 의정부와 中樞府에 分屬된다. 東班 各 衙門은 의정부에서, 西班 各 衙門은 中樞府에서 녹사를 나누어 보내준다. 근무일수가 514일이 차면 官階를 주고(加階), 특별근무일수는 實職任用 때에만 쓰고 加

152) 京衙前은 중앙관서에서 근무하는 아전으로서 지방관서에서 근무하는 鄉吏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京衙前 중 錄事는 高麗 때에는 品官이었고 朝鮮國初까지도 양반신분자가 흔히 거기에 任用되어 流品內로 進出하기도 하였으나, 그 地位가 점점 떨어져서 16세기경에는 錄事가 거의 사라지고 書吏만 남아서 吏胥 또는 胥吏라 하였다(윤국일 『앞의 책』의 250면).

階에는¹⁵³⁾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 원래 官階가 있는 자는 京衙前으로의 入屬을 허용하지 않는다. 종6품으로 退官한 후 守令取才 시험에 합격한 자는 守令으로 임용하며, 불합격자는 서반 체아직에 결원이 생기는데로 임용한다. 1기분(1등)의 祿을 받고 影職을 자원하는 자는 들어준다(影職은¹⁵⁴⁾ 직함(관직)이 있으나 職事(직무)가 없는 관직이다. 병조도 같다) ○ 1년 두 차례의 정기인사 때에 宣務郎인 녹사로서 근무일수가 찬 10인은 退官시킨다. ○ 宗親府, 大君, 王子 君에게 각 1인 ○ 의정부의 議政, 贊成, 參贊에게 각 1인 ○ 12인이 隨廳이다.¹⁵⁵⁾ 아래도 같다. ○ 中樞府의 領事, 判事, 知事, 同知事에게 각 1인 ○ 隨廳 4인 ○ 이조판서·참판에게 각 1인 ○ 隨廳 6인 ○ 호조판서·참판에게 각 1인 ○ 隨廳 6인 ○ 예조판서·참판에게 각 1인 ○ 隨廳 7인 ○ 병조판서·참판에게 각 1인 ○ 隨廳 7인 ○ 형조판서·참판에게 각 1인 ○ 隨廳 6인 ○ 공조판서·참판에게 각 1인 ○ 隨廳 5인 ○ 도총부의 도총관 부총관에게 각 1인 ○ 隨廳 8인 ○ 오위장에게 각 1인 ○ 내 금위장에게 2인 ○ 巡將 2所에 각 2인 ○ 兼司僕將에게 1인 [續] 오위장, 내금위장, 좌·우순장, 겸사복장의 녹사는 지금 모두 폐지한다. ○ 吏房 錄事로서 근무일수가 45개월에 준하는 자는 동반(文班)의 관직에 골라서 임용한다.

【增】 【議政府】 의정, 찬성, 참찬에게 각 1인 【吏曹】 【戶曹】 【禮曹】 【工曹】 각 1인 【兵曹】 【刑曹】 각 2인 ○ 이상의 諸司에는 의정부 녹사를 나누어 임명하며, 의정부의 吏房·掌務로 각 1인을 둔다. 【中樞府】 領事에게 1인, 前任 議政인 判事에게 각 1인, 輔國인 知事에게 각 1인, 【宗親府】 1인 ○ 대군·왕자군에게 각 1인 【敦寧府】 1인 ○ 領事에게 1인 【忠勳府】 【儀賓府】 【耆老所】 각 1인 ○ 이상의 諸司에는 중추부의 녹사를 나누어 임명하며 중추부의 吏房·掌務로

153) 加階는 주로 雜職·京衙前·軍士 기타의 非顯官(때로는 正職인 文武官)에게 官階를 처음 주거나 올려 주는 것으로, 加資가 주로 文武官(예외로 軍士·雜職)·文武科 及第者나 老人에게 資級(官階)을 주거나 올려주는 점에서 일용 구별되고 있으나 대체로 兩者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하겠다(大典會通과 王朝實錄 各 數十個處 확인결과).

154) 影職은 실제 근무시키지 않은 명예직으로서, 임명과 동시에 사직시킨다.

155) 錄事와 書吏는 高官의 秘書官으로 배치되는 경우와 各官司의 職員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前者를 陪從이라 하고, 後者를 隨廳이라 한다.

각 1인을 둔다.

【書吏】 【原】 근무일수가 3600일이 차면 당상 아문에서는 종7품, 3품 이하 아문에서는 종8품으로 退官시킨 후 驛丞·渡丞의 取才시험에 합격한 자를 거기에 任用하며, 임용 전에는 그대로 종전 官司에서 근무한다. 성실히 근무한 자에게 먼저 관직에 임용하고 官階를 주며 他官司로 전속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官司의 근무일수도 통산하여 준다. ○1년의 두 차례의 정기인사 때에 근무일수가 찬 100인이 退官한다. ○承政院의 書吏에게는 2일 근무시마다 특별근무 1일을 보태주고 근무일수가 차면 정기 인사이동과 상관없이 퇴직시킨다. ○弘文館 冊色書吏에게는 3일 근무시마다 특별근무 1일을 보태준다. [續]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퇴직시키는 法은 이번엔 폐지하고, 坊民을 뽑아서 임용하되,¹⁵⁶⁾ 정원을 초과하여 각사가 더 임명하면 왕명위반죄(制書有違律)로 논한다. ○各衙門과 諸司의 書員의 구실(名色, 名目)은 경국대전 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금은 남아있는 것만을 수록한다. 【宗親府】 大君 각 2인, 王子君 각 1인, 君 각 1인 ○6인은 隨廳으로 한다. 이하 같다. [續] 10인 [[補] 24인 【議政府】 의정·찬성·참찬 각 1인 ○隨廳 14인 [續] 15인 [補] 26인 【忠勳府】 君 각 1인 ○隨廳 6인 [續] 변동이 없다. [補] 24인 【中樞府】 領事·判事·知事·同知事 각 1인 ○隨廳 6인 [續] 5인 【儀賓府】 尉 각 1인 ○隨廳 4인 [續] 변동이 없다. [補] 8인 【敦寧府】 영사·판사·지사·동지사 각 1인 ○隨廳 4 [續] 변동이 없다. [補] 6인 【義禁府】 판사·지사·동지사 각 1인 ○隨廳 18인 [續] 변동이 없다. [補] 隨廳 20인 【吏曹】 判書·參判·參議 각 1인 ○隨廳 18인 [續] 25인 【戶曹】 판서·참판·참의 각 1인 ○隨廳 38인 [續] 60인 【禮曹】 판서·참판·참의 각 1인 ○隨廳 28인 [續] 30인 【兵曹】 판서·참판·참의·參知 각 1인 ○隨廳 35인 [續] 100인 【刑曹】 판서·참판·참의 각 1인 ○隨廳 46인 [續] 70인 [增] 21인을 減하여 지금은 49인으로 한다. 【工曹】 판서·참판·참의 각 1인 ○隨廳 15인 [續] 20인 【都摠府】 都摠管·副摠管 각 1인 ○隨廳 30인 [續] 13인 【漢城府】 判尹·左尹·右尹 각 1인 ○隨廳 38

156) 중앙관청인各司의 書吏는 처음에는 地方鄉吏 중에서 선임하였으나, 續大典 반포 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者(坊民)를 골라서 임용한다는 것이다.

인 [續] 60인 [增] 8인을 줄여 52인으로 한다. [補] 53인 **【奎章閣】** [增] 10인, 書寫 2인, 또 承政院 六房吏 각 1인이 겸직으로 임명된다. [補] 14인을 둔다. 서사 4인은 承政院 서리가 겸직하는 법은 폐지한다. **【司憲府】** 대사헌 1인 ○隨廳 39명 [續] 55인 [補] 25인 **【水原府】** [補] 90인 **【廣州府】** [補] 80인 **【開城府】** 40인 [續] 변동없다. [補] 50 **【江華府】** [續] 40 [補] 50 **【五衛將廳】** 將 각 1인 ○隨廳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9인이다. **【內禁衛廳】** 將 각 1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정원은 변동이 없다. **【巡廳】** 두 곳에 각 3인 [續] 書員으로 내린다. **【兼司僕廳】** 將 각 1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다. **【忠翊府】** 6인 [續] 변동이 없다. [補] 충훈부에 합속한다. **【內侍府】**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인으로 한다. **【承政院】** 승지 각 1인 ○隨廳 22인 [續] 25인 **【宣傳官廳】** 2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인으로 한다. **【掌隸院】** 판결사 1인 ○隨廳 32인 [續] 변동없다. [增] 혁파한다. **【尙瑞院】** 4인 [續] 서원으로 내리고 정원은 변동없다. [增] 2인으로 한다. **【司諫院】** 대사간 1인 ○隨廳 20인 [續] 19인 [補] 21인 **【經筵】** 6인 [增] 7인 [補] 10인 **【弘文館】** 부제학 1인 ○隨廳 12인 [續] 22인 [增] 15인 經筵 隨廳 22인 [補] 7인 經筵 隨廳 17인 **【藝文館】** 10인 [續] 4인 [補] 7인 **【成均館】** 대사성 1인 ○隨廳 10인 [續] 21인 [補] 28인 **【訓練院】** 都正 1인 ○隨廳 12인 [續] 書員으로 내린다. [補] 4인 **【承文院】** 1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8인으로 한다. [增] 書吏 1인으로 한다. [補] 書員 6인으로 한다. **【通禮院】** 8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4인으로 한다. [補] 6인으로 한다. **【奉常寺】** 15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정원은 변동없다. [補] 21인으로 한다. **【宗簿寺】** 10인 [續] 변동없다. [補] 종친부에 합친다. **【校書館】** 16인 [續] 19명으로 諸員을 임명한다. [增] 10인 [補] 8인 **【司饗院】** 6인 [續] 15인 [補] 諸員을 임명하고 인원은 변동없다. **【內醫院】**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0인으로 한다. [補] 23인 **【尙衣院】** 9인 [續] 20인 **【司僕寺】** 15인 [續] 20인 [補] 30인 **【軍器寺】** 2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0인으로 한다.

【內資寺】 16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6인으로 한다. [補] 5인 **【內瞻寺】** 16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5인으로 한다. **【司導寺】** 15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8인으로 한다. [補] 5인 **【禮賓寺】** 2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5인으로 한다. **【司瞻寺】** 15인 [增] 혁파한다. **【軍資監】** 29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4인으로 한다. [補] 20인 **【濟用監】** 2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변동없다. [補] 12인 **【繕工監】** 2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3인으로 한다. [補] 15인 **【司宰監】** 2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1인으로 한다. [補] 5인 **【掌樂院】** 4인 [續] 19인으로 諸員을 임명한다. **【觀象監】** 6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4인으로 한다. [補] 10인 **【典醫監】** 6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인으로 한다. **【司譯院】** 6인 [增] 書員으로 내리고 4인으로 한다. [補] 5인 **【世子侍講院】** 4인 [續] 15인 **【宗學】** 4인 [續] 혁파한다. **【修城禁火司】** 10인 [續] 혁파한다. **【典設司】**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인으로 한다. [補] 10인 **【典艦司】** 4인 [續] 혁파한다. **【豐儲倉】** 10인 [續] 혁파한다. **【廣興倉】** 1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5인으로 한다. **【世子翊衛司】** 2인 [續] 변동없다. **【昭格署】** 10인 [續] 혁파한다. **【宗廟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인은 守僕이 兼하게 한다. **【社稷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6인으로 한다. [增] 7인 [補] 1인 **【永禧殿】** [補] 書員 1인으로 한다. **【景慕宮】** [增] 書員 3인으로 하고, 2인은 守僕이 겸한다. **【平市署】** 8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5인으로 한다. [補] 7인 **【司醞署】** 8인 [續] 혁파한다. **【義盈庫】** 8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4인으로 한다. **【長興庫】** 10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4인으로 한다. [補] 6인 **【氷庫】**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동서 각 1인으로 한다. [補] 각 2인으로 한다. **【掌苑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인원은 변동없다. **【司圃署】** 12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5인으로 한다. [補] 6인 **【養賢庫】** 5인 [續] 변동없다. [增] 成均館의 吏胥가 겸한다. [補] 4인 **【典牲署】** 8인 [續] 書員으로 내린다. **【司畜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인으로 한다. [增] 혁파한다. **【造紙署】** 8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인으로 한다. **【典獄署】** 4인 [續] 변동없다. [補] 6인 **【瓦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

인으로 한다. 【歸厚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2인으로 한다. [增] 혁파한다. 【四學】 각 2인으로 한다. [續] 변동없다. 【五部】 각 4인으로 한다. [續] 書員으로 내리고 인원은 변동없다. 【耆老所】 4인 [續] 변동없다. [補] 3인 【惠民署】 2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1인으로 한다. 【活人署】 4인 [續] 書員으로 내리고 동서 각 1인으로 한다. 【讀書堂】 [續] 2인 【備邊司】 [續] 16인 [補] 議政府에 합속한다. 【宣惠廳】 [續] 24인 [補] 30인 【堤堰司】 [續] 1인으로 備邊司의 吏胥가 겸한다. 【經理廳】 [續] 4인 [增] 摠戎廳에 합한다. 【扈衛廳】 [續] 3인으로 하고 書員은 1인으로 한다. [補] 2인으로 한다. 【訓練都監】 [續] 22인, 書員은 1인으로 한다. [補] 書員 11인 【禁衛營】 [續] 11인, 書員은 8인 [補] 13인, 書員은 11인 【御營廳】 [續] 11인 書員은 8인 [補] 12인, 書員은 11인 【守禦廳】 [續] 5인 [補] 廣州府에 합속한다. 【摠戎廳】 [續] 4인 [補] 10인 【捕盜廳】 [續] 書員 좌우 각 4인 【衛將所】 [續] 書員 21인 【軍職廳】 [續] 書員 1인 【武兼廳】 [續] 書員 2인 【部將廳】 [續] 書員 2인 【守門將廳】 [續] 書員 2인 【四山】 [續] 書員 각 1인 【紫門監】 [續] 書員 2인 【內需司】 [續] 書員 16인 【濬川司】 [增] 5인으로 三軍門, 兵曹, 漢城府의 吏胥가 겸한다. [補] 8인

【取才】¹⁵⁷⁾ 【原】 【講】 모두 臨文¹⁵⁸⁾으로 한다. 蔭子弟·錄事·道流는

1경과 1서를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강론한다.¹⁵⁹⁾ 【製述】 【書籌】

【守令】 【講】 四書 一經과 大明律·經國大典. [增] 三冊을 不通한 자는 낙제시킨다. 一冊을 不通하고 두번 응시하지 않은 자와 두 책을 不通하고 한번 응시하지 않은 자 및 세번 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자 등도 三冊을 不通한 것으로 한다. 【製述】 治民方略(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增] 제술은 이번엔 폐지한다.

157) 取才는 관리임용을 위한 특별 전형 시험이다.

158) 臨文은 책을 보고 講論하게 하는 것이다. 講시험에서의 성적등급은 通·略·粗·不通으로 한다.

159) 蔭子弟는 高官 또는 功臣의 子弟, 孫, 姪, 壻를 말한다. 五經은 詩·書·易·春秋·禮記를 말하고 四書는 中庸·大學·論語·孟子를 말한다.

【**外教官**】¹⁶⁰⁾ 매년 정월 ○나이가 마흔 이상 된 者에게 시험보인다. 文科 覆試의 講에 합격한 자는 시험을 보이지 않고 任用한다. 【**講**】 사서삼경 [續] 外教官은 이번에 폐지한다.

【**驛渡丞**】 【**書題**】¹⁶¹⁾ 【**講**】 경국대전 【**製述**】 啓本·牒呈·關
162) 중 하나 【**書籌**】 楷書·行籌(산수) [增] 이번에 폐지한다.

【**蔭子弟**】 매년 정월 ○功臣과 2품 이상의 子·孫·壻·弟·姪 <原從功臣은 子·孫> 實職 3품인 者의 子孫과 전직 이조·병조·도총부·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원과 部將·宣傳官이었던 자의 아들로 나이 20세 이상인 자는 응시를 허용하며 합격자를 임용하되 錄事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들어준다. 【**講**】 오경 중 하나, 사서 중 하나 [補] 이번에 폐지한다.

【**錄事**】 매년 정월·7월 【**講**】 5경 중 하나, 사서 중 하나, 大明律·經國大典 【**製述**】 啓本·牒呈·關 중 하나 【**書籌**】 楷書·諺文·行籌(산수)

【**道流**】 【**講**】 5경 중 하나, 사서 중 하나 【**書籌**】 楷書 [續] 道流는 이번에 혁파한다.

【**書吏**】 매 3년 마다 각 고을 향교의 校生으로서 나이가 들고(年壯) 재주가 疎略(부족)한 자를 都護府 이상은 2인, 郡 이하는 1인씩을 시험한다. 교생이 없는 고을에서는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평민으로 보충하고 濟州와 平安·永安道(함경도) 沿邊의 각고을에서는 선정하지 않는다. 【**書籌**】 楷書·산수 [增] 취재는 이번에 폐지한다.

160) 外教官이란 地方 鄉校에서 儒生들을 가르치는 教授와 訓導를 말한다.

161) 書題는 王子 또는 高官의 書記 또는 官司의 실무자로서 品官이 아니었으나 生員인 者도 있었고 守令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世宗實錄』 권2-1, 世宗 卽位年 11월 戊申 『文宗實錄』 권4-45 문종 즉위년 11월 丙午). 그러나 『宣祖實錄』 권 26-15, 宣祖 25年 5月 乙亥에 「書吏或軍職或書題」라 하여 書吏가 書題로 되기도 하였다.

162) 啓本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고 牒呈은 상관에 대한 보고문이며 關文은 同列 또는 下級 관청에 보내는 공문이다.

【薦舉】 【原】 중앙과 지방의 동반·서반의 3품 이상자는 3년마다 春孟月(正月)에 각각 3인을 천거한다. 3품에서 無職까지 매년 정월에 동반 3품 이상, 서반 2품 이상자는 각각 守令 萬戶를 감당할 자를 천거하되 모두 3인을 넘을 수 없다. 만약 천거된 자가 탐장독직(贓汚)·반윤리(敗常)의 죄를 범하면 천거한 자도 함께 처벌(連坐)된다. 매년 정월에 의정부·육조의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와 절도사를 감당할 자를 천거하며, 忠勳府에서는 공신의 자손으로서 그 재능이 관료의 임무(吏任)를 감당할¹⁶³⁾ 자를 천거한다.

○무릇 천거된 자가 취재시험을 거쳤거나 이미 6품 이상의 顯官을 지낸 사람¹⁶⁴⁾ 이외에는 四書 가운데의 1서와, 五經 가운데 1경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시험하여 뽑는다.

○무릇 임명장을 회수당한 자와 罷職된 者는 매년 12월과 6월(冬夏季月)에 죄명을 具申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병조도 같다.

【續】 이조·병조·호조 판서와 兩都의 留守·兩界의 觀察使·廣州〔補〕留守 義州의 府尹, 水原〔補〕유수 東萊府使는 모두 廟堂(의정부)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¹⁶⁵⁾ 兵批의 兩局大將¹⁶⁶⁾·守禦使(광주)·摠戎使

163) 吏任은 吏胥의 임무가 아닌 官(守令)의 소임으로 본다. 吏才, 吏治 등의 경우와 같이 吏는 守令의 뜻으로 풀이된다는 견해(윤국일 『앞의 책』 p.257)가 있으나 吏任取才에 합격한 者는 경관으로 入仕된다(『中宗實錄』 권25, 中宗 11년 5월 庚子)는 說(한우근 외 4명, 『譯註 經國大典 註釋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189)에 따른다.

164) 顯官은 文武 正職(實職)을 말한다. 雜職과 影職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165) 兩都의 留守란 개성유수와 강화유수를 말하고 兩界의 관찰사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관찰사를 말한다.

166) 兵批의 양국대장이란 병조에서 추천하여 임명되는 훈련대장과 어영대장을 말한다.

(수원)·統制使·咸鏡北道·平安道の 兵使도 같다. ○現職議政이 有故하면 前任議政이 추천한다. [增] 禁衛大將·濟州牧使도 같다. [補] 會寧府使와 江界府使도 같다. ○수어사는 광주유수가 겸한다. ○동래부사는 2품인 자를 임명하여 보내지 못한다.

○각도의 前職官僚와 生員·進士·幼學으로서 재능과 행실이 현저한 자를 式年마다 年初에 한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보증하여 守令에게 천거하면 守令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다시 선발하여 임용 상신(추천)한다. 下三道는 3인을 넘을 수 없고 上五道는 2인을 넘을 수 없다.¹⁶⁷⁾ 추천서에는 각 임용후보자의 이름 밑에 그 재능과 행실을 기록하며 生員과 進士는 30세 이상자, 幼學은 40세 이상자, 前職官僚는 나이에 구애되지 않는다. 만약 추천된 자가 명목과 실상이 부합하지 않거나 나이를 속여 기록한 자가 있을 때에는 論罪한다. 이 때에 한 고을의 보증·추천인은 貢舉非其人律로 논죄하고, 관찰사와 수령은 파직한다. ○서울 사람으로서 시골로 왕래하면서 그 인연으로 몰래 시골 사람인 것처럼 추천된 자(冒占者)는 그를 보증·추천한 자와 같은 형률로 논죄한다.

○守令으로 합당하나 천거하는 자가 없으면 吏曹 堂上官이 그를 임용후보자로 천거한다. 十考十上, 五考五上者¹⁶⁸⁾는 천거가 없어도 모두 임용후보자로 한다. ○마땅히 천거되어야 할 자가 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에서 살펴야 한다. ○추천된 자가 貪贓罪를 犯한 경우에는 천거한 자는 罷職하며, 죄상이 중한 자는 削職한다. [補] 이조 당상관이 천거하는 법은 이번에 폐지한다.

○經學에 정통하고 德行이 현저한 자가 천거되어 곧바로 6品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에는 講 시험을 면제한다. 특별 천거로 入仕하는 경우에는 모두 定例에 따라 講 시험을 치르게 한다.

[增] 청렴하고 근실한 官僚는 2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

167) 下三道는 경상·전라·충청도를 말하고 上五道는 경기 이북의 5도를 말한다.

168) 중앙관료는 각 官司의 長官이 지방관료는 관찰사 등이 年 2回 근무성적을 上·中·下로 평정하는데, 10考 10上은 5년간 계속 上을 받은 경우이고, 5考 5上은 2년 반을 계속 上을 받은 것이다.

각 이는 바대로 천거하도록 하여, 문서로 의정부(廟堂)에 보내면 의정부에서는 회의를 하여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宣祖代에는 吏曹가 의정부로 선정하여 보내면 의정부는 여러 宰臣을 牌招할 것을 주청하며¹⁶⁹⁾ 여러 宰臣과 의논한 후 거행한다. 英祖 乙丑年(1745)에 肅宗朝의 故例에 의할 것을 명령하여 이와 같이 法式을 정하였다.

○經筵官의 선정은 大臣과 吏曹의 堂上官이 賓廳에 함께 모여서 해당자를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南臺¹⁷⁰⁾는 一銓堂¹⁷¹⁾의 의견만으로 갑자기 通淸하지¹⁷²⁾ 못한다.

【諸科】 【原】 文科의 甲科에 수석으로 합격한 자에게는 종6품을 주고, 甲科의 나머지는 정7품을 준다.¹⁷³⁾ 乙科는 정8품 階를 주며, 丙科는 정9품 階를 준다. 원래 官階가 있는 자는 甲科 수석의 경우에는 4階(資級)를 올려주고, 甲科의 나머지는 3階를 올려 주며, 資窮者¹⁷⁴⁾는 堂上官으로 올려준다. 乙科는 2階를 올려주고, 丙科는 1階를 올려준다. 資窮者는 準職을¹⁷⁵⁾ 준다. 이미 준직에 있는 자는 당상 판으로 올려준다. 더 올려 줄 官階가 마땅히 줄 官階와 같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주어야 할 官階에다 1階를 더 올려 준다. 官階가 서로 같다는 것은 예컨대 수석합격자의 元官階가 承仕郎인 경우이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원래의 官階가 從仕郎 이하

169) 牌招는 王命으로 臣下를 부를 때, 承政院에서 木牌에 부를 사람의 관직, 성명을 써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0) 南臺는 南行으로 천거된 臺官, 즉 學行이 현저하여 司憲府 掌令 또는 持平 등에 천거된 자를 말한다.

171) 一銓堂은 吏曹의 堂上官 즉 判書, 參判, 參議 중의 한사람.

172) 臺官도 銓郎, 玉堂, 翰林, 春坊, 諫官 등과 더불어 淸官으로 인정된다. 淸官은 특별한 임용절차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통과하는 것을 通淸이라 한다.

173) 甲科 合格者는 式年試·增廣試의 경우 보통 3인으로 수석은 壯元郎, 차석은 榜眼郎, 삼석은 探花郎이라 한다. 또 대체로 乙科는 4등에서 10등까지, 丙科는 11등 이하로 되어 있었다(국조방목 참조). 乙丙科는 階를 준다고 하여 반드시 分館하여 權知(시보)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甲科는 바로 實職으로 임용될 수가 있었다(曹佐鎬說).

174) 資窮者는 堂下官 正3品인 官階에 있는 자 즉 通訓大夫와 禦每將軍인 者를 말한다.

175) 準職은 奉常寺正, 左右通禮 등과 같은 정3품 堂下의 최고 實職을 말한다.

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나머지도 이에 준한다. 官階를 받은 자는 成均館·承文院·校書館의 權知로 나누어 임명한다.¹⁷⁶⁾

○譯科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종7품을 준다. 司譯院에 등용한다. 이하 같다. 2등은, 종8품의 官階를, 3등은 종9품의 官階를 준다. 陰陽科·醫科·律科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종8품을 주고 2등은 정9품의 官階, 3등은 종9품의 官階를 준다.¹⁷⁷⁾ 원래 官階가 있는 자에게는 모두 1階를 더 올려 주고, 올려줄 官階가 마땅히 받아야 할 官階와 같거나 못미치는 경우에는 마땅히 받아야 할 官階에다 또 1階를 더 올려 주고 官階를 받은 者는 모두 해당 衙門의 權知로 임명한다.

【續】 重試人¹⁷⁸⁾에 대한 加階는 경국대전의 文科及第者 중 官階를 원래 갖고 있는 자의 (陞階) 例에 의한다. 參外官은 비록 乙科 이하라도 모두 6품으로 승진시킨다.

○新及第者의 나이가 50에 차면 三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에 나누어 배치한 후 6품으로 승진시킨다. [補] 위 3館의 參外官으로 나이가 50에 이른 자도 같다.

○功臣嫡長子孫으로서 上護軍 [補] 大護軍인 (체아직을 받은) 者가 등과한 경우에는 參外官이면 6품으로 올려 주고, 參上官이면 資級을 올려준다.¹⁷⁹⁾

176) 文科의 新及第者(甲科及第者로서 實職을 받은 경우 除外)를 신분에 따라 承文院(槐院), 成均館(國子監), 校書館(芸閣) 등에 임시직인 權知(시보)로 分館하는 것이다(槐院分館은 뚜렷한 양반의 子弟, 國子分館은 시골양반, 芸閣分館은 庶族 등).

177) 여기서의 1등·2등·3등은 문과의 甲科·乙科·丙科에 해당한다.

178) 重試人은 文科及第者를 상대로 다시 시험을 보여서 合格한 者를 말한다.

179) 參上官은 堂下官 중 6품 이상의 官階를 받은 者이고 參下官은 7품이하의 官階를 받은 자이다. 上護軍·大護軍의 품계는 모두 정·종3품으로 일견 參下官인 者가 있을 수 없어 보이나, 실제상 上護軍과 大護軍은 功臣 및 功臣의 嫡長子孫의 체아직, 宣傳官, 禁軍, 寫字官 등의 체아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므로, 그 官品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上護軍 大護軍의 체아직을 받은 자가 참하관(7품이하)인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增】 登科 전에 이미 司果의 체아록을 받은 자는 6품으로 올려 준다. ○登科한 지 10년이 지난 자는 經筵에서 임금에게 건의하여 6품으로 올려 주도록 한다.

【除授】 【原】 해안지대와 국경지대의 守令은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임명한다. 京畿道の 喬桐, 忠淸道の 泰安·瑞山·舒川·海美·保寧·庇仁·藍浦, 全羅道の 濟州·長興·順天·靈巖·樂安·珍島·扶安·沃溝·茂長·興陽·咸平·大靜·旌義, 慶尙道の 金海·寧海·蔚山·梁山·昆陽·東萊·巨濟·南海·延日·泗川·機張·熊川, 黃海道の 黃州·豐川·遂安·翁津·長淵·康翎, 江原道の 江陵·三陟, 永安道の 慶源·鏡城·會寧·鍾城·穩城·慶興·富寧·甲山·三水·端川·吉城·明川, 平安道の 義州·江界·昌城·朔州·龍川·楚山·碧潼·渭原 [增] 이번 폐지한다. 【續】 大院君의 奉祀人은 3대가 지난 후에 처음에 敦寧府 都正에 임명하되, 돈령부 동지사 이상은 資級에 따라 定例대로 임명한다. 大王의 私親의 奉祀人인은 처음에 돈령부 正 貂帽와 紅帶는 한결같이 堂下官인 宗親 判郞의 예에 의한다)에 임명하고 都正 이상은 資級에 따라 定例대로 임명한다. 모두 새로 설정한다. 文武官은 이 定例에 구애되지 않는다. ○돈령부 都正과 正은 세습하되, 세습할 자가 나이가 어리면 일응 宗親인 判郞의 初任의 예에 의하여 所定年令이 될 때를 기다려 임명한다. [增] 처음 돈령 정에 임명하여 세습하는 것은 이번에 폐지한다.

○世子嬪의 父에게는 처음 官職을 준 후 곧바로 6품관으로 임명한다. 大君과 王子君의 夫人의 父는 9품의 관직에 임명한다.

○世孫嬪의 父는 처음 官職을 준 후 곧바로 7품관으로 임명한다.

○正卿은 口傳으로 任命할¹⁸⁰⁾ 수 없다. [增] 홍문관·사헌부·사간

180) 正卿은 6曹判書와 議政府의 左右參贊, 漢城府尹 등 정2품관을 말한다. 무릇 관료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권을 갖고 있는 者가 3인의 후보자를 골라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受點允下를 받는 것이 定例이나 긴급할 경우에는 吏曹 단독으로 注擬(후보자 추천)하며 승정원으로 直送하여 受點任命한다. 이것을 口傳政事라 한다.

원·세자시강원·세손강서원의 관료와 의금부판사·이조참판·이조참의·8도감 사도 같다.

○영·호남의 관찰사를 임명할 때에는 廟堂에¹⁸¹⁾ 문의하여야 한다.

○名官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구휼을 잘하여 마땅히 嘉善大夫의 官階로 승진시켜야 할 경우에는 廟堂에 의논한 후 임금에게 다시 啓聞한다.

○정3품 堂下의 官階에 있으면서 정3품의 관직을 거치지 않은 자는 堂上官으로의 승진을 허용하지 않는다. [增] 묘당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官階(資級)를 올리라는 王命이 있을 경우에도 관직이 아직 準職에 이르지 아니하고, 資級이 아직 정3품 堂下官階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王旨를 받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生員과 進士는 보증하고 천거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재능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代加者는¹⁸²⁾ 通德郎을 限階로 삼는다. [增] 將仕郎 이상의 14階를 차례대로 代加하되 官階를 뛰어넘을 수 없고 通德郎에서 그치도록 한다.

○司憲府의 관원으로는 곧바로 次官(執義)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蔭官을 곧바로 郡守에 임명할 수 없다. 무신이 곧바로 兵使가 되는 것도 같다.

○文廟에 從享하는 先賢·功臣·儒賢·戰亡者·冤死者·清白吏 등의 적장 자손 이외에는 初仕 임용후보자를 함부로 추천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그 아들은 적장자로 할 수 없다.

○三醫司의¹⁸³⁾ 3품관의 자손에게는 蔭職을 허용하지 않는다.

181) 廟堂은 의정부 또는 비변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182) 代加는 官階 승진대상자가 自己 대신 子·孫 또는 壻·弟·姪에게 官階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3) 三醫司는 內醫院·典醫監·惠民署 등을 말한다.

○地方官이 他官職으로의 轉任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길 이 멀고 官의 事務가 긴급하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入朝 拜辭를 하지않고 부임하게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가벼이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무릇 地方에 있으면서 관직에 임명된 자는 서울에서 가까운 道는 30일, 먼 道는 40일 이내에 임금에게 謝恩 肅拜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긴 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改任한다. [增] 함경북도와 三水·甲山은 50일, 六鎭은 60일을 기한으로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임금에게 보고한다.

○宗廟署·社稷署·各陵·宗簿寺·司饗院·漢城府·五部의 參外官인 中庶人은¹⁸⁴⁾ 차례가 되면 승진시킨 후 他司의 官職으로 轉任시킨다. 尙瑞院에 있어서는 그 차례를 바꾸어 (中庶人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增] 景慕宮도 같다. ○사옹원, 오부, 상서원에는 차례에 상관없이 中庶人을 임용할 수 있다.

○開城府의 敎官은 도로 敎授로 (직제를) 바꾸어서, (開城留守가) 스스로 선임하여 보내도록 한다. [增] 후에 또 分敎官을 따로 두었다. [補] 교수를 삭감하고 또 分監役을 두었다.

○吏文·天文學 敎授 등은 生員·進士·幼學을 막론하고 30세 이상자를 추천 임용한다. 能磨兒도 같다. 臚唱·引儀는 나이 20세 이상자를 추천 임용한다.

○雲臺官으로¹⁸⁵⁾ 부지런히 근무한 者 중에서 勤苦가 특히

184) 中人은 기술관료 및 그자손, 庶人은 주로 양반의 서얼, 기타 양반신분에서 몰락한 자 및 그 자손을 말하는데 15세기 초 서얼 금고 법이 제정 공포된 후, 서얼들이 양반관료에로의 진출이 막히자 대거 잡과를 거쳐서 기술관료가 되었다. 그리하여 中人和 庶人은 같은 신분계층이 되어 中庶人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그 후 서얼소통운동의 확산에 따라 中庶인들에게 벼슬자리를 넓혀 주고자, 영조(숙대전) 때에는 종묘서, 사직서, 각릉, 중부시, 사옹원, 한성부, 5부 등의 參下官職에 그들을 임용하도록 하였다(이종일, 「서얼신분변동사연구」, 1987,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85) 雲臺官은 관상감의 기술관료(中人)를 말한다.

심한 자는 吏曹와 兵曹(東西銓)에서 가려 뽑아서 임용한다.

○前朝(고려)王氏의 자손을 특별히 찾아서 임용한다.

○경상도·함경도·평안도·개성사람들인 임용후보자 명단에는 출신지를 註書하여야 한다. [補] 濟州人도 같다.

○6품 이상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官職이 官階(품계)를 넘어선 후에는 또 다시 승진 임용할 수 없으며 參外官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6품에 한하여 임용한다. [補] 官階에 해당하는 관직을 골라 임용하자면 6품으로 승진시킨 후에 임용한다.

【增】 監役은 학생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인 자로, 守奉官은 학생으로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를 추천 임명한다.

○吏曹와 兵曹의 正郎과 佐郎은 이미 4품을 역임한 者를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三司·春坊·國子の 長¹⁸⁶⁾을 지방관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금에게 啓請하여 후보자로 추천한다. [補] 大司憲을 承旨나 지방관으로 임명할 때는 임금에게 啓請하지 않고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兼察訪은 임금에게 啓請함이 없이 바로 內職으로 추천된다.

○六曹와 兩司는 本司에서 상위직(右位)을 역임한 자를 하위직에 임명하지 못한다. 玉堂과 春坊은 그러하지 않다.

○三曹의 正郎·佐郎은 生員·進士인 사람을 추천 임용한다. 학문과 덕행이 있는 사람은 生員·進士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¹⁸⁷⁾

○무릇 대신에게 물어서 選任할 때에 파직된 자와 解由

186) 三司의 長은 玉堂과 大諫의 長 즉 弘文館 副提學 및 司憲府 大司憲과 司諫院 大司諫 등이며 春坊의 長은 世子侍講院의 輔德이고, 國子の 長은 成均館 大司成이다.

187) 六曹의 郎官 중 吏曹·禮曹·兵曹의 正郎·佐郎은 淸要職이므로 원칙적으로 文科 及第者를 임용하였으며 戶曹, 刑曹, 工曹 등 3조의 正郎·佐郎은 단순한 要職이므로 生員·進士 또는 學行있는 幼學으로 補任하였고 18세기 말 이후에는 서얼 허통에 따라(許要不許淸) 서얼인 등과자도 임용하였다.

되지 않은 자를 과격적으로 임용후보자로서 추천할 경우 吏曹에서 임금에게 품의한다.

○蔭官인 參判과 한성부 左右尹은 勳臣과 특별히 천거된 者 이외에는 寺正(정3품직)을 거치지 않은 자는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돈령부 都正도 같다. [補] 都正은 그러하지 않다.

○禮賓寺 參奉 한 자리는 충훈부가 공신의 적장자손인 忠義衛에 속한¹⁸⁸⁾ 자 중 3인을 임용후보자로 하여 吏曹에 보내면 吏曹에서 추천하여 任用한다. [補] 順康園守奉官도 같다.

○春坊은 비록 兩司(臺諫)를 거쳤더라도 다시 通淸한다.¹⁸⁹⁾

【補】 經筵官은 지방관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

○宗親과 儀賓은 資級에 따라 돈령부와 의금부에 임용후보자로 추천된다.

○蔭官이 登科하여 곧바로 堂上官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사간원의 大司諫을 거친 후라야 비로소 成均館 大司成이 될 수 있다.

○蔭官으로 처음 벼슬하는 者와 參上官으로 재임하던 중에 喪을 당한 자 및 지방관을 역임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 벼슬을 그만둔 것이 아주 오래된 자를 정기 인사이동 때 각각 1인을 가려 뽑아서 임용한다. ○皇壇¹⁹⁰⁾의 守直官으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한 자를 임용한다.

188) 『大典會通』 권4 兵典 番次都目 忠義衛.

189) 通淸은 淸宦 임용시에 특별한 후보자 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비록 臺諫(持平, 正言 등)이 淸宦이나, 春坊(世子侍講院)의 관료는 淸宦 중에서도 특수한 자리이므로 재차 通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190) 皇壇은 天神에게 제사지내는 壇으로 圓丘壇이라고도 한다(『國譯 大典會通』, 高大出版部 1960, p.128).

【限品敍用】 【原】 文·武官 2품 이상의 良妻子孫은 정3품에, 賤妻子孫은 정5품에, 6품 이상의 良妻子孫은 정4품에, 賤妻子孫은 정6품에 限한다. 7품 이하에서 無官職에 이르기까지의 양첩자손은 정5품에, 賤妻子孫과 賤人으로서의 良人이 된 자는 정7품에, 良妻子의 賤妻子孫은 정8품에 限한다. 병조도 같다. 2품 이상의 첩자손은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내수사 해민서 도화서 算學 律學 등의 관직에 재능에 따라 임용한다. [增] 과거(文武科)에 급제하여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이후부터는(191) 사역원 이하의 諸司에 임용하는 법은 모두 폐지하되 오직 觀象監에서는 아직 士族의 庶系後孫이 있다. 【增】 良賤妻子孫의 限品敍用은 通擬節目에 의한다.¹⁹²⁾ 正祖 元年 丁酉(1777) ○문과에 급제한 妻子孫을 芸閣(校書館)에 배치하고, 武科에 급제한 첩자손을 守門將과 部將으로 추천하는 것은 前例에 의하여 고치지 않는다. 서얼이 文科에 급제하여 參上官이 되면 戶·刑·工 三曹의 正郎 佐郎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諸官司의 判官 이하는 蔭官 또는 武科로 入仕한 者를 임명하여도 무방하나, 陵·殿·廟·社·宗簿寺 등 5司의 郎官과 司憲府의 監察, 義禁府의 都事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얼의 경우 文·武科及第者인 堂下官은 府使에 限하고 堂上官은 牧使를 허용한다. 生員·進士·蔭官은 郡守로 임명되는 것을 허용하고 治績이 있는 자는 府使를 허용한다. 生員·進士가 되지 못한 자와 引儀出身 者는¹⁹³⁾ 縣令에 한정하고 치적이 있는 자는 軍수를 허용한다. ○문과급제후 參上官이 된 자를 直講에, 무과급제후 參上官이 된 者를 中樞府의 經歷 都事 등에 임명하는 것은 모두 무방하나, 도총부의 관료와 훈련원의 副正은 허용되지 않는다. ○五衛將은 文·蔭 武官¹⁹⁴⁾ 모두 무방하고 武臣이 虞候로 임명되는 것도 허용한다. 文章과 學識 德行과 義理가

191) 李鍾日 「18. 19세기의 서얼소통운동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58집 1987 pp.67~82.

192) 『正祖實錄』 卷 3-23 正祖 元年 丁亥(丁酉節目이라고도 한다).

193) 通禮院 引儀는 宮中儀式에서 司會를 보는 者로서 목소리가 좋은 者를 특별 채용한다. 引儀는 中庶人을 주로 임명한다.

194) 文官은 文科及第者인 관료, 武官은 武科及第者인 관료, 蔭官은 門蔭 또는 功臣으로 入仕한 官僚를 말한다(文臣, 武臣도 文官, 武官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生員, 進士試 합격자인 관료도 蔭官이다.

뛰어난 자와 才能 및 器量과 治績이 뚜렷한 자는 특별히 선발하여 임용하되, 廟堂(의정부)과 銓曹(吏曹)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병조도 같다.

【補】庶孽疏通更定節目¹⁹⁵⁾ 純祖 23년 癸未(1823) ○서얼인 문관은 종2품에 한하며 한성부의 左·右尹과 戶·刑 工曹의 參議를 허용하되 淸宦 후보자로 임용추천되는 것은 臺官職에만 허용된다.¹⁹⁶⁾ 蔭官은 牧使에 한하고 처음 벼슬하는 서얼들이 5部都事 監役 守奉官 등에 임용되는 것은 무방하다. 서얼인 武官은 종2품인 兵使에 한하되, 오위도총부의 도총관 부총관, 각영의 中軍, 함경도와 평안도의 兵·水使, 訓練院의 正·副正, 廟·社·陵·殿·宮의 관료와 세자익위사의 관료, 敎官 등으로 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도에서는 재능이 있고 행실이 바른 者 1인을 뽑아서 추천한다. 哲宗 2年 辛亥(1851)부터는 閔閔家의 서얼들이 文科에 급제하면 槐院에 分館되고 武科에 급제하면 宣傳官으로 임용추천되는 것을 허용한다.¹⁹⁷⁾

【告身(임명장)】 【原】 무릇 관직을 받는 사람의 임명장은 5품 이하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을¹⁹⁸⁾ 살펴 본 후

195) 『純祖實錄』 권26-42 순조 23년 11월 丙子(癸未節目이라고 한다) 更正節目이 마련 되기까지는 서얼유생들의 萬人疏와 같은 격렬한 소통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항하여 성균관의 居齋儒生들의 반대운동(捲堂)이 있었으나, 결국 서얼유생들의 승리로 귀착되었다(李鍾日, 「앞의 글」 pp.45~63).

196) 「許要不許淸」의 원칙 즉 서얼들에게 要職은 허용하되 淸職은 不許한다는 원칙은 17세기 仁祖代부터 서얼소통에 동정적인 爲政者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나, 18세기 英祖代까지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 19세기 純祖代에는 일부전진하여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淸職 중 臺官으로의 通淸이 허용되었던 것이다(李鍾日 「앞의 글」 〈학위논문〉 pp.116~150).

197) 『철종실록』 권5 철종 4년 8월 정유 이른바 文槐武宣은 서얼들에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19세기 전기까지의 사회통념이었으나, 1853년 4월 영의정 金左根의 주장에 의하여 서얼들에게도 그것이 허용되었다.

198) 署經은 관료 임용시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임용후보자에 대한 身元 및 家系 조사를 하여 본인과 內外 4祖에게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려시대에서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료 임용시에 署經이 필요하였으나, 조선시대에는 5품 이하(예외로 4품이상도 해당) 임용시로 한정되었다(국초에는 4품 이하).

에 발급한다. 의정부·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장예원·홍문관·춘추관·지제교 및 종부시·세자시강원의 관료와 각도의 도사 수령은 父·祖·曾祖·外祖 등 內外4祖와 本人에게 흠결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署經한다. 도총부의 관료와 선전관 部將도 같다.

-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有故라 하면서 50일이 지나도록 서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임명장을 받기 전에 公務를 보다가 죽거나 혹은 파직된 者의 경우에는 그 임명장을 받을 사람에게 대한 署經이 완료되어 그것이 吏曹에 접수되었으면 임명장을 내준다.
- 임명장을 잃어버린 자는 이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吏曹에서는 이를 조사한 후 확인서(立案)를 발급한다. 병조도 또한 같다. [增] 서경을 하여 임명장을 내주는 法은 이번에 폐지한다. 續大典에는 署經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署經】 【續】 각도의 都事 守令으로 처음 임명되는 자는 비록 官階가 4품 이상이라도 모두 署經을 거친다. 侍從이나 당상관을 거친 자에게는 署經을 하지 않는다. ○무릇 서경을 할 때에는 妻의 4祖도 모두 살핀다.

○5품 이하의 臺官의 署經시에는 사헌부·사간원 兩司에서 3인의 官員을 갖춘다. 3인을 갖추지 못하면 각 2인에 그치더라도 임금에게 보고하여 그대로 시행하되 반드시 양사가 함께 모인 후에 서경한다. 監察·都事·守令의 署經에는 兩司에서 2인의 官員을 갖추어 거행한다. 양사가 함께 회동하지 못하더라도 1司의 관원이 갖추어지면 서경을 먼저 한다. ○감찰은 官階가 비록 4품 이상이라도 서경하며 도사 수령도 같다. 監察의 署經은 司憲府에서 먼저 행하여 결점이 없다고 許容한 후라야 兩司에서 서경한다. 감찰로 있었을 때에 이미 서경을 받았으면 비록 처음 도사·수령으로 임명되는 자는 다시 서경을 받지 않는다.

○무릇 서경받는 관원은 첫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재차

서경하고 재차 서경하여 통과되지 못하면 3차 서경을 하여서 3차 서경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자를 바꾼다.

○무릇 告身(임명장)은 공적인 사유외에는 50일을 넘겨도 서경받지 못하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바꾼다.

○무릇 謚號는 임금의 결정(受點)이 있는 후 양사에서 서경한다.

【政案】 **【原】** 3년마다 중앙과 지방의 관료는 出身과 來歷을 모두 기록하여 吏曹에 제출하여 政案(人事기록부)에 등록한다.

【增】 文·武·蔭官으로서 實職을 거친 자가 고향에서 사망하면 지방관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侍從 이상인 耆의 경우는 임금에게 보고하며 나머지의 경우는 吏·兵曹에 보고한다.

【解由】 **【原】** 무릇 관직을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解由¹⁹⁹⁾(책임해제 증명서)를 살펴본다. 병조도 같다. 濟州 牧使는 그러하지 않다.

【增】 解由에 구애되지 않는 자는 임금의 특명과 啓請 유무를 막론하고 해당 官職 외에는 후보자로 천거하지 못한다.

○解由를 마치지 못한 자는 實職임용 후보자로 천거되지 못하며 겸직은 무방하다. 兼察訪은 그러하지 않다.

【補】 經筵官은 解由 유무에 구애되지 않는다.

199) 解由는 物品出納에 관한 責任解除의 뜻이다. 각 地方官은 錢穀 및 物品의 出納 支出에 관한 장부를 신임 地方官에게 인계할 때에, 戶曹에 보고하면 戶曹에서는 이것을 조사하여 결점이 없음을 吏曹에 통지하여 책임을 解除시켜준다.

【褒貶】(근무성적 평정) 【原】 중앙관료는 그 官司의 堂上官 및 提調와 소속 曹의 堂上官이, 지방관료는 관찰사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사헌부·사간원·세자시강원의 관료는 근무성적평정이 없다. ○守令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함께 의논하여 평정하되 濟州의 세 고을 수령은 목사가 평정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중앙관료는 부임한지만 30일, 지방관료는 만 50일이 되어야 비로소 평정하도록 한다. ○죄를 범하여 심문(推問)받음으로 인하여 기한내에 평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심문이 끝난 후에는 그 당시(其等)²⁰⁰의 관찰사가 교체되었더라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10번 평정하여 10번 모두 上을 받은 자는 賞으로 한 官階(資級)를 올려 준다. 正3品下(通訓大夫 禦侮將軍)의 官階者는 官職을 올려준다. 牧使 이상은 그러하지 않다. 두번 中인 자는 無祿官²⁰¹으로 임용하고, 세번 中인 자는 파직한다. 다섯 번·세 번·두 번의 평정을 막론하고 모두 한번 中을 받으면 영전시키지 않고, 두번 中을 받으면 파직시킨다. 예문관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 이하 관료가 中의 평정을 받으면 인사이동사기에도 승진 또는 전보되지 못하며 전직관료로서 체아직아문에 있는 者가 中을 받으면 다음의 근무성적 평정시기 前까지는 임용되지 않는다. ○1년 네 번있는 정기인사이동 때 中을 받은 자는 한 차례의 인사이동 시기를 건너 뛰고, 下를 받은 자는 두 번의 인사이동 시기를 건너서 取才시험을 보게 한다. 堂上官인 守令은 한번 中을 받으면 파직된다.

【續】 육조와 각 衙門의 근무성적평정은 春夏秋冬의 각 기간을 겸하여 시행하지 못한다.各司의 提調는 老病人 외에는 근

200) 等第란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其等이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기간, 임기의 뜻으로도 쓰인다. 즉 等內란 임기내란 뜻으로 이해하여(윤국일, 『앞의 책』, p.263) 其等관찰사란 근무평정을 할 당시의 관찰사란 뜻으로 보았다. 포폄법은 태종때 비롯되었다(『세종실록』 권51, 세종 13년 정월 갑신).

201) 無祿官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관료이다.

무성적평정자명단을 글로 써 보낼 수 없고 직접 와서 마감해야 하되²⁰²⁾ 都提調가 있는 衙門에서는 都提調가 직접 갈 수 없으므로 해당되는 曹의 堂上官이 都提調에게로 가서 (평정자 명단을) 받아야 한다.²⁰³⁾

○京司의 詞訟과 錢穀을 관장하는 衙門의 관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4字 題目으로 하되²⁰⁴⁾ 嚴明하도록 힘쓴다. 掌樂院의 官僚는 음악학습의 勤慢으로 성적평가(殿最)²⁰⁵⁾ 한다. 관찰사가 수령의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 下평정이 없는 경우에는 承政院에서 이를 조사 한다. ○수령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서로 의논하여 軍政의 근면과 태만을 아울러 고찰한다. 관찰사와 수령은 모두 부임한지 만 50일이 되어야 비로소 근무성적평정을 행한다. 경기는 30일이다. 관찰사가 교체되어 돌아가면 신입관찰사가 부임하는 날을 기다려서 소정의 날이 차면 평정서류를 封進한다. [增] 相議하는 제도는 이번 에 폐지한다. ○근무성적평정에서 中을 받은 수령이 보직변경을 도모하는 경우에는 파직한다.

[增] 중앙관청에서 근무성적을 매길 때 公的인 事由가 있었거나 審理를 받는 中이어서 성적평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中으로 평정할 것이 아니라 地方官의 例에 따라 사실대로 빠졌음을 기록하여야 한다.

○宣惠廳·濬川司의 관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領相이 없으면, 左右相이 磨勘한다.

○함경도의 陵殿官과 全州의 肇慶廟·慶基殿의 관료 및 江華의 長寧殿의 관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관찰사(道

202) 天啓 丁卯年(1627)의 承傳이다(『典錄通考』 吏典, 褒貶 受教輯錄)

203) 康熙 庚寅年(1710)의 承傳이다(『위의 책』 吏曹, 褒貶 新補受教).

204) 『典錄通考』 吏典, 褒貶, 新補受教(雍正丁未 1727)에서는 京官의 근무성적평정(포폄)에는 4字題目으로 한다고 하였다. 4자 제목이란 포폄의 문구가 4자 1구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205) 근무성적평정시에 上을 最라 하고, 下를 殿이라 한다.

臣)와 留守(守臣)가 (평정서류를) 封進한다. [補] 水原 華寧殿의 관료, 평양 崇仁 崇靈殿의 관료도 같다.

○의금부에서 조사하여 법률에 비추어 과실은 인정하되 관직은 돌려준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에는 그것을 참작하여 관직을 내리거나 올리거나(黜陟) 한다.

【考課】 【原】 여러 관청의 관료는 卯時(오전 5~7시)에 출근하여, 酉時(오후 5~7시)에 퇴근한다. ○해가 짧은 때에는 辰時(오전 7~9시)에 출근하여 申時(오후 3시~5시)에 퇴근한다. 206) 公務가 緊要한 관청에서는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도 1인을 남겨서 宿直員으로 대기시킨다. 宗廟署·文昭殿·活人署의 관원과 社稷署 및 錢穀이 있는 여러 관청에서는 1인을 남겨서 그를 회합에도 참석시키지 않는다. 여러 관청의 숙직관원에 관하여 이조의 숙직당하관이 초저녁에 이름을 적어 봉합하여 올리고 또한 承政院으로부터 通行證(標信)을 받아 순찰하도록 하며(숙직에 빠진 자는 파면된다) 다음날 아침에 반납하도록 한다.

○매 계절의 마지막 달에 刑曹 漢城府·開城府·掌隸院의 당하관은 그들이 처결한 訟事의 건수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석달 안에 한성부와 장례원은 작은 사건은 30건, 큰 사건은 20건, 형조는 작은 사건은 50건, 크거나 중간인 사건은 30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건수에 이르지 못한 자는 官階(資級)를 한 등급 내린다. 개성부의 관료는 사건 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매년 말 吏曹는 각 관청의 관료들의 실제 근무일수와

206) 조선 초기에 지각(晩仕)하는 者 및 조퇴(早罷)하는 者는 王命違反罪로 笞 50에 處하여 왔다. 그러나 하루 무단 결근한 者는 大明律의 「無故不朝參公座條」에 의거 笞10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刑量이 너무 무겁다고 世宗은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특히 教旨로서 王命違反罪를 論하지 않는 한 통상의 律文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세종실록』 권51-32, 세종 13년 3월 己卯).

각종 사고에 관한 것을 종합하여, 관찰사는 守令七事²⁰⁷⁾에 관한 실적을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한다. 守令七事는 농사와 양잠업을 흥성하게 하고, 호구를 증가시키고, 학교를 흥왕하게 하며, 군정을 잘 다스리고, 부역을 고르게 하며, 소송을 간소화시키고 간사하고 교활함이 없도록 한다.

○1년 동안에 질병으로 결근하는 날이 만 30일이 되는 者와²⁰⁸⁾ 議親²⁰⁹⁾ 및 功臣²¹⁰⁾이 十惡의 범죄²¹¹⁾ 외에 다섯 번 죄를 범한 경우(5범죄)²¹²⁾에는 赦免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임금에게 보고하여 파직시킨다.²¹³⁾ 閑散人²¹⁴⁾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임용한다(한산인은 의친과 공신으로서 散官이 된 者를 말한다.) 병조도 같다.

○宗親과 大小官員이 무릇 함께 會습할 때 病을 거짓으

207) 守令七事에 관해서는 『세종실록』 권51-32, 세종 18년 윤 6월 戊辰에 「守令七事等第, 監司實封以啓」라 하여 『경국대전』 성립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8) 『經國大典註解』 前集 吏典에 「通計公簿病日周年內滿三十者罷職, 懲其瀨慢也或有疑其謂實病者」라 하여 피병으로 결근을 한해 동안 30일간 하는 者를 파면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하간 이 조문은 譯官들이 피병으로 결근하는 일이 많아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설정된 조문으로 비롯되었으나(『세종실록』 권101-2, 세종 25년 7월 甲寅) 그 후 모든 文武官僚에게 적용하게 되었다(『중종실록』 권 25-47, 중종 11년 6월 己未).

209) 議親이란 大明律에서의 刑의 減免대상인 8議 중의 하나로서 임금의 同宗인 袒免(免服한 9寸, 10寸)이상 親, 外族(王大妃, 大王大妃 친정) 媼麻 이상 親, 王妃의 小功 이상 親, 世子嬪의 大功 이상 親을 말한다.

210) 功臣에 관해서는 解說편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211) 十惡의 범죄란 大明律에 의하면 謀反 謀大逆 謀叛 惡逆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 등의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212) 5犯罪는 私罪를 다섯번 犯한다는 것이다.(『經國大典註解』 前集 吏典) 「五犯罪者 啓聞罷職」의 적용대상이 모든 관료이나 議親과 功臣만이나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중종실록』 권25-47, 48, 49, 52 중종 11년 6월 己未, 庚申, 癸亥, 丙寅).

213) 「五犯罪者 竝勿揀赦前 啓聞罷職」의 句讀點에 관하여 종래의 學者(『經國大典』 및 『大典會通』의 각종 주석서) 들은 竝勿揀赦前, 啓聞罷職(赦前을 가리지 아니하고 임금에게 보고하여 파직시킨다.)라 하여 前과 啓 사이를 끊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影印한 『중종실록』 권25-47에서는 竝勿揀赦, 前啓聞罷職(赦免된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전에 임금에게 보고하여 파직시킨다)라 하여 赦와 前사이를 끊어 다른 의미로 解讀되게 하였다.

214) 閑散人이란 官階만 있고 職事가 없는 官人을 말한다.

로 칭탁하고 不參하는 경우에는 사헌부와 宗簿寺에서 조사, 적발하여 임금에게 보고해서 論罪하도록 한다.

○근무성적평정에서 下를 받은 자와 私罪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의친과 공신이 근무성적평정에서 下를 받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되고 당상관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명장을 회수당했다가 다시 받은 사람도 파직된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병조도 같다. [增] 2년을 지난다는 것은 24개월간 임용을 制限한다는 것이다.

○무릇 죄를 범한 者와 근무성적평정이 下等인 者는 장부에 기록하여 두어서 참고하도록 한다. 병조도 같다.

○錄事·書吏가 事由가 있어 만 100일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와 까닭없이 만 30일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일수를 그만큼 삭제하여 파직시킨 후 내쫓으며 결근일수가 29일 이하자는 속죄금을 받고 다시 근무시킨다. 파직되어 쫓겨난 자가 후에 다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는 허락하여 준다. 喪中에 있던 者가 喪期를 마치고 다시 임용될 때에는 喪前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준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書吏의 名簿는 吏曹에서 날인하여 (그들의) 근무상황 및 간교함과 거짓됨을 살핀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續】 東班 7품 이하의 관원의 朔數가 서로 같은 경우에 다른 官廳으로 전임하면 전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준다. 西班도 같다.

○久任官員에 대해서는 각관청의 提調나 해당 曹의 당상관이 함께 의논하여 마련(결정)해서 吏曹로 이첩하면 이 조에서는 임금에게 보고한 후 장부에 적어 둔다.

○각 관청의 久任官員의 승진 및 전보는 잠시 이를 보류

한다. 구임관은 3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監察과 守令같은 승진시키는 관원 및 일반적으로 골라서 임용하는 곳에는 그러하지 않다.

○刑·戶曹·京兆(한성부)·의금부의 郎官과 監察 및 掌隸院의 郎官은 6개월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될 수 없다. [增] 工曹와 平市署도 같다. 문무관은 근무월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補] 五部도 같다.

○서울의 각 관청의 堂下官이 근무일수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守令의 임기만료의 예에 따라 교체시킨다. 그 중에서 공로가 있는 자는 선발 임용된다.

○堂下官인 守令은 30개월, 堂上官인 守令은 20개월, 邊地의 守令은 1주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다른 보직으로 승진 또는 전보된다. 侍從²¹⁵⁾은 15개월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될 수 없다. [增] 새로 通淸²¹⁶⁾된 경우에는 근무월수에 구애받지 않고 註를 달아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訓練正도 같다. ○現職守令으로서 國王의 特命을 받은 자는 근무월수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 또는 전보하며 前職時에 王의 特命을 받은 者는 소정기한을 기다려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허용된다. [補] 侍從의 승진 또는 전보는 만 2년이 되어야 한다.

○守令을 서로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 외에는 守令으로 전보하였을 경우 前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지 않는다. [補] 서로 보직을 바꾼 守令의 경우에도 또한 합산하지 않는다.

○정기 인사이동 때 直長의 남은 근무일수가 10일 이하도 되지 않은 자는 임금에게 여쭙어 승진 임용한다.

○蔭官이 30개월 근무하여 6품으로 승진할 때에는 날짜를 계산하라는 명령(計日之令)을 시행한다. 桂坊(世子翊衛司)의 參外官도 같다. [增] 여러 갈래의 기술직 관원으로서 근무월수를 계산하여 6품으

215) 侍從이란 承政院 注書와 藝文館 檢閱 등 史官과 弘文館(玉堂)의 官僚 등 임금의 측근에서 근무하는 淸宦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侍從은 玉堂官僚만을 의미한다.

216) 淸宦의 임용에는 특수절차를 거친다. 이를 通淸이라 하는데 解說편에서 상세히 서술한다.

로 승진하는 경우에도 모두 같다.217)

○蔭官은 6품으로 승진한 후라야 소송을 담당하는 官職으로 임용될 수 있고 戶·工曹 및 義禁府와 五部の 職도 같다. [增] 平市署의 경우도 같다. [補] 景慕宮의 관원도 같다. 한 차례 근무성적평정을 거쳐야 비로소 守丞으로 추천된다. 임금에게 肅拜하지 못한 동안에는 근무일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增] 소송을 담당하는 관원이 6개월도 근무하지 못하고 轉補되었다가 다시 소송을 담당하는 관원이 되었을 때에는 前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준다. 中·庶人²¹⁸⁾은 察訪이나 監牧官을 거쳐야만 비로소 守丞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翰林은 정기인사이동 때마다 上席者 1인을 영전시키되 國史修撰을 마치는 것을 기다려서 6품으로 승진시키도록 한다. 下位者가 4명이 되지 못하면 승진시키지 않는다.

○注書가 軍職(체아직)에 재직할 월수는 이를 계산하여 주지 않는다.

○5일마다 兩司(臺諫), 육조, 한성부, 장예원은 일동이 모여서 심의한 일수와 당상관의 참석 불참 여부를 單子에 기입·입결하여야 한다.

○朝賀와 朝參²¹⁹⁾ 및 모두 함께 모일 때, 宗親의 참석 불참 여부를 중부사에서 검찰하도록 한다. 宗親府의 아전(吏)에게 몰래 부탁하여 事由를 청탁하고 불참한 자는 初犯일 때는 丘史를 回收하고 再犯

217) 여러 갈래(各岐)의 관원이란 文 武 蔭官이 아닌 기술직관료(잡과 中人出身 등)를 말한다.

218) 中人是 雜科나 取才 등으로 入仕한 전문직 또는 기술직 관료(醫 譯 律 象 등)와 그 후손들로서 조선 전기 서얼금고법의 제정으로 서얼들이 文武科와 生員 進士試의 응시가 금지되자, 유일한 벼슬길인 전문 기술직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그들은 中人層 形成의 주요 구성분자가 되었으므로 中人和 庶人은 같은 신분 범주 속에 들게 되어 中庶人으로 통칭하게 된 것이다.

219) 朝賀란 신하가 매월 초하루 入朝하여 임금에게 賀禮하는 것을 말하고 朝參이란 6품 이상의 관료가 한달에 네번(실제로는 몇달에 한번 정도) 임금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沖齋先生文集 卷3, 翰苑日記 및 堂後日記).

일 때는 파직한다.

○각관청에서의 公務에 관한 回啓(임금에게 보고)가 기한을 넘기면 承政院이 조사한다. 중앙관청에서는 3日, 지방관청에서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江華의 分敎官의 근무일수가 만 60개월이 되면 實職으로 승진 또는 전보한다. [增] 開城府의 分敎官도 같다.

○無祿官과 參外官이 근무성적평정에서 中을 받으면 전에 10개월간 근무한 일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增] 다음의 근무성적평정일 전에 赦免으로 탕척(蕩滌)되면 근무일수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堂上官 및 근무성적평정이 없는 世子侍講院의 관원은 만1년 내에 과오를 범한 것이 다섯번이 되면 임금에게 보고하여 좌천시킨다. [補] 이번에 폐지한다.

[增] 열번 평정하여 열번 上인 守令은 중앙관직으로 옮겨 준다. [補] 다음 한번의 평정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아홉번 평정하여 아홉번 上을 받은 者는 열번 上을 받은 예로 한다.

○열번 평정하여 열번 上을 받은 者와 다섯번 평정하여 다섯번 上을 받은 者는 守令候補者명단에 註를 단다. 뒷날 다른 고을에서 下를 받은 자는 그 十上, 五上을 삭제하고, 다시 十上, 五上을 받아야 任用을 허락한다.

○下를 받은 수령이 사면을 받아 징벌이 면제되면 중앙관직으로 선임되는 것은 무방하나 지방관직으로는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임용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中을 받고 파직되어 쫓겨난 사람은 한번의 정기인사이동시기가 지나고 먼저 징벌을 면제하여 임용한다는 임금의 傳旨를 받더라도 정례에 따른 임용후보자로 추천될 수가 없다.

○근무성적평정에서 下를 받은 자가 上을 받으면 中을 받은 것으로 시행하고, 中을 받으면 下를 받은 것으로 시

행한다. [補] 吏曹에서 평정 등급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이번에 폐지한다.

○전문 技術職官僚는 윤번으로 6품에 승진시키되 해당직 종의 윤번 차례가 된 후라야 비로소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주며, 근무일수가 45개월이 되어야 승진 또는 전보를 허용한다. 天文學官과 禁漏官, 畫員 등이 輪回하고 議政府와 中樞府의 錄事가 윤회하며, 寫字官, 譯官이 윤회한다. [補] 命課學官과 治腫學教授가 윤회하고, 律員, 算員이 윤회한다. 天文學官과 錄事는 각각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6품으로 승진시킨다.

○牙山현감, 法聖浦와 群山僉使는 2년간 배를 타고 무사히 稅米의 海上運送을 잘 영도하면 현감은 상위직으로 승진임용하고, 첨사는 변방의 수령으로 임용한다. 龜山, 赤梁僉使, 齊浦萬戶는 두 차례 무사히 稅米運送을 영도하면 監司(또는 兵·水使)가 書狀으로 請하여 官階를 올려 주도록 한다. [補] 咸悅현감은 아산현감의 예에 의하고, 법성포와 군산의 僉使는 종전대로 변지수령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아산현감이 稅米運送을 영도하는 것을 이번에 폐지하고 적량첨사가 稅米운송을 영도하던 것을 부근의 鎭將에게 넘겨준다.

○參奉은 비록 소정 근무일수에 미달하더라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첫째가 되면 차례대로 奉事와 直長 등으로 승진시켜주며 直長에 이르면 前보직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여 1,350일이 되면 비로소 6품으로의 승진이 허용된다.

蔭官과 전문 기술직 관료는 소정 소정근무일수가 만료된 경우에 生員·進士試의 합격자가 아니면 6품으로 승진할 때에 반드시 5경 중 한 가지와 4서 중 한 가지를 講讀하도록 하여 두책 모두 不通이면 도태시키고 한 책만 不通하면 다음 정기 인사이동 시기에 다시 講讀을 시킨 후에 비로소 6품으로의 승진을 허용한다. [補] 監役官과 敎官·部都事를 參奉으로 바꾸어 임명할 때 전의 근무일수가 이미 450일이 되어 이를 합산하여 900일이 되면 6품으로 승진시키고 450일이 되지 않으면 근무일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奉事로 승진시킨다. 참봉을 감역관 교관과 部都事로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전의 근무일수를 통산하지 않

는다.

- 文臣 參下官인 司錄·訓導·別檢·察訪은 근무일수가 만 30개월이 되면 6품으로 승진시킨다. 비록 정기인사이동 시기가 아니더라도 승진시킬 수 있다.〔補〕生員·進士가 처음 벼슬하여 30개월이 된 경우도 같다.
- 魂殿²²⁰⁾ 忠義衛가 陵參奉이 될 경우에는 殿參奉의 예대로 근무일수를 계산한다.〔補〕이번에 폐지한다.
- 처음 벼슬하는 者를 차례대로 승진시키라는 왕명을 받으면 가장 오래 근무한 直長은 비록 6품으로 승진함에 필요한 講讀試驗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임금의 特命에 의하여 6품으로 승진하는 예에 따라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6품으로 승진할 수) 있다.
- 說書는 근무일수를 헤아리지 않고 6품으로 승진시킬 수 있다. 翰林이 說書가 될 경우에는 이 예를 援用할 수 없다.
- 陵守은 근무일수가 만 150일이 되기 전에는 승진 또는 전보할 수 없다.〔補〕地方官職인 경우는 상관없다.
- 守令取才試의 講讀을 거치지 않은 자는 察訪·監牧官 등의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補〕감목관은 그러하지 않다.
- 소정 근무일수에 미달하는 守令은 判官(營下官)과 물자가 풍부하고 지역이 넓은 州의 牧使 외에는 비록 정기인사이동시기라도 轉補를 임금에게 請할 수 없다.
- 현직 弘文館 官員(玉堂)이 근무성적평정에서 中을 받으면 즉시 그를 대신할 자를 差出하되 체아직으로 있으면서 中을 받은 경우에는 司果를 修撰으로, 司直을 校理로 임용 추천하는 것은 무방하나, 상위직으로 영전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에게 啓請하여 (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20) 魂殿이란 王이나 王妃가 죽은 후, 宗廟로 모시기 전에 神位를 奉安하는 궁전을 말한다.

- 宗簿寺의 正과 判校가 中을 받으면 겸하고 있는 春秋館의 관직을 삭감한다.
- 六曹의 郎官이 中의 평점을 받으면 파직시킨다.
- 蔭官과 武官인 守衛이 下의 평정을 받으면 2년이 지난 후라야 다시 本品 이하의 지방관직에 임용될 수 있고, 한 차례의 평정을 거쳐야 비로소 陞品될 수 있다.
- 官階의 등급을 넘어서 승진 임용된 사람은 지방관으로 임명될 수 없으나 都事와 邊地의 祿官 등은 무방하다.
【補】 규장각의 直閣 待教 등이 中의 평정을 받으면 관직을 바꾼다.
- 정7품 이하의 蔭官이 잘못으로 인하여 심리를 받게 되면 (근무하지 못한) 날짜를 계산하여 근무일수에서 삭제한다. (거짓으로) 임금에게 말씀드려서 휴가를 받은 자도 같다.

【祿牌】²²¹⁾ **【原】** 무릇 마땅히 祿을 받아야 할 者에게 매년 正月에 祿牌를 지급한다. 병조도 같다. **【增】** 이후로는 사계절의 첫달에 녹패를 지급하고 중간달과 끝달에 官職을 받은 자에게도 지급한다.

【續】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는 法律 적용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祿을 받을 수 없고 임용후보자로 추천될 수도 없다.

【差定(선임)】 **【原】** 무릇 마땅히 선임되어야 할 자는 그 이름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享官(祭官)3품 이하인

221) 祿牌는 관료의 녹봉인 米 豆를 준다는 證書로서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에는 每年 正月初에 祿牌를 주었으나 大典通編 반포 후에는 正月, 4月, 7月, 10月の 初(4 孟朔)에 주었다. 祿牌에 의하여 주는 祿科는 經國大典에서는 實職에 따라 4孟朔에 주었는데 續大典에서는 이를 每月(前月) 나누어 주었다(『大典會通』 戶典 祿科).

者와 衙前은 보고하지 않는다.

【續】 임금이 직접 나오셔서 講學을 참관하실 때에는 侍講官은 經筵의 領事·知事·同知事와 成均館의 知事 同知事 가운데 별고가 없는 인원을 모두 써 넣고 講書官은 玉堂과 翰林²²²⁾을 거친 者로 하되 모두 7인을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節使와 迎慰之任은 宗班으로 선임할 수 없다.²²³⁾ [補] 節使를 선임할 때에 大臣이 有故하면 宗親과 儀賓(임금의 사위) 및 2품 이상의 관료가 추천하여 임명한다.

○秋曹(刑曹)와 廚院(司饗院)의 郎廳(官)은 大祭 외에는 祭官으로 선임될 수 없다.

○長寧殿의 獻官은 江華留守을 선임하고 通津府使를 예비로 선임한다. 莊陵獻官은 寧越府使를 선임한다. 原州牧使를 예비로 선임한다. [增] 有故하면 他邑의 守丞을 임시변통으로 뽑아서 보낸다. [補] 橫城縣監을 예비로 선임한다.

○齊陵 厚陵 穆淸殿의 祭祀의 執事는 開城府의 經歷을 차출하여 보내되 그가 有故하면 부근의 수령을 대신 차출한다. [增] 목청전은 현재 祭享이 없다.

○各陵과 殿의 參奉 자리에 임시로 임명되는 假官은 녹을 받는 (공신자손인) 忠義衛를 선임하여 보낸다. 만약 忠義衛가 없으면 守墓官을 지낸 사람을 선임한다. 齊陵·厚陵·英陵·寧陵에는 각각 所在地 고을 관내의 忠義衛를 뽑아 보낸다. [增] 各陵에서 該曹의 陵官任命狀 없이 私의로 自身을 대신하여 守直시키면 해당 官員과 代直人을 모두 制書有違律로 처벌한다. [補] 新任陵官이 지방에 있어서 肅拜하지 못하고 祭香을 받았

222) 玉堂은 弘文館의 副提學 이하의 官員을 말하고 翰林은 藝文館의 奉敎, 待敎, 檢閱(좁은 의미로는 檢閱만)을 의미한다.

223) 節使는 正節(元旦), 冬至, 聖節(皇帝의 生日), 千秋節(皇太子의 生日) 등에 중국으로 파견되는 使臣을 말한다. 반대로 中國에서 오는 使者(勅使)를 영접하는 職任을 迎慰之任 또는 迎慰使라 한다. 이러한 자리는 宗親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을 경우(受香相值) 祭官으로 선임하고 그 職을 바꾸지 않는다.

○香陪書吏²²⁴)는 이를 가려 뽑아 미리 선정하여 두고, 각각 本司에서 齋戒 宿泊하게 하며 음식을 주고, 말과 馬具를 지급한다.

【增】齋陵獻官으로는 豐德府使를 선정하고 [補] 坡州牧使를 지정한다. 厚陵獻官으로는 長湍府使를 선정하며, 英陵獻官으로는 驪州牧使를 선정하고 寧陵獻官으로는 竹山府使를 선정한다.

【遞兒】²²⁵ 【原】 체아직의 祿俸은 官階를 넘어서 주지 못하며 체아직으로는 守職을 주지 않는다. 체아직은 낮은 官階에 따른다. 예컨대 응당 정9품의 체아직을 주어야 할 者의 官階가 종9품이면 내려서 종9품직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무릇 정기인사 이동시에 명단이 올라 체아직을 받게 되는 자는, 각각 그 관청의 당상관과 제주(提調)가 前月 10일전까지 근무일수의 다소와 取才試驗의 성적(점수)를 계산하여 15일에 추천장을 吏曹로 보낸다. 체아직은 근무일수가 차면 官階를 올려 주고 官職을 떠나면 散階로 한다.²²⁶ 병조도 같다.

【老人職】 【原】 나이가 80세 이상인 者는 良人·賤人을 막론하고 한 官階를 주고 원래 官階가 있는 자는 또 1階를 올려 주되, 당상관은 임금의 지시가 있어야 준다.

224) 香陪書吏는 祭享時에 祭官을 보좌하여 香과 祭文을 받드는 吏胥이다.

225) 遞兒職에 관해서는 解說편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遞는 「更易」, 또는 「傳遞」를 의미하고 兒는 語辭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

226) 윤국일 『앞의 책』 p.266에서는 散官과 散階를 구분하여, 말은 직무가 없는 벼슬자리(체아직)를 散官이라 하고, 散官의 자리를 뜬 것을 散階라 하였으나 이성무 등 많은 학자는 散官과 散階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註解 上 吏典에도 「無實職而只有階曰散階 卽散官」이라 하여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 【續】宗班의 副守 이상으로 나이 80인 자와 封君의²²⁷⁾ 父로 나이 70인 자는 매년 초에 官階를 올려 준다.
- 侍從臣의 父와 節度使(兵·水使)의 父로서 나이가 70인 자는 매년초에 이조와 병조에서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여 加資하되, 嘉善大夫 이상은 官品을 바꾸어 資級을 두 단계 이상 올려 주지 못한다. 법에 의하여 마땅히 資級을 더한 恩典을 받을 자는 비록 立春 후의 나이로 행세하더라도 실제 生年에 따라서 加資한다. ○신규로 資級(官階)을 받아야 할 자가 있으면 비록 연초가 아니더라도 임금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 侍從臣의 養父(所後父)가 이미 資窮(정3품 堂下官階)이면 그 生父에게 資級(官階)을 줄 수 있다. 承重孫의 祖父에 대한 경우도 같다.
- 東西班의 4품 實職 이상을 거친 적이 있는 사람의 나이가 80이 되면 該曹로 하여금 연초에 資級을 올려 주도록 (加資)한다.
- 士族의 婦女의 나이가 90이 되면 該曹로 하여금 抄錄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封爵하게 하며 그 남편은 妻로 인하여 贈職될 수 없다.
- 士族과 庶人으로서 100세인 사람에 대한 加資(加階)는 그 子孫이 임금에게 上申함을 허용한다.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가 연초에 그 집을 방문하여 이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增] 英祖 癸酉年(1753)에 나이 90이면 임금에게 上申하며 加資함을 다시 허용하였다.
- 【增】常民과 賤民의 노인직은 崇政大夫는 허락하지 않고 正卿을 역임한 자 이외에는 輔國崇祿大夫를 허락하지 않는다. [補] 蔭官은 또 判敦寧을 역임해야 비로소 輔國崇祿大夫를 줄 수 있다. ○士夫 一命²²⁸⁾ 이상인 자, 中人·庶人으로서 東西班

227) 宗班의 副守란 종친부의 종4품 벼슬로서, 대개 大君과 王子君의 庶系子孫(3代限)이 받게 된다. 君은 大君과 王子君의 嫡長子孫이 받는 경우와 功臣이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의 正職을 역임한 자, 內侍(中官)로 入仕하여 祿俸을 받은 자 등이 나이 80이 되면 임금에게 上申하여 모두 資級을 올려주는 것을 허용한다.

【補】 士族과 庶人으로서 100세인 자는 '바로 崇政大夫를 준다. 마땅히 노인직의 資級을 받을 노인을 서울과 지방에서 뽑아서 임금에게 보고하면 正月 2日 임금이 裁可한다.

○大·小科의 回榜人은 1資級 올려준다. 229) 잡과 출신도 같다.

【追贈】 【原】 宗親과 文武官인 實職 2품 이상인 耆에 대해서는 그의 三代를 追贈한다. 부모는 자기의 品階에 준하고, 祖父母와 曾祖父母는 각각 1등급씩을 차례로 내린다. ○사망한 妻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大君의 妻父에게는 정1품, 王子君의 妻父에게 중1품을 추증한다. ○親功臣은 비록 官職이 낮더라도 정2품을 추증한다. ○一等功臣의 父에게는 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二等功臣의 父에게는 純忠積德補祚功臣을, 3등공신의 父에게는 純忠補祚功臣을 추증하고 모두 君으로 봉한다.

【續】 大王의 私親의 考(亡父)에게는 領議政을 추증하고, 조부에게는 左贊成을 추증하며, 증조부에게는 判書를 추증한다. 大院君의 私親의 考(亡父)에게는 右議政을 추증하고 世子の 私親의 父에게는 左贊成을 추증한다. ○王妃의 考(亡父)에게는 영의정을 이상의 3대에 대해서는 國舅推恩의 例에 따라 추증한다. 世子嬪의 先考에게는 좌의정을, 大君의 妻父에게는 우의정을, 王子의 妻父에게는 左贊成을 추증한다.

228) 周官 9命에서 나온 것으로서 9命은 上公, 8命은 天子의 三公, 7命은 侯伯, 6命은 三公의 卿(上大夫), 5命은 子男(中大夫), 4命은 下大夫, 3命은 元士(上士), 2命은 中士, 1命은 下士(이상, 周禮 및 孟子)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의 一命은 대체로 參下官을 의미하였다.

229) 回榜人이란 文·武·雜科와 生員·進士試에 合格한 지 60주년 되는 날을 맞이한 사람이다. 60주년 생일을 回甲, 결혼 60주년을 回婚이라 하는데, 回甲이나 回婚 때와 같이 回榜일에도 큰 잔치를 한다.

- 世孫嬪의 先考에게는 위의정을 추증한다.²³⁰⁾
- 王命을 받들어 국경을 넘어간 使臣이 外國(異域)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品階를 올려주고 贈職한다.
- 官職 임명에 관한 王命을 받들었으나, 任用前에 죽은 자에게는 거기에 상당한 관직을 추증한다.
- 새로이 과거에 급제하고 分館되기 전에²³¹⁾ 사망한 자에게는 거기 상당한 관직을 추증한다. 覆試까지 합격하였으나 殿試 전에 사망한 자도 같다.
- 醫科·譯科 합격자인 中人·庶人에게 증직할 경우에는 參判·摠管은 허용되지 않고 加設職인 同知事가 증직하는 경우에는 左·右尹은 허용되지 않는다.
- 【增】 原從功臣의 錄券(증서)을 나누어 주기 전에 사망한 자는 본인에게만 추증한다. 원종 1, 2, 3등 모두 같다. ○原從一等功臣의 父가 生前에 관직을 역임하였으면 1등급을 올려서 증직한다. 致仕奉朝賀가²³²⁾ 陞資(官階의 승진)하면 實職에 관계없이 官階의 품계에 따라 3代를 추증한다. [補] 宗正卿과 承襲君도 같다. ○宗親에게는 宗正卿을 겸직으로 추증하고, 功臣의 嫡長子孫에게는 封君을 겸하여 추증한다.
- 推恩人²³³⁾ 또는 受贈人 가운데 吏曹 또는 玉堂(弘文

230) 「世孫嬪考贈右議政」이란 말은 續大典 吏典 本文에는 없고 吏典補에서 추가된 것을 大典會通에서 續大典 해당조문으로 편입하였다.

231) 여기서의 新及第 未分館前 身死者는 文科及第者인 경우로 해석된다. 生員進士試의 합격자는 入格者로, 雜科의 경우는 出身者, 武科의 경우에는 及第出身者로 호칭될 뿐만 아니라 分館制度가 없기 때문이다.

232) 致仕는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禮典에 「禮 大夫七十致仕」라 하여 정년퇴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奉朝賀에 관해서는 같은 책 後集 上 吏典에 「奉朝賀, 本不爲官 但 奉朝賀而已……」라 하여 그것이 官職이 아니면서 조정의 공식적인 의식에 참석함을 나타내고 있다. 致仕奉朝賀는 관직을 정년퇴임한 당상관이 죽을 때까지 녹봉을 받으면서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나라의 행사때에만 참석하는 것이다.

233) 官階와 官職의 任命 또는 승진된 者를 推恩人이라고 한다.

館)의 관료를 역임한 자는 吏曹의 관직을 추증한다.

【補】 규장각 관원의 贈職時에는 규장각의 직함을 품계에 따라 의례히 겸직시킨다. 受贈人이 文科及第者이면 비록 규장각의 관직을 역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겸직하는 증직을 허용한다.

○受贈人이 抄選南臺가²³⁴⁾ 아니면 大司憲을 추증 받을 수 없다. <祭酒도 같다.>

○上輔國崇祿大夫인 사람에게는 上相(영의정)을 추증한다. 資窮(정3품 堂下官階)이 못되는 宗班이 贈職을 받는 경우에는 貳相(左·右贊成)과 正·亞卿으로²³⁵⁾ 품계에 따라 下批한다.²³⁶⁾

○무릇 재상의 직을 포상으로 추증하는 것은 經筵에서 임금에게 건의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贈諡】 【原】 宗親과 文·武官 實職 정2품 이상인 자에게 시호를 준다. 親功臣은 비록 관직이 낮더라도 역시 시호를 준다.

○奉常寺의 正 이하가 의논해서 定하여 行狀과²³⁷⁾ 함께 이조에 보고한다. [增] 通政大夫 이상의 文望이 있는 顯職者로서 館閣 및 九卿을²³⁸⁾ 역임한 사람이 行狀을 지으면 禮曹에서 이를 예비 심사한 후 奉常寺에 회부하면 봉상시에서는 이를 弘文館으로 移送하고 홍문관에서는 東壁 이하²³⁹⁾ 3인이 회의하여 세 가지의

234) 抄選南臺라 함은 議政이나 吏曹堂上官 등이 선발하여 천거한 學行이 뛰어난 司憲府의 관료이다. 즉 科擧 응시를 기피하는 山林隱德之士가 薦蔭으로 入仕하여 掌令, 持平으로 근무하면서 강직한 기개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35) 正卿은 議政府의 左右參贊과 6曹判書 및 漢城判尹(9卿) 등을 말하고 亞卿은 6曹參判과 漢城府의 左右尹을 말한다.

236) 下批란 관료를 임명할 때, 임금에게 올린 임용후보자 3명(또는 2명 이하)중에서 임용할 사람의 이름에 표식(落點)하는 것을 말한다.

237) 行狀이란 죽은 사람의 生前의 이력과 업적을 기록한 글이다.

238) 館閣은 弘文館과 藝文館을 합칭한 말이며, 九卿은 議政府의 左右參贊과 6曹의 判書 및 漢城府의 判尹을 말한다.

239) 弘文館의 東壁이란 應教(정4품), 副應教(중4품)를 말한다. 즉 『經國大典』 권3, 禮典 「京外官會坐」條에 의하면 정3품 아문인 홍문관의 坐次는 3품이 北, 4품이 東, 5·6품이 西, 7품 이하가 南으로 되어 있는데 홍문관의 동벽이란 바로 4품인

시호 案²⁴⁰을 마련하고 東壁 1인이 또한 봉상시의 正 이하의 관원들과 다시 의논하여 定하면 의정부의 舍人·檢詳 중 1인이 署經하여 行狀과 함께 吏曹에 보고하고 吏曹에서는 입궐하여 임금에게 상신하여 낙점을 받는다.

【續】大提學의 官秩은 정2품이지만 비록 종2품인 대제학에게도 또한 시호의 하사를 허용한다.

○儒賢과 節義로 죽은 사람으로서 그 행적이 현저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릴 것을 허용한다. 儒賢과 節義人의 경우 外에는 格式外로 시호의 하사를 陳請할 수 없다. [補] 封爵과 諡號의 추증을 청원하는 것은 廟堂(의정부)에서 覆奏한 것이 아니면, 贈職은 吏曹에서, 贈諡는 禮曹에서 임금에게 여쭙어 처리한다.

○諡狀이 禮曹에 올라간 때에는 시호를 지어서 올린 사람이 그때까지 無故하면 그 후에 비록 그 사람이 죽거나 죄를 입어도 정례대로 임금에게 올려서 裁可를 받는다.

【給假】 【原】 무릇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휴가를 준다. 宗親은 宗簿寺에서 담당한다. ○覲親(3년에 1차), 掃墳(5년에 1차)²⁴¹, 榮親, 榮墳²⁴², 焚黃²⁴³, 婚嫁 때에는 모두 7일의 휴가를 주며

관료를 의미한다.

240) 세 가지 안(三望)이란 文正, 文肅, 文成 등의 시호 명칭을 세 가지로 만든 초안을 말한다.

241) 歸鄉하여 부모를 뵈러 가는 것을 覲親이라 하는데, 太宗 14년 3월에 覲親給暇之法이 성립되었다(『태종실록』 권27-16 태종 14년 3월 丁亥). 世宗 5년 5월에는 禮曹의 건의에 의하여 文武官 중 多年間 근무한 者로서 親父母가 지방에 있을 때에는 3년에 한번씩 휴가를 받아 覲親하도록 하였고, 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5년에 한번씩 掃墳(분묘를 보살피는 것)하도록 하는 掃墳給暇之法이 성립되었다(『世宗實錄』 卷20-16 世宗 5년 5월 壬辰).

242) 榮親이란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임명된 者가 고향에 돌아가서 잔치를 하는 등으로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으로서 세종 11년 3월의 王命에 의하여(『세종실록』 권43-23, 세종 11년 3월 丁巳) 法制화된 후 먼저 文科榮親法이 시행되었고(『세종실록』 권57-31, 세종 14년 8월 己未), 세종 23년 6월에는 武科榮親法도 만들어졌다(『세종실록』 권93-1, 세종 23년 6월 辛未).

榮墳이란 사망한 부모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는 등으로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처와 처부모의 장례시에는 모두 15일의 휴가를 준다.²⁴⁴⁾ ○무릇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 부모의 병환이면 먼 곳은 70일, 가까운 곳은 50일, 경기는 30일의 휴가를 주고, 지방관은 관찰사가 거리를 계산하여 휴가를 준다.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는 모두 改任하고, 본인 자신의 질병인 경우에는 즉시 改任한다. ○時享²⁴⁵⁾과 式假·服制²⁴⁶⁾ 및 본인의 신병인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관료는 한 아들, 8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관료는 두 아들, 9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관료는 모든 아들이 귀향하여 봉양하도록 한다. ○병조도 같다.

【續】宗親으로서 질병이 있는 경우는 宗簿寺가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10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

기한을 넘기면 중부시에서 檢舉한다.

○宗親으로서 秩이 낮은 관원은 針灸, 沐浴 등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增] 朝臣은 正卿(정2품 이상) 외에는 역시 針灸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서.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 別試 文武科가 자주 있게 되자 世祖 6년 10월에는 1等人(甲科)에게만 榮親·榮墳을 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권22-1, 세조 6년 10월 丙午).

243) 焚黃이란 벼슬이 추증된 부모나 조상의 무덤 앞에서 제사지낸 후 임명장 사본을 불사르는 의식이다. 死者에게 벼슬을 추증할 때에는 그 자손에게 추증임명장을 옮겨 쓴 黃紙를 함께 주는데, 그 자손들이 무덤 앞에 가서 제례 후 임명장 사본인 黃紙를 불사르는 것이다(『세종실록』 권20-4, 세종 5년 4월 壬戌 및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

244) 婚은 남자가 장가간다는 뜻이고 嫁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婚嫁란 本人의 결혼 이외, 子女를 혼인시킬 때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妻父母 장례시에는 15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면서 親父母의 장례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父母喪時에는 벼슬을 그만 두기 때문이다.

245) 時享이란 時祭 또는 時祀라고도 하는데 음력 10월에 지내는 墓祀와 사당이 있는 집에서 음력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 걸쳐서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246) 式假는 규정에 따른 정식 휴가를 의미하고 服制는 父母喪이나 親族의 喪事時에 입는 服의 制度 말하는데, 父母喪 이외 喪에 服을 입는 사람을 服人이라 하여 喪主와 구별한다. 祖父母喪의 경우에도 그 손자는 服人이나 예외로 承重孫일 경우에는 喪主가 되어 3年服을 입는다.

○堂上官이 부모의 病이나 省墓 등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품 실직을 역임한 자가 아니면 堂下官의 예에 의하여 임금의 裁可를 받은 후 賜暇의 傳旨는 本人이 받들지 못하고 곧바로 該曹에²⁴⁷⁾ 내린다.

○당하관은 實職과 軍職을 막론하고 賜暇(受由)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下鄉한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推問한다. ○수령은 부모를 뵈오러 가는 것, 부모의 病, 省墓, 亡妻와 妻父母의 장례, 子女의 成婚 등 여섯 경우 외에는 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과거 응시를 위한 휴가는 허용한다. ○軍政과 田政은 때를 잃으면 폐단이 생기므로 8월부터 12월까지는 부모의 病 외에는 휴가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임금의 특명으로 지방관으로 보임된 守令에게는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邊地守令과 察訪은 모두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魚川察訪도 같다.>

【增】 地方 守令으로 보임된 자에게 老親이 있으면 휴가를 허용한다. ○매년 한번의 부모 뵈옵는 일과 격년으로 한번 하는 성묘를 허용한다.

【補】 부모의 移葬과 祖父母의 歸葬 및 移葬時에는 휴가를 준다. 모두 20일 머물 수 있다. 伯叔父母와 親兄弟 및 外祖父母의 歸葬·移葬時에도 모두 휴가를 준다. 모두 17일 머물 수 있다. ○陵官의 부모가 병환이 있게 되면 휴가를 준다.

【改名】 【原】 무릇 改名하는 경우에는 吏曹에서 임금에 보고하고 藝文館으로 공문을 보내면 예문관에서는 장부에 적고 본인에게 文記(證明書)를 발급한다.

【續】 大小의 官人과 官員이 改名할 경우 그 祖先이나 宗宰(大君 또는 王子君) 혹은 죄인과 명백하게 같은 이름인 자 이외에는 聽許하지 아니한다.

247) 東班官僚인 경우는 吏曹, 西班官僚인 경우는 兵曹를 의미한다.

【相避】 【原】 중앙관과 지방관은 本宗의 大功(9개월 服) 이상의 親族(4寸이내)과 사위, 孫壻, 姊兄과 妹夫, 外家 집안으로 總麻(3개월 服) 이상 親(外4寸이내)과 장인, 장조부, 처남 및 동서들과는 모두 相避한다. 學官²⁴⁸과 軍官은 상피하지 아니한다. 議政府, 義禁府, 吏曹, 兵曹, 刑曹, 都摠府, 漢城府, 司憲府, 五衛將, 兼司僕將, 內禁衛將, 承政院, 掌隸院, 司諫院, 宗簿寺 등의 관료와 部將, 史官은 모두 本宗의 3寸 叔母夫(고모부), 姪女夫(조카사위) 4寸 자형, 4촌 매부와 外家 친족으로 3寸 叔母夫(이모부) 및 妻·妾의 同姓 3寸 叔·姪· 처(첩)고모부· 처(첩) 姪壻 그리고 처(첩) 4촌 처남과는 모두 상피한다. <소송을 처리하는 데도 같다.> ○ 吏房承旨(都承旨)와 吏曹官員 간에 상피할 자가 있으면 그 관직에 임명하지 않고 <당상관은 이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무일수가 만료한 자는 정례대로 승진 또는 전보한다. <兵房承旨(左副承旨)와 兵曹 간에도 같다.> 兵曹와 都摠府의 堂上官·兼司僕將·內禁衛將·五衛將 등은 비록 같은 아문(관청)이 아니라 하여도 모두 통틀어 상피한다.

【續】 양자간 사람은 生家の 친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피한다.

○ 婚姻한 집들도 모두 서로 피한다.

○ 과거 응시자는 試官과 더불어 상피한다. 경국대전의 大小 註의 相避에 관한 法規에 의한다.

○ 司憲府와 司諫院의 兩司官員은 통털어서 상피하지 아니한다. 一司에서 마땅히 피할 자가 하위직이면 당연히 교체하나 상위직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臺官(司憲府의 官員)은 겸직인 臺官과 더불어 또 書狀官은 使臣(正使와 副使)과 더불어 모두 상피한다.

○ 觀察使·節度使와 守令·僉使·萬戶는 모두 서로 번갈

248) 學官은 吏文學官과 譯學學官과 같이 學習人을 지칭하기도 하고(『세종실록』 권 29-28, 세종 7년 9월 丁巳), 또 成均館과 4部學堂의 學官과 같이 敎官을 의미하기도 한다(『세종실록』 권 15-12, 세종 4년 3월 庚申).

아 가며 상피한다. [補] 別將과 權管도 같다.

○경상·전라·충청 등 三南의 水軍節度使는 統制使와 더불어, 京畿 고을의 營將을 겸한 守令은 守禦使 및 摠戎使와 더불어,²⁴⁹⁾ 北評事는 함경도 관찰사와 더불어, 戰船과 舟師가 있는 고을 守令은 水軍節度使와 더불어, 해당 鎭營에 속하는 邑의 守令은 營將과 더불어 모두 상피한다. [增] 統禦使는 三道를 관할하며 상피법은 統制使의 예에 의한다.

[補] 경상우도의 舟師가 있는 고을 외에는 統制使와 더불어 상피하지 아니하며, 충청도와 황해도의 守令의 統禦使에 대한 경우도 같다. ○鎭撫營의 營將을 겸한 守令은 留守와 더불어 상피한다.²⁵⁰⁾

○京畿觀察使는 개성·강화의 兩都留守를 의례히 겸직하며, 留守와 관찰사가 상피관계에 있게 되면 留守를 교체한다. 兩都의 經歷도 또한 관찰사와 더불어 상피한다. [補] 水原·廣州 留守와 判官도 같다.

○아직 부임하지 못한 都事가 守令과 더불어 상피관계에 있으면 都事를 교체한다. 邊將과 아직 부임하지 못한 兵馬虞候 및 水軍虞候가 상피관계에 있으면 虞候를 교체한다.

○書狀官은 비록 銓官(人事담당관)과 상피관계에 있더라도 兼職으로 臺官을 정례대로 임명(付職)하는 것은 무방하다. [增] 京試官과 敬差官도 같다.

○宣惠廳의 提調와 郎廳은 모두 相避한다. 경국대전의 大註에

249) 統制使는 선조 26년(1593), 경상·전라·충청의 3도 수군을 통솔하기 위하여 만든 무관직이고, 守禦使는 인조 4년(1626) 남한산성守備를 위하여 설치한 무관직이며, 摠戎使는 인조 2년(1624)에 수원·남양·장단 등의 군사를 통솔하기 위하여 설치한 무관직이다.

250) 鎭撫營은 숙종 26년(1700)에 강화도에 설치한 군영으로서 정조 3년(1779)에 統禦營에 합쳤으며 同王 13년(1789)에 통어영은 경기 水營으로 還屬되었다. 鎭營將을 겸한 守令은 富平·通津·豐德(후에 仁川)·延安 등의 府使로서 이들은 鎭撫營의 최고사령관인 鎭撫使를 江華留守가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留守와 상피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의한다.

○各司(각관청)에서 의례히 겸직하는 提調는 비록 都提調·提調와 상피관계에 있더라도 교체하지 아니한다. 선혜청 提調는 호조 판서가 의례히 겸직하며 다른 提調와는 相避하지 아니한다. 선혜청 낭청도 의례히 겸하는 提調와는 相避하지 아니한다.

○內三廳²⁵¹⁾과 五衛將은 兵曹가 관할하는 일이 없으므로 判書 외의 다른 당상관과는 상피하지 아니한다. 內禁衛·羽林衛·忠翊衛·忠壯衛의 將도 역시 摠管과 상피하지 아니한다.

○함경도의 南·北關²⁵²⁾과 전라도 및 경상도의 左右道 守令은 절도사와는 南北 또는 左右道가 다르면 상피하지 아니한다. 南關 守令의 北評事에 대한 관계도 같다.

○參外官은 무릇 상피할 자가 있으면 다른 관청으로 바꾸어 임용하되 전의 근무일수를 합산한다. 地方參外官의 상피관계도 같다.

【增】監司·兵使·都事는 守令·察訪과 상피한다. 경국대전의 大小註의 상피법에 의한다. [補] 수령은 상관과 상피관계에 있으면 他道로 교체 임용한다. 營將·邊將도 같다.

○內乘은 學官과 軍官의 예에 의하여 상피하지 아니한다.

○玉堂·春坊·講書院의 관료²⁵³⁾ 吏曹 堂上官 및 郎官과 상피관계에 있으면 임금에게 啓請하여 새로운 임용후보자를 추천한다.

○상피법은 하급자가 당연히 교체되어야 하나 翰林이 春秋館의 관료와 상피관계에 있으면 春秋館의 知事 이하 해당자를 모두 교체하고 領事 또는 監事와 상피관계에

251) 內三廳은 兼司僕, 羽林衛, 內禁衛의 合稱이다.

252) 마천령 이남을 關南, 이북을 關北이라 한다.

253) 玉堂은 弘文館, 春坊은 世子侍講院, 講書院은 世孫講書院을 각각 의미한다. 이들 관청의 관료는 清宦이다.

있으면 翰林을 교체한다.²⁵⁴⁾ 注書도 같다. ○ 翰林과 注書가 상피관계에 있으면 注書를 교체한다.

○ 王世子가 代理聽政할 때에 춘추관의 관직을 겸한 世子侍講院의 관료가 春秋館의 다른 관료와 상피관계에 있으면 翰林의 경우와 같이 한다. 領事 또는 監事와 상피관계에 있으면 모두 세자시강원의 관직을 교체한다.

【補】 本宗의 從祖와 從孫 및 從叔과 從姪간에는 모두 상피한다. 妻의 친정 同姓 3寸 叔母夫(처고모부)와 妻姪婿는 상피하지 아니한다. 高宗 乙丑年(1865)의 定式.

【鄉吏】 【原】 무릇 鄉吏 가운데 文科·武科에 급제한 자와 生員·進士試에 합격한 자, 특별한 軍功을 세워 賜牌를 받은 자²⁵⁵⁾, 三丁중 一子가 雜科에 합격하였거나 書吏에 속하였다가 소정근무일수를 마치고 퇴직(去官)한 경우에는 모두 그 자손의 鄉吏役을 면제한다.²⁵⁶⁾

○ 계속하여 二代가 鄉吏의 役に 복무하였으면 비록 본래 鄉孫이 아니라고 호소하더라도 들어주지 않는다. 二代가 鄉

254) 翰林은 藝文館의 奉教(정7품), 待教(정8품), 檢閱(정9품) 등으로 春秋館의 記事官을 겸하는 史官으로서 비록 下位職이지만(좁은 의미로는 檢閱만 의미) 중요한 관직이므로 翰林과 상피관계에 있는 춘추관의 知事(정2품) 이하가 교체되며, 領事(정1품), 監事(정1품) 등은 議政이 겸직하는 자리이므로 상피관계에 있는 翰林이 교체된다는 것이다. 해설편 참조

255) 賜牌는 공신에게 왕명으로 노비와 토지를 특히 하사한다는 내용의 문서로서 軍功을 세워 공패를 받은 鄉吏는 문무과급제자 및 생원진사시와 잡과합격자인 향리와 함께 향리역을 면제한다는 법제는 조선 태조 원년 9월에 반포되었다(『세종실록』 권47-2, 세종12년 정월 丙午)

256) 3丁1子라 함은 鄉吏에게 비록 丁男(16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인 아들이 3명(십지어 6명) 이상이 되더라도 그 중 1명만 書吏에 입속시키거나 잡과 응시를 허용한다는 것인데(『經國大典註解』 前集 吏典) 그 3丁 중 1子가 잡과에 합격되거나 各司의 書吏에 입속되어 소정의 근무일수를 마치면 그 자손들의 鄉吏役을 면제하여 준다는 法制는 太祖 때의 經濟六典에도 있었다(『世宗實錄』 권7-16, 세종 2년 閏正月 己卯).

吏의役に 복무하였다는 것은 祖父와 父 二代가 계속하여 鄉役을 진 자를 일컫는다

○본읍의 陳省²⁵⁷⁾을 고찰하여 攝戶長·正朝戶長·安逸戶長의 職帖을 발급한다.²⁵⁸⁾

○鄉吏의 役을 싫어하여 도망한 자를 그 동류인이 잡아 신고할 경우 10인 이상이면 본인의 鄉役을 면제하고, 20인 이상이면 그 아들의 鄉役도 함께 면제하며, 9인 이하이면 1인마다 3년의 鄉役을 면제한다. 驛吏도 같다.²⁵⁹⁾

257) 陳省이란 살핀다는 뜻으로(『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戶典) 『太宗實錄』 권 17-15, 태종 9년 3월 壬戌에 「大小人員 등이各司에 바칠 貢物에 관하여 各道 各官의 陳省을 받아 自備先納……」라 하였고, 『세종실록』 권27-24, 세종 7년 2월 辛酉에 「軍士의 父母가 병환이 생기면 반드시 부모가 살고 있는 곳의 守令의 陳省을 받아……」라 하였으며 『中宗實錄』 권23-19, 중종 12년 7월 己亥에 「守令들이 잘 살피지 않고 심지어 水軍의 자식들에게도 또한 陳省을 발급하여……」라 하여 陳省은 守令이 보증, 확인하는 것 또는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8) 戶長은 鄉吏 중 가장 윗자리로서 羅末麗初의 지방지배세력이었던 호족을 포섭하여 고려 태조는 堂大等 大等 등의 鄉職과 鄉品을 주었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鄉品은 1品(三重大匡·重大匡), 2品(大匡·正匡), 3品(大丞·佐丞), 4品(大相·元甫), 5品(正甫), 6品(元尹·佐尹), 7品(正朝·正位), 8品(甫尹), 9品(軍尹·中尹) 등이었는데, 고려 成宗 때 堂大等を 戶長이라 고쳐 부르고 大等を 副戶長이라 하였으며 목종 때 나이 만 70이 되면 安逸房에 소속시켰다. 또 攝은 「兼也, 假也」라 하여 겸직으로 또는 임시로 戶長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攝戶長이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正朝戶長은 고려시대의 鄉品으로 7品이었으나 조선시대에는 설날에 서울에 가서 임금에게 肅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戶長이었다. 安逸戶長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70세가 되어 安逸房에 소속된 戶長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59) 驛吏가 도망하였을 때 世宗 6년 7월에는 일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고, 역리를 주의하여 살피지 못한 관리,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만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25-11, 세종 6년 7월 癸巳). 또 成宗 3년 7월에는 察訪과 驛丞이 잘 살피지 못하여 역리가 많이 도망쳤을 때에는 죄를 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들이 부임후 3개월 내에 역리 3戶 이상이 도망치면 파면시키도록 하였다(『成宗實錄』 권20-5, 성종 3년 7월 丁未).

- 【雜令】 【續】 臺官이 (죄과가 있어) 推問을 받게 되면 兩司가 서로 심문하여야 하며, 꺼리어 피하는 것(引避)을 허용하지 않는다. 監察도 같다. ○兩司의 관원으로서 謝恩肅拜를 지체한 자, 직무를 띠고 江外로 나간 자와 參謁해야 할 때 不參한 경우에도 모두 引避할 수 없으며 한 사건으로 두 번 회피한 자는 용납되지 아니한다.
- 무릇 왕이 牌招하면 大官 외에는 事情·疾病이 있어도 직접 궐 밖에서 招牌를²⁶⁰⁾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자는 2품 이상은 엄히 推問하며, 通政大夫 이하는 義禁府에서 推問한다. 招牌를 반납하고 임금에게 나아가지 (입궐하지) 않은 자는 2품 이상은 推考하고, 通政大夫 이하는 파직한다. 의금부의 숙직원으로서 無斷外出한 경우에는 통정대부는 파직하고 堂下官은 義禁府에서 추문한다.
- 各司의 사무를 변통함에 있어 廟堂을 거치지 않고 임금에게 直啓한 관원은 파직한다.
- 신임 수령은 議政〔增〕現前任, 六卿과 兩局大將〔增〕禁將도 같다²⁶¹⁾, 現任 臺官, 吏曹의 堂上官 및 郎官을 歷訪하여 떠난다는 인사를 해야 한다. 邊地守令은 備邊司 堂上官을 歷訪하여 인사한다. ○〔增〕備邊司 堂上官과 臺閣에서²⁶²⁾ (臺官 또는 諫官으로서) 사사로이 守令과 邊將에게 부임하지 말 것을 분부한 자는 制書有違律로 처벌한다. 〔補〕本道を 관장하는 비변사 堂上官에게도 또한 歷訪하여 인사하며,²⁶³⁾ 무과출신

260) 招牌는 승지가 王命을 받아 신하를 부를 때 쓰는 붉은(朱) 칠한 牌로서, 그 표면에는 「命」字가 쓰여 있고 이면에는 부를 사람의 성명이 쓰여 있다.

261) 6卿이란 각 曹의 判書를 말하고 兩局大將이란 訓練大將과 御營大將을, 禁將이란 禁衛大將을 말한다.

262) 臺閣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합칭이다(『인조실록』 권35-5, 인조 15년 6월 甲寅).

263) 句管堂上이란 각도에서 올라오는 狀啓·文報 등을 각도별로 나누어 관장하는 비변사의 당상관이다(有司堂上).

의 수령은 前任將臣에게도 歷訪하여 인사한다. ○議政府의 당상관에게는 歷訪하여 인사하지 않는다

○수령으로서 年限을 정하여 관직에 취임이 금지된 耆는 該曹가 기한이 만료하기를 기다려 淸單의 이름 아래에 懸註하여 그 사실을 기입한다. [補] 禁錮年限이 지난 수령은 관직취임의 금지가 해제된다. ○수령으로 임지에 토지가 10結, 장성한 노비가 10명 이상이 있는 자는 교체한다. [增] 밭과 노비가 있으나, 吏治와 무관하면 구애받지 않는다.²⁶⁴⁾

○수령으로 식구를 과다히 데리고 부임한 자, 邑婢를 몰래 간음한 자는 모두 적발하여 파직시켜서 내쫓는다.

○殿牌를 汚損 또는 遺失한²⁶⁵⁾ 고을은 그 고을의 邑號를 강등하지 않고,²⁶⁶⁾ 수령도 또한 파직하지 않는다. 鄕校의 位版을 파손한 읍의 수령도 파직하지 않는다. [補] 社稷壇의 위판을 汚損 또는 遺失한 고을의 수령도 같다

○空名帖은 일체 금지한다.²⁶⁷⁾ 비록 큰 흉년으로 救恤上 부득이 허용

264) 吏治는 官治와 같은 것으로 地方官의 行政行爲 일체를 말하는데 不關吏治란 地方官으로 在任하기 이전에 취득한 土地와 같이 守令의 官治와 상관없는 것을 의미한다.

265) 殿牌란 지방관청의 客舍에 定置하여 두는 木牌로서 殿字가 쓰여 있다. 地方出張의 官員이나 守令 등이 拜禮하는 것으로서 이를 汚損·遺失하는 것을 大變이라 한다.

266) 邑號를 강등한다고 함은 예컨대 牧(州)을 郡縣으로, 郡을 縣으로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영조 때 이인좌 난후 한때 청주를 서원현으로 낮춘 것과 같다.

267) 空名帖은 散階와 虛職을 매각하기 위한 任命狀으로서 士庶를 막론하고 돈과 곡식을 일정량 내면, 성명난이 비어 있는 官階·官職의 임명장이다 그 자의 이름을 지방관이 적어 넣어 발급하는 것이다. 흉년이 들 때마다 대량의 空名帖을 나라에서 만들어 각 지방 수령에게 배부하였다.

매관매작문제는 일찍이 중국에서는 『漢書』, 『食貨志』에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렬왕때부터 國用不足, 飢民救濟, 軍糧米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納粟補官制(매관매작제)가 실시되었다(『고려사』, 권80, 志 30, 食貨 3). 조선시대에는 世宗 때 納粟補官制가 논의되었으며 成宗 때 徐居正의 건의에 따라 찬반토론을 거쳐서(『成宗實錄』 卷150, 成宗 11年 9月 己丑) 成宗 16년 8월에 시행되었다(朴容淑, 『조

하더라도, 中樞府의 同知事·僉知事와 察訪 등의 직첩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增】 흉년의 賑恤行政은 一道를 통틀어 진휼하지 않으면 첫째 가는 포상대상자로서 資級을 올려주지 아니한다.

○乞郡은 養家나 生家를 위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허용한다.²⁶⁸⁾ **【補】** 承旨·玉堂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補】 새로 임명된 監司는 議政前現任과 본도를 관장하는 비변사 堂上官을 역방하여 인사한다. 경기감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兩界(함경, 평안)감사 외에는 吏曹 堂上官을 역방하여 인사한다.

선왕조의 納粟補官考, 『부산대학교 논문집』 19집, 1975. 7. p.237)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6년에는 戶曹의 건의에 따라 納粟事目이 공포되어(『선조실록』 권35, 선조26년 2월 辛丑) 제도화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의 숙종 때는 흉년이 겹쳐 매관 매작이 성행하였는데, 숙종 16년의 기근 때에는 嘉善, 通政, 同知, 僉知, 判官, 別坐, 察訪, 主簿, 僉使, 萬戶, 護軍, 司直 등의 官階·官職이 적힌 공명첩 2만장을 8道에 分送하여 매각하도록 하였다(『肅宗實錄』 권22, 숙종16년 11월 丁酉).

비록 『續大典』에서는 이를 금지시켰다고 하여도 惠政要覽에 의하면 정조 즉위년에서 동왕 17년까지 18년간 도합 23,310매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李鍾日, 「조선후기 官階官職의 除拜陞遷考」, 『政策論叢』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6).

268) 乞郡란 집안이 가난한 중앙관료로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守丞되기를 청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원은 모든 중앙관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과 급제자인 清宦(侍從之臣)에 국한되어 있었다.

第 3 部

大典會通 吏典 解說

- 官階・官職 研究 -

- 第 1 章 內・外命婦의 官階・官職 序說 /227
- 第 2 章 清顯要職 任用의 特殊節次 /261
- 第 3 章 銓選法과 銓郎의 通清 /320
- 第 4 章 庶族의 官界進出과 陞班 問題 /363

- 附 錄 朝鮮後期 兩班官僚의 任用・昇進・
轉補 事例分析 /435

第1章 內·外命婦와 官階·官職 序說

1. 內命婦

禮記 典禮편에 의하면 天子(皇帝)는 正后 이외에 後宮으로 夫人·世婦·嬪·妻·妾 등을 둔다고 하였고, 같은 책 昏義편에 后는 6宮을 세워서 3夫人·9嬪·27世婦·81御妻를 둔다고 하였다.¹⁾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고려 太祖의 后妃가 29명이나 되는 등²⁾ 특수한 역사조건 하에서의 例外가 있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國王의 妃嬪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다만 고려 顯宗의 后妃가 13명(宮人 3명 포함) 禡王의 妃가 9명 등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그들 이외의 고려 國王들의 后妃는 많아야 5·6명이고 보통 2·3·4명이었다.³⁾

조선시대의 后妃에 관해서는 太祖 6년 3월 趙浚·鄭道傳 등이 內官數 및 品階와 號稱을 정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賢儀 2인 正從1品, 淑儀 2인 正從2品, 贊德 3인 正從3品, 順成 3인 正從4品(이상 10인), 尙宮 3인 正從5品, 尙官 3인 正從6品, 家令 4인 正從7品, 司給 4인 正從8品, 司飾 4인 正從9品.(이상 18인)」⁴⁾

이와 같은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후의 內官制 제정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즉 太宗 5년 正月에 처음으로 女官制를 두게 되었는데 「賢儀1, 淑儀1, 贊德1, 順德2, 司儀2, 司寢1, 奉衣2, 奉膳2」⁵⁾ 등으로 太祖 때의 건의 내용 보다는 매우 간소화되었다. 太宗 11년 9월에는 禮曹에서 妃嬪의

1) 『文獻通考』(北京, 中華書局, 1984, 影印本) 卷253, p.1993 및 『禮記』 典禮 下·昏義.

2) 『高麗史』 卷88, 列傳 卷1, 后妃1.

3) 『위의 책』 卷88, 89, 列傳 卷1, 2, 后妃1, 2.

4) 『太祖實錄』 卷11-8, 太祖 6年 3月 戊辰.

5) 『太宗實錄』 卷9-2, 太宗 5年 正月 壬子.

制度에 관하여 上書하기를 禮記 典禮편과 昏義편에 있는 天子의 后가 6宮을 세운다는 내용의 記事에⁶⁾ 이어서 「禮記 祭義편에 諸侯의 夫人은 3宮을 세워서 3世婦·5妻·27妾을 둔다는 것이고, 또 春秋 胡傳에서 말하기를 諸侯는 一娶九女라 하니 夫人 1명, 媵 2명, 姪娣 6명을 둔다는 것이다. 諸侯의 夫人은 妃, 世婦를 嬪, 妻를 媵이라 하되 一嬪·二媵을 제도화하자」⁷⁾고 하였다. 또 世宗 10년 3월에는 吏曹에서 內官과 宮官의 제도를 마련하여 國王에게 보고하였는데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內官 : 嬪과 貴人은 정1품이고 王妃를 도와서 婦禮를 논의한다. 昭儀와 淑儀는 각 1인씩이며 정2품이고…… 각 1인 정3품……각1인 정4품……

宮官 : 尙宮은 정5품으로 왕비를 인도하고 司記와 典言을 총괄한다. 司記는 1인이고 정6품으로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납을 관장한다. 典言은 1인이고 정7품……尙儀는 1인이고 정5품으로 禮儀와 起居를 관장하며 司賓과 典贊을 총괄한다. 司賓은 1인이고 정6품……典贊은 1인 정7품……尙服은 1인이고 정5품으로……尙衣는 1인 정6품……典飾은 1인 정7품……尙食은 1인이고 정5품……司膳은 1인이고 정6품……典藥은 1인 정7품……尙寢은 1인 정5품……司設은 1인 정6품……典燈은 1인 정7품……尙功 1인 정5품……司製 1인 정6품……典綵 1인 정7품……宮正 1인 정5품 典正 1인 정7품……」⁹⁾

이것이 후일 經國大典의 內命婦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璿源系譜에 보이는 王子君과 翁主의 母였던 後宮 數를 살펴보면 成宗의 後宮이 9인, 太宗의 후궁이 8인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의 임금의 後宮만을 거느렸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⁰⁾

經國大典 및 大典會通 卷1 吏典 內命婦에 규정된 後宮의 종류는 嬪(정1품)이하 淑媛까지 8종이며, 宮人(女官)은 尙宮(정5품) 이하 모두 27종이다. 그 외 世子의 副室은 良娣(중2품) 이하 昭訓(중5품)까지 4종이고 宮人은 守闈 이하 모두

6) 註 1.

7) 『太宗實錄』 卷22-25, 太宗 11年 9月 丁丑.

8) 內官은 임금의 後宮이고 宮官은 궁중에서 일정한 직무가 있는 女官이다.

9) 『世宗實錄』 卷39-27, 世宗 10年 3月 庚寅.

10) 『璿源系譜』 紀略 上下(保景文化社, 1981, 影印本).

9종이다. 宮人의 인원수에 관하여는 규정되지 않고 있으나 高宗 31年 7月 21日 甲午改革에 따른 宮內府官制에 의하면 侍女 총수는 모두 480인으로 되어 있다(『高宗實錄』中, 卷 32-26).

2. 外命婦

王世子와 大君 및 王子君의 딸, 國王의 乳母 및 宗親의 妻와 文武官의 妻에게 작위를 준다는 것은 지배계층의 부녀자들을 官階體系 속에 포함시켜서 上下의 身分秩序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士大夫 가문의 부녀자일지라도 서얼이나 再嫁女 등 허물이 있는 사람은 封爵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이다. 儒教를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의 사대부 가문에서는 配匹을 매우 존중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밤낮으로 읽던 經書 內容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을 것이다.¹¹⁾

太祖 5年 5월에는 吏曹에서 各品 관료들의 正妻에게 작위를 봉하도록 請하였는데 남편의 벼슬이 1품일 때는 郡夫人, 2품은 縣夫人, 정3품인 成均大司成 이상은 淑人, 3품은 令人, 4품은 恭人, 5품은 宜人, 6품은 安人, 參外官은 孺人 등으로 호칭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官人의 正妻라 할지라도 同居人(室女)이 아니거나 世系에 명백한 허물이 있는 첩에게는 작위를 봉하지 않으며, 또 남편이 죽은 후, 改嫁한 부녀자에게는 봉작을 追奪하자는 것이었다.¹²⁾

太宗 17年 9월 甲子에는 吏曹에서 命婦의 封爵式을 정하였는데 宗室의 경우, 정1품 大匡輔國인 大君의 妻는 三韓國大夫人, 輔國인 府院君의 妻는 某韓國大夫人, 중1품 崇祿인 諸君의 妻는 某韓國夫人, 정2품 正憲인 諸君과 중2품 嘉靖인 諸君의 妻는 二字號 宅主, 정3품 通政과 중3품 中直인 正尹의 妻는 慎人, 정4품 奉正인 副元尹과 중4품 朝散인 副正尹의 妻는 惠人으로 하자는 것이고, 功臣의

11) 『詩經』에서는 夫婦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關雎편을 책의 첫머리에 두었고, 『周易』에서도 乾坤 문제를 제일 먼저 서술하여 配匹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世宗實錄』卷56-31, 세종 14년 6월 壬辰에서도 「世子嬪尊同世子位在貴人之上」이라 하여 王室에서도 夫婦가 대등함을 나타내고 있다.

12) 『太祖實錄』卷9-8, 太宗 5年 5月 丙子.

경우는 정1품 左右議政인 府院君의 妻는 某韓國大夫人, 諸府院君의 妻는 某韓國夫人, 宗1품 및 정·종2품인 諸君의 妻는 二字號 宅主로 하자는 것이며, 文武官의 경우 정·종1품의 妻는 郡夫人을 貞淑夫人으로 고치고 청·종2품의 妻는 縣夫人을 貞夫人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이상은 國王의 裁可를 얻어 그대로 시행되었다.¹³⁾

임금의 딸에 관해서는 世宗 4년 2월 癸卯에 吏曹에서 國王에게 보고하기를 秦始皇 때부터 임금의 자녀를 公子와 公主라 하였는데도 本朝(조선왕조)에서는 前朝(고려)의 인습대로 王女를 모두 宮主라 하였으니 古制에 따라 王女를 公主라 하여 內職의 호칭과 구별하자고 하여 國王이 이에 따랐다.¹⁴⁾ 또 世宗 10년 3월 庚寅에 있어서도 吏曹가 國王에게 말하기를 종래 宮女가 王女의 칭호가 아닌데도 王女를 宮女라 호칭하였고 翁主는 宮人の 칭호가 아닌데도 宮人을 翁主라 호칭하였던 것은 실로 前朝(고려)의 옛 인습을 혁파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였다.¹⁵⁾ 그리고 世宗 12년 4월 辛巳에는 大小官人의 命婦의 봉작에 관하여 詳定所에서 건의하기를 정·종1품의 嫡妻는 某郡夫人, 2품의 妻는 某縣夫人, 3품 이하의 妻는 宗전대로 하자는 것이었다.¹⁶⁾ 또 世宗 13년 10월 戊申에 吏曹에서 國王에게 보고하기를 本朝(조선왕조)는 王女를 公主 또는 翁主라 호칭하고 있으나, 宗室의 딸에 대해서는 유독 칭호가 없어 禮制에 어긋남이 있으니 古制를 상고하여 宗室의 딸을 郡主·縣主라 호칭하되 國王의 近親인 宗실의 딸에 국한하고, 遠親일 때에는 임금의 特旨가 있을 때에만 그러한 호칭을 수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世宗이 이에 따랐다.¹⁷⁾ 世宗 22년 4월에는 종래 宗실의 딸들을 모두 郡主·縣主로 호칭하여 차등을 두지 않았던 것을 漢唐의 古例에 따라 世宗의 嫡出女를 君主라 하고 그의 庶出女와 大君의 正室女를 縣主로 하며 기타 宗室女를 鄉主·亭主로 하자는 吏曹의 건의에 의한 議政府의 上啓를 國王은 받아들이고 있다.¹⁸⁾

13) 『太宗實錄』 卷34-19, 太宗 17年 9月 甲子.

14) 『世宗實錄』 卷15-9, 世宗 4年 2月 癸卯.

15) 『위의 책』 卷39-27, 世宗 10年 3月 庚寅.

16) 『위의 책』 卷48-4, 世宗 12年 4月 辛巳.

17) 『위의 책』 卷54-11, 世宗 13年 10月 戊申.

18) 『위의 책』 卷89-4, 世宗 22年 4月 丙申.

世宗 13년 11월 吏曹에서 國王에게 보고하기를 종실 諸君과 元尹 正尹 및 功臣과 現職·散職인 1품 이하 判料의 正妻에게 작위를 봉하되 모두 남편의 관직에 따라서 하며 그 남편이 죄를 범하여 削職되면 그 처의 爵牒도 몰수되고 남편의 職牒이 還受되면 그 처의 爵牒도 還給되다고 하였다.¹⁹⁾ 世宗 14년 정월에는 人臣의 처를 三韓國大夫人 또는 某韓國大夫人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종실인 命婦 중 정1품의 처를 某府夫人이라 호칭하고 都護府 이상의 官號(邑號)를 썼으며²⁰⁾ 중1품의 처는 某郡夫人을, 정·중2품의 처는 某縣夫人을, 정·중3·4품의 처는 옛날 그대로 愼人·惠人이라 각각 호칭하였다. 그리고 功臣의 命婦 중 정·중 1품의 처는 某郡夫人을 정·중 2품의 처는 某縣夫人을, 각각 호칭하였고 文武官 各品の 처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호칭하도록 하였다.²¹⁾ 乳母를 奉保夫人이라 호칭하게 된 것은 世宗 17년 6월이 처음인데 漢晉唐宋의 古制에 따라 작위를 봉하면서 官秩은 중2품으로 하였다.²²⁾

종래 文武官의 妻에게 작위를 봉하는 경우 남편의 職事에 따라서 시행하였는데 守職인 경우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世宗 26년 10월 吏曹의 보고에 의한 議政府의 건의대로 남편의 散官(官階)에 따라 봉작하도록 하였다.²³⁾

이상 太祖·太宗·世宗 때를 거치면서 外命婦에 관한 法制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그대로 經國大典 편찬 때 成文化되어 그후 약 400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3. 官階·官職과 行守法

조선시대의 관직은 文武에 따라 東班職과 西班職으로 나누었고²⁴⁾ 또 중앙관

19) 『위의 책』 卷54-16, 世宗 13年 11月 壬戌.

20) 王妃의 內外鄉이 郡 이하일 때 府로 승격하여 왕비의 어머니를 某府夫人으로 하였다(『太祖實錄』 卷15, 太祖 7年 11月 戊寅 등).

21) 『世宗實錄』 卷55-6, 世宗 14年 正月 丙子(중친은 『世宗實錄』 卷 77-37, 世宗 19年 6月 庚午).

22) 『위의 책』 卷68-31, 世宗 17年 6月 乙卯.

23) 『위의 책』 卷106-17, 世宗 26年 10月 壬申.

24) 『定宗實錄』 卷4-2, 定宗 2年 4月 辛丑. 門下府의 상소에 의하면 東班職은 判門下, 領三司로부터 9품에 이르기까지 520餘員이고, 西班職은 上·大將軍에서 隊

과 지방관으로 나누어 京官職과 外官職으로 하였다. 京官職은 中央 官衙의 관직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는 首都 漢城府와 舊都 開城府의 관직도 포함되며, 반면 중앙 관아에 소속된 職役일지라도 雜職이나 流品外인 吏胥職(京衙前) 등은 제외된다. 또 관직에는 實職(正職) 이외의 散職과 虛職(影職)이 있었다.²⁵⁾ 影職은 官階·官司·官職 등 實職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상 아무런 직책이나 직무가 없는 명목상의 관직이었던 것이다. 世宗 26년 6월 甲午의 吏曹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上啓에 의하면 官爵은 有德·有才·有功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도 고려말에 관직이 너무 많아서 正官 이외에 또 添設職을 두어¹ 그 定數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世人들이 億萬添設이란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朝鮮 國初에 이르러 비로소 그 폐단을 혁파하였으나 檢校職은 그대로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혁파하고 2품 이상에게만 致仕員을 두었지만 역시 虛職의 授與였으므로 그것을 다시 혁파한지 수십 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근래에 또 影職이 생겨나서 실로 添設職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²⁶⁾ 影職은 조선 후기에는 더욱 많아져서 같은 시기의 같은 관직 한 자리에 5·6명씩 임명(그중 1인만 正職者)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²⁷⁾

조선시대는 唐宋制에 淵源을 둔 고려시대의 관료제도를 승계 하여 관직과는 별도로 官階(散官)體系를 갖고 있었는데 東班官階의 경우 6품 이상(參上官)은 정·종 각품 마다 상하 두개씩의 官階(정1품은 3개)가 있었고 7품 이하(參下官)는 정·종 각품에 각 1개씩의 官階가 있었다. 따라서 7품 이하인 경우에는 加階가 품계를 올린다는 말과 같지만 6품 이상의 경우에는 품계를 올리지 않고 資級만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⁸⁾

長·隊副에 이르기까지 4,170餘員이라 하였다.

25) 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一潮閣, 1981) pp.124~125에서는 官職을 實職과 散職으로 나누고, 實職을 祿官과 無祿官으로 나누었으며 祿官 중에서는 正職과 遞兒職이 있다고 하였다(근거: 『成宗實錄』 卷6, 成宗 元年 6月 丁卯).

26) 『世宗實錄』 卷104-31, 世宗 26年 6月 甲午.

27) 宋斗用, 『韓國法制史考』(進明文化社, 1985) p.409.

28) 대개의 주석서에서는 加階를, 품계를 올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예컨대, 宣務郎에서 宣敎郎으로 올리거나(둘 다 종6품), 奉列大夫에서 奉正大夫로 올리는 것(둘 다 정4품)도 加階 또는 加資이다. 加階는 가끔 加資와 加級 등의 용어와 혼용하기도 한다(『燕山君日記』 卷21-31).

무릇 職銜을 쓸 때에는 官階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官司, 또 그 다음에 관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官階 보다 관직이 낮을 때를 行職이라 하고 높을 때를 守職이라 한다. 行守法은 世宗 24년 7월 乙丑 京官과 地方官 간의 승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世宗의 제의에 따라 만든 것으로서 처음에는 堂上官을 제외 시켰으며²⁹⁾ 行職보다 守職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그후 世祖代를 거치면서 政變에 따른 포상이 자주 있어 많은 사람에게 行職으로 堂上官을 濫授하여 成宗代에 이르면 堂上官 行職者가 말단 관직(下士)을 맡을 정도로 官界가 「養病·養老之地」가 되었다는 것이다.³⁰⁾ 行守法은 처음에는 京官에게만 적용되다가 世宗 25년 7월 庚午부터 지방관에게도 시행되기에 이르렀다.³¹⁾ 行守法에 관한 世宗의 관심은 同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였는데 世宗 12년 윤 12월 庚申의 經筵 석상에서 侍讀官 등에게 職事(官職)와 散官(官階)의 구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檢討官 權探는 漢唐宋의 제도는 散官이 낮고 職事가 높은 경우도 있고 혹은 散官이 높고 職事가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 오직 元나라의 제도는 散官과 職事가 서로 같았다고 하였다. 이때 世宗은 각 관청에서 근무할 때에는 職事에 따라서 하되 朝會나 承蔭·受田 등의 일에는 散官에 따라서 함이 공평하겠다 하고 敎書를 지어서 올릴 것을 명령하였다.³²⁾

官階(散官)와 官職(職事)에 관하여 世宗 12년 윤12월 國王이 吏曹에 내린 傳敎에 의하면 관직(직사)은 재능에 따라 임용할 것이고 散官(散官)은 尊卑의 신분과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관직으로 인하여 散官(散官)을 올려 주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考績(근무성적)에 따라서만 散官(散官)을 올려 주도록 하고 班次·儀章과 자손의 承蔭·科田 등에 있어서도 모두 散官(散官)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³³⁾ 또한 世宗은 보통 관료가 소정 임기(仕日)를 채우면 승진하거나 탄 보직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마땅한 補職處가 없으면 해당 관료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근무성적도 좋으면서 부

29) 『世宗實錄』 卷97-2, 世宗 24年 7月 乙丑.

30) 『成宗實錄』 卷82-10, 成宗 8年 7月 壬午.

『世祖實錄』 卷1-15, 世宗 元年 閏6月 戊午를 비롯하여 『世祖實錄』에서는 文武官 加資 記事가 많다.

31) 『世宗實錄』 卷101-13, 世宗 25年 7月 庚午.

32) 『위의 책』 卷50-46, 世宗 12年 閏12月 庚申.

33) 『世宗實錄』 卷50-46, 世宗 12年 閏12月 壬戌.

득이 無補職인 散官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 대한 대책을 의논하여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黃喜·孟思誠·權軫·許稠·鄭招 등이 보고하기를 京官이 사고 없이 散官으로 되는 것은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어쩔 수가 없다고 하였다.³⁴⁾ 이러한 사유로 散官이 된 자가 다시 관직을 맡는 경우 승진 소요 월수 30개월을 정함에 있어서 새로 관직에 취임한 날부터 起算하였으므로 매우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世宗 26년 10월에 國王은 吏曹와 兵曹에 傳旨하기를 「벼슬자리가 부족하여 잘못 없이 散官이 된 자 및 臺諫이 公罪(言官으로서의 직무 수행 그 자체로 죄가 된 경우)로 散官이 된 자 등은 喪前通計例에³⁵⁾ 의하여 散官이 되기 전의 근무월수를 합산하여 승진 소요 월수를 계산하라고 하였다.³⁶⁾

世宗 26년 6월 吏曹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上啓에 의하면 唐나라에서는 開府儀同三司와 特進인 散官은 비록 職事가 없지만 모두 俸祿을 지급 받고 朝會에도 참여하지만 光祿大夫 이하인 散官은 봉록도 없고 조회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특히 朝議郎(정6품) 이하인 散官은 免役의 대우조차 없다는 것과 우리 나라에서는 軍功이나 老職으로 散官을 제수할 경우에도 관직(직사)까지 주게 되었으나 實職 자리가 부족하여 그것을 주기가 매우 어려워 影職을 주게 되는데, 이는 名實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古制에 따라 有功·有勞者라도 관직(직사)을 주지 않고 官階(散官)만을 제수하되 堂上官일 경우에만 예외로 하자는 것이었다³⁷⁾. 또한 관계(散官)는 定額이 없으므로 濫授될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90세 이상 耆인 老人에게 제수해야 할 경우 이외는 공로가 있어 마땅히 그것을 제수 해야 할 때에만 의정부와 6조의 堂上관이 합의하여 모두 서명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후라야 한다는 것과 通政大夫와 折衝將軍 등 堂上官階(散官)인 경우에는 國王의 특명 없이는 제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³⁸⁾ 또 世宗 26년 7월에는 임금의 사위(부마)에게도 봉군을 하지 않고 별도로 散官을 만들어 주도록 하였다.³⁹⁾

端宗 卽位年 閏9月에는 3품 이하인 宗室과 中外的 文武官 및 內侍府의 判料와

34) 『위의 책』 卷57-2, 世宗 14年 7月 庚申.

35) 『위의 책』 卷82-23, 世宗 20年 9月 丙申.

36) 『위의 책』 卷106-18, 世宗 26年 10月 乙亥.

37) 『위의 책』 卷104-31, 世宗 26年 6月 甲午.

38) 『위의 책』 같은 年月日 및 卷105-9, 世宗 26年 7月 丙寅.

39) 『위의 책』 卷105-1, 世宗 26年 7月 戊申.

학생들에게 散官 1資級을 주거나 더(加)하되, 彰善·通政에서 끝나게 하고 前에 근무한 月數를 합계하여 加資하였으며⁴⁰⁾, 忠義衛·忠順衛·別侍衛·甲士·內直·司樽院·知印과 의정부 및 중추원의 錄事들에게도 모두 散官 1資級을 주었고, 各官司의 吏胥(吏典)들 중 退役者(就閑者)도 원하는-바에 따라 散官職을 제수하였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通政大夫 이상 및 전직 當上官은 自願에 따라 父·兄·子·孫·壻·弟·姪 및 承重子孫·立後人(양자) 중 1인에게 散官 1資級을 제수하였고 成均館·校書館·承文院·訓練院의 權知와 司譯院을 비롯한 專門·技術官署의 전직 官료 및 잡과 합격자·權知와 학생이었던 자, 內需所 書題들에게도(賤口와 工匠을 제외하고는) 모두 散官 1資級을 제수 하였다. 또한 公罪 私罪 등으로 限品을 받도록 된 자는 모두 限品 이내의 散官만을 加資하도록 하였고 80세 이상 老人의 경우에는 良人 뿐만 아니라 賤口에게도 散官을 주도록 하였다.⁴¹⁾

世祖 3年 6月 吏曹의 上啓에 의하면⁴²⁾ 甲戌年 10월 受教와 乙亥年 7월 傳旨에서 各官司의 吏胥(吏典) 중 나이 40세 이상으로 근무일수를 마친 자(仕滿者)는 원하는 바에 따라 散官職을 주어서 퇴관시킨다 하였고,⁴³⁾ 丙子年 5월의 傳旨에서는 各官司의 吏胥 중 나이 40세 이상자로서 근무일수(仕日)의 반을 지난 자와 나이 50세 이상 자(仕日의 多少를 따지지 않음)에게 원하는 바에 따라 散官職을 주어 퇴관하도록⁴⁴⁾ 하였으므로 吏胥輩들이 그 당시에는 事故(事由)가 있어서 散官職을 못 받았다고 冒稱하면서 지금에 와서야 告狀을 내어 散官職을 받고 去官(퇴관)하기를 청원하는 자가 많은데 世宗 18년의 受教에 의하여 긴급

40) 윤국일, 『경국대전연구』 평양 1986. p.251; 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편람』 평양 1989(서울 여강출판사 1992년) p.5에서는 加資를 加階와 구별하여 當上官의 陞階만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實錄 記事에는 當하관의 경우도 加資라 하였다(註 41).

41) 『端宗實錄』 卷3-21, 端宗 卽位年 閏 9月 戊寅.

42) 世宗代에서는 「議政府 據吏曹呈啓」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世祖代에서는 「吏曹啓」라 하여, 太宗代에 만들어졌다가 世宗代에 혁파된 6曹直啓制가 世祖代에 다시 부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三公統六曹」(『明宗實錄』 卷6-15, 明宗 2年 8月 戊申)라 하여 다시 三公中心體制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甲戌年 10월 受教란 端宗 2年 10월 受教를 의미하고 乙亥年 7월 傳旨란 世祖 元年 7월의 傳旨를 말한다.

44) 丙子年 5월의 傳旨란 世祖 2年 5월의 傳旨를 의미한다.

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모두 受理하지 않도록 하되 다만 그 때 父母喪을 당하였던 자에게는 분간하여 散官職을 주어 퇴관하도록 한다고 하였다.⁴⁵⁾

散官職은 職務와 보수가 없는 점에서 影職과 같으나 影職은 외형상으로는 散官(官階) 이외에 職事(관직)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관직이 虛職인데 비해서, 散官職은 허직인 관직조차도 없이 관계만을 주는 경우이다.⁴⁶⁾ 世宗 26년 7월 丁巳에 임금이 吏曹와 兵曹에 내린 傳旨에 의하면 근무일수를 마치고 퇴직한 각 관청의 吏胥들에게 모두 散官을 준다고 하였는데 그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端宗 卽位年에 널리 士庶人들에게 散官職을 주었고 또 世祖 2년 7월에도 鷹師에게 別侍衛와 甲士例에 따라 散官職을 주어 퇴관시켰으며 成宗 9年 5월에도 각 관청의 관원 이외 書吏·管領·鷹師·伴尙·人·矢人·樂生들에게 널리 散官을 주었음이 나타나 있다.⁴⁷⁾ 성종 원년 6월에 吏曹에서 임금에게 건의한 바에 의하면 影職과 散官職 伴尙·遞兒職 등을 받은 자를 正職으로 임용할 때에는 承蔭取才例에 따라 才能을 시험하여 임명하되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미 提檢·別坐·別提·別檢 등 無祿官(무보수인 관료)으로 있는 자가 근무일수를 채우고 승진 또는 전보될 때에는 역시 위의 예에 따라 시험을 보여서 합격자는 東班職에 임명하고 불합격자는 西班職(무반)으로 임용한다는 것이었다. 國王도 이에 따랐다.

端宗 2년 12월에 吏曹에서 啓한 바에 의하면 나이 70세 이상 된 자 모두에게 散官職을 주는 것은 노인을 우대하는 지극한 施惠이지만 顯官을 지낸 자에게도 퇴직후 散官만 갖게 된다면 雜職과 구별됨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전직인 직함과 함께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것인데 國王은 이에 따랐다.⁴⁸⁾ 또 세조 8년 7월 병조에서 啓한 바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에 살고 있는 3품 이하의 閑散人과 朝士 및 有蔭子弟 중 科田이 있는 자는 奉忠衛라 하고 科田이 없는 자는 拱宸衛

45) 『世祖實錄』卷8-7, 世祖 3年 6月 乙巳.

46) 李成茂, 『앞의 책』 pp.151~153.

47) 『世宗實錄』卷105-5, 世宗 26年 7月 丁巳.

『世祖實錄』卷4-25, 世祖 2年 7月 辛未 및 註 38.

『成宗實錄』卷92-23, 成宗 9年 5月 庚寅.

48) 『端宗實錄』卷12-25, 端宗 2年 12月 乙未.

라 하여 受田牌의 例에 따라 作統하여 매 1番에 1統이 入直하도록 하고 서울과 지방의 正兵과 別軍도 모두 5부에 소속시켜서 軍士例에 따라 12개월을 쉬고 2개월을 番上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임금이 이에 따랐다.49)

이와 같이 散官職이 濫授되어 士庶身分이 뒤섞일 우려가 있게 되자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방비책을 강구하였으나, 그후 官階·官職만으로는 士庶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堂上官階者가 많아져서 그 가치가 매우 떨어졌다. 그러나 堂上인 官職 자리는 매우 적어서 堂上實職에 취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50) 資窮(정3품 通訓大夫)인 자 중에서 선택된 자만이 準職(承文院 判校, 奉常寺 正, 通禮院 左通禮 등)에 취임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準職을 거쳐야만 당상 관직자가 될 수 있었다. 또한 官階(散官)만 올리는 경우도 당상 官階가 너무 濫授되는 폐단을 막고자 百官을 加資할 때에 資窮者인 경우는 본인 대신 부자 형제나 叔姪婿孫 중의 한 사람에게 加資(代加)할 수 있도록 하였다.51) 代加制度는 고려시대부터 있기는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世祖·成宗年間 이후부터 성행하게 되었다.52) 代加制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高秩者의 量産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年少者들이 여러 연줄로 代加를 받아서 高秩者가 되기도 하였다.53) 또 老人을 존경하는 유교적인 氣風 때문에 70세 이상의 前職 관료에 대해서는 堂上階로의 加資를 거둬하였고 影職·檢職인 당상직이 濫授되어 결국 당상관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4. 封君과 功臣

封君은 太祖 즉위 초에 왕자와 임금의 사위, 조카에게 君을 봉하였는데54) 太

49) 『世祖實錄』 卷28-35, 世祖 8年 7月 壬寅.

50) 『成宗實錄』 卷82, 成宗 8年 7月 壬午에서 2품 이상 고위 관료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있는데, 혹은 당상관 수가 300이나 된다고 하였고, 혹은 당상관이 행직으로 副司果(종6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혹은 1품은 判中樞, 2품은 知中樞秋나 同知中樞로 하자고 하였다.

51) 『世祖實錄』 卷33-30, 世祖 10年 6月 乙巳.

52) 李成茂, 『앞의 책』 pp.155~156.

53) 『世祖實錄』 卷46-44, 世祖 14年 6月 戊申.

54) 『太祖實錄』 卷1-51, 太祖 元年 8月 丙辰.

祖 7년 9월 癸酉에는 君號 대신 親王子를 公으로, 諸宗親을 侯로, 정1품을 伯으로 각각 改封하였다가⁵⁵⁾ 太宗 원년 1월 乙酉에는 公侯伯의 칭호를 혁파하고 公을 府院大君으로, 侯를 君으로, 伯을 府院君 또는 君으로, 다시 改封하였다.⁵⁶⁾

功臣의 칭호는 나라를 開創하거나 政變 또는 內憂外患이 있을 때에 勳功이 있는 者에게 수여하는 것이며, 조선 국초에는 開國・定社・佐命 등 3功臣이 있었고⁵⁷⁾ 世祖 때에는 靖難・佐翼功臣이 추가되어 5功臣이라 하였다.⁵⁸⁾ 5공신의 嫡長子孫 중 官階가 2품 이상에 이른 자에게는 君號를 승계 하여 封하였다.⁵⁹⁾ 成宗 때에는 다시 敵愾・翊戴・佐理功臣이 추가되어 8공신이 되었고⁶⁰⁾ 中宗 때의 靖國功臣, 宣祖 때의 光國功臣, 平難功臣, 扈聖功臣, 宣武功臣, 淸難功臣, 仁祖 때의 靖社功臣, 振武功臣, 昭武功臣, 寧社功臣, 寧國功臣, 肅宗 때의 保社功臣, 英祖 때의 奮武功臣 등이 추가되어 모두 21종의 正功臣 총수는 705명으로, 등수별로는 1등功臣이 100명, 2등功臣이 196명, 3등功臣이 293명, 4등功臣이 116명이었다. 조선시대 正功臣의 시대별 종류별 등수별 인원현황은 <표 3>과 같다.⁶¹⁾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正功臣(元功臣)은 한 시기에 약간명 혹은 몇십 명에 불과하였고 백명이 넘는 경우가 중종반정 때의 靖國功臣 뿐이었다. 그러나 중종 14년 10월 靖國功臣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이 趙光祖 등에 의하여 削勳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 僞勳削除 사건으로 趙光祖 등이 도리어 몰락하였다.⁶²⁾ 여하간 조선시대에 있어서 正功臣이 되면 封君되고 또 堂上관으로 승진할 뿐만 아니라 토지와 노비를 받아 상속시킴으로써 그 자손에게까지 큰 혜택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⁶³⁾ 正功臣 보다는 공훈이 적은 準功臣으로서 原從功臣

55) 『위의 책』 卷15-1, 太祖 7年 9月 癸酉.

56) 『太宗實錄』 卷1-11, 太宗 元年 正月 乙酉.

57) 『端宗實錄』 卷8-18, 端宗 元年 10月 己亥.

58) 『世祖實錄』 卷6-29, 世祖 3年 2月 甲寅.

59) 위와 같음.

60) 『成宗實錄』 卷9-36, 成宗 2年 3月 辛丑.

61) 『典故大方』(漢陽書院, 1924) 卷2, pp.46~63, 功臣錄.

62) 『世祖實錄』 卷40-11, 世祖 12年 11月 庚午.

『中宗實錄』 卷1-66, 中宗 元年 12月 乙卯.

『위의 책』 卷37, 中宗 14年 10月 乙酉 및 同王 同年 11月 辛丑과 同年 12月 丙子.

〈표 3〉

순번	시대	功臣名	1등	2등	3등	4등	계	비고
1	太祖	開國功臣	15명	9명	15명	-	39명	
2	定宗	定社 "	8	10			18	王子亂(一次)
3	太宗	佐命 "	4	3	9	22	38	" (二次)
4	端宗	靖難 "	12	8	17		37	世祖 誅大臣
5	世祖	佐翼 "	7	12	22		41	端宗 退任
6	"	敵愾 "	7	22	12		41	李施愛 亂
7	成宗	翊載 "	4	9	24		37	誅 南怡, 康純 등
8	"	佐理 "	9	12	18	36	75	成宗 補佐
9	中宗	靖國 "	5	13	31	58	107	中宗 反正
10	宣祖	光國 "	3	7	9		19	宗系 辨誣
11	"	平難 "	3	12	7		22	鄭汝立 亂
12	"	扈聖 "	2	31	52		85	義州 扈從
13	"	宣武 "	3	5	10		18	壬辰倭亂
14	"	清難 "	1	2	2		5	李夢鶴 亂
15	仁祖	靖社 "	7	15	27		49	仁祖 反正
16	"	振武 "	3	9	20		32	李适 亂
17	"	昭武 "	1	2	3		6	李仁居 亂
18	"	寧社 "	1	5	5		11	柳孝立, 鄭沁 등 謀叛
19	"	寧國 "	2	2	1		5	沈器遠 등 謀叛
20	肅宗	保社 "	2	1	2		5	許堅 謀叛
21	英祖	奮武 "	1	7	7		15	李麟佐 亂
계			100	196	293	116	705	

63) 『宣祖實錄』卷186-1-3 宣祖 38年 4月 丙午, 己酉.

이 있었는데 공로에 따라 1등에서 3등까지 구분하였고 보통 몇 천명, 많으면 근만 명까지 策勳하였다.⁶⁴⁾ 原從功臣은 원래 조선전기 國王의 즉위전 潛邸時에 侍從하던 者에게 주어진 것이 그 연원이기는 하나⁶⁵⁾ 正功臣을 策勳할 때마다 그 수십배 내지 수백 배의 인원을 原從功臣으로 책정하고 加資하였는데 中宗 元年 9월과 11월, 司諫院의 上啓와 臺諫에서 합동으로 上啓한 바에 의하면 별로 공훈이 없으면서 父子 친구 친척 등의 연유로 외람되이 原從功臣이 된 자가 많아서 靖國原從功臣 1등만도 400여명이며 그 중 堂上官階를 받은 자가 140여명(또는 100여명)이라 하였다.⁶⁶⁾ 原從功臣은 封君만 되지 않을 뿐이지 토지와 노비까지 받았던 것이다.⁶⁷⁾ 그러나 단순히 功臣이라 하면 原從功臣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 遞兒職

관직에는 祿官과 無祿官이 있었고 祿官은 다시 正職과 遞兒職으로 나눌 수 있다. 체아직은 일정한 직무가 있지만 그 직무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正職 퇴임후 대기하는 休職 중인 관료 및 未仕의 官人 등 직무 없는 자에게 특히 녹봉을 주기 위한 관직이다.⁶⁸⁾ 체아직은 다시 東班 체아직과 西班 체아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東班 체아직 105자리는 모두 專門技術官僚職의 체아직이며⁶⁹⁾ 西班 체아직은 주로 문무 양반 관료들의 체아직이기는 하나 전문·

64) 筆者가 갖고 있는 몇 종의 原從功臣錄券에 의하면 宣武原從功臣과 奮武原從功臣은 각각 8000~9000명씩이고 扈聖原從功臣과 靖社原從功臣은 각각 2000명~2500명씩이다(『宣祖實錄』 卷186-3, 宣祖 38年 4月 己酉에서는 扈聖原從功臣이 2475인이라 했다).

65) 『世宗實錄』 卷102-37, 世宗 25年 12월 甲午 및 『中宗實錄』 卷1-48, 中宗 元年 11월 庚辰.

66) 『中宗實錄』 卷1-48, 中宗 元年 11月 辛巳(또는 『中宗實錄』 卷1-22, 中宗 元年 9月 壬寅).

67) 註 64, 65.

68) 이와 같이 직무없는 자에게 특히 녹봉을 주기 위한 체아직을 軍銜 체아직이라 한다.

69) 李成茂, 『앞의 책』, p.37 李載樂, 『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一潮閣, 1993) p.35에서는 東班 遞兒職을 158자리하였다.

기술직 일부와 非兩班인 軍役(弓人·矢人·隊卒)복무자들도 임용하는 관직이었다.⁷⁰⁾ 원래 그들에게 임용하는 5衛의 관직은 武官職이었지만 조선전기부터 실제상 그 자리에 모두 武官을 임명할 필요가 없게 되어 3005자리를⁷¹⁾ 서반 체아직으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휴직중인 文武 양반관료들에게 체아직을 임명하는 事例를 살펴보면 종1품의 관료들에게는 上護軍(정3품), 정2품은 大護軍(종3품), 종2품은 護軍(정4품), 정3품 당상관에게는 副護軍(종4품) 등의 체아직을 주었고, 堂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三司와 春坊을 거친 자 등에게는 司直(정5품), 司果(정6품) 등의 체아직을 주었으며, 7품 이하의 淸要職을 거친 자들에게는 司正(정7품), 司猛(정8품), 司勇(정9품) 등의 체아직을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상 당상관이 司直·司果·司正·司猛 등 체아직을 받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⁷²⁾

經國大典과 續大典 및 大典會通의 兵典 5衛의 관직 중 체아직으로 활용된 上護軍 이하의 관직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經國大典 兵典 5衛의 체아직 3,211자리가 감소하여 續大典에서는 1496자리, 大典會通에서는 1,387자리가 되었다. 또 原祿 체아직은 正3품에서 從9품까지의 正從 各品階에 고루 散在하여 있으나 功臣·禁軍 기타 軍官職·技術職 등의 체아직은 거의 從品階에만 있었다. 그 다음 위 표와는 별도로 雜職 체아도 있어 東班 雜職 체아와 西班 잡직 체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144자리, 후자는 1,607자리로 도합 1,751자리라 한다.⁷³⁾ 中樞院의 관직도 퇴임한 의정(領事·判事에 임명)이나 현직 堂上官 이외에도 醫官·譯官 등의 벼슬자리 또는 老職(知事·同知事·僉知事로 임명)으로 활용하였다.⁷⁴⁾

70) 李成茂, 『앞의 책』, p.104에 의하면 西班 체아직 총수 3005자리 중, 양반 특수군 체아직이 2666자리라 하였다.

71) 李成茂, 『위의 책』, p.130에서는 양반 자제들의 특수병종 체아직은 2807자리라고 하였다.

72) 李載樂, 『앞의 책』 pp.37~44 및 『正祖實錄』, 卷43-73 正祖 19년 12월 己亥.

73) 李載樂, 『앞의 책』 p.35.

74) 『銓注纂要』 卷1, 中樞府, 續·增.

〈丑 4〉

구분 관직	品 階	經國 大典 總數	續 大典 總數	大 典 會 通							
				總 數	原祿 通兒	親功臣 功臣嫡長 承襲君	宣傳官 南虞候 統制中軍	禁軍(別)將 鷹衛別將 五衛將	5軍營 將官軍兵 捕盜軍官 守門將	未挈家 守令 製造官 기타관원	寫字官 吏文學官 譯官 기타 기술관
上護軍	正3品	9	8	8	2		1	3		1	1
大護軍	從3品	14	12	12	2	7	2				1
護 軍	正4品	12	4	4	4						
副護軍	從4品	54	76	69		8	2	23	31		5
司 直	正5品	14	11	11	11						
副司直	從5品	123	100	102	17	10		30	27	3	15
司 果	正6品	15	6	21	21						
副司果	從6品	176	177	183	35	16		83	33	3	13
司 正	正7品	5	20	20	20						
副司正	從7品	309	249	250	33	7	12	118	23	46	11
司 猛	正8品	16	15	15	15						
副司猛	從8品	483	213	208	27	3	12	140		5	21
司 勇	正9品	42	24	24	24						
副司勇	從9品	1939	581	460	105	20	19	224	29	25	38
計		3211	1496	1387	316	71	48	621	143	83	105

無祿官은 義禁府의 堂上官 및 戶曹·刑曹·校書館·司饗院·尙衣院·軍器寺·禮賓寺·修城禁火司·典設司·典艦司·典涓司·內需司·昭格署·掌苑署·司圃署·造紙署·活人署·瓦署·歸厚署 등 대소 관아의 提舉·提檢·別坐·別提·別檢 등, 당하관으로서 봉록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경국대전에서는 105자리였으나⁷⁵⁾ 그후 續大典에서 많이 감소되었고 大典會通에서는 그 수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20여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無祿官도 양반 實職에 속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일수(360일)를 채우면 승진하거나 타관직으로 옮겨 갈 수가 있었다.⁷⁶⁾ 그러나 실제상 보통 參上祿官은 3-4年만 근무하면 1資級 승진이 가능하였으나 無祿官은 6-7年을 근무하여도 승진할 수가 없었다.⁷⁷⁾

6. 久任官

관직에는 임기가 있어서 正職인 祿官의 경우 參上官은 900일, 參下官은 45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他官職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⁷⁸⁾ 관직에 따라서는 多年間 근무함으로써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所期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가 있으므로 世宗 13年 7月 右議政 孟思誠 등의 건의에 따라 京官職에도 久任法을 만들도록 하였다.⁷⁹⁾ 久任法 시행 이후 무능한 자가 오랫동안 한 관직에 근무하여 봉급을 허비하는 수도 있게 됨으로 근무 성적 평정을 철저히 하여 그러한 자들을 罷黜하도록 하였다.⁸⁰⁾ 久任官의 數는 世宗 때 이미 정한 바 있었으나 濫設되는 경향이 있어서 世宗 28年 5月 減額을 시도한 바 있었다.⁸¹⁾ 그러나 世祖 6年 8月 이조의 보고에 의하면 奉常寺·內資寺·內贍寺·軍資監·濟用監 등 官司의 관원 전부(49인)와 仁壽府·仁順府·司瞻

75) 李成茂, 『앞의 책』 p.131(95석 이외 의금부 당하관 10석이 따로 있다).

76) 李成茂, 『앞의 책』 p.132.

77) 『成宗實錄』 卷131-9 成宗 12年 7月 辛丑.

78)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79) 『世宗實錄』 卷53-1, 世宗 13年 7月 乙丑(지방관은 이보다 앞서 久任法이 시행되었다).

80) 『위의 책』 卷77-42, 世宗 19年 6月 辛巳.

81) 『世宗實錄』 卷112-21, 世宗 28年 5月 壬午.

寺·禮賓寺·廣興倉·豐儲倉·義盈庫·長興庫·司膳署·軍器監·典牲署·宗廟署·司僕寺·司宰監·繕工監·刑曹·尙瑞司·藝文館·樂學都監·上林院·司畜所·造紙所·沈藏庫·尙衣院·昭格殿 등 官司의 일정한 관직 그리고 刑曹의 正郎·佐郎 각 1인과 藝文館의 直提學·直館 각 1인 및 應教 1인, 奉教·待教 각 1인 檢閱 4인…… 등 모두 25개 官司 60인, 도합 30개 官司, 109인이 된다.⁸²⁾ 이것이 成宗 8年 6月 대폭 개정되어 22개 官司, 44인으로 久任官이 半減되었으며⁸³⁾ 다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經國大典으로 成文化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久任官은 25개 官司 48인이다.⁸⁴⁾

久任官은 비록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관료들을 無期限으로 특정 보직에 얽매어 둘 수는 없었으므로 근속기간을 일반 관료들보다는 길게 잡아 3年으로 하였다.⁸⁵⁾ 그러나 久任官들이 所定の 근무기간만 채우면 모두 승진하여 자리를 옮겨 가버림으로써 所期の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거나, 혹은 승진 대상 인원이 많고 자리는 적어 유능한 者와 무능한 者들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정제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 成宗 9年 3月に 國王은 이조와 병조에 지시하여 法上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자 以外の 모든 구임관원들은 승진 소요 연수가 차더라도 승진시키지 말 것과 특이한 재능이 있어 발탁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者에 대해서는 國王에게 미리 보고하여 승진 후보자로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⁸⁶⁾ 한편 久任官이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직에 취임할 때에는 임기에 구애받지 않았다.⁸⁷⁾

7. 賊吏 및 改嫁女子孫과 官職

(1) 賊吏와 淫女의 자손을 東班職에 임용하지 말 것을 世宗 18年 6月 大司憲

82) 『世祖實錄』 卷21-17, 世祖 6年 8月 己未.

83) 『成宗實錄』 卷81-9, 成宗 8年 6月 辛亥.

84)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85) 『文宗實錄』 卷8-7, 文宗 元年 6月 乙亥.

86) 『成宗實錄』 卷90-4, 成宗 9年 3月 壬申.

87)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李叔時 등이 건의하였는데 이는 士風의 貪汚와 女人의 不貞을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李叔時 등의 주장에 의하면 經濟六典의 續典에 士大夫의 처가 세 번 시집을 가면 忤女案에 기록하여 後人을 경계하자는 것인데 담당 官司가 없어 아직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법문이 虛文化되었다는 것이다.⁸⁸⁾ 여기 대하여 世宗은 여러 大臣이 의논하여 시행하라고 하였고, 議政府에서는 토의를 거쳐서 臧吏와 淫女의 자손을 東班職에 임용하지 말 것과 士大夫의 妻가 세 번 시집가면 司憲府에서 成案하여 이름을 기록해서 後人들을 경계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臧吏의 子孫 등을 영구히 모든 관직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親子·親孫에 한하여 東班職에만 임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들도 西班職에는 임용되도록 하며, 또 세 번 시집간 여자의 자손도 臺省이나 政曹⁸⁹⁾ 이외의 東西班職(文武官職)에는 임용하도록 하되 淫行罪를 犯하여 別받은 者의 자손은 東班職에 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⁰⁾ 失行婦女는 淫行婦女보다는 개념상의 범주가 넓었다. 즉 世宗 13年 6月 大司憲 申概 등의 上疏에 의하면 經濟六典禮典에 양반 부녀가 부모와 親兄弟姊妹, 親伯父, 叔父, 姑母, 親外三寸, 姨母 이외의 者를 찾아 가 볼 수(往見) 없으며 위반자는 失行婦女로 論한다고 하였는데, 사대부의 妻가 귀신에 빠져서 산과 들에서 제사지내고 外宿하는 등으로 失德하고 있으니 앞으로 京鄕의 名山의 神祠에 婦女가 妄래하는 것을 嚴禁할 것과 違反者를 經濟六典의 失行婦女로 논죄하자고 하였고, 世宗은 그러한 者를 家長과 함께 논죄하고 神祠 所在地 관청이 그것을 금하는데 마음 쓰지 않으면 죄를 준다고 하였다.⁹¹⁾

(2) 臧吏子孫의 任用制限에 관한 문제는 世宗 14年 5月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黃喜, 孟思誠 등이 비록 臧吏子孫일지라도 진실로 현명하다면 임용할 것이지 어찌하여 政曹와 臺諫은 안되고 반드시 軍職에만 임용해야 하는가 라고 하여 制限論에 반대하였으므로 시행되지 아니하였다.⁹²⁾ 그러나 世宗 18年 6月 司憲府 持平 洪深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고⁹³⁾ 이어서 大司憲 李叔時 등이 臧吏子孫

88) 『世宗實錄』 卷72-35, 世宗 18年 6月 壬子.

89) 政曹란 吏曹와 兵曹 등 文武官의 人事 담당 官司를 말한다.

90) 『世宗實錄』 卷72-37, 世宗 18年 6月 甲子.

91) 『世宗實錄』 卷52-42, 世宗 13年 6月 丁巳.

92) 『위의 책』 卷56-24, 世宗 14年 5月 辛未.

의 東班職 임용을 반대하였으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議政府에서 의논하여 臺省과 政曹에만 임용을 못하게 하고 그 이외의 東班·西班職 어디에나 임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⁹⁴⁾ 또한 臧吏子孫들의 科擧應試도 허용하였다.⁹⁵⁾ 世祖는 즉위후 臧吏子孫을 政曹에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를 下問하였으나 鄭昌孫들이 반대하여 世宗 때의 任用制限法이 여전히 유효하였고⁹⁶⁾ 成宗 때에는 臧吏의 이름을 장부에 기록하여 반드시 그 자손을 禁錮하여야 한다는 司憲府 掌令 朴衡文의 건의가 있었다.⁹⁷⁾ 그리하여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條에서는 臧吏의 아들과 손자는 議政府·六曹·漢城府·司憲府·開城府·承政院·掌隸院·司諫院·經筵·世子侍講院·春秋館·知製教·宗簿寺·觀察使·都事·守令職 등에 임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世宗 때의 임용제한 대상 관직보다 훨씬 넓게 제한하도록 하였다.⁹⁸⁾ 또한 經國大典 禮典 諸科條에서는 장리의 아들은 文武科와 生員進士試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리의 자손들이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에 많이 응시하였으므로 成宗 17年 7月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이를 문제삼아 國王에게 거듭 상소하여 이들의 응시를 막았다.¹⁰⁰⁾

그런데 장리의 아들이지만 他人의 양자가 되었을 때에도 禁錮할 것인가에 관하여 中宗 7年 正月에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國王은 成希顔 등 多數人의 절충 의견에 따라 議政府·承政院·臺省·政曹·經筵官·書筵官·弘文館·藝文館·春秋館·知製教 등의 관직 이외에는 어떠한 관직이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¹⁾ 따라서 戶·禮·刑·工曹와 漢城府·開城府·掌隸院·宗簿寺·觀察使·都事·守令 등의 관직에도 임용될 수 있게 하여 出系하지 않은 親子보다는 임용될 수 있는 관직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는 臧吏子孫 禁錮 원칙과 繼後尊重原則간의 조화를 도모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리의 사위에 관해서는 經國大典에 아무런 제

93) 『위의 책』 卷72-22, 世宗 18年 6月 戊戌.

94) 註 90.

95) 『위의 책』 卷115-9, 世宗 29年 2月 辛丑.

96) 『世祖實錄』 卷1-42, 世祖 元年 7月 壬寅.

97) 『成宗實錄』 卷147-7, 成宗 13年 10月 乙酉.

98)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99) 『위의 책』 卷3, 禮典, 諸科.

100) 『成宗實錄』 卷193-4, 成宗 17年 7月 辛酉, 壬戌 및 『위의 책』 卷193-7, 成宗 17年 7月 乙丑.

101) 『中宗實錄』 卷15-1, 中宗 7年 正月 戊申.

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中宗 4年 9月 義城縣令으로 賊吏의 사위인 金錫弼을 임용하고자 할 때 臺諫에서 署經을 거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였다. 署經拒否의 근거는 大典續錄에 守令 들을 임용하자면 妻4祖까지 조사하도록 되었으므로 妻父가 賊吏인 이상 그 임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²⁾ 이 문제를 두고 그 다음 달까지 大臣을 비롯한 高位官僚간에 토의를 하였는데 결국 國王은 金壽童·柳順汀·成希顏·李蓀·尹金孫·辛允武·李埜·柳洵·盧公弼·金應箕·鄭光弼 등 다수 의견에 따라서 위 金錫弼을 守令으로 임용하도록 하였다.¹⁰³⁾ 동시에 賊吏의 사위를 守令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이상 臺省과 政曹 및 春秋館에도 임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 점도 6曹 判書 이상 관료가 함께 의논하라고 하였다.¹⁰⁴⁾ 그리하여 賊吏의 사위 중에서는 政曹의 堂上官(兵曹 參議)까지 오른 자가 있어서 臺諫에서 다시금 문제를 삼았다. 여러 대신들간에 논의를 하게 한 후 國王은 金壽童의 의견에 따라 文武官의 人事部處인 政曹(吏·兵曹)에서는 賊吏의 사위를 임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¹⁰⁵⁾ 그러나 中宗 35年 3月 領議政 尹殷輔 등은 吏曹의 건의에 따라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經國大典에서는 賊吏의 아들과 손자만을 議政府 이하 각 관청의 各品 顯職에 임용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曾孫이나 사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더구나 女子는 출가하면 本宗을 떠나므로 그 父가 비록 亂逆罪를 범하더라도 緣坐되지 않는데 하물며 賊罪(收賂罪)¹⁰⁶⁾에 있어서라, 라 하였다. 또한 大典續錄이 반포된 지 얼마 안되어 賊吏의 사위였던 成夢宣을 寧邊判官으로 임명할 때 盧思愼·鄭文炯·韓致亨·尹弼商·魚世謙 등이 모두 續錄에서 관원 임용시, 妻4祖를 고찰한다는 것은 혹시 그 妻가 庶孽이거나 族派不明者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이며, 妻父의 賊罪가 사위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立法의 本意가 아니고, 大典後續錄에서 賊吏의 사위가 의정부 등 顯職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한 條文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고쳐야

102) 『中宗實錄』 卷9-22, 中宗 4年 9月 庚子.

103) 『위의 책』 卷9-22, 中宗 4年 閏9月 甲子.

多數意見의 論據는 大典續錄의 規定이 經國大典 本文의 뜻과 다르고 賊吏의 曾孫과 外孫도 하등의 官職 任用制限을 받지 않는데 그의 사위가 官職 임용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04) 『위의 책』 卷9-37, 中宗 4年 閏9月 乙亥.

105) 『위의 책』 卷13-39, 中宗 6年 4月 甲申, 乙酉, 丁亥.

106) 『經國大典 註解』 後集 上 吏典에 「吏受賂曰賊」이라 하였다.

한다고 하였다.¹⁰⁷⁾ 臧吏의 사위를 顯職에 임용하는 문제는 몇 달 앞선 中宗 34年 12월에 李芑를 兵曹判書로 임용할 때에도 그의 妻父가 臧吏였으므로 문제가 되었는데 柳灌 등이 말하기를 大典後續錄에서 臧吏의 사위를 議政府와 吏·兵曹 등의 官職에 임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夫妻는 同體이므로 妻의 4祖도 考察하여야 하나 政務職인 卿宰(兵判)의 경우에는 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¹⁰⁸⁾ 영의정 尹殷輔 등과 禮曹에서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으나, 司憲府에서는 遵法을 주장하여 李芑의 兵曹判書 任用을 반대하였다.¹⁰⁹⁾ 그리하여三公이 다시 논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後續錄의 改正 문제를 널리 의논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건의하여¹¹⁰⁾ 위와 같이 中宗 35年 3月 다수의 견에 따라 後續錄의 해당 條文을 고치게 되어 비로소 臧吏의 사위가 顯職에 許通되었던 것이다.¹¹¹⁾ 물론 그 당시 守令들 중 食殘한 者가 많고 廉謹한 者가 드물어 臧吏의 緣坐 범위를 아들과 손자 이외 사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그 이상 再論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¹¹²⁾

(3) 그 다음 再嫁女子孫의 禁錮問題는 조선국초에는 舉論되지 않았고 다만 太宗 6年 6月 大司憲 許應이 時務 7條를 國王에게 올리는 가운데 士大夫의 正妻가 남편이 죽거나 버림받아서 두 세번 결혼하여 「失節無恥」하여 風俗에 누를 끼치니 大小 兩班의 正妻가 세번 시집가면 高麗의 法에 따라 忤女案에 기록하여 婦道를 바르게 하도록 하자¹¹³⁾고 주장하여 그것이 經濟六典 續典에 등재되었으며 이 續六典에 근거하여 文宗 卽位年 4月에는 司諫院에서 三嫁女 등 忤女の 자손들을 東班(文官)職에 임용하지 말도록 하자고 上啓하여 國王이 이에 따랐다.¹¹⁴⁾ 또 端宗 2年 9月에는 司憲府에서 別坐 金子鈞이 자식이 있는 妻를 버리고 세번이나 남편을 바꾼 邊氏를 改娶하였으므로 續六典에 의거하여 그 女를 忤

107) 『中宗實錄』 卷93-3. 中宗 35年 3月 辛酉(典에 근거를 두지 않은 錄은 改變司能).

108) 『위의 책』 卷92-53. 中宗 34年 12月 癸未.

109) 『위의 책』 卷92-66. 中宗 35年 正月 乙巳.

110) 『위의 책』 卷92-68. 中宗 35年 正月 丁未.

111) 『위의 책』 卷95-38. 中宗 36年 6月 己未.

112) 『위의 책』 卷95-41. 中宗 36年 6月 庚申.

113) 『太宗實錄』 卷11-29. 太宗 6年 6月 丁卯.

114) 『文宗實錄』 卷1-33. 文宗卽位年 4月 丙戌 및 『위의 책』 卷2-40. 文宗卽位年 7月 己未.

女案에 기록하자고 上啓하여 그대로 하였다.115)

그러나 世祖 때의 宰相(1品) 金漑가 세번 시집간 여자의 아들이었으므로 司諫院獻納 曹幹과 司憲府大司憲 梁誠之 등을 비롯한 臺諫에서 거듭 金漑의 관직을 박탈하자고 상소하였지만 世祖는 才德이 있으면 되었지 家累가 무슨 상관이나 하면서 듣지 않았다.116) 婦女의 再嫁 禁止問題가 집중적으로 擧論된 것은 成宗 8年 7月인데 이때 國王은 前職 政丞과 議政府·六曹·司憲府·司諫院漢城府·敦寧府의 2品 이상 관료 및 忠勳府의 1品 이상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먼저 領議政 鄭昌孫, 上黨府院君 韓明澮, 左議政 沈滄, 右議政 尹子雲, 坡川府院君 尹士昕 등이 건의하기를 良家の 여자가 나이 어려 喪夫하여도 죽기로 맹세하고 守節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춥고 배고파서 부득이 뜻을 꺾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法을 만들어 禁絶하고 犯者(再嫁女)를 治罪하며 자손에게 累가 미치게 하는 것은 도리어 風教를 해쳐서 손실이 적지 않으니 종전대로 남편을 세번 바꾸는 여자 이외에는 불문에 부치자고 하였다. 光山府院君 金國光, 永山府院君 金守溫, 領敦寧 盧思愼, 判中樞 金漑 등도 같은 의견으로서 나이 어린 寡婦에게 再嫁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위로 부모가 없고 아래로 자식이 없는 경우 失節者가 많게 되어 국가로서도 부득이 再嫁를 禁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종전대로 함이 편하다고 하였다.117)

戶曹判書 尹欽, 居昌君 愼承善, 知中樞府事 鄭文炯, 工曹判書 李芮, 刑曹判書 尹繼謙, 僉知中樞府事 金瀚, 工曹參議 李陸 등은 一夫從事하는 것이 婦人의 大節이기는 하지마는, 자식없는 年少한 寡婦를 부모나 尊長이 그 외롭고 피로움을 가련하게 여겨서 다시 시집 보내는 것은 人情上 금하기 어렵기 때문에 經國大典(甲午大典)에서 세번 시집간 여자의 자손만 清要職을 허용하지 않을 뿐 再嫁는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모나 尊長의 명령으로 再嫁한 女子들의 자손은 금고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118) 知中樞府事 具壽永, 工曹參判 洪道常, 吏曹參判

115) 『端宗實錄』卷12-10, 端宗 2年 9月 己未.

116) 『世祖實錄』卷43-24, 28, 世祖 13年 8月 乙未, 戊戌.

117) 『成宗實錄』卷82-9, 成宗 8年 7月 壬午.

118) 수백년간의 祖宗成憲이었던 成宗 16年の 經國大典(乙巳大典)에서는 再嫁女의 자손에 대한 禁錮條項이 있으나, 成宗 5年の 經國大典(甲午大典)에서는 그러한 條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李坡, 吏曹參議 崔漢禎 등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으나 다만 자녀가 있고 집안이 심히 가난하지 않은 再嫁女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번 시집간 여자의 예에 따라 論함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漢城府 左尹 成允文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寡婦의 父母가 無後하고 딸만 있는데다가 그 寡婦 또한 아들없이 일찍 青孀이 되어 부득이 改嫁한 者 및 扶護할 者가 없고 無後한 早寡者를 그 일족이 함께 의논하여 改嫁시킨 경우 이외에는 經國大典(甲午大典)의 更適三夫例에 따라 論함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였다.¹¹⁹⁾

同知中樞府事 金紐, 禮曹參判 李克墩, 漢城府 右尹 沈瀚, 禮曹參議 金自貞, 大司憲 金永濡, 執義 李瓊全, 掌令 慶俊 大司諫 孫比長, 西平君 韓繼禧, 左贊成 尹弼商, 右贊成 洪應, 吏曹判書 姜希孟, 花川君 權瑊, 兵曹判書 魚有沼, 韓城君 李埴, 鷄林君 鄭孝常, 淸平君 韓繼純, 漢城府判尹 魚世恭 등 많은 사람들도 再嫁女는 단지 封爵만 하지 않을 뿐이며 三嫁女 및 恣女에 한하여 그 자손들이 科擧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고 또 臺諫·政曹 등 顯官에로의 취임을 막게 한 經國大典(甲午大典)의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만 再嫁女라도 情狀으로 보아서 恣女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三嫁女 내지 恣女 子孫 禁錮例를 준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左參贊 任元濬, 禮曹判書 許琮, 武靈君 柳子光, 文城君 柳洙 등은 宋나라의 程子和 張載 등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失節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로서 失節者를 취하여 配匹로 삼는 것 그 자체가 失節行爲이며 남편을 바꾸는 짓은 禽獸의 행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라에서 再嫁를 금지하는 法令이 없어서 失節者의 자손이 淸顯의 관직에 있다는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는 재가를 모두 금지하고 그 자손들도 벼슬하지 못하게 하여 節義를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¹²⁰⁾

成宗은 少數意見에 따라 그 후 經國大典을 改正하여 再嫁女의 子孫을 禁錮시켜 벼슬길을 막거나 제한하게 되었는데,¹²¹⁾ 그 무렵 李諶의 妻 趙氏가 제멋대로 金澍에게 改嫁하였으므로 大明律에 의거 두 사람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앞으로는 再嫁女의 자손을 士族으로 대우하지 않도록 하여(不齒士版) 풍속을 바로 잡게

119) 『成宗實錄』 卷82-10-13, 成宗 8年 7月 壬午.

120) 위와 같음.

121)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하였다.122)

成宗 12年 10月에는 都承旨 金升卿이 再嫁女의 자손이 科擧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을 너무 엄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건의하였으나 成宗은 烈女는 不更二夫라 하고 再嫁는 風教上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123) 乙巳大典 반포 이듬해인 成宗 17年 4月에는 司諫院 正言 黃玎이 經國大典(乙巳大典)에서 再嫁女의 자손은 東西班의 관직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監察 鄭銀同과 春秋館 記注官 朴始行의 母가 모두 改嫁女이니 그들을 면직시켜야 할 것인지 혹은 그들의 母의 再嫁가 經國大典(乙巳大典) 반포 이전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를 문의하였으므로 大臣들과 承旨들이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 대하여 鄭昌孫은 改嫁行爲가 비록 經國大典(乙巳大典) 반포 전이라 하더라도 그 子孫을 東西班의 관직에 임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韓明澮·沈滄·尹弼商·洪應·尹壕·成健·李朝陽·尹殷老·朴崇質·安處良·邊處寧 등은 經國大典(乙巳大典) 시행 이후의 改嫁女의 자손에 한하여 동서반의 관직에 임용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여 國王이 이들의 견해에 따랐다.124)

그러나 司諫院 正言 黃玎은 他 東西班의 관직은 괜찮지만 史官이나 監察 같은 관직은 안된다고 주장하여 國王은 다시 大臣들에게 下問하였던 바 모두 종전에는 再嫁女의 자손들이 臺省이나 宰相의 자리에도 있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까지 追論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125) 그 후에도 臺諫에서는 改嫁女의 자손에 대한 官職任用 不可論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法律不遡及의 원칙은 成宗과 宰臣들에 의하여 준수되고 있었다.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諫에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成宗은 문제가 되고 있는 金孟鱗(祖母가 三嫁女)의 守令職 任用 경위에 관하여 人事 담당 部處인 吏曹에 물었던 바 吏曹 正郎 鄭錫堅이 보고하기를 三嫁女 子孫을 官職에 任用하지 않는다 라는 法은 祖宗朝 때부터이며 그 由來가 오래되었으나 金孟鱗의 父인 金漑는 宰相의 벼슬에 있었고 그 형제들도 모두 顯達하였으며 金孟鱗 自身도 전부터 官職의 守令을 지낸 바 있었으므로 前例에 따

122) 『成宗實錄』 卷82-19, 成宗 8年 7月 癸未.

123) 『위의 책』 卷134-20, 成宗 12年 10月 丙寅.

124) 『成宗實錄』 卷190-10, 成宗 17年 4月 辛丑.

125) 『위의 책』 卷191-4, 成宗 17年 5月 己未.

126) 『위의 책』 卷212-1-3, 成宗 19年 閏正月 戊辰, 庚午, 壬申.

라 任用 上申을 하게 된 것이라 하였다.¹²⁷⁾

成宗 23年 8月에는 幼學 文擎國이 上書하기를 그의 父 文允明이 再嫁女의 아들이지만 그의 祖母(允明의 母)의 改嫁行爲가 改嫁禁止法 시행 이전이었으므로 科擧에 응시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司憲府에서 오랫동안 署經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李丙奎·朴始亨·鄭殷同 등도 再嫁女의 아들이었지만 臺諫, 玉堂 등에 任用된 것과 비교하면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여기 대하여 國王은 司憲府에 下書하여 文允明의 母의 改嫁行爲가 改嫁禁止法 시행 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를 분간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¹²⁸⁾

燕山君 3年 12月에는 丹城縣의 訓導인 宋獻全이 上疏하기를 시집간지 3日 내지 달포만에 寡婦가 되거나 혹은 나이 20·30에 과부가 된 경우 父母 兄弟와 子息도 없는 수가 있으니 나이 30 이하로서 자녀 없는 과부의 경우에는 모두 改嫁를 허용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國王은 議政府와 6曹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데 尹弼商은 經國大典(乙巳大典)의 기재사항을 가벼이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고 盧思愼·愼承善·韓致亨 등도 같은 의견이었다. 魚世謙·成俊·李克墩·柳輕·李世佐·尹孝孫·盧公弼·許琛·李陸·李淑臧·李堪 등은 經國大典에서 再嫁行爲 그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그 所生子를 顯職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만 士族들이 그 子孫의 벼슬길이 막혀 庶民化하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再嫁女를娶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再嫁女 子孫 禁錮法 제정 당시에 나이 어린 寡婦에 대해서 동정하는 朝臣들이 많았으나 先王(成宗)의 뜻으로 經國大典에 등재하여 節義를 권장하고 風俗을 바르게 한 것이므로 지금 와서 가벼이 법 개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李季男·鄭眉壽·李昌臣 등도 「餓死事極小 失節事極大」라는 宋儒¹²⁹⁾의 말을 인용하면서 先王(成宗)의 美法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鄭文炯·洪貴達·趙益貞·朴崇質·李克圭 등 少數意見은 위 宋獻全의 의견을 取하여 再嫁女 子孫 禁錮法을 개정하자고 하였고 朴安性·金悌臣·金敬祖·安瑚 등은 절충안을 제시하여 年少 寡婦로서 부모형제가 없는 再嫁女의 자손에 대해서는 清要職을 제외하고는 仕路(벼슬길)에 許通하자고

127) 『위의 책』 卷212-7, 成宗 19年 閏正月 乙亥.

128) 『위의 책』 卷268-1, 成宗 23年 8月 辛丑.

129) 程頤와 朱熹 등을 의미.

하였으며 申浚은 제의하기를 再嫁女의 자손을 東西班의 관직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은 비록 祖宗의 舊典은 아니나 節義를 崇獎하고 風教를 砥礪하는 의미에서 經國大典에 등재한 것이므로 한 사람의 陳言으로 다시 고치기는 어렵지만 國家의 典章은 반드시 시행함에 있어 폐단이 없어야만 永久히 遵守되는 것이니 청상과부가 父兄이나 宗族의 強要로 혹은 飢寒과 困窮으로 再婚하게 되어 낳은 자식이 능력 있고 賢明할 경우에도 文武 官職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한다면 부당하니 고쳐서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분적인 개정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國王은 尹弼商 등 다수의견에 따라 법을 고치지 않도록 하였다.¹³⁰⁾ 그리하여 再嫁女子孫 禁錮法은 그후 士族社會에서 改嫁 금지의 金石之典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고 그러한 관행은 20세기 전기까지도 존속하였던 것이다. 明宗 9年 9月 司憲府의 上啓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 三綱五倫은 中國과 다르지 않는 데 제도와 문물은 다른 점이 많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再嫁禁止法으로 인하여 無子인 妻 寡居中인 兄妻를 내쫓고 兄家를 빼앗는 동생의 反人倫의 行爲조차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형제뿐만 아니라 8·9代가 동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兄弟가 同居하고 싶어도 형제의 妻들간의 불화로 반드시 分産하게 된다고 하였다.¹³¹⁾ 여하간 改嫁女子孫禁錮法으로 인하여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벼슬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疎外되어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改嫁女의 자손이 아니면서 개가녀 자손으로 誤解되어 臺諫의 署經拒否로 官職就任이 어렵게 된 韓弘潤의 事例를 들 수 있다.¹³²⁾ 그의 上疏에 의하면 그의 母 朴氏는 나이 9세 때 讓寧大君의 妻子 蓬山正의 請婚을 거부하기 위하여 既婚者(定婚者)라고 거짓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13세때 그의 父 韓堰과의 初婚이 再婚처럼 알려져 再婚女라고 오해되었다는 것이며 나이 9세에 어떻게 成婚이 될 수 있는가 라고 反問하고 있다.¹³³⁾ 이 문제에 관하여 柳洵·盧公弼 등 大臣들은 改嫁事實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司憲府에서는 위 朴氏의 再嫁事實

130) 『燕山君日記』卷28-32, 燕山君 3年 12月 己卯.

131) 『明宗實錄』卷17-44, 45, 明宗 9年 9月 乙丑.

132) 『中宗實錄』卷14-28, 中宗 6年 9月 丙寅, 『위의 책』, 卷14-31, 中宗 6年 10月 甲申, 『위의 책』, 卷16-32, 中宗 7年 6月 庚午.

133) 『위의 책』, 卷18-20, 中宗 8年 4月 丁卯.

은 「衆所共知之事」이므로 재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⁴⁾ 이와 같이 再嫁女子孫禁錮法은 16세기 벽두부터 臺諫들이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 가혹하게 적용함으로써 15세기 후기 관료들의 再嫁女에 대한 관대한 태도¹³⁵⁾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臺諫의 署經

署經이란 淸顯要職을 임명할 때와¹³⁶⁾ 법률을 改廢하거나 새로 제정할 때 司憲府와 司諫院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經國大典 吏典 告身條에 의하면 의정부와 이조·병조·사헌부·사간원·장예원·홍문관·춘추관·지제교·종부시·시강원·도사·수령·도총부·선전관·부장 등 5품 이하의 관료임용시에는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本人과 그 內外4祖의 흠결 여부를 조사하여 署經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續大典에서는 吏典 告身條와는 별도로 署經條를 두어서 各道の 都事와 守令이 처음 임명될 때는 官階가 비록 4품 이상일지라도 署經을 받도록 하되 侍從을 지냈거나 堂上官인 경우에는 署經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의 4祖뿐만 아니라 妻의 4祖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5품 이하의 臺官의 署經時에는 兩司에서 적어도 3명의 臺諫이 거행하여야 하고 監察과 都事·守令의 署經에는 兩司에서 2명의 臺諫만 있으면 거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諡號의 受點後에도 兩司의 署經을 받도록 하였다.

署經은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제도로서 조선시대에는 건국직후인 太祖 元年 8月 前朝(高麗)의 初入仕例에 의하여 나이, 본관과 3대를 써서 臺諫의 署經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만¹³⁷⁾ 실제로 5품이하의 관료 임용 시에만 署經을 거치도록

134) 『위의 책』 卷18-21, 中宗 8年 4月 戊午, 己未.

135) 다수 고위관료들이 일정한 경우에는 再嫁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136) 조선국초에는 錄事의 임명 때에도 署經을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므로, 그 대상이 반드시 淸顯要職 등 일정한 관직에 국한되지 않았으나 그 후 범위가 한정되었다.

137) 『太祖實錄』 卷1-50, 太祖 元年 8月 辛亥.

하였고 4품 이상은 國王의 官敎로 직접 임용하였으므로 定宗 2年 正月 門下府에서 상소하여 1품 이하 모든 관료 임용 시에도 署經을 거치도록 하자고 거듭 주장하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¹³⁸⁾ 나중에는 이에 따랐다.¹³⁹⁾

그러나 곧 太宗이 즉위한 후 3품 이상은 국왕이 官敎로서 직접 임용하였고 4품 이하만 署經을 거쳐 임용하였으므로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고려 때의 제도에 따라 1품에서 9품까지의 모든 관료 임용 시에 署經을 거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太宗은 의정부에 내려서 공신과 兩府의 관료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司憲府에서는 다시 상소하기를 오늘날 1품에서 3품까지의 고급관료 임용 시에는 德行을 논하지 않고, 바로 왕명으로 임명하여 간혹 부적당한 자가 있어도 臺諫에서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과 1품은 大臣이므로 官敎로서 임금이 親授하되 2품에서 9품까지는 臺諫의 署經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太宗은 제도를 가볍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서 左右政丞들에게 문의하였던 바 1·2품에 관한 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임금의 판단에 맡겼다.¹⁴⁰⁾ 그후에도 司憲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거듭하였으나 太宗은 듣지 않았다.¹⁴¹⁾

世宗 5年 5月에도 司憲府에서 上啓하기를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은 匠人이나 나무를 쓰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전하께서 九重宮闕에 계시면서 많은 관료들을 직접 잘 골라서 임용할 수가 없으므로 臺諫을 두어 임금의 耳目을 대신하게 해서 忠邪曲直을 잘 살펴서 보고하도록 하여 전하의 총명하심을 넓히고 賢人을 쓰는 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려의 盛時에도 역시 사간원과 사헌부를 설치하여 1품 이하의 모든 관료의 임용 시에 署經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조선 태조 때에는 3품 이상은 모두 官誥(官敎)로서 임금이 직접 임명하고 4품 이하만 臺諫의 署經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創業 초창기의 임시조처였고 萬世에 준수하여야 할 常經이 아니었으며 太宗 때에도 창업시기와 가까운 때였으므로 官誥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지금(世宗代)은 守成時期이므로 1품에서 9품까지의 모든 관료 임용 시에 臺諫의 署經을 받도록 하여 忠邪曲直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어 君子之道가

138) 『定宗實錄』 卷3-2. 定宗 元年 正月 乙丑, 己丑.

139) 『위의 책』 卷3-10. 定宗 2年 2月 己亥.

140) 『위의 책』 卷25-14. 太宗 13年 3月 辛卯.

141) 『위의 책』 卷26-36. 太宗 13年 11月 戊寅.

자라나게 하고 小人之道가 없어지도록 하여 나라의 발전이 무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142) 그후 司諫院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의하였지만 世宗은 吏曹에 傳旨하기를 祖宗成憲을 다시 고칠 수가 없다고 하고 종전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143)

世宗 6年 8月 司諫院에서 上啓하기를 전에는 관직에 임용될 사람이 臺諫의 집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世系를 직접 알려 주었으므로 署經이 지체되지 않았으나 臺諫家에 私通함을 금지한 이후에는 새로 벼슬할 자의 祖系를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간혹 署經 기한인 50일을 넘기는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임금의 결재 후에 臺諫이나 政曹(吏·兵曹)를 거친 사람 이외는 새로 임용될 자의 四祖單子를 갖추어 臺省에 보내서 심사자료를 삼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世宗이 이에 따랐다.144)

世宗 7年 2月 임금은 臺諫(持平과 正言)을 불러서 署經을 속히 하도록 지시하였던 바 臺諫(獻納)은 上啓하기를 이번에 관직을 받을 사람이 前職者가 아닌 한 戶口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世宗은 代言(承旨의 前身)과 臺諫(獻納)이 같이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知申事(都承旨의 前身)와 代言들이 함께 의논하여 上啓하기를 홈결이 있거나 署經이 안된 임용자에 관하여는 告身(임명장)을 고쳐서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世宗은 그들이 이미 관직을 받았으니 告身에다 그대로 署經함이 좋겠다고 하였다.145)

世宗 8年 正月에 左司諫 許誠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 때에는 1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을 주는데는 반드시 署經을 거치도록 하여 忠邪廉汚를 살피도록 하여 大臣과 小吏들이 小節細行까지도 신중히 해서 국맥을 유지하였다는 것과 太祖가 4품 이상 임용시에 官敎로서 한 것은 창업시의 임시조치이며 萬世에 준수하여야 할 常經이 아니라 하고, 守文之世인 지금은 창업시기와는 다른데도 5품 이하 임용시에만 署經을 하게 하고, 4품 이상 大夫의 임용시에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公論이 미치지 못하여 廉恥와 士風이 일어서지 않으니 1품에서 9품까지

142) 『世宗實錄』 卷20-17, 世宗 5年 5月 丙申.

143) 『위의 책』 卷21-14, 世宗 5年 9月 壬午.

144) 『위의 책』 卷25-19, 世宗 6年 8月 戊辰.

145) 『위의 책』 卷27-25, 世宗 7年 2月 壬戌.

모두에게 臺諫에서 署經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146)

世宗 18年 10월에 司憲府에서 上啓하기를 고려말 告身(관료 임명장)에 署經 하면서 사사로운 보복심으로 忠良을 모함하여 士風이 不美하였는데 지금도 私怨을 갖고 보복하는 일이 있으니 臺諫의 직첩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世宗이 윤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左司諫 柳漢, 右司諫 柳漢, 知司諫 黃得粹, 正言 李孟專 등이 파직되었다.147)

世宗 25年 7月 임금은 吏曹에 傳旨하기를 금후 外方 守令內에 3·4품인 官階를 가진 자가 縣監·縣令·判官 등 行職으로 5·6품인 官職(職事)을 받은 자에게는 官敎를 주고 5품인 官階者가 守職으로 都護府使인 3품 職事를 받거나 5·6품 官階者가 역시 守職으로 知郡事인 4품 職事를 받는 자에게는 모두 署經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恒式으로 한다고 하였다.148) 그러나 여기 대하여 左正言 尹沔은 상계하기를 중앙관(京官)은 5·6품인 자가 守職으로 4품 官職을 받는 경우와 3·4품인 자가 行職으로 5·6품의 官職을 받는 경우에 모두 告身(임명장)에 署經을 받도록 하였는데, 오직 수령만이 3·4품인 자가 行職으로 현감(6품)에 임명될 때 署經을 거침이 없이 官敎를 받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하니 중앙관(경관)의 예에 따라 署經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尹沔은 다시 上啓하기를 조선국초에는 비록 1·2품일지라도 모두 告身에다 署經을 거쳤으나 후에 4품 이상은 官敎로 임용한다는 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번에 이를 署經之法으로 고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에 世宗은 守令官敎之法은 이미 제정되었고 또한 벼슬이 大夫에 있는 자에게 어찌 다시 署經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하였다.149) 그보다 두달 앞선 世宗 25年 8월에 大司憲 閔伸 등의 上啓에 대하여 世宗은 말하기를 고려말의 법이 대신의 임명장(告身)에도 모두 署經을 하도록 하였고 말세에 이르러서는 임금의 특명으로 관료를 임명하는 경우에 그것을 內出이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방하였다는 것과 임금이 임명하고 싶어도 그 신하가 고집을 피우면 안되었으니 권한이 밀로 옮겨졌으므로 태조가 그 폐단을 깊이 통촉하여 官敎之法을 만들었으며 그 후에 다시 署經

146) 『위의 책』 卷31-9, 世宗 8年 正月 辛酉.

147) 『위의 책』 卷75-5, 世宗 18年 10月 丁丑, 戊寅.

148) 『위의 책』 卷101-20, 世宗 25年 7月 庚辰.

149) 『위의 책』 卷102-6, 世宗 25年 10月 癸巳.

制度를 썼는데 太宗初에도 署經法을 그대로 쓰다가 후에 官敎로 하였으며 世宗 역시 官敎法과 署經法을 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⁰⁾

成宗 24年 5月에는 승정원에서 上啓하기를 朝士 5품 이하의 관직 임명시에 는 반드시 署經을 거쳐서 출사하여야만 祿을 받을 수 있는데 臺諫에서 간혹 고 의로 署經을 지연시킨다고 하였다.¹⁵¹⁾ 그러한 폐단이 누적되어 燕山君 11年 正月에는 대간의 署經權을 혁파하였는데 원래 署經法은 族系를 살펴서 흠결이 있음을 밝혀 내자는 것이며 그것이 私感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조와 병 조에서 銓權(인사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었다.¹⁵²⁾ 그러나 中宗반정 이후 署經法은 다시 부활되었다. 中宗 5年 8月 경국대전에 의하여 兩司(司憲府와 司諫院)에서 署經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署經 대상이 다시 정하여졌다. 즉 나라에서 새로 법조문을 만들 때와 守令과 經筵官·史官·臺諫 및 顯職 4품 이하의 관료 임용시에는 양사에서 署經을 하여야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¹⁵³⁾

中宗 10年 2月에는 臺諫이 署經 기한을 넘겼으므로 遞職되었고¹⁵⁴⁾ 中宗 13年 2月에는 법전에 있는 그대로 新法의 제정뿐만 아니라 구법의 改廢에도 署經을 하도록 하였다.¹⁵⁵⁾ 또 中宗 24年 10月에는 諫官들이 署經의 법정기한인 50일을 넘긴 후 署經하였으므로 待罪하였으나 임금은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므로 待罪하지 말라고 하였다.¹⁵⁶⁾

中宗 35年 正月 司憲府에서 上啓하기를 大典續錄 署經條에 妻4祖도 함께 고찰한다고 하였는데 만약 宰相이라 하여 署經을 하지 않으면 무릇 4품 이상은 모두 署經할 수가 없으므로 구법이 훼손되어 後弊가 클 것이라 하였다.¹⁵⁷⁾ 中宗 35年 4月에도 司憲府에서 上啓하기를 後續錄이 시행될 수 없을 것 같으면 폐지함이 옳고 만약 적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준수하여야지 어찌 사람마다 異議를 제기하여 법의 효력을 말소시키면서 시행하기도 하고 시행하지 않기도 하느냐고

150) 『위의 책』 卷101-29, 世宗 25年 8月 乙未.

151) 『成宗實錄』 卷277-12, 成宗 24年 5月 乙亥.

152) 『燕山君日記』 卷57-8, 燕山君 11年 正月 己亥.

153) 『中宗實錄』 卷12-9, 中宗 5年 8月 庚子.

154) 『위의 책』 卷21-46, 中宗 10年 2月 癸巳.

155) 『위의 책』 卷32-14, 中宗 13年 2月 甲午.

156) 『위의 책』 卷66-35, 中宗 24年 10月 辛未.

157) 『위의 책』 卷92-67, 中宗 35年 正月 丙午.

하고 후속록의 可行條件에 의거 署經하면 폐단을 없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
기 대하여 中宗은 경국대전에 의하여 署經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또한 후속
록에 관한 것은 동감을 표시하였다.158)

明宗 元年 10月 玉堂(副提學)에서 上筭하기를 대개 법의 廢立과 官의 除拜
(임명)는 임금의 명령이 있는 후에 반드시 양사(臺諫)의 署經을 거친 후라야 시
행되는데 이는 나라에서 臺諫을 존중하기 때문이라 하였다.159) 또 宣祖 28年
10月 司諫院에서 上啓하기를 법전내의 在喪起復160)人員은 該曹에서 양사에 보
고하여 署經을 거친 후 職帖을 주어 관직에 임명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戰時(壬
亂) 중이라 武臣 起復者가 매우 많다는 것과 銓曹에서는 관직 임용이 급하여 署
經이나 注擬(임용추천)를 기다리지 않고 임금에게 직접 여쭙어 관직을 주고 있
으니 이조와 병조의 당상관과 낭청을 모두 推考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161)

조선시대의 관료는 신규 임용될 때뿐만 아니라 전보나 승진 임용시마다 새로
운 임명장(教旨와 奉教162)인 職牒을 주게 되는데 그때마다 臺諫의 署經을 받
도록 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仁祖 16년 7월 좌의정 崔鳴吉의 건의에 따라 署經
法을 고쳐서 京外官이 처음으로 수령에 임명될 때 한번의 서경으로 족하도록 하
였다.163) 또한 顯宗 8年 12월에 임금은 三司와 春坊의 관료 및 監察 등은 이미
서경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署事하지 않도록 하였다.164) 英祖 19년 2월에는
영의정 金在魯가 건의하기를 民事行政이 급한 요즘 수령 임명시에는 兩司中 一
司의 署經만으로 하여 부임시키자고 하였으나 병조판서 徐宗玉은 양사의 署經을
받도록 한 것은 古法이라서 폐지할 수가 없다고 하고 과거에 지방고을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 간혹 一司의 署經을 받아 수령을 부임시킨 경우가 있지만 정규인

158) 『위의 책』 卷93-9, 中宗 35年 4月 丙子.

159) 『明宗實錄』 卷4-67, 明宗 元年 10月 癸卯.

160) 원래 父母喪中에 있는 자는 벼슬을 그만 두고 喪主로서 3년(만 2년)간 집안에
있거나 侍墓하여야 하는데, 國事로 인하여 임금의 특별명령이 있을 때에는 복직을
하여 근무하게 되는데 이것을 起復이라 한다.

161) 『宣祖實錄』 卷68-31, 宣祖 28年 10月 壬戌.

162) 教旨를 官教(4품 이상), 奉教를 牒紙(5품 이하)라고도 한다.

163) 『仁祖實錄』 卷37-8, 仁祖 16年 7月 丁亥.

164) 『顯宗改修實錄』 卷18-25, 顯宗 8年 12月 壬申.

사이동(大政)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임금은 徐宗玉의 말에 따랐다.¹⁶⁵⁾

165) 『英祖實錄』卷57-10, 英祖 19年 2月 己丑.

第2章 淸顯要職 任用的 特殊節次

조선시대의 성격을 양반관료 사회로 규정하는 所以는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담당자들이 淸顯要의 관직에 있거나 또는 거친 者 및 적어도 그러한 者들의 자손들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品 이상의 高位實職에 올라간 자들은 거의 淸顯要職을 거친 者들이었고 그러한 관직을 거치지 않은 者들은 비록 堂上官(심지어 1品까지)이 되더라도 대우받지 못하였으며 항상 政務에서 疏外되었다.¹⁾ 특히 16세기 이후의 士林政治時代의 조선의 정치주도세력은 品階만 높은 高位官職者들이었다기 보다는 玉堂과 翰林(弘文館과 藝文館)의 3품 이하의 官員과 臺諫(司憲府와 司諫院) 및 春坊(세자시강원) 政曹(吏曹와 兵曹)의 郎官(銓郎) 등 堂下官과 일부 堂上官 즉 都堂과 政曹 및 三司의 長官인 堂上官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玉堂(弘文館)은 世祖 때 폐지한 集賢殿의 후신으로 成宗 때 설립한 것으로서²⁾ 文翰을 장악하고 經筵에 참석하여 國王의 측근에 있으면서 국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³⁾ 翰林(藝文館)은 비록 7품 이하의 參下官職者였지만 史官으로서 史筆을 잡고 國政의 是非曲直을 후세에 전하였으며,⁴⁾ 銓郎은 人事 추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들 淸顯要의 관직들은 매우 중요시되어 특수한 임용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물론 臺諫도 言官으로서 국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한 晷經權

-
- 1) 이른바 中人官職인 醫官·譯官 중에서도 堂上官이 많으며 그 중에서 崇祿大夫(1品)의 品階까지 올라간 사람(例: 張炫)도 있었지만 언제나 差待를 받았다.
 - 2) 『中宗實錄』 卷18-18, 中宗 8年 4月 辛亥.
 - 3) 弘文館의 提學 이상은 他官 겸직이었으므로 弘文館의 長官은 副提學(栗谷全書 參照)이었다. 따라서 玉堂이라 함은 副提學(正3品) 이하의 관료를 의미한다.
 - 4) 藝文館의 參上官 이상은 모두 他官이 겸직하고 專任者의 官職이 奉教(7品) 待教(8品) 檢閱(9品) 등 參下官이었지만, 그러한 官職에 任用된 자들의 官階는 대개 通訓大夫(正3品)였으며, 그들은 모두 春秋館의 史官을 겸하였다.

을 통하여 人事와 法令制定에 크게 관여한 清要職이었지만 일반적인 通清節次 이외의 玉堂翰林銓郎과 같은 특수한 임용절차는 없었던 것이다. 또 春坊과 桂坊(世子侍講院과 世子翊衛司) 등의 관원도 清職이었지만 일반적인 通清節次 이외에 특수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臺諫이나 春坊의 官員 등을 임명할 때 弘文錄에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는 수는 많았다.⁵⁾ 다음에 弘文館의 관원의 특수임용절차인 弘文錄과 都堂錄, 그리고 大提學 圈點과 藝文館의 관료선임절차인 翰林圈薦과 召試, 다음으로 銓郎의 選任問題를 언급하고자 한다(正祖 때의 奎章閣 관료의 임명절차는 弘文館 관료의 것을 모방하여 會圈을 하였으므로 별도 서술은 생략한다.).

1. 弘文錄과 都堂錄

成宗代 이전에는 注擬(임용후보자 제청)가 비밀리에 행하여졌지만⁶⁾ 中宗代 이후 3배수 추천제인 備三望(備望)으로 注擬가 행해지자 인사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 같다.⁷⁾ 여하간 弘文館의 관원들은 그러한 통상적인 擬望(備三望) 절차 이외 복잡한 선임절차가 요구되었다. 즉 임용후보자를 弘文館의 副提學 이하 관료들이 人選(圈點)하여 명부(弘文錄)를 만들면 臺諫들이 이를 분석하여 부적격자를 論駁하고 이를 議政府의 2품 이상의 高官과 大提學(예외로 提學) 및 吏曹의 堂上官이 모여서 심사한 후 새로운 명부(都堂錄)를 만들어 임금에게 올리면, 임금이 약간의 加減을 하거나 혹은 그대로 圈點數대로 순차적으로 玉堂官員을 임명하였다.

弘文錄에 관한 규정은 經國大典에 없으며 續大典에 처음 등장하지만 成宗 24年 10月 乙亥에 李克墩이 「弘文錄이란 年少 聰敏者들을 그들의 동료가 선택하게 하는 제도」라 하였고 侍講官 權柱는 「弘文館이란 비단 年少者만이 동료를 선택하

5) 『成宗實錄』 卷283-18, 成宗 24年 10月 乙亥 『宣祖實錄』 卷8-35, 宣祖 7年 5月 癸巳.

6) 『成宗實錄』 卷9-19, 成宗 2年 2月 甲辰.

7) 『中宗實錄』 卷77-18, 中宗 29年 4月 丁未; 『明宗實錄』 卷4-67, 明宗 元年 10月 癸卯; 『위의 책』 卷4-83, 明宗 元年 12月 壬辰.

는 제도는 아니고, 그 心術을 그들의 동료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弘文館의 동료들로 하여금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館閣堂上⁸⁾에게 보고한다」라 하였던⁹⁾ 점에 비추어 경국대전 成立 직후부터 관행으로 존속되어 왔다가 續大典上으로 成文化된 듯 하였다. 그러나 續大典에서도 「翰林圈點은 弘文錄의 例에 따라」¹⁰⁾라는 간단한 규정뿐이므로 조선왕조 실록을 찾아서 弘文錄 및 都堂錄의 운용실제 및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燕山君 元年 5月 庚戌 忠淸道 都事 金駟孫의 上疏에 의하면 弘文錄은 宋나라 司馬光이 건의한 舉士十科를 모방하였지만 그 내용은 매우 다르다는 것과 천거된 人士 중 人望이 없는 자에 대하여 臺諫에서 駁正하게 되면 公道가 行하여 지는데 成宗 26년에는 그대로 하여 人材가 많이 배출되었으나 燕山君 때는 그렇지 못하였는데 臣僚들의 천거가 없이 國王이 어찌 그 사람의 賢否를 알아서 임용할 수 있겠는가¹¹⁾라고 하였다. 中宗 3年 3月 丙辰의 臺諫의 睿啓에 의하면 弘文館의 判官은 經筵의 職을 겸하므로 잘 골라야 하는데 燕山君 甲子 이후 弘文錄이 매우 冗雜(冗雜)하여 등록된 인물 14人 모두가 玉堂官員으로 부적합하니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거기 대하여 弘文館에서는 臺諫에서 논박하는 弘文錄 不適合人들 중 1인 이외에는 本館(弘文館)에서 추천한 자가 아니고 吏曹와 政丞 및 館閣堂上의 會議時에 넣은 사람들이라 하였다.¹²⁾ 여기 대하여 持平 宋好義는 大臣들이 어떻게 新進士類를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弘文館에서 합의된 대로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있다.¹³⁾ 그러나 그 후 國王은 人事문제는 마땅히 銓曹(吏曹)에 맡겨야 하고 별도로 弘文錄 따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臺諫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⁴⁾ 그리하여 持平 金希壽는 弘文館은 옛날의 集賢殿이며 그 官員의 선임은 매우 중요한데도 이제 祖宗之法을 바꾸어 銓曹로 하여금 擬望(임용 후보자 제청)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하였다.¹⁵⁾

8) 館閣堂上이란 弘文館과 藝文館의 大提學 또는 提學을 의미하였다.

9) 註 5.

10) 『續大典』 卷1, 吏典, 京官職.

11) 『燕山君日記』 卷5-31, 燕山君 元年 5月 庚戌.

12) 『中宗實錄』 卷5-49, 中宗 3年 3月 丙寅, 丁卯.

13) 『위의 책』 卷5-50, 中宗 3年 4月 戊辰.

14) 『위의 책』 卷18-18, 中宗 8年 4月 己酉, 庚戌.

國王의 下問에 대하여 領事 宋軼은 대답하기를 世宗 때에 集賢殿을 설치하여 한 시대의 인재를 모두 뽑았는데 世祖가 이를 폐지하였으나 成宗이 그것을 다시 세워 弘文館이라 하고 可用之人을 모두 뽑아 그 數에 구애하지 않고 모두 명부에 올려 임용하였으며, 비록 명부에 등록된 사람일 지라도 부적당한 사람은 임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근간에는 그 인원을 선발하지 않아서 弘文錄에 결원이 많다고 하였다.¹⁶⁾ 侍講官 金乃文과 同知事 朴說 등도 吏曹에서 독자적으로 선발하면 用人이 잘 될 수 없다(未精也)고 하였고 正言 蘇世讓은 弘文錄에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延九齡(出身不正), 慶倣·南世準(無學問), 崔山斗(寒微) 등을 들었으므로 결국 國王은 이들을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¹⁷⁾

그러나 大臣들은 여전히 吏曹에서 人事權을 전담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즉 成希顔은 弘文館이 비록 중요한 官司이기는 하나 어찌 그곳 官員만은 吏曹에서 뽑을 수 없다는 것인 가라 하고 弘文館이 集賢殿을 계승하여 설치한 것이라고는 하지마는 集賢殿도 설치 당초에는 錄案이 없었고 이제 吏曹에 그 선발권을 준 이상 다시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宋軼도 이에 동조하면서 다만 後弊가 생길 때 고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李蓀·尹金孫·洪景舟·金詮·李長坤·李希望 등 많은 사람들이 祖宗朝의 良法(弘文館에서 선발)을 가벼이 고칠 수가 없다고 하였지만 중중은 宋軼 등의 의견을 따랐다.¹⁸⁾ 그러나 臺諫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弘文錄에 등재된 자 중 金璇·崔山斗·朴佺·曹漢弼 등은 부적당하므로 명부에서 삭제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¹⁹⁾ 吏曹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⁰⁾ 대신(領議政 鄭光弼 右議政 申用漑)들도 臺諫측 인사인 執義 朴穰가 成三問의 外孫이란 점을 들어 叛逆人의 외손은 清要職에 임용될 수 없다 라고 공격하였는데, 司諫 鄭忠樑, 掌令 鄭士龍, 持平 曹漢弼, 獻納 金絀, 正言 李若冰 등 臺諫들은 일제히 反論을 제기하면서 「先王의 寬大한 政事는 罰이 後嗣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도 비록 친자손이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15) 『위의 책』 卷18-18, 中宗 8年 4月 辛亥.

16) 위와 같음.

17) 위와 같음.

18) 『위의 책』 卷18-21, 中宗 8年 4月 辛酉.

19) 『위의 책』 卷22-30, 中宗 10年 5月 癸卯.

20) 『위의 책』 卷23-22, 中宗 10年 10月 己未.

의손에 있어 서라! 라 하였다. 說經 安處順도 朴壕가 成三問의 外孫이지만 이미 弘文錄에 등재되어 있고 또 臺諫職에도 있으므로 마땅히 그에게 길을 넓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中宗도 이 점에 관해서는 臺諫들의 의견에 따라 「用人은 祖先에 구애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²¹⁾ 朴壕가 玉堂官員이 되어 經筵에서 朝夕으로 대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되었던지 그 이듬해인 中宗 13年 5月에는 비록 그 職을 바꾸더라도 어찌 마땅한 다른 補職處가 없겠는가 라고 하였다.²²⁾

經筵官은 法制上으로 弘文館의 關원이 兼하도록 되어 있는데 成均館의 司成도 이를 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中宗은 領事 申用漑의 의견에 따라 兼官을 별도로 설치하여 司成이 經筵官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³⁾ 중종 14年 4月 弘文館에서 작성한 弘文錄의 명단 가운데 많은 사람을 議政府에서 교체하였으므로 中宗은 大臣들을 不信하여 말하기를 의정부에서 어찌 弘文館만큼 상세히 알 수 있겠는가 라 하고 의정부의 都堂錄을 고칠 것을 명령하였다.²⁴⁾ 그리고 國王은 弘文錄의 등재 인원을 圈點의 多少만으로 선정함은 너무 협착하므로 大臣들은 마땅히 公論에 따라 그 當否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安滄은 옛날에도 弘文錄은 點數로서 사람을 取捨 선택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며 中國에서도 주요 보직(通政司 堂上)은 6부와 閣老들이 모두 모여서 후보자의 이름 밑에 圓點을 加하여 그 점수의 多少로서 人選한바 있었다고 하였다.²⁵⁾

中宗 28年 7月에는 弘文館의 參下官(正字)이 모두 缺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吏曹의 官員과의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相避 때문이라 하며 國王은 그 대책을 정승들에게 물었던 바 領議政 孫順成은 弘文錄에 등재된 人物과 吏曹의 官員間에 비록 相避關係에 있더라도 國王의 특명으로 玉堂 南行(正字)에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⁶⁾ 中宗 30年 6月에는 副提學 蔡無擇이 上筭하기를 侍從(弘文館 正字)을 선발함에 있어 의정부에서 신중하지 못하여 말썽 있는 자를 선

21) 『위의 책』 卷30-59, 中宗 12年 11月 丁酉.

22) 『위의 책』 卷33-4, 中宗 13年 5月 癸卯.

23) 『위의 책』 卷35-65, 中宗 14年 4月 庚辰.

24) 『위의 책』 卷35-70, 中宗 14年 4月 丁亥.

25) 『위의 책』 卷35-70, 中宗 14年 4月 戊子.

26) 『위의 책』 卷75-31, 中宗 28年 7月 丙辰.

말하였다고 하여 國王은 弘文館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닌 가
라 하였는데 正字 丁應斗는 그러한 者(謫人 曹繼商의자)의 이름 밑에 圈點을 2
개 찍어 弘文錄에 등재하게 한 사람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²⁷⁾ 이와 같이 弘
文館의 參下官 임용시에는 가족관계가 고려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中宗 14年の
己卯土禍 때 연루되었던 사람의 동생이라 하여, 18년이 지난 中宗 32年 10月,
國王은 李若海가 弘文錄에 등재되어 있음을 不當하다고 지적하면서 玉堂의 參下
官 4인이 모두 비워 있으니 弘文錄의 인원을 더 뽑아서 채우라고 하였다.²⁸⁾

明宗 元年 4月에도 이조에서는 玉堂의 參下官 자리가 많이 비워 있으므로 弘
文錄 작성을 國王에게 건의하고 있다. 이때 史官의 評論에 의하면 弘文錄을 議
定할 때 高官은 위축되어 머리를 숙이고 下官의 뜻대로 선발되었는데 그 取함이
私的인 知面度에 따라 좌우되어 매우 불공평하다고 하였다.²⁹⁾ 이는 일찍이 中
宗이 弘文錄의 인원을 錄取할 때 大臣들보다 新進인 玉堂의 관원들의 뜻을 존중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後日 宣祖 때의 黨爭의 씨앗이 이때 잉태되었다
고도 볼 수 있다.

明宗 10年 閏 11月の 司憲府의 上啓에 의하면 근래 士習이 부정하여 瓘官운
동의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특히 禮曹正郎 李樛는 허망하고 무식한 사람
으로 士類에게 용납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玉堂(弘文館)이나 湖堂(讀書
堂) 등의 인원선발(揀選) 때 瓘官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弘文館의
本館錄에 들지 못하자 자기에게 圈點을 준 사람을 칭찬하고 圈點을 주지 않은
사람을 毀言하면서 원망하였던 것이다.³⁰⁾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李樛 한 사람
뿐이겠는가, 또한 어찌 玉堂, 湖堂의 人選에 있어서만이겠는가. 그 후 銓郎의 人
選過程에서도 같은 현상이 생겨나서 결국 당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明宗 14年 7月에도 國王은 承政院에 傳敎하기를 弘文錄에
간택된 사람과 知製敎 및 讀書堂(湖堂)에 뽑힌 사람들이 미흡하다고 하였다. 史
官도 經筵官은 임금의 측근에서 모시는 官職(近侍之職)으로 반드시 經明行修之
人을 얻어 國王의 顧問과 輔德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선발은 매우 신중

27) 『위의 책』 卷79-61, 中宗 30年 6月 甲寅.

28) 『위의 책』 卷85-98, 中宗 32年 10月 乙亥.

29) 『明宗實錄』 卷3-70, 明宗 元年 4月 甲寅.

30) 『위의 책』 卷19-45, 明宗 10年 윤11月 丙寅.

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弘文錄에 간택된 者 10여명 중 많은 수가 冗雜之人으로 되어 있어 名器(官職)를 더럽히고 있다고 하였다.³¹⁾

明宗은 10年 5月, 11年 8月, 13年 3月 등으로 거의 每年 弘文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製述 시험을 보였는데³²⁾ 대개 弘文錄에 뽑힌 사람이 지방에 많이 있어 製述 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매우 적어서 月課之製가 有名無實하다고 하였다.³³⁾ 그리하여 明宗은 15年 2月과 18年 12일, 20年 2월에 직접 또는 試官에게 命하여 弘文錄에 등재된 인사 및 製述로 뽑힌 文官들을 시험하여³⁴⁾ 공부하는 기풍을 진작하였다.

宣祖 5年 11月에는 吏曹에서 弘文錄에 수록할 사람을 선발할 것을 건의하였고, 같은 해 12月에는 國王이 殿考하여 모두 20명을 뽑았는데 그 성적은 二中 1명(司評 任榮老爲壯元), 二下 1명(次席), 三上 2명, 三中 1명, 三下 8명, 點三下(次點) 7명 등이다.³⁵⁾ 그러나 弘文錄에 등재할 인원을 뽑을 때에는 보통 圈點의 다수로 선발하는데 宣祖 6年 6월에 14명을 취한 가운데 6圈이 4명, 5圈이 4명, 4圈이 6명으로 圈點 4개 이상을 대상자로 하였고 실제 弘文館 正字로 임명된 사람은 圈點 5개인 洪進이었다.³⁶⁾ 또 宣祖 7年 4월의 弘文錄에는 圈點 5개 이상인 자를 취하였는데 모두 13명으로 그 중 7圈이 1명, 6圈이 8명, 5圈이 4명이었다.³⁷⁾ 그리고 宣祖 7年 6월에는 弘文錄을 토대로 의정부에서 合坐하여 圈點 5點 이상 자 8명을 취하였는데(都堂弘文錄 또는 都堂錄), 그 중 7點이 1명, 6點이 1명, 나머지 6명이 5點이었다.³⁸⁾ 또 宣祖 8年 12月 議政府(都堂)에서 弘文錄에 있는 자를 간택할 때에는 3點 이상 15명을 취하였으

31) 『위의 책』 卷25-56, 明宗 14年 7月 壬午.

32) 『위의 책』 卷18-28, 明宗 10年 5月 甲午; 『위의 책』 卷21-12, 明宗 11年 8月 己丑; 『위의 책』 卷24-25, 明宗 13年 3月 甲戌.

33) 『위의 책』 卷25-12, 明宗 14年 2月 庚戌.

34) 『위의 책』 卷26-9, 明宗 15年 2月 己卯; 『위의 책』 卷29-90, 明宗 18年 12月 丙午; 『위의 책』 卷31-15, 明宗 20年 2月 丙申.

35) 『宣祖實錄』 卷6-23, 宣祖 5年 11月 乙巳; 『위의 책』 卷6-23, 宣祖 5年 12月 丙辰.

36) 『위의 책』 卷7-24, 宣祖 6年 6月 庚戌, 乙丑.

37) 『위의 책』 卷8-27, 宣祖 7年 4月 丁巳.

38) 『위의 책』 卷8-41, 宣祖 7年 6月 丙辰.

며 그 중 5點과 4點이 각 3명, 3點이 9명이었다.³⁹⁾

宣祖 7年 5月 柳希春의 陳言에 의하면 옛날 中宗 때 玉堂(弘文館)의 可用人員이 12-3명이나 있었는데도 弘文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臺諫으로 삼지 않았으며 玉堂 人員만을 반드시 弘文錄에 있는 者 중에서 임용하였는데, 지금(宣祖때)은 玉堂인원을 臺諫으로 많이 轉補하여 弘文館의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臺諫은 弘文錄에 등재되지 않은 良士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⁰⁾

宣祖 7年 6月 壬申의 實錄記事에 의하면 弘文錄 중 本館에서 추천한 9명 가운데 임용한 사람은 2명뿐이고 吏郎之錄에 있는 3명 모두를 임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人事가 私的인 情實에 흘러 불공평하기 때문이며 士林들이 크게 실망하였다는 것이다.⁴¹⁾

宣祖 33年 8月, 吏曹의 判書·參判·參議 등(3堂上官)의 上啓에 의하면 弘文錄에 있는 자를 都堂(의정부)에서 간택할 때, 三公(領·左·右議政) 및 의정부의 東西壁(左右贊成과 左右參贊), 大提學, 吏曹의 堂上官들이 참여하는데, 圈點에 참여하는 사람의 多少에 따라 몇 圈(點) 이상 者를 取할 것을 먼저 약속하고 각자의 의견대로 圈點을 한 후 圈數를 계산하여⁴²⁾ 그 多少에 따라 取捨하는데, 都堂錄에서 몇 圈(點)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한 文籍은 없으며 그 點數가 상대적으로 많은 者를 그때그때 取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⁴³⁾ 당시의 史官은 기록하기를 弘文錄에 등재된 사람이 그전에는 것처럼 많은 적이 없었다는 것과 罪를 지어 풀려나지 않은 者도 공연히 參錄되어 公論을 돌보지 않음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國王이 엄하게 下教한 후에도 大臣들이 등록을 주관하면서 마땅히 待罪해야 하거늘 도리어 심상하게 생각하고 臺諫에 있는 者들도 부득이 啓辭하기는 하였지만 그 태도가 모호하고 不明하다는 것이었다.⁴⁴⁾ 여기서

39) 『위의 책』 卷9-34, 宣祖 8年 12月 丙戌(點과 圈은 混用).

40) 『宣祖實錄』 卷8-35, 宣祖 7年 5月 癸巳.

41) 『위의 책』 卷8-46, 宣祖 7年 6月 壬申.

42) 圈點에 참여하는 堂上官들은 玉堂 候補者 중 玉堂의 官員으로 임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름 밑에 동그라미(圈點)를 한 개씩 그리는데 예컨대 참여 堂上官 9명 전원으로부터 동그라미를 얻게 되면 9圈(9點)이 되고 그 중 5명으로부터 동그라미를 얻으면 5圈(5點)이 된다.

43) 『宣祖實錄』 卷128-5, 宣祖 33年 8月 辛巳.

의 臺諫의 啓辭란 掌令 申滂의 啓言을 말하는데 그의 上啓내용은 근래 玉堂之錄이 비단 명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罪籍에 있는 者도 들어 있으니 都堂(의정부)에 명령하여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⁵⁾ 그리하여 吏曹에서는 弘文錄 중 圈點이 적은 者 8명을 골라 명부에서 삭제하고 宣祖에게 보고하였다.⁴⁶⁾

宣祖 31年 3月の 都堂(弘文)錄에 의하면 7圈이 李尙信 外 1명, 6圈이 申欽 外 2명, 5圈이 李爾瞻 外 2명, 4圈이 姜弘立 外 4명이었다.⁴⁷⁾ 또 宣祖 38年 6月에도 의정부와 이조의 당상관 대제학 등이 함께 의논하여 弘文錄을 작성하였는데, 이때에 鄭廣成 등 15명을 간택하였다.⁴⁸⁾

光海君 時代는 北人政權下였는데 西人系 宰相인 李德馨이 北人들의 사주를 받은 玉堂에서 탄핵을 받게 되었으나 玉堂(弘文館)校理로 있던 李民成(南人系)은 稱病하고 玉堂을 나간 후, 入直할 것을 再三 독촉하였음에도 끝내 거기에 불참하였으므로 파직하였다는 것이다. 그의 파직 사유 중 하나가 지난날 弘文館 本館錄에 등재되기 위하여 臺官으로 입궐 숙직함을 거부(不參)하였다는 것으로⁴⁹⁾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三司의 官원이 모두 清要職이라 하나 臺諫 보다는 玉堂官員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점이다. 光海 6年 8月에도 의정부에서 合坐하여 30명을 뽑아 弘文錄에 등재하였다.⁵⁰⁾ 光海君 7年 12月에는 承政院에서 都堂錄을 속히 작성할 것을 上啓하였는데 玉堂과 臺諫에서 지적한 문제 人士는 일일이 王命을 받아 정리하였는데도 아직 弘文錄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⁵¹⁾

孝宗 5年 11月 國王의 特命으로 李廣億이 玉堂 修撰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吏曹에서 上啓하기를 李廣億이 재능과 인망 등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적합하나 弘文錄에 參錄되지 못한 사람을 그러한 자리에 임용하는 것은 常規에 어긋난다

44) 위와 같음.

45) 위와 같음.

46) 『위의 책』 卷128-18, 宣祖 33年 8月 丁酉.

47) 『위의 책』 卷98-1, 宣祖 31年 3月 丙戌.

48) 『위의 책』 卷188-15, 宣祖 38年 6月 壬戌.

49) 『光海君 日記』(太白山本) 卷70, 光海 5年 9月 甲戌.

50) 『위의 책』 卷81, 光海 6年 8月 乙未.

51) 『위의 책』 卷98, 光海 7年 12月 癸亥.

고 하였다. 그러나 孝宗은 「내가 人選하는 것이 어찌 한 두 사람의 玉堂官員들이 私情에 따라 圈點(선거)하여 參錄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말이냐」라고 반발하였다. 하지만 司憲府에서는 우리 나라의 弘文錄의 제도는 그 내력이 오래되었고 거기에 參錄된 사람만이 玉堂관원후보자로 추천(擬望)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祖宗成憲이라는 것과 李廣億의 才華와 名望이 딴 사람에게 뒤떨어지지는 않으나 다만 祖宗朝의 故事(先例)를 가볍게 허물면 뒷날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니 그 임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孝宗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⁵²⁾

顯宗 3年 5월에 都堂(의정부)에서 崔攸之·尹趾美·元萬里 등 10명을 뽑아 弘文錄에 올렸는데⁵³⁾ 그 다음 달 大司成 徐必遠의 上疏에 의하면 그것이 私의 人情實에 흘러 人選이 잘못되었음에도 臺諫들조차 가만히 있어 國王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陳疏하기를 玉堂의 관원들은 經筵官을 例兼하여 論思와 輔導의 직책을 전담하므로 그 임무가 중요하여 그 선임도 엄중하게 해야 하기에 弘文錄에 관한 규정이 있어 한 시대의 재능과 인망이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弘文館의 官員들이 모여서 圈點(선거)을 시행한 결과 多得點者를 弘文錄에 등재하는데, 이를 本館錄이라 하였고 3議政과 贊成·參贊 등 館閣의 堂上官들이 都堂(의정부)에 모여서 위 本館錄에 있는 者 가운데 부적격자를 삭제하고 적합한 者를 남겨서 都堂錄이라 하였으며, 그러한 상세한 심사를 거친 者만을 玉堂官員으로 임용제청(備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尹趾美와 元萬里는 本館錄에 없던 사람인데도 홀연히 都堂錄에 參錄하였음은 不當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尹趾美는 相臣의 妹子이고 元萬里는 相臣의 親子로서, 情實에 따라 參錄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옛날 相臣 李浚慶이 都堂에서 圈點을 행할 때에 그 아들 在應이가 弘文館 本館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李浚慶이 직접 붓을 들어 삭제한 일이 있는데 後人들이 이를 어찌 본받지 않는가 라고 하였다. 위 두사람 이외에도 崔攸之·宋奎濂 등도 부적당한 사람들로서 인척의 힘으로 외람되어 參錄되었으니 이를 모두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⁵⁴⁾

위 徐必遠의 상소로 말미암아 공격 대상자인 元斗杓는 물론이고 都堂錄 작성

52) 『孝宗實錄』 卷13-29, 孝宗 5年 11月 庚戌.

53) 『顯宗改修實錄』 卷7-13, 顯宗 3年 5月 庚寅.

54) 『顯宗實錄』 卷5-34, 顯宗 3年 6月 辛亥; 『顯宗改修實錄』 卷7-18, 위와 같은 年月日.

에 참가하였던 大臣들과 吏曹의 堂上官들도 사직상소를 올리는 등으로 정계에 큰 파문이 일어났다. 먼저 左議政 元斗杓은 상소하여 말하기를 근래 都堂(弘文) 錄 圈點時에 3公과 議政府 西壁⁵⁵⁾(參贊), 吏曹의 堂上官(判書·參判, 參議), 大提學 등 7명이 참가하였는데 그의 아들 元萬里가 6點을 받았다는 것과⁵⁶⁾ 다만 옛날의 大臣(李浚慶)처럼 적극적으로 아들 이름을 빼버리지 못한 점이 매우 부끄럽고,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私情에 따랐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니 파직하여 달라는 것이었다.⁵⁷⁾ 이어서 領議政 鄭太和, 右議政 鄭維城, 右參贊 洪重普, 吏曹判書 洪命夏, 吏曹參議 俞燾 등도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顯宗은 그들을 말렸다. 그 중에서 吏曹判書 洪命夏는 私情에 따라 圈點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下官에게 誣辱을 당하여 낮을 들고 出仕할 수 없으며 名器(官職)를 크게 더럽혔으니 遞職하여 달라고 하였다. 徐必遠이 부적격자로 지목한 4명 중 宋奎濂과 崔攸之는 弘文館 本館錄에도 參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本館錄의 人選에 참가하였던 校理 李敏迪 등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各者 陳疏하였고 臺諫들도 직무태만이라는 공격 때문에 모두 引避하여 혼란이 계속되었다.⁵⁸⁾ 領府事 李景奭도 상소하기를 徐必遠이 疏斥한 崔攸之는 그의 妹夫의 동생인데 인척의 힘으로 參錄되었다고 하니 자신을 파직시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顯宗은 그것이 卿과 무슨 상관이 있는 가라 하고 안심하도록 하였다.⁵⁹⁾ 大司成 徐必遠은 또 다시 상소하여 말하기를 지난 겨울 弘文錄 작성 때 某相公이 某人을 위하여 힘을 쓴다는 말은 항간에 떠돌았고 崔攸之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洗馬職에 있으면서 昭顯世子를 따라 北行하도록 뽑혔으나 老母를 핑계 삼아 備邊司에 호소하여 거기에 빠졌으며, 그 후 崔攸之가 등과 하여 史官으로 천거될 때 反對黨人에 의하여 그것이 문제되었는데 同黨人들이 그를 구원하였지만 관직에 있는 者가 비록 그런 일에 自願하지는 못할지언정, 뽑힌 후에 그것을免하려 할 수 있는 가라 하고, 그가 비록 臺諫에는 있었다지만(冒居兩司) 玉堂은 極選이라 결코 안된다

55) 『經國大典』卷3, 禮典, 京外官會坐에 의하면 堂上官들의 會坐時의 좌석이 正1品은 北, 從1品(贊成)은 東, 正2品(參贊)은 西, 正3品은 南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西壁이라 함은 西坐하는 參贊을 의미한다.

56) 7명 중 元斗杓 만이 否票를 던졌다는 의미.

57) 註 54.

58) 『顯宗實錄』卷5-35, 36 顯宗 3年 6月 癸丑, 甲寅.

59) 『위의 책』卷5-36, 顯宗 3年 6月 乙卯.

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景奭은 崔攸之가 史官으로 천거될 때에도 그를 經筵에서 힘껏 도와주었다는 것이었다.⁶⁰⁾

그 후에도 領府事 李景奭의 上疏는 거듭되었으나 대체로 崔攸之를 伸救하는 것이었고, 左議政 元斗杓도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지난날 尹斗壽도 재상으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 暄을 己亥年 弘文錄에 參錄시켰고 尹昉 또한 宰相 때 그의 孫子 擡와 그의 조카 順之를 甲子年 弘文錄에 參錄시켰으며 吳允謙도 相位에 있으면서 그의 사위 具鳳瑞를 丁卯年의 弘文錄에 參錄시켰고 鄭太和도 相位에 있으면서 그의 동생 萬和를 丁酉年의 弘文錄에 참여시켰으며 그 자신(元斗杓)도 相位에 있으면서 사위 李敏敍를 역시 弘文錄에 올린 바 있는 등으로 그것이 古今의 通例之規인데 아들 萬里의 參錄을 私情에 의한 것이라고 배척하니 뜻밖이라는 것이다. 거기 대한 당시의 여론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즉 元萬里는 勳貴의 아들로서 평소 儒雅之稱이 없었고 비록 臺閣을 거쳤으나 인망이 매우 가벼워서 弘文館 本館錄에 오르지 못한 것을 都堂錄에 등재하였는데도 元斗杓은 先朝 名相의 사례를 인용하여 스스로를 해명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史官도 논평하기를 徐必遠이 상소하여 元萬里를 배척한 것은 그가 相臣의 아들로서 弘文館 本館錄에 參錄되지 못하였는데도 都堂錄에 등재된 것을 말함이며 그가 인용한 尹昉 등의 경우는 모두 本館錄에 있는 사람을 都堂錄에서도 그대로 參錄시킨 것으로 그 사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었다.⁶¹⁾

결국 顯宗도 여론에 따라 崔攸之를 용렬한 사람으로 보아 玉堂 清選에 맞지 않는데도 李景奭 한 사람 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李景奭은 顯宗에게 불러 가서 만난 자리에서 都堂錄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相避之規가 없었다는 것과 徐必遠의 말은 후일 폐단이 생기게 될 것이라 하였다. 또 元萬里 등을 지금 玉堂관원으로 임명한들 어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라 하고, 거기 대하여 在野의 宋時烈과 宋浚吉등에게 下問하시면

60) 『위의 책』 卷5-38. 顯宗 3年 6月 壬戌.

(徐必遠의 첫 번째 上訴에서 崔攸之가 姻婭之力으로 參錄되었다고 하였으나, 妹夫의 동생은 姻婭間이 아니고 連家(또는 連臂)間일 뿐이므로 두 번째 상소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61) 『위의 책』 卷5-40. 위와 같은 年月日.

62) 『위의 책』 卷5-43. 顯宗 3年 7月 丙子.

반드시 공정하게 대답할 것이라 하였다. 여기 대한 당시의 여론은 李景奭이 대신으로 있으면서 徐必遠으로부터 준엄하게 배척을 당하여 오로지 문을 닫고 自省하여야 하거늘 6차례나 임금에게 筭子를 올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고, 또한 宋時烈 등에게 下問하도록 청하여 崔攸之가 玉堂 관원으로 임용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니 구차함이 심하다는 것이었다.⁶³⁾ 그로부터 18일후 顯宗은 重臣들을 모아서 玉堂人員의 신규등록에 관한 일을 下問하였다. 南九萬과 李敏敍는 領府事 李景奭이 지난번에 그것을 在野 儒臣(宋時烈과 宋浚吉)에게 묻자고 한 것은 禮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면서 반대하였고 鄭太和는 首相으로 있으면서 妹子를 得參하게 한 사람이라 自處하면서 발언을 삼가하였다. 洪命夏는 4인의 弘文錄을 삭제하자고 하였고 鄭維城은 都堂錄 작성에는 相避法이 적용되지 않는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써 그들을 삭제할 수 있는가라 하였으며, 李敏迪과 趙復陽도 後弊를 우려하여 삭제를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顯宗은 多數說에 따라 그들을 임용하도록 銓曹에 下命하였다.⁶⁴⁾ 顯宗 10年 12月の 都堂(弘文)錄에서는 13명을 取錄하였는데 그 중에서 李柙은 가장 열등하였고, 申厚載도 學士가 아니었으나 許積의 妹子로서 許積이 외척인 金萬基 兄弟에게 청탁하여 參錄되었기 때문에 識者들이 비열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⁶⁵⁾ 顯宗 13年 6月の 弘文館 本館錄에서는 19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득점(5點)을 한 趙師錫은 吏曹錄에도 뽑혔으며 그후 都堂錄에서도 최고점(6점)으로 뽑혔다.⁶⁶⁾

肅宗時代에도 여러 차례 弘文錄에 등재할 人士를 뽑았는데 肅宗 元年 5月에는 副提學 洪字遠을 비롯한 玉堂 官員들이 20명을 뽑아서 弘文錄을 만들었고 다음 달에는 都堂에서 그중 5명을 取하였는데 5명중 柳命天은 弘文館 本館錄에 없던 사람이었으나 許積에게 부탁하여 都堂錄에 들었다고 하였다.⁶⁷⁾ 또 肅宗 元年 7月에는 玉堂에서 16명을 취하여 弘文 本館錄에 등재하였고, 同年 10月에는 都堂에서 위 弘文錄에 근거하여 17명을 취하여 都堂錄에 등재하였다.⁶⁸⁾ 또 肅

63) 『위의 책』 卷5-43, 顯宗 3年 7月 丁丑.

64) 『위의 책』 卷5-48, 顯宗 3年 7月 乙未.

65) 『위의 책』 卷17-46, 顯宗 10年 12月 壬申.

66) 『위의 책』 卷26-6, 顯宗 13年 6月 戊戌(이때의 都堂錄에서는 모두 21명이 등재되었다).

67) 『肅宗實錄』 卷3-47, 肅宗 元年 5月 甲子 : 『위의 책』 卷4-6, 肅宗 元年 5月 戊戌.

宗 3年 2月과 5年 正月에도 玉堂에서 弘文錄 등재를 위하여 10명과 15명을 취하였고, 肅宗 5年 6月에는 都堂에서 13명을 뽑아 都堂錄에 등재하였다.⁶⁹⁾

弘文本館錄에 빠졌던 사람을 都堂錄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孝宗代와 顯宗代에도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淸職의 人事權을 둘러싸고 大臣 측(都堂 및 吏曹의 堂上官)과 館閣 측(3品 이하)의 대립이 있었으나 肅宗 元年 10月에도 尹鏞가 그 무렵의 都堂錄에서 몇 사람의 적격자가 빠졌다고 하면서 孝宗 때의 先例를 내세워 首相이 加點하여 未達圈數를 채워서 수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首相인 許積은 적격자 3인이 누락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領相多圈制가 옛 規則이기는 하지만 이미 폐지된 것이므로 그것을 복구하기도 어려우니 後日의 弘文錄에 參錄되게 함이 옳다고 하였다. 尹鏞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用人權은 君主에게 있으므로 비록 弘文錄에 參錄되지 못한 者라도 적격자가 있으면 領相으로 하여금 添圈(加點)하게 하거나 임금의 특명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는가 라 하였다. 許積은 그러한 예외적인 조치가 先例가 있다고 하여 자주 행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肅宗은 尹鏞의 의견에 따르고자 하였으나 許積은 臺諫에서 문제삼을 것이라 하면서 諫하였으므로 결국 許積의 의견에 따랐다. 許積은 또 말하기를 윤휴가 적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4인 중 李瑞雨는 大北派의 子孫이라서 더욱 안된다고 하였다. 여기 대한 肅宗實錄의 記事者(史官)의 의견은 윤휴가 그의 심복인 李壽慶을 처음에는 吏曹錄에 등재시켜 銓郎을 삼고자 하였으나 郎僚들이 그것을 막자, 都堂(弘文)錄에 넣고자 하는 등으로 道理가 부족한 사람이라 評하였다.⁷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肅宗政權下에 있어서도 言官들의 견제 기능이 매우 컸다는 것과 光海政權 몰락 후 大北派 人士는 완전히 廢錮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肅宗 6年 5月에 玉堂에서 弘文錄에 등재할 사람으로 11명을 뽑았고 같은 해 6月에는 都堂에서 12명을 취하여 都堂錄에 등재하였는데 弘文都堂錄에서는 本館

68) 『위의 책』 卷4-33, 肅宗 元年 7月 乙巳 : 『위의 책』 卷4-50, 肅宗 元年 10月 乙卯.

69) 『위의 책』 卷6-10, 肅宗 3年 2月 庚申 : 『위의 책』 卷8-2, 肅宗 5年 正月 丙午 : 『위의 책』 卷8-30, 肅宗 5年 6月 乙卯.

70) 『위의 책』 卷4-53, 肅宗 元年 10月 己未.

錄에서 取한 11명 중 2명을 탈락시키고 3명이 추가하였던 것이다. 또 6년전 尹鏞가 적격자라고 주장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1명(李后沅)이 포함되었다.⁷¹⁾ 그러나 이때 肅宗은 備忘記를 내려 典籍 李師名이 전일 柑製와 庭試에서 거듭 수석 합격을 한 文才가 특이한 사람인데 이번에 都堂에서 弘文錄을 작성할 때 넣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領議政 金壽恒은 筭子를 올려서 말하기를 國王이 指名하여 圈點을 하도록 함은 부당하며 後弊가 많을 것이므로 임금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스스로 成就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肅宗은 그 말에 따라 명령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都堂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⁷²⁾ 이와 같이 大臣들의 협조 없이는 玉堂의 관료 한 사람도 國王 마음대로 임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肅宗 7年 7月에도 玉堂(副提學 李翊相 등)에서 弘文錄에 등재할 사람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 李玄紀는 南人 尹鏞와 가깝다고 하여 都堂錄에서 빼버리고 韓泰東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졌으며⁷³⁾ 나머지 8명에도 都堂에서 7명을 추가하여 都堂錄을 작성하였다. 이 때에 1년전인 肅宗 6年 6月의 都堂錄에서 빠진 權斗紀와 李彦綱이 이번에는 弘文 本館錄에 재차 參錄되어 都堂錄에도 무난하게 등재되었던 것이다.⁷⁴⁾ 肅宗 11年 11月의 都堂(弘文)錄에서는 崔奎瑞, 金昌集 등을 비롯한 15명을 뽑았는데⁷⁵⁾ 그 후 오랫동안 弘文錄選에 관한 記事가 實錄上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肅宗 23年 正月의 實錄 記事에 의하면 弼善 李鼎命이 사직 상소를 올려 弘文錄은 한 시대의 極選이나 年少 名流들간에 人選을 둘러싸고 심한 알력이 있었다고 하였다. 즉 그가 弘文館의 東壁(應教 또는 副應教)⁷⁶⁾으로 있을 때 長僚(副提學)는 公論에 따라 10여명을 선정하였는데, 그 후의 등

71) 『위의 책』 卷9-36, 肅宗 6年 5月 己亥 : 『위의 책』 卷9-56, 肅宗 6年 6月 丁卯.

72) 『위의 책』 卷9-53, 肅宗 6年 6月 丙寅.

73) 2년 후인 肅宗 9年 4月, 西人이 老論과 少論으로 分黨할 때 韓泰東은 少論에 가담하여 後日 少論의 영수가 되었다.

74) 『앞의 책』 卷12-3, 肅宗 7年 7月 戊辰 : 『위의 책』 卷12-19, 肅宗 7年 9月 庚午.

75) 『위의 책』 卷16-50, 肅宗 11年 11月 壬申.

76) 『經國大典』 卷3, 禮典, 京外官會坐에 의하면 正3品衙門인 弘文館의 會坐의 경우 長官인 副提學은 北坐, 4品인 應教, 副應教는 東壁, 5품, 6品인 校理, 副校理, 修撰, 副修撰은 西壁으로 되어 있다.

료들의 의견이 엇갈려 小人云云으로 감정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다.⁷⁷⁾ 都堂錄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영의정이나 大提學은 반드시 人選에 참가하여야 했으므로 그들이 모두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人選을 할 수가 없었다.⁷⁸⁾

肅宗 時代는 黨爭이 격화되었던 때로서 弘文館 官員의 人選時에 本館이나 都堂을 막론하고 黨派의 色目에 따랐으므로 분쟁이 생겼고⁷⁹⁾ 그로 인하여 玉堂人員에 공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⁸⁰⁾ 肅宗 34年 11월에 都堂에서 李緯·李眞儉·吳命恒·李世瑾 등 15명을 取하였는데 그들의 面面은 西人(老論·少論) 일색이었다. 肅宗 39年 2월에 副提學 權尙游 등이 洪錫輔 등 19명을 取하였고, 肅宗 43年 8월에도 兪錫基 등 10명을 取하였는데 이 때에도 南人系 人士는 거의 배제되었으므로 분쟁은 西人系의 分派인 老少論 間에 있었던 것 같았다.⁸¹⁾

肅宗 42年 10월에는 前日의 都堂錄을 다시 작성(改圈)하라는 王命이 내렸다. 그 이유는 大提學이 서울에 없어서 提學이 人選을 代行하였는데 그것이 先例에 어긋난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⁸²⁾ 그리하여 都堂에서는 弘文錄에 등재할 인원을 다시 뽑았던 것 같았는데 여기 대하여 修撰 沈珙은 상소하기를, 대개 都堂錄은 의정부에서 실제로 주관하는 것이고 銓官 및 館閣堂上은 참여하는 것으로 종전에도 大提學(文衡)이 不參하여 提學이 獨參한 경우가 非一非再하였는데, 그것이 違例라면 왜 大提學을 새로 差出하지 않았는가, 또 改圈하여 10명까지 뽑았으나 人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⁸³⁾

景宗 卽位年 10월에 都堂에서 13명을 뽑아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거기 대한 史臣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즉 都堂錄의 古例는 議政府와 6曹 등의 堂上관이 먼저 모이고 大臣(三議政)은 맨 나중에 들어가는 것인데 정승 金昌集은 새벽에 먼저 가서 종일 여러 堂上관을 맞이하였으며 저녁이 되어서야 完圈되었지만 都堂錄에 등록된 사람 중에는 世累가 있거나, 아첨하는 사람, 병어리 같은 사람들

77) 『肅宗實錄』 卷31-2, 肅宗 23年 正月 己未.

78) 『위의 책』 卷33-47, 肅宗 25年 11月 辛丑.

79) 『위의 책』 卷38下-47, 肅宗 29年 11月 戊辰.

80) 『위의 책』 卷38下-49, 肅宗 29年 12月 甲戌.

81) 『위의 책』 卷53-13, 肅宗 39年 2月 癸酉; 『위의 책』 卷60-25, 肅宗 43年 8月 戊子.

82) 『위의 책』 卷58-37, 肅宗 42年 10月 癸巳.

83) 『위의 책』 卷59-42, 肅宗 43年 6月 丙戌.

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⁸⁴⁾ 都堂錄이 작성된 이튿날 위 13명 중 7명이 副應教·副校理·修撰·副修撰 등 玉堂人員이 되었고, 1명이 獻納(諫官)으로 임명되었다.⁸⁵⁾ 景宗 3年 8月の 弘文本館錄에서는 15명을 取하였는데, 그 중 1명이 兪官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都堂錄에서 빠지고 5명이 추가되었다.⁸⁶⁾

英祖 2年 11月の 弘文錄에서는 10명을 取하였는데 그 중 1명이 準點, 9명이 次點으로 되어 있다.⁸⁷⁾ 또 英祖 20年 5月에는 兪의정 金在魯 등이 都堂에 모여서 25명을 간택하여 弘文錄을 만들었는데 圈點 결과는 6點이 2명, 5點이 23명으로 5點 이상을 取하였다. 그러나 英祖는 그 중에서 친필로 5명의 이름을 삭제하고 나머지 各者의 이름 밑에 入字를 써넣었는데 그것은 李齋華가 本館錄에는 들어 있었으나 都堂錄에는 빠졌기 때문이라 하였다.⁸⁸⁾ 이와 같이 英祖가 館閣과 大臣들이 거듭 모여서 작성한 弘文錄을 加減하였다는 點은 18세기 중엽, 통치권이 臣權의 弱化和 君權의 強化를 의미하는 轉換期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英祖 22年 11月に 兪의정 金在魯, 右議政 鄭錫五 등이 備邊司에 모여서 都堂錄 작성을 위한 會圈을 하였는데 의견 통일이 되지 않아서 밤늦게 까지 토의하다가 결론 없이 罷坐하였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날 兪의정 金在魯가 英祖에게 上筭하기를 어제 동료 재상들이 弘文本館錄에서 取한 人員數가 타당하지 못하므로 먼저 人員數를 전과 대비하여 정한 후에 圈點을 의논하자 하였고, 자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묻지 않고 인원수만 미리 정하는 것은 事理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논란만 거듭하다가 밤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라 하고 大臣들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都堂錄이 작성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므로 송구스럽고 부끄러워 몸들 바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右議政 鄭錫五도 上筭하여 말하기를 黨習이 이 지경에 이르러 官職·名利가 고르게 안배되지 못하고 특정 당파에 치우쳐 있으니 이는 英祖의 탕평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英祖는 재상들이 서로 和合해야 國事가 잘 수행된다고 하고 都堂

84) 『景宗實錄』卷2-5, 景宗 卽位年 10月 甲午.

85) 『위의 책』卷2-5, 景宗 卽位年 10月 乙未.

86) 『위의 책』卷13-4, 景宗 3年 8月 辛亥.

87) 『英祖實錄』卷10-25, 英祖 2年 11月 壬辰.

88) 『위의 책』卷59-30, 英祖 20年 5月 丙申.

錄에 참여한 卿宰를 모두 불렀다.89)

이 때 英祖는 당과의 색깔에 따라 안배하여 人選하는 것(互對之政)도 역시 色目之心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오로지 才能만을 기준으로 하여 임용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색간에 안배하는 것은 좋으나, 수적인 안배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色目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영의정 金在魯는 하늘이 人材를 낼 때 어찌 이쪽 저쪽이 있겠는가 라 하였고 鄭錫五는 丁未(英祖 3年) 이후 처음으로 인사 안배(互對之政)를 행하였는데 임금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그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英祖는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그 때는 調和를 도모할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으나 지금은 분쟁을 해결해야 함이라고 하고 卿들은 300년이래 없었던 일(재상들간에 다투면서 都堂錄을 작성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 물론 精選해야겠지만 人材를 널리 취하여 반드시 今日 중으로 都堂錄을 작성하라고 하였다. 吏曹判書 鄭羽良도 人事行政에 있어서의 數的 안배는 좋은 일이 못된다고 하였고 英祖는 인재를 취함에 있어서 家閥로서 하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하니 뽑힌 사람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卿들을 문책하겠다고 하여 諸臣들이 물러가서 會圈하여 모두 28명을 취하였는데 6點이 5명이고 나머지는 5點이었다. 그 중에서 李毅中(5點)은 이전의 奉教였는데 金在魯의 소청으로 6품에 승진하였고, 成天柱(5點)는 이전의 說書로서 鄭羽良의 소청으로 역시 6품으로 승진한 것이라 하였다.90) 그 날 英祖는 都堂錄 單子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면서 옛날에 18學士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28學士가 있다고 하자 修撰 洪益三은 그 중에서 李應協이 비록 글은 잘하나 평소 狂氣가 있어 때때로 발작하니 결코 經筵에 참석시켜서는 안된다 라 하였고 李衡萬이 비록 才華가 있으나 年少文官이라 人望이 없다고 하니 英祖는 심한 소리라 하고 그 말을 정지시켰다.91)

89) 『위의 책』 卷64-18, 英祖 22年 11月 戊戌.

(金在魯는 1721년, 辛丑士禍에 피해를 입은 골수 老論系이고 鄭錫五는 鄭太和(生家), 鄭致和(養家) 兄弟의 曾孫임으로 위 金在魯와 같은 黨色이라 볼 수도 있으나, 그의 祖父는 孝宗의 사위인 東平尉 鄭裁嵩이므로 王室의 外孫이다)

90) 『위의 책』 卷64-19, 英祖 22年 11月 庚子.

91) 위와 같음.

英祖 26年 8月에도 弘文錄 작성이 지연되자 英祖는 “弘文錄 작성이 儒臣들의 掌中之事가 아니며 그것은 國朝의 公錄인데 어찌 감히 그들의 私的인 생각에만 맡길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결국 弘文館에서 17명을 取하여 本館錄을 작성하였고 이어서 都堂錄을 작성할 때 英祖는 人選時의 黨的 안배는 옳지 못하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⁹²⁾ 英祖 33年 10月, 弘文錄 작성시에는 20명을 뽑았는데 그 때 玉堂의 長官이었던 副提學 金陽澤과 副應教 鄭尙淳은 人選過程에 불만이 있었던지 여러 차례 왕명이 있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아서 그들을 地方官(府使·縣監)으로 轉補하고 金致仁和 洪梓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여 會圈하게 한 것이다.⁹³⁾ 英祖 37年 10月 領議政 洪鳳漢의 보고에 의하면 그 무렵 弘文錄에 등재된 인원이 심히 많아서 侍從이 400餘人이나 된다고 하고 이는 人事 담당관이 公議를 돌보지 않고 顔面과 私情으로 通淸하기 때문이라 하였다.⁹⁴⁾ 그럼에도 그때 또 都堂에서 圈點으로 17명을 取하였다.⁹⁵⁾

正祖 4年 2月에는 副提學·副應教·副校理·修撰·副修撰 등 玉堂官員 7명이 圈點을 행하여 6點 이상 者 6명을 취하여 弘文錄에 등재하였고 이들 후에 領議政 金尙喆을 비롯하여 左議政과 左參贊 겸 弘文提學(黃景源), 吏曹參判·吏曹參議·吏曹佐郎 등 6명이 모여서 全員一致(각 6點)로 위 6명을 취하여 都堂錄을 작성하였다.⁹⁶⁾ 正祖 5年 6月에는 副提學을 비롯하여 應教·校理·副校理·修撰·副修撰 등 9명이 玉堂에 모여서 全員一致(각 9點)로 徐龍輔·鄭東浚(并吏曹錄) 등 2명, 8點으로 金載瓚 등 8명을 뽑아 弘文錄에 등재하였고 이어서 領議政(徐命善), 右議政·左參贊·工曹判書·吏曹參判·吏曹參議·吏曹正郎 등 7명이 모여서 圈點을 행하여 弘文館 本館錄에서 뽑은 10명을 그대로 취하여 都堂錄을 작성하였다.⁹⁷⁾

正祖 11年 2月에도 副提學·應教·副應教·副校理·修撰 등 3품에서 6품까지의 玉堂官員 5명이 모여서 弘文錄에 등재할 人員 15명(전원 4점)을 取하였는

92) 『英祖實錄』卷72-4, 英祖 26年 8月 辛卯.

93) 『위의 책』卷90-18, 英祖 33年 10月 壬戌.

94) 『위의 책』卷98-23, 英祖 37年 10月 丙子.

95) 『위의 책』卷98-24, 英祖 37年 10月 癸未.

96) 『正祖實錄』卷9-13, 正祖 4年 2月 丁卯, 己巳.

97) 『위의 책』卷11-86, 正祖 5年 6月 丁丑.

(弘文館本館錄에서 9점받은 2명이 都堂錄에서는 6점을 받았고, 8점을 받은 사람 8명은 5점을 받았다)

데 이때 都堂錄을 작성하기에 앞서 領議政 金致仁이 上筭하기를 都堂錄會圈은 大提學이 주관해야 하나 大提學(文衡)이 결원일 때에만 首相과 提學이 비로소 完錄하는 것이 故例라는 것과 속중 때 그것이 문제가 되어 改錄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지금 大提學이 탄 일⁹⁸⁾ 때문에 會圈에 불참하게 되는 것일 뿐이니 新錄 작성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후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正祖는 사정에 따라 都堂會圈을 首相이 주관한 선례도 있으니 사양하지 말라고 하였다.⁹⁹⁾ 正祖 13年 3月에는 副提學 金載瓚을 비롯하여 應教·校理·副校理·修撰 등 玉堂官員 5명이 全員一致(각 5點)로 10명을 뽑아서 弘文錄에 등재하였고¹⁰⁰⁾ 正祖 16年 3月에도 副提學 이하 副修撰 이상의 玉堂官員 5명이 24명을 뽑아(전원 5點) 弘文錄에 등재하였는데 茶山 丁若鏞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¹⁰¹⁾ 이때 前大提學 吳載純을 連任(仍任)시켜서 都堂錄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상소를 올려서 말하기를 최근 7年 동안에 한번도 빠짐없이 네 차례나 참석하여 圈點을 행하였고 또 大提學 자리는 교체된 후에는 비록 연임하라는 王命이 있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하자, 正祖는 連任은 再任命(復拜)과는 다르니 사임하지 말라고 하였다.¹⁰²⁾ 左議政 蔡濟恭이 右議政 朴宗岳과 都堂會圈에 있어 합의되지 않자, 正祖는 下教하기를 弘文本館錄 작성에는 年少 名官이 會圈하면서 曰可曰否하고 인원수가 많으니 적으니 하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나 당당하게 都堂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大臣들이 卿宰를 거느리고 모여 앉았으나 一錄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라 하고 속히 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시에 正祖는 左議政 蔡濟恭에게 諭示하기를 圈點은 首相과 文衡이 주관하고 僚相(左右議政)과 諸宰(의정부와 6曹의 正·從2品官)가 參論하는 것이 바꿀 수 없는 古例인데도 文衡이 말 한마디 안한다. 卿이 首相이라면 오늘의 會圈이 이미 완료되었겠지만 端揆(右議政)가 이러하니, 평소에 알던 바와는 매우 다르다. 卿이 넓은 아량을 갖고, 처음의 의견 대립을 염두에 두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여 일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라 하고 또 右議政 朴宗岳에게도 諭示

98) 朴嬪 納采 教文 應製인 듯함.

99) 『위의 책』 卷23-22, 正祖 11年 2月 己酉.

100) 『위의 책』 卷27-15, 正祖 13年 3月 甲戌.

101) 『위의 책』 卷34-22, 正祖 16年 3月 辛卯.

102) 『위의 책』 卷34-24, 正祖 16年 3月 乙未, 丙申.

하기를 大提學(文衡)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卿도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진실로 老成한 사람에게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면서 즉시 開坐하여 圈點을 완성시키라고 하였다.103) 그 다음날에도 正祖는 左右相에게 諭示하기를 두 재상이 筵敎에서 서로 증언하는 것이 듣기에 거북하였다는 것과 대개 大臣은 사람을 추천하여 임금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賢人을 추천하고 不肖한 자를 물러가게 하는 때에 의견이 다르다면 내가 마땅히 卿들을 불러 보고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지난 밤 卿들이 말한 것은 이것과 다른 데 있었다.104) 그러한즉 내가 어찌 數的 안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卿들은 王命에만 기대하지 말고 都堂錄을 속히 작성하라고 하였다.105)

그리하여 같은 날 左議政 蔡濟恭, 右議政 朴宗岳, 大提學 吳載純, 左參贊 金華鎮, 吏曹判書 金思穆, 吏曹參判 朴祐源 등 6명이 圈點을 行하여 28명(모두 4點)을 취하여 都堂錄을 작성하였다. 그 가운데는 丁若鏞·金履喬·金達淳·李肇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正祖는 大提學 吳載純에게 不敍之典을 시행하면서106) 下敎하기를 都堂에서의 圈點은 弘文本館錄과는 달라서 밤을 새워서라도 마쳐야 하는 것이며, 무릇 都堂錄은 首相이 비록 圈點을 주관하나 文衡(大提學) 또한 取舍權이 있는데도 會圈에 참가하고서는 딴 곳에 물러앉아 端揆(우의정)로 하여금 수고를 대신하게 하고 左相은 또 引咎納符하니107) 한탄스럽고 애석하다고 하면서 묵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108) 다음날 正祖는 直提學 朴祐源의 건의에 따라 館閣의 관직을 임명받은 사람의 명부를 登瀛錄이라 하고 內閣錄에다 註를 달아 法式으로 하였다.109) 이때 都堂錄에서 뽑힌 28명 중 副校理 李肇源은 상소하기를 都堂會圈은 나라의 큰 政事로서 首相이 주관하고 文衡이 參決하여

103) 『위의 책』 卷34-25, 正祖 16年 3月 丙申.

104) 임금이나 나라를 위하는 생각보다는 私的인 黨利黨略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이다.

105) 『위의 책』 卷34-25, 正祖 16年 3月 丁酉.

106) 不敍之典이란 官僚를 면직시킨 후 再任用하지 않겠다는 뜻(일종의 징계조치)임.

107) 책임을 지고 명령서(符)를 바친다는 뜻으로 곧 감독책임을 지고 물러 나겠다는 것임.

108) 註 105.

109) 『위의 책』 卷34-25, 正祖 16年 3月 戊戌.

충분히 의논하여 어긋남이 없어야 비로소 都堂錄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번의 都堂에서의 合座는 임금님의 꾸지람 때문에 이루어진 節次上的 瑕疵로 말썽이 있으니 自身の 이름을 명부(瀛錄)에서 삭제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正祖는 批答에서 古規의 파괴는 文衡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¹¹⁰⁾ 이미 힐문한바가 있고 너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正황인 것도 아니며 또한 같이 뽑힌 사람이 너 한 사람도 아닌데 네가 이렇게 하면 좋지 못한 혐의를 입게 되니 사임하지 말라고 하였다.¹¹¹⁾ 4일후 副修撰 金達淳도 상소하기를 都堂에서의 會圈은 文衡이 수수 방관하면서 參決하지 않고, 거기 모인 사람 모두가 緘口하여 可否를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黨色만으로서 人員數의 多寡를 비교하면서 人選하여 人望이 없는 사람들을 섞어서 數를 채웠다는 것이다. 여기 대하여 正祖는 圈點 속에 들어 가 있는 사람이 圈點事를 논의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인가. 만약 자신이 文華와 地處(문벌)가 玉堂의 職任을 맡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태도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 하고 刊改之典(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시행하였다.¹¹²⁾

이와 같은 玉堂의 新進官僚들의 상소에 대하여 會圈의 담당자였던 相臣과 卿宰들은 각기 劄子와 上疏를 올렸다.¹¹³⁾ 먼저 吏曹判書 金思穆과 吏曹參判 朴祐源 등은 상소하여 말하기를 臣들은 都堂 合座의 參圈人으로서 圈點事가 猥雜됨을 눈으로 보면서도 일언반구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罪를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였고 右議政 朴宗岳은 劄子を 올려 말하기를 都堂의 會圈은 나라의 큰 政事로서 文衡이 없으면 首相이 주관하고 左·右相과 參贊·吏曹堂上官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여 의견 통일이 있어야만 完圈하게 되는 것이 바꿀 수 없는 規例인데도 이번에는 常規와 달리 文衡 역시 玉堂 후보 인원에 대한 평가(軒輊)나 人選(取捨)을 하지 못하고 흙으로 만든 人形(泥塑)처럼 앉아 있고, 金人 같이 緘口하였으면서도 完圈하였다고 하니, 公論이 들끓고 서로 비웃으면서 이것은 都堂錄이 아니라고 하여 金達淳의 상소가 나온 것이고 그

110) 大提學의 직무유기로 절차상의 瑕疵가 생긴 것을 뜻하는 듯 함.

111) 『위의 책』 卷34-25, 正祖 16年 4月 己亥.

112) 『위의 책』 卷34-27, 正祖 16年 4月 癸卯.

113) 여기서의 相臣은 正1品인 3議政을 말하고 卿宰는 正2品과 從2品인 吏曹의 堂上官을 말한다.

리하여 自身은 改圈의 故事에 따라 改錄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正祖는 批答하기를 改錄은 안된다고 하였다.¹¹⁴⁾ 또 左議政 蔡濟恭도 筭子를 올려서 말하기를 都堂會圈은 나라의 큰 政事(人事行政)로서 自身은 病이 깊었는데도 재촉하는 王命을 여러 번 거역할 수가 없어 赴坐하였는데 時勢를 헤아리지 못하고 말썽이 있게 되었다는 것과 吏曹의 두 堂上官의 손으로 圈點을 행하게 하였던 바 잡인이 섞여 있다는 것이니 눈에 그것이 보이는데 손이 어찌 圈點을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의 몸에서 손이 눈을 따르지 않아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동료 宰相(右議政을 지칭)이 넓은 아량으로 자신과 協同할 뜻이 있었는데 자신의 處事가 옳았다면 어찌 어제와 같은 右相의 筭擧가 있었겠는가를 반성하고 물러 갈 생각을 굳혔으니 시골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 대하여 正祖는 批答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미 卿에게 일을 전담시켰으니 비록 비방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나 떠들다가 스스로 가라앉을 것이고 王命에 따라 밤 새워 힘썼으니, 어수선하게 보이는 것이 卿의 탓이 아닌데도 卿이 어찌하여 망령되이 이미 한 말을 또 하는가. 동료 재상에 관한 말은 다른 뜻이 없는 것 같으나 吏曹 堂上官의 疏語에 관하여 卿이 「手不從目」이라고 한 말을 반드시 그들이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이고 조정이 조용한 것이 좋으니 年少한 新進方銳의 氣鋒을 卿들이 마땅히 진정시켜야 하거늘 도리어 右相과 左相이 번갈아 가며 筭子를 올리니 大臣들(承佐者)의 寅協之義가 이와 같은가. 卿들은 부끄럽게 여겨라 하고 꾸짖었다.¹¹⁵⁾

이와 같이 弘文館의 官員 任用은 국가적인 큰 政事로 보아서 먼저 副提學 이하 副修撰 이상의 玉堂관료들이 圈點으로 人選을 하여 弘文本館錄을 작성한 후 이를 都堂(정부)에 넘겨서 宰相과 卿宰들이 모여 앉아 또 圈點으로 적격자를 再次 골라서 都堂錄을 작성하였는데 國王은 거기에 등재된 者 만을 골라 玉堂 官僚로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당쟁이 격화되자 그러한 人選過程에서 격렬한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이다.

正祖 22年 8月에는 副提學 徐龍輔 이하 應敎·校理·副校理 등 5명이 弘文錄을 작성하였는데 4點을 취득한 18명이 뽑혔다.¹¹⁶⁾ 또 純祖 2年 2月에는 고위관

114) 『앞의 책』 卷34-28, 正祖 16年 4月 癸卯.

115) 『위의 책』 卷34-28, 正祖 16年 4月 甲辰.

료인 判義禁府事(1品) 南公轍이 弘文館 副提學이 되었는데 英祖 이후 近 100年間 弘文館 副提學을 재차 맡은 事例가 없다고 한 領議政 沈煥之의 의견에 따라서 南公轍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李翊模를 거기에 임명하였던 것이다.¹¹⁷⁾ 같은 해 같은 달에 副提學 李翊模를 비롯하여 應教·校理·副校理·修撰 등 6명이 또한 圈點을 행하여 5點을 취득한 15명을 뽑아서 弘文錄을 작성하였고¹¹⁸⁾ 같은 해 3月에는 領議政 沈煥之, 左議政 李時秀, 右議政 徐龍輔 등 3公과 左參贊·大提學·吏曹判書·吏曹參判·吏曹參議 등이 會圈하여 6點인 金邁淳과 5點인 朴宗正 등 23명, 도합 24명을 뽑아서 都堂錄을 작성하였는데¹¹⁹⁾ 위 弘文館에서 작성한 弘文錄에 등재된 15명 중 14명(1명 탈락)보다 10명이 더 많다. 純祖 9年 正月에도 副提學 李存秀와 副應教·副校理·修撰 등 4명의 玉堂 判書가 圈點을 행하여 3點인 者 30명을 取하여 弘文錄을 작성하였다.¹²⁰⁾

弘文館은 조선 世宗 2年에 설치되었던 集賢殿의 後身이다. 集賢殿은 宮中에서 古今의 經籍을 모아 才德 있는 人士를 골라 典故에 관하여 토론하게 하고 國王에 대한 顧問과 進講에 대비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官員로서는 領殿事 2人, 大提學 2人, 提學 2人 등 上位職은 모두 他官이 겸직하도록 하였고, 副提學 2人, 直提學·直殿·應教·校理·修撰·副修撰博士·著作郎·正字 등 인원수는 불과 10명 정도로서 모두가 經筵官을 겸직하였으며, 그 후 官員數의 증감이 있었으나 世宗 18年에 20명이 되어 10명은 經筵官을 겸하였고 나머지 10명은 書筵官을 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世祖 2年 集賢殿은 혁파되고 그 대신 同王 9年에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弘文館을 두어서 藝文館의 奉教 이하의 官員이 弘文館의 博士·著作·正字를 겸하게 하여 臧書 관리를 시켰고, 成宗 元年에 藝文館에 副提學 이하 修撰 까지 17명의 官員을 두어서 文翰과 經筵, 記注 등의 일을 맡겨서 集賢殿의 故例와 같이 하였다. 成宗 10年에는 이를 弘文館의 소관으로 하여 領事

116) 『위의 책』 卷49-26, 正祖 22年 8月 丁巳.

117) 『純祖實錄』 卷4-6, 純祖 2年 2月 己酉.

弘文館의 官僚들은 스스로를 「侍從淸華之班」이라 하여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로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그러한 官職에 취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肅宗實錄』 卷4-52, 肅宗 元年 10月 己未).

118) 『위의 책』 卷4-7, 純祖 2年 2月 己巳.

119) 『위의 책』 卷4-8, 純祖 2年 3月 庚辰.

120) 『위의 책』 卷12-11, 純祖 9年 正月 庚寅.

1人を 두고 議政이 겸직하였으며 大提學 1인, 提學 1인도 모두 他官이 겸직하도록 하였고, 副提學이 玉堂의 長官으로서 北坐하였으며 應敎와 副應敎를 東壁이라 하였고, 校理로부터 副修撰까지를 西壁이라 하였으며, 博士로부터 正字까지를 南床이라 하여 모두 經筵官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副提學에서 副修撰까지는 知製敎를 겸하도록 하였다. 燕山君 때 弘文館은 혁파되어 藝文館의 關원이 겸직하였다가 中宗 卽位初에 弘文館이 복구되어 領事 이하가 모두 經筵과 春秋館의 關원을 겸직하였다.¹²¹⁾ 이때 복구된 弘文館의 職制와 그 關원의 職務는 조선왕조 말엽까지 변동없이 존속되었던 것이다.

2. 大提學 圈點

弘文館의 실무상의 長官은 副提學이었지만 他官兼職인¹²²⁾ 弘文館의 大提學은 한 시대의 학문과 덕행 및 지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官職으로 玉堂官僚의 人選에 참여하고 湖堂人員(讀書堂)을 뽑으며¹²³⁾ 經筵에 참여하는 등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國王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고 前任 大提學을 비롯한 高位官僚들이 모여서 圈點(선거)을 행하여 선출하였다. 물론 弘文館의 設立 당초부터 大提學의 地位가 그러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즉 世祖 9年 11月 同知中樞院事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종래의 臧書閣을 弘文館으로 개칭하면서 大提學·提學·直提學·直館·博士·著作郎 등 각 1명과 正字 2명 등의 官員을 他官兼職으로 두었는데¹²⁴⁾ 이때의 弘文館 大提學은 도서관장의 성격을 지닌 데 불과하였으므로 그 선임 방법이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成宗 때에는 弘文館 大提學이 文衡을 담당하고 文翰을 총괄하면서¹²⁵⁾ 그 선임도 國王을 비롯한 大

121) 『增補文獻備考』 卷221-3 職官考8, 館閣2, 弘文館.

122) 大提學은 議政府의 贊成(종1품), 參贊(정2품)이나 6曹의 判書, 기타 卿宰(정·겸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大臣(정1품)이 겸하는 수도 있다. 『成宗實錄』 卷263, 成宗 23年 3月 己丑 및 『肅宗實錄』 卷23-3 肅宗 17年 正月 辛丑.

123) 『肅宗實錄』 卷4-52, 肅宗 元年 10月 己未에 玉堂官僚인 修撰 沈壽亮은 상소하기를 자신을 「侍從淸華之班」이라 하였다. 湖堂(讀書堂)에 뽑힌 사람도 대개는 玉堂人員이었다.

124) 『世祖實錄』 卷31-26, 世祖 9年 11月 辛未.

臣과 卿宰들의 큰 政事가 되었다. 成宗 23年 3月, 大提學 魚世謙이 喪을 당하여 辭意를 표하였으므로 새로운 大提學을 뽑을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뽑는다면 누가 적격자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大臣과 卿宰들간에 열띤 논의가 있었다. 먼저 尹弼商은 盧公弼·李封·洪貴達·柳洵 등을 거명하였고, 吏曹에서는 盧公弼도 좋지만 洪貴達과 柳洵 중에서 선택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成宗은 文臣들에게 널리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활발한 건의가 있었던 것이다. 任元濬은 학문이 해박하면서도 製述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학문이 깊지 못하더라도 文詞에 능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그 둘을 모두 갖추기가 어려우니 文翰을 주관하는 者가 반드시 詞賦의 技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古今之事에 통달한 사람이면 괜찮다고 하였다. 또 職級은 行守法이 있으니 반드시 정2품이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博學多識한 사람으로서 許棕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洪貴達·柳洵·成倪·權健·申從濩 등이니 이들에게 文柄(大提學)을 맡김이 좋겠다고 하였다.¹²⁵⁾

또 柳子光·成健·朴安性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大提學이 喪을 만났다고 하여 바꿀 것이 아니고 提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代行시키고 魚世謙이 3년상을 마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朴崇質과 任士洪은 건의하기를 文衡之任(大提學)은 비록 적격자라도 職位가 낮으면 人望이 不重하고 年少하면 사람들이 輕視하니,三公 중에서 經術이 博學한 자가 있으면 그 임무를 맡기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魚世謙이 脫喪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고, 만약 꼭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洪貴達·柳洵·權健·申從濩·成倪 등이 모두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尹愨은 文衡之任은 비단 재능 있는 者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인망과 덕행이 다 갖추어야만 하니 右議政 盧思愼이 덕망과 관직이 높으며 많은 책을 읽어 文章도 典雅하므로 근년의 鄭麟趾·申叔舟·崔恒 등의 예에 따라三公으로서 大提學을 겸무하게 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李叔威도 앞에서 거명된 사람들이 모두 文衡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나 右議政

125) 文衡이란 典試官을 의미하였는데, 후일 大提學이 玉堂, 湖堂 등 人員의 선발을 주관하게 되자 大提學의 별칭이 되었다.

126) 『成宗實錄』 卷263-19, 成宗 23年 3月 己丑.

盧思愼이 宗匠의 큰 인물로서 가장 적격자라고 하였다. 金礪石과 金應箕를 비롯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洪貴達이 文衡을 맡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李繼孟·李世銓 등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 盧思愼을 천거하였지만 成宗은 洪貴達을 大提學으로 임명하였다. 이를 두고 史官이 평하기를 洪貴達이 젊을 때 부터 著述에 힘을 써서 詩文에는 능하나 食蹟하여 덕망이 부족하다고 하였다.¹²⁷⁾

中宗 11年 4月에도 右議政이 겸직인 大提學을 사임하였으므로 國王은 領議政과 左議政 및 府院君에게 누가 大提學이 되는 것이 좋은지를 물었다. 柳洵은 정승이 大提學을 겸직한 前例도 있고 또 大提學의 소임은 製述만이 아니고 事大交隣 등 소관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승이 종전대로 겸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鄭光弼도 대체로 같은 의견이었으나, 그 외 大提學으로 합당한 사람은 金銓·南袞 등이라 하고 특히 南袞은 지금 학문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다. 金應箕는 大提學이 正2品の 관직이므로 정승이 겸직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大提學을 맡을 만한 사람은 南袞이라 하였다. 또 盧公弼도 정승이 大提學을 겸직하는 것은 통상의 예가 아니며 정2품으로서 大提學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右相이 그것을 사임하는 것은 옳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中宗은 右議政이 大提學 겸직을 굳게 사양하고 또 그것을 맡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를 해임하고 南袞을 大提學으로 임명하였다.¹²⁸⁾

이와 같이 大提學은 國王이 大臣과 卿宰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그러나 圈點으로 大提學을 선임하는 체도가 성립된 것은 中宗 26年 12月이라 할 수 있다. 그때 國王의 명령에 따라 영의정 鄭光弼, 좌의정 張順孫, 우의정 韓效元, 좌찬성 金璫, 우찬성 尹殷輔, 좌참찬 趙元紀, 이조판서 金謹思, 호조판서 洪淑, 예조판서 孫澍, 병조판서 洪彦弼, 형조판서 朴壕, 공조판서 安潤德 등이 빈청에서 金安老·洪彦弼·李思鈞·蘇世讓 등 大提學 후보자를 대상으로 圈點을 행하였는데 金安老가 5圈, 洪彦弼이 4圈 기타는 각 1圈으로 金安老가 최고점이었으므로 中宗은 그를 同知經筵事, 弘文館 大提學, 藝文館 大提學, 春秋館 成均館事로 임명하였다. 이때 史臣은 평하기를 金安老는 이로부터 威權을 장악하여 세력이 날로 커져서 名卿志士가 많이 귀양가고 죽었으므로 어

127) 위와 같음.

128) 『中宗實錄』 卷24-47, 中宗 11年 4月 癸酉.

떤 사람이 司憲府의 門에다가 글을 쓰기를 「나라의 權柄이 安老의 手中으로 굴러 떨어졌으니 百年社稷에 누가 주인인가」라 하였는데, 이는 대개 어지럽게 한 者는 비록 金安老이지만 그를 임용한 임금의 마음이 어두움에 가려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였다.¹²⁹⁾ 이때 金安老는 上啓하기를 “자신의 성품이 용렬하고 學問도 별로 시원치 않은데 벼슬이 너무 과분하니 災殃이 어찌 없겠는가”라 하고 “지난날 귀양갔을 때 上恩이 至重하여 살아 돌아 와서 六卿(判書)에 복직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차에 이번에 또 大提學에 임명되니 더욱 감당할 수 없고 마음이 몹시 불편하오니 속히 면직시켜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中宗은 “卿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三公 六卿이 어찌 함께 의논하며 천거하였겠는가”라 하고 사임을 允許하지 않았다.¹³⁰⁾

그러나 臺諫에서는 金安老의 大提學 취임을 반대하였다. 즉 “大提學은 한 나라의 文衡을 주관하고 士林의 宗匠이 되는 등 所任이 막중하여 반드시 才德이 겸비한 者가 말아야 하는데 金安老는 전일 禮曹判書 때 議政府와 6曹의 반대로 면직되었음에도 이번에 大提學이 되었으니 그 職任이 어찌 예조판서보다 못하다는 것인가”라 하고 또 “그가 예조판서 자리를 물러난 지 한달 만에 다시금 議政府와 6조의 추천으로 重任을 맡게되었으니 朝廷의 是非와 好惡이 어찌 이와 같이 顛倒되었는가”라 하면서 속히 면직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 대하여 中宗은 前日 議政府와 6조에서 上啓한 것은 金安老가 士林을 모함하였다는 것인데 朝廷上下가 이미 그것을 論斷한 바 있고 또 文衡은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니 지금 만약 前日의 上啓에 구애되어 그를 면직시킨다면 是非가 더욱 더 혼란스럽게 된다고 하였다.¹³¹⁾ 동시에 中宗은 이 문제를 議政府와 6조에서 논의하게 하였던 바 領議政 鄭光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金安老가 처음 예조판서에서 면직되도록 의정부와 6조에서 건의한 것은 귀양갔다 온 사람이 바로 六卿(判書)으로 되는 것이 未便하였기 때문이며, 이번에 그를 大提學으로 천거한 것은 大提學이 우리 나라의 文衡의 주관 者이고, 事大交隣의 外交와 表章文詞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부득이 能文者인 그를 선택하였다는 것과 李荇이 이미 체

129) 『위의 책』 卷72-29, 中宗 26年 12月 戊子, 己丑.

130) 『위의 책』 卷72-29, 中宗 26年 12月 辛卯.

131) 『위의 책』 卷72-30, 中宗 26年 12月 甲午.

직되었고, 조정에 있는 臣下 가운데에서 그 사람 말고 可畧한 사람이 달리 없으므로 議政府와 6조에서 같이 앉아 圈點을 행하여 金安老의 圈點이 제일 많았기에 합의하여 그를 추천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다시금 是非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 하였고 中宗도 同感이라 하였다.¹³²⁾

그로부터 2年後인 中宗 28年 9월에 金安老는 人事部署의 長官인 吏曹判書로서 또한 大提學을 겸직하였는데, 이러한 중요한 보직을 겸직하는 것은 自身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未安하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였으나 國王은 大提學의 소임은 비록 덕망이 있더라도 才幹이 부족하면 안되는 것이니 사임하지 말라고 하였다.¹³³⁾ 또 2년 후인 中宗 30年 10월에는 金安老가 左議政으로서 大提學을 여전히 겸직하고 있었는데 정승의 자리는 국정을 총람하여 임무가 막중하고 大提學도 斯文(儒學)의 宗匠으로 士林의 모범이 되는 者 만이 맡을 수 있는 重任이므로 不足한 自身(金安老)으로서 이 두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 면직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中宗은 “정승의 임무와 大提學의 임무가 모두 重하나 근래 조정에서 事故가 多端한 이때에 辭避할 수 있는가”라 하고 사임을 允許하지 않았다.¹³⁴⁾

그러나 문제는 그 이듬해인 中宗 31年 12월에 발생하였다. 그때 中國에서 使臣이 오게 되었는데 司諫院에서 上啓하기를 “文臣인 明使가 오면 그 접대를 大提學 책임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접대의 소임에 大提學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정승이 대제학을 겸직하였을 때에는 義州로 마중 가는 遠接使는 맡기 어렵지만 館伴은 전에 朴元亨이 左議政으로 있으면서 맡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不可한가”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中宗은 同意하면서도 大臣들에게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領議政 金謹思는 “三公이 館伴을 맡은 前例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先朝 때 朴元亨이 左議政으로서 그것을 맡았다면 지금도 金安老가 館伴이 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古事를 詳考하여 처리함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당사자인 左議政(兼 大提學) 金安老는 그것을 맡을 수 없다고 하였고 右議政 尹殷輔는 文臣인 明使를 接伴하는 것은 과연 大

132) 『위의 책』 卷72-31, 中宗 26年 12月 戊戌.

133) 『위의 책』 卷76-8, 中宗 28年 9月 壬戌.

134) 『위의 책』 卷80-48, 中宗 30年 10月 癸丑.

提學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정승이 館伴이 되는 것은 前例가 없으며 朴元亨이 接伴使가 되었다고는 하나 그가 정승이 아니었을 때라는 말도 있으니 朴元亨이 의정으로서 館伴이 되었다면 지금도 舊例에 의하여도 무방하겠지만 古事를 詳考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한 承政院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各年の 謄錄에서 정승이 館伴이 되었던 일의 有無를 살펴본즉 天順 3年(世祖 5年)에 朴元亨이 刑曹判書로서 遠接使와 館伴이 되었고 天順 8年(世祖 10年)에는 그가 禮曹判書로서 그것을 맡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朴元亨이 세번 遠接使가 되었다고 하는데, 또 한번은 謄錄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承政院 謄錄에 기재된 것은 이것뿐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中宗은 “謄錄에서는 朴元亨이 정승이었을 때 遠接使가 되었음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정승이 館伴이 된 前例가 없다는 것인즉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 하고 3公들이 다시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左議政 金安老는 上啓하기를 大提學은 正2品の 官職으로 成均館 知事 등이 겸직할 관직이며 遠接使의 임무는 마땅히 才華之人을 임용해야 완수할 수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 翰墨之任은 반드시 年少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자신은 폐업한지 오래되었다는 것, 그리고 점차로 늙어져서 明使를 접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3公은 所任이 따로 있으니 明使가 入國할 때 領議政이 碧蹄에 가서 맞이해야 하고 그가 돌아 갈 때에는 左相(자신)이 碧蹄에서 전송해야 하는 것이 前例이므로, 自身이 편하자고, 또한 自尊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그는 3公이 遠接使와 館伴이 되는 것은 前例가 없으므로 속히 자신의 文衡之任(大提學 겸직)을 면직시켜 이번에 遠接使나 館伴을 맡을 사람을 골라서 大提學을 授職함이 심히 편리할 것이라 하였다. 여기 대하여 中宗은 3公이 大提學을 겸직한 전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大提學이 正2品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물며 조정에서 의논하여 모두 大提學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는 것과, 金安老를 明使의 館伴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大臣들은 3公이 館伴이 된 前例가 없다고 하여 그만 두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임하지 말라고 하였다. 동시에 中宗은 議政府의 大臣과 東西壁(贊成과參贊)에게 재차 下問하였던 바 大臣들도 大提學을 가볍게 바꿀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中宗은 金安老에게 그와 같이 傳教하였다.¹³⁵⁾

135) 『위의 책』 卷83-16, 中宗 31年 12月 戊戌.

그러나 大司憲 成倫등이 上啓하기를 朴元亨이 成化戊子(世祖 14年) 4月 左議政으로서 接伴使가 되었음이 그의 行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그때 世祖가 말하기를 “내가 급혀서 卿을 接伴使로 삼았는데 卿의 생각이 어떠한가”라 하였고 朴之亨이 대답하기를 議政이 接伴使가 되었은즉 殿下의 事大의 정성을 中國에서 더욱 믿게 될 것이라 하였다는 것, 그리고 館伴은 重任이므로 그러한 前例에 근거하여 보고한 것일 뿐 新例를 새로 만들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 대한 國王의 대답은 그 때 朴元亨이 政丞으로서 館伴이 되고자 하였으나 承政院에서 違例라 하여 贊成(從1品)의 假銜으로 그것을 맡았다고 하였다.¹³⁶⁾

中宗 38年 正月에도 議政府의 大臣과 6조의 判書들이 함께 大提學에 합당한 사람을 圈點으로 뽑았는데 成世昌이 最多點을 받아 임용 제청이 되었다.¹³⁷⁾ 또 明宗 13年 12月에는 議政府의 贊成 겸 銓曹의 長官(吏曹判書)에다, 大提學인 洪暹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두 實職(贊成과 吏判)을 겸하기도 어려운데, 文柄(大提學)을 감히 맡을 수가 없다고 하자, 國王은 傳教하기를 “銓衡의 長(吏判)과 文衡之任(大提學)은 움직일 수 없으며 다만 卿이 양 實職을 겸하는 것을 未安해 하니 贊成 만을 체직한다”고 하였다.¹³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大提學 圈點制度는 中宗 때 成立하여 그 후 계속 되었는데 圈點대상자(대제학 후보자)는 前任 大提學이 추천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慣例가 되고 있었다. 그 점은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仁祖 7年 11月 승정원에서 上啓하기를 “大提學圈點에는 3公과 議政府 東西壁(贊成과 參贊), 6卿(6曹의 判書), 漢城判尹 등을 불러 모아야 하고, 또 圈點대상자(후보자)는 前大提學이 천거하는 것이 常規이며, 前大提學이 없을 때에는 간혹 前前大提學이 의논하여 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前大提學이 멀리 任所에 있고 그 이외의 大提學을 거친 사람들은 모두 大臣의 地位에 있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 하니 仁祖는 그들이 비록 大臣의 자리에 있으나 의논하여 처리하게 함이 좋겠다고 하였다.¹³⁹⁾ 仁祖 14年 11月 國王은 堂上官 중에서 大提學에 적합한 사람을 圈點으로 뽑으라고 下敎하자 승정원에서는 前例를 살펴 보면 前任大提學이 후보

136) 『위의 책』 卷83-18, 中宗 31年 12月 己亥.

137) 『위의 책』 卷100-23, 中宗 38年 正月 辛未.

138) 『明宗實錄』 卷24-81, 明宗 13年 12月 丁卯.

139) 『仁祖實錄』 卷21-42, 仁祖 7年 11月 己亥.

자를 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前大提學 金尙憲은 外方에 가 있고 前前大提學 崔鳴吉은 病中으로서 無職 상태이므로 또 그 前任者인 張維를 불러서 후보자를 천거하도록 함이 좋을지, 아니면 大提學을 거친바 있는 현직 大臣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바 仁祖는 大臣 중에서 大提學을 거친바 있는 耆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게 하였고, 그 결과 李植이 大提學으로 추천되었던 것이다.¹⁴⁰⁾

仁祖 24年 10月の 領議政 金自點의 보고에서도 영의정 이하 판윤 이상인 者가 賓廳에 모였다는 것과 大提學圈點을 할 때에는 반드시 前大提學으로 하여금 薦望하게 한 것이 先例라는 것을 말하고 그 例로서 宣祖己亥年間(1599年)에 大提學圈點을 행하라는 王命이 있었을 때 故相臣 李恒福이 前職大提學으로서 左議政을 그만두고 病中이라 집에 있었는데 그 때 宣祖는 史官을 李恒福家에 보내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오도록 하였고 仁祖 癸亥年(1623年)에는 相臣 李廷龜가 前前大提學으로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丁丑年(1637年)에는 完成府院君 崔鳴吉이 역시 前前大提學으로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大臣 中 李景奭이 大提學을 그만 둔지 얼마 안되어 역시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이번에는 前大提學 李植이가 罪를 지어 지방에 가 있으며 前前大提學 鄭弘溟은 病이 重하므로 大臣인 李景奭이 전직 大提學으로서 마땅히 前例대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右議政이 때 마침 병이 나서 參圈할 수 없다는 것과 大提學圈點時에 大臣 한 사람이 홀로 參圈한 例는 없으므로 그가 病이 나을 때를 기다려서 圈點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건의하자 國王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判中樞 李景奭이 사양하기를 大提學을 거친 사람 중에서는 金瑬, 崔鳴吉 등 원로 大臣들도 있으므로 그들에게 人選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國王은 李景奭에게 前例 대로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하였고 결국 趙綱이 大提學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⁴¹⁾ 그러나 그도 孝宗 元年 4月の 實錄 記事를 보면 罪를 지어 물러났으므로 大提學 자리가 공석으로 되었다.¹⁴²⁾

그리하여 仁祖實錄의 編纂이 날로 급한데도 大提學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

140) 『위의 책』 卷33-30, 仁祖 14年 11月 丁未.

141) 『위의 책』 卷47-63, 仁祖 24年 10月 丙子.

142) 『孝宗實錄』 卷3-32, 孝宗 元年 4月 丙午.

었으므로 孝宗 元年 6月 大臣들이 國王에게 건의하여 大提學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大提學을 지낸 사람이 主薦者가 되어야 하나 前大提學 鄭弘溟이 病으로 고향에 가 있고 李景奭과 趙綱도 지금 白馬城에 얽매어 있으며 단지 領府事 金尙憲만이 있으므로 國王이 史官을 보내서 물었던 바 趙錫胤 만을 천거하였으므로 國王은 大提學을 差出할 때에는 議政府 大臣과 6卿(判書)이 회의하여 圈點의 多小로서 擬望(임용 후보자 추천)의 차례를 삼아야 하는데 단지 한 사람을 추천하여 圈點을 시행할 여지를 없게 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金尙憲에게 下問하였던 바 金尙憲은 말하기를 나라에서 兩館(弘文館과 藝文館) 提學을 들은 文衡(大提學)을 예비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서 領議政 李敬輿와 右議政 趙翼은 전직 提學으로서 양관의 현직 提學과 의논하여 천거하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李敬輿와 趙翼은 현직 兩館 提學 金光煜과 吳竣 등이 지금 大提學 후보로 추천되고 있으므로 그들과 회의할 수 없다고 하고, 드디어 趙錫胤과 그들 兩館 提學들을 천거하여, 王命으로 大臣 및 議政府의 東西壁(贊成과 參贊)과 6卿(6曹判書), 漢城判尹들을 불러서 圈點을 행하였고 마침내 趙錫胤이 大提學이 되었다.¹⁴³⁾ 孝宗 7年 正月에는 大提學 金益熙가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事大交隣 등 外交文書는 大提學이 주관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國朝의 古事(先例)라는 것과 丙子胡亂 때 淸兵에게 被殺당한 그의 母親을 생각할 때 의리상 淸國을 찬양하는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¹⁴⁴⁾

顯宗 10年 8月の 大提學 圈點時에는 賓廳(정승들의 근무처)에서 上啓하기를 前大提學 趙復陽이 3人을 추천하였으나 대개 文衡이 重任하는 것은 아무나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前大提學이었던 사람을 다시 후보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人事規例인데 趙復陽은 자신의 이름을 거기서 누락시켰으므로 大臣들이 그 이름을 添書하며 圈點대상자로 하였다는 것이었다.¹⁴⁵⁾ 顯宗 13年 윤7月の 大提學圈點 事例를 보면 모두 6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圈點을 행하였는데 金萬基가 9點, 李端夏 및 李殷相과 姜栢年 등이 8點, 南龍翼이 7點, 鄭斗卿이 6點으로, 최고점인 金萬基가 左尹兼兩館 大提學 同知經筵事로 임명되었던 것이

143) 『위의 책』 卷4-18, 孝宗 元年 6月 庚子.

144) 『위의 책』 卷16-2, 孝宗 7年 正月 戊子.

145) 『顯宗改修實錄』 卷21-35, 顯宗 10年 8月 乙丑.

다. 6點인 鄭斗卿은 文章이 그 당시 최고였으나 性格의 결함으로 최하점이 되었다는 것이다.¹⁴⁶⁾

肅宗 12年 9月에도 大提學은 金萬重이었는데 그 때 그는 義禁府의 官職도 겸하고 있었으므로 文衡(大提學)의 자리를 固辭하였다. 그러나 領議政 金壽恒은 文衡은 圈點時의 點數의 多少보다는 文望이 현저한 者를 임명하는 것이며, 金萬重이 이미 首望으로 除授되었고 公議의 所在도 그러한즉 속히 大提學의 임무를 계속 맡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⁷⁾ 己巳換局 다음 달인 肅宗 15年 3月 西人政權이 무너지고 南人政權이 수립되었을 때 承旨 李聯命은 前任 大提學이 有故하여 後任者를 추천할 수가 없을 때에는 領相과 의논하는 것이 前例라고 하였는데¹⁴⁸⁾ 이는 政權交替로 前任大提學이 귀양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다음 달인 肅宗 15年 윤3월에 領議政 權大運(南人系)등이 모여서 圈點을 행하여 南人인 閔旽을 大提學으로 뽑았다.¹⁴⁹⁾ 그러나 2년 후인 肅宗 17年 正月에 閔旽이 議政이 되었으므로 겸직인 文衡을 사임하여 체직되었다.¹⁵⁰⁾

英祖 元年의 大提學圈點時에는 3點 이상 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4點인 李緯가 大提學이 되었다.¹⁵¹⁾ 그리고 英祖 15年 5月の 大提學 圈點時에는 前大提學 李德壽가 서울을 떠나 故鄉에 가 있었으므로 前前大提學 尹淳으로 하여금 後任大提學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마침 그가 京畿監司로 任命되어, 外官이 그러한 추천권을 행사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本人이 사양하였다.¹⁵²⁾ 英祖 34年 11월에 國王은 前大提學 南有容에게 명령하여 文衡(大提學) 圈點을 행하도록 하였던 바 그가 여러 차례 임금의 부름에 응하지 않다가 엄한 王命이 연달아 내리자 밤늦게 圈點을 행하여 南有容 本人이 6點, 李存中이 5點, 尹鳳朝·金陽澤·尹汲 등이 각 4點, 吳遂采·李成中 등이 각 3點을 받았다. 그러나 國王은 圈點을 밤중에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최고득점자인 南有容을 울산 府使로 강등하여 발령하고, 4점인 金陽澤을 大提學으로 임명하였다.¹⁵³⁾

146) 『앞의 책』 卷26-15, 顯宗 13年 윤7月 壬辰.

147) 『肅宗實錄』 卷17-44, 肅宗 12年 9月 戊申.

148) 『위의 책』 卷20-27, 肅宗 15年 3月 甲午.

149) 『위의 책』 卷20-39, 肅宗 15年 윤3月 壬子.

150) 『위의 책』 卷23-3, 肅宗 17年 正月 辛丑.

151) 『英祖實錄』 卷6-3, 英祖 元年 5月 癸卯.

152) 『위의 책』 卷49-22, 英祖 15年 5月 丁卯.

英祖 42年 6月 大提學 黃景源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나라에서 文衡을 두는 까닭은 반드시 文章이 博雅하고 位望이 隆高한 사람을 골라 三館의 長으로 삼는 것인데, 自身은 文章이 부족하여 適時에 쓰여질 수도 없고 人望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승복시킬 수도 없으니 새로 大提學을 뽑아 임명할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國王은 “卿의 文才는 大臣들로부터 들어서 오래 전에 알고 있으며 卿을 두고 누구를 그 자리에 임명할 것인가”라고 하였다.¹⁵⁴⁾

正祖 5年 8월에 國王은 文衡會圈을 명령하였는데¹⁵⁵⁾ 前大提學 徐命膺이 관직에서 물러난 致仕之人이었으므로 그에게 大提學 후보자 추천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大臣들이 의논하였던 바 領中樞 金尙喆, 判中樞 鄭在謙·李徽之 등이 前例가 없다고 하여 致仕人을 牌招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니, 불러서 舉行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때 正祖는 原任 諸文衡들에 관한 文苑題名錄·都堂文衡錄·堂後日記 등 諸書를 모아서 편집하되 被選人 및 受點人의 姓名과 議薦時의 會圈人座目 등을 일일이 상세히 기록하고 會圈에 관계되는 傳敎·啓辭 등도 모두 기재하여 一目瞭然하게 冊子를 만든 후에 承政院 및 都堂과 文衡家에 各一本씩 나누어 비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¹⁵⁶⁾ 그 다음날에 前大提學 徐命膺과 前前大提學 黃景源 등이 불려도 오지 않았음(違牌)으로 正祖는 前前前 大提學인 判中樞 李徽之에게 史官을 보내서 傳諭하여 文衡會圈을 의논하여 시행하게 한 결과, 金鍾秀·李性源 등이 6點, 洪樂命이 5點, 李福源이 4點, 黃景源이 2點을 받았으므로 최고점인 金鍾秀를 弘文館 大提學 겸 藝文館 大提學으로 임명하였다.¹⁵⁷⁾

正祖 22年 8月の 大提學圈點時에 前前大提學으로서 會圈을 주관하게 된 上護軍 洪良浩는 自身の 이름을 후보자 명단에서 뺐으나 賓廳(大臣)에서 그 이름을 添書하여 圈點을 시행한 결과 최고점(4點)을 받아 再次 弘文館 大提學이 되었던 것이다. 純祖 元年 6月에는 大提學으로 임명된 李晚秀가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圈點時에 同點者였던 金載瓚의 資級이 자기보다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53) 『위의 책』 卷92-24, 英祖 34年 11月 丙申.

154) 『위의 책』 卷107-15, 英祖 42年 6月 庚戌.

155) 『正祖實錄』 卷12-25, 正祖 5年 8月 己亥.

156) 『위의 책』 卷12-26, 正祖 5年 9月 庚子.

157) 『위의 책』 卷12-27, 正祖 5年 9月 辛丑.

그러나 두 사람은 다 같은 從1品이며, 다만 李晩秀가 崇政大夫(從1品下)인데 비해서 金載瓚이 崇祿大夫(從1品上)였으므로 備邊司의 건의에 따라 純祖는 李晩秀로 하여금 文衡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¹⁵⁸⁾ 그런데 純祖 4年 4月 都堂에서 圈點을 시행할 때, 李晩秀의 兄인 李時秀가 左議政이었는데 그때 마침 領議政이 空席이라서 兄弟가 圈點을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으므로 李時秀는 領相을 임명하여 그것을 주관하게 하든지 아니면 文衡(大提學 李晩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⁵⁹⁾

純祖 9年 正月, 左議政 金載瓚은 조선왕조 건국 이래로 文衡의 數가 相臣數보다 적고 또 그 비중이 가볍지 않았다는 것과 徐居正이 大提學(主文)을 20년 간이나 하였으나 그를 대신할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金宗直과 같은 文章家도 大提學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그러나 요사이는 비록 마땅한 사람이 임명되었다고는 하지마는 그 數가 많아졌으니 名器를 신중히 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¹⁶⁰⁾ 그러나 그 다음 달에 또 右議政 金思穆, 戶曹判書 前大提學 李晩秀 등을 비롯하여 禮曹判書, 左參贊, 漢城判尹 등 5人이 文衡會圈을 시행하여 徐榮輔·南公徹·沈象奎 등이 5點, 金祖淳, 李晩秀 등이 4點을 받아서¹⁶¹⁾ 그 중 徐榮輔가 兩館 大提學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徐榮輔는 平安監司로 임명되었으므로 南公徹이 또 大提學이 되었다.¹⁶²⁾ 純祖 26年 4月 前職 大提學이며¹⁶³⁾ 時任 右議政인 沈象奎가 말하기를 大提學 差出方法은 圈點으로 할 때도 있었고 혹은 疏薦으로 할 때도 있었는데, 疏薦이란 전임자가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과, 지금 領敦寧 金祖淳이 전직 大提學으로서 달리 후보자를 갖추어 추천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 하니, 그 이전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落點(임명)함이 좋겠다고 하여 國王은 金祖淳을 兩館 大提學으로 임명하였다.¹⁶⁴⁾ 그러나 金祖淳은 사직하였으므로 右議政 沈象奎, 前大提學 金祖淳, 左參

158) 『純祖實錄』卷3-23, 純祖 元年 6月 壬子.

159) 『위의 책』卷6-15, 純祖 4年 4月 戊辰.

160) 『위의 책』卷12-11, 純祖 9年 正月 乙酉.

161) 前大提學 李晩秀가 4點을 받았다는 것은 本人을 제외한 他4人 모두가 그에게 圈點을 가했다는 뜻이니 사실상 최고점(5點) 받은 者와 같다고 할 수 있다.

162) 『위의 책』卷12-11, 純祖 9年 2月 壬辰, 癸巳.

163) 『위의 책』卷14-32, 純祖 11年 윤3月 己卯.

贊 金在昌, 戶曹判書 및 刑曹判書, 工曹判書, 漢城判尹 등 7명이 모여서 文衡會圈을 실시하여 金履喬·朴宗薰 등이 7點, 金祖淳이 6點을 받았으므로¹⁶⁵⁾ 金履喬를 兩館 大提學 겸 漢城府判尹 겸 世子侍講院 右賓客으로 임명되었다.¹⁶⁶⁾ 金履喬도 여러 차례 大提學을 사임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國王으로부터 사직하지 말라는 批答이 있었다.¹⁶⁷⁾ 이와 같이 內心으로는 취임하고 싶은 榮譽로운 官職일 수록 몇 번씩 사임하다가 마지못한 듯 受任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고급관료사회의 禮節이었던 것이다.

3. 翰林 回薦·圈點 및 召試

翰林은 좁은 의미로 藝文館 檢閱(正9品)을 말하기도 하고¹⁶⁸⁾ 藝文館의 專任 官僚인 奉教(正7品), 待教(正8品), 檢閱 등을 통칭하기도 하며, 때로는 官司로서의 藝文館을 지칭하기도 한다. 여하간 藝文館의 參上官(6品 이상)과 堂上官(正3品 이상)은 모두 他官 겸직이므로 參下官 만이 專任官僚로서 承政院의 注書(正7品)와 함께 모두 春秋館의 記事官(史官)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翰林은 玉堂과 더불어 가장 영예로운 官職으로서 국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國政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므로 그 任用 또한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 즉 端宗 2年 7月 司憲府의 보고에 의하면 春秋館의 官職(史官)을 겸하는 者는 妻族까지 살펴 보아야 함으로 未娶妻子는 안된다고 하였다.¹⁶⁹⁾ 또한 그들은 出生 身分이 좋아야 할뿐만 아니라 글재주도 있어야 함으로 특별한 선발절차가 필요하였다. 그들은 항상 經筵이나 朝參·常參 등에 참석하여 時政을 기록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때로는 議政들이 모르고 있는 國事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中宗 11年 8月 3公(三議政)이 국왕에게 건의한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翰林이 議政府의 司錄(正8

164) 『위의 책』 卷28-6, 純祖 26年 4月 辛酉.

165) 金祖淳도 本人을 제외한 他 6人 모두가 그에게 圈點을 가하였으므로 사실상 7점과 같다.

166) 『위의 책』 卷28-7, 純祖 26年 4月 甲子, 乙丑.

167) 『위의 책』 卷28-7, 純祖 26年 4月 丙子·丁丑·己卯.

168) 『中宗實錄』 卷60-61, 中宗 23年 3月 甲戌.

169) 『端宗實錄』(魯山君日記) 卷11-25, 端宗 2年 7月 辛酉.

品)을 겸하였으나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과 翰林과 注書가 모두 春秋館의 史官(記事官)을 겸하였고 三公 또한 春秋館의 官職(領事·監司)을 겸하였으므로 앞으로는 注書와 翰林들로 하여금 議政府 錄事¹⁷⁰⁾를 불러서 모든 國事に 관한 일을 傳言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中宗은 그대로 할 것을 承政院에 傳敎하였으나, 承政院에서는 三公이 朝廷大事를 모른다는 점에서는 미안하게 생각되나 注書는 承政院의 郎官이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翰林도 옛날에는 議政府 司錄을 겸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그가 錄事를 불러서 傳言을 글로 써 보내도록 하기보다는 錄事가 와서 謄書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라 하였다. 여기 대하여 史臣은 評하기를 “史官의 직위가 비록 낮으나 萬世의 公論을 파악하면서 방자할 수도 없고 아첨할 수도 없는 자리로서 크게는 임금의 得失과 작게는 大臣의 善惡을 기록하는 중요한 官職이며 三公의 郎屬이 아니므로 나라에서 史官을 설치하면서 가볍게 대접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領議政 鄭光弼 등이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翰林이 司錄을 겸직하게 한다는 것이 어찌 타당한가”라 하였다.¹⁷¹⁾

中宗 14年 6月 大司憲 趙光祖가 말하기를 “옛날의 史官은 반드시 公論을 견지하면서 是非를 분명하게 밝히는 者를 임용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여 하나 같이 新及第者에게 그것(史官)을 맡기고 있으니 어찌 所任을 다 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春秋館 堂上官 중에서 史才가 있고 是非를 밝힐 만한 사람을 골라 檢攝하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史官의 所任은 매우 중요하여 임금의 動靜과 經筵에 있어서 講論 등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獻納 李延慶도 “史官은 사람을 잘 골라서 임용하여야 하며 만약 小人을 그 자리에 쓰면 君子를 모함한다고 하면서 翰林 등 史官을 말단 官僚들에게 專擔시키고 上官이 돌보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하니 무릇 史官이 事實을 기록할 때에는 상관과 의논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國王은 法司에서 檢察하면 된다는 것이었다.¹⁷²⁾ 그런데 記事官 申潛은 史局이 허술하다는 선배 관료들의 주

170) 錄事는 비록 京衙前이나 조선 전기에는 士族들도 그 자리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기간을 만료한 후에는 守丞 등 양반관료로 進出하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議政府 錄事는 3議政의 비서관 겸 행정실무자이다.

171) 『中宗實錄』卷26-1, 中宗 11年 8月 庚戌.

172) 여기서 말하는 法司는 司憲府를 의미한다.

장에 이어서 건의하기를 史官이 經筵에 出入할 때 맨 나중에 들어가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은 부당하니 제일 나중에 방을 나오도록 하여 所任을 다 할 수 있게¹⁷³⁾ 하여 달라고 해서 國王과 大臣의 찬동을 받았다.¹⁷⁴⁾ 그런데 中宗 29年 12月 國王이 承政院에 傳敎한 바에 의하면 “무릇 기별은 史官으로 하여금 錄事에게 써 주어서三公에게 전하도록 할 것을 允許한바 있으나 翰林(史官)은 承政院에 관한 것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史局의 일만 할 따름인데 역사적 사실은 傳播되어서는 안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注書가 傳書하여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承政院에서는三公이 모두 春秋館의 官員을 겸하고 있으므로, 藝文館(翰苑)의 入番史官이 기별을 傳하도록 할 것을 의논하였으며 注書는 일이 많아서 傳書할 수가 없으므로 注書가 그러한 일을 말할 수 없다고 논의하였다는 것과 前例를 살펴보면 史官으로 하여금 기별을 전하게 할 때에는 議政府의 錄事를 불러서 謄書하여三公에게 보내도록 하는 傳旨를 받은 바 있으나 어떻게 할지를三公들이 의논한 결과 나라에서는 秘密事가 있는데 錄事에게 傳書하게 함은 옳지 않으므로 史官이 書封하여 署名해서 보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國王은三公이 모두 春秋館의 官員을 겸하였으므로 史官으로 하여금 기별을 傳書하게 하는 것은 이미 보고 받았다는 것과 이번에 傳敎를 받을 때 먼저 번의 傳敎와 함께 舉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¹⁷⁵⁾

仁祖 20年 4月, 司諫院에서 보고하기를 “근래 史局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것과 지난번의 聖敎(王命)에서 光海君 때의 잘못된 천거제도를 원용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翰林인 官職은 처음 立身하여 임금을 섬기는 첫길임으로 비록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천거하는 者가 조사를 받게 되면 천거 받은 者가 어찌 나설 수가 있겠는가”라 하였다. 또 “本館(藝文館)에서 이미 천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變通할 길이 없겠는가”라 하여 大臣들이 그것을 의논하게 되었다. 李聖求와 申景稹은 마땅히 弘文錄의 圈點之規에 의거하여 추천하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였고, 崔鳴吉은 名官 중에서 史官을 거친 자로서 春秋使를 특별

173) 그후부터 上官이 방을 나온 후에, 下官이 따라서 나오는 것이 慣行이 되어, 현재의 한국관료사회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예절로 되었다.

174) 『中宗實錄』 卷36-14, 中宗 14年 6月 甲子.

175) 『中宗實錄』 卷78-50, 中宗 29年 12月 乙未.

히 겸하도록 하여 추천하게 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仁祖는 崔鳴吉의 의견에 따랐다. 이에 沈東龜 등 8명이 의논하여 李연 등 3명이 추천되었는데 翰林議薦法은 이때에 확립된 것이었다.176)

孝宗 元年 6月 司憲府에서 上啓한 바에 의하면 翰苑의 故事를 들어보면 무릇 翰林을 새로 추천할 때에는 고결한 人品을 가진 사람을 두루 찾는 것이 先例이며 參下官인 전직 翰林이 비록 罷散(無補職) 중일지라도 可否를 논의하게 하는 것은 현직 翰林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薦舉하는 일이 未定인데도 私私로이 서로 可否를 말하고 下官의 말에 따라 곧바로 開坐하는 것은 古規에 어긋나며 또한 私室에서 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진술한다고 하면서 그 情態가 심히 나쁘니 檢閱(翰林)들을 모두 推考하도록 건의하여 국왕은 이에 따랐다.177)

肅宗 24年 9月 待教 洪重益이 陳疏하기를 翰林과 注書간에 相避者가 있을 때에는 翰林인 者를 바꾸는 것이 翰苑故事에 실려 있다는 것과 被比의 官秩이 모두 參下官이나 그 品級을 논한 즉 翰林은 注書보다 낮다는 것, 그리고 간혹 注書를 교체하고 翰林을 남아 있게 할 때에는 堂後(注書)가 不備함이 걱정된다고 하였다.178) 肅宗 27年 6월에 正言 趙泰一이 翰林(檢閱)으로서 史官에 천거된 李明浚 등 3인을 期待 밖이라 하여 削薦을 주장하였는데 동료 正言인 李德英은 이에 引避하고 있다.179) 國王은 翰苑에서 천거된 3인 모두를 削職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다.180)

英祖는 同王 8年 正月에 左參贊 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앞으로는 翰林이 時政記를 修納하지 못한 경우, 6品으로 승진할 수 없음을 영구히 定式으로 한다고 명령하였다. 그 때 翰苑古規가 解弛하여 朴文秀·李周鎭 등이 修史를 마치지 못한 채 6品으로 승진하였으므로 金在魯가 그와 같이 건의한 것이다.181) 英祖 17年 4月 당쟁을 싫어하는 國王은 드디어 翰苑回薦의 法을 혁파할 목적으로 먼저 翰林 李益輔·金相福 등의 職을 罷하였다. 그들은 각각 史官으로 천거되었으나

176) 『仁祖實錄』 卷43-11, 仁祖 20年 4月 戊申.

177) 『孝宗實錄』 卷4-18, 孝宗 元年 6月 辛丑.

178) 『肅宗實錄』 卷32-2, 肅宗 24年 9月 乙酉.

179) 『위의 책』 卷35-28, 肅宗 27年 6月 甲子.

180) 『위의 책』 卷35-29, 肅宗 27年 6月 丙寅.

181) 『英祖實錄』 卷31-3, 英祖 8年 正月 戊辰.

모두가 他黨人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에 앞서 英祖는 柳壽垣의 官制序陞圖를 보고 更張할 뜻이 있었으나 決定을 미루고 있었는데¹⁸²⁾ 이번에 吏郎通淸法과 함께 翰林回薦法도 혁파하였던 것이다.¹⁸³⁾ 즉 英祖는 매번 조정에서 朋黨을 걱정하면서 吏郎과 翰林의 선발에 있어서 양당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¹⁸⁴⁾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更張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宋寅明·趙顯命·元景夏·鄭羽良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英祖는 翰林 黃景源을 불러 묻기를 “翰薦法이 國初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 하니 黃景源이 그것이 國初부터 있었으며, 光海君 때 이르러 李爾瞻이 大提學으로서 천거를 주관하여 凶黨人을 끌어 들였으므로 館閣主薦의 法이 李爾瞻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仁祖反正으로 薦法이復古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임금이 下敎하기를 “紀綱이 위에서 있으면 잘 다스려 지고 權柄이 밑에 있으면 어지러워진다. 우리 나라는 禮義로서 立法하여 開國 이래로 權臣의 竊柄은 없었으나 文勝의 폐단으로 黨習에 諸臣이 빠져 있고 紀綱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弊端이 극도에 달하면 고쳐야 하는 것이 事理上 당연하다. 翰薦法은 300년간이나 내려오던 法規로서 비록 하루아침에 혁파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시행하여 보니 자리다툼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움이 전적으로 여기에서 말미암았다. 이후로는 文科及第者 중 翰薦할 者를 分館例에 따라 모두 藝文館(翰苑)으로 천거하면 서로 비교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폐단은 없을 것인즉 本館의 領事·監事·知春秋 등이 모두 모여서 節目을 만들어 품의 하도록 하라. 아! 權柄과 紀綱이 밑으로 옮겨지면 王政이 不振한다”라 하였다.¹⁸⁵⁾

그리하여 春秋館 領事 金在魯, 監事 宋寅明·趙顯命, 知事 鄭錫五, 同知事 鄭羽良 등이 議定하여 翰薦釐革節目을 완성하였는데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다.¹⁸⁶⁾

첫째, 翰薦은 本館(藝文館)에서 弘文錄의 例에 따라 모여서 의논하여 薦圈

182) 『英祖實錄』卷53-20, 英祖 17年 4月 己亥.

183) 『위의 책』卷53-22, 英祖 17年 4月 癸丑.

184) 英祖 17年頃에는 南人이 거의 在野化되었으므로 兩黨이란 老論과 少論을 의미하는 듯하다.

185) 『앞의 책』卷53-22, 英祖 17年 4月 癸丑.

186) 『위의 책』卷53-24, 英祖 17年 4月 丙辰.

한187) 후에 都堂錄의 例에 의거 領事·監事와 館閣의 堂上官이 다시 모여서 圈點을 행한다.

둘째, 翰林이 3명으로 갖추어져야 會圈함이 마땅하나 法을 만든 초창기에는 現職이 불과 1명일지라도 前職 翰林인 者중 春秋館의 例에 따라 堂下官職에 있는 자로 하여금 함께 參圈하며 時任의 薦例와 같이 3명을 채워서 薦圈을 행한다.

셋째, 現職 參下官인 者중 榜目과 圈點을 감안하여 次點 이상인 者를 取하되 그 人數를 한정하지 않고 뽑는다.

넷째, 被薦人은 父母喪이나 相避 등으로 官職에 임명되지 못한 者 이외의 나머지 사람은 官職에 임명된 후에 舊榜이 어뎡든 간에 다시 新榜으로서 議薦한다.

다섯째, 藝文館에서 薦圈한 후에는 領事와 監事 및 春秋館 知事·同知事, 藝文館 大提學·提學 등이 會圈하되 兩館堂上이 비록 결원(또는 有故)일지라도 春秋館堂上 2인과 藝文館堂上 1인이 참여하면 반드시 圈點을 行하여야 한다.

여섯째, 館閣圈點은 역시 次點 이상인 者를 取하여 官職에 임명하고 同點者일 경우에는 科擧(文科)의 성적순으로 한다.

일곱째, 焚香과 應講 및 임용기한은 前例대로 하되 이미 會圈을 거치게 하였으면 절차가 더욱 重하니 回薦에 관한 규정은 지금부터 行한다.

여덟째, 15개월 이상 근무하고 史草를 修納한 史官은 순서대로 6품으로 승진시킨다.

아홉째, 回薦法은 이미 行되었으니 回薦에서 떨어진 것을 논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물의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같이 薦거된 他人이 引嫌할 수가 없다.

열째, 이번의 薦圈은 分館과 같으므로 한번 漏薦되면 舊榜目으로는 다시 薦거할 길이 없으니 史官으로 적합한 人員을 모두 取하되 館員 중 相避關係에 있었거나 喪中으로 罷職되었던 者는 弘文錄의 例에 따라 일체 舉薦한다.

187) 薦圈이란 圈點으로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대하여 史臣은 당평책으로서 宋寅明·趙顯命·元景夏 등의 협찬을 받아서 英祖가 郎選法の 革罷와 史薦의 改正을 직접 명령한 것인데 首相인 金在魯가 때마침 휴가에서 돌아와 還朝하였으나 임금의 뜻이 이미 결정된 것을 알고는 감히 다투지 못하고 곧 新節目을 草定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날 英祖는 春秋館의 同知事 鄭羽良에게 命하여 翰薦節目을 읽도록 하였다. 羽良이 읽기를 마치자 임금은 檢閱 黃景源에게 물었다. 景源이 대답하기를 무릇 史官을 薦擧하도록 함은 올바른 사람을 얻기 위함이며 先進의 門戶에 두루 찾아가서 그 可否를 물은 연후에 焚香하고 天地에 告한다는 것과 지금 임금께서 現在의 폐단을 보시고 매우 미워하사 드디어 古制를 고치시니 이는 목이 막혀 廢食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였다. 임금은 좋은 비유라고 말씀하니 景源이 말하기를 “史官의 선발을 엄격하게 하고자 하나, 비록 舊制를 남겨서 간단한 절차로 뽑아도 걱정이 되지만, 간혹 新法으로도 여러 黨人의 마음을 함칠 수가 없다면 殿下께서 장차 또 고치실 것입니까”라 하고 또 “史官이 각각 私心으로 서로 벼슬길을 열거나 막거나 하면서 분연히 승부를 다투니 그것은 法の 罪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다만 옛날에는 私室에서 의논하였으나 오늘날에는 公廳에서 會圈한다”라 하고 또 玉堂 李成中과 元景淳에게 물기를 前任 史官의 뜻은 어떠냐고 하였다. 成中이 대답하기를 景源의 말과 같다고 하고 景淳은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또 2개 條를 加書할 것을 명령하였다. 즉

(1) 오늘날의 更定節目은 폐단으로 인하여 釐革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回薦이 변하여 會圈이 될 따름이다. 추천할 때의 절차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2) 오늘날의 釐定은 분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史局을 중요시하게 하는데 뜻이 있으므로 널리 천거해서 모두 충원하여 春秋館의 官員을 겸직시켜 入直하게 하면 다시는 논의하게 됨이 없을 것이다.

승지가 받아쓰기를 마치자 趙顯命은 이번의 變法은 즉 天地間에 私心없는 덕망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그러나 弘文錄과 臺諫의 通淸에도 또한 폐단이 있으나 殿下께서 양 新制로서¹⁸⁸⁾ 오늘날의 폐단을 모두 고치려 하시니 日月의 밝음이

188) 兩 新制란 吏郎選釐革과 翰薦改革을 말한다.

비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임금은 郎選과 翰薦 이외의 폐단도 많을 것이나¹⁸⁹⁾ 이 두 가지의 폐단보다는 덜 심하므로 부득이 그것만 更張한 것이라 하였다.¹⁹⁰⁾

그 다음날 檢閱 黃景源이 상소하기를 소위 翰薦이란 것은 비록 10인이 모여서 의논하여도 반드시 의견이 하나로 귀착됨을 기다린 후에 천거하는 것이며 焚香·告天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는 것인데 圈點者가 각각 自意로 加圈하면서 圈點이 많은 者가 뽑히고 그것이 적은 者가 뽑히지 않는 것 같은데 圈點의 多少가 왕왕 自己의 見解 밖에서 나온다면 마음을 속이는 천거가 된다는 것과 祖宗朝로부터 史官을 천거하는 논의는 임금에게도 품하지 않고 宰相에게도 의논하지 않은 뜻은 깊고도 은근하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宰相이 그 圈點을 장악하면서 자기 사람을 그 자리에 두게 되어 불행이 權奸이 朝廷에 있어 그 자취를 千百世後代까지 감추려 한다면 반드시 私意로 史料를 取捨選擇하게 됨으로써 史法이 더러워지고 어지러워 질 것이라 하였다. 그는 또 이어서 지금은 밝은 임금이 위에 계셔서 그러한 염려는 없으나 무릇 立法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즉 먼 훗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옛날 仁祖때에도 어떤 사람이 망녕되어 李爾瞻의 館閣主薦의 예를 인용하면서 史局의 薦法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므로 相臣 崔鳴吉이 反對하였다고 하였다.¹⁹¹⁾

위와 같은 상소가 올라가자 임금은 黃景源을 불러서 묻기를 “어제 새 제도를 너에게 물은 것은 史官을 중요시한 까닭인데 이제 法이 완성된 후 네가 또 會圈의 制度가 불편하다고 떠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 하였다. 그때 임금이 심히 怒하여 左右가 몹시 무서워하였다. 景源이 대답하기를 “史館의 薦法은 지엄하고 중요하다는 것과 이번 會圈할 때에 예문관에서 薦圈하지 않은 者를 廟堂(의정부)에서 薦圈하기도 하고 藝文館에서 薦圈한 者를 廟堂에서 不圈하는 등으로 先後가 바뀌고 取捨가 달라지니 藝文館에서 論薦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回薦制에서 서로 可否를 묻는 것 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너의 말이 그럴듯하나 이번 제도가 館閣의 主薦制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너의 상소에서 서약서를 읽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

189) 弘文錄과 臺諫通淸의 폐단을 의미한다.

190) 註 186.

191) 『위의 책』 卷53-25, 英祖 17年 4月 丁巳.

다. 景源이 대답하기를 “臣이 듣기로는 回薦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不可라고 하면 열 사람이 可라 하여도 임용할 수 없었는데 圈點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어떤 사람이 圈薦되더라도 圈點을 하지 않은 者는 반드시 아무개의 被圈은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약서를 읽기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임금은 점차 이해하고 한참있다가 말하기를 “가히 圈事를 맡은 이상 自己가 천거한 者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는 李爾瞻의 일을 억지로 인용하면서 新法을 희롱하니 심히 無嚴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文學을 애석하게 여겨서 너를 法에 의거 처벌하지 않고 파직을 명한다”고 하였다. 黃景源이 나가자 임금은 승지 任珽에게 諭示하기를 내가 처음 黃景源이 나의 新法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역시 옳다고 하고 이어서 下敎하기를 回薦과 會圈은 마찬가지로 堂上官의 會圈은 불만인 것 같다. 처음 會試를 하고자 한 뜻은 여기에 있다. 翰薦會圈은 節目에 따라 그대로 두되 堂上會圈을 會試로 고쳐서 付標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192)

이들 후인 英祖 17年 4月 己未에 翰林召試法이 成立되었는데, 처음 左議政 宋寅命이 건의하기를 史官의 應講은 실은 형식만 갖추는 것이 되어 製述로 시험 보여서 取才하는 것이 講試에 應하게 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會試가 야박한 것 같다고 하자 春秋館의 同知事 鄭羽良은 말하기를 “옛날에도 知製敎 시험이 있었고 公道를 위해서는 會試만한 것이 없다는 것과 비록 시골 사람들의 말이지는 하지만 벼슬은 할 수가 없어도 科擧는 능히 합격할 수가 있다고 하니 科擧制를 圈點法으로 한다면 嶺南, 湖南人들이 어찌 참가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그러한즉 會試法이 公正한 것 같다고 하였다. 英祖는 웃으면서 卿의 말이 옳다고 하고 드디어 會試를 고쳐서 召試라 하고 領議政 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節目을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니 무릇 8개조였다. 193)

첫째, 召試의 장소는 임금이 계시는 殿庭에 설치하여 행한다.

둘째, 宋代의 召試의 例를 모방하여 당일 응시할 인원을 牌招하여 召試하되, 違牌하거나 地方에 가 있다고 칭하는 者는 잡아서 推問한다.

셋째, 試取할 때에는 大臣 및 館閣의 堂上官과 春秋館 堂上官 등이 모두 참

192) 위와 같음.

193) 『위의 책』 卷53-26, 英祖 17年 4月 己未.

여하고 對讀官은 4인은 玉堂에서 差出한다.

넷째, 兩司(臺諫)에서 각 1명씩 監試官으로서 月臺에서 對坐시키되 일이 생기면 糾檢하도록 하고 試官과 섞여 있지는 못하게 한다.

다섯째, 응시자들은 重試 때의 복색으로 하고 시험지와 붓·벼루 등은 工曹와 長興庫에서 마련하도록 하며 점심은 스스로 갖추어서 대령한다.

여섯째, 응시자가 自筆로 試券을 써서 제출하면 그것을 섞어서 書帙(軸)을 만들어 填字로 바꾸어 쓴다.¹⁹⁴⁾

일곱째, 試官이 응시자들을 거느리고 임금께 肅拜하는 것 및 收券官이 易書를 조사하는 등의 일은 모두 殿試의 例에 따라 舉行한다.

여덟째, 응시자의 使喚軍은 該曹에서 元軍을 定給하되 雜人은 出入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承旨 元景夏는 상소하여 말하기를 會圈을 會試로 바꾼 것은 깊고도 멀리 생각한 것이지만 그 節目이 너무도 가혹하다는 것과 그리고 옛날 宋에서 館試를 만들었으나 거기에 응시하지 않은 者 중에서는 학문이 높고 행실이 바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반드시 시험 거부 행위를 처벌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지금도 自重하는 선비는 결코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英祖는 景夏의 뜻이 처음에는 나와 같았는데 지금 와서 이러한 말을 하니 중간에서 굽힌 것으로 심히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 英祖는 教示하기를 임금이 비록 金을 들이라고 하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遵行하여야 하거늘 王命을 거역하여 응시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¹⁹⁵⁾

이러한 英祖의 태도에 대하여 司諫 權賢은 상소하여 말하기를 “300年間の 館規를 하루아침에 바꾸는데 어찌 한 마디의 論難이 없겠는가”라 하고 英祖의 新法을 반대한 바 있는 黃景源에 대한 파직 명령을 환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英祖는 다시 黃景源을 金相福과 함께 藝文館 檢閱로 임명하고 李益輔를 藝文館 待教로 金漢喆 외 4명을 別兼春秋(史官)로 임명하여 예문관의 會圈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때 英祖는 화난 목소리로 만약 翰林會試에 응시하라는 王命을 따르지 않는다면 明나라 官制를 準用하여 門地高下를 막론하고 모두

194) 試官이 응시자의 필적을 못 알아보도록 易筆하는 것이다.

195) 註 193.

시험을 보여 재능 있는 자를 뽑겠다고 하였다.¹⁹⁶⁾ 이는 종래 뚜렷한 士族家門의 嫡系子孫만으로 충원되었던 史官(檢閱 등)자리에 낮은 門地출신의 文官들도 進出시켜 身分의 장벽을 다소라도 허물어 보겠다는 英祖의 평소에 갖고 있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英祖 17年 5월에 처음으로 翰林圈點法을 시행하여 6점인 李毅中 등 12인과 5점인 申暉 등 7인을 取하였다. 처음 王命으로 翰圈을 행할 때에 別兼春秋 李宗迪와 鄭履倫 등이 南人·北人 두 黨人을 끌어들이려 하자 翰林 黃景源이 안된다고 하여 오랫동안 서로 고집하였는데 임금의 史館 圈事(翰圈)의 시행여부를 묻고 독촉하며 꾸짖는 것이 심히 급하였으므로, 史官 8인이 會圈하면서 7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약속하였다. 閔百祥이 7점이 안되었으므로 다시 6점을 合格點으로 하여 19명이 뽑혔던 것이다. 그러나 檢閱 金相福은 물러가서 상소하기를 19인 중 일부가 地望이 결핍되거나 史官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하면서 거기 대하여 만약 끝내 한마디의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향불을 피워 神에게 맹세하였던 自身의 良心을 속이는 것이 되고 또한 하늘을 속이게 되어 그 죄가 매우 큰 것이라 하였다. 金相福의 상소에 대하여 鄭履儉·李宗迪 등이 상소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英祖는 그러한 상소들이 黨習에서 나온 所爲로 보고 焚香之法을 폐지하였다.¹⁹⁷⁾ 司憲府(持平 李匡誼)에서는 英祖에게 말씀 올리기를 “근래 翰薦의 폐단이 심하여 임금께서 그 폐단을 혁파하고자 翰薦을 翰圈으로 바꾸어서 장차 한 나라의 인재를 널리 취하여 또 文藝로서 다시 시험 보여 無能한 者를 물러가게 하고 재능 있는 자가 進出하도록 하신 것은 그 뜻이 진실로 아름답고 新法이 참으로 좋다”는 것과, 전날 세력이 없거나 당파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눌리고 막혀서 진출하지 못하였던 사람들 모두가 활발하게 일어날 마음을 갖게 되었으나 會圈이 옛날 그대로여서 老少 양당 이외의 자는 거기에 참여되지 않으니 法을 고친 뜻이 고작 이것인가라 하고 임금께서는 당파의 습속을 없애고자 苦心하시지만 밑에서는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면서 자기 당에 속한 사람을 심으려(樹黨) 한다고 하면서 圈點을 주관하였던 翰林(예문관 관료)들을 삭탈 관작 하여 서울 四大門 밖으로 추방(門外黜送)할 것과 圈點을 다시 시행하도록 藝

196) 『위의 책』 卷53-27, 英祖 17年 4月 癸亥.

197) 『위의 책』 卷53-28, 英祖 17年 5月 乙丑.

文館에 명령을 내릴 것을 청원하였다. 여기 대하여 英祖는 “翰林들을 모두 축출하면 새로운 圈點을 누가 시행할 것인가 네가 하고 싶은가”라고 하면서 持平 李匡誼를 면직시켰다.198)

英祖 17年 10月 임금은 말씀하기를 翰薦 節目 중 처음에는 史官의 검직제를 영구히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上下番으로 교대할 때에 인원부족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을 혁파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하였다. 영의정 金在魯도 3曹의 文郎官¹⁹⁹⁾ 및 承文院 判校, 宗簿寺正 등이 모두 春秋館의 관료(史官)를 검직하는 것이 통례라는 것과 검직 史官制를 완전히 혁파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²⁰⁰⁾ 英祖 17年 11月에는 春秋館 堂上官과 藝文館 提學에게 명령하여 翰林會圈을 시행하였고²⁰¹⁾ 같은 달 下旬 경에는 史官후보자로 뽑힌 趙載敏·徐志修·閔百昌·李毅中·申暉·趙重晦 등 6명을 불러서 시험(召試) 보이게 하였으나 이들은 처음에 王命에 불응하여 임금이 震怒하였으므로 명령에 따라 입궐은 하였지만 殿門 밖에 머물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英祖는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인 判中樞 徐命均과 刑曹判書 閔應洙를 면직시키고자 하였으므로 그 아들인 徐志修와 閔百昌은 入庭하였다. 그러나 李毅中·申暉·趙重晦 등은 끝내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英祖는 그 父兄들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大臣들의 만류로 그만두었다.²⁰²⁾ 그 후 左議政 宋寅命은 건의하기를 翰圈에 든 者가 비록 10年이 되어도 召試를 거치지 않으면 6품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法式을 정하자고 하였고 영조는 翰圈에 든 사람이 비록 세자시강원의 說書 일지라도 召試를 거치지 않는 자는 6품으로 승진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⁰³⁾

이듬해인 英祖 18年 8月 掌令 李善泰가 상소하기를 임금께서 즉위하신 이래 당쟁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불행히도 수백년의 習俗이 바뀌지기 어려워 한두 당의 사람들이 인사권(通塞之權)을 몰래 행사하면서 임금께서 이룩한 治績을 손괴

198) 『위의 책』 卷53-30. 英祖 17年 5月 甲申.

199) 여기서의 3曹의 文郎官이란 吏曹·禮曹·兵曹의 正郎과 佐郎으로서 이들은 모두 文科及第者로 充員되었다(기타의 各曹 郎官은 非文科及第出身도 있다).

200) 『앞의 책』 卷54-30. 英祖 17年 10月 丙申.

201) 『위의 책』 卷54-34. 英祖 17年 11月 丙寅.

202) 『위의 책』 卷54-38. 英祖 17年 11月 戊子.

203) 『위의 책』 卷54-38. 英祖 17年 11月 庚寅.

시킨다는 것과 심지어 翰薦을 처음 고칠 때에 舊例를 인용하면서 召試를 피하고자 강하게 싸우면서 王命에 잘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私黨만 생각하고 國論에 背馳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 하였다. 李善泰는 南人으로서 이 상소문에서 元景夏를 두둔하고 있다. 元景夏는 英祖의 탕평책을 내세우면서 은밀히 南人과 少北人들과 결탁하였으므로 李天輔·李鼎輔·李益輔 등과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이다.²⁰⁴⁾ 이때 李善泰의 상소에 대하여 吏曹參判 元景夏와 大司成 李鼎輔, 副校理 李天輔 등 양측분쟁 당사자들도 상소하여 각각 자기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領議政 金在魯는 위 李善泰의 상소 내용이 과격하고 또한 私的인 분쟁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엄단할 것을 건의하여 英祖는 그를 削職하였다.²⁰⁵⁾

李善泰의 상소에 따른 분쟁은 이듬해까지 지속되었는데 英祖 19年 正月 持平 黃景源은 상소하기를 그가 史官으로 있을 때 새로운 제도(翰圈法)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것을 李善泰는 私黨만 생각하고 國論에 위배된다고 하였지만 그가 館閣會圈의 부당함을 거론한 것은 오로지 史官의 薦擧를 중요시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대하여 英祖實錄 편찬 당시의 史官은(正祖 때의 史官) 기록하기를 우리나라에서 官制를 가장 중요시하여 翰林에 관한 薦法을 만들어 후보자를 천거할 때에 향불을 피워서 하늘에 맹세하도록 한 것은 대개 역사를 중요시하고 薦法을 엄하게 한 것인데 지난 辛酉年(英祖 17年)에 元景夏·鄭羽良 등이 薦法을 혁파할 것을 주장하여 임금의 이에 따랐다는 것과 그 때 黃景源이 史局(翰林)에 있으면서 李爾瞻의 館閣會圈의 故事를 인용하여 元景夏 등의 주장을 배척하자 元景夏는 매우 화를 내고 李善泰를 불러들여 상소하도록 하여 黃景源의 주장을 배척하고자 하였으므로 이에 黃景源이 臺官으로 들어가게 되자 상소하여 자기 변명을 한 것이라 하였다.²⁰⁶⁾

같은 해 11월에 英祖는 大臣과 備邊司 堂上官을 불러보고 또 翰林法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는 右議政 趙顯命이 건의한 것으로서 前職 및 現職 翰林들이 함께 모여 圈點을 행하여 임금에게 문서로 보고하여 몇 점 이상을 取할 것인가를 정한 후 비로소 召試에 응시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英祖는 翰薦의 폐

204) 『위의 책』 卷56-9, 10, 英祖 18年 8月 甲午.

205) 『위의 책』 卷56-11, 위와 같은 날.

206) 『위의 책』 卷57-3, 英祖 19年 正月 甲子.

단을 매우 싫어하여 圈點制로 바꾸고 回薦法을 혁파하였던 것인데 이 때에 奉教 李毅中과 檢閱 吳彦儒·鄭元淳 등이 圈點으로 金陽澤·申晦·成天柱·韓光協 등 4인을 取하였으나 그중 특정인에 대한 持平 黃景源의 논박과 圈點을 맡았던 翰林들의 상소 등으로 인하여 圈點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왕명이 있게 된 것이다.²⁰⁷⁾ 그리하여 英祖 20年 5월에 翰林召試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때 英祖는 시험관을 入侍하도록 하여 시험성적 순으로 尹勤 등 5인을 取하였다. 처음에 結直 史官인 林象元 등이 會圈하여 3점 이상 15인을 취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약간명의 父祖가 지난날 親南人系로서 老論系 主要人士를 害쳤다고 老論 政權下에 있었던 당시의 집권관료사회에서 논의가 분분하였기에 뽑힌 사람들이 사양하여 召試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圈點을 시행하도록 館閣에 명령을 내려서 문제된 약간 명을 빼고 25인을 取하였다. 그러나 그 중 6명이 召試法에 반대하여 召試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英祖는 大怒하여 그 父兄을 섬으로 流配하거나 파직하였고 당사자들을 축출함은 물론 그 배후인물로 생각되는 사람들과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臺官들까지 파직하였다.²⁰⁸⁾

英祖 20年 6月 領議政 金在魯가 건의하기를 “이후의 翰圈 때에는 나이 60세가 된 사람은 추천 받지 못하도록 節目에 첨가하자” 하였고 英祖는 이를 允許하였다.²⁰⁹⁾ 또 英祖 22年 正月 金在魯의 上奏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英祖 20年の 翰林召試 때에는 圈點을 하나(1點)만 받아도 召試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그 후 법(定式)이 바뀌어져서 次點 이상인²¹⁰⁾ 자라야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이 續大典에 등재되었다는 것이다.²¹¹⁾ 英祖 24年 10월에 左議政 趙顯命이 건의한 바에 의하면 翰林召試에 낙제한 耆가 문득 春坊(世子侍講院)의 說書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자리는 參上官으로 올라가는 첩경으로서 參下官 중의 최고의 자리라는 것이며 그래서 翰林이 별 볼일 없는 官職이 되었으므로 낙제자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잘 됐다 고 하니 兼說書 자리는 翰林이 이

207) 『위의 책』 卷58-31, 英祖 19年 11月 己亥.

208) 『위의 책』 卷59-30, 英祖 20年 5月 己亥.

209) 『위의 책』 卷59-34, 英祖 20年 6月 辛亥.

210) 과거시험 성적에 준하여 次下點 이상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增補文獻備考』 卷 186-22, 選舉考 3에 의하면 각종 과거시험은 上上, 上中, 上下, 二上, 二中, 二下, 三上, 三中, 三下, 次上, 次中, 次下, 更, 外 등 14등급으로 되어 있다.

211) 『위의 책』 卷63-2, 英祖 22年 正月 庚辰.

를 겸직함은 물론 금후로는 翰林이 아니고서는 외람되이 說書로 추천될 수 없도록 하고 召試에 낙제한 자는 새로이 圈點을 받아 召試에 합격한 후라야 翰林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²¹²⁾

英祖 24年 11月の 翰林圈點에서 15인을 取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방 선비가 7인이나 들어 있어 英祖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召試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²¹³⁾ 같은 달에 英祖는 翰林圈點을 행한 용지를 갖고 오라 하여 無點이었던 南人系 蔡濟恭에게 특별히 御點 2점을 써넣어서 召試에 응시하도록 명령하였다.²¹⁴⁾ 蔡濟恭은 그 당시 才士로 알려졌으나 南人이었으므로 老論政權 下였던 당시의 官界에 清宦(史官)으로 入仕할 수 있었던 것은 英祖의 강력한 탕평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였다. 南人系 蔡濟恭 등을 翰林雜類라고 상소하였던 臺諫 宋瑩中(노른계인 듯)을 파직하고 黨心으로 서로 헐뜯는 작태를 英祖는 매우 개탄하고 있다.²¹⁵⁾ 그러나 그러한 黨習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아서 그 이듬해의 翰圈時에도 圈點시행자 간에 갈등이 나타나서 英祖(왕권대리자, 사도세자)는 그들 한림원(예문관)의 일부 관료를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²¹⁶⁾ 英祖 29年 10月 임금과 翰林 洪良漢의 대화에서 洪良漢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翰林을 뽑는 절차가 薦法에서 圈法으로 바뀌었지만 그 직무는 같은데 나이가 어린(18세) 사람은 그 자리에 부적당하다고 하자 영조는 翰林은 새로 문과에 급제한 자 중에서 골라 뽑는 것이 古例라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임금은 결국 洪良漢의 말에 따랐다.²¹⁷⁾

英祖 30年 6月 임금은 大臣과 館閣(홍문관과 예문관) 당상관을 불러서 翰林會圈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보다 앞서 兼春秋(史官 겸직자) 鄭尙淳과 檢閱 李壽勛 및 申應顯 등이 會圈하여 12인을 取하였는데, 朴致文이 上書하여 시비를 걸고 史官(檢閱)들이 맞 上書로 변명하였으므로 임금은 朴致文이 翰圈을

212) 『위의 책』 卷68-25, 英祖 24年 10月 癸卯.

213) 『위의 책』 卷68-28, 英祖 24年 11月 丁巳.

(그 이전에는 주로 老論系 서울 양반의 자제들만이 翰林이 될 수 있었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214) 『위의 책』 卷68-34, 英祖 24年 11月 丙子.

215) 『위의 책』 卷70-10, 英祖 25年 8月 丁酉.

216) 『위의 책』 卷71-16, 英祖 26年 4月 乙未.

217) 『위의 책』 卷80-21, 英祖 29年 10月 庚戌.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파직하고, 翰林들의 敗圈을 이유로 館閣에서 會圈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에 大臣과 춘추관의 당상관들이 다시 會圈하여 22인을 취하였던 것인데 임금이 宗室子인 李廷烈과 李顯祉 두 사람을 추가로 넣었다는 것이다.²¹⁸⁾ 또 英祖 32年 6月の 翰林圈點時에는 35인이나 뽑혔으므로 圈法의 혼잡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실록의 기록자(史官)가 개탄하고 있다.²¹⁹⁾ 英祖 35年 12月 翰林 申益彬이 상소하여 그 무렵의 翰林圈點 속에 부당하게 들어 간 자가 많다고 하자 英祖는 “翰圈을 翰薦으로 도로 바꾸자는 것이냐” 하면서 翰林들을 파직하였다.²²⁰⁾ 英祖 37年 10月の 翰林召試때에도 翰圈猥雜이란 말을 한 자가 있어서 4인이 召試에 응시하지 않았으므로 英祖는 入庭(응시)을 촉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入庭하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英祖는 화를 내면서 말씀하기를 “그들 新進小官들이 감히 임금에게 대항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끝내 응시하지 않는다면 그 아비를 海邑으로 귀양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때 영의정 洪鳳漢은 말하기를 翰薦을 翰圈으로 바꾼 것은 대개 인재를 널리 뽑자는 것인데 한번의 시험으로 끝나게 한다면 비록 글 재주가 좋은 사람일지라도 한두번 실수는 있는 것인즉 그를 영구히 蘭臺(史官)가 되는 길을 막아 버리는 것은 심히 애석하므로 세번까지는 응시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과 他 관료들의 찬동을 얻어서 定式(법제)化한 것이다.²²¹⁾

그러나 英祖 39年 12月 正言 李宇喆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翰圈召試法에 있어서 낙제자가 두번 세번 시험볼 수 있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즉 재능 있고 마음 끝은 자를 뽑는 데는 한 번의 시험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英祖는 몹시 화를 내고 위의 李宇喆을 削職하였는데 再試·三試로 예문관 奉教·待教가 된 사람들이 모두 引避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英祖는 또 화를 내며 그들을 察訪·權管 등으로 좌천시키고자 하다가 영의정 洪鳳漢의 만류로 그대로 한림원(예문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²²²⁾ 처음 임금의 임석하에 翰圈面試를 행할 때에 李宇喆의 상소가 올라 왔으므로 英祖는 의심하기를 翰圈에 든 사람들

218) 『위의 책』 卷81-42, 英祖 30年 6月 丙寅.

219) 『위의 책』 卷88-1, 英祖 32年 6月 丙午.

220) 『위의 책』 卷94-21, 英祖 35年 12月 辛卯.

221) 『위의 책』 卷98-25, 英祖 37年 10月 丁亥.

222) 『위의 책』 卷102-33, 英祖 39年 12月 庚子, 壬寅.

再試·三試에 응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만히 李宇喆에게 부탁하여 상소하게 함으로서 召試法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정의 圈點을 받은 사람(圈中諸人)들을 불러 面試를 행하고 그것을 制度化한 것이다. 그러나 그후에는 翰圈이 시행되어도 面試는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다.223)

翰林이 侍從之臣인가 아닌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侍從은 임금의 측근에서 근무하는 淸宦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父祖에 이르기까지 特典과 施惠가 있었다. 英祖 43年 9月 영의정 金致仁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承政院의 注書와 世子侍講院의 說書는 侍從이지만 翰林(예문관 검열)은 시종이 아닌데도 再昨年 이래 시종으로 인정되어 임금의 은혜를 입은 자가 몇명있고 일전에도 翰林의 父가 加資되었으므로 銓官(인사담당관)을 推考하고 加資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英祖는 左·右相의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允許하였다.224) 또 翰林은 史草를 납부하기 전에는 6품(參上官)으로 승진되더라도 官職을 줄 수 없는데도 翰林을 史草 납부전에 세자시강원 司書(정6품)로 승진 발령한 銓官을 英祖는 영의정 金致仁의 건의에 따라 파직하였다.225)

正祖 卽位年 10月 임금은 翰林會圈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그때 조정의 다수의견은 마땅히 翰薦制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正祖는 翰薦制를 혁파한 것은 先王때에 한 것이므로 그것을 복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春秋館 同知事 趙堧은 상소하여 말하기를 史官을 천거제로 임용하는 것은 옛 법규이며 經道(불변의 진리)이고 翰薦制를 翰圈制로 바꾼 것은 近例이며 權宜(임시방편)라는 것과 그리고 翰圈은 반드시 史官으로 하여금 主官시켜야지 館閣의 當상관이226)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한 것은 대개 그 權宜가 經道에 가까워지게 하고자 함이라 하였다. 또 史官이 앞에서 잘못하여 館閣의 當상관이 뒤에서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실로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古制에 따라 임금께서 翰林 薦擧法을 회복하셔서 翰薦을 그 사람들(史官들)에게 전속시켜야 하고, 또한 圈事를 행할 때에도 반드시 史官에게 맡겨서 시행하도록 하여 옛 規例를 남겨야 한

223) 『위의 책』 卷102-34, 英祖 39年 12月 癸卯.

224) 『위의 책』 卷109-21, 英祖 43年 9月 庚子.

225) 『위의 책』 卷117-11, 英祖 47年 8月 庚辰.

226) 관각의 當상관이란 보통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과 제학을 의미하는데, 또 그들은 춘추관의 지사와 동지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正祖는 우의정 鄭存謙, 춘추관의 知事 黃景源, 同知事 趙竣 등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翰薦法이 翰圈法 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史官의 임무가 重且大하고 옛날의 천거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천거할 때의 폐단 또한 심하였다. 그 사람의 문장과 학문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門閥만으로 뽑았기에 머리가 텅빈 사람도 외람되어 史官이 되었다. 召試法은 宋나라의 館閣召試之規에서 유래된 것이다. 만약 천거법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으나 會圈法으로는 혼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27)

趙竣이 다시 주장하기를 翰林의 임무가 가장 중요하며 당초에 翰薦法을 翰圈法으로 바꾼 것은 부득이 하였다고 하지만, 召試를 시행할 때 응시하는 것이 벼슬을 구하는 혐의를 입게 되어 글 잘하는 사람들이 召試에 뽑히기를 바라질 않아서 답안을 적당히 적어 낸다는 것(草草製進)이며 그 예로서 兪彥鎬를 들었다. 그러나 正祖는 “宋나라 때의 名臣碩輔들 모두가 館閣召試로 등용되었다”하고 이어서 大臣에게 의견을 물었던바 鄭存謙이 말하기를 召試法이 나온 후에 간혹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과 임금이 법제도를 만들면 신하는 반드시 분수를 지켜서 응시해야 하며 異議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黃景源에게 물었던 바 그가 대답하기를 右相(鄭存謙)의 생각과 같다고 하고 翰圈法과 召試法이 매우 좋다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趙竣은 천거는 한 사람이 주관하여 焚香한 후 公正無事하게 뽑겠다고 하늘에 맹세하는 祝天의 정성이 있으므로 말썽있는 사람이 뽑히는 수가 없다는 것과 都堂會圈에서는 간혹 뽑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뽑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임금이 加點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며 前翰林들로 하여금 圈點을 시행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正祖는 “前翰林들이 반드시 圈點을 시행한다는 보장도 없고 비록 圈點을 시행하더라도 의리를 自處하여 스스로를 높이고 벼슬을 구하는 혐의가 있는 무리들이 뽑혀도 어찌 공무수행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正祖와 趙竣의 토론은 계속된다. 228)

趙竣 : 대개 圈點으로 뽑은 자를 다시 시험보게 하면 글에만 중점을 두게 되어 밑에 있는 자들은 마침내 벼슬을 구하는 혐의를 입게 되고 위에 있는 자

227) 『正祖實錄』卷2-44·45. 正祖 卽位年 10月 庚戌, 辛亥.

228) 註 227.

들은 또한 禮를 행하는 길에 恧결이 있게 됩니다.

正祖 : 글로써 사람을 뽑을 때 비록 禮를 행함에 恧결이 있다 하여도 글을 버려두고 무엇 갖고 뽑겠는가. 宋나라가 盛할 때에도 館閣召試가 있었는데 現世에만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가?

趙竣 : 臣은 館閣의 堂上관이 圈點을 주관하면 끝내는 좋지 못한 일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正祖 : 宋나라 때 二府(中書門下府와 樞密院)에서 臺諫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대개 宰相들이 專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밑에 있는 관료들의 公議에 의하도록 하였는데 卿이 만약 여기에 근거하여 한 말이라면 좋으나 翰林圈點을 행하지 말자는 것은 어찌서인가. 召試에 應試하는 것을 벼슬을 구하는 僞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천거를 행한 후에도 講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례이다. 講과 製가 어떻게 다른가?

趙竣 : 臣의 本意는 먼저 召試를 행한 후에 圈點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正祖 : 圈點을 시행하지 않고 召試를 행하자는 것은 淸濁과 高下를 막론하고 承文院 參下官으로 있는 자 모두를 召試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가?

趙竣 : 간혹 恧효됨이 있을 것 같으나 널리 골라서 응시하게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正祖 : 그렇다면 圈點을 행한 후에 시험을 보이고 또 시험 보인 후에 圈點을 행한다면 이는 곧 圈點을 다시 하자는 것으로 시행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召試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여도 불과 몇 사람만이 뽑힐 터인데 그 중에서 圈點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몇번 씩이나 거듭 시험 보여야 하는가? 그러면 조선에서는 끝내 史官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趙竣 : 그러한즉 천거제(翰薦制)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正祖 : 천거제를 시행하는 점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 다시는 卿에게 묻지 않겠다.

또 吏曹參議 兪彦鎬를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正祖 : 趙竣이 말하기를 吏議(兪彦鎬)가 前日 召試를 볼때 뽑히고 싶지 않아서 초초히 써 올렸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吏議와는 다르다. 준의 말이 옳은가, 아닌가.

兪彦鎬 : 聖敎를 듣자 온바, 臣이 朋友에게 믿음에 없어 보이니 실로 부끄럽습니다. 召試는 바로 御試인데 君父의 앞에서 어찌 감히 마음을 속이는 짓을 하겠습니까. 臣이 세번이나 召試를 응시하였지만 글이 모자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正祖 : 내마음이 풀리는 것 같다.

그리하여 都堂(의정부)에서는 翰林會圈을 시행하여 5점을 받은 3인을 뽑아서 召試를 보도록 명령하였는데, 그 중 2인은 지방에 가 있다고 하고 또 1인은 아프다고 하면서 불응하였다. 이에 임금의 말씀하기를 “어제 춘추관 同知事 趙竣이 召試를 못하도록 힘써서 막더니 召試에 응시해야 할 자들이 홀연히 稱病하거나 地方에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圭角²²⁹⁾을 나타내는 것은 그 무슨 계교인가. 하물며 전의 召試에는 응시하였던 자들이 이번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그것이 趙竣의 上奏와 관련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위하여 잡아들여 물어 보자”고 한 후에 그들이 잡혀 오자 석방하고 임금의 親臨下에 召試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3인의 등과시의 文體에 따라서 表試·策試 혹은 賦試로서 시험을 보였으나 3인이 모두 白文²³⁰⁾으로 시험답안을 써냈으므로 翰林召試는 더 실시하지 않고 文臣製述로서 3인을 시험하여 뽑고자 하였지만, 글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正祖는 “내가 科擧로 인한 獄事를 일으키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이러한 무리들을 엄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어서 甲午增廣 會試의 시험관들도 모두 잡아서 국문하고 위 3인의 榜目(합격자 명부)원부에서 이름을 삭제함과 동시에 그 중 2인을 잡아서 국문 하였다.²³¹⁾ 또한 그들에게 다시 시험 보도록 명령하였는데 3인의 글이 모두 시원찮

229) 圭角은 말과 행동이 모가 나서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230) 白文은 句讀點이 없는 글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白文呈券이란 白紙答案紙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 듯하다.

231) 3인의 이름은 李健源·趙憲喆·宋俊載 등이며 李·趙 2인은 增廣試, 宋은 庭試 합격자들인데, 增廣試 합격자는 榜目원부 삭제 이외 잡혀서 국문까지 당한 것이

았으며 특히 그 중 한사람의 글은 모양조차 갖추지 못하여 먼저 번의 과거 답안이 借作임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甲午增廣 會試 때의 主試官인 刑曹判書 李福源은 仕版이 削去되고 서울에서 추방되었으며 그 이외의 試官과 監試官들도 削職되었다.232)

正祖 2年 7月에 翰林圈點을 시행하여 李時秀·李宗燮·金載瓚·柳孟養·李集斗·鄭東浚·李信祐 등 7인을 뽑았다.233) 正祖 3年 12月에 임금은 都堂에 명령을 내려 翰圈을 행하도록 하면서 下教하기를 翰林이 不備하면 館閣의 관직자들이 일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하물며 지금은 翰林이 단지 2인뿐이므로 會圈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마침 만 일로 인하여 모두 파직되었으므로 翰圈을 都堂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할 것이다. 또 下教하기를 翰圈時에 翰林이 不備하여 會圈할 수 없으면 현직 翰林이 削職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번에 여러 翰林이 비록 모두 죄를 지어 파직되거나 삭직되었지만 그들이 삭직되기 전에는 都堂에서 會圈할 수가 없었으므로 여러 翰林을 우선 정례에 따라 削職하고 의정부에서 翰林을 會圈하였다. 이때 會圈한 사람들은 領事 徐命善, 大提學 徐命膺, 知春秋 韓光會·鄭光漢, 同春秋 李義詔·李宗燮·金載瓚·李集斗·徐鼎修 등이었다.234) 여기서 참고할 것은 侍從之臣인 承政院 注書는 이때도 前任 注書가 천거하였다.235)

正祖 4年 6月 예문관 檢閱 金載瓚의 父親인 金燧이 春秋館 知事가 되었으므로 金載瓚이 상소하여 遞職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거기 대하여 吏曹에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史官은 減員할 수가 없으므로 그 父 金燧을 체직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金載瓚은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自身으로 인하여 그 父가 체직되고 자신은 여전히 춘추관의 관직을 갖고 있으면 私的인 義理上 곤란하니 자신을 면직시켜 달라고 하였다. 前例를 상세히 고찰하여 품의하라는 王命에 따라 吏曹에서 前例를 살펴본즉 父가 承旨가 되고 子가 史官이 되었을 때 承旨가 겸한 春秋館의 관직을 삭감하고 史官은 여전히 근무하도록 한 경우는 있었으나,

었다.

232) 『正祖實錄』 卷2-46. 正祖 卽位年 10月 辛亥.

233) 『위의 책』 卷6-22. 正祖 2年 7月 乙卯.

234) 『위의 책』 卷8-62. 正祖 3年 12月 己未.

235) 『위의 책』 卷8-68. 正祖 3年 12月 戊寅.

父子相避關係에 있을 때 父가 子로 인하여 체직됨은 실로 미안한 일이니 檢閱 金載瓚을 改差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236)

正祖 13年 3月 檢閱 金祖淳의 이름을 仕版에서 삭제하고 新榜 注書와 翰林的 후보자를 추천하는 法式을 영구히 혁파한다는 王命이 있었다. 그 때 임금은 먼 시골의 유생중 式年 文科에 급제한 사람을 注書(堂後)로 먼저 추천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당직을 마치고 나오는 翰林(金祖淳)이 古例를 인용하여 在京文臣을 추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237)

正祖 14年 2월에 掌令 崔景岳이 상소하기를 “翰林(藝苑)의 선발은 옛날부터 參下官의 極選(최고의 선택)이라 하였는데 반드시 人望과 才華가 公議에 부합되어야만 비로소 임용후보자로서 추천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도 都堂에서의 會圈이 혹은 私的인 것에 따라서 하여 거의 法式에 어긋나므로 圈點에 참석하였던 여러 당상관을 파직하고 改圈의 명령을 내려 翰林的 선발을 중요시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正祖는 批答하기를 “翰薦을 翰圈으로 바꾼 것은 私黨을 물리치려는 英祖의 聖意에서 나온 것이다. 私意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甲이 公의 이라 한 것을 乙은 私的이라 한다. 또 法式에 어긋났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키는 말인가. 너의 所請을 允許할 수 없다”238)라 하였다.

正祖 14年 6月 좌의정 蔡濟恭이 말하기를 자신은 翰圈에 관한 일을 잘 할 수 없고 또 檢詳 후보자에 관한 것도 地閥과 文學이 동료 보다 뛰어 나야 한다는데 대개 南人系는 百年 동안 벼슬길이 막힌 후였으므로239) 4祖(父·祖·曾祖·外祖) 중 顯官이 없는 자가 매우 많다는 것과 그러하니 전하께서는 百年前의 顯官 後孫을 취하고 百年이후를 따지지 말아야 하며 지금 같아서 動駕 및 次對時나 常參·朝參時와 都堂錄에 이르기까지, 비록 처벌을 받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기 대하여 正祖는 過하다고 한 후 檢詳 후보자조차 뽑을 수가 없는가

236) 『위의 책』 卷9-46, 正祖 4年 6月 辛亥.

237) 『위의 책』 卷27-15, 正祖 13年 3月 壬申.

238) 『위의 책』 卷29-33, 正祖 14年 2月 己卯.

239) 조선 후기 세 갈래의 큰 정치세력인 노론계, 소론계, 남인계 중 남인들은 숙종 20년 이후 정조 14년까지 근 백년동안 벼슬길이 막혔음을 말한다. 영조의 탕평책도 이들 재야세력들을 제도권 정치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책이었지만 蔡濟恭 등 소수인원만이 발탁된 상태였다.

를 물었다.²⁴⁰⁾ 蔡濟恭이 대답하기를 비단 檢詳후보자만이 아니라 비록 廟薦(의 정부에서의 천거)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며, 權坪 같은 사람도 故吏曹判書 權克禮의 후손으로 무슨 관직인들 줄 수 없겠습니까 마는 卑微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 하였다.²⁴¹⁾

正祖 16年 3月 庚寅에 奉教 李重道 등 3명이 翰林圈點을 시행하여 3點(만점)을 받은 徐有槩·林景鎮…… 등 7명을 뽑았고 3일 후에는 春塘臺에서 翰林 召試를 시행하여 그 중 徐有槩와 林景鎮을 합격시켜서 그날 徐有槩를 예문관 檢閱로 임명하였다.²⁴²⁾ 그날 규장각 直閣會圈도 있었는데 3點을 받은 南公徹이 直閣으로 임명되었다.²⁴³⁾ 규장각의 待教會圈은 正祖 12年 12월에 있었으며 예문관 檢閱 金祖淳·李相瓚 등이 4點을 받아 뽑혔고 그 중 金祖淳이 규장각 待教로 임명되었다.

史官은 현실정치의 잘잘못과 君主 및 관료들의 선악, 기타 민생문제 전반에 관하여 기록함으로써, 후세에 교훈으로 삼도록 하는 중요한 직책으로서 옛날부터 서울과 지방에 걸쳐서 널리 기록하였는데, 조선시대는 국초부터 8인의 史翰을 두고 임금을 좌우에서 모시면서 時事 등을 기록하게 하였으나 지방에서는 記事官이 없어서 監司와 守令의 賢否와 邑의 民俗이 순박한 지 여부, 기타 재앙과 상서로움 등을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世宗 13年 11月 대사헌 吳陞 등이 건의하기를 각도의 界首教官 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여 春秋館의 관원을 겸직하도록 하며, 그로 하여금 사실을 널리 기록하도록 하여 감사·수령 등의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²⁴⁴⁾

240) 檢詳은 의정부의 정5품 관직으로서 춘추관의 記注官을 겸하도록 되어 있다.

241) 『앞의 책』 卷30-58, 正祖 14年 6月 壬戌.

242) 『위의 책』 卷34-22, 正祖 16年 3月 庚寅, 癸巳.

243) 위와 같음. 규장각은 正祖 元年(1777)에 설치한 관청으로서 역대 임금이 지은 글과 쓴 글씨, 유언 및 正祖의 초상화, 글, 글씨 등을 보관한다. 正祖 6년에는 校書館을 흡수하여 外閣이라 하고 규장각을 內閣이라 하였다. 규장각의 관료는 他官 겸직인 提學·直提學이 있고, 專任 또는 他官 겸직인 直閣(정3품~종6품), 待教(정7품~정9품) 등이 있다. 直閣은 玉堂을 거친 자 중에서 待教는 翰圈이나 注薦 또는 說書通望人 중에서 규장각의 圈點을 거쳐 吏曹에서 임용제청하여 임명한다.

244) 『世宗實錄』 卷54-17, 世宗 13年 11月 丙寅.

第3章 銓選法과 銓郎의 通淸

1. 朝鮮 前期의 銓選法과 銓郎權

太宗 元年 6월에 門下府 郎舍에서¹⁾ 상소한 바에 의하면 관료 후보자를 전형하여 선발하는 법(銓選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고려가 盛할 때에는 吏曹에서 文官의 선임을 관장하였고 兵曹에서 武官의 선임을 관장하여 각각 政案(인사안)을 마련하여 관료를 임용하였는데, 이는 대개 중국과 같았으나 고려 중엽 이후 쇠퇴할 때에는 權臣이 임금의 廢立을 마음대로 하였고 관직을 주고 빼앗는 일을 전담하여 자기 집에 政房을 두고 막료들과 더불어 政案을 만들어 임용후보자 추천(注擬)과 임명(除授)을 사사로이 하여 왔다는 것이다. 조선 국초에는 政房을 고쳐서 尙瑞司로 하여 비록 그 이름은 고쳤으나 아직도 私門의 弊法을 답습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尙瑞司를 혁파하여 文官의 人事를 吏曹에 귀속시키고 武官의 선임을 兵曹에 귀속시켜서 청렴·공정·강직하며 감식력이 있는 자를 吏曹과 兵曹의 관료로 임명하여 고려의 盛時의 제도를 회복하자고 하였다.²⁾

太宗 5年 2월에 吏曹判書 李穰이 관료 후보자를 전형하여 선발하는 법(銓選法)에 관하여 상소하기를 중앙과 지방의 大小 관료로 천거된 人材를 職品에 따라 분류하여 人的事項을 기록하여 冊으로 만들어 임금에게 상신하여 낙점을 받아 임명하도록 할 것과 이때에 才能이 있으면서 나서지 않는 자(遺逸者)에 대해서는 大小 관료가 특별히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 및 門蔭功蔭子弟 任用法은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나 기타의 子弟에 관해서는 벼슬길에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門蔭·功蔭 이외의 자, 즉 관직이 없는 사람의 子弟도 나이

1) 이 당시의 門下府 郎舍란 司諫院의 前身이다. 太宗 元年 7月の 官制 改革으로 門下府가 議政府로 개편되면서 門下府의 郎舍가 司諫院으로 독립하였던 것이다(『太宗實錄』卷2-1, 太宗 元年 7月 庚子).

2) 『太宗實錄』卷1-34, 太宗元年 6月 癸酉.

18세 이상으로서 才幹이 있는 자를 大小 判료들로 하여금 천거하도록 하여 그 內外祖父의 判職명을 모두 기록하여 吏曹에서 書·算·律의 시험을 보여 그 능력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³⁾ 그 이듬해인 太宗 6年 2月에는 吏曹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된 銓選法을 만들어 올렸는데 다만 그중 일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顯官 6품 이상자는 각각 散官 3품 이하인 賢良을 천거하되 그 出身·來歷·文武才幹·內外祖系를 그 이름 밑에 써넣어 吏曹에 올리도록 하고 顯任(文武正職)을 지낸 자의 경우에는 그 職名만을 써넣도록 하되, 사사로이 청탁하는 單子는 모두 禁斷한다는 것이었다.⁴⁾

太宗 16年 6月 임금은 공신과 2품 이상의 아들 및 사위들은 이미 蔭職을 받게 되었으나 기타 學生의 부류와 같은 자를 判료로 등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를 吏曹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여기 대하여 趙末生은 보고하기를 공신의 아들과 사위의 이름을 기록하여 1冊으로 하고 2품 이상의 아들과 사위의 것을 1冊으로 하며 各品으로 특별임용(保舉)할 사람을 1冊으로 하여 吏曹에서 보관하였다가 銓選⁵⁾할 때에 임금에게 올려서 職任을 맡길 만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하도록 銓選法에 규정하면 인사 청탁의 풍조가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임금은 이를 매우 좋게 여겼다.⁶⁾

世宗 13年 11月 대사헌 吳陞 등이 상서하기를 爵祿(벼슬과 녹봉)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과 그러나 庸劣한 무리들의 資級이 여러 차례 올라간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임금께서 銓注(判료를 선임)할 때마다, 正殿에 나가서 吏曹과 兵曹의 당상관을 불러 보고 친히 임용후보자의 賢否와 그 내력을 물어서 임명하면 銓選法이 더욱 밝아지고 바르게 될 것이라 하였다.⁷⁾ 世宗 14年 5月 都承旨 安崇善의 건의에 따라 世宗은 大小 判료를 임명(除授)할 때에 左右議政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전에는 左右議政이 大官 임명시에는 참여하였으나 小官 임용시에는 불참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건의가 있게 된 것

3) 『위의 책』 卷9-3, 太宗 5年 2月 乙亥.

4) 『위의 책』 卷11-5, 太宗 6年 2月 戊辰.

5) 銓選이란 判료후보자에 대한 인물과 재능을 조사하여 선발하거나 적당한 判職을 주는 것을 말하고, 銓注란 判료후보자의 선발과 선발된 후보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 또는 適所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위의 책』 卷31-57, 太宗 16年 6月 戊子.

7) 『世宗實錄』 卷54-18, 世宗 13年 11月 丙寅.

이며 관료의 선임(銓選)은 중요한 일이므로 大小官員을 막론하고 정승이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⁸⁾ 世宗 15年 10月 吏曹에서 건의하기를 “吏曹의 직부분장이 銓選에 있는 만큼 마땅히 임용후보자의 인물의 賢明 여부를 미리 알아야만 하는데도 奔競(엽관)을 이유로 면접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러하니 어찌 그의 才行을 알 수 있겠는가”라 하고, “지금부터는 당상관과 臺諫을 제외하고 東班 3품 이하를 새로 임명할 때 면접(臺參)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世宗은 詳定所의 논의를 거쳐서 간단한 면담을 허용하였다.⁹⁾

世宗 19年 8月 의정부에서 관료 선임법(銓選法)이 미진하다고 보고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그 당시 臺諫을 임명할 때에는 임용할 관직마다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여 임금의 落點을 받아왔던 것이 前例라는 것과 종래 단수후보자를 추천하여 왔던 書筵의 輔德 이하의 관료와 寺監의 判事, 예문관의 直提學, 直館, 의정부의 舍人, 檢詳 6曹의 郎官 및 한성부의 郎廳, 刑曹의 都官, 知曹事의 郎廳, 中樞府의 經歷·都事, 종친부의 典籤 등과各司의 4품 이상의 관료, 그리고 各道의 首領官·守令 등을 임명할 때에도 臺諫의 예에 의하여 반드시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임금에게 올리되 官歷과 才行을 보고하여 落點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承旨가 吏曹와 兵曹의 관직을 겸하여 銓注(관료선임)에 참여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좋지 않으니 이를 분리시켜(겸직을 못하도록 하여) 奔競(엽관)의 풍조를 종식시킬 것도 건의하였다.¹⁰⁾

世宗 26年 閏7월에 吏曹의 건의에 따른 議政府의 보고에 의하면 천거를 받아 특별임용할 사람과 父祖의 음덕으로 取才시험을 거쳐 관료가 될 사람 중 喪中이거나 死亡 또는 疾病中일 경우에는 그것을 그 이름 밑에 기록하여 두며 매년 4계절의 첫달에 吏曹에서 임용할 사람을 많던 적던 간에 임금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아 두고, 빈자리가 생길 때 임금에게 다시 보고하여 임용한다. 만약 낙점 받은 사람을 모두 임명한 후에도 빈자리가 많으면 수시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아 임명한다. 그리고 만약 천거로 특별 임용할 사람이 없다면 顯官을

8) 『위의 책』 卷56-24, 世宗 14年 5月 癸酉.

9) 『위의 책』 卷62-9, 世宗 15年 10月 丁丑.

10) 『위의 책』 卷78-27, 世宗 19年 8月 乙丑.

지냈거나 才幹이 현저한 사람을 吏曹과 兵曹의 上下官이 각각 함께 의논하여 그 祖系·官歷·實才·나이 등을 각자의 이름 밑에 기록하여 두며 2품 이상의 子孫 婿弟姪 중 取才 시험을 거친 자 등도 經濟六典 元典에 의거 신고한 후 新원보증서(保結)¹¹⁾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吏曹에서는 文武科에 급제한 사람과 전직 중앙 및 지방관료로 才行이 뚜렷한 자 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나이 父祖의 官職名 등을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¹²⁾

世宗 27年 8月에는 임금이 吏曹과 兵曹에 지시하기를 금후로는 吏曹과 兵曹을 담당하는 承旨가 관료의 선임(銓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모든 관료의 임명에 관한 일은 吏曹과 兵曹에서 심사(磨勘)한 후 郎官으로 하여금 承旨에게 올리도록 하고 承旨는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임금이 傳敎할 경우에는 內官이 承旨에게 전하고, 承旨가 다시 銓曹의 郎官에게 傳하며 부득이 직접 의논할 일이 있을 때에만 承旨가 王命을 받아 政廳에 가서 의논한 후 임금에게 결과 보고를 한다는 것이다.¹³⁾

文宗 卽位年 11月에는 大司憲 安完慶이 인사행정의 불공평을 지적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옛날의 예에 의하면 나루터의 渡丞 따위는 吏胥들로 임명하였는데 지금은 三田渡와 楊花渡 등에 모두 大臣의 子弟들로 임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文宗은 “銓曹(人事部處)에서 私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모두 임금의 낙점을 받아서 임명하였다는 것과 大臣의 子弟를 우선적으로 임명한 것이 무엇 때문에 나쁘냐”라고 반문하였다.¹⁴⁾

成宗 2年 2月 임금은 “전날의 관료임용후보자 추천시에는 비밀로 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누가 어느 관직에 내정되었지만 탄 관직을 희망한다는 식으로 미리 알려져 있으니 이것이 옳은 일이나”고 하자 判書 李克塽은 “前例는 추천서를 밀봉하여 출납하였으므로 비밀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지금도 그러한 前例대로 함이 좋겠다”고 하여 임금의 동의를 받았다.¹⁵⁾ 成宗 6年 2月

11) 保結이란 처음으로 벼슬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同鄉 관리의 新원보증서이다.

12) 『위의 책』 卷105-15, 世宗 26年 윤7月 壬午.

13) 『위의 책』 卷109-22, 世宗 27年 8月 辛酉.

14) 『文宗實錄』 卷4-42, 文宗 卽位年 11月 辛丑.

에 持平 徐근이 보고하기를 옛날에는 司憲府에서 참고할 일이 있으면 각 관청의 文籍을 取하여 보는 것이 통례였는데, 근래에는 吏曹의 관료임용후보로 추천된 자의 명단(擬望單子)을 취하고자 하여도 吏曹에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과 만약 그 외 여러 관청에서 이것을 본 받아 정례가 된다면 사헌부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사람을 탄핵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成宗은 左右를 돌아보며 吏曹의 관료 임용 후보자 명단을 사헌부에서 일일이 취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 괜찮은가를 물었던 바, 領事 洪允成은 대답하기를 自身이 司憲府 掌令으로 있을 때 관료임용 후보자 명단을 갖고 오도록 하자,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世祖(수양대군)가 자신을 구속하고자 하면서 世宗 末년에 모든 인사 추천서를 비밀로 하여 누설시키지 말라는 傳旨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¹⁶⁾

成宗 6年 6月 左承旨 柳輕가 건의하기를 임금이 권한을 밑으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과 권한이 한번 넘어 가면 도로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吏曹와 兵曹에서는 官人을 취임시키고 또한 물러가게 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므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知事 任元濬도 건의하기를 世宗이 항상 말씀하기를 吏曹와 兵曹의 職任은 30개월을 넘기지 말도록 하라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권한이 큰 곳이 吏曹 兵曹 및 承政院이라는 것 및 또한 人材를 추천하여 올리는 경우에는 비록 大臣의 자리에 있을 지라도 私情이 없도록 하기는 어려우니 한 곳에만 의지하여 믿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¹⁷⁾

成宗 12年 3月 임금이 吏曹에 傳教하기를 금후 吏曹의 郎廳이 비록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才能과 人望이 특이하여 臺諫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금에게 여쭙어 회답을 받아 임용 후보자로 추천하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持平 權任은 임금에게 啓하기를 “먼저 인사 때 吏曹佐郎 丘夙孫이 소정 근무일수가 차지 않는데도 사간원 獻納(정5품)으로 승진 임용되었으나 마침 相避관계에 있는 친척이 있어서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물며 吏曹의 郎官에 있어 서라”

15) 『成宗實錄』 卷9-19. 成宗 2年 2月 甲辰.

16) 『위의 책』 卷52-1. 成宗 6年 2月 庚辰.

17) 『위의 책』 卷56-9. 成宗 6年 6月 辛卯.

하였다. 이에 成宗은 左右를 돌아보면서 물었던 바 領事 鄭昌孫이 대답하기를 臺官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成宗은 여러 고위관료와 의논하였던 바 沈滄·尹士旰·尹弼商·洪憲·盧思愼·尹壕 등은 사람의 그릇이 상당하면 천거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래 吏曹의 郎廳이 근무일수를 채우지 않고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역시 많다는 것과 그러므로 丘夙孫의 승진발령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成宗은 丘夙孫의 改任을 명하고 지금부터 吏曹와 兵曹에 서는 재능이 탁월한 자가 아닌 한 반드시 근무일수를 채운 후에 승진시켜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다.¹⁸⁾

成宗 12年 4월에 大司憲 曹幹 등이 筭字를 올려서 말하기를 “蔡壽 등은 승정원(喉舌之地)에 있으면서 人事權(銓選之權)을 몰래 농간하여 감히 친척과 친구 등 용렬한 무리들을 私情으로 뽑아 올려서 王命으로 임명되기를 바랐으니 그 죄가 무겁다는 것과 그러한 者를 中國使臣(天使)이 온다고 하여 석방할 수 있는가”라 하고, 또 “옛 承旨(蔡壽)가 있어야만 外交가 되는가”라 하면서 그를 “법에 의거 죄를 주어 외람되이 하는 일을 예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成宗은 새 사람이 옛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고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데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사헌의 건의를 듣지 않았다.¹⁹⁾

燕山君 3年 正月에 持平 姜叔突이 上啓하기를 守令이 만기로 교체되어 중앙 관으로 추천될 때 복수 후보로 추천되어 임금의 낙점을 받지 못하면 부득이 散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옳지 못하니,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단독 후보로 추천하라는 王命이 어제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뒷날 폐단이 많을 것이므로 3배수로 추천하는 제도를 바꾸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단일후보로 추천할 경우 吏曹에서 弄權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吏曹郎官들이 자신들의 다음 補職을 위하여 弘文館의 應教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 둔 것을 例示하여 그들의 弄權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王命을 거두어 달라고 하였다.²⁰⁾

燕山君 3年 9月 尹弼商·鄭文炯·韓致亨·李克墩·成俊 등이 인사행정에 있어서의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첫째 人品을 막론하고 循資法에 따라²¹⁾ 의례히 승진

18) 『위의 책』 卷127-5, 成宗 12年 3月·甲午, 乙未.

19) 『위의 책』 卷128-3, 成宗 12年 4月 壬子.

20) 『燕山君日記』 卷21-17, 燕山君 3年 正月 癸亥.

21) 循資法은 世宗 때 執政者의 인사 擅斷과 兪官의 弄權을 막기 위하여 관료의 근무

또는 전보시키는 것, 둘째 사람의 재능에는 長短이 있는데도 한 사람에게만 구하여 갖추는 것, 셋째 聖人 이외에는 누구나 과실이 없을 수 없으며 비록 전에 과실이 있더라도 뒤에 悔改하면 善人이 되는 것인데도 관료를 임명할 때마다 반드시 전의 과오를 주워 모아서 뒷날 배척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으니 사람 求하기가 역시 어렵지 않은가. 경국대전에서는 3階를 초과하여 승진 임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凡人에 대한 法이다. 俊秀하고 특이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銓曹에서 그 사람이 限階를 초과하여 승진함이 옳다는 사유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임용하면 된다. 이번 銓曹에서 인선할 때 人品과 職次가 간혹 상당하지 않아서 부득이 임용후보자를 승진시켜서 추천하였는데 비록 私心은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고 臺諫에서도 전일의 과오를 주워 모아 논박하였으므로 銓曹에서는 그 자격을 살펴서 겨우 자신들의 허물을 면하고자 하였을 뿐, 어찌 여러 사람의 논의를 배척하고 등급을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임금이 잘 살펴서 時弊를 단절시켜야지 밑에 있는 자가 감히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朴崇質도 논의하기를 옛날에는 혹은 밭에서 혹은 山에서 사람을 발탁하여 임용하였는데 이러한 인물을 하루아침에 재상이 될 정도로 초특급으로 올려 주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後代人의 사람 쓰는 방법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循資法을 써서 헛수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年功法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法으로서 죽히 權臣의 用權의 길은 그치게 하였고 지금까지 매우 편리하게 썼으며, 祖宗의 法을 쉽게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의 才德에 따라서 순서를 뛰어 넘어 발탁하여 임용한 후에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오직 임금이 결정할 문제이지 人臣이 논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朴安性의 의견은 循資法을 만든 이래 賢人과 愚人이 뒤섞였으므로 銓曹에서 정제되는 병폐를 바꾸고자 하여 擢用의 法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뒷날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옛날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이며 그중 부득이 차례를 넘어서 발탁할 자는 여러 大夫가 모두 賢人이라 한 후에 임용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朴槿도 논의하기를 法制

무성적에 따라 한 資級씩 단계적으로 승진하게 하는 제도로서 당상관과 臺諫·6曹 郎官·議政府舍人 등 淸要職인 일부 당하관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李成茂, 『앞의 책』 p.170).

에 구애되어 賢人과 愚人이 함께 침체되므로 그 法을 變通하면 요행을 바라서 冒進하는 자가 있어 古今을 통하여 걱정거리가 되었다. 또한 循資法은 祖宗朝로부터 시행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바꿀 수 없다. 銓曹는 善良한 사람을 나가게 하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그 직무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일을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하니 맡겼으면 직책을 다하게 하고 임금이 때때로 銓曹를 방문하여 차례를 뛰어 넘어 賢人을 발탁하면 거의 정제되는 일도 없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대하여 燕山君은 내일 다시 논의하자고 하였다.²²⁾

그 다음날 尹弼商·鄭文炯·韓致亨·李克墩·成俊·朴崇質 등은 다시 논의하기를 “經國大典의 循資法은 고칠 수 없다”라 하고, 그러나 “만약 才能이 특이한 자가 있을 때에는 銓曹에서 그 才品을 갖추어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다만 臺諫·弘文館의 侍從臣 및 6曹의 郎廳 등 顯職을 맡은 자들은 임금이 잘 알 수 있으나 그 이외 직급이 낮은 자(예컨대 下級武官) 등은 알 수 없을 것이라 하였다. 朴槿이 건의하기를 銓曹에서는 마땅히 사람의 善惡을 구별하여 文武賢知의 재능이 있는 자가 下級官僚로 정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천하여 발탁해야 하고, 임금도 人材를 탐방하여 적재적소로 발탁 임용하여 정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尹弼商 등의 의견에 따랐다.²³⁾

16세기 조선의 人事權은 대체로 東班官職의 경우는 吏曹, 西班官職의 경우는 兵曹에 있었으며 人事權이 있는 吏曹와 兵曹를 銓曹라 하였다. 中宗 13年 11月 임금이 傳敎하기를 대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 사람을 쓰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과 옳은 사람을 얻으면 萬事가 잘 다스려지고 잘 못 얻으면 만사가 어긋나는데 옛날의 임금들이 사람 쓰는 일을 보면 반드시 銓曹의 人事 추천권에 구애되지 않았고 그 賢明함을 알면 특별히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사람 쓰는 일은 모두 銓曹에서 추천한 자를 임금이 落點할뿐이며 그간에 간혹 특별 임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특채되는가 라고 시기하고 의심

22) 『燕山君日記』卷27-17, 燕山君 3年 9月 丙寅.

23) 『위의 책』卷27-19, 燕山君 3年 9月 丁丑.

하므로 임금이 이를 꺼리어 비록 쓸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특채의 명령을 내리는 일이 드물게 된다는 것이라 하고, 上下가 서로 의심하니 사람 쓰는 체모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탄하였다. 이 때에 銓曹의 上下 官僚 간에도 下官이 上官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같은 해, 같은 달에 吏曹 正郎 李若冰이 金紱를 直提學으로 추천하였는데 너무 빠른 승진이라 하여 吏曹判書 李長坤에 의하여 제동이 걸리지만 銓郎의 추천이 매우 굳건하였다는 것이다.²⁴⁾

中宗 19年 6月 臺諫에서는 吏曹의 官僚들이 그 동료들을 제멋대로 추천하고 특히 근래에는 人事法을 문란시키는 행위로 폐단이 있으므로 吏曹堂上官 및 郎官들을 司憲府에서 조사하는 중이니 먼저 그들을 면직시켜 달라고 임금에게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은 臺諫들을 6曹의 관료로 전보(平遷)하고 傳教하기를 郎官 후보자의 추천을 郎官이 하고 설사 堂上官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당상관)의 과실로 인하여 그들(郎官들)을 따랐다면 역시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²⁵⁾ 여기 대하여 3인의 議政들도 郎官이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堂上官들이 살피지 않고 따랐다면 실책인 것 같으나 私情은 없었다고 하였다.²⁶⁾

中宗 19年 7月 임금이 우리 나라에서 銓選法은 그런 대로 시행되고 있으나 考課法은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자 領事 南袞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考課(근무성적 평정)가 단지 上中下 3등으로 나누어 승진 또는 면직을 시키고 있는데 祖宗朝의 것과는 다른 것 같다고 하고 祖宗朝에서는 上等으로 된 자가 매우 적었으며 上等者도 이를 다시 上中下로 등급을 매겼으나 오늘날에는 특이한 자가 없어 모두 中으로 평정함이 타당한데도 國法上 中을 맞은 사람은 승진 임용을 할 수 없으며 전보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上等으로 평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또한 잦은 인사이동(1년에 5·6회 이동하는 등) 때문에 평정제도 그 자체가 不實化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中宗은 관료들을 자주 바꾸는 폐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빈자리가 많아서 銓曹에서 부득이 그렇게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라 하였다.²⁷⁾

24) 『中宗實錄』 卷34-66, 67 중종 13年 11月 丁未, 壬子.

25) 『위의 책』 卷51-3, 中宗 19年 6月 甲辰.

26) 『위의 책』 卷51-6, 中宗 19年 6月 己酉.

27) 『위의 책』 卷51-24, 中宗 19年 7月 乙酉.

中宗 23年 5月 司憲府에서는 요사이 인사운용에 있어 銓曹(吏·兵曹)의 임용후보자 추천 이외에 자주 特命이 있었다는 것과 宰相의 자리는 國王으로부터 特命이 있어 任用한 先例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特命이 너무 자주 있으면 후일의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中宗은 “宰相이 經筵에서 보고하기를 官爵을 아껴서 特命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宰相의 수가 적다고 하였다. 堂上官은 반드시 特命이 있어야만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물수가 적어서 銓曹에서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 매번 동쪽을 허물어 서쪽을 보충하는 식이니 만약 特命을 내리지 않으면 宰相으로 있는 사람은 陞品할 때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매번 特命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 매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도 옳지 못한 것이다.”라 하였다.²⁸⁾

中宗 29年 4月 임금은 “전날 臺諫이 論駁으로 파직 또는 체직되었다가 그 후의 人事에서 顯職에 임용된 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玉堂의 관료로 임명한 것은 전혀 체직의 뜻이 없었던 것이 된다.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라 하고 이를 吏曹에 물었던 바 金安老 등이 보고하기를 臺諫이 논박되어 체직되자마자 즉시 玉堂官僚로 임용된 것은 정계의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만 새로 臺諫을 임명할 때 부득이 玉堂官僚 중에서 전보시키는 수가 있다는 것과 그 때 前臺諫(논죄된 대간)을 玉堂으로 충원하지 않으면 弘文館이 장차 비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그들을 玉堂官僚 후보에서 배제하면 3배수 후보자 추천(備三望)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中宗은 뒷날의 인사시기를 기다리면 될 것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是非가 불명하여 진다고 하면서 전에 臺諫으로 있다가 면직된 후 이번에 顯職으로 임명된 자를 모두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 金安老는 임금에게 “世子侍講院도 弘文館과 다름없는데 臺諫으로 있다가 文學²⁹⁾이 된 자와 역시 前臺諫에서 司導寺正으로 승진된 자도³⁰⁾ 모두 바꾸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中宗은 世子侍講院 文學의 경우에는 바꾸어야 하지만 司導寺正은 淸要職이 아니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28) 『위의 책』 卷61-25. 中宗 23年 5月 壬申.

29) 文學은 世子侍講院의 正5品 벼슬이다.

30) 司導寺正은 궁중창고의 곡식과 간장을 관장하는 司導寺의 長으로서 正3品 벼슬이다. 그러나 續大典에서 副正과 함께 삭감되어 司導寺는 從4品(僉正이 長) 衙門이 되었다.

하였다.³¹⁾

中宗 33年 6月 弘文館 副提學 金遂性 등이 상소하기를 “私門이 크게 열려 公道가 행하여지지 않음을 지적한 후 관료 후보자를 전형하여 선발하는 일을 公明正大하게 하고 싶어도 벼슬을 하는 데는 반드시 權勢의 門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과 한 官職에 결원이 생기면 인사청탁하는 편지가 구름처럼 모여드니 勢族이 어찌 모두 쓸만한 사람뿐인가. 어린 아이들 까지 천거·발탁되려는 줄에서 있다”라 하고, “寒微한 家門의 사람들을 어찌 모두 버려야 할 사람뿐인가 白首(老人)들조차도 스스로 발탁되는 길이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 官階가 당상관으로 있는 자도 벼슬을 구하는 편지를 구걸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³²⁾ 中宗 36年 11月에도 大司憲 宋麟壽가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상소하였다. 그리하여 銓曹에 있는 자들은 取舍 선택이 어려워 청탁하는 편지를 쓴 者의 高下를 보면서 임용 후보자의 추천 여부를 定한다는 것이며 어리석고 지혜로움을 가리지 않고 正邪도 나누지 않은 채 君子와 小人을 뒤섞어 進出시킨 후 근무일수가 오래된 자가 점차로 계급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바른 자세를 지켜서 공무에 봉사하는 자를 특별히 발탁하는 포상제도도 없고 승진시키는 일과 면직시키는 일이 엄격하지 않아서 어둠과 밝음이 混在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도 마땅히 下(殿)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 上(最)을 주고 上(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下(殿)를 주는 등으로 모두 私的인 청탁에 의하여 평정되고 또한 평정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연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지런하고 청렴한 점잖은 선비들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도리어 칭송을 받았으므로 바른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않는 자가 100명 중 한두 명도 없다는 것이다.³³⁾

中宗 37年 正月에 司憲府에서 건의하기를 吏曹判書는 6卿의 長이며 人物을 銓衡하는 등으로 그 임무가 중대하기 때문에 重望있는 老成한 인물을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黃憲은 나이가 겨우 40세이고 종2품으로 승진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데 거듭 승진시켜 중요한 보직을 준 것은 옳지 못하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31) 『中宗實錄』 卷77-18, 中宗 29年 4月 丁未.

32) 『위의 책』 卷87-57, 中宗 33年 6月 辛未.

33) 『위의 책』 卷96-71, 中宗 36年 11月 庚戌.

었다. 여기 대하여 中宗은 吏曹의 판서와 참판이 일 못할 사정이 있어 參議가 혼자 있을 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黃憲이 관료로서는 장기 근속을 하였고, 또 전에 銓曹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 특명을 내렸지만 나이가 적은 줄은 몰랐으니 건의한 대로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皇憲은 임명당일 해임되었다. 그의 後任으로는 李彦迪이 吏曹判書가 되었지만 여러 차례 사양한 끝에 취임하였다. 그의 상소내용은 人材 등용이 잘되고 못됨에 따라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도 하고 어지러워지기도 하며 백성들이 잘살고 못사는 것도 거기 달렸는데 자기로서는 人事部處의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³⁴⁾

明宗 卽位年 8月 大司諫 金光準의 上啓에 의하면 國政은 오로지 大臣이 맡아야 하고 사람 쓰는 일(用人)은 반드시 銓曹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첫째 가는 임용후보자를 골라서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明宗 元年 10月 尹仁鏡·李芑·鄭順朋 등이 건의하기를 錄事를 관료로 임용할 때³⁶⁾ 모두를 임용후보자로 추천함으로 그 중에서는 늙고 병든 사람도 있고 혹은 열등하고 무능하여 소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낙점을 받는 수가 많으니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여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³⁷⁾ 같은 해 12月 侍讀官 金鑑는 錄事들이 東班의 관직으로 임용될 때 吏曹에서 모두를 남김없이 임용 후보자로 추천하여 왔는데 요사이에는 옛 법규를 바꾸어 朝官의 예에 따라 3배수 또는 5배수로 추천하게 되었다는 것과 이것이 비록 인재를 정밀하게 골라 쓰겠다는 뜻에서 나왔지만 近日의 일들을 볼 것 같으면 관직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大臣들이 편지를 보내어 청탁하므로 吏曹判書와 兵曹判書가 자유롭게 임용후보자 추천(인사 상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錄事들이 관료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주하게 다니면서 大臣들의 청탁편지를 받아야만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3배수 추천제(備三望)는 인사 운용에 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청탁 편지를 받는데 뇌물을 바치는 일도 있으니 종전대로 全數 추천제로 하여야만 엽관의 풍조를

34) 『위의 책』 卷97-44, 中宗 37年 正月 甲辰, 丙午.

35) 『明宗實錄』 卷1-41, 明宗 卽位年 8月 丙申.

36) 錄事는 京衙前이나 行政實務에 밝아서 중앙행정을 거의 그들에게 의존하여 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선전기에는 양반 관료로 진출하는 수가 많았다.

37) 『앞의 책』 卷4-67, 明宗 元年 10月 癸卯.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史臣도 기록하기를 “權臣이 國政을 맡으면서 인사이동 때에 청탁자들이 門前盛市를 이루고 財貨와 보배를 실은 수레가 부지기수이니 아무리 깨끗한 척 꾸며서 속이려 해도 도적의 심보를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으므로 어찌 엄폐할 수 있는가”라 하였다.³⁸⁾ 그리하여 明宗은 이 문제를 大臣들에게 물었던 바, “大臣들이 私私로이 사람을 끌려고 임금을 속여서 3배수 추천제(備三望)를 만든 이상 쉽게 마음을 바꾸어 임금의 뜻에 따를 수는 없었다”고 사관은 기록하고 있다.³⁹⁾

明宗 10年 11月 司憲府에서 上啓하기를 吏曹判書 趙士秀는 인사 담당부처(銓曹)의 장관으로서 편견을 고집하며 公論에 따르지 않고, 관료를 임용(注擬)할 때에 私心에 따라 가까운 친족(兄)을 相避함이 없이 權要의 보직(兵曹參判)으로 추천하였으며 인척관계에 있는 자, 物議가 있는 자 등을 臺諫이나 玉堂으로 혼잡스럽게 進出시키면서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私情에만 厚하였다는 것과 승진 또는 전보 인사를 행할 때 私意로 편벽되게 하는 등 실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公論이 격렬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吏曹判書를 파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⁴⁰⁾

다음 달인 明宗 10年 윤11月 壬午에 임금이 承政院에 傳敎하기를 근년 이래 公道가 어지러워 흔들리고 私情이 기승을 부려 吏曹에 있는 자가 銓曹의 임무를 맡고 벼슬을 임명함에 있어서 人物의 현명한 여부를 돌보지 않고 오직 청탁하는 편지를 쓴 사람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잡스럽게 충원하는 폐단이 날로 심하여 公論이 일어나 銓長(이조 판서)을 파직하고 그 보좌관들의 직책을 바꾸기까지 하였지만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時弊가 이미 고질적이니 실로 한탄스러우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明宗은 王命을 심상하게 보고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吏曹에서는 우선 잘 살펴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明宗實錄 편찬 당시의 史官은 “傳敎의 말씀이 적절하고 時弊를 바로 꿰뚫었으며 王命대로만 시행되면 治化가 잘 되고 王道가 회복될 것이었으나 끝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위에서 몸소

38) 『위의 책』 卷4-82, 明宗 元年 12月 辛卯.

39) 『위의 책』 卷4-83, 明宗 元年 12月 壬辰.

40) 『위의 책』 卷19-43, 明宗 10年 11月 丁巳.

실행하지 않고 밑에서 따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고 教化를 행하자면 사람을 잘 얻는 것이 첫째인데 오늘날의 銓曹을 맡은 者가 옳은 사람이 아니니 公道를 펴고 風化를 융성하게 하고 싶어도 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41)

明宗 13年 正月 司諫院에서 上啓하기를 吏曹의 郎官은 극히 신중히 선입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銓郎을 뽑을 때, 물망에 올라 있는 자를 사람들이 흠족하게 여겨야만 임용 추천해야 하므로 간혹 爵秩(官階)의 高下를 헤아리지 않고 천거하게 되어 천거를 받은 사람의 官階가 그 職級에 상당하지 않으면 그 官階(資級)를 삭감하고 품계를 낮추어 임명하게 되어 매우 불편하다고 하였다. 즉 佐郎 李銘은 掌命을 여러번 거친 사람으로서 일찌기 正4品の 列에 서 있었으나 本職(佐郎)으로 낮추어 임용되면서 7개 資級이나 강등되었는데42) 옛날에는 그러한 例가 없었다는 것이다. 吏曹에서는 비록 신중히 선입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러하였겠지만 인사행정(政事)이 顛倒되고 모양이 안 좋은 것이 이 보다 더 심할 수가 없으니 李銘을 바꾸어 임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의 이에 따랐다. 그러나 당시의 史官은 諫官의 이와 같은 주장도 公道를 빙자한 私意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기록하였다.43)

그로부터 15일 후 領經筵事 沈連源이 말하기를 “근래 선비들의 습속이 서로 무리를 지어 배척함으로써 安靜이 되지 못하다는 것과 吏曹의 郎官은 淸選이므로 마땅히 公論으로서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서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서로 헐뜯으면서 착한 사람을 배척하고 비록 높은 품계에 있는 者일지라도 강등시켜서 욕심을 채운 후 임금에게 보고하여 바꾼 후 곧바로 상급인사 담당관(正郎)후보로 추천하였는데 이것은 公論을 假托하여 몰래 私私로운 욕심을 채운 것이니 옛날에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라 하고, 이러한 무리들을 守令이나 教授로 좌천시켜서 改過遷善시킴이 옳다고 하면서 만약 그들을 심하게 다스리면 士類에 손상이 있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明宗은 朝廷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간사한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44)

明宗 13年 8月 戊午 朝講 때 大司諫 尹仁恕가 말하기를 銓曹의 權한이 大臣

41) 『위의 책』 卷19-50, 明宗 10年 윤11月 壬午.

42) 正4品下 奉列大夫에서 正6品上 承議郎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이다.

43) 『앞의 책』 卷24-1, 明宗 13年 正月 壬子.

44) 『위의 책』 卷24-3, 明宗 13年 正月 丁卯.

에게 옮겨진 것 같다고 하자 임금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사람 쓰기에 달려 있다는 것과 근래 혼잡스러웠던 폐단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銓曹의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大臣이 사람을 천거함에 있어서 신중히 고르지 않은 것은 아니나 간혹 공평성에 있어 미진한 것도 있어 나이 적고 경박한 무리들이 權門에 따라 붙는 폐단이 어찌 없겠는가하는 人物의 賢否 등을 大臣(議政)에게 물어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또 明宗 16年 4月 甲寅에 임금이 政廳에 내린 傳敎에 의하면 “銓曹의 郎廳은 마땅히 잘 골라서 임명하여야 하며 前日 임금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같은 사람을 다시 추천하였다. 임금의 명령도 무시하고 멋대로 천거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니 천거를 맡은 郎官을 조사하여 문책(推考痛治)하도록 하고 卿宰들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올렸으니 賢邪를 변별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책하였다.⁴⁶⁾

宣祖 6年 2月 承政院에서 東班 3품 이상 西班 2품 이상인 자들이 각자 추천한 守衛이나 萬戶 기타 관직을 맡길 만한 사람에 관한 특별임용 후보자 명단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당하관이 당상관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銓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며 通政大夫가 嘉善大夫로 승진하는 것과 嘉善大夫에서 正2品으로 승진하는 것 및 2품에서 1품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의 특旨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많이 지체되어 人才가 모두 임용되지 않은 바가 되었다.⁴⁷⁾

宣祖 16年 6月 임금이 下敎하기를 吏曹郎官의 薦望規式⁴⁸⁾을 지금부터 혁파한다고 하자 都承旨 朴謹元은 上啓하기를 銓曹(吏曹와 兵曹)郎官의 薦望制는 비록 法典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옛날부터 規例가 되어 시행하면서 폐지하지 않고 여기에 이르렀는데 사람마다 이 규례에 따라 뽑을 수는 없었지만 반드시 여러 사람이 촉망하는 한 때의 清流를 이 규례로 精選하였다는 것이며 新進清流

45) 『위의 책』 卷24-54, 明宗 13年 8月 戊午.

46) 『위의 책』 卷27-24, 明宗 16年 4月 甲寅.

47) 『宣祖實錄』 卷7-6, 宣祖 6年 2月 乙卯.

48) 吏曹郎官薦望規式이란 吏曹正郎 및 佐郎이 관료 임용후보자를 복수(보통 3배수)로 골라 都堂(의정부)을 거쳐 임금에게 추천(임용상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들 銓郎들은 동료 清宦은 물론, 후임자를 스스로 골라서 임용추천하였던 것이다.

는 같이 벼슬길에 나간 무리가 아니면 서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자연히 동료만을 천거하게 되어 規例의 본뜻과 맞지 않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번엔 薦望의 規例를 폐지하고 堂上官으로 하여금 임용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그 人物이 어떤지를 반드시 잘 알 수가 없어서 혼잡스럽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우려가 많고 한 때의 淸論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銓長(吏曹判書, 兵曹判書)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나이 많은 선배 관료들로서 인재를 골라 관료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新進 관료를 선발하여 臺閣으로 배치함에 있어서 만약 郎官들의 보좌를 받아 可否를 상의하지 않으면 쓰고, 버리며, 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인사운용이 어긋날 수도 있고 또 權姦이 國政을 맡고 있으면 한 나라를 그릇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과 淸議가 郎官으로부터 많이 나왔으나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지만 그 폐단을 고치려고 하여 드디어 薦舉制와 人事規例를 폐지한다면 뒷날의 근심이 도리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라 하고 자신은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승지의 직책상 감히 進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宣祖는 “따를 수 없는 일을 왜 上啓하느냐”라 하였다. 國初 이래 武보다는 文에 힘쓰게 하여 臺諫과 館閣에 堂下官을 널리 두어서 新進 名士를 양성하였으며 또 祖宗朝에서 여러 번 변혁을 거치면서 勳戚의 권세가 너무 컸으므로 列聖朝의 治世에 文士를 嘉獎하고 言路를 넓히면서 勳貴의 세력을 꺾었으나, 그 때 堂下 淸官의 후보자가 모두 吏曹의 郎官에서 나왔으므로 吏郎의 선출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미리 여러 사람을 추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차례대로 임명하도록 하였고 임금도 그들을 매우 중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臺諫과 館閣의 新進들이 매번 公卿들과 서로 알력이 있었으며 불행히 權奸이 국정을 맡는 경우에는 위에서 가리우는 바가 있어 반드시 士林의 禍가 일어났다는 것과 吏曹의 郎官을 비롯하여 비록 전날의 발자취를 서로 살폈지만 풍습이 이미 이루어져서 名官이 銓衡에 참여할 수가 없어 크게 치욕스럽게 되었으나 宣祖께서 계승하여 儒臣이 서로 이어 재상이 되어 모두 겸손하고 근실하여 권세를 피하여서 어질고 젊은 선비를 禮遇하는데 힘썼으므로 新進의 세력이 더욱 盛하여 大權이 吏曹郎官에게 돌아가서 6卿이하 유순하고 겁많은 자들이 모두 그들을 추종하여 東西分黨 이후에는 각자 좋고 싫어하는 취향에 따라 출입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吏曹郎官이 일대의 公望에 따른 極選이 되지 못하고 벼슬길이 맑지 못하여 임금

이 그 폐습을 싫어하여 여러번 制裁하고 억제하였다는 것이다. 李珣가 항상 時事를 논하는 疏 가운데에서 館閣의 淸官 선출이 모두 郎僚의 손으로 돌아 갔다는 말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나서 시끄러웠으므로 그가 銓郎의 추천제를 혁파하고자 하여 그 당시 사람에게 시기를 당함이 그후부터 더욱 심하여져서 이에 임금의 下敎하여 그것을 특별히 혁파하였는데 대개 三司의 新進들의 논박을 싫어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그후 銓郎의 추천법은 비록 혁파되었으나 郎官들이 사사로이 의논하여 임용 후보자를 정해서 차례대로 추천임용하는 것이 넘을 수 없는 金石之典처럼 되었으며 朝廷이 크게 변혁될 때에 吏曹郎官이 모두 죄를 지어 쫓겨난 후에 銓長(吏曹判書)이 스스로 한 두 사람을 郎官으로 임용하도록 한 데 그쳤고, 銓長이 추천한 郎官들도 감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단지 自身들 대신으로 한 두사람을 추천하여 임용하게 한 후 만 자리로 옮겨 가 버렸다는 것이다.⁴⁹⁾

宣祖 16年 8月 全羅道 儒生 徐台壽 등이 상소하기를 大臣이 現職에 있음에도 인사행정권을 郎官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 해가 되었고 한번 간소한 사람이 銓郎이 되면 자기 당파 사람들을 널리 심어 남을 넘어뜨리는 일이 풍조가 되어 慘禍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과 대개 權奸은 벼슬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時論을 주장하고 人物을 進退시키며 公議에 따르지 않고 흉한 마음을 갖고 멋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權奸이라는 것이다. 요즈음에는 사람을 내쫓고 올려 주는 것과 刑政이 임금이나 大臣들에게 있지 않고 郎官들에게 있어서 郎官이 權奸이 된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러한 비난에서 벗어나려 하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과 당당하고도 강성한 조정에서 임금이 위에 계신데 나라의 權柄을 나이 젊고 경박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 둔채 온 조정이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니 天下 後世에서 그러한 일을 들어 볼 수가 없을 것이라 하고, 그리고 오늘날 惡黨들은 날로 번창하여 三司와 承政院의 관료들까지 같은 당으로 결속되어 부화뇌동하고 있으므로 그 울타리를 깰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 중에서 논의를 주동하는 자는 경계심이 강하여 매우 은밀하며(城府甚密), 속마음을 숨겨 알 수가 없지만 나쁜 짓을 한지가 오래 되었고 그 手足들이 이미 노출되어 閭巷에 이르기까지 兪하여 욕을 하며 혹은 6奸이라 하고 혹은 10奸이라 한다는 것과 英明한 聖上

49) 『宣祖修正實錄』 卷17-23, 24, 宣祖 16年 6月.

이 통찰하고 깊이 살피겠지만 이번에 三司와 承政院의 判料들이 그 무리의 많음과 세력을 믿고 임금을 愚弄하면서 여기에 이르렀으나 임금께서 그 간악함을 원히 내다보면서 은인자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判料들은 날로 협박을 당하면서 임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두가 여러 奸人들의 힘이 임금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추종하여 붙는 자가 날로 많아지고 正義를 지키는 자가 날로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릇 三司와 承政院이 오늘날 奸人들의 소굴이 되어 있고, 그러한 三司와 承政院이 있게 한 근본은 銓曹에 있으니 임금께서 銓曹의 判員을 다시 선임하지 않고 三司와 承政院의 判料를 백번 바꾸어도 그 뒤를 잇는 자가 모두 奸黨이니 오늘 간신을 쫓아내어도 내일 다시 새로운 奸臣이 進出하므로 먼저 銓官부터 선택하고 그 다음에 三司의 判員을 골라서 邪論이 자연히 解消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⁵⁰⁾

2. 朝鮮 後期の 銓選制의 變動과 吏郎通淸法の 革罷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사권(判料 임용 추천권)을 둘러싸고 국왕과 判料 및 士人, 그리고 堂上官과 堂下官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쟁의 와중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判料 사회의 안정성을 해쳤다. 중앙判料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朝變夕遷라는 말이 나왔지만(별첨 부록 참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중앙判料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즉 宣祖 29年 3月 丁亥의 經筵席上에서 特進官 李齊閔이 임금에게 上啓한 바에 의하면 근래 判料들이 오랫동안 判職에 있지 못하고 간혹 1년에 다섯 번이나 守丞(宰⁵¹⁾)이 바뀌는 등으로 新官을 영접하고 舊官을 송별하게 되어 아무런 이익도 없이 해로움만 있게 되니 사람을 잘 뽑아서 오래 근무시키며 너무 자주 바꿈으로서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해야 할 계책이라 하였다. 檢討官 趙正立은 人事權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을 옛 사람들이 경계하였는데 요사이 銓曹에서는 일개 守丞을 뽑는데

50) 『위의 책』 卷17-42, 宣祖 16年 8月.

51) 俞鹿年, 『中國官制大辭典』(黑龍江人民出版社, 1992)上 p.40에 의하면 宰는 一邑之長이라 하였다(左傳 襄公 7年記).

도 반드시 備邊司에 의논해야 하므로 備邊司의 말석 堂上官도 모두 천거권을 행사하니 銓曹가 도리어 비변사의 末席 堂上官보다 못하다고 하자, 宣祖는 備邊司에는 大臣이 있으므로 大臣이 옳다고 한 후라야 銓曹에서 임용 후보자를 상신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또 趙正立이 上啓하기를 한번 臺諫의 논박을 당하면 여러 해 동안 임용되지 못해야만 사람들이 公論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데 요사이 는 오늘 논박당한 사람이 내일 만 官職에 임용된다고 하였다.⁵²⁾

宣祖 37年 11月 司憲府에서 上啓하기를 天曹(吏曹)는 인물을 銓衡하고 善惡을 가리는 직책이 있으니 그러한 관직에 있는 자들은 관료 임용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신중히 따져서 반드시 옳은 사람이 관료가 되게 하여 官界가 淸明하게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래 관료 임용시에 私意가 기승을 부려 그 사람의 그릇(人器)이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오직 친분이 오래된 여부에 따라 관료 임용 후보자로 수록하여 용렬되고 잡된 자로 충당하니 벼슬길이 혼탁하여지고 識者들이 조롱하게 된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吏曹의 堂上官과 담당 郎官들을 모두 파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⁵³⁾

宣祖 39年 12月 임금은 備忘記를 承政院에 내려 “하늘이 하는 일(天工)을 사람이 대신함(治國)에 있어서 임금이 人材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우리 나라에서는 薦舉·吏選의 법이 있으나 士類인 자를 모아서 진출시키는 일이 없고 잡다한 무리들의 진출이 많으니 시골에서 어찌 인재를 버려둔다는 탄식이 없겠는가”라 하고 初級官僚(一命⁵⁴⁾之士)도 모두 뒷날 牧民官의 직책을 맡을 수 있으니 初入任者도 신중히 골라서 반드시 옳은 사람을 얻어 재능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宣祖實錄 편찬 당시의 史官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사람의 재덕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탁에 의거하기 때문

52) 『宣祖實錄』 卷73-18. 宣祖 29年 3月 丁亥.

53) 『위의 책』 卷181-2. 宣祖 37年 11月 己卯.

54) 9命制는 周代의 官位에서 나온 것으로서, 1命에서 9命까지의 등급이 있었는데, 9命은 上公, 8命은 王의 三公, 7命은 侯·伯, 6命은 三公의 卿, 5命은 子·男(諸侯), 4命은 三公의 孤, 3命은 侯伯의 卿, 2命은 侯伯의 大夫 子男의 卿, 1命은 侯伯의 士, 子男의 大夫라 하였다(『中國歷代職官辭典』, 日中民族科學研究所 編, 國書刊行會 1980, p.44). 또 7命 이상을 諸侯의 官位로 보고 6命은 上大夫, 5命은 中大夫, 4命은 下大夫, 3命은 元士, 2命은 中士, 1命은 下士라 하기로 한다(孟子).

에 선비되는 자들이 염치를 돌보지 않고 무리지어 엽관 행각을 벌린다는 것과 세력 있는 父兄을 가진 子弟들은 나이 겨우 20세에 직책도 없이 벼슬자리만 차지하여 녹봉을 도적질하고 있으며, 시골에서 學行을 쌓아온 寒士는 비록 재덕이 있더라도 평생 버림받고 있는 것을 識者들이 한탄하였는데 그리하여 위와 같은 王命(聖教)이 있게 된 것이라 하였다.⁵⁵⁾

仁祖 7年 7月 좌의정 金瑬가 말하기를 전부터 당하 淸官 후보자는 비록 郎官에서 나왔지만 요사이 들으니 크고 작은 관료의 임용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善惡의 判別을 銓曹(吏曹堂上)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경박하고 의논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니 먼저 安靜의인 사람을 임용하고 경박하고 조급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무리들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이러한 일은 人事를 담당하는 재상(銓相)의 임무라는 것이다. 여기 대하여 임금은 “사람의 安靜性和 경박성은 역시 조정의 인사운용(取舍) 여하에 관계되며 만약 安靜의인 사람을 임용한다면 경박한 者 역시 그 습속을 바꿀 것”이라 하였다. 金瑬가 또 말하기를 “안정적인 사람과 경박한 사람을 아는 일이 어렵지는 않으나 간혹 人情에 구애되고 혹은 時論에 구애되어 마음대로 任用하고 免職시킬 수가 없다”고 하자 임금은 “善惡을 변별하는 것은 大臣과 兩銓(吏·兵判)의 임무라는 것과 만약 경박한 사람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는 것이 옳으며 어찌 時論에 구애되겠는가”라 하였다. 李貴도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道理는 公正하게 해야 하는 것일 뿐인데 오늘날의 인사운용의 실체는 私情으로 進出시키고 또한 退去시킨다니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또한 人物의 進退는 金瑬의 임무인데도 만약 경박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누가 어질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도 어찌 이와 같이 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朝廷에서 朋黨을 만들어 正論을 잇고 是非한다면 大臣들은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과 近日의 氣習이 좋지 않아서 밑에 있는 자가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있다는 것과 무릇 임금의 행위일지라도 지나친 점이 있으면 諫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여 침범하고자 하니 이는 어떠한 氣習인가”라 하였다. 金瑬가 또 말하기를 간혹 正義를 지켜 흔들리지 않는 자도 있고 혹은 공명심을 좋아하여 임금의 득실 즉 聖世의 일을 말하는데 그 말 가운

55) 『앞의 책』 卷206-8, 宣祖 39年 12月 己酉.

데 비록 과한 말이 있어도 위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옛날부터 言路를 막아서 망한 자도 있었지만, 또한 밑에서 윗사람을 능멸하여 위에서 쇠퇴할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⁵⁶⁾

仁祖 7年 7月 임금이 吏批에 대하여⁵⁷⁾ 下教한 바에 의하면 吏曹의 郎官들이 모두 吏批를 差出함에 있어서 李昭漢·趙綱·羅萬甲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이에 임금은 후보자를 바꿀 것을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吏曹에서 上啓하기를 “吏曹郎官은 전부터 人望에 부합하는 한 시대의 名流를 선정, 의논하여 추천한 후에 차례대로 후보자를 임용하는 것”이 例라는 것과 近日에 郎官이 모두 有故하고 正郎 李行遠만이 남아서 이번에 차출하라는 王命에 따라 前日에 추천하기로 정한 자를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으나, 임용 후보자를 바꾸라는 임금의 명령이 있어 자기들이 거둬 상의한 결과 “이 세 사람 외에는 비록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3배수 후보자를 갖추어 올리기 어렵고, 또 전날의 임용후보자 3인을 처리하기도 어려우니 그들 이외 딱 사람을 추가하여 추천함이 어떻겠는가”라 하였다. 여기 대하여 임금은 동의하지 않아서 다시 李昭漢·李景會·吳進·韓與一 등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이 때에 임금은 화를 내면서 임용후보자를 바꾸라는 명령이 있었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서 추천하여야 하거늘 전날의 후보자를 首望(첫째번 임용후보자)으로 하여 가만히 써넣었으니 매우 해괴하고 놀랍다고 하면서 堂上官을 推考(조사)하고 郎官을 파직하라고 하였다.⁵⁸⁾

이들후 仁祖는 吏批에 대하여 또 下教하기를 郎官이 추천한 사람을 모두 바꾸었으니 반드시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격식을 떠나서 전에 추천한 사람은 쓰지 말고 公正한 사람을 선택하여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 때에 吏曹判書 金尙容이 임금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지난번의 인사 때 銓曹의 郎官에게 임용후보자를 교체하라는 王命이 있어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골라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번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罪인데도 郎官이 연좌되어 파직되었는데 自己만이 홀로 罪를 면하게 되

56) 『仁祖實錄』 卷21-2, 仁祖 7年 7月 丁亥.

57) 吏批란 吏曹에서 임금에게 임용제청하여 재가를 받은 벼슬 또는 그러한 벼슬을 받은 자를 말한다.

58) 『앞의 책』 卷21-3, 仁祖 7年 7月 戊子.

니 황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吏曹의 폐풍은 모두 郎官에게서 연유하고 있으므로 벌을 준 것”이라 하였다. 그러자 金尙容은 다시 말하기를 堂下 淸官의 후보자는 반드시 郎官이 천거하는 자로서 임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같은 시기의 同流들이므로 반드시 잘 알아서 선택도 꼭 정밀하게 하기 때문이라 하고 自身(金尙容)도 또한 젊은 시절에 吏曹郎官을 역임하였으므로 그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 하였다. 또 銓郎을 역임한 자는 4품으로 官秩이 올라가거나 公議로서 得罪한 자가 아닌 限 인사배치할 때 버려둘 수 없다는 것과 이번에 李昭漢은 銓郎을 거친 자이므로 추천하지 않을 수 없어서 自身들이 같이 의논하여 추천한 것이고 실은 郎官의 罪가 아니며, 그리고 人才는 一朝一夕에 培養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淸要職을 거친 경력과 명성과 신망에 부합한 후라야만 임용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이므로 郎官들이 제멋대로 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仁祖는 “弊風을 혁파하려고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하고 옛날에는 人心이 公平하였으므로 人望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 任用하였지만 요사이 는 그렇지 않아서 경박한 무리들이 친구와 동류들을 불러들여 그 무리들을 모두 임용하고자 하였기에 堂上官으로 하여금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또 金尙容이 말하기를 “이미 郎官이 추천한 사람을 모두 버린다면 별도로 人才를 어느 곳에 가서 찾아오겠는가”라 하면서 趙綱·羅萬甲·李景會·吳전 등은 郎官이 천거한 사람이고 韓與一은 自身(金尙容)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것과 人望이 부족한 사람을 갑자기 그 자리(銓郎職)에 채운다면 비단 놀라워서 물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충당된 사람도 공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⁵⁹⁾

4일후 이 문제에 관하여 領事 金堊가 말하기를 지난번 吏曹郎官이 천거한 사람을 쓰지 않은 것은 대개 郎官이 제멋대로 하는 폐단을 혁파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천거한 사람을 모두 버린다면 人才가 그 중에도 있으니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經筵의 同知事 鄭經世도 말하기를 옛날부터 直提學 이하의 淸官 후보자는 반드시 郎官과 의논하여 추천하게 한 것은 대개 郎官과 年少한 임용 후보자들이 같은 시대의 무리들로서 그 人物의 賢否를 모두 熟知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仁祖는 “人心이 옛날과 지금은 같지 않고 달라서

59) 『위의 책』 卷21-3, 仁祖 7年 7月 庚寅.

옛날의 郎官은 公正한 사람이 그것을 맡았으므로 천거된 자들이 모두 公正한 사람이었으나 요사이는 경박한 사람이 郎官이 되었으므로 역시 경망스러운 사람을 천거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金鑾가 말하기를 "金尙容의 持論이 和平하기는 하지만 年少한 무리들에게 크게 실망하였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羅萬甲이란 자는 사람됨이 경박하여 행동이 빠르고 말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이 어찌 銓郎의 자리에 맞겠는가"라 하고, 羅萬甲이 志操가 높은 金世濂을 배척하였는데 人事의 不公正함이 이 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자에 듣기로는 銓判⁶⁰⁾을 비방한다고 하였다. 또 鄭經世가 말하기를 羅萬甲이 의지가 굳세어 남에게 굽히지 않은 점은 있으나 생각이 깊고 식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金世濂과 自身(鄭經世)은 같은 당파에 속하는데 羅가 金을 배척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⁶¹⁾ 仁祖政權은 西人和 南人の 연합정권으로서 상대 당파 사람들을 서로 위하는 척 하였지만 실은 이와 같이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어서 뒷날 격렬한 당쟁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仁祖 8年 7月 行副護軍 李命俊이 상소하기를 나라를 위하는 길은 어진 사람을 벼슬길에 나가게 하고 邪惡한 사람을 물러가게 하는 것인데, 進退의 權柄이 비록 冢宰(吏曹判書)에게 있으나, 옛날의 大臣은 어진 이를 나아가게 하는 직책이 있어서 사람 쓰는 권한이 冢宰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우리 나라의 古例도 銓官을 清要職을 거친 新進으로서 임명하였으므로 반드시 相臣들에게 품의한 후에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였지만 지금은 봉당이 생긴지 50년간이나 되어, 어느 누구도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없어서 무사안일식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고 임용함으로써 賢人和 邪惡한 자가 서로 섞였으므로 선비를 통하고 막히게 하며 나아가고 물러가게 하는 것을 大臣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것과 지난번의 인사 대이동 때에 보니 相臣들이 미리 알지 못하고 관료를 임명한다는 敎書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⁶²⁾

그 당시 처음 벼슬하는 자에 대한 年齡制限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의 인생경험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上限線은 없고 下限線만 있었다. 文

60) 銓判은 선악을 판별한다는 말에서 나와서 銓曹의 판단, 또는 銓長의 행위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61) 『앞의 책』 卷21-4, 仁祖 7年 7月 甲午.

62) 『위의 책』 卷23-2, 仁祖 8年 7月 己卯.

科及第者의 경우는 20세만 되면 初入仕(관직취임)가 가능하였으나 蔭官인 경우는 최소한 30세가 되어야만 하였다. 즉 生員·進士의 경우에는 30세, 幼學은 40세가 되어야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다.⁶³⁾ 그러나 세력 있는 집안의 子弟 및 銓官과 친분이 있는 자들 중에서는 나이를 속여서 벼슬하는 자들이 많았으므로 仁祖 23年 2月 임금이 吏曹에 下敎하여 初入仕者가 나이를 속이는 일이 있으면 吏曹의 堂上官과 郎官까지 같은 죄로 문책하겠다고 하였다.⁶⁴⁾

仁祖 23年 2月 司諫院에서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兵曹正郎 成楚客이 경망스럽고 조금하게 출세하고 싶어하는 자로서 公議가 不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추천권을 冒占하여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부끄러워하면서 그만 둘 줄 모르고, 또 사람의 옳고 그름을 논할 경우에도 양면성이 있어서(兩面說話⁶⁵⁾) 陰陽이 뒤바뀌기도 하고, 곳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근래 朝官들간에 流言이 들끓어 자못 다스릴 수 없는 실마리가 될 것이므로 만약 이것을 懲治하지 않으면 그 末流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고, 成楚客을 파직할 것과 그의 인사 추천권을 박탈하여서 조금하게 승진하려는 습속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⁶⁶⁾ 成楚客의 兩面說話에 관하여 仁祖實錄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元斗杓家에 가서는 兪伯曾이 忠直하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兪가 사람에게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⁶⁷⁾

그 다음날 임금은 下敎하기를 崔相(鳴吉)의 말은 이미 銓郎의 인사추천제가 혁파되었다고 하였는데, 司諫院의 보고가 위와 같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승지에게 살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임금의 지시에 따라 承政院에서 회보(回啓)하기를 郎官의 추천권이 비록 혁파되었다고는 하나 銓郎들이 적합한

63) 文科와 武科 及第者 이외로 벼슬길에 나가는 경우를 모두 蔭官이라 하였다. 따라서 蔭官 가운데에는 小科合格者인 生員·進士도 있고 단순한 儒生인 幼學도 있었다. 또 蔭官 가운데는 功勳 또는 父祖의 덕분으로 入仕하는 功蔭, 門蔭, 襲蔭이 있고, 학자로서 천거되어 벼슬하는 薦蔭이 있었다. 이와 같이 양반관료가 되는 길은 文·蔭·武 세 갈래였던 것이다.

64) 『앞의 책』 卷46-2, 仁祖 23年 2月 壬子.

65) 兩面說話란 同一人을 평가할 때에도 때와 장소에 따라 혹은 상대에 따라 惡評을 하거나 好評을 하는 등으로 一口二言하는 것을 말한다.

66) 『앞의 책』 卷46-3, 仁祖 23年 2月 甲子.

67) 위와 같음.

자를 골라서 한번 임용 후보자로 擬望한 후에 차례대로 추천하였으므로 이번에 사간원에서 이것을 문제삼은 것이라 하였다. 이에 임금은 下敎하기를 이미 혁파된 후에 임금의 특별명령 없이 郎官이 마음대로 천거한 경우에는 각 本曹(吏·兵曹)로 하여금 색출하라고 하였다.⁶⁸⁾ 며칠 후 吏曹에서 보고하기를 本曹의 郎官 추천제는 일찍이 宣祖朝 癸未年間(1583)에 이미 혁파되었다는 것과 銓郎은 한 시대의 極選이므로 반드시 公議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 후 부득불 차례대로 임용후보자로서 3배수로 추천하여 임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난날 崔鳴吉이 吏曹判書 때 兵曹薦과 吏曹郎薦之規를 혁파할 것을 건의하여 銓郎을 弘文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골라서 추천하였으며 그 때 두, 세 사람의 郎官이 判書가 직접 선택한 사람 중에서 임명되었고 요즈음도 郎官들이 반드시 堂上官에서 보고한 후 동료 郎官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前日과 같이 郎官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聖敎에 따라 제멋대로 천거하는 자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증거될 만한 文籍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仁祖는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속히 색출하라고 하였다. 吏曹判書 李植은 일찌기 經筵中에서 郎官의 專擅之弊를 극언하였는데 정작 그러한 郎官을 색출하라는 왕명을 받자 시끄럽게 될 것을 걱정하여 彌縫하고자 하였으므로 임금이 怒하여 이와 같이 下敎한 것이다.⁶⁹⁾ 그리하여 吏曹判書 李植과 參議 李德洙 등은 承政院에서 待罪하면서 말하기를 郎官의 천거제도가 혁파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참고할 文書가 없으나 오직 丁丑年(1637) 여름에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仁祖가 吏曹堂上官이 郎官을 스스로 선택하여 추천하라는 특별명령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新郎官을 差出할 때는 반드시 吏曹 堂上官에게 보고하며 郎官이 마음대로 동료 郎官을 自薦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仁祖는 근래 郎官의 천거는 無名有實⁷⁰⁾이라 하고 士大夫가 마음을 두고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巧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과 종전의 違命者를 찾아내기 어렵다면 成楚客이 郎官을 擬望(임용후보자 추천)한 일은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⁷¹⁾

68) 『앞의 책』 卷46-4, 仁祖 23年 2月 乙丑.

69) 『위의 책』 卷46-4, 仁祖 23年 2月 戊辰.

70) 無名有實이란 걸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銓郎들의 독단적인 인사추천권을 제한하려는 國王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례는 쉽사리 바뀌어지지 않았다. 孝宗 4年 7月 司諫院에서 上啓한 바에 의하면 “무릇 淸官 후보자로 처음 通淸된 자와 銓曹에 새로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吏曹의 郎官이 반드시 미리 吏曹의 세 堂上官과 의논한 후라야 임용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이 정례인데 지난날의 인사행정을 보면 새로 淸官 후보자가 된 자를 吏曹參議가 몰랐고, 또 새로 銓郎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도 吏曹의 여러 堂上官을 통하지 않았으니 이는 郎官輩들이 웃사람을 소홀하게 한 탓이므로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 하고 人事에 참여한 吏曹郎官을 모두 推考할 것을 청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⁷²⁾

人事權을 둘러싼 吏曹의 堂上, 堂下官 간의 갈등은 顯宗代에도 지속되었다. 顯宗 6年 2월에 좌의정 洪命夏가 말하기를 “吏曹의 規例는 반드시 堂上官과 郎官들이 상의하도록 되었는데 郎官들이 고집을 피우면 堂上官들이 마음대로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것이 先例인데 이번에 郎官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堂上官이 投筆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금도 “吏曹의 堂上官(參判, 參議)이 새로 淸官을 선발할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投筆하였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을 임용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영의정 鄭太和가 말하기를 대개 吏曹郎官은 단 관직자와 달라서 직책상 반드시 可否를 논의하게 됨으로 무릇 인사 추천권을 행사할 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다투어 고집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堂上官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서 나간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郎官이 끝내 듣지 않는 것도 나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은 堂上官(萬容)을 파직하여 내보내도록 하였다.⁷³⁾ 그 후 顯宗 10年 11月 司諫 申命圭 등은 吏曹郎官의 押班⁷⁴⁾의 잘못을 논박하면서 잘못된 관례를 혁파할 것을 청하여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⁷⁵⁾

顯宗 14年 7月 掌令 柳延 등이 上啓하기를 銓選(인사행정)의 不公正하여 근

71) 『앞의 책』 卷46-4, 仁祖 23年 2月 己巳.

72) 『孝宗實錄』 卷11-11, 孝宗 4年 7月 丁卯.

73) 『顯宗實錄』 卷10-3, 顯宗 6年 2月 乙丑.

74) 押班이란 조정에서 百官이 착석하는 位次를 주관하는 것 및 그것을 주관하는 벼슬.

75) 『앞의 책』 卷17-40, 顯宗 10年 11月 乙未.

래 병폐가 되어 있다는 것과 이번의 大政(정규인사이동) 때에 除目(인사명령서)도 내려오기 전에 누구는 어느 자리 또 누구는 어느 자리라는 말이 士夫간에 전파되었는데 임명의 실체가 과연 사람들의 말 그대로이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사행정관의 私心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吏曹의 堂上官과 郎官을 推考할 것을 청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⁷⁶⁾

肅宗 元年 5月 吳始復이 吏曹 佐郎이 되었다. 그는 寒族으로서 銓郎이 되었는데 自黨(南人)이 득세하자 다시 玉堂 修撰이 된 것이다. 南人 영수인 許穆과 尹鏞 등이 인사권을 장악하자 銓郎 朴泰尙·李濡 등이 모두 물러가고 출근하지 않았다. 銓法(人事法)에 郎官은 반드시 동료 郎官들로 하여금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郎薦之規가 비록 혁파되었다고 하여도 銓曹 안에서는 지켜지고 있는 故事였는데 許穆 등이 파격적으로 할 것을 청하였고 玉堂을 거친 사람이 銓郎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大臣의 말 등으로 吳始復이 임명되었던 것이다.⁷⁷⁾ 吏曹의 堂上官과 郎官 간에 인사추천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분쟁은 肅宗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肅宗 4年 7月 吏曹判書 吳始壽는 尹深을 都承旨로 추천하고자 하였으나 吏曹佐郎 李鳳徵이 반발하여 붓을 던지고 일어나서 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吏曹에서 推考를 청하여 임금이 李鳳徵을 잡아다가 문책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끝내 吏曹判書의 생각대로 尹深이 都承旨가 되지 못하고 딴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⁷⁸⁾ 이와 같이 인사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자 肅宗 9年 2月 正言 金構가 상소를 올려서 논하기를 銓法(人事法)의 폐단은 첫째 格式이 너무 자주 바뀌어 紛更이 無常하다는 것과 둘째 廟堂(大臣)이 인사권을 침해하여 銓曹가 실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銓曹에 인사권을 專任시켜 才能 있는 자를 특별히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⁹⁾

肅宗 21年 6月 正言 吳命峻이 상소하기를 근래 公議가 행하여지지 않고 銓郎 후보자도 后妃의 친족이 아니면 後宮과 연분이 있는 자라 하였고 또 그 氣勢가 士論을 물리칠 정도이며 특히 외척인 金鎭圭의 횡포는 심하여 玉堂이 위축되어 그에게 추종하여 붙으니 그를 쫓아 내지 않고, 또 趙泰采 등을 벌하지 않고

76) 『顯宗改修實錄』 卷27-18, 顯宗 14年 7月 己丑.

77) 『肅宗實錄』 卷3-49, 肅宗 元年 5月 戊辰.

78) 『위의 책』 卷7-24, 肅宗 4年 7月 己未.

79) 『위의 책』 卷14上-20, 肅宗 9年 2月 辛卯.

서는 끝내 남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아서 바른 의논을 넓혀서 是非를 엄하게 하여 國體를 드높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 대하여 肅宗은 金鎭圭에 관한 일은 是非가 밝혀졌다고 하고 後宮과 연분이 있는 者란 金時傑을 지칭한 듯한데 그와 後宮 金氏는 同宗이기는 하나 無服之親(9寸 이상)이라 하였다. 肅宗實錄 편찬 당시의 史官은 평하기를 吳命峻의 상소는 외척을 치기 위해 서가 아니고 단지 銓郎의 권한을 빼앗아서 임금에게 아첨하고자 함에 있었다. 대체로 그 당시 廟堂과 銓曹에는 時流를 탄 무리들이⁸⁰⁾ 모두 점거하고 있었으나 오직 銓郎의 권한만은 모두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金時傑이 鄭滸·趙泰采(老論系) 등을 끌어들일까 두려워서 그를 내쫓고자 함이라 하였다.⁸¹⁾ 그 이틀후 副修撰 李健命은 吳命峻이 銓郎을 배척한 데 대하여 상소하여 自辨하기를 銓郎이 새로 官員을 뽑는다는 法規上 衆論이 하나로 모아진 후에 비로소 후보자를 내정하여 추천하게 되는데 自身도 그때 銓郎으로 있으면서 인사추천권을 행사할 때 여러 사람에게 두루 물어서 다른 의론이 없었다는 것과 또 後宮과 연분이 있는 者란 처음에는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다가 늦게 들으니 金時傑이 後宮과 同姓이라 하나 8寸을 넘은 사이(袒免)이니 이로써 그를 공격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鄭澈이 後宮과 가까운 친족이면서 淸要職을 거쳐서 끝내는 大臣이 되었고 外戚으로서도 沈義謙·朴東亮·韓興一·呂聖齊·金錫胄·趙師錫 등이 모두 銓郎을 거쳐 進出하였다고 例示하였다.⁸²⁾ 그리하여 吳命峻은 사직하였다.⁸³⁾

肅宗 22年 正月 吏曹參議 趙相愚가 상소하기를 선배들의 말을 들으니 銓郎의 경우 佐郎에서 正郎에 이르기까지 5·6年을 근무하여야 승진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銓郎은 精選되어야 함으로 資級을 뛰어 넘어 승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승진하는 것이 너무 급하여 銓郎의 자리는 名流들의 빠른 승진의 길이 되어 識者들이 한심스럽게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에

80) 少論을 지칭한 듯 하다.

81) 『위의 책』 卷28-40, 肅宗 21年 6月 辛亥.

82) 『위의 책』 卷28-41, 肅宗 21年 6月 癸丑.

83) 肅宗實錄의 記事者는 吳命峻이 外家財産을 빼앗아 가졌다는 것과 外祖의 재산 중 女外4寸 몫인 집까지도 빼앗는 등 非行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가까운 외척인 趙泰采와도 사이가 나빠서 그와의 私感으로 그의 進出을 막기 위하여 상소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 閔鎮厚는⁸⁴⁾ 작년에 參下官이었는데 今年에는 東壁(홍문관의 4품 벼슬인 應敎·副應敎)까지 되었다는 것이다.⁸⁵⁾

肅宗 27年 5月 校理 李坦의 상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官人이 되는 데는 먼저 門地를 따졌기 때문에 농촌의 寒士들은 등용될 수 없었으므로 덕망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고 근년 이래 또 당파의 습속이 있어 관료를 선발하여 추천하는데 私情에 따라서 하므로 士夫들이 빠르게 올라가려는 兪관운동이 풍습화하고 있으므로 임금께서는 銓官에게 신칙하여 널리 모아서 精選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⁸⁶⁾ 그 다음 달에도 正言 趙泰一이 인사행정의 불공평을 논박하였는데 臺官으로 새로 뽑힌 李鼎相의 너무 빠른 승진과 春坊(世子侍講院)의 參下官으로 임용된 趙權이 부적격자라는 것 등을 지적함과 동시에 해당 銓郎(吏曹의 郎官)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그런데 檢閱 李明浚이 명문 출신으로 여러 번 史官 후보자로 추천되었지만 한 두 사람의 선배 관료 때문에 史官이 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추천되었으니 잘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正言 趙泰一의 上啓가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고 李世白도 어떤 관직에 부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탄핵하면 되었지 銓郎을 파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즉 郎官이 비록 천거하더라도 吏曹堂上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되는데 郎官만 공격하고 長官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심히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공격에 대하여 趙泰一은 銓郎이 私적으로 친한 자를 추천하는 등으로 인사권을 농락하기 때문이며 堂上官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⁸⁷⁾

肅宗 29年 10月 掌令 崔啓翁이 상소하기를 인사에 있어서 兪관운동이 풍조가 되어 관직 한자리가 비면 부탁하는 글이 백장이나 되어 銓官(인사 담당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오직 세력의 크고 작음을 살피고, 또 人才의 有無(當否)보다는 財貨에 따라 人事를 하여 銀闈帥(兵·水使) 錢守令이라는 말로서 길거리에 떠들썩하다는 것과 심지어 庫直과 胥吏 등에게 결원이 생겨도 大臣과 重臣들

84) 閔鎮厚는 肅宗妃인 仁顯王后의 오빠로서 生員에 壯元한 후 文科及第하여 여러 官職을 거쳐 判義禁府事에 이르렀다. 동생 閔鎮遠은 노론의 거두이며 후일 右相으로서 少論과 싸웠다.

85) 『앞의 책』 卷30-2, 肅宗 22年 正月 戊午.

86) 『위의 책』 卷35上-25, 肅宗 27年 5月 甲辰.

87) 『위의 책』 卷35上-28, 肅宗 27年 6月 甲子.

의 청탁이 분분하다고 하였다. 그러한 事例는 地方의 監官이나 別將을 뽑아 보낼 때도 마찬가지라 하였다. “公卿이 이러한즉 大夫와 士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그러한 舊習을 씻어 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각도의 殿最(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도 下인 守丞이 적고 上인 守丞이 많은데 어찌하여 백성들은 근심에 잠겨 나라를 원망하고 있는가”라 하였다. 그것은 監司가 근무성적 평정을 옳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御史에게 적발되는 자도 모두 세력 없는 사람뿐이니 감사와 마찬가지로 어사도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청렴하고 근실하며 아부할 줄 모르는 자는 下位職에 머물러 있고, 탐욕스럽고 求職에 활동력이 있는 자가 큰 고을을 맡아 있으니 民生苦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肅宗은 이와 같은 지적을 매우 가상스럽게 여겼다.⁸⁸⁾

人事行政의 不公正은 관료들 간에도 人事不滿을 팽배하게 하였는데 肅宗 30年 10月 弼善⁸⁹⁾ 權詹이 오랫동안 臺官이 되지 못함을 분하게 여기다가 公廳에서 銓郎을 만나 몹시 화를 내면서 힐책하였는데, 그 言辭가 야비하고 패악하였으므로 司憲府에서는 臺官 후보자는 公論에 따라 추천 임용되는 것임에도 그가 이와 같이 난폭하고 무식하게 처신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파직할 것을 上啓하여 그대로 하라는 王命이 있었다. 그러나 이틀후 肅宗은 일시적인 言語 문제로 파직한 것은 지나치다고 하고 파직의 명령을 환수하였다.⁹⁰⁾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吏曹의 上下官 간의 갈등은 英祖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校理 尹光運이 英祖 8年 10月 상소한 바에 의하면 自身이 처음 銓郎으로 될 때 吏曹의 郎官과 長官(吏判)이 크게 싸워 長官이 붓을 던지고 나간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 吏曹判書였다가 그 후 左參贊이 된 宋寅明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그 때 郎官이 銓郎을 새로 뽑자고 의논하기에 새로 뽑지 말자고 붓을 던지며 일어난 것이지 그 때 새로 추천된 사람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⁹¹⁾ 인사권을 둘러싼 분쟁은 임금과 銓曹 간에도 있었는데 英祖 10年 6月 임진왜란 때의 공신 趙憲·高敬命 등의 후손을 특별 임용하라는 王命이 있자

88) 『위의 책』 卷38下-34, 肅宗 29年 10月 癸巳.

89) 弼善은 世子侍講院의 正4品 벼슬이다.

90) 『위의 책』 卷40-31, 肅宗 30年 10月 辛巳, 癸未.

91) 『英祖實錄』 卷32-23, 英祖 8年 10月 丁丑.

吏曹의 堂上官들은 이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않았다(違牌不出). 그리하여 英祖는 吏曹의 堂上官 3인을 엄중히 推考하라고 하였으므로 吏曹判書 金在魯, 參判 宋寅明, 參議 徐宗玉 등은 입궐하여 상소하기를 어제 “임금께서 下敎하기를 인사권이 비록 政官(인사담당관)에게 있으나 그것을 修正하는 권한(弦韋)은 임금에게 있다고 하였지만 通塞와 取捨는 모두 時議에 따라서 하며, 銓官으로 하여금 임금의 뜻에만 따르게 하고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한다면 한 사람의 인사관리(政吏)만으로 충분하며 세 사람의 銓官(3堂上官)이 어디에 필요한가”라 하고 이는 비단 임금이 관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자신들을 失職시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후일 많은 폐단이 생겨 인사법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이에 英祖는 “내가 政官(인사담당관)을 협박하고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강을 세우고 군신간의 의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며, 인사운용에 있어서 政官의 所爲로 분쟁이 생겨서 調和를 기대할 수 없는데도 임금이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것이냐”고 하였다. 92)

英祖 15年 7月 임금이 大臣과 備邊司 堂上官을 접견할 때 吏曹判書 趙顯命이 말하기를 정기 인사이동 시기가 지났는데도 吏曹郎官 후보자의 추천이 완료되지 못하여 政事를 행할 수가 없다고 하자 임금이 그 까닭을 물었는데 趙顯命이 대답하기를 吏曹의 관료들 간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때 우의정 宋寅明이 말하기를 吏曹의 郎官은 한 시대의 極望이므로 이름이 있는 집안(世家)에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다투게 되어 실로 取捨하기가 어렵다고 하였고 趙顯命은 閔·沈 두 사람 측에서 서로 상대방의 결점을 들추어 공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을 취하면 풍랑이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 英祖實錄 편찬 당시의 史官의 말을 빌리면 沈·閔 두 사람은 老少 양당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므로 吏曹에서 임금에게 품의 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논란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英祖는 右議政 宋寅明, 吏曹判書 趙顯命(둘다 탕평파), 參判 鄭錫五, 參議 申晩 등을 불러서 銓郎의 임용문제를 묻고 양당에서 추천한 閔·沈 두 사람을 廣州府使와 水原府使 등으로 승진발령하여 서울에서 내보냈다. 동시에 英祖는 많은 말로써 黨習의 非理를 꾸짖고 銓曹와 조정 臣僚들에게 舊習을 고칠 것을 명령하였다. 대개 銓郎은 일세의 極選으로 매번 인사이동이

92) 『위의 책』 卷38-28, 英祖 10年 6月 壬戌, 甲子.

있을 때마다 그 선임을 둘러싸고 서로 싸우는 것이 고질화되어 임금이 특별히 宋寅明 및 趙顯命 등을 불러서 물었던 바 탕평파인 宋寅明이 양쪽 말이 모두 옳기도 하면서 모두 틀렸다고 해서 위와 같이 양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두 승진시켜 내보내고 제3의 인물인 趙明履를 吏曹正郎으로 임명하였던 것이다.⁹³⁾ 그에 앞서 우의정 宋寅明은 옛날부터 당파싸움은 반드시 銓曹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⁹⁴⁾ 이와 같이 관료의 인사추천권을 분담하고 있는 銓郎을 어느 당파에서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당파의 세력 확장과 직결됨으로 그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바로 그러한 銓郎 선출을 주관하다가 좌초에 부딪혔던 吏曹判書 趙顯命은 인사가 끝나자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물론 英祖는 그의 사직서를 되돌려 주었지만 그의 心事는 몹시 불편하였던 것이다. 즉 그가 마음을 두고 있던 閑을 吏曹郎官으로 뽑지 못한 것은 오로지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함에 있었으나 필경 싸움의 와중에 휘말리어 몸과 이름만 욕되게 하였다는 것이다.⁹⁵⁾

英祖 17年 正月 좌의정 宋寅明은 朋黨을 깨뜨리자면 彼此와 貴賤을 막론하고 임금이 인사행정을 주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宋은 임금의 특별임용을 의미한다고 하고 만약 銓官에게 일임하면 私意에 따라 강경론이 대두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어떻게 매번 인사를 직접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冢宰(吏曹判書)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뒷날 이를 듣고 吏曹判書 趙尙綱은 상소하기를 大臣이 銓曹에서 私意로써 사람을 쓴다고 하면서 임금이 직접 임용 행위를 주관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니 自身の 罪를 말한 것이라 하고 사직하였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다.⁹⁶⁾ 그 다음 달에 인사대이동이 있었는데 銓郎들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좌의정 宋寅明의 건의에 따라 英祖는 그들을 잡아 와서 강제로 출근시켰다.⁹⁷⁾

英祖 17年 4月 임금은 드디어 翰林回薦之規와 함께 吏郎通淸法을 혁파하였다. 英祖는 매번 조정의 朋黨을 근심하였으며 吏曹郎官과 翰林的 선출 때 양당

93) 『위의 책』 卷49-31, 32, 33, 英祖 15年 7月 戊午, 甲子, 乙丑.

94) 『위의 책』 卷49-26, 英祖 15年 6月 丙戌.

95) 『위의 책』 卷50-3, 英祖 15年 8月 庚寅.

96) 『위의 책』 卷53-7, 英祖 17年 正月 壬辰.

97) 『위의 책』 卷53-8, 英祖 17年 2月 庚子.

에서 서로 싸웠으므로 이를 매우 싫어하여 更張할 뜻을 갖고 있었는데 宋寅明·趙顯命·元景夏·鄭羽良 등이 힘껏 왕을 도와 드디어 위와 같이 결심하게 된 것이다. 吏郎의 薦法은 비록 혁파되었으나 通淸의 權限은 郎官들에게 남아 있었으므로 英祖는 名目上으로는 혁파되었지만 폐단은 남아 있다고 하면서 이는 國初의 古制도 아니요, 經國大典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서 郎官들의 私意를 시행하는 門이니 更張이라기 보다는 舊法典에 따라서 폐단을 고치는 의미에서 吏郎通淸法을 改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節目은 大臣과 冢宰가 故事를 널리 살펴서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⁹⁸⁾ 3일후 吏曹에서는 王命에 따라 吏曹郎選釐革節目 9條를 만들었는데 영의정 金在魯, 좌의정 宋寅明, 우의정 趙顯命, 이조판서 閔應洙, 이조참판 鄭羽良 등이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郎官을 새로 임용할 때 吏曹錄 및 郎官主通之規는 지금부터 혁파한다.

둘째, 郎官은 모두 玉堂人員 중에서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되 이조판서가 有故하여 이조참판이 홀로 정무를 볼 때에도 郎官의 빈자리를 충원시킬 수 있다.

셋째, 郎官主通法이 이미 혁파되었으므로 무릇 淸官 후보자를 새로 뽑을 때에는 당상관, 당하관임을 막론하고 이조판서가 주관하나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참판과 협의하도록 한다.

넷째, 銓郎이 15개월을 실제 근무하면 60일 후에 陞品시킬 수 있다.

다섯째, 郎官 6인을 모두 뽑기 어려울 때에는 4인을 먼저 임용할 수 있다.

여섯째, 현직 參議와 郎官이 可否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집에서 편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일곱째, 전임자를 높이는 옛 풍습을 모두 혁파한다.

여덟째, 비록 現職 玉堂과 春坊일지라도 구애되지 않고 銓郎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아홉째, 假郎廳은 임명하지 않는다.

98) 『위의 책』 卷53-22, 英祖 17年 4月 癸丑.

英祖實錄 편찬 당시의 史官은 그 때 당국자들은 士大夫들이 자기네들에게 불지 않음을 걱정하여 淸要職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회수하고 廢錮諸族(南人, 北人)을 끌어들이어 탕평의 길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柳壽垣이 官制序陞圖를 올렸는데 宋寅明, 趙顯命 등이 元景夏와 의논하여 그것을 힘껏 찬동하고 淸官을 임금으로부터 단절시켜서 郎選을 혁파하고 史薦을 개혁하는 명령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⁹⁹⁾ 같은 날 晝講 때 英祖는 이조판서 閔應洙로 하여금 吏郎節目을 읽게 하였던 바 閱이 읽기를 마치고 上奏하기를 銓郎이 堂下淸流의 인선을 주관한다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英祖는 大怒하여 “銓郎通淸法이 이미 혁파되었는데 어찌 감히 通淸에 관한 일을 말하느냐”고 하고 1조를 추가하여 “이미 銓郎通淸이 혁파되었으니 正郎·佐郎은 각 3인씩 두어야 할 것이나 임시로 그 수를 감액하여 4인만 뽑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우의정 趙顯明은 이번의 變法은 天地無私之德에서 나온 것이라 하고 그러나 弘文錄과 臺諫의 通淸에도 역시 폐단이 있다고 하자 임금은 남은 폐단도 많겠지만 (郎選과 史薦의 폐단) 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吏曹正郎과 佐郎 각 2명씩 임명하였는데 이로부터 銓郎이 별 불일 없는 관직이 되었다고 한다.¹⁰⁰⁾

그리하여 銓郎은 관료에 대한 인사추천권이 박탈당하고 그 권한이 吏曹의 堂上官에게 옮겨졌다. 따라서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臺諫의 논박도 자연히 吏曹의 堂上官이 표적이 되었다. 英祖 19年 9月 사헌부(持平)에서는 문제인물이었던 李元禎과 洪宇遠(모두 南人系)의 손자들이 齋郎(祭享時의 執事官)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 부당하니 吏曹判書 鄭羽良을 推考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英祖가 銓郎의 인사 추천권을 빼앗아 그것을 당상관에게 넘겨 준 것은 종래 銓郎 자리를 老論 일당에서 독점하여 당쟁 격화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탕평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앞서 일부 大臣이 우려한 대로 臺諫은 여전히 老論系가 장악하여 吏曹堂上의 인사권 행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것이다. 사헌부 持平은 이어서 銓曹의 相避之規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恒久的인 法規라 하고 吏郎이 비록 인사권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는 하나 淸官인 春坊의 說書로서 새로 발령난 사람을 보니 吏郎의 兄弟들이므로 吏曹의 堂上官들을 모두 엄중히 推

99) 『위의 책』 卷53-24, 英祖 17年 4月 丙辰.

100) 『위의 책』 卷53-24, 25, 英祖 17年 4月 丙辰, 丁巳.

考하고 해당되는 郎官을 파직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¹⁾ 人事行政에 대한 공격은 臺諫 뿐만 아니라 玉堂에서도 하였는데 英祖 21年 3月 副修撰 徐志修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근래 銓官들이 公事보다는 私意에 따라 인사를 한다고 하였고¹⁰²⁾ 英祖 23年 12月에는 修撰 洪羽漢이 상소하여 淸官인 憲官 후보자로서 경망하고 용렬스러운 사람을 추천하였으니 銓官들을 마땅히 엄중 推考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³⁾

英祖 26年 4月 吏曹判書 金尙魯가 上奏하기를 “吏曹參判과 參議의 후보자 추천제를 바꾼 이후 參議는 大司成 후보자로 내정된 자 중에서 추천하고 參判은 吏曹參議를 거쳤거나 經筵의 同知事 후보자로 내정된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단지 經筵에만 거쳤으면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 또 都承旨는 大司諫을 지내고 資級이 올라 간 자를 바로 임용 추천하는 것은 古例가 아니고 副提學을 거친 사람을 바로 大司憲으로 추천하거나 吏曹參判을 거친 사람을 바로 賓客으로 추천하는 것도 古例가 아니므로 옛날대로 通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이를 모두 定式化하라고 하였다.¹⁰⁴⁾ 그 보다 몇 달 앞서 吏曹判書 元景夏가 말하기를 吏郎의 폐단을 이미 혁파하였고 吏曹參判과 參議에 관한 法規도 바꾸었으며 또한 복수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라는 명령(長望之命)이 있었으므로 오늘날의 銓曹는 進退와 輕重의 權限이 없어졌지만 祖宗朝에서는 吏曹參議를 가장 중하게 여겨서 他曹의 參議와 구별하여 金帶를 띠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⁰⁵⁾

英祖 37年 12月 영의정 洪鳳漢이 말하기를 지난번 銓郎이 掌令으로 바로 승진하는 길(掌通)을 막아 버린 후各司의 正으로 進出하게 함으로서 혼잡의 폐단이 생겼으므로 掌通을¹⁰⁶⁾ 일체 막아서는 안된다고 하자 英祖는 掌通을 지금 허용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吏郎通淸法도復古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洪鳳漢은 吏郎에 관한 것은 續大典에 등재되어 金石之法이 되었으므로 變通

101) 『위의 책』 卷58-20, 英祖 19年 9月 辛巳.

102) 『위의 책』 卷61-18, 英祖 21年 3月 丁丑.

103) 『위의 책』 卷66-39, 英祖 23年 12月 甲戌.

104) 『위의 책』 卷71-14, 英祖 26年 4月 戊寅.

105) 『위의 책』 卷71-1, 英祖 26年 正月 己酉.

106) 5, 6품인 銓郎을 같은 淸要職인 司憲府 掌令(4품)으로 승진 발령함으로서 생기는 폐단을 막고자 영조는 이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며 銓郎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掌令 이외에도 翊善·弼善 등 세자리라고 하였다. 이에 英祖는 이후 승진발령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銓曹에 신칙하였다.¹⁰⁷⁾ 英祖 38年 12月에는 우의정 尹東度가 銓郎을 가려서 뽑도록 건의하였는데 이는 英祖가 銓郎의 選法을 혁파한 이래 그 자리는 厭避하는 자리가 되었으므로 시골의 冷族들로 충원되었기에 이와 같은 건의가 있게 되어 임금의 允許를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¹⁰⁸⁾

淸要職은 堂上官도 銓曹의 추천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英祖 47年 正月의 실록 記事에 의하면 淸要職인 承旨를 임금의 特旨로 임명하여 家門이나 才望을 따져 볼 수 없어 안타깝다고 하였다.¹⁰⁹⁾ 그리고 이듬해인 英祖 48年 2月 司諫 李蕃建의 上啓에 의하면 근래 臺閣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으므로 臺風의 진작과 言路를 넓힐 것을 건의하였다.¹¹⁰⁾

英祖 때 改革된 人事行政에 관한 法規는 탕평책의 일환으로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었으므로 관료들 간에는 不平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正祖는 즉위하자마자 吏曹에 명하여 관료 임용에 있어서 3배수 후보자 추천제를 복구하고¹¹¹⁾ 吏郎通淸法을 복구하는 등 옛법을 회복 시켰다. 이때 正祖는 下教하기를 名檢(명예, 법도, 윤리)을 천하게 여기고 청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조정의 고질이었다는 것과 管子의 四維不張¹¹²⁾에 가까워 오니 그것을 고칠 방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다고 하였다. 正祖는 또 근래 벼슬 길이 혼란하여 士夫들의 罔관운동이 날로 심하여 이를 고치지 않으면 末流의 근심이 크다고 하고 銓郎法을 고친 것은 先王(英祖)이 朋黨을 없애자는 뜻에서 나왔지만 조정의 모습이 괴리되어 이를 다시 고쳐 옛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 吏郎通淸之制를 복구하는 것이라 하였다.¹¹³⁾ 英祖의 인사법은 특별임용제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자연히 관료들 간에는 罔치 불문하고 罔관운동을 행하게 되는 것이었고, 正祖는 즉위초에 고위

107) 『앞의 책』 卷98-35, 英祖 37年 12月 己卯.

108) 『위의 책』 卷100-26, 英祖 38年 12月 庚子.

109) 『위의 책』 卷116-1, 英祖 47年 正月 丙午.

110) 『위의 책』 卷118-15, 英祖 48年 2月 庚午.

111) 『正祖實錄』 卷1-24, 正祖 卽位年, 4月 壬戌.

112) 四維란 나라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강령 즉 禮義廉恥를 말한다. 管子는 四維不張이면 나라가 곧 망한다고 하였다.

113) 『앞의 책』 卷1-52, 正祖 卽位年 5月 己亥.

관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인사법을 복구한 것이다.

正祖 卽位年 6月 吏曹判書 徐命善과 吏曹參判 洪國榮이 상소하기를 “郎官通 淸法을 奉行함에 있어서 근래 銓選이 오래 동안 정지되어 있어서 吏郎으로서의 적격자가 많이 玉堂의 東壁(4品)으로 승진되어 있으므로 法例에 구애되지 말고 이들을 5, 6品인 銓郎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¹¹⁴⁾ 하여 임금의 동의 를 얻었다.¹¹⁵⁾ 吏郎通淸法이 복구된지 卅日 후인 正祖 卽位年 9月 正祖는 吏曹 佐郎 李秉模에게 下教하기를 옛날에 吏曹郎官을 둔 것은 吏曹參議가 堂上官의 인사 추천권을 관장한데 대하여 吏曹郎官이 당하관의 인사 추천권(通塞)을 관장 하여서 어진 者를 올리고 不肖者를 내려서 新進士類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삼가 하는 뜻이 있도록 함이니 이 뜻을 잘 살피라고 하였다.¹¹⁶⁾

正祖 卽位年 11月에도 인사 추천권을 둘러싸고 長官(吏判)과 郎官의 갈등이 있었고 또한 臺官과 郎官 간에도 분쟁이 있었다.¹¹⁷⁾ 正言 鄭志儉의 상소에 의 하면 禮曹의 郎官에 芸閣(운각) 출신인 庶流를 추천하고 北關의 寒品(함경도의 土官)을 함부로 임명하는 등 官界가 혼잡하다고 銓官들을 공격하였다.¹¹⁸⁾ 그러나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는 것은 正祖의 所信이었 으며 銓官(인사담당관)들의 뜻이 아니었다. 正祖 2年 正月 임금이 銓官들에게 下教하기를 淸白吏子孫과 戰死者의 유족들을 특별임용할 것과 영호남에는 經術 을 익힌 선비들이 많고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武勇이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 銓 官들이 公正하게 取하여 잘 살피서 임용하도록 하라고 하였다.¹¹⁹⁾

正祖 5年 4月 正祖가 下教하기를 吏曹郎廳通淸法이 복구되었으므로 그 자리 가 그 전과는 다르다는 것과 이번에 들으니 吏曹郎官들이 宮中에 출입하면서 前 導者를 세운다고 하니¹²⁰⁾ 매우 괴상한 일이므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해당 曹에

114) 비록 4品인 관직에 있던 자라도 인사추천권이 있는 銓郎(5, 6品)으로 전보되 는 것은 좌천이 아니라 영전이라 생각하였던 것이 당시 관료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이었다.

115) 『앞의 책』 卷1-52, 正祖 卽位年 6月 辛丑.

116) 『위의 책』 卷2-35, 正祖 卽位年 9月 己丑.

117) 『위의 책』 卷2-56, 正祖 卽位年 11月 戊寅.

118) 『위의 책』 卷3-4, 正祖 元年 正月 丁丑.

119) 『위의 책』 卷5-7, 正祖 2年 正月 戊寅.

120) 貴人の 行次 때, 前導者가 행인을 물리치고 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서 조사 보고하여 論罪할 것을 지시하였다.¹²¹⁾ 또 같은 해 6月 정기 인사이동을 행한 후 正祖는 下敎하기를 守令이나 邊將의 자리는 民生과 직결됨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者들의 任免權(取捨)이 사실상 銓官한테 있으므로 신규 임용할 때에 蔭官, 武官을 막론하고 반드시 충분히 精選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正祖는 또한 지난 겨울 인사 이동 때에 庶類를 임용후보자로 수록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 후의 인사추천서에 王命을 奉行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고 하였고 또 영남은 鄒魯之鄉¹²²⁾으로서 文官, 武官, 蔭官 등으로 벼슬을 한 者가 몇백 명이나 되었는데 근래에는 顯職과 漫任¹²³⁾을 막론하고 한 자리도 임용된 자가 없으니 이는 조정의 수치라고 하면서 銓曹에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엄중히 꾸중하였다. 또 正祖는 銓選法을 복구한 것은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 하고 근간의 銓選(전형하여 임용함)이 단지 舊習만 따라서 임금의 여러 차례에 걸친 下敎가 空言이 되었으므로 銓曹의 堂上官과 郎官들의 죄라고 하였다.¹²⁴⁾

正祖 6年 9月 임금이 下敎하기를 근래 銓郎이 품계가 올라가면 바로 玉堂의 應敎로 승진하고 곧 승지 후보자로 추천되는데 앞으로는 銓郎들이 품계(官階)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玉堂의 東壁(應敎, 副應敎)이 되지 못하게 하고 弘文錄의 석차를 준수하여 通淸하도록 하라고 하였다.¹²⁵⁾ 이틀 후 正祖는 또 下敎하기를 銓郎通淸法이 다시 부활된 후 銓官들이 努力하는 성과를 기대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제도는 無益하고 有害하여 길으로는 公正하게 하는 척 하나 속으로는 私黨人을 구제하는 행위를 하니 옳은 사람이 등용되지 않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어 마른 목과 누런 얼굴로 하늘의 조화를 깨뜨리는 등 많은 폐단이 있으므로 앞으로 銓曹의 堂上官과 郎官들이 이점을 유념하라고 하였다.¹²⁶⁾

正祖 13年 12月 드디어 銓郎通淸法은 다시 혁파되었다. 이때 임금은 判中樞

를 呵導 또는 呵引이라고도 한다.

121) 『앞의 책』 卷11-65, 正祖 5年 4月 辛酉.

122) 魯는 孔子, 鄒는 孟子的 출신지로서 鄒魯之鄉이라 함은 孔孟學의 고장이란 뜻이다.

123) 漫任은 淸顯要의 관직이 아닌 일반적인 관직을 말한다.

124) 『앞의 책』 卷11-92, 正祖 5年 6月 癸巳.

125) 『위의 책』 卷14-19, 正祖 6年 9月 戊午(通淸은 淸官으로 되는 절차를 거친 것을 의미한다).

126) 『앞의 책』 卷14-19, 正祖 6年 9月 庚申.

府事 蔡濟恭에게 말하기를 지난번 銓郎 후보자 명단 중에서 전에 후보자로 되어 있던 사람이 이유 없이 빠져 매우 의혹스럽다고 하자 蔡濟恭이 말하기를 臣들이 보건대 매년 兪官 운동이 풍습화하고 兪치가 날로 사라졌으므로 銓郎通淸法등이 복구되어 이러한 폐단이 고쳐질까 생각하였는데 그 후에도 벼슬을 다투는 일은 날로 심하고 私意가 날로 자라났으며 祖宗朝에서 그것을 여러번 설치하고 여러번 혁파하였다는 것과 銓郎은 極選이므로 한번 그 자리를 맡으면 비록 이조판서나 재상들도 그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한 한 시대에 그 자리에 알맞은 자가 불과 몇 사람밖에 안될 터인데도 너무 자주 바뀌어 吏郎을 설치한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正祖는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던바 徐有隣·鄭昌順·沈頤之 등이 모두 吏郎通淸法을 혁파함이 옳다고 하여 正祖는 처음 이 법을 다시 만들 때 그 無益함을 알았으나 이미 만든 후이고 또한 혁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만 마침 여러 卿宰들의 뜻이 임금의 뜻과 합치되니 이를 혁파한다고 하였다.¹²⁷⁾

正祖 18年 11月 좌의정 金履素가 上啓하기를 銓法(인사전형법)은 格式과 定例가 중요한데 일전에 淸官을 선발하는 절차(通淸)에 관하여 政廳(吏曹)에 下問하였던 바 吏曹判書와 參判이 모두 人事에 참가하고 參議가 불참하면 通淸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옛날 銓曹에서 判書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당하관의 通淸은 銓郎이 可否를 결정하였고 堂上官의 通淸은 銓曹의 세 堂上官이 可否를 결정하였으므로 만약 銓郎과 3인의 堂上官이 없다면 通淸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때도 사실은 이조판서가 그것을 모두 주관하였으며 이미 銓郎通淸法이 혁파된 후인즉 3인의 銓曹의 堂上官이 없으면 通淸을 할 수가 없다는 法規는 이미 혁파되었다고 보고 判書가 인사를 주관하면서 參判이나 參議 중 한 사람이라도 동참하면 제반 通淸節次를 이행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는 것이 英祖 16年(1740) 銓郎通淸法이 혁파된 이후 바꿀 수 없는 人事規則(政格)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正祖는 이조참의가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이조판서와 참판을 推考하였다.¹²⁸⁾

127) 『위의 책』 卷28-62. 正祖 13年 12月 己未.

128) 『위의 책』 卷41-38. 正祖 18年 11月 庚子.

正祖 19年 8月 銓曹久勤陞資法을 혁파하고 吏曹의 參判과 參議도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여 임용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때 備邊司에서 上啓하기를 先祖(英祖) 수십년 동안의 各品 陞資時의 등록을 살펴보면 임금의 특명 혹은 大臣의 건의에 따라 조정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승진시켰고 吏曹의 堂上官만을 차례대로 승진시킨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개 나라의 인사행정은 임금의 특별명령으로 발탁하는 등의 경우 이외에는 科擧及第한지가 오래 되고 경력이 많은 자를 관료사회의 公議에 따라 資級을 올려 주도록 해야만 조금하게 승진하려고 엿보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근년에는 吏曹에서 오래 근무한 자 위주로 승진시켜서 한번 吏曹參議를 거친 사람은 몇 년만에 亞卿(次官)이 되고, 한번 吏曹參判을 거친 사람은 또 몇 년 후에 正卿(장관)으로 승진되는 반면 吏曹에 근무하지 못한 자들은 수십년을 조정에서 근무하여 늙어져도 一資班給도 올라가지 못하니 銓曹久勤陞資法을 혁파하여 승진의 불공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吏曹에서 정말 오래 동안 성실한 근무를 한 자와 임금의 특명이 있을 때에는 예외를 둔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벼슬을 다투는 풍조가 종식될 것이라 하였다.¹²⁹⁾

正祖 19年 9月 校理 朴吉源의 상소에 따라 吏曹에서 都憲(大司憲)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를 上啓하였는데 임금은 이를 前, 現職 大臣들에게 물었다. 영의정 洪樂性은 都憲의 자리는 6卿보다 더 중요하므로 經筵이나 泮長(大司成) 등 淸官을 거친 사람(通淸人) 중에서 品格 있고 言辯이 좋은 자를 추천하여 임용한 후 오래 근무시키면 좋을 것이라 하였다. 좌의정 兪彦鎬는 都憲의 자리는 地位와 名望이 특별하므로 명성과 품모가 일세를 뒤덮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하되 銓曹에서 심사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의정 蔡濟恭은 官僚로 임명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銓衡에 관계되는 일이니 자리에 따라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銓官을 잘 골라서 그로 하여금 都憲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領中樞府事 金履素도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銓官에게 분부하여 신중히 간택하도록 하고 만약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면 年前의 國子長(大司成) 변통시의 예에 따라 행하면 좋을 것이라 하였다. 判中樞府事¹³⁰⁾ 李秉模는

129) 『위의 책』 卷43-17, 正祖 19年 8月 丙戌.

130) 『英祖實錄』 卷100-27, 英祖 38年 12月 癸卯에 大臣이나 國舅가 아니면 領中

都憲은 地位와 名望이 매우 높은 자리로서 經術과 德望 혹은 言論과 品格이 일세에 떨칠 만한 사람 중에서 銓衡하여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¹³¹⁾ 여러 大臣들의 의론이 이와 같이 都憲(大司憲)의 소임은 옛날부터 道를 行하는 직책이라 하였다. 先正臣 趙光祖는 副提學(經筵參贊官)에서 大司憲으로 옮겨 갔고 文忠公 閔鼎重도 淸顯의 관직을 거친 후 大司憲이 되었으나 시대가 내려 올수록 사람들이 그 職(大司憲)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그 자리에 취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한을 하자는 논의가 있게 되었으니 이 후로는 都憲(大司憲)은 國子長(大司成), 銓曹의 堂上官, 經筵官으로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여 추천하되, 山林宿望之士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正祖는 大司憲 任用에 있어서 자격제한을 하자는 일부 大臣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身名을 아끼며 名義를 존중하는 進取的인 사람을 都憲 후보자로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¹³²⁾

純祖 7年 6月 정기 인사이동을 행하였는데 후보자 명단 작성이 지연되고 또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吏曹判書와 兵曹判書가 여러 번 推考되고 吏·兵曹의 郎官 및 인사에 불참한 兵曹參判과 參議를 모두 문책하였다.¹³³⁾ 純祖 15年 4月 영의정 金載贊이 말하기를 나라에서 東西兩銓을 설치한 것은 才能을 헤아려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또한 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國王의 특별한 은혜인데 근래 간혹 누가 어느 관직으로 추천되도록 명령되었다는 소문이 있으며 그 이름을 들어보면 모두 外戚家의 사람들이니 인사행정을 공정히 하도록 하는 길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었다.¹³⁴⁾

요컨대 관료들에 대한 임용, 승진, 전보등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던 銓郎들은 자신들의 후임자 결정도 사실상 자신들이 행사하는 이른바 銓郎自薦權 때문에 宣祖 때 東西分黨이 생기는 등 폐단이 많았으므로, 그 후의 歷代

樞가 될 수 없고 비록 輔國崇祿大夫(正1品)일지라도 冢宰(吏判), 宗伯(禮判), 司馬(兵判)를 거친 사람이 아니면 判中樞(從1品)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하여 正1品 官階를 가진 자라고 하여 모두가 判中樞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1) 『正祖實錄』 卷43-26, 正祖 19年 9月 己酉.

132) 위와 같음.

133) 『純祖實錄』 卷10-18, 純祖 7年 6月 壬辰.

134) 『위의 책』 卷18-10, 純祖 15年 4月 甲申.

임금들은 그들의 권한을 삭감하는 시책을 썼으나 여전히 인사추천권에 대한 실권 행사는 그들 銓郎들에게 있었으므로 결국 英祖의 강력한 탕평책의 일환으로 銓郎通淸法이 혁파되었지만 正祖 즉위초 관료들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同法을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正祖 13年 12月 여러가지 폐단 때문에 이를 다시 혁파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淸要職에 대한 임명권은 國王에게 돌아 갔으나 이어서 外戚政治時代를 맞이하여 관료들에 대한 人事權은 外戚政治人들에게 돌아 갔다. 그후 大院君 執政時代를 거친후 高宗 22年 5月 高宗은 銓郎 差出制를 옛날 식으로 복구하여¹³⁵⁾ 그후 세자시강원의 관료를 通淸할 때에 銓郎도 함께 추천하도록 하였다.¹³⁶⁾

3. 1894年 甲午改革에 따른 新官制

高宗 31年 7月 甲午改革에 따른 新官制 公布로 종래 당상관, 당하관 및 참서관, 참하관을 勅任官, 奏任官, 判任官으로 나누고 勅任官은 正1品에서 從2品까지의 관료로 하며 奏任官은 3品에서 6品까지, 判任官은 7品에서 9品까지의 관료로 하였다.¹³⁷⁾ 또한 3品 이하는 正從의 구분을 없애고 3品 이상은 大夫, 4品이하는 郎으로 하였다.¹³⁸⁾ 그리고 관료들에 대한 임명 형식도 勅任官은 그 관직을 敎旨로서 임명하되 임금이 직접 서명 날인하며 奏任官은 임금이 날인만 하고 判任官은 주관하는 大臣이 추천하여 承宣院에서 임금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 大臣의 奉敎職牒으로 大臣이 서명 날인하여 임명한다¹³⁹⁾는 것이었다. 또한 관료들에 대한 임용 절차도 勅任官은 총리대신이 각 아문의 大臣 및 贊成, 都憲과 협의하여 3배수로 추천하면 임금이 그 중에서 골라 낙점하여 임명하고, 奏任官은 각 해당 아문의 大臣들이 공개 선발하여 인적사항과 학식, 경력 등을 써서 총리대신

135) 『高宗實錄』上, 卷3-10, 目錄, 高宗 22年 5月 29日 및 『같은 책』中 卷22-26, 高宗 22年 5月 29日.

136) 『위의 책』中, 卷27-77, 高宗 27年 12月 7日; 『같은 책』中, 卷28-2, 高宗 28年 正月 1日.

137) 『위의 책』中, 卷32-8, 高宗 31年 7月 14日. 文官授任式.

138) 『위의 책』中, 卷32-18, 高宗 31年 7月 15日 官秩.

139) 『위의 책』中, 卷32-6, 高宗 31年 7月 12日 命令頒布式.

에게 보내면 총리실에서는 이를 都察院에 보내서 可否를 평의하여 총리대신에게 다시 보내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勅任官의 品階 승진은 만 3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훈이 있거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며 奏任官은 이를 24개월로 하되 시종 청렴하고 근실하게 근무하거나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判任官은 각 해당 아문의 대신들이 소정 인원을 선발한 후 銓考局에 보내서 시험을 보인 후 해당 대신이 추천서를 붙쳐서 올리면 承宣院에서 임금의 결재를 받아 奉教職牒을 成給한다는 것이다. 判任官의 陞秩(품계승진)도 만 24개월의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나 청렴하고 근실하게 근무한 자는 1階를 승진시킴을 定例로 하되 다만 奏任官으로 승진하는 데는 반드시 銓考局에 보내서 시험을 보여 소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에도 재능이 뛰어난 자는 예외로 한다¹⁴⁰⁾는 것이었다.

140) 『위의 책』中, 卷32-8, 高宗 31年 7月 14日 文官授任式.

第4章 庶族의 官界進出과 陞班問題

1. 庶族의 概念과 限品敍用 및 專門職

庶族은 庶人의 族類라 할 수 있는데 庶人과 平民, 良人, 常民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종래 학자들 간에 여러가지 견해가 있었다. 일부 학자는 조선초기의 신분제는 良賤二元制로서 양반과 서인 평민, 상민 등 천인이 아닌 모든 신분층을 良人이라 하였고 다만 16세기를 전후하여 통설이 말하는 양반(士族),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4分化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그는 士庶人(農民포함)을 양인의 상층부로 商工人과 鄉吏, 驛吏등을 양인의 하층부로 인식하고 庶擊禁錮가 본격화 된 것도 조선후기라 하였다.¹⁾ 또 일부 학자는 庶人을 官人의 대칭으로 썼기 때문에 신분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²⁾ 그러나 생각하건대 麗末鮮初와 조선 전기의 여러차례에 걸친 정변에 따라 비록 일부 평민(양인, 서인) 이하層에서 신정권에 협조하여 陞班하는 예가 있었다고 하여 조선전기의 신분구조를 良賤二元制로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서얼금고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15세기 서얼금고가 본격화되면서 위로는 양반벼슬을 못하게 되고 아래로는 평민의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양반의 庶流자손들의 유일한 出仕路인 기술관료에로의 진출과 함께 中庶身分層이 생겨남으로서 양반, 중인, 양민, 천민의 신분계층의 4분화가 형성되었고 그 이전에는 兩班(士人), 平民(庶人), 賤民 등으로 3분화 되어 있었다고 하겠다.³⁾ 그리고 관직의 유무에 따라 士人과 庶人으로 나누는 것도 大小各品人員과

1) 韓永愚, 『조선전기 사회경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3), pp.315~316 및 pp. 393~423.

2) 李成茂, 「조선초기 신분사 연구의 재검토」, 『역사학보』 102集, 1984, p.215.

3) 『太宗實錄』 卷30-37, 太宗 15年 11月 甲寅: 『經國大典』 卷1, 吏典, 限品敍用 註에 2品 이상의 窸자손에게만 기술관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世祖代 이

별도로 「有職兩班의 子孫」, 「庶人有職」 등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태종실록의 記事에⁴⁾ 비추어 볼 때 관직이 없는 양반과 관직이 있는 서인도 15세기 초에 이미 있었을 것이므로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필자는 宋俊浩 교수가 일찌기 지적한 대로 庶人을 士族에 인접한, 그러나 사족과는 신분적으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보고 천인에 인접한 위치에 있는 양인과는 다른 신분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⁵⁾ 따라서 庶人을 士人과 대칭되는 평민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士庶人을 묶어서 大夫와 대칭적으로 쓰기도 하였고, 반면 士大夫를 한데 묶어 庶人과 대칭시키기도 하였는데, 간혹 사대부가 得罪하여 廢庶人이 되기도 하였으나 많은 경우는 양반의 첩자녀와 그 후손을 중심으로 하는 庶類子孫을 庶人 또는 庶族이라 하였다고 보겠다. 조선 전후기의 각종자료를 찾아 보면 서얼 또는 서류들이 반드시 양첩, 천첩의 자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정당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심지어 제1부인의 소생자녀)가 庶子, 庶女로 취급되어 그 후 그 자손들이 수 백년 동안 庶族으로 취급된 일도 있었다.⁶⁾ 특히 조선후기의 下代로 내려 올수록 적서자손간의 심각한 분류와 종래 서족으로 차대받던 상당수 인사들이 學文과 德行, 淸顯要職 就任, 生進試入格, 文科及第 등으로 승반화의 길을 걷자 舊士族들이 陞班화된 庶族을 자신들과 구별하여 士庶를 비록 新班이라 부르는 하였지만 여하간 양반으로 통칭하게 되었고 또 양인과 천인들의 身分混濟가 일반화되어 常漢으로 각 통칭되어 반상 二元的인 신분질서로 개편되었다⁷⁾고 하겠다. 물론 이 때에도 모든 서족들이 승반된 것은 아니나 적어도 동족부락을 이루고 文筆과 系譜를 이어온 족류들은 각각 鄉班으로 자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양반가운데에서도 여

후 2품 이상의 官階(資級)를 받은 者는 아주 많았으므로 극소수 2품 이상의 관직자의 자손들만의 특혜로 인식하는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4) 『太宗實錄』 卷30-37. 太宗 15年 11月 甲寅, 여기서 職은 官職을 말한다. 役과 다르다.

5) 宋俊浩, 『조선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7, pp.208~212.

6) 1925. 民上 제413호, 조선고등법원 민사부판결문(1926.3.2) 등.

7)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각종 공문서(재판문서 등)의 인적사항에도 양반, 상민(평민) 두 가지의 신분표시만 있었다(東學人士의 판결문과 105인 사건의 판결문, 그리고 3.1운동당시의 수형인 명부 등).

러 등급이 생겨 國班, 道班, 郡班, 鄉班 혹은 1등양반……호칭이 있게 된 것이다.

서얼금고법이 제정되기 전인 조선국초의 쫓자손문제는 주로 양친신분의 분별과 繼嗣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래 복수의 적처가 공존하였던 조선국초의 사회현실과 조선왕조의 국시였던 유교적 예법에서 파생된 「禮家無二嫡」이라는 이상과 서로 모순이 되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국초의 왕실내부사정으로 부터도 엿볼 수 있다. 太祖實錄 卷4 太祖 2年 9月 庚申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의 父 桓祖에게 3인의 부인이 있었는데 제 2부인의 아들인 차남 이성계의 출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그의 異腹兄 元桂의 어머니(제 1부인)와 異腹弟인 和의 어머니(제 3부인)을 모두 婢妾으로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태종때 서얼금고법이 제정된 후 그 자손과 女壻가 서얼이 되어 淸顯要職에 취임할 때마다 臺諫에서 문제를 삼는등으로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더구나 桓祖의 孫壻인 柳廷顯까지도 그 처(태종의 4촌) 이씨가 서얼이라는 이유로 臺諫에서 署經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太祖實錄 卷1 太祖即位前의 기사에

「初 桓祖薨 太祖迎 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階下…… 寵待金氏子和……悉焚其母賤案」⁸⁾

이라 하여 桓祖死後 태조가 그의 孽母 김씨(桓祖의 제 3부인)을 서울 저택으로 맞이하여 매우 정성껏 섬겼으며 매번 뜰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進見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김씨가 그 父의 婢妾이었다면 양친의 신분차별이 대단하였던 麗末의 상황아래서 이성계가 그런 형식으로 천인을 배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뜰아래 꿇어앉아 進見하였다면 이성계의 모계가 김씨보다 훨씬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 태워버렸다는 其母賤案도 김씨아닌 다른 사람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과 같은 태조실록의 記事는 그러한 의심을 더욱 짙게 하여 주고 있다. 즉, 司憲府에서 러말왕조의 殘黨들이 요망한 말을 퍼뜨리고 있어 민중의 마음을 현혹하게 한다는 상소를 올린데 대하여 태조 이성계는 웃으면서 말하기

8) 『太祖實錄』 卷1-12. 太祖即位前(恭愍王 20年 7月).

를 제왕이 나라를 새로 일으킬 때 그 世系의 종류 따위는 상관없다. 현재 大明皇帝 朱元璋도 匹夫로서 천하를 얻었다. 그 무리들의 世類之說에 개의할 필요가 무엇인가⁹⁾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성계의 모계 신분이 높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복수의 正妻가 존재하였던 고려시대와 조선국초의 낡은 신분질서를 해체하고 유교적 예법에 근거한 새로운 신분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태조 이성계의 3인의 모친중 생모 이외에는 모두 서모를 만들어야만 하였다. 물론 그러한 家系變造作業은 太宗때 이룩된 것인데 「禮家無二嫡」이란 공식에 맞추기 위하여 많은 무리한 수단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신분질서 재편작업은 비단 왕가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며, 서얼금고법 제정은 그러한 무리한 신분구조 개편에서 파생된 불만세력을 억압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서얼금고법 제정은 전술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었을 것인데 太宗 李芳遠이 政變을 일으켜 異腹동생이 갖고있던 世子 자리를 탈취한 후 자기네들의 所爲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적처 1인 이외는 모두 첩이라 하고 비록 良身分인 소위 後娶의 所生子도 良妻子라 하여 차별받도록 법제화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적서차별이란 양친의 신분차에서 오는 차대에 불과하였으며 양첩에 대한 차별이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양첩자손까지 차대하는 법제를 만들어 반대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嫡庶之分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죄목을 신설했을 것이다. 定宗實錄에 나타난 바와 같이 鄭道傳·南閣과 趙浚은 모두 이른바 「廢嫡立庶」행위에 참여하였는데, 鄭·南 두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했지만 조준은 親 芳遠黨이었으므로 불문에 붙이게 되었다.¹⁰⁾

그 후에도 臺諫에서는 嫡妾之分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는데 太宗實錄 卷 6, 太宗 3年 11月 壬辰에, 先王의 禮法에는 嫡庶之分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첩이 처가 되는 것은 분명히 금해야 하는데 義安大君 和의 妾 梅花가 본래 官妓로서 그 이름이 樂籍에 있었으나 요행히 免賤하여 외람되이 翁主

9) 『太祖實錄』 卷2-2 太祖元年 9月 甲午.

10) 『定宗實錄』 卷1-8. 定宗 元年 3月 甲申; 『定宗實錄』 卷3-11, 定宗 2年 2月 己亥; 『定宗實錄』 卷5-2, 定宗 2年 7月 乙丑.

의 칭호를 받았으니 이는 嫡妾之分을 잃은 것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서얼금고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그 첩의 출신성분이 賤系일 때에는 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그 무렵의 적첩지분의 첩개념 속에는 양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며 대개 천첩만을 의미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첩은 서얼금고법 제정 이전에는 臺諫 이외에는 어떠한 要職에도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明宗實錄』 卷 15-42, 明宗 8年 10月 戊子).

처첩의 분간에 관하여 그 첩이 천인신분이었을 때에는 그 구분이 명백할 수 있었으나 그 신분이 士族으로서 妻妾間에 별차이가 없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모순이 축적되고 있었다. 太宗 13年 3月 己丑에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夫婦는 인륜의 근본이며 嫡妾之分은 紊亂할 수 없다는 것과 그러나 고려말에 「禮義文化」가 행해지지 않아서 夫婦之義가 먼저 문란하여졌다든 것, 卿大夫士는 오직 情愛에 혹하여 멋대로 처신하였으므로 妻가 있으면서 娶妻하기도 하였고 妾을 妻로 삼기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妻妾相訟의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대가 오래되고 사람이 죽고 없어 증거가 부족하여지므로 거짓으로 꾸미고 그 사정을 숨겨서 眞僞를 판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 지금 첩을 처로 삼은 자와 처가 있으면서 娶妻한 자를 모두 법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는 것, 당사자가 죽어 다시 처첩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先娶者를 嫡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소에 대하여 太宗이 그대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妻妾分揀問題와 그 자식들의 爭嫡문제는 그 후에도 계속 대두되었다. 즉 太宗 14年 6월 辛酉에 大司憲 柳觀등이 상소하기를 고려때 大小官僚가 京外에 兩妻를 두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 父가 죽은 후 양처의 자식간에 서로 적자임을 다투어 원수가 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과 세월이 오래되어 婚書유무나 성례여부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때 양반의 자식을 後娶라하여 일률적으로 첩으로 한다면 부당하므로 先後妻間의 恩義의 深淺. 棄別有無 同居與否로서 분간하여 先妻에게 恩義가 얕고 후처와 終身토록 同居하였으며 婦道에 흠이 없으면 비록 후처라도 爵牒과 土地를 주고 노비를 分給한다는 것이다. 3妻并畜者의 경우에도 선후처를 막론하고 그중 終身同住者에게 爵牒과 토지를 주었으며 노비는 3처자식간에 평균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恩義의 厚薄등으로 처첩을 분간한다는 원칙에도 문제점은 있어서 자식들간에 爭嫡爭訟이 여전히 多端하였고 명분

상으로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사간원에서 太宗 13年 3月 11日 이전의 再娶妻者나 선처가 죽은후에 後娶한 처 및 부득이 改娶한다는 明文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2처 이상을 竝蓄한 자와 更娶한 후에 선처와 還合한 경우 모두 선처를 嫡으로하고 여타는 모두 첩으로 하여 명분을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太宗은 이를 열람한 후에 보류하였다.¹¹⁾

그런데 선취녀를 적처로 하고 후취녀를 첩으로 하는 원칙은 그후 經濟六典續典에서 성문화하였다고 하겠다. 즉 世宗 29年 9月 사헌부에서 上啓하기를 中樞院副使 李藁은 조강지처인 金氏를 첩이라 詐稱하고 후취녀 崔씨를 적처로 하기 위하여 爵牒을 冒受하도록 하였으니 續刑典에서 有妻娶妻의 경우 후취녀를 강제이혼 시킨다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하고 선처자손을 嫡으로 하며 후처자손을 庶로 할 것을 건의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¹²⁾ 그러나 明宗 8年 10月 司諫院의 上啓에 의하면 첩이 반드시 처보다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며 혹은 시집을 온 순서에 따라 혹은 남편의 사랑의 厚薄에 따라 처첩으로 갈라진다고 하였다.¹³⁾ 이와 같이 처첩이 모두 士族인 경우 그 자손들의 적서 분간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일단 서자손으로 취급되면 사회적인 천대와 함께 仕路 진출에도 제한이 가하여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代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이며 집단적인 爭嫡투쟁을 전개하여 조선후기 향촌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鄉戰이 격화되었던 것이다.¹⁴⁾

庶孽禁錮法 제정의 淵源에 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葵史, 燕岩集 등公私撰 사료상으로는 徐選, 鄭道傳 不和契機說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대하여 李相佰은 王室內部事情說을 주장하였고¹⁵⁾ 前間恭作은 風教振興目的說¹⁶⁾, 金斗憲은 禮教思想說¹⁷⁾, 李泰鎭은 身分秩序維持說¹⁸⁾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11) 『太宗實錄』卷33-16 太宗 17年 2月 庚辰.

12) 『世宗實錄』卷117-21, 世宗 29年 9月 壬子.

13) 『明宗實錄』卷15-40, 明宗 8年 10月 壬午.

14) 李鍾日, 「조선후기의 嫡庶신분변동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5, 1989.6.

15) 李相佰, 「서얼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진단학보』 1집, 1934, pp.26~51.

16) 前間恭作, 「庶孽考」, 『조선학보』 5집, 1953, pp.11~14.

17) 金斗憲,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92~293.

18) 李泰鎭, 「庶孽差待考」, 『역사학보』 27집, 1965, pp.65~104.

이라 생각된다. 太宗 때 制定된 「庶孽子孫 勿敍顯職」의 규정은 世宗 15年 黃喜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에 등재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이는 다시 世宗때의 논의를 거쳐서 성종年間に 편찬된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되었다.

「失行婦女之子孫 及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¹⁹⁾

즉 서얼자손은 재가 등으로 두 남편을 섬긴 부녀의 자손과 함께 문과, 생원, 진사과에 응시함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 무과응시는 가능하였는가. 경국대전에서는 위 인용문에 이어서 「本道에 살고있지 않는 자와 관직에 있는 현직 朝士는 鄉試에 赴舉할 수 없다고」규정한 후 그 주에 「若承差受假者 不在此限并武科同」이라 하였는데 문맥상 「并武科同」은 「非居本道者 朝士見在職者 勿許赴鄉試」에 관한 注일 뿐 「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까지 연결지워 서얼들의 武科赴舉까지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분위기는 무과 뿐아니라 雜科 까지도 서얼들에게 그 응시를 금하려는 것이었다. 世祖實錄에 의하면 平壤府院君 趙浚의 賤妾 女孫인 安愈 安惠등이 世祖에게 자기들의 조모가 太宗때 「永許爲良」되었고 자기들도 현재 原從功臣이 되어있으니,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건의한데 대하여 국왕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관료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²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본인이 서자가 아닐지라도 외조모가 남의 첩이었을 경우에도 그 외손은 서얼이 되어 문과응시는 물론 무과나 심지어 잡과까지도 赴舉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관료사회의 통념이란 것이다. 더구나 安氏형제는 당시의 세족가문인 政丞 趙浚의 외손자이고 그의 친가 쪽에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 듯하였으며, 문제의 그 외조모도 이미 「永許爲良」되어 양인신분이었는데도 그들에게 각종 과거의 응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며 훈구대신의 庶派라 하여 예외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육전의 庶孽赴舉制限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무과나 잡과 응시까지도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서얼개념을 아주 넓혀 內外祖의 派系속에 조금이라도 庶系혼적이

19) 『經國大典』 卷3, 禮典, 諸科.

20) 『世祖實錄』 卷21-22, 世祖 6年 8月 庚午.

있으면 아무리 俊才요 탁월한 인재라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와같이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嫡庶之分을 엄격히 함으로써 각종과거를 嫡系 양반의 出仕路로서 독점하겠다는 것은 특권신분층을 극소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世祖는 하늘이 백성을 낳음에 있어 본래부터 귀천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여 관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물론 관료들의 반대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그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후일 서얼들이 일어나서 陞班운동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世祖는 오늘날 반역하여 노예가 된 자의 先系도 거슬러 올라가서 下賤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니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서얼금고의 법제화 경위에 대하여 明宗實錄 卷15, 明宗 8年 11月 甲辰에 상세한 기사가 실려 있다.²¹⁾ 이 기사를 분석하여 보면 첫째 서얼을 禁錮한 것은 太宗때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처음 문제된 것은 東西班 正職 취임에 관한 것이 아니고 三醫司에의 授職에 관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때는 兼司僕, 甲士등의 入屬조차 서얼들에게는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둘째 서얼들이 代言 徐選의 陳言으로 말미암아 顯職에 敍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나 의문이란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徐選의 건의전에는 三醫司의 職에도 서얼(천첩자)이 임용 될 수 없었던 것이며 오히려 徐選의 건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限品授職의 길이 열린 것이므로 서얼들이 徐選의 건의로 그것이 막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또 明宗 8年 10月 사헌부에서 啓하여 서얼금고에 관한 법전의 규정의 취지설명과 字句 해석을 하였다.²²⁾ 이것을 요약하면 첫째 庶는 良妾子를 말하고 孽은 賤妾子를 말한다는 것과 중국에서는 적첩의 분수만 엄격하였지 그 자손을 廢錮하여 쓰지 않은 바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高麗때도 마찬가지로 廢錮하지 않았으며 양첩자는 단지 臺諫만 안되고 천첩자인 登科者도 5품까지는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太宗 15년에 徐選의 陳言을 받아들여 서얼자손을 顯官에 임용하지 않는다는 법을 만들었고 世宗 15년에 黃喜등이 편찬한 경제육전에 이 법을 실었다는 것이다. 셋째 世祖 말년에 崔恒등이 편찬한 경국대전을 成宗 2年(1471)에 처음

21) 『明宗實錄』 卷15-51, 明宗 8年 11月 甲辰.

22) 『위의 책』 卷15-42, 明宗 8年 10月 戊子.

으로 반포하였는데 이것이 辛卯大典이며 그 禮典 諸科條에 이르기를 失行한 부녀자의 아들과 서얼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4年後에 改撰된 經國대전인 甲午大典(1474)에도 그와 같다는 것이다. 네째 위(失行婦女者)의 자로 미루어 보면 그 아래(庶孽)의 자손은 단지 子 및 孫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曾孫은 허통된다는 것이 명백하나, 그 12년 후에 改撰된 經國大典(乙巳大典) 諸科條에 이르기를 再嫁失行婦女의 子及孫과 서얼자손은 과거응시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위(再嫁失行女)의 子及孫으로 보아서 그 아래(서얼)의 자손은 子子孫孫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천첩자의 限品 敍用에 관한 法制沿革記事를 소급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한품서용법의 제정목적은 본래 士族의 婢妾者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벼슬길을 열어 주자는 데 있었다. 즉 太宗 14年 正月 己卯에 婢妾所產 限品贖身法을 정할 때 司宰監에서 議政府에 보고하기를,²³⁾ 우리 東方의 典章과 文物은 모두 中國을 본받은 것이나 오직 婚姻之禮만은 舊習에 좇아서 陽이 陰을 따르고 男子가 女家에 장가 가서 아들과 손자가 外家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本宗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여 母系가 賤하면 모두 천해진다는 것이다. 태조가 여러 官人의 自己 婢妾所產을 身良役賤으로 하여 司宰監 水軍에 입속시켰는데 勳舊之臣의 비첩소생을 尙衣院과 上林園에 예속시켜서 才識있는 자를 골라서 許通하여 限品の 직에 충당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한 것이다. 이리하여 2품 이상의 자기 천첩자를 영구히 양인됨을 허가하며 5품까지의 한품으로 임용한다는 왕명이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그 이듬해인 太宗 15年 3月 丙午의 實錄의 기사에 나타난 限品敍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즉 2품이상의 婢妾소생은 그 전년인 太宗 14年 正月에 5품을 한품으로 受職할 수 있게 되었는데, 3품 이하 婢妾소생은 그때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3품 소생은 限6품, 4품소생은 限7품, 5·6품 소생은 限8품, 7·8품 소생은 限9품, 9品·權務 소생은 限學生으로 정하여 限品자손으로 한다는 것이다.²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9품 소생의 천첩소생까지도 그 후일 양반 호칭으로 알려졌던 學生을 일컬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한품서용법은 한달 후인

23) 『太宗實錄』 卷27-1. 太宗 14年 正月 己卯.

24) 『위의 책』 卷29-12. 太宗 15年 3月 丙午.

太宗 15年 4月 丁亥에, 강원도 都觀察使 李安愚의 상소에 따라 議政府와 6曹에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²⁵⁾

(1) 2품 이상의 천첩소생은 5품에 한하고, 3품의 천첩소생은 6품에 한하며, 4품의 천첩소생은 7품에 한하는 등으로 차례로 蔭職을 除授한다는 것등은 그 전의 것과 같다.

(2) 또한, 그들은 같은 부류끼리 혼인하도록 하며, 양반과 혼인하지 못하게 한 것과 그들에게 잡직을 除授하여 서용하도록 하되 문무 양반관료와 같은 官爵을 받을 수는 없도록 한 것이다.

(3) 옛날부터 음흉하여 변란을 생기게 하는 자는 서열 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한 부정한 무리들에게 文武官을 제수하여 명분을 혼란시킬 것인가. 우리 동방은 옛부터 禮義之國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고 尊卑之等과 貴賤之分을 「天建地設」 하듯하여 그 차례(秩)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太宗은 下教하기를 천첩소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限品授職을 하며 또 朝班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잡직을 除授하는 것은 議政府와 六曹가 의논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太宗 15年 4月까지는 양첩자손에 관하여서는 한품서용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첩자손을 禁錮하게 된 것은 太宗 15年 6월에 右副代言 徐選등 6인이 진언하기를

「宗親及各品庶孽子孫 不任顯官職事 以別嫡庶之分」²⁶⁾

이라 하여 宗親과 各品の 서열자손은 顯官職事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 서열금고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품서용법 제정 이후에도 천첩자손의 등용문제는 계속 臺諫의 논박거리가 되었는데 世宗 10年 10月 丙申에 左司諫 金孝貞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여 班常의 身分混淆에 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즉 太宗 14년에 2품이상의 婢妾子가 「永許爲良」되어 5품限으로 受職하게 되었다는 것과 동왕 15년에 3품 이하 비첩 소생들도 각각 품계에 따라

25) 『위의 책』 卷29-23, 太宗 15年 4月 丁亥.

26) 『위의 책』 卷29-47, 太宗 15年 6月 庚寅.

단계별로 限品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2품 이상 천첩 소생으로서 隊長, 隊副를 授職한 者를 甲士로 取才하게 된 것, 또 3품 이하 천첩 소생 및 雜色인 補充軍 출신의 隊副·隊長인 者등 을 取才하여 限品敍用을 하게 된 것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양반자제와 함께 시험을 쳐서 禁衛之職에 充當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主奴간에 같은 관직에 올라 처음에는 비록 限品授職을 하더라도 끝내는 混淆 無別하게 될 것이며 尊卑秩序를 잃게 되고 명분이 문란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또한 관직을 받아 입신하게 되면 몇 년 안가서 양반家와 결혼하게 되어 小人(서얼)의 道는 자라나고 君子(嫡出士族)의 道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들(서얼)이 盛한 즉 이쪽(적계)이 微弱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²⁷⁾

이와 같은 臺諫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첩자손에 대한 限品授職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전에 限品の 제한이 없던 良妾子孫까지 한데 묶어 「宗親及各品庶孽子孫 不任顯官職事」라 하였으므로 천첩자손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향상된 면도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淸顯要職이 아닌 관직은 비록 限品の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양첩자손과 마찬가지로 천첩자손이 취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양첩자손은 고려이래 조선국초에 이르기까지 臺諫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위직에 올라가도 무방하였으나²⁸⁾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太宗 15年 6月 이후는 종친의 양첩자손까지 한품으로 묶이게 되었다. 물론 종친의 경우는 그 후 續大典 卷 1, 吏典 京官職條에서

「宗代未盡之前 元無嫡庶之異 其子孫 文科弘錄 武科宣薦 勿爲枳礙」²⁹⁾

라 하여 왕과 8촌 이내의 宗親은 적서를 따지지 않고 그 자손을 淸官에 임용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들의 가문內에 있어서의 嫡庶差待는 일반 사족가문內와 다를 바가 없었다.

27) 『世宗實錄』 卷42-4, 世宗 10年 10月 丙申.

28) 『明宗實錄』 卷15-42, 明宗 8年 10月 戊子.

29) 경국대전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예컨대 讓寧大君의 庶孫의 경우 문과급제하여 顯官에 나아간 사람이 많았으며, 그러한 사례가 축적되어 『續大典』 卷1, 吏典 京官職條에 위와 같은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족들의 관직취임에 있어서의 한품서용에 관한 경국대전의 규정은

「文武官 二品以上 良妾子孫 限正三品, 賤妾子孫 限正五品, 六品以上 良妾子孫 限正四品, 賤妾子孫 限正六品, 七品以下 至無職人 良妾子孫 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之賤妾子孫 限正八品」³⁰⁾

이라하여 아무리 高官의 양첩자손이라 할 지라도 법제상으로는 2품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柳子光의 경우와 같이 功勳 등으로 임금의 특별 명령이 있으면 1품官階에다 관직이 都摠官(正2品)까지 올랐던 경우도 있었다.³¹⁾ 그 후 16·7세기의 위정자들에 의한 서얼소통 논의를 거쳐 18·9세기 서얼 자신들의 대량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소통운동의 결과 正祖 丁酉年의 通擬節目에 의거 서얼들은 호조·형조·공조의 당상관인 參議등에 취임할 수 있었고³²⁾ 또한 19세기 전기인 純祖 癸未年에는 서얼소통 更定節目이 법제화 되어 서얼도 문과에 급제하면³³⁾ 2품 관직까지 취임할 수 있었다.³⁴⁾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는 서얼개념의 확대와 서얼 자손의 累增등으로 인한 양적 팽창에 바탕을 둔 서얼 집단의 역량증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서얼의 개념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욱 확대되어 단순히 외가의 흠결뿐만 아니라 외가의 외가 또 그 외가, 심지어 내외가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경우에도 처외가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淸要職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사료에 보이는 權景禧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내외친계 어느 쪽에도 전혀 庶類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 김씨의 외조부의 어머니 쪽이 良妾인듯 하다는 이유만으로 육조의 郎官 취임이 거부되고 있다. 成宗實錄 卷 117, 成宗 11年 5月 甲申에 의하면 大司憲 鄭佶 等 大司諫 金礎 等이 상소하기

30) 『經國大典』 卷1, 吏典 限品敍用.

31) 『成宗實錄』 卷77-17, 18 成宗 8年 閏2月 壬戌.

32) 『大典通編』 卷1, 吏典 限品敍用.

33) 영조때 納米許通之規가 폐지되어 서얼들도 생.진시와 문무과에 무제한으로 응시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다(지난날 이를 잘못 해석하여 서얼들에 대한 과거응시 금지가 강화된 것으로 인식한 학자도 있었다).

34) 『大典會通』 卷1, 吏典 限品敍用.

를 權景禧는 孽産인 河福生의 孫婿이므로 六曹郎官에 그를 임용하면 嫡庶之分이 문란하여 진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고위관료들이 논의하였는데 그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鄭昌孫議 : 權景禧의 妻가 河崙의 孽孫女(실은 河崙의 손자의 외손녀)임으로 臺省과 六曹에는 임용될 수 없으나 그 이외 관직에 서용함이 어떠하겠는가

(2) 沈滄議 : 權景禧는 그 자신은 아무 흠결이 없으나 육조낭관은 보통자리가 아니며 또 그는 서얼의 사위임으로 改差해야 한다.

(3) 尹弼商, 洪應, 姜希孟, 魚世恭議 : 權景禧는 서얼인 河福生의 친사위가 아니다.

(4) 李克培議 : 工曹는 政曹와 臺省에 비할 바가 아니고 권경희가 登科하여 仕路에 이미 통하고 있으며, 문제되고 있는 그의 부인 김씨도 문과급제후 寺正까지 오른 士族 金致運의 딸이며, 김치운의 부계나 모계 양쪽에 아무런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丈母인 高氏도 사족인 中樞 高得宗의 딸임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김씨의 父 김치운의 장인인 하복생도 軍資判事로서 河崙의 손자이고 그의 친계에는 아무런 흠결이 없다. 다만 하복생의 모 金氏가 하륜의 嫡子 玠의 良妻이라고 하나 사족인 監察 金晉의 嫡出女로서 玠의 사실상의 후처임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5) 金季昌, 蔡壽議 : 史翰과 臺諫, 政曹 등 이외에 임용함이 옳다.

(6) 李世佐, 成倪議 : 서얼자손 속에 사위는 포함되지 않고 김씨가 河玠의 후처이지만 臺諫, 政曹(이조·병조), 弘文館, 春秋館 이외에는 허통함이 어떻겠는가.

(7) 崔淑精, 金訥, 李昌臣, 成世明, 鄭誠謹, 鄭光世…… 議 : 景禧의 처외증조모가 감찰 김음의 딸이지만 아무 흠결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육조 이외에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

(8) 權倂, 安琛, 曹淑沂議 : 景禧 자신에게는 흠결이 없고 그 처외조 복생의 母가 비록 첩이란 논의가 있으나 본래 사족이었으므로 他的 양친첩의 예와는 다르다. 경희의 처가나 그 丈人 김치운의 처가 모두 累代 衣冠士族이었고 현재 경희 자신이 문과 갑과출신임으로 臺省, 政曹 이외는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성종은 이세좌 등의 의견에 따르고 있지만, 왕을 포함한 대다수의 고위 관료가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는 권경회의 처외가족 가계를 문제삼아서 臺諫, 政曹, 弘文館, 春秋館 등 청요직의 취임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사족들의 결혼은 서로가 잘 아는 아주 폐쇄적인 소수집단끼리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적인 윤리관 때문에 同宗은 물론이고 外族도 近族은 피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실속에서 제 모순만 누적되어 갔다. 그러나 내외족이 아무리 한미하더라도 庶類가 아닌 한 무방하였지만 이 때에도 대간에서는 일단 문제를 삼았던 것이다.³⁵⁾

또한 지방수령같은 중요한 자리도 淸職은 아니었으므로 許通된 서얼이 취임할 수 있기는 하였지만 극히 제한된 소수인에 대한 특례조치였고 이 때에도 臺諫에서는 「臣恐庶孽之徒效此蜂起矣」라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³⁶⁾ 그리고 전처와 사별 또는 이혼한 후 재취한 후처일 지라도 그 女의 신분이 서얼이면 후처로 인정받지 못하고 첩이 되었고, 그 아들도 서얼이 되어 이미 합격한 생원시에서의 榜目이 삭제되고 합격증(白牌)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³⁷⁾

16세기에 들어와서 사림정치가 활발하였을 때에도 외조모의 모가, 즉 외가의 외가의 집안 사정 때문에 본인의 서얼화 여부가 문제되기도 하였다. 中宗實錄 卷 2-15 中宗 2年 閏正月 庚戌에 의하면, 兼宣傳官 朴良은 朴永文의 후처 黃氏의 아들이며 황씨는 黃孝源의 첩인 이씨의 딸이므로 서얼의 외손이 동서반의 관직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사헌부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박영문은 상소를 올려 처 황씨의 外祖 李裕基는 世祖때 죄를 범하여 자녀가 연좌되었는데 그 때 황씨의 모 이씨가 외조부 鄭子順의 妾 朴氏집에서 양육되었다가 免放前에 황씨의 父인 황효원에게 시집가서 그 당시의 사헌부에서는 첩이라 하였으나 成宗이 御書로 「以妻論定」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獻納 鄭淮가 다시 이씨를 첩으로 강등 시켰으므로 황효원이 죄를 토하고 죽었다는 것이다. 그후 이씨는 그 억울함을 여러차례 陳訴하였지만 사헌부에서는 문서가 타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35) 『成宗實錄』 卷130-2, 成宗 12年 6月 丁未.

36) 『위의 책』 卷156-13, 成宗 14年 7月 庚子.

37) 『위의 책』 卷230-17, 成宗 20年 7月 壬午.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다가는 자기의 자식들이 모두 賤擊이 되고 말겠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에는 서얼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서까지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있으면 대간에서는 끝끝내 고집하여 庶類로 만들고 마는 것이었다.

그 다음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종친인 李塗가 徐居正의 庶子 徐福慶의 딸인 徐氏를 嫡妻로 맞이하여 아들 鑄를 낳았는데 서씨의 모 안씨는 사족인 生원 安有文의 적출녀였으며, 서씨 그 자신도 적출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鑄가 다만 위 서복경의 외손자 였다는 이유만으로 서얼로 취급되어 宗室인 副正의 嫡子가 받을 수 있는 「守」의 爵位를 받지 못하고 「副守」를 받았던 것이다.³⁸⁾ 이에 대하여 成宗은 成希顔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柳順汀의 의견에 따라 적자의 禮로 授職하였지만 이와같이 국왕과 「宗代가 未盡한 宗親」조차도 그 외가의 외가까지 소급하여 庶系유무를 따져서 문제삼았던 것이다.

서얼들이 16세기 이후 西班의 軍職과 전문기술직에 많이 진출하였으나 15세기 후기만 하여도 그것이 매우 억제되고 있었다. 成宗實錄 卷 29-9 成宗 4年 4月 辛巳 壬午에 妾子 安繼孫이 서얼임을 속이고 萬戶職에 취임하고 있음이 적발되어 武藝試才時에 薦舉人과 함께 처벌된다.

그 다음 向化人 崔甫老의 妓妾子 崔適이 보충대에 있을 때 武才가 뛰어났으므로 무과를 거쳐 吉州牧使와 衛將 知中樞府事를 역임한 바 있는데 그의 아들 致崇이 무과에 응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훈련원에서는 그가 서얼임으로 赴舉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崔適이 上言하여 호소하였는데 국왕의 下問에 의거 병조에서는 啓하기를 최적이 世祖 때 허통되었으나 그 아들에 대하여는 허통지명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傳敎하기를 그 아버지가 이미 허통되었다면 그 자식 역시 허통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³⁹⁾ 여기 대하여 사간원 正言 成希曾이 최적의 허통을 반대하였으므로 국왕은 여러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尹弼商만이 그의 허통을 찬성하였고 鄭昌孫, 韓明澮, 沈澮, 洪應, 李克培, 盧思愼, 尹壕 등 대부분의 대신들은 최적이 서자로서 世祖의 큰 은혜를 입어서 무과에 응시할 수 있어 位階가 이품까지 이르러 은혜가 지나칠 정도

38) 『中宗實錄』 卷14-63, 中宗 6年 12月 乙巳.

39) 『成宗實錄』 卷194-4, 成宗 17年 8月 庚辰

로 무거웠는데 어찌 그 아들의 赴試까지 허용할 수 있겠는가 라하고 사간원의 啓대로 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은 다수설에 따라 「其勿許赴」의 傳敎를 내렸다.⁴⁰⁾

이와같이 서얼들의 무과 응시까지도 15세기 후기 경에는 매우 어려웠으며 국왕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비록 그것이 허통되어도 그 효과는 당대에 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雜科 응시는 어떠한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成宗實錄 卷 139, 成宗 13年 3月 巳卯에 禮曹에서 啓하기를 司譯院, 觀象監, 典醫監 등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천첩자의 入屬을 허용함으로써 그 관료들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고 또 위 3官司는 정3품 衙門으로 「東班之列」에 들어감으로 양천이 서로 섞이는 것이 부당하니 이제부터 천첩자를 제외하고 양첩자만을 허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盧思愼과 李克培는 「經國大典」 限品敍用條 註에 2품이상 妾子면 양천을 막론하고 司譯院, 觀象監, 典醫監, 內需司, 惠民署, 算學, 律學 등에 재능에 따라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서 볼 것 같으면 2품이상의 첩자손은 양천을 막론하고 입속을 허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뒷 사람이 옛법을 지키지 않고 일시적인 소견으로 가볍게 선왕의 법을 고치면 어떻게 하는가, 또 內需司 惠民署 圖書署 律學 算學 등과 司譯院 觀象監 典醫監 등의 관제는 正職으로 竝列되어 있는데 오로지 세 관사에만 다르게 하면 내수사, 혜민서 등에서 어찌 섭섭한 마음이 없겠는가, 역시 이를 이유로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예조의 보고대로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成宗은 盧思愼 등의 건의대로 시행하라고 하였으나 예조의 관료들은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첩자를 諸司에 許屬하는데 있어 양천을 가리지 않고 첩자손이라고 범칭하였지만 천첩자손은 算學과 內需司에 소속시키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 典醫監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司譯院은 외국어를 통역하며 觀象監은 천문을 살피고 律學은 법률을 다루는 중요한 곳이므로 東班에 竝列하고 그 관료들을 선왕이 간혹 顯官으로 뽑아 쓰기도 하였다. 따라서 2품이상 천첩자가 아무런 차별을 받지않고 入屬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거기 있는 단 관원들이 치욕스럽게 생각하여 스스로 그 일을 천하게 여겨서 專心 鍊業으로 정교하고 숙련되는 지경에 이르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장래

40) 『위의 책』 卷194-4, 成宗 17年 8月 壬午.

가 염려되니 위 세 관사에는 양첩자를 許屬하여 일을 돈독히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국왕은 이에 따랐다.⁴¹⁾

이와 같이 전문기술직은 대단히 중요한 직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족들이 대개 그러한 직무를 기피하였다고 생각되며 일부 전문기술직에 참여하였던 사족들조차 서얼이 그러한 직역에 참여하자 반발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혹은 스스로 그 직무를 서얼들과 같이 수행하는 천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기성 직업인들은 그 직을 떠났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하대로 내려올수록 그러한 전문기술직에는 서얼들로 충당되어 이른바 전문기술직으로서의 중인직역이 성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서얼들도 전문기술직을 천대받는 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살펴보면 전문직 중에서도 천문학은 그 임무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精通者를 淸要職까지 임용하여야 할 것임으로 서얼들이 入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⁴²⁾ 서얼 자손들의 監과응시도 15세기말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듯 하였다. 成宗實錄에 의하면 成宗 24年 閏 5月 庚申에 李拱의 妻子 李稱壽가 雜科赴舉를 청하는 上言을 하여 정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는 왕명이 있었는데 여기 대하여 대신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尹弼商, 盧思愼, 魚世謙, 韓致亨 등은 그 雜科赴舉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愼承善, 鄭文炯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왕은 다수의견에 따라 그것을 허용하였다.⁴³⁾ 그러나 서얼들의 雜科許赴문제는 그 후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燕山君日記 卷 26 연산군 3年 8月 갑술에 있는 기사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1) 尹弼商, 愼承善, 韓致亨, 成俊, 柳輕, 朴安性, 申浚, 金悌臣, 趙益貞, 成世明 등의 의견은 舊大典에서는 서얼자손이 각종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등재되어 있으므로 赴舉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魚世謙, 李克墩, 尹孝孫, 李世佐, 安琛, 金敬祖, 朴崇質, 李陸, 李克圭 등의 의견은 서얼자손이 문무과와 생원 진사試에 赴舉할 수 없다는 것은 正科와 雜

41) 『위의 책』 卷139, 成宗 13年 3月 己卯.

42) 『위의 책』 卷278-40, 成宗 24年 閏5月 庚申.

43) 『燕山君日記』 卷25-3, 燕山君 3年 7月 辛丑.

44) 『위의 책』 卷26-8, 燕山君 3年 8月 甲戌.

科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시 舊 法典에 명시하여 잡류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醫官이 서얼과 더불어 같이 과거보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문무과 출신자와 맞먹자는 것인데 이는 진실로 尊卑貴賤이 「混爲一途」가 되는 것이다. 醫官중에서 과거진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主簿이상의 職을 줄 수 없으므로 비록 서얼이 아닐지라도 이 법이 적용된다. 2품 이상 양첩자는 3품에 한하고 천첩자는 5품에 한한다는 한품서용법을 가변이 고칠 수가 없다. 어찌 그들의 赴試를 불허하며 「美材精術者」를 오랫동안 參外官職에 둘 수 있는가. 전일에 이미 許赴하였는데 법을 꼭해하여 다시 분규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3) 盧公弼, 許琛, 李淑城 등의 의견은 옛날부터 醫工은 賤하여 士類와 어울릴 수가 없었다. 어찌 잡과를 문무양과와 비교하여 하자가 있는 자라고 하여 모두를 試取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辛卯大典에서 「庶孽子孫等勿許赴」라고만 하여 雜科까지 赴舉를 금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甲午大典에서 「文科生員進士試」를 금한다고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하물며 이미 서얼을 醫司 등에 속하게 하였는데 어찌 그 科擧를 금지하였을 리가 있는가 라고 하였다.

(4) 朴健, 李季男, 鄭錫堅의 의견은 醫員 申輔宗과 李繼山 등이 일찌기 서얼로서 醫司에 입속하여 의과에 부거하지 못한 채 成宗조에 이르렀으나 그 때에는 잡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오늘날의 大典상의 문맥을 볼 것 같으면 흠결이 있는 자가 잡과에 부거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 법전 편찬을 담당하였던 관료에게 물어본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였다.

국왕은 결국 盧公弼 등의 의견에 따라 서얼들에게 잡과응시를 허용하게 되지 만, 이미 서얼들을 醫·譯·律 기타 전문 기술직에 종사시켜 놓고서도 잡과응시 허용에는 매우 인색하여서 15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잡과부거를 허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얼이 아닌 자들은 서얼들과 같이 雜科榜目에 이름이 실리게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그 응시를 기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잡과는 서얼들의 科擧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中宗 4年 4月 典醫監 主簿 申希浩 등이 서얼로서 잡과에 응시하고자 陳疏하여 赴舉가 허락되었

다.45) 또 中宗 25年 12月 正言 蔡無斃가 「今者賤孽之人多赴」라 한 것은 문과와 생원시보다는 잡과(예외로 무과)응시를 주로 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잡과 합격만으로는 승반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과나 잡과에 합격한 서얼들 중 豪富者이거나 세력자들은 官爵을 구하여 신분질서가 동요될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양반들은 더욱 심하게 서얼들을 구박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때 領事 鄭光弼도 「근래 기강이 해이하여 內禁衛 같은 곳에 서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萬戶나 僉使도 되고 있으므로 그 분수가 넘음이 이와 같이 심하다」고 하였다.46) 또 侍讀官 朴洪鱗은 근자에 禮敎가 不明하여 인심이 옛과 같지 않고 「奸名犯分者」가 역시 많다고 한 후 「無賴庶孽之徒 出入場屋 得中司馬有之」47)라 하여 잡과와 무과의 冒赴뿐 아니라 생원진사 시험에서의 冒赴者와 合格者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과나 생원, 진사試에서의 冒赴者가 있었다면 다음 사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와 그 父의 이름을 바꾸어도 곧 탄로되어 「削去治罪」된 경우가 많았다. 16세기의 역사적인 조건하에서는 문과와 생원시의 응시자의 자격심사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明宗實錄에 의하면 明宗 3年 10月 戊申에 兩司의 上啓에 따라, 班城尉의 妾孫인 應周가 文祐라 개명하고 그 父의 이름도 바꾸어 문과에 급제한 후 적발되어 削去와 處罰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처럼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서얼까지도 科擧에 參榜하다가 적발되고 또한 처벌되었던 것이다.48)

이와 같이 16세기의 서얼들은 문무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잡과를 통하여 東班職으로 진출하거나 甲士와 兼司僕, 內禁衛, 忠佐衛, 破敵衛, 羽林衛 등에 입속하여 武班말직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 成宗實錄에 의하면 成宗 23年 4月 乙巳에 兵曹에서 啓하여 대소관인의 첩자중 武才가 있는 자는 甲士 이외에 소속될 곳이 없으므로 별도로 1衛를 설치하여 遞兒職을 줄 것을 건의 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49)

(1) 武才卓異者를 兼司僕과 같이 50명으로 정하고 3番으로 나누어, 彭排·

45) 『中宗實錄』 卷8-17, 中宗 4年 4月 壬戌.

46) 『위의 책』 卷70-5, 中宗 25年 12月 乙丑.

47) 『위의 책』 上同 年月 丁卯.

48) 『明宗實錄』 卷8-47, 明宗 3年 10月 戊申.

49) 『成宗實錄』 卷264-6, 成宗 23年 4月 乙巳.

隊卒에서 임명되지 아니한 遞兒를 취하여 每都目마다 副護軍1, 副司直1, 副司果3, 副司正4, 副司猛5, 副司勇10으로 하고 임시로 祿科를 설치하여 1年 4都目時에 교대로 授職한다.

(2) 取材·鍊才는 內禁衛의 例로한다.

(3) 加資는 兼司僕의 例로 시행하되 雜仕와 鍊才仕도 같이 계산하며, 仕日의 다소로서 除授하되 限品을 넘지 말도록 한다.

(4) 上項의 權設遞兒는 忠佐衛에 소속한다. 入直時에는 사용원에서 供饋한다.

(5) 兼司僕將이 兼領케 한다.

이상의 事案을 국왕은 領敦寧 以上の 朝臣會議에서 확정토록 명하였다. 그래서 열린 회의에서 沈滄·尹弼商·盧思愼·尹塚 등은 병조의 안에 동의 하였으나 오직 李克培만은 이의를 제기하여 상기 항목중 權設遞兒는 忠佐衛에 속하게 하고 그 將은 五衛에 관계치 않는 兼司僕將이 兼領 한다는 것은 법전에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별도로 「衛」를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成宗이 이극배의 청에 따라

「傳于兵曹曰 設羽林衛 以有武才妾子屬之 置將三員」⁵⁰⁾

이라 하여 드디어 독립부대로서 羽林衛가 신설되었고 그 將으로 3명을 두었다. 이렇게 설치된 우림위는 모두가 서열중 무예가 능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였으며 정병으로 조직되었는데 연산군때 혁파되었다가 中宗때에 다시 설치되었다.⁵¹⁾

겸사복은 본래 사족의 자제가 입속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첩자가 입속하였다. 中宗實錄 卷2-36 中宗2年 10月 己亥에, 사대부의 첩자를 겸사복에 입속시키지 말고 우림위에 입속 시키자고 한 趙舜과 金토의 주장에 대하여 朴元宗도 祖宗朝에 妾子와 才人 白丁 등 武才가 있는 자를 모두 겸사복에 입속시킨 적이 있지만 지금은 우림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첩자는 겸사복으로 입속 시키지 말도록 건의하였다. 中宗도 사족과 첩자가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

50) 『위의 책』 卷264-7, 成宗 23年 4月 戊申.

51) 崔孝弼, 「朝鮮時代 羽林衛의 성립과 그 편제」, 『동국사학』 15.6合集 p.175.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中宗 38年의 大典後續錄에 의하면,

「兼司僕額內庶孽9人……庶孽則羽林衛中武才卓異者陞差」⁵²⁾

라 하여 서얼들이 계속 검사복에 입속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그 다음 定虜衛에 관하여 中宗實錄 卷 63-65, 中宗 23年 10月 乙丑에, 영의정 鄭光弼과 柳順汀이 이를 설립하였다는 것인데 서얼과 평민중 재능있는 자가 甲士가 될 수 없어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으므로 그 인재를 버리기 아까워서 定虜衛를 별도로 만든 것이라 하였다. 그 후 高荊山이 兵曹判書로 있을 때 서얼이 定虜衛가 될 수 없게 하였으므로 甲士가 되어야 할 자가 모두 定虜衛로 되었다. 그리하여 정로위의 인원수는 많아졌으나 모두 奉足이 없었다. 따라서 서얼이 모두 정로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정광필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成宗은 서얼이 정로위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든 것은 기억할 수 없지만 그 후 무과에 赴擧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로위에 入屬한 연후에 응시가 허용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된 것이라 하였다. 特進官 尹希仁은 처음 정로위를 거쳐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얼들이 입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은 비록 閑良일지라도 모두 부거할 수 있으니 이 법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16세기의 서얼신분은 부계가 당당한 사족이면서 양인내지 천민과도 같이 취급되었다. 그중 왕실의 후예거나 특별한 훈공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문무관이 될 수 없었으며, 잘해야 잡과를 통하여 전문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諸衛나 甲士, 兼司僕에 入屬하여 전투기술자로서 유사시에 목숨을 버릴 것이 강요되었다. 그 밖의 대다수는 갖은 학대와 멸시속에서 불우한 나날을 살아왔음을 그들이 남긴 서얼의 역사인 葵史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2. 庶族數의 增加와 許通論議

1) 庶子孫의 累增現狀

梁叔權의 稗官雜記에 의하면, 조선중기의 士人들이 보통 2, 3명의 첩을 두고

52) 『大典後續錄』 卷4, 兵典, 雜令.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⁵³⁾ 이는 禮記에서 「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이라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조선말기 黃玿의 梅泉野錄에서는 正妻가 改嫁禁止를 준수한 반면 妾室은 守節의무감이 박약하여 남편이 죽을 때마다 거듭 개가하여⁵⁴⁾ 결국 많은 서출자를 생산할 수 밖에 없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賤婦로서 寡居하는 자는 예외였을 것이다.

어쨌든 조선시대의 사족사회에 있어서 축첩행위가 보편화 되어 있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는 在朝官僚는 물론이고 在野士族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당시의 처첩의 분간에 관하여, 聘則爲妻 奔則爲妾⁵⁵⁾이라 하여 禮聘으로娶하면 처가 되고 당사자끼리 野合하면 첩이 된다고 하였지만 조선후기의 관행상으로는 정처가 사망한 후 일정한 禮聘節次로 취한 후처일지라도 그 신분이 사족이 아닌 여자이면 첩이 될 수 밖에 없었다.⁵⁶⁾ 이러한 사실은 茶山 丁若鏞의 庶母 金氏 墓地銘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다산의 母婦人이 죽은 이듬해 庶母 黃氏가 처녀의 몸으로 다산의 부친의 첩이 되었고 庶母 金氏 또한 황씨 사망후에 역시 처녀의 몸으로 시집왔으나 사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이 되었던 것이다.⁵⁷⁾ 더구나 김씨는 비록 譯官이었고 正3品衙門의 長이며 또한 堂上官인 사람의 딸이었는데도 증인이기 때문에 첩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조선후기 서얼(자손포함)의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 正祖實錄에 의하면 慶尙, 公忠, 全羅의 삼도 서얼유생 黃景憲 등 3,272인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臣等以半一國蒼生」⁵⁸⁾이라 하였고 純祖實錄에서는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의 庶流 유생 金熙鏞 등 9,996인이 상소하여 母族만을 중시함은 오랑

53) 『大東野乘』 卷4, 稗官雜記 3.

54) 『梅泉野錄』 黃玿전집,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8 p.62.

55) 『成宗實錄』 卷69-10, 成宗 7年 7月 庚申(杏下述에도 같은 말이 보인다).

56) 朝鮮總督府中樞院編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p.83에 「양첩을 취하는 경우에는 혼인식으로 볼 수 있는 간략한 예식을 행한다」(1910, 平壤地裁新義州支部裁判長照會 1911, 取調局長官回答)라 하여 양첩에게도 예빙절차를 취하는 것이 19세기와 20세기의 관습이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57) 『丁茶山全集』 上, (앞의 책 1960, 영인본) 1집 16卷 -35 p.342 시문집, 묘지명

58) 『正祖實錄』 卷6, 正祖 2年 8月 戊午

개 풍속이라 하고

「英廟朝 教以庶孽之人 居國之半 先大王 又若曰 偏小之中 又除庶類則已失一國之半」⁵⁹⁾

이라 하여, 영조, 정조 모두가 전국민의 반이 서얼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私撰사료에도 나타나 있는데 葵史에

「肅宗 二十一年…… 庶孽之數 日益蕃行 殆至於半一國」⁶⁰⁾

이라 하였으며, 杏下述에는

「英廟朝教以庶孽之人居國之半」⁶¹⁾

이라 하였고, 通塞問答에서는

「三百餘年以來 庶孽人數日盛 幾之半國」⁶²⁾

이라 하였으며 燕岩集에

「支屬繁衍幾至半國」⁶³⁾

이라 하였다. 특히 19세기 후기에 이르면 高宗實錄에

「數愈繁衍 通計一國舉將過半」⁶⁴⁾

59) 『純祖實錄』 卷26, 純祖 23年 7月 辛卯.

60) 「葵史」, 『朝鮮庶孽關係資料集』 (여강출판사 1985, 영인본) p.43

61) 「杏下述」, 『위의 책』 pp.380~381 p.366에서는 「金熙鏞……自稱以 六道孽儒之首 通文收財……」라 하였고 그 上段에 「西北兩道庶孽亦不齒之可笑」라 하였다.

62) 「通塞問答」, 『앞의 책』 p.340.

63) 『燕岩集』 (경인문화사, 영인본) 1982, 卷3 pp.68~72.

64) 『高宗實錄』, 高宗 14年 4月 6日: 『承政院日記』, 高宗 14年 4月 6日.

이라 하여 전인구의 반이 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물론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18, 9세기 조선의 서얼 수가 실제 얼마였을까, 이러한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흔히 족보의 사료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19세기 이전의 족보에 관한 한 놀랄 정도로 정확성을 띠고 있음은 이미 선학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고⁶⁵⁾ 필자도 몇 가지 舊譜를 조사한 바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의적인 위조나 개찬 등은 1910년대 간행본 이후에 관한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매우 정확하였음을 검증할 수가 있다.⁶⁶⁾

嫡庶표시가 있는 19세기 이전의 여러 집 족보를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17세기 嫡系 官人들의 자손만으로는 18세기 玄孫代에 嫡庶가 반반씩이 된다는 계산이 되나, 조선전기 및 중기의 사족가문 중 嫡派가 단절되어 庶孫 뿐인 가문의 자손을 가산하면, 결국 18세기 全士族의 庶孫數는 嫡孫數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것이 된다. 더구나 18세기의 적손에게도 같은 논리로 19세기에 이르면 그 자손의 반수에 해당하는 서얼이 새로 태어남으로 서손은 累增하고 적손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체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사료에 나타난 庶孽人數 幾至半國이란 표현은 戶數를 기준으로 한다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적분석을 통한 신분별 호구통계에 나타난 19세기 幼學(양반) 호수 65%⁶⁷⁾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虛數가 아니며 그것은 일부 庶자손의 陞班化와 적서자손 수의 양적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조선중기와 후기의 사족들의 적자와 서자의 비율이 어떠한가를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하여 여러 문집류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龔岩先生文集 續集에

65) 宋俊浩 「한국에 있어서의 家系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한국사회사연구』 (앞의 책) pp.41~46

66) 필자가 검토한 바 있는 족보중 17세기 중기, 18세기 전기, 19세기 전기, 19세기 중기 간행분을 서로 대조한 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나 1910년 간행분부터는 구보에 있던 적서표시를 대개 없앤 반면, 없던 벼슬이 추가되는 등 신빙성이 적었다.

67) 鄭奭鍾,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1983) pp.247~249. 기타.

의하면 李賢輔는 嫡子 5인 庶子 2인을 두었고⁶⁸⁾ 孤山先生遺稿에는 尹善道가 嫡子 3인 庶子 2인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따라서 그들은 적자족이 많았다. 그러나 花潭集에 의하면 徐敬德은 嫡子 1인 庶子 2인⁷⁰⁾ 南冥集에 의하면 曹植은 嫡子 1인 庶子 3인⁷¹⁾ 俛仰先生文集에 의하면 宋純은 嫡子 2인 庶子 6인⁷²⁾ 그 밖에 李必行은 嫡子 2인 庶子 3인⁷³⁾ 등으로 서자가 많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嫡庶 同數일 것이다.⁷⁴⁾

그런데 士族의 庶孽女는 대개 사족의 첩으로 시집간 관행 때문에⁷⁵⁾ 서얼자녀의 확대재생산에 이바지 하였고 더구나 친척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절의무가 없었으므로 서얼자손을 곳곳에서 출산하였다. 한편 조선후기의 士人들 가운데서는 적계혈손이 단절되어 서자를 두고도 姪行인 친척중에서 양자를 삼아서 제사 및 재산을 상속시킨 가문이 많아졌다.⁷⁶⁾ 여기서 각 士人의 친생자인 서자손과 비친생자(타인)인 적계 양자의 후손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갈등의 심화는 변화의 전조가 되었고 양적 축적은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면 저명인사 중 어떤 사람이 서자손이었는가, 葵史賢人錄에 60

68) 『李朝名賢集』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1, 영인본) pp.97~102 및 pp.57~58(龔岩先生文集續集, 卷3 및 문집 卷4).

69) 『위의 책』 pp.851~852(孤山先生遺稿附錄, 神道碑銘).

70) 『李朝初期名賢集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1 영인본 p.223 및 229 (花潭集 卷3-13 및 卷3-25)

71) 『위의 책』, pp.323~328(南冥集, 부록 편년).

72) 『李朝名賢集』3, 『앞의 책』 p.219(俛仰先生文集 卷5, 부록).

73) 『위의 책』 p.758(孤山先生遺稿 卷5 下, 碑銘 通訓大夫 通禮院 相禮 李公墓碑銘 竝序).

74) 慶州安氏 족보(1739, 기미보) 元卷에 의하면 生員安士傑이 嫡庶子 각 2명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예가 보통일 것이다.

75) 具玩會, 「조선중엽 士族 孽子女의 속량과 혼인」, 『경북사학』 19, 20합집 1986 pp.27~31.

76) 『조선학보』 34집, 1965.1 권말 부록에 朴文秀는 적자 1명 서자 2명으로 되어 있으나, 萬性大同譜 上 p.462에 의하면 적자 1명은 系子였다. 또 『敬亭集』 부록, 行狀記에 의하면 敬亭 李民旼의 子 李廷機(충주목사)에게는 서자 2명이 있으나 系子로서 姪子를 立後하였다. 고종때 이조판서였던 李鎬俊은 서자 李允用이 있으나 系子 李完用으로 立後하는 등 각 씨족세보에 나타난 사례가 매우 많았다.

여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이외에 18세기 후기의 실학자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등이 서얼이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며 그들이 주자학적 구봉건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에 눈을 떠서 서얼들의 遠孫인 中人들(醫, 譯, 象, 律 등 전문인)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19세기에 이르면 李範普, 金嘉鎭, 閔致憲, 閔商鎬, 閔泳綺, 李充用, 尹雄烈, 安駟壽 등 親서얼자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서손들이 堂上顯官과 堂下清要職을 차지하였다.⁷⁷⁾ 또한 서얼중에서는 연려실기술의 저자 이금익과 해동역사의 저자 한치윤 등과 같이 사학사상 큰 업적을 남긴 인물도 있으며⁷⁸⁾ 庶後孫중에는 이항로와 같이 주자학에 깊이 몰두하여 한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어 존경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⁷⁹⁾

2) 16·17世紀 庶族에 對한 官職許通 論議와 그 成果

무오사화 때(1498) 피해를 입은 사람세력들이 서얼들에 대한 禁錮를 강화하고자 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조광조는 사람과의 영도자이면서 동료들과는 달리 「국가의 충성도가 어찌 嫡庶之間에 다를 수 있겠는가」라 하고 「조정에서 사람을 쓰고 버림이 그렇게 편협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⁸⁰⁾ 그러나 서얼소통을 강력히 주장한 쪽은 역시 사람과보다는 重臣과 戚臣들이었는데 明宗 8年 10月 서얼소통 찬반토론 때의 찬성자들은 領議政 沈連源·左議政 尙震·議政 尹漑·左贊成 尹元衡·禮曹判書 鄭士龍·兵曹判書 李浚慶·工曹判書 李多珪·知中樞府事 朴守良·戶曹參判 權纘·吏曹參判 沈通源·刑曹參判 蔡世英·工曹參判 金益壽·同知中樞府事 閔應瑞·護軍 林意齡·吏曹參判 閔箕·兵曹參知 權徹 등 훈구세력들이었다.

77) 黃玿 『梅泉野錄』 卷1 上 pp.91~94.

78) 前問恭作 「庶孽考」, 『앞의 책』 p.90.

79) 碧珍李氏世譜, 肅宗庚寅譜(1710)까지는 華西의 6代祖가 庶로 되어 있었으나 1860년대 宗中 결의로 소급하여 庶字를 빼버리기로 하여 1865 高宗甲子譜 부터는 嫡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서자손중에서 큰 인물이 나면 그 덕이 조상까지 미쳐서 以庶爲嫡이 되었던 것이다.

80) 「葵史」, 『앞의 책』 pp.8~9 「我國人物本少 而又有庶孽分別之法, 人臣願忠之心, 豈有間於嫡庶, 而朝廷用舍如是偏隘 臣功痛惜也 庶孽中不無可用之人」.

이들이 주장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81)

- (1) 禮典 諸科條에 서얼자손이 문무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서얼중에는 娼女와 婢女의 소생자가 많은 까닭에 여러 士類들과 겨룰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喪妻한 후 再娶妻하지 않거나 혹은 正妻가 살아 있다고 하여도 無子하여 양가의 처녀를 얻어 첩을 삼아 낳은 자식은 창녀와 비녀의 소생자에 비할 바가 아니다.
- (2) 사람의 재능유무와 資品の 粹駁여부는 所生處의 貴賤에 달린 것이 아니니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를 서얼이라 하여 버리고 쓰지 않는다면 이 어찌 王者가 사람을 취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도리가 될 수 있는가.
- (3) 禮曹로 하여금 節目을 상세히 만들게 하여 大小官人이 양가女와 사대부의 孽女를 취하여 첩으로 삼은 자의 소생자손 및 친첩자로서 贖身하여 從良된 후 양녀를 취하여 처로 삼은 자가 낳은 자손들에 대하여는 문무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것을 허용하여 벼슬길을 열어 주되 淸顯職과 重職은 주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右贊成 申光漢, 判敦寧府事 金光準, 吏曹判書 安珪, 左參贊 任權, 右參贊 申瑛, 戶曹判書 趙士秀, 知中樞府事 李薇, 張彦良, 刑曹判書 李萇, 漢城府判尹 沈光彦, 兵曹參判 丁應斗, 禮曹參判 元繼儉, 漢城府左尹 金明胤, 同知中樞府事 周世鵬, 尹倓, 李夢麟, 方孝智, 兵曹參議 李世璋, 刑曹參議 李潤慶, 工曹參議 金弘胤, 大司成 任說, 漢城府右尹 李光軾, 兵曹參議 元混, 僉知中樞府事 慶渾, 上護軍 朴公亮, 判決事 許伯琦, 戶曹參議 安璋, 弘文館副提學 李鐸, 直提學 朴永俊, 典翰 李英賢, 應教 李士弼, 副應教 沈銓, 校理 李勣, 副校理 申汝棕, 修撰 尹毅中, 副修撰 鄭惕, 正字 金繼輝, 朴啓賢 등 일부 중신과 많은 수의 사림과 관료들이 서얼소통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반대 의견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82)

81) 『明宗實錄』卷15-36, 明宗 8年 10月 庚辰.

82) 『위의 책』卷15-37, 明宗 8年 10月 庚辰.

- (1) 선왕의 법은 후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나라와 중국은 疆理와 風俗이 다르고 법률 또한 매우 달라 적서지분을 세워 尊卑의 등급을 엄격히 하였다.
- (2) 적서지분과 귀천지분 등은 天經과 地義 이므로 私意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선왕이 입법하여 서얼자손은 문무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함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서류를 蔭敍로 임용할 때에도 상한선을 두어 限品之制가 법전에 실리게 되었다.
- (3) 이제 가벼이 구법을 고쳐서 서얼자손으로 하여금 문무생원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분이 문란하여지고 서얼들이 적출자를 능멸하여 천한 자가 귀한 자를 해칠까 두렵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세기 중엽의 조선 조정에서는 서얼허통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되었는데 이러한 찬반 양론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이었던 퇴계 이황은 서얼허통의 원칙에는 찬성하였으나 國俗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는 것과 적서의 명분 및 귀천의 등급을 허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실제상 그들을 허통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특히 퇴계는 그 당시의 현실이 서얼중 재능있는 자가 드물고 무뢰배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權臣들이 「자신들의 妾子를 許通仕路하고자」한 私心을 은근히 공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그 당시 유배중이었던 이언적은 서얼을 허통하여 인재를 廣用하는 것은 좋으나 권신이 挾私하여 그 법을 마련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이황도 대체로 이언적과 같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하겠다.⁸³⁾

이와 같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서얼금고가 비록 祖宗朝의 成法이나 국가가 인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이를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대개 3公이 의논한 대로 良妾子가 良妻를 취하였을 때에는 그 孫子代에, 또 賤妾子가 良妻를 취했을 때에는 그 曾孫代에 이르면 허통하되 顯職에는 敍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⁴⁾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明宗實錄 편찬 당시의 史臣은 다음과 같이 혹평하고

83) 『위의 책』 卷15-38, 明宗 8年 10月 庚辰.

84) 위와 같음.

있다.

立賢無方은 古昔의 用人之美意이나, 正名定分은 또한 萬世不易의 常經이다. 비록 서얼을 허통하더라도 반드시 賢材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명분을 한 번 문란시키면 다시는 귀천의 판별을 할 수 없다. 우리 나라가 조종조로 부터 지금까지 백년 동안 가버이 법을 고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어서인데 이제 한두 權臣이 邪意를 首唱하고 아첨배들이 附會하여 成法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會議日에 조정신하의 태반이 그것을 반대하였으나 陰譏, 邪佞, 浮誕, 暗弱한 자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성사시키니 有識之士는 누구나 애통해 하지 않겠는가. 서얼허통을 주장하고 사주한 자는 尹元衡 黨奸이며 唱議者는 尹春年이었다. 沈連源 등은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大義로서 萬世之經을 扶植하지 못하고 윤원형의 규제를 받아 구차하게 그 의론에 찬동하였으니……85)

이와 같이 서얼허통은 仕路에 貴賤이 서로 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봉건적 신분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많은 양반관료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권신들의 私情때문에 만세불변이어야 할 명분(正位와 定等)을 문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대부들의 공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론은 사림계의 저변에 깔려 있어서 결국 윤원형 일당의 집권대신들을 權奸이라 매도하고, 그들을 정계에서 몰아내는데 있어 하나의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일부 논자는 양첩자와 천첩자의 구분도 그리 쉽지 않다고 하였다. 즉 公私賤女가 從良되어 소위 良妾이 되었을 때 從良前에 임신한 것인지 그 후에 임신한 것인지 불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86). 따라서 明宗 21년에 庶類들의 陳疏로 말미암아 양첩의 孫子代부터 문무과와 생진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가 곧 이를 폐지한 것도87)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85) 위와 같음.

86) 『明宗實錄』卷16-5. 6. 明宗 9年 正月 庚申.

그 후 宣祖 초년에 이르러 서얼들이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葵史에 의하면, 申蕡 등 1600여인의 서얼이 上章하였는데, 그들의 집단적인 호소문을 보고 宣祖가 감동하여 儒者들이 賢人으로 숭앙하는 微子와 子思도 서자 서손이란 것과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함에 결가지 여부를 가릴 것이 없듯이 人臣이 충성함에 어찌 반드시 正嫡만이겠는가라고 하여⁸⁸⁾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宣祖가 이와 같이 서얼들을 동정하게 된 것은 서얼금고로 말미암아 2세기 동안 축적된 제모순의 해소를 위하여 또한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서얼을 포용해야만 하였겠지만 한편으로 宣祖 자신이 中宗의 서손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明宗 이전의 모든 조선국왕은 적자적손이었는데 반하여 선조 이후의 국왕은 거의 서자 혹은 서손이었다. 비록 「國族無嫡庶」라 하였지만 조선후기의 대부분의 왕들이 서얼허통에 긍정적이었음은 자신들의 입장과 전혀 무관하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16세기말경인 宣祖 16년에 이르면 울곡 李珣의 건의에 따라 庶類들이 納粟 赴舉하여 벼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⁸⁹⁾ 김장생이 撰한 栗谷全書의 行狀 및 年譜에 의하면, 울곡은 納粟許通을 주장하면서 왕자가 賢材를 취택함에 있어서 출신성분에 따라서 인재를 폐기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⁹⁰⁾ 울곡은 그 때 적출자가 없었고 서자 2인 뿐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納粟許通法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나 국왕을 비롯하여 그를 아는 중신들은 울곡의 公人됨을 믿고 근거없는 낭설을 배척하였다.⁹¹⁾ 그 당시 사대부들은 적출자가 없고 서자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同宗의 姪行 중에서 양자를 취하여 後嗣로 삼았는데, 울곡은 서자로서 後嗣를 삼았다는 것이다.⁹²⁾

어쨌든 서얼에 대한 납속허통법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 선조 25년 12월 경기·황해도 調度御史別事目에 의하면, 곡식 500석을 바

87) 「葵史」, 「앞의 책」 pp.9~10.

88) 「葵史」, 「앞의 책」 pp.10~11.

89) 「宣祖修正實錄」 卷17-6-12, 선조 16년 4월 壬子.

90) 「栗谷全書」 下 (大提閣, 1978, 영인본) 卷35-39, 行狀 및 卷34-30, 31 年譜, 癸未 4年.

91) 「宣祖實錄」 卷18-3, 宣祖 17년 3월 辛巳.

92) 「葵史」, 「앞의 책」 p.12, 「울곡전서」 下 pp.276~280, 卷33, 世系圖.

치면 서얼이 허통되어 벼슬길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다.93)

조선 중기의 사대부들 중에서 李珣 이외에도 국난을 당하여 成渾, 趙憲, 李恒福, 柳成龍 등이 전후하여 서얼허통을 陳疏하고 있었다.9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얼 허통은 보편화되지 못하였고 또한 그 납속액수가 과다하여 일부 부귀한 가문의 서얼들에 대한 특혜에 그칠 뿐이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서얼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17세기초 광해군 때 이른바 七庶之獄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政爭에 이용되기도 하였다.95)

前世紀의 서얼소통 논의를 이어 받아 17세기에 이르면 그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仁祖 3年 11月 국왕과 2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賓廳에 모여 서얼소통문제를 收議하였는데 거기서의 찬반 양론에 대하여 仁祖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96)

- (1) 서얼들이 禁錮되어 하는 일 없이 늙게 되어 애석하다. 비록 廷議가 불일치하여 갑자기 법을 바꾸기 어렵다 해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 (2) 또 자자손손 금고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입법의 본의가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 代數를 한정하여 變通의 張本(根本)으로 함이 어떤가를 다시 논의하여 시행하라.

이러한 왕명에 대하여 비변사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上啓하고 있다.97)

- (1) 太宗朝의 給事中 徐選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서얼을 顯官에 敍用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게 되었으나 전적으로 금고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93) 『宣祖實錄』 卷33-33, 宣祖 25年 12月 乙卯.

94) 위와 같음.

95) 『葵史』 『앞의 책』 pp.16~17; 『광해군일기』 卷65, 光海君 5年 4月 癸丑.

96) 『仁祖實錄』 卷10-40, 41 仁祖 3年 11月 戊午.

97) 위와 같음.

- (2) 成宗朝 때 경국대전을 반포하면서 서얼자손은 文武生進等試驗에 응시함을 불허한다는 법이 마련되었으나 庶曾孫은 그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 (3) 그 후 大典註解書에 자자손손이란 말이 첨가되어 그후 서얼은 永世禁錮之人이 되었다. 그러나 王者의 政事(인사행정)가 반드시 이와 같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론하였으나, 廷臣의 논의가 통일되지 않아서 뒷날로 미룰 것을 청한 것이다.
- (4) 或者는 「良出限孫, 賤出限曾孫之規」를 시행함이 옳다하고 혹자는 양천을 막론하고 모두 증손에 이르면 「乃許爲當」이라 하였다. 前說에 의하면 허통될 자가 천첩의 경우는 멀리 玄孫代라야 된다는 것이다. 後說에 의하면 양천첩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경국대전상의 限品敍用條에 양첩과 천첩 소생자간의 등급을 엄격히 한 것과 배치되고 처녀 몸으로 남의 첩이된 양녀와 창녀로서 첩이 된 자를 같이 보는 것이되어 부당하다.
- (5) 이와 같은 사실들을 참작하여 「良出至孫而許」하고 「賤出至曾孫而許」함이 옳다. 또 이미 科擧를 허용한 후에 버리고 쓰지 않음은 처음부터 許科하지 않음과 다름이 없으니 今後는 재능에 따라 授職하되 헛되이 늙는다는 탄식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우리 나라에서의 嫡孽之分은 매우 엄격하여 200년간에 걸쳐 법령에 실려 있었으니 지금 비록 변통함이 있어도 적서의 명분을 문란하게 할 수 없다. 만약 허통후에 弱嫡을 업신여겨 定分에 어긋나도록 하는 자가 있거든 조정에서 적발하여 치죄하고 경국대전에 의하여 오히려 금고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限代法制定에 관한 비변사의 건의에 대하여 仁祖는 이를 승인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朝官들의 찬반토론이 격렬하였다고 하겠는데, 葵史에 의하면 副提學 최명길은 그의 玉堂 동료인 심지원 김남중 최성신 이경용 등과 함께 다음과 같이 상소하여 서얼허통을 주장하였다.

禮制의 定함이 三代보다 더 엄함이 없었으나, 嫡庶之名은 단지 私室에서 행하였을 뿐 公朝에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門地의 차별이

六朝보다 더 상세함이 없었으니 用人之際에 그 父姓만 물었을 뿐 그 母族을 묻지 않았습시다. 대개 천지의 生才에 無間於貴賤하고 王者의 用인에 不拘於門地 함은 天理상으로 당연하고 百王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얼들을 顯職에 임용하지 말자는 논의는 처음 徐選에게서 나와 그 후 마침내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금고되어 비록 才德이 출중한 사람도 모두가 抑塞되어 不揚於世하고 擯斥되어 不與於人하며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기가 죽어 父子之倫과 君臣之義를 회복하지 못하니 人紀를 傷害하고 天理를 역행함이 이 보다 더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슬프다 匹夫의 含冤이 죽히 和氣를 상해한다 하거늘, 하물며 그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라! 바라옵건대 재능에 따라 錄用함으로써, 世道에 보탬이 되고 人和를 이루도록 하여 주십시오.98)

또한 이조판서 김상용도 위 玉堂官僚들을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上啓하였다.

天之生才에 본시 적서간에 차이가 없었고 庶孽禁錮는 我國의 弊法으로 古今 천하에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가 적어 비록 一世之人을 쓴다해도 오직 부족할까 걱정인데, 立法이 太峻하고 區別이 太隘하여 하늘이 낳은 사람을 다쓰지 않고…… 사대부의 서얼을 자자손손 계속하여 禁錮시키니, 비록 남다른 才智가 있어도 沈沒하여 떠내려가서 終身하니 애석합니다. 玉堂의 公論이 있으니 宿弊를 痛革하여 用人之路를 넓힘이 타당합니다. 다만, 變通과 같은 큰 일을 本曹에서 감히 擅斷할 수 없으니 대신들이 議定하도록 하여 주십시오.99)

이와 같은 이조판서 김상용의 건의에 따라 三議政과 의논하게 되었는데, 영의정 이원익, 좌의정 윤방, 우의정 오윤겸 등 모두가 서얼금고법이 고금에 없던

98) 「葵史」 「앞의 책」 pp.18~19.

99) 「葵史」 「앞의 책」 pp.19~20.

잘못된 법률이며 儒臣(玉堂)이 건의한대로 庶孽許通을 하자고 하였다.100)

결국 최명길을 비롯한 옥당관료와 김상용의 건의가 있고 난 후 대신과 2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왕의 부름을 받아 賓廳에 모여 서얼허통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게 된 것이다.

「命許良妾孫 賤妾曾孫 以下 赴文武科 登科 許要而不許清 稟裁 睿旨 兩司署經藏之 禮曹」101)

즉, 良妾孫과 賤妾曾孫 이하는 문무과 응시를 허가하여 戶, 刑, 工曹의 郎官 등 요직 임용은 가능하되 淸職 즉 玉堂과 臺諫, 春坊, 兵, 禮曹의 正郎·佐郎 및 翰林 등에 취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허통에도 반대자가 적지 않았는데, 그중 도승지 鄭蘊은 다음과 같이 陳疏하였다.

서얼허통에 관한 조정의 의논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허통이 옳다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지만 신의 愚見으로는 반드시 허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200년간이나 공고하게 유지하였고 거의 망하려다가 부흥한 것은 명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嫡孽之間의 尊卑之分은 天經地義라 撓紊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은 大小와 內外가 각각 다르며, 千里不同俗하고 百里不同風한데 어찌 일일이 중국것만 따르겠습니까? 몇 백년 내려오던 법률을 하루 아침에 무고히 파괴함이 옳겠습니까? 근년 이래 許通之路가 넓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무재능이 있는 서얼은 각각 科擧를 거치지 않음이 없었고, 또 顯官의 지위에 이른 자도 많이 있습니다.…… 良女로서 不更二夫한 者의 소생자를 허통함은 옳으나 賤妾之産이나 游女之出은 이를 허통하면 벼슬길이 더러워지고 명분이 사라질 것입니다.102)

100) 「葵史」 pp.20~21 그리고 「葵史續編」 『앞의 책』 pp.286~287.

101) 「葵史」 『앞의 책』 p.21.

102) 「葵史」 『앞의 책』 pp.21~23 및 p.287(葵史續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얼허통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하여 조정의 의논이 불일치하였다는 것과 반대론자도 양척자손을 허통하는 것은 좋다고 한 점이다.

그 후 顯宗 때 宋時烈과 朴世采는 혹은 擬疏로 혹은 陳劄로 모두 庶孽通仕를 청하였는데, 특히 송시열은 庶孽防限之制가 처음에는 祖宗의 定制가 아니었으며, 인재가 부족한데 그들 서얼 중 쓸만한 사람이 있는데도 버려둠은 可惜하다고¹⁰³⁾ 하였다. 또한 박세채도 문벌보다 재능위주로 인재를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¹⁰⁴⁾ 儒賢이며 또한 대신인 송시열의 庶孽通仕 주장은 정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것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였음이 顯宗實錄에 나타나 있다.¹⁰⁵⁾

그 다음 肅宗 元年 6月에는 敦寧都正 金壽弘이 서얼허통을 상소하였고,¹⁰⁶⁾ 그 다음 달에는 洪宇遠과 李裘 등이 이를 지지하였다. 그 때 尹鑣도 대체로 이에 찬동하면서 서얼은 한편으로는 士夫이며, 下賤과는 다르므로 양척소생인즉 통용함이 옳다고 하였다.¹⁰⁷⁾

그러나 서얼허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전에 李珣가 서얼들로 하여금 納粟 赴舉하도록 청하였을 때 사사건건 반대하던 남인(동인)들조차 지금 그들의 領袖 許積의 애척자 許堅을 顯用하고자 서얼소통을 힘써 논한 것은 모순이라 하였다.¹⁰⁸⁾ 그 이듬해 2月 晝講時에 許積은 서얼을 防塞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習俗이라 하고 宣祖 때 李珣가 서얼들을 벼슬길에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법속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捧價許通을 주장한 것이며, 許通之事는 오늘날에도 성급하게 의논하기 어려운 것이나 武科에 冒參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돈을 받고 허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¹⁰⁹⁾ 이와 같이 대신들은 당파적인 주장을 떠나서 자기네 들의 혈속인 서얼들의 벼슬길을 열어 주고자 명분과 구실을 힘써 찾았던 것이다. 물론 유교적인 명분론을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라.

103) 『葵史』 「앞의 책」 pp.33~34 및 p.287.

104) 『葵史』 「앞의 책」 p.36 및 pp.287~288.

105) 『顯宗實錄』 卷20-5, 顯宗 12年 11月 丁丑.

106) 『肅宗實錄』 卷4-20, 肅宗 元年 6月 壬申; 『葵史』 「앞의 책」 p.288.

107) 『위의 책』 卷4-27, 肅宗 元年 7月 乙未.

108) 『위의 책』 卷4-28, 肅宗 元年 7月 乙未.

109) 『위의 책』 卷5-9, 肅宗 2年 2月 庚申.

私情에 의한 소통주장이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곧 불명예로 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명분과 情誼간에 갈등을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날카롭게 대립하였던 노론(서인)과 남인중 일부 중신이 모두 서얼소통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앞에서 16·17세기의 서얼 소통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서얼들에 대한 納粟許通制와 許要不許淸法 및 限代禁錮法의 성립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실제 성과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16세기 전기 조광조에 의한 서얼소통 논의는 직접 어떠한 결론을 낳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후의 서얼소통논의의 서막이 되었다. 그 다음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권신들의 소통논의는 온 조정을 떠들석하게 하였지만 몇 사람의 權臣家 妾子가 허통된 것 이외에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반대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그들의 限代後赴舉許通措置가 곧 폐지 되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윤원형등의 서얼허통논의도 실의에 빠져있던 서류들을 고무한 바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소통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후기의 울곡 이이에 의한 서얼소통논의는 納粟赴舉로 인재를 발탁하여 국난극복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때 많은 庶類들이 무관으로 入仕하여 국가에 공을 세웠고, 또한 그 후에 서얼소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7세기 전기의 최명길을 비롯한 玉堂의 儒臣과 이조판서 김상용, 영의정 이원익을 비롯한 대신 및 2품 이상 고위 관료가 논의하여, 양첩손과 천첩증손 이하의 문무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며 登科後에는 要職은 허용하되, 淸職은 불허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許要節目은 잘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최명길은 다음과 같이 啓請하였다.

일찌기 乙丑年에 서얼이 登科하면 淸職은 不許하되 要職은 許한다는 것을 일대의 법으로 성문화 한지 이제 9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시행된 바 없으니 聖朝의 講定之制가 허사로 돌아가 심히 미안합니다. 서얼이 登科한 후 授職하는 예를 보면 奉常寺와 校書館의 三

四자리에 불과할 뿐이니 비록 재능이 있는 사람도 所蓄한 바를 展布할 수 없어 진실로 애석합니다. 事目內에 소위 許要者란 戶,刑,工의 三曹郎廳 및各司의 대등한 관직을 말합니다. 지금 이후 하교를 받아 재능에 따라 擬望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110)

여기에 대하여 국왕은 윤희하였고 신회수,심일운 등을 형조의 낭관으로 임명하였다.111) 16세기의 納粟許通이 서얼금고 해제의 제 1단계 조치였다면 17세기의 許要措置는 그 2단계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허통의 전제조건인 다량의 납속액 때문에 가난한 서얼들은 부득이 許通을 冒稱하여 赴學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어 처벌당한 사례가 仁祖實錄과 孝宗實錄 곳곳에서 散見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현종대에는 더욱 심하여 禮曹에서 국왕에게 禁斷할 것을 上啓하고 있다.112) 그렇지만 禁斷과 處罰만으로는 서얼들의 冒赴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所納之價를 감량하는 문제가 거론되었고,113) 결국 顯宗元年 12月 4日, 양첩자는 4석, 천첩자는 6석만 내면 허통하여 주도록 하였다.114) 이는 종전의 서얼허통에 필요한 15석-20석에 비하여 매우 경감된 것이었다.115)

(2) 그리하여 17세기 후기에 이르면 그 이전의 이름있는 재상이나 명현, 예컨대 황희(世宗代) 노사신(成宗代) 이장곤(中宗代) 정지연, 이이(宣祖代) 이완(孝宗代) 등의 후손들 중 적파가 단절되어 양자 또는 서파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116) 이때 그들 先賢들의 후손(庶類)을 우대하지 않을

110) 『葵史』, 『앞의 책』 pp.32~33.

111) 『仁祖實錄』 卷12-8, 仁祖 4年 3月 丙辰; 『위의 책』 卷46-71, 仁祖 23年 9月 癸酉; 『孝宗實錄』 卷7-28, 孝宗 2年 9月 乙酉.

辛喜秀, 沈日運 이외 金宏, 李慶善, 李石賢 등이 호조, 형조, 공조의 郎官으로 임명되었음이 확인된다(葵史).

112) 『顯宗實錄』 卷2-1, 顯宗 元年 正月 丁卯.

113) 『위의 책』 卷3-53, 顯宗 元年 12月 丙子.

114) 『備邊司謄錄』 20冊, 顯宗 元年 12月初 4日.

115) 『宣祖實錄』 卷35-25, 宣祖 26年 2月 辛丑.

116) 『肅宗實錄』 卷10-29, 肅宗 6年 8月 乙卯.

『錫鼎』又曰 中廟朝 相臣 鄭光弼……其長孫 芝衍 又相宣廟 而芝衍無嫡詞 以庶承嫡……

수가 없어서 그 당시 대신들의 奏請으로 庶類들을 무관 혹은 지방관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肅宗 9年 2月에는 영의정 김수항의 奏請에 의하여 서얼 권정길이 防禦使를 거쳐 兵水使로 임용되었고, 서얼 정시웅은 僉使와 縣監에 임용되었다.¹¹⁷⁾ 김수항은 또한 동년 3月 국왕이 대신과 2품 이상 및 삼사의 장관을 引見하였을 때, 문무인재가 매우 적음에도 오직 門地로서 擢用을 한다는 것은 전래의 폐습으로서 특히 武將을 쓰는데는 옳지 못한 방법이라 한 후, 堂上 武官인 鄭時凝, 宋克惇이 사대부家의 서얼로서 鄭은 무예가 절륜하고 명성과 공적이 優異하며, 宋은 才局이 超凡하고 위인이 信實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肅宗은 사람의 재능의 高下는 지위의 貴賤과는 무관하니 常規에 너무 구애됨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¹¹⁸⁾

이와 같이 일부 사대부가의 서얼들이 능력에 따라 등용되는 것에 자극을 받아 肅宗 21년에는 영남생원 南極井 등 988인이 上章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帝王의 用人之道는 넓으면 넓을수록 얻는 바가 많으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立賢無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토지의 넓이와 인물의 많음에 있어서 중국의 십분의 일을 당할 수가 없는데도 양반 상인으로 나누고 또 양반가에서 서얼이 赴擧(과거응시)하지 못하게 된 지 기백년이 되었는데 그 간에 왕왕 걸출한 인재가 있었던 바, 李大純, 朴枝華, 魚叔權, 曹伸, 李達, 鄭和, 林芑, 梁大樸, 權應仁, 金謹恭, 宋翼弼 …… 등 또 武弁으로서 …… 임진왜란 때의 李山謙, 洪啓男, 劉克良 …… 등 甲子之變에는 鄭忠信 …… 병자호란 때 …… 權井吉 …… 오늘날 서얼로서 문과급제자가 100명 이상이며 武弁은 1000명 이상이니 그 중에서 職事를 맡길 만한 拔出之才가 어찌 없겠습니까 …… 사족의 먼 후예로서 평민이 된 부모의 아들로서 다 천하게 되어도 …… 그들은 문과를 거쳐 성균관의 관원을 역임하게 되고

黃喜直派亦絶嗣 神主 時無所歸亦令該曹 訪問其當 爲主祀者 主之宜矣,

『大東奇聞』(漢陽書院 4版本, 1928, 明文堂, 1982, 影印本) pp.464~469.

117) 『葵史』, 『앞의 책』 pp.37~38.

118) 『葵史』, 『앞의 책』 pp.38~39.

무관인즉 闔帥에 이르렀는데도 신등은 일체 防塞된 것입니다. 仁祖 때 三曹(戶, 刑, 工曹)에 허통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擬望되지 않았고 外官 역시 州牧까지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 庶派에 속하게 되면 그 자손은 비록 수십세가 내려가도 매번 서얼이라 하였으므로 서얼의 수는 날로 증가하여 일국의 반에 이르러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 오늘날 서얼통용이 어려운 것은 朝宗舊制를 가볍게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니 조종조의 舊制라도 膠守하기만 하여 趨時之義를 잃는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서얼금고법은 …… 태조의 舊제도 아니고 太宗의 本意도 아닌 것입니다. 2백년 후 宣祖께서 다시 仕路에 통하게 하시고 仁祖께서 또 三曹에 서얼이 補任됨을 허가하시어 금일에도 일체통용 되는 것이니 구제를 변통한 것은 아닙니다 …… 비록 서얼을 公朝에 通用해도 私室에 退歸한 즉 嫡庶之分이 굳게 있을 것이니 …… 諸臣의 至論을 俯察하사 仕路를 넓게 열어 재능이 있는 자가 헛되이 늙지 않도록 하신다면 …… 수백년 이래의 허다한 抱冤長逝者가 감격할 것입니다」(119)

위에 보이는 서얼들의 주장은 서얼금고 이래 많은 인재가 뜻을 펴지 못한 채 死藏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國難時에 큰공을 세웠다는 것과 허통된 후 서얼로서 무과급제한 자가 100명 이상, 무과급제자는 1,000명 이상이나 되었지만 관직 취임이 부진하였으므로 仕路를 넓혀 달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서얼들의 집단적인 호소에 대하여 그 당시 銓曹의 장관이었던 이 조판서 최석정은 肅宗 22年 종래의 納粟赴舉制를 고쳐서 납속하지 않고서도 문무과와 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과거에 합격한 서얼들을 더 많이 임용하여 그들의 仕路를 넓힐 것을 주장하였다. 최석정은 이어서 「匹夫舍冤이면 足히 天和도 傷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수의 서얼에게 있어서라.」라 하고 무조건적인 敍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은 이를 廟堂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¹²⁰⁾ 결국 廟堂에서도 納米許通의 전제조건인 納米

119) 「葵史」 「앞의 책」 pp.40~46.

制를 없앨 것을 동의하여 국왕의 승낙을 받았다.¹²¹⁾ 그리고 서얼중 參上官으로 오른 자를 요직인 戶, 刑, 工曹에 모두 허용하면 混淆之弊가 있으므로 뛰어난 자만을 銓曹에서 公議에 따라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국왕이 동의하였다.¹²²⁾

다음으로 서얼들의 호칭에 대하여는 최석정이 業儒 또는 業武라 할 것을 청하여 그들의 문무지칭이 된 것인데,¹²³⁾ 典錄通考에 의하면

「親庶孽者 稱以業武業儒 業武業儒之子 若孫以幼學書之 似無所好(康熙戊子承傳)」¹²⁴⁾

이라 하여 親서얼자를 業武 또는 業儒라 일컫고 그 아들 혹은 손자부터는 幼學이라 쓸 수 있게 되어 사족의 일원으로서 편입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18세기 이후 많은 수가 문무과에 급제하여 명실상부한 양반으로 그 신분이 올라간 사람이 많았음을 각종 사료 등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¹²⁵⁾ 물론 그렇다고 서얼차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또한 사회 일반적인 차별 의식이나 관습이 변한 것도 아니어서, 18세기 이후에도 더욱 강력한 소통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人學者 前間恭作은 충분한 사료조사와 검토를 하지 않은 채 續大典 禮典 諸科條에서 「庶孽許通 納粟赴舉之規 永爲革除」라 한 것을 잘못 해석하여 18세기 이후는 納粟許通의 길 그 자체가 폐지되어 그 후 서얼들은 문무과 응시의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다고 하였다.¹²⁶⁾ 이 문제에 대하여 宋俊浩가

120) 『葵史』 「앞의 책」 pp.48~51.

121) 『肅宗實錄』 卷30-44, 肅宗 22年 8月 丙戌.

122) 『위의 책』 卷30-55, 肅宗 22年 10月 庚辰.

「領議政 柳尙運稟……尙運曰 庶孽 六品者 竝許 三曹 則有混淆之弊 如有表表可稱者 銓曹 宜從公議收用, 上可之」.

123) 『위의 책』 卷30-55, 肅宗 22年 10月 庚辰.

124) 『典錄通考』 p.270, 戶典, 戶籍.

125) 『國朝榜目』 국회도서관 1971 영인본 - 肅宗朝(52명) 景宗朝(8명) 英祖朝(45명) 正祖朝 이후(부지기수).

126) 前間恭作 - 「庶孽考」 『조선학보』 5·6집 1953~4.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¹²⁷⁾ 그는 영구히 革除된 것은 「赴學」가 아니고 「納米」, 뿐이라는 올바른 해석 하에서 조선왕조 實錄과 葵史 기타 사료분석을 철저히 하여 이를 실증하였는데 특히 國朝榜目에 나타난 바에 따라 서얼의 문무과 급제자를 왕조별로 조사하여 前間恭作의 所說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그의 큰 공적이라 할 수 있다.¹²⁸⁾

尹拯의 『明齋集』 卷9, 上同春堂書(己酉)에 의하면

「今貴賤之別 大約有四等 曰士族也 曰庶族也 曰庶孽也 曰良民也」¹²⁹⁾

라 하여 서얼이 사족과 개념상 구별되고 있던 17세기 이전의 世論을 나타내었으나 朴趾源의 燕岩集 卷 3-24, 擬請疏通疏에 의하면

「夫庶孽之與正嫡 誠有差等 而顯基家世亦一士族 固何負於國家而禁錮之廢絕之不得齒衿紳之列哉」¹³⁰⁾

라 하여 서얼이 비록 차대를 받고 있지만 사족의 일원으로서 어찌 금고 되어 衿紳之列에 설 수 없겠는가 라고 하는 18세기 후기 이래의 서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 후의 서얼陞班 사실은 18세기 후기 이후의 여러 사료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는 서얼소통의 확대조치를 보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17세기말 서얼들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원·진사시와 문무과를 거쳐 사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법제도가 확립되었고, 특히 庶孫代부터는 일반 사족과 똑같은 幼學이란 칭호가 법제상으로 허용되어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그들을 非班이라 할 수는 없게 되었다.¹³¹⁾

이와 같이 서얼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된 것은 서얼허통 찬성론자인 일부 위

127) 宋俊浩, 「조선시대의 科擧와 兩班 및 良人」, 『역사학보』 69집 1976 pp.113~117.

128) 송준호 「위의 글」.

129) 『明齋集』 卷9, 上同春堂書.

130) 『燕岩集』 卷3, 擬請疏通疏.

131) 『英祖實錄』 卷120, 英祖 49年 正月 丁巳.

정자들의 시혜의 덕도 있었겠지만 서얼들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른 질적변화의 측면을 도외시 할 수 없다. 또한 16세기말과 17세기 전기에 걸친 양대 전란을 겪으면서 수많은 젊은 夫妻가 생이별하여 재혼(남자의 경우) 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舊夫妻가 다시 만난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는데¹³²⁾ 이때 후처 소생자녀가 서족화될 위험에 놓여 강력하게 정적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3. 18·19世紀 庶族의 疏通運動과 仕路擴大 및 陞班化

1) 18·19世紀 庶族의 疏通運動

18세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韓國史上 하나의 전환기로서 이해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극심하였던 당쟁이 외형상으로나마 탕평하게 됨에 따라 노론일당 독재정권이 확립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농업상의 이양법과 견종법 보급 및 화폐의 유통 등으로 농업생산의 증대와 상업활동이 발달하여 근대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문화적으로 실학의 영향으로 주자학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庶族들의 양적 증대와 법적 지위 향상에 따라 승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母系가 한미하였던 英祖가 즉위하면서부터 그들의 운동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英祖 즉위 年 12月 大駕가 東門으로 나갔을 때 서얼 進士 鄭震僑 등 260여인 등이 서얼 소통문제를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³³⁾

(1) 夏·殷·周·漢·唐·宋·明 등 역대 중국의 정통황조에 있어서는 庶擊將相이 많았고 고려 이전의 取人之規도 중국과 같았다. 그러나 조선 太宗때의 右代言 徐選이 「庶擊子孫 勿敍顯職」을 건의하였고 姜希孟이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서얼들의 科擧와 벼슬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132) 金龍德, 「胡亂과 女性」 『한국사수록』 을유문화사 1984, pp.237~244.

133) 『英祖實錄』 卷2, 英祖即位年 12月 丙戌. 「葵史」, 「앞의 책」 卷1, pp.88~90에 서는 鄭震僑 등 5000인이 상소하기를 「그들은 朝廷에서 버림받고 鄉黨에서 핍박받아 跼天躋地 상태란 것과 혈서로서 상소하기를 13번이나 하였으나 번번이 承旨가 물리쳐서 부득이 노상에서 상소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2) 宣祖初에 申蕘 등 1000여명이 上章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었는데. 宣祖가 「葵藿向日 不擇旁枝 人臣願忠 豈必正嫡」이라 하여 그들을 동정하였다. 그 후 先正臣 李珥가 국경변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얼들을 허통하여 科擧의 길을 열어 주자고 건의하였다.

(3) 仁祖때 부제학 최형길은 그의 옥당 동료 심지원, 김남중, 이성신, 이경용 등과 함께 서얼통용을 力請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재능 있는 자를 낳음에 귀천간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王者가 사람을 솜에 門地에 구애하지 않음은 天理上 당연하고 百王이 이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였다. 장유, 김상용, 이원익, 윤방, 오윤겸 등 모두가 같은 뜻으로 서얼통용을 건의하였으며,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2품 이상의 諸臣의 의견이 같았다. 일찍이 영부사 이원익이 홍문관의 筭子에 의거하여 서얼이 등과한 후 요직은 許하되 청직은 불허할 것을 稟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일대의 법률로 성립된 것인데, 이제 9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거기서 요직을 허한다고 한것은 戶, 刑, 工曹의 郎官 및各司의 長을 의미하였으며, 그 때 신희수, 심일운, 김평, 이경선 등이 형, 공조의 낭관으로 임용되었다. 그 후 4·50년간은 肅宗때 이현 한사람만이 겨우 호조의 낭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여럿이 일어나 이를 배척하여 결국 체직되고 말았다.

(4) 成宗代 이후 걸출한 서얼들이 많았다. 예컨대 박지화, 어숙권, 조신, 이달, 정화, 임기, 양대박, 권응인, 김근경, 송익필형제, 이산겸, 홍계남, 유극량, 권정길 등이다. 그러하니 調用之路를 廓開하면 수백년래의 많은 抱冤長逝者의 혼백도 감격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서얼 차대가 그 몸에 그칠 뿐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 번 庶派에 걸리면 비록 수 10대가 지나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英祖는 批答을 내려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본래 좁은 데다가 用人 역시 매우 넓지 못하여 개탄스럽다는 것과 서얼들의 주장이 근거는 있으나 이 일은 오래된 것이므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으므로 서서히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함이 옳다고 하였다. 다만 호, 형, 공조의 낭관으로 서얼을 임용하는 일은 仁祖때의 敎令에 따라 행하라고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英祖實錄 편찬에 참여한 史臣들은

「柳子光以後 不許庶孽通請 至是群庶孽自請通請 可見朝綱之日紊也」¹³⁴⁾

라 하였다. 즉 서얼통청운동을 조정의 기강이 날로 문란해지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중세적 신분질서가 동요함을 불안해하는 봉건관료들의 의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또한 英祖 48年 12月에는 경상도 서얼유생 全聖天 등 3000여인이 庶類가 通淸된 후에도 지방유생들의 반대로 鄉案에 들어가지 못한 점을 들어 상소하였다. 국왕은 이를 가련하게 여겨서 특히 批答을 내려 향안입록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蔡濟恭이 上奏하여 말하기를 영남의 향안은 防限이 심히 엄하여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더라도 유생들이 반드시 순종하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때에 어지러워지는 단서가 생길까 두렵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왕도 다시 비답을 내려서 말하기를 조정은 조정이고 향안은 향안이니 어찌 국왕이 구구하게 그러한 일에 관여하겠는가 하였다.¹³⁵⁾

이에 관하여 葵史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이고 있다. 즉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남진사 全聖天 등이 향교와 서원의 儒案에 入錄하도록 하여 달라는 상소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¹³⁶⁾

(1) 서얼이 仕籍의 淸班에 이미 통하고 있으므로 鄉曲의 儒案에 入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鄉人의 論議는 太學이 아직 序齒하지 않고 있다는 등 혹은 궁리해서 처리할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등 혹은 조정에서의 通淸만 들었을 뿐 鄉曲 2字는 듣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聖澤과 仁政을 막아서 행하여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2) 조정에서는 三司의 관직을 淸宦이라 하였고, 鄉曲에서는 三所의 儒案을 淸班이라 하였다. 조정에서 三司의 淸宦에 이미 통하였는데, 향곡에서의 三所에 만 어찌 홀로 통청되지 못하는가, 향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儒案入錄을 불허하는 것이 국왕의 風化之道를 遵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134) 『위의 책』 卷2-53, 英祖即位年 12月 丙戌.

135) 『위의 책』 卷119, 英祖 48年 12月 戊子.

136) 『葵史』 『앞의 책』 卷1, pp.115~116(『英祖實錄』에는 서얼유생 全聖天으로 되어있고 葵史에는 進士 全聖天으로 기록되고 있다).

(3) 옛날 通淸을 금하던 날 처음 儒錄을 禁한다는 事目이 없었는데도 향인의 禁錄이 어찌 그리 쉬웠으며, 이제 통청을 許하는 날 既히 聖敎가 嚴明하게 있는데도 향인의 同錄이 어찌 그리 어려운가.

서얼들의 상소에 대하여 英祖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즉, 궁하면 반드시 통한다는 것이 天理라는 것과 그가 潛邸에 있을 때 서얼들의 상서가 심히 절실하였으므로 베껴서 보았다는 것, 暮年이 된 후, 상소하러 온 서얼유생이 있는지를 매일같이 물었다는 것 등이다. 이어서 그는 서얼들이 官에 이미 通淸하였는데 儒案에만 어찌 불참하였는가를 묻고 태학은 지금부터 오로지 나이 차례로 앉도록 하라. 태학이 그 같으면 향학 역시 그럴 것이니 8도에서 이를 遵行하도록 하라는 것 등을 分부하였다.¹³⁷⁾

그때(英祖 48年 12月)英祖는 서얼인 嶺儒에게 入侍하도록 명하여 다음과 같이 그들과 대화하였다.¹³⁸⁾

임금이 말하기를 '영남에는 본디 인재가 많았지만 이 글은 매우 잘되었다. 嶺儒들이 너희들에게 생원이라 칭하지 않는가' 製疏者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小科에 入格하여도 그런가' 製疏者가 '等科者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三所란 무엇인가' 製疏者가 대답하기를 '校, 院, 鄉案 등입니다' 임금은 '태학에서 아직도 序齒로 앉지 않는가' 疏首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登科 以前이라도 嫡出 유생에 대해서는 생원이라 호칭하였으나, 서얼인 경우에는 小科에 입격하기 전에는 생원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것과 校, 院, 鄉案 등 三所의 入錄과 太學序齒가 18세기 후기인 英祖 말년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 등이다. 그 당시의 영의정 김상복은 上奏하여 이

137) 「葵史」 「앞의 책」 卷1, pp.117~118.

138) 「葵史」 「앞의 책」 卷1, pp.118~119.

「今此通清之人 有名無實 文武窠次收用 何如」

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英祖는

「此亦予暮年一大政也 特允」¹³⁹⁾

이라 하여 서얼들을 문무관으로 임용하도록 건의하는 김상복의 上奏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듬해인 英祖 49年 正月에는 경상도 業儒 黃景憲이 상소하여 향학에 通錄하여 나이 순서대로 앉을 수 있도록(序齒) 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그 때 英祖는 이제 서얼들이 문무관으로 임용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었다는 것과 이후로는 오로지 그 재능에 따라 인재를 뽑아서 등용하겠다고 하였다.¹⁴⁰⁾

그 무렵 英祖는 延和門에 가서 태학생들을 불러 이야기하기를 '서얼들이 이미 通清되었는데 태학에서 序齒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 하였다. 그 때 陰竹人 金植이가 대답하기를 '서얼은 비록 늙은이라도 양반 밑에 앉아야 한다'고 하자 英祖는 '君父之前焉敢稱兩班乎'라 하고 該曹로 하여금 嚴刑을 1차 가하게 한 후 大靜縣으로 유배, 영구히 서민이 되게 하였다.¹⁴¹⁾ 또한 英祖는 무관 淸職인 宣傳官에 서얼을 많이 임용하지 않고 단 1명만 임명한 것은 君命輕視라 하여 宣薦擔當인 行首 宣傳官 백동준을 決棍 15度 하여 巨濟로 充軍하였다.¹⁴²⁾

그로부터 5年후인 正祖 2年 8月 慶尙, 公忠, 全羅 3道 庶孽儒生 黃景憲 등 3,272인이 上疏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法典에 嫡妾 모두에게 親子가 없을 때만 養子로서 繼後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才能만으로 官僚를 任用하여 尊卑를 가리지 않는 것이 萬古의 通規이며, 나이 많은 사람을 尊重하는 것은 (나이가) 하늘이 내린 爵位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들의 上疏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¹⁴³⁾

139) 「葵史」 『앞의 책』 卷1, p.119.

140) 「英祖實錄」 卷120-4, 英祖 49年 正月 乙卯.

141) 「위의 책」 卷120-4, 英祖 49年 正月 丁巳.

142) 「葵史」 『앞의 책』 卷1, pp.121~124.

(1) 庶孽들이 늙어도 尊齒之列에 있지 못함은 長幼之序에 어긋나는 일이다. 몸이 庶類가 되어 人倫外로 빠져 繼後, 仕路, 序齒 등에 있어 사람 대접을 못받아, 天地間에 이처럼 큰 원한을 품게 된 것이다.

(2) 名分 두 글자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五倫중에서 流出된 것이다. 爵位之分은 단지 朝廷에서만 所用되는 것이고 嫡庶之分은 오로지 한 집안에서만 行해질 것인데, 庶孽들의 名分은 비단 한 집안에 국한하지 않고 한 나라의 衆人에게 미치고 있다. 한 나라 蒼生의 半을 차지하는 庶孽들은 이와 같이 禁錮를 300年間이나 當해 왔다.

(3) 公私免賤者가 혹은 拔身하고 吏胥去官者가 또는 騰揚함은 실로 天地昇降變通之理 그대로이다. 그러나 庶孽들은 한번 降等함으로 말미암아 庶名을 子子孫孫 傳하게 되었다. 무릇 하늘이 才能있는 者를 냥음에 尊卑間에 區別이 없고 사람이 忠誠을 바람에 貴賤間에 차이가 없다. 庶孽 廢痼 직후에도 柳祖認은 參議, 李箕男과 尹暝은 水使, 朴希賢, 楊萬吉, 李知白, 柳時蕃은 牧使 또는 府使가 되었고, 曹伸은 大君師傅, 鄭忠信은 參判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 막혀 있다.

(4) 그러나 先代王(英祖) 때 庶孽을 처음으로 清官에 任用하였고, 京鄕의 學校에서는 齒序와 錄案에 장애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正祖 때)은 「半上而 落下하고 有名而 無實」하다. 작년부터 朝廷에서는 庶孽을 臺諫으로 擬望(任用추천)하지 않았고, 太學의 齒坐도 이미 罷해졌다. 그리고 庶孽들로 하여금 鄕校와 書院에도 接近하지 못하도록 하여 분쟁이 생기기도 하였다. 여럿이 모여 서로 꾀하면서 이르기를 臺諫에 「擬望」되지 못하고 齒坐가 이미 罷하였은즉 鄕學에서의 錄案도 削除함이 옳다 하고 庶孽들의 鄕案을 불태우고 욱하며 때려서 쫓아내니 讀書者는 책을 덮고 學武者는 활을 버렸다. 그래서 庶孽들은 敢히 士大夫列에 서기를 바랄 수 없게 되었으며 閑族들에게도 公然히 모욕 받게 되었으므로 극히 원통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庶孽들에 대한 強力한 支援者였던 英祖가 돌아가고 젊은 正祖가 즉위하자 그 동안 不滿을 품었던 庶孽疏通 反對勢力들이 일

143) 『正祖實錄』 卷6-24, 正祖 2年 8月 戊午.

거에 들고 일어나서 庶孽들을 학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集團的인 疏通運動을 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正祖 2年 8月 그들의 上疏에 대하여 正祖는 「序齒等事는 비록 先正(栗谷 등)의 論議가 있었던 것이나 모두 儒林間의 일에 관한 것이니 賢關(成均館)으로 하여금 稟해서 處理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며, 그 이듬해 正祖 3年 3月에도 下教하기를 庶類序齒一事는 士論에 關係되는 일이므로 林下의 諸儒臣과 반드시 상의해야 되는 것이므로 賢關으로 하여금 諸儒賢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많은 庶類들이 원통하다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下教하였다.¹⁴⁴⁾

朝鮮王朝의 19世紀 前期와 中期는 傳統社會의 動搖期 내지 解體期로 인식되어 왔으나, 흔히 封建的 反動期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그것은 政治的으로 王權의 弱化和 外戚의 跋扈 및 官僚들의 不正腐敗의 深化로 말미암아 農民들에 대한 수탈이 자행되면서 全國 곳곳에서 農民蜂起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지만 爲政者들은 革新을 통한 現象打開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封建體制의 유지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歷史的 激動의 局面을 맞이하여 庶孽들의 疏通運動이 더욱 더 활기를 띠면서 展開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集團的으로 陞班化되기에 이르러 中世的 身分秩序가 構造的으로 變貌되어 近代化로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19世紀 中期 大院君 執權期間의 한때 復古的인 王權의 強化를 통해서 舊體制 整備 및 여러 矛盾의 克服을 위하여 努力하였으며 封建秩序의 維持라는 側面에서 庶孽差待를 再次 試圖하였으나, 變轉하는 時勢의 흐름에 對處하지 못하고 물러난 후 곧 이어서 閔氏 戚族政治時代가 되자 內在的 矛盾의 축적과 外勢의 침투 등으로 朝鮮封建秩序는 붕괴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世紀初 어린 純祖가 즉위하고 外戚이 政權을 장악하자 庶孽을 疏通하고자 하는 公論이 爲政者들 사이에 일기 시작하였다. 純祖 元年 正月 丁亥에 吏曹判書 尹行恉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⁴⁵⁾

(1) 우리 나라에서 庶孽들을 差別하여 世世積塞함은 실로 前古에는 없는 法

144) 『위의 책』 卷7-40, 正祖 3年 3月 甲寅.

145) 『純祖實錄』 卷2, 純祖 元年 正月 丁亥.

制였다. 그래서 先正臣 趙光祖, 李珣, 宋時烈들이 庶孽疏通을 주장하였고, 列聖朝에서도 여러 번 애석하다는 教旨를 내렸으므로 점점 벼슬길이 열렸다. 英祖 壬辰年에는 特別한 惠澤을 내려 文科에 及第하면 臺諫으로도 任用되고 武科에 及第하면 宣傳官으로 추천될 수 있었다.

(2) 正祖 卽位 이후 習俗이 고루함을 개탄하고 人才의 沈淪을 애석히 여겨 丁酉節目을 마련하여 大典通編에 실었다. 그리고 才能이 卓異한 者를 任用하도록 했는데 大聖人の 「立賢無方之聖意」였다.

(3) 비록 文學과 行誼가 表出한 者가 있어도 이를 펼 곳이 없던 庶類들은 처음 樂生之心이 없었고, 自暴之嘆만 있었으므로 이 어찌 天和를 犯하는 단서가 안되겠는가. 이제 새 임금의 첫 政事에 즈음하여 英·正祖의 뜻을 받들어 人心收拾과 人才登用을 하기 위하여 大臣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大臣들은 庶孽疏通에 관한 先朝의 節目을 遵守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임금도 이에 따랐다. 그러나 이와 같은 消極的인 미봉책만으로는 庶類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따라서 純祖 23年 7月에는 京畿, 湖西, 湖南, 嶺南, 海西, 關東 等地的 庶類 儒生 金熙鏞 등 9,996人이 集團的으로 上疏하여 疏通運動을 벌였다.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⁴⁶⁾

(1) 庶孽들은 忠賢의 後孫이요 簪纓之族인데 朝廷에서나 家門에서 모두 廢棄되어 원통하고 답답하게 지난지 400餘年이 된다.

(2) 무릇 尊宗과 敦本이란 것은 父族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며, 母族만을 존중하는 것은 오랑캐 풍습이다. 世人들이 名分을 口實로 삼는데, 家庭內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동생이 형을 형이라 하여 子弟의 道理를 다해야 하거늘 지금의 호칭은 奴隸가 主人에게 이르는 그대로이니 「名之不正」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3) 벼슬길을 막는 것은 朝廷의 用人之政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庶孽들로 하여금 倫常之分을 다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列聖朝에서 憫恤이 여겨 여러 차례 綸音을 내렸다. 英祖는 先朝의 聖意를 받들어 下教하였고, 壬辰處分(庶孽通淸)

146) 『위의 책』 卷26, 純祖 23年 7月 辛卯.

을 하기에 이르러 庶非班乎라 하였다.

(4) 英祖 卽位初의 敎書에 이르기를 士族의 遺裔가 委巷의 賤流와 어찌 같을 수가 있는 가라고 한 후 銓曹에 庶孽들을 관료 임용후보자로 하도록 신칙하고 太學序齒를 諭示하여 점차 길을 열어 주고자 하였으나, 庶孽들은 여전히 積塞되었다.

(5) 또한 列朝의 名碩들이 疏通之論을 힘써 주장하여 矯革하고자 하였다. 즉, 趙光祖, 李珣, 成渾, 金長生, 趙憲, 宋時烈, 朴世采, 柳成龍, 金尙容, 李元翼, 尹昉, 崔鳴吉, 張維, 吳允謙, 崔錫鼎 등이 「1. 庶孽을 박대함은 天下萬古에 없는 法, 2. 許多한 才俊之士가 마른 목과 누런 얼굴로 방랑하다가 죽는다. 3. 匹夫가 含冤하면 足히 和氣가 상하는데 하물며 그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라! 4. 鄉曲 賤流의 아들도 때로는 간혹 顯仕에 오르는데 世族名家의 庶裔가 永久히 禁錮되어 버림받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理由를 들어 庶孽禁錮의 不當性을 上疏 또는 上啓하였다.

(6) 經國大典 禮典에 嫡子와 妾子 모두 없을 때에만 立後를 許한다고 하였는데 妾子를 두고서도 疏遠之族을 養子로 삼으니 繼嗣를 가볍게 여기고 官爵을 重히 여기는 것이 된다. 오늘날의 庶孽은 一家의 庶孽만이 아니고 一世의 庶孽이며 또한 萬世의 庶孽이다. 이것은 天理, 人紀, 聖經, 賢傳, 歷代典常 어디에서도 없는 것이다.

(7) 옛날 英祖가 庶孽之人이 居國之半이라 하였고, 따라서 庶類를 除外시키면 一國之半을 잃는다고 하였다. 生齒가 日繁한데 낳은 대로 禁錮한즉,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욱 더 쌓일 것이다. 庶孽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은 官爵 때문이다. 官爵은 國家의 公器로서 賢愚로만 選別해야 하거늘 銓選時에 階限을 두고 注擬之間에 현저히 嫡庶를 差別하는 것이 習俗이 되어 바꾸기 어렵게 되었다.

(8) 庶孽의 무리는 嫡出者와 같은 門閥出生이나 한번 庶名이 있어 禁錮廢塞되면 一身만에 그치지 않고 子子孫孫 鐵限이 永在하여, 도리어 鄉品, 冷族보다 못하다. 好生惡死는 人之常情이나 庶孽들은 철이 들면 문득 無生을 바라게 된다. 그들은 날 때부터 廢棄되어 蹠天躋地하며 無限히 困苦하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낫다.

(9) 鄉學은 人才를 長育하는 곳이다. 그러나 黨塾之中에 庶孽들을 물리치는 것이 풍습이 되었고, 俎豆之間에 禮讓이 없어졌다. 이같은 풍습의 좋고 나쁨은 仕路의 通塞과 銓注間의 區限의 有無에 달려 있는데, 人物을 區限함은 先王의 定典이 아니다. 오늘날의 人事政策의 急先務는 選任方法의 更張인 것이다.

이와 같은 庶孽들의 주장에 대하여 國王은 批答을 내려 그들의 可矜스러운 狀況을 잘 알겠다는 것과 廟堂으로 하여금 宗을 대로 稟하여 處理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는 庶孽疏通을 반대하여 成均館의 居齊儒生들이 捲堂하였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⁴⁷⁾

(1) 名位의 等級이 엄연하여 分이 寸을 넘을 수 없고, 寸이 尺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400年 王業의 基盤이다. 그런데 이번 金熙鑄 등이 홀연히 疏出하니 그 勢力이 반드시 장차 一世를 바꾸고 우리 祖宗立國之制를 變更하자는 것이니 어찌 그 외람됨이 이에 이르렀는가. 그들의 上疏內容에 담긴 뜻을 보면 天地間에 지극히 원통한 일은 1. 不得呼父, 2. 不得爲嗣, 3. 不得與士夫 通同仕路의 세 가지라는 것이다.

(2) 呼父問題는 처음 朝廷에서 禁制한 바 없으며, 士夫家에서 嫡庶를 엄격히 나누는 所致다. 그러니 各家門에서 그 아버지가 呼父를 못하게 한 것인데, 이를 어찌 그 아버지에게 간청하지 않고 임금에게 呼訴하는가.

(3) 子息으로서 後嗣가 되지 못하는 것도 天理와 人情의 常規가 아니다. 또한 嫡妾에게 모두 子息이 없을 때에만 立後를 許容한다는 것이 禮典에 실려 있지만, 이것 역시 아버지가 禮典을 遵守하지 않은 것이며, 他人을 立後한 것도 아버지가 한 일이다.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는가 自己가 낳은 자식에 관한 한 아버지로서는 사랑에 귀천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後嗣로 삼지 않는 것은 그 末流임을 생각해서이다. 이른바 妾이란 野合해서 만난 사람이오 良家의 女子를 娶聘한 것은 열에 한 들이고, 公私婢로서 妾이 된 者가 십중팔구다. 만약 妾産으로 繼嗣로 한다면 爲嗣者의 母邊과 妻邊이 모두 戚屬이 되어서 다 常賤으로 돌아가 버린다. 한번 承嫡의 길을 열면 다시는 士夫家의 모습이 없어지고, 몇 년 안가서 混淆無別이 되어 蔑倫之域으로 달려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아버지는

147) 『위의 책』 卷26, 純祖 23年 8月 戊戌.

그 庶子를 아들로 할 수 없는 것이다.

(4) 벼슬길을 열어 주는 問題는 列聖朝의 軫念함이 지극하였고, 여러 名臣들의 哀矜과 憫惜이 깊었으나 마침내 원하는 대로되지 않는 것은 創國之制를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의 私情으로는 원통함이 지극할지라도 어찌 감히 更張하자는 말을 쉽게 하는가. 마땅히 法制를 遵守해야 하고 更正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世道가 衰微하고 人心이 더러워져 倫常과 紀綱이 날로 점점 敗落한 때에 이와 같은 괴상한 上疏가 있게 된 것이 무슨 光景이며 무슨 道理인가. 萬千이 무리 지어 氣勢가 두렵게 되니 매우 걱정스럽다.

成均館 儒生들의 捲堂에 대하여 純祖는 “庶類들의 訴冤은 列朝에서 항상 있었던 일이며, 그 때는 捲堂하여 시끄럽게 한 일이 없었는데, 옛날 儒生이 어찌 今人에 못 미쳐서 그렇게 가만히 있었겠는가”하고 庶孽禁錮가 天理와 人情의 常規에 맞지 않는 것을 諸生들도 알지 않는가 하면서 諸生들의 용렬함을 慨惜한다고 하였다.

어쨌든 6道 庶孽儒生의 萬人疏는 그 동안 축적되었던 庶類들의 量的인 힘의 結集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8世紀 中期까지도 中人과 더불어 中間身分層에 머물렀던 士族의 庶孽들이 18世紀末 英祖의 陞班措置(壬辰處分)에 힘입어 舉國的으로 組織化하여 嫡庶差待의 完全 철폐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世紀 前期의 庶類 萬人疏는 中世體制에 대한 弔鍾이 됨과 동시에 새 時代를 알리는 여명의 信號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對應하여 舊體制를 守護하고자 하는 庶孽許通 反對勢力에 속하는 成均館 儒生들은 捲堂이란 方法으로 對處하였으나 爲政者들은 오히려 庶孽편에 섰던 것이다. 그러나 朝廷 內에서의 反對勢力 또한 만만하지 않아 그후 오랫동안 朝廷은 이에 대한 贊反 兩論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그해 11月 癸未節目이 成立되어 限品이 從 2品으로 格上되는 등 庶孽들의 法的 地位가 向上되었으나, 完全한 差別의 철폐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制限된 범위 내의 庶孽疏通조차 잘 시행되지 않아서 19世紀 中期에도 庶孽疏通 運動이 일어났다. 즉, 憲宗 14年 11月8일 京外 儒生 李鎭宅 등 8,000人이 上疏하여 庶孽疏通을 請하였고¹⁴⁸⁾ 哲宗 2年 4月 15일에는 京外幼學 崔濟京 등이 上言하여 年前的

庶孽疏通을 請하는 上疏에 대한 措置를 촉구하였다.¹⁴⁹⁾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개 徐選으로 인하여 全人口의 半이 400年間이나 枳塞되었다. 列聖朝의 憫恤 惻怛之教와 先輩名碩의 지극히 公正한 理論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痛革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非但 庶類의 不幸일 뿐 아니라 國家로서도 慨惜한 일이다. 무릇 王政과 國治는 敦倫을 爲先으로 하고, 父子는 人倫의 始發이니 만약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들이라 하지 않고 子息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는다면 그 傷倫과 悖理가 如何한가. 이제 他人之子를 取하여 아들이라 하고 自己子息을 아들이라 하지 않으니 庶孽은 살아서 아버지께 稱父함이 없고 죽어서 그 아버지를 제사로 받들지 못한다.

(2) 大典通編은 金石不刊之典인데 妾子が 있으면 立後(養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血氣의 重함을 들보지 않은 違法者는 父子의 恩義도 없이 姑息的인 門戶之計로 人倫과 法을 날로 喪壞한다. 癸未節目의 規模가 넓지 않은 것은 아니나 枳塞이 如前하여 고질화되고 있다.

(3) 朝鮮의 用人은 門地만을 尙상하여 士夫의 進退에 高下가 있다. 그러나 庶孽은 初入仕에 있어 本宗의 華閥冷族임을 不問하고 校書館으로 分館한다. 또한 名賢故家之裔나 卿士大夫의 後孫이라도 庶類는 먼 시골의 身分이 낮은 者보다 못하다. 즉 먼 시골의 寒微한 者들을 朝廷에서는 많이 槐院과 國子監으로 選入한다. 朝廷의 人事政策이 이처럼 편파적이다. 文科及第者의 分館과 武科及第者의 始薦에 관하여 癸未節目은 舊制대로 한다는 것이나, 그 族姓의 閥閱에 따라 文科及第者의 경우 槐院과 國子監으로 分館하고 武科及第者를 宣薦하면 庶孽들의 울분을 풀어 주고 人和를 도모하는 人事가 될 수 있다.

(4) 立後之法은 倫理에 크게 관계되고 妾子が 있으면서 立後하는 것은 國典이 禁하는 바이니 禮曹에 嚴重히 신칙하여 妾子が 있는 경우에는 養子를 세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庶孽이 承嫡하는 경우 왜 蔭敍되지 못하는가. 만약 有蔭家에 承嫡한 者를 本閥과 같이 任用하고 限界를 두지 않는다면 人倫이 스스로

148) 『備邊司謄錄』 235冊 憲宗 14年 11月 8日.

149) 『위의 책』 238冊 哲宗 2年 4月 15日.

『癸史』 『앞의 책』, p.223~224에서는 哲宗 元年 辛亥 3月로 되어 있으나 辛亥年은 哲宗 2年이므로 備邊司謄錄의 기재사항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바르게 되고, 典憲이 저절로 遵守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庶孽들의 上疏에 따라 朝廷에서는 庶類疏通을 적극적으로 論議하게 되었고, 그 結果 文槐武直 등 庶類의 通淸이 실현되어 많은 사람이 官僚로 任用되었다. 특히 이 무렵 全國의 庶類들은 大邱 達西精舍를 중심으로 組織的인 運動을 展開하였는데, 哲宗 9年 正月에는 栗谷書院을 大邱 達西洞에 營建하고자 通文을 作成 配付하였고 또한 같은 해 庶類禁錮와 그 疏通運動의 史料集인 葵史를 發刊하기도 하였다. 通文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⁵⁰⁾

(1) 庶孽들은 많은 數가 先賢의 後孫이다. 우리 나라의 庶類가 無辜하게 禁錮된지가 數 百年이 된다. 天道가 循環하니 物極必反이라 하였다. 宣祖 때 栗谷先生이 庶孽疏通을 힘껏 주장한 이래…… 楓臯 金先生이 癸未獻議를 하는 등 許通을 애써 논의한 결과 近日 疏通之路가 점차 열렸다.

(2) 이는 두 先生의 爲國盡忠이 이 時代를 救하는 힘이 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차 여기서 祠宇를 建立하여 兩先生을 并享, 永世토록 崇奉하자는 것이다.

嶺南은 南人系 黨色人들의 본고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嶺南의 中心部에다 南人系와 敵對關係에 있는 老論系의 師宗이라 할 수 있는 栗谷, 楓臯, 두 분을 모시는 書院을 建立하겠다는 것은 庶孽들이 血緣關係를 초월하여 近族의 反對黨에 들겠다는 것이 된다. 이는 南人系 在野 儒林社會에 있어서는 嫡庶差待의 철폐 내지 완화를 적극적으로 反對하였으며, 老論系 爲政者들이 庶類疏通에 힘을 써왔기 때문이다. 모순 투성이었던 老論系 戚臣政權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半世紀 이상이나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全人口의 過半을 차지하는 庶族들의 支持를 열렬히 받아왔다는 事實과 결코 無關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듬해인 哲宗 10年 4月에는 大邱의 庶孽儒生들이 達西洞에서 講舍를 설치하고자 또 通文을 發送하였다. 通文에서 말하기를 「吾黨之士는 기히 栗谷 李先生의 德을 崇慕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先生의 遺規를 장차 百世토록 전해야 한다. 이번에 建立할 院宇옆에 講舍를 營設하여 先生의 鄉約을 講하고 鄉飲酒禮를 행함으로서 先生의 道를 永世토록 행하게 하려 한다.」¹⁵¹⁾고

150) 『葵史』 『앞의 책』, pp.237~240.

151) 『葵史』 『앞의 책』, p.241.

하였다.

같은 해 11月에는 繼序에 관한 일로 嶺南에서 庶類儒生들이 通文을 發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52)

(1) 國典을 살펴보니 嫡妾子女가 모두 없을 때에만 立後(養子)를 許容하도록 되어 있다. 堯舜 3代 漢·唐·宋·明 以來 血屬이 있으면서 他人의 아들을 取하여 嗣子로 삼는 일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한 즉 그것은 先王之禮도 아니고 또한 時王之制도 아니다. 따라서 立後하는 世俗은 비록 既出子가 있어도 嫡子가 아니면 法을 違反해 가면서 養子를 取하여 祭사를 받드는 것으로서 그것은 위로 하늘과 임금과 祖先을 속이는 것이며, 아래로 自己와 他人과 後世를 속이는 것이다.

(2) 庶子를 두고 他人을 養子로 삼는 것은 國法이 있으면서 遵守하지 않고 父子가 있으면서 父子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栗谷·重峰·愼齊 3先生과 鄭文翼·張玉城·李貞翼·李咸陵·李安分·沈靑平·諸大家는 단연코 여러 무리들과는 달리 庶子로서 承嫡을 시켜 後嗣로 하니 어찌 偉大하지 않는가.153)

(3) 대저 取養之法은 어떤 사람에게 無後가 됨을 차마 보지 못하여 不得已 養子를 取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사람의 아버가 되어서 어찌 그 本心은 自己의 血肉을 버려서 窮人이 되어 돌아갈 바 없게 하기를 바랄 것인가. 다만 習俗이 고루하여 自己 홀로 庶子를 立後시키지 못할 뿐이며, 설혹 그럴 마음이 있어도 남달리 홀로 그렇게 하면 宗族이 庶子를 後嗣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栗谷·重峰·愼齊 등 여러 名臣 大家가 庶子를 세워서 承嫡시킬 그 당시는 庶孽廢錮가 極甚한 때인데도 後嗣로 삼아서 奉祀하게 한 것인데, 하물며 오늘날 庶類廢錮가 점점 풀려 그 당시와 매우 다른 때에 있어서는 말할 必要가 없지 않는가.

(4) 英祖는 50年(甲午) 4月 17日 傳敎하기를 “妾子가 있으면서 嫡妾子 모두 없다 함은 임금을 속이는 일이다. 文武官으로 이미 通淸하였는데, 庶子를 嗣子로 삼지 않고 他 遠寸에서 아들을 구하는 이 무리들은 可히 無父라 하겠다”고

152) 『葵史』 『앞의 책』, pp.242~251.

153) 울곡 이이, 중봉 조현, 신제 주세붕, 문익공 정광필, 옥성부원군 장만, 정익공 이완, 함릉 이해, 안분 이필경, 청평부원군 심한 등을 의미.

하였다. 正祖도 15年(辛亥) 4月 28일 下敎하기를 “士夫家에서 비록 庶子가 있는데도 반드시 他人의 子를 取하여 後嗣로 삼는 것은 非禮요 違法이며 自己를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5) 庶子를 後嗣로 삼지 않고 他人을 養子로 하는 父母에 대하여는 各者가 부드러운 목소리와 온화한 얼굴빛으로 정성과 孝를 다하여 3諫하되 듣지 않거든 울면서 諫하고 號泣하여도 듣지 않거든 머리를 땅에 부딪쳐 피흘리며 거듭거듭 諫하라. 이렇게 하여 世月이 쌓이면 마침내 반드시 감동하게 된다.

(6) 이 發文通告 이후 前習을 고치지 않고 人倫을 저버리게 하는 者에 대하여는 우리들이 소리를 모아 國法을 遵守하지 않는 것과 聖教를 받들지 않는 점을 들어 共討할 것이며, 指名하여 임금의 거동하는 길 밑에서 호소하여 깨닫게 하도록 하자. 通文이 到達하는 곳이면 비록 병어리와 귀머거리, 절름발이 일지라도 모두 기운을 백배로 내도록 하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世紀 中期에는 前世紀의 庶類疏通運動과는 달리 法制問題 보다는 社會現實이 큰 문제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留意할 것은 오히려 庶孽들은 爲政者의 편에 서서 遵法을 주장하면서 王命을 따르고 있지 않은 고루한 庶孽差待 行爲者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事實 이 時期의 庶孽差待는 法制的으로는 거의 解消되어, 淸宦으로 任用될 수 있었고, 特히 經國大典 이래 取養은 嫡妾子 모두 없을 경우에만 可能하도록 되어 있어, 問題는 그 社會的인 不履行에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高宗 元年 正月 18日 王權代行者였던 趙大妃는 庶孽들을 오직 才能에 따라 任用하여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고 兩銓에 命令하였다.¹⁵⁴⁾ 그러나 大院君 執權時期에는 庶孽疏通에 관한 論議나 그 運動에 관한 것이 實錄, 기타의 기록상에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高宗 6年 正月 22日 吏曹에서 官制改正을 論議하면서

「宗代未盡文蔭武入仕者 外職無礙…… 庶派雖未親盡 文科之傀院 武科之宜薦勿許 (承嫡者不在此限)」¹⁵⁵⁾

154) 『承政院日記』, 高宗 元年 正月 18日.

155) 『高宗實錄』卷6, 高宗 6年 正月 24日.

라 하여 庶類 宗親중 國王의 4代孫 以內 者가 文武科나 蔭敍로 入仕할 경우 外職으로는 무방하나, 文科及第者인 경우 槐院分館이나 武科及第者인 경우 宣傳官으로의 薦擧는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承嫡者를 제외한 一般 士族의 庶類가 文槐武宣으로 入仕하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는 哲宗時代와 그 以前 및 英祖末에 許容된 庶類通淸의 길을 도로 막는 것이 되며 歷史의 흐름에 逆流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大院君이 失勢하자 庶類들은 다시금 通淸運動을 벌리게 된 것이다. 즉 高宗 11年 2月 15日 前持平 洪贊燮 등은 聯名으로 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¹⁵⁶⁾

(1) 우리 庶擘들은 모두 昭代之人이며 世族의 家人이다. 肅宗이 門閥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것은 우리 나라의 痼弊라 하여 이를 고치고자 하였으므로, 英祖가 그 遺意를 받들어 文科及第者를 持平과 正言으로, 武科及第者를 宣傳官으로 任用하도록 엄중히 下敎하였다.

(2) 正祖가 말하기를 年前的 臺閣에의 疏通은 先王의 苦心에서 나왔으나, 有名無實하게 되었다고 하고, 匹夫舍冤이면 足傷天和인데, 하물며 그 많은 庶類에 있어서라 라고 하였다. 또 庶類들이 그 포부를 펼 수 없게 된 것이 自身の 過誤라 하면서 3曹의 郎官 및 判官등 參上官으로 「擬望」(임용후보자추천)할 때에 庶類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신칙하였다.

(3) 純祖도 庶類의 訴冤을 깊이 同情하여 廟堂에서 잘 처리하도록 批答하였고 翼宗代理時에도 庶類의 「許通多年에 尙無實效라」하고 정규 인사 이동시에 밖으로 守令, 안으로 淸宦과 郎署 등에 庶類를 반드시 推薦하여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고 下敎하였다.

(4) 憲宗도 庶類禁錮는 「王者立賢無方之義」에 어긋난 일이며 列聖朝의 「前後聖諭」에도 違背되는 일이라 하였고, 哲宗도 庶類를 各各 別도로 선발하여 前과 같이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文之槐院」과 「武之宣薦」등을 許容하도록 하라고 指示하였다.

(5) 庶類疏通을 主唱한 先正臣과 여러 宰臣은 趙光祖·李珥·李彥迪·趙憲·宋時烈·朴世采·李恒福·李元翼·柳成龍·尹昉·吳允謙·李敬輿·金尙容·崔鳴

156) 『承政院日記』, 高宗 11年 2月 15日.

吉·張維·沈之源·金壽恒·趙顯命·崔錫鼎·金相福·金尙喆·李思觀·元景夏·李周鎮·李萊·李秀得·金南重·李省身·李景容·李東稷·金祖淳·趙萬永·李憲琦·金魯應·金履載·沈能岳·金箕殷·趙晉和·徐長輔·吳翰源·權敦仁·金興根·朴永元·李景在·李啓朝·洪鍾英·李嘉愚·姜時永 등이며, 여러 가지 論據로서 庶類疏通을 건의하였다.

(6) 庶孽禁錮後의 「薦拔」 顯仕者는 兵曹判書 李蒙哥, 世子翊衛 柳祖訥, 監役 閔寬 牧使 朴希賢, 童蒙教官 李景臨, 泰陵參奉 趙完堵, 翰林副提學 李敬勝, 宣惠郎廳 禹敬錫, 忠清兵使 李恒林, 副總管 申義清, 童蒙教官 申秉權 등이다. 「槐院宣薦」에 관하여는 그것이 행해진지 오래 되었으나, 昨年 大臣의 筵奏로 「毀盡」되었다.

(7) 우리 庶孽들은 罪없이 世世生生 永久히 棄物이 되어 冤鬱함이 이에 이르렀다. 庶類가 家門에서 버림받은 것은 벼슬길에 나갈 수 없으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或者가 말하기를 祖宗舊制는 갑자기 變改하기 어렵다고 하나 庶孽을 防塞함은 처음의 聖人之制도 아니고 歷代之法도 아니다. 列朝의 憫恤之教와 先賢의 「庶孽을 通用하자고 하는 上奏」는 마땅히 그것을 更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或者는 말하기를 「久塞之通」은 반드시 뒷날에 遺患이 많다는 것이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庶類들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始終할 뿐 뒷날 遺患을 남길 여지가 없다. 또 或者가 말하기를 名分이 壞亂하게 된다고 하나 庶孽疏通으로 父子兄弟의 名分이 壞亂할 여지가 없다.

(8) 朝廷에서 庶類들을 疏鬱하고자 하는 軫念이 自別하고 그러한 公議 역시 存在하였는데도 그 通變에 實效가 없었던 것은 本宗을 不問하고 그 母類에만 따라 「分館排望」하였기 때문이다. 正祖의 「以類備擬, 假則一而已之教」를 읽을 때마다 感興으로 울게 된다. 庶類들은 世世生生 이름만 사람이지만 實은 非人이니 어릴 때는 아무 것도 몰랐다가 자라면서 홀연히 無生之恨을 깨닫게 된다. 거의 一國의 半이 넘는 사람이 百世之冤을 품게 되므로 이 어찌 「天理之所公」이며 「人情之所安」인가.

(9) 庶孽들은 집안에서나 朝廷에서 容納되지 않고 鄉里에서도 行勢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이 陳達하게 되었으므로 處分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8日후 前持平 權鵬圭 등이 聯疏를 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

다.157)

(1) 日前에 죽음을 무릅쓰고 聯名으로 호소하였는데, 承恩의 批答을 받아 感淚가 흘러 내렸다. 지난번 甲子(高宗元年) 春에 趙大妃가 兩銓에 분부하기를 「庶類許通 多年 尙無實效이니 지금부터는 舊規에 구애하지 말고 惟才是用하여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또한 여전히 抱冤한 狀態이다.

(2) 高宗 2년에 頒行된 大典會通 「除授新增條」중에 있는 中庶 2字를 보고¹⁵⁸⁾ 愕然 失圖 하였다. 옛날 重臣 李秀得이 奏議하기를 「庶孽과 中人은 매우 다르다. 中人是 根據地와 돌아가 쉴 곳이 있고, 또한 本來 簪纓之族이 아니나, 庶孽은 外族이 비록 寒微하지만 本宗은 貴族인데, 위로는 士夫의 官職을 얻지 못하고, 아래로 中人之役을 차마 하지 못하여 歸宿할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故 重臣 金履載가 말하기를 「庶類疏通은 仕路則遂許其無礙하고 法典則永除其禁條」라 하였는데, 前後의 章奏가 變通하자는데 있었으니 律令에 따라서 風俗을 고치는 것이 庶類를 疏鬱하는 第一의 良策이다.

이들의 上疏에 대한 反應은 곧 나타났는데, 高宗 11年 3月 5日 次對時에 領議政 李裕元이 “庶孽通淸은 이미 經筵에서 稟하여 復舊하였다. 그러하니 그 地閔을 보아서 槐院(承文院)으로 陞調함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國王은 “國子降調人이 이제 槐院으로 陞調하였으므로 芸閣(校書館) 降調人도 國子監으로 陞調함이 옳다”고 하였다.¹⁵⁹⁾ 같은 날 趙康夏는 分館 降調人을 도로 陞調하라는 筵教에 따라 芸閣人 辛哲求·南相說·鄭元時·權鵬圭·李栽龜·李秉淵·李建容·金羽永·李東相을 모두 槐院으로 올리고, 關西降調芸閣人 崔德明 韓龍珪를 도로 國子監으로 올리며, 芸閣人 尹基周도 國子로 陞調하되, 國子降調人 趙廷祖는 평판이 좋지 않으니 芸閣으로 降調함이 좋겠다고 啓上하여 允許를 받았다.¹⁶⁰⁾

그 후 高宗 14年 4月 6日 經筵에서 庶族이었던 前正言 金基龍, 前掌令 韓競烈, 直講 李載龜 등이 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⁶¹⁾

157) 『承政院日記』, 高宗 11年 2月 23日.

158) 『大典會通』 卷1, 史典 除授에 「중요서 사직서 각릉 중부시 사용원 한성부 오부 참외관 中庶當次則陞遷后以他司換次 尙瑞院則換次備擬」라고 하였다.

159) 『高宗實錄』 卷11, 高宗 11年 3月 5日.

160) 『承政院日記』, 高宗 11年 3月 5日.

(1) 天道가 循環하니 無往不復일세, 人事迭遷에 有屈必伸이라」하는 것은 永久不變의 眞理다. 高宗께서 萬機를 親摠하시고 여러 폐단을 고치사 그 德化를 고루 미쳤다.

(2) 年前 前持平 洪贊燮, 權鵬圭 등이 서로 이어 陳疏하여 特히 官方의 許通을 입어 枯木에 꽃피는 듯 감격하였으나, 다만 한가지 속을 썩히는 아픔과 뼈를 깎는 듯한 원통함은 아직 伸雪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호소하게 된 것이다.

(3) 太祖 즉위 당시에는 단 一條도 庶孽鎔廢의 法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太宗 13年 徐選의 請으로 庶孽을 顯職에 任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成宗 16年 乙巳에 經國大典을 頒行하면서 姜希孟이 子子孫孫이란 말을 添註하여 庶孽을 永世토록 禁鎔하는 弊端이 되게 하였다. 이는 檀箕三韓과 羅麗之時에는 없었던 것이다.

(4) 庶孽들은 본래 喬木之裔요 簪纓之族으로 家傳詩禮하고 各守文武之業하였는데, 어찌하여 (庶族들만) 門地를 不論하고 賢愚를 不辨하여 사람마다 禁鎔하고 世世積塞하였는가, 해가 갈수록 더욱 침체하였던 庶類는 그 數가 繁衍하여 한 나라의 半이 넘었으며, 살아서 사람축에 못들었고, 죽어서는 恨을 품은 귀신이 되었다. 그들은 집안에서 垂頭喪氣하였고 세상에 나가서는 鞠窮抑志하여 살기를 원치않고 無生을 원하였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經國大典과 大典通編, 大典會通의 原·增·續·補 중에 庶族禁鎔의 條文이 있기 때문이다.

(5) 金祖淳이 말하기를 庶類積塞은 歷代 萬國에서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으며 尹行恣은 많은 庶類들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自暴之歎을 하고 있으니, 어찌 天和를 犯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朴趾源은 또 3曹 郎官을 許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列朝에서 更張通變의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金履喬·金魯應·金履載 등도 庶孽禁鎔法의 改革을 主張하였다. 즉 法이란 制治之具로서 오래 되면 폐단이 생기므로 改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6) 純祖 元年 內奴婢 36,974名과 寺奴婢 29,093名을 해방시켜 良民化하고¹⁶²⁾ 承政院으로 하여금 奴婢案을 모아 敦化門 밖에서 불태우게 하였다. 이는

161) 『高宗實錄』卷14, 高宗 14年 4月 6日; 『承政院日記』高宗 14年 4月 6日; 『備邊司謄錄』263冊 高宗 14年 4月 6日.

162) 양반수를 인, 양인수를 명, 천인수를 구(口)로 표기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여

실로 大聖人의 탁월하신 千古의 盛德大惠였으며, 또한 天意와 民心에 승한 것이었다. 庶類에 관해서도 經國大典 및 大典通編과 大典會通 중 吏·兵·禮·戶典에 실린 禁錮諸條項을 일일이 刪改하여 釐革함으로써 그들 千萬人의 無窮한 困憊을 풀어 주면 눈감지 못한 영혼조차 일어나 頌祝할 것이다.

여기 대하여 國王은 批答을 내려 廟堂으로 하여금 稟해서 處理하도록 하였다. 前世紀의 庶類로서는 엄두도 못 낼 淸官인 臺官과 諫官의 자리에 있던 庶孽官僚 兩班이 國王에게 直接 進疏하여 自己네들을 差待하여 왔던 法典上의 規制條項을 삭제하도록 청원하였고, 또한 爲政者로부터 好意的인 反應을 얻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庶孽疏通運動은 거의 實效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庶族의 仕路擴大化와 陞班化

庶孽禁錮 이후 그들의 合法的인 出仕路는 蔭敍를 통한 일부 下位 文武官職과 雜科를 통한 專門技術職 및 吏胥職 뿐이었으나, 18世紀 이후의 꾸준한 疏通運動의 결과 차츰 兩班官僚에의 길이 뚫리고 있었다.

英祖實錄에 의하면 英祖 8年 正月 賤孽 李基邦을 部官에 「首擬」로 「受點」하게 한 事實에 대하여 掌令 李箕獻이 不滿을 토로하였는데,¹⁶³⁾ 吏曹參判 李德壽는 上疏하여 對辯하기를 部官같은 자리에는 종전에도 많이 中庶人이 入仕하였던 것이므로 三望중 二望은 士夫로 「備擬」하고 一望은 李基邦으로 한 것이라 하였다.¹⁶⁴⁾ 그 때 같은 憲官이면서 持平 趙鑣世는 上疏하여 官人을 任用할 때 能否는 不問하고 오직 門閥만 보는 것은 實로 우리 나라의 痼弊라 하고 士夫가 반드시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니며, 庶孽이 모두가 반드시 不肖한 것이 아니므로 部官까지 아긴다면 庶孽들이 어떻게 궁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고 才能에 따라 任用하도록 請하였다. 이에 國王 英祖는 너의 말이 옳다고 하며 그 任用을 銓曹에 신칙하였다.¹⁶⁵⁾

기서 천인수를 명으로 표기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3) 『英祖實錄』 卷31, 英祖 8年 正月 丁亥.

164) 『위의 책』 卷31, 英祖 8年 2月 庚寅.

165) 『위의 책』 卷31, 英祖 8年 2月 己亥.

英祖 16년에는 王命으로 守門將중 세 자리는 庶類인 武科出身者の 許通之階로 하였다.¹⁶⁶⁾ 同王 21년에는 吏曹判書 李周鎭이 上疏하여 庶孽禁錮를 一朝에 改革할 수는 없으나 점점 더 벼슬길을 넓혀야 한다고 하였다.¹⁶⁷⁾ 이에 대하여 領議政 金在魯는 名分이 점점 解弛해지는 날 어찌 庶類들에게 벼슬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인가하고 반대하자 李周鎭은 그 人才의 壅滯를 애석하게 여긴데 不過하다고 하였다.¹⁶⁸⁾ 이와 같이 18世紀 中葉까지만 하여도 庶孽들은 國王과 일부 爲政者들의 깊은 同情을 받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 有力한 疏通反對論者들 때문에 身分地位의 向上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 무렵에도 庶族들은 조금씩 官界에 進出하고 있었는데 英祖 12年 무렵에 金潤·李龍臣 등이 守令으로 任用되었고, 同王 15년에는 守門將 4.5자리에 庶孽을 任用할 것을 春塘臺에서 君臣들이 논의하였으며, 同王 17年 3月 晝講時에도 庶類를 才能에 따라 任用할 것을 논의하였다.¹⁶⁹⁾

그러나 18世紀 後期, 英祖 晩年에 이르러 國王의 깊은 同情을 받고 있던 庶孽들은 增大하는 量的 勢力을 바탕으로 有形, 無形의 個別的인 혹은 集團的인 疏通運動을 꾸준히 계속한 결과 爲政者들의 公論을 庶孽들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끌어갈 수 있었다. 즉, 英祖 41年 6月 領議政 洪鳳漢은 李鳳煥·南玉·成大中等 庶類人才를 차례로 골라서 任用하도록 請하여 國王의 允許를 받았다.¹⁷⁰⁾ 또 同王 45年 司直 李秀得은 上疏하여 庶孽疏通을 請하면서 鄉曲 賤流의 아들도 顯官으로 任用되는데 世族 名家의 庶孽을 子子孫孫 永遠히 禁錮함은 不當하다고 하였다.¹⁷¹⁾

庶族을 任官함에 있어서 하나의 轉機를 이룬 것은 英祖 48年 8月 領議政 金相福의 建議에 따른 庶類의 臺諫으로의 許通에 관한 것이다. 그의 建議는 老年의 英祖의 意思와 完全히 合致하여 呂龜周를 持平으로 尹謚과 吳濬根을 正言으로 任用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庶族이었다. 동시에 庶孽 金就大를 西班 清宦인

166) 『위의 책』 卷52, 英祖 16年 7月 癸酉.

167) 『위의 책』 卷62, 英祖 21年 7月 甲戌.

168) 『위의 책』 卷62, 英祖 21年 7月 己卯.

169) 『葵史』 「앞의 책」, pp.90~94.

170) 『英祖實錄』 卷105, 英祖 41年 6月 壬戌.

171) 『葵史』 「앞의 책」, pp.94~95.

宣傳官에 任用하였다.¹⁷²⁾ 그때까지는 庶類를 官僚로 任用함에 있어서 「許要不許淸」이라 하여 要職까지는 許容할 수 있되 淸職은 不許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淸職인 臺諫까지 庶孽에게 許容하게 되어 事實상 嫡庶차별을 撤廢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이를 固守하려는 완고한 儒林中心의 保守勢力들의 반대 또한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庶類通淸은 正祖代와 純祖初期 즉 18世紀 後期와 19世紀 前期에 걸친 半世紀 동안은 進展이 鈍化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淸職 이외에는 많은 庶類들이 登用되어 實力을 쌓으면서 다음 時代를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進行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庶族의 官界進出의 擴大는 從來 士大夫(兩班)와는 다른 中人身分層으로 인식되었던 그들을 陞班시키기에 족하였다. 英祖는 同王 48年 9月 9日 傳敎를 내려

「庶之見屈 想像可知矣 嗚呼 庶非班乎 庶非班乎」¹⁷³⁾

라 하면서 庶族의 陞班化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같은 해 11月에는 庶類收用令을 公布하여¹⁷⁴⁾ 그들의 벼슬길을 넓혔고 그 무렵 都政時(定期人事 移動時)에는 庶孽 金相念을 西部都事로 任用하였다. 金相念은 庶類通淸을 주장하였던 領議政 金相福의 庶弟였던 것이다.¹⁷⁵⁾

李相佰은 前揭 庶孽禁錮始末에서 英祖代의 庶孽疏通運動의 效果가 有名無實하였으며, 그후 庶孽들의 處地가 더욱 惡化되었다고 하였으나¹⁷⁶⁾ 비록 身分秩序의 붕괴를 두려워한 일부 勢力들의 反作用 때문에 庶孽들이 곳곳에서 구박받는 일이 많아졌을지도 모르나, 위와 같이 庶孽들의 官界進出의 擴大에 따라 그들의 法的 社會的 地位는 착실히 向上 發展되어 갔다. 더구나 19世紀 後期 이후의 公私 記錄속에는 「庶孽亦士族也」¹⁷⁷⁾라 하여 그 前時期의 「庶孽非班意識」이 解消되는

172) 『英祖實錄』 卷119, 英祖 48年 8月 丁丑.

173) 『葵史』, 『앞의 책』, pp.113~114.

174) 『英祖實錄』 卷119, 英祖 48年 11月 丙午; 『葵史』, 『앞의 책』, pp.114~115.

175) 『위의 책』, 卷119, 英祖 48年 12月 辛巳; 『承政院日記』 1333冊, 英祖 48年 12月 21日.

176) 李相佰, 「庶孽禁錮始末」, 『앞의 책』, p.131.

177) 「通塞問答」, 『앞의 책』, p.336; 『葵史』, 『앞의 책』, p.148 「一名之人 均是班

등 英祖代의 庶孽疏通運動의 영향이 결코 有名無實化한 것이 아니었다.

18世紀 後期인 正祖 元年 3월에 國王은 吏·兵曹에 命하여 庶類疏通의 方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丁酉節目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正祖는 下敎하기를 英祖 晩年の 臺閣通淸이 有名無實化하였고, 이로써 많은 庶類들이 원한을 품어 天和가 傷하기에 족하다고 하였다.¹⁷⁸⁾ 그러나 丁酉節目 속에는 庶類를 淸宦으로 소환하는 것이 빠져 있었고, 仁祖代 이래의 許要不許淸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丁酉節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庶類의 文科及第者의 分館과 武官의 始薦은 中進대로 校書館과 守·部 薦으로 한다.
- (2) 庶類文官의 參上許容은 戶·刑·工曹의 郎官에 任用될 수 있다는 것이며, 蔭官과 武官은 各司 判官 以下 자리에 許容된다.
- (3) 庶類文武堂下官으로는 府使, 堂上官으로는 牧使에 限하고 蔭官인 生員 進士는 郡守를 許하되 治績이 있으면 府使를 許한다. 生進科 入格을 못한 者와 引儀 出身者는 縣令에 限하고 治績이 있는 者에게는 郡守를 許한다.
- (4) 庶類文官의 分館은 비록 芸閣(校書館)에 限하나 直講以下 자리는 무방하다. 武官은 都摠府나 訓練院 副正 以上은 안되나 中樞府에는 무방하다.
- (5) 五衛將일 경우에는 文蔭武 堂上 모두가 무방하고 武官인 虞候도 許한다.
- (6) 庶類중 文識行誼가 卓異한 者와 才器政績이 현저한 者에 대하여는 一世公議가 그렇다고 하면 廟堂과 銓曹에서 稟하여 施行한다.
- (7) 我國에서의 用人은 이미 門閥을 숭상하고 있었으니, 庶類도 그 本宗의 家世에 따라 差等を 두어서 任用한다.
- (8) 庶孽이 차츰 仕路에 나가게 된 후 嫡派의 孱弱 때문에 名分을 파괴하고 문란시키는 일이 있다면 「以孽凌嫡之律」로 다스린다.

비록 制限된 범위내이기는 하지만 庶類들의 仕路를 넓히고자 하는 意志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丁酉節目의 시행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正祖는 계속 이를 촉구하였고 그래도 늦장을 부렸던 吏曹判書와 兵曹判書를 推考하였다.¹⁷⁹⁾

族, 此之凡民俊秀 不可」; 朴趾源, 『燕岩集』 卷3-24, 「夫庶孽之與正嫡誠有差等 而 顧其家勢亦一士族」.

178) 『正祖實錄』 卷3-23, 正祖 元年 3月 丁亥.

179) 『正祖實錄』 卷3, 正祖 元年 5月 己巳: 『承政院日記』 1399冊, 正祖 元年 5月

正祖 2年 8月 3道 庶族 儒生 黃景憲 등 3,272人의 集團的인 疏通運動후인 同王 4年 12月 까지도 丁酉節目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正祖는 다음과 같이 下教하였다. 즉, 丁酉節目 成立 이후 庶類任用이 그 前보다 오히려 저조하고 있음을 개탄하고 人事에 反映하도록 吏·兵曹에 當부하고 있다.¹⁸⁰⁾ 또한 그 이듬해 6月 都政時에 正祖는 下教하기를 작년 여름 大政(정기인사이동)時에 서열들을 參上官으로 승진 또는 영전시키라는 王命이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그들이 막혀 있었다¹⁸¹⁾고 하여 王命이 잘 奉行되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후 正祖 7年 正月에는 玉堂에서 庶類登用을 建議하였고,¹⁸²⁾ 同王 9年 2月에는 國王이 3曹 郎官 및 各司判官 자리에 빈곳이 없다 하더라도 자리를 만들어서 庶類를 함께 任用하도록 申飭하였다.¹⁸³⁾ 正祖實錄에 의하면 그때 임금이 下教하기를 “庶類疏通에 관한 丁酉節目이 아직도 遵行되고 있지 않아서 朝廷의 失信이 크다. 要職을 許한다는 것이 有名無實하여 庶類文臣으로 三曹郎官을 거친 사람은 겨우 한 두 사람이며 蔭官인 判官은 추천된 사람이 없다. 이번 人事때부터는 자리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庶類를 같이 추천하라”고 한 것이다.¹⁸⁴⁾

正祖 11年 7月 丁丑 召對時에 國王은 下教하기를 前에 武官으로서 宣傳官에 추천되었다가 降薦된 일에 관하여는 이미 筵教가 있으며, 文臣으로서 臺諫으로 추천된 경우도 그러하다. 英朝 壬辰年(1772) 文臺武宣을 特教하여 通淸한 후에 假窠를 만들고서는 다시 舉論하지 않았다. 丁酉節目이 마련된 후 그것에 관한 하나의 定式이 있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壬辰己通人과 未通人의 區別의 當否에 관하여 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稟處하라고 하였다.¹⁸⁵⁾ 이에 대하여 領議政 金致仁은 丁酉節目이 無物不遂(버릴 것은 없다)라는 聖意에 따라 널리 의논하여 만든 것이므로 마땅히 遵守하여 행할 것이며, 己通人과 未通人을 區別하여 나눌 것이 없다고 하였고, 左右議政도 별다른 異見이 없었다.¹⁸⁶⁾

5日.

180) 『正祖實錄』 卷10, 正祖 4年 12月 甲子.

181) 『위의 책』 卷11-91, 正祖 5年 6月 癸巳.

182) 『蔡史』, 『앞의 책』, pp.139~143.

183) 『위의 책』 pp.143~144.

184) 『正祖實錄』 卷19-23, 正祖 9年 2月 丁酉.

185) 『위의 책』 卷24-5, 正祖 11年 7月 丁丑.

186) 『위의 책』 卷24-16, 正祖 11年 8月 乙卯.

正祖 13年 正月에는 傳敎하기를 淸官을 거친 사람이 무슨 官職엔들 任用되지 못하겠는가 하면서 臺官이었던 庶孳을 敦寧府 都正에 任命하였다.¹⁸⁷⁾ 同王 15年 4月에는 部官 鄭昌暮를 部令으로 昇進시켰으며,¹⁸⁸⁾ 同王 17年 5月에는 銓曹에 申飭하여 庶類收用을 당부하였고,¹⁸⁹⁾ 같은 해 12月과 同王 19年 8月의 大政時에는 庶類를 外職에 뽑아 쓰도록 下敎하였다. 그 결과 成大中·李元膺·尹可基·李集基 등이 守令으로 任用되었다.¹⁹⁰⁾ 正祖 20年 7月에는 嫡系 後孫이 斷絶되어 庶後孫뿐인¹⁹¹⁾ 故將相 李滄의 奉祀孫인 閑良 李德馨을 宣傳官으로 천거, 任用토록 하였다.¹⁹²⁾

正祖는 在位 24년간 庶類疏通을 위하여 여러 차례 下敎하였는데, 그 중에서 栗谷 後孫인 庶類 李恒林에 대하여는 파격적인 승진을 시켰다. 즉 同王 15年 8月 訓練都監의 哨官이었던 그를 만포僉使로 승진시켰고 같은 해 11月에 全羅右水使, 이듬해 9月에는 忠淸兵使로 任用하였으니 不過 1年만에 從 9品職에서 從 2品職으로 14階 뛰어 올랐다. 또 正祖는 老人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庶類인 百歲老人 申義淸을 摠管으로 特任하였고, 그 아들 進士 申秉權을 童蒙敎官으로 任用하였다. 그밖에 正祖 在位中 任用된 庶類 官僚는 前縣監 元重學, 校書校理 成大中, 五衛將 吳正根, 전현감 丁俱祖, 전찰방 李鴻祥, 예빈참봉 李命圭, 봉상주부 崔粹翁, 승문검교 金洪連, 사도직장 南鳳秀, 동부도사 李可運, 검서관 朴齊家, 柳得恭, 李德懋 등 30인이었다.¹⁹³⁾ 그들중 많은 수가 校書館에서 일하면서 正祖의 치세를 빛나게 하였다. 그들은 비록 고위직이나 청현직은 거치지 못하였지만 兩班官僚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1823年 7月 6일, 6도 庶類유생 약 10,000명이 집단적으로 疏通運動을 벌렸는데 그때 朝廷에서는 많은 논의를 한 끝에 同年 11月 이른바 純祖 癸未節目を 성립시켰다. 비변사에서 庶類疏通節目を 議定하는 上啓에 의하면 世宗朝의 限品收用法과 仁祖朝의 啓下節目, 正祖朝의 丁酉定式 만으로는 庶類수용이 미흡하

187) 「葵史」, 「앞의 책」, pp.145~147.

188) 「앞의 책」, 卷32-43, 正祖 15年 4月 乙卯.

189) 「앞의 책」, 卷37-35, 正祖 17年 5月 癸卯.

190) 「葵史」, 「앞의 책」, pp.160~161.

191) 「大東奇聞」, p.469.

192) 「葵史」, 「앞의 책」, pp.161~163.

193) 「葵史」, 「앞의 책」, pp.163~165.

여 이번에 聖敎를 받아서 成憲하였다는 것과 限階를 올리고 淸현의 官職을 일부 수용하는 등 前時代의 法令을 개정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

- (1) 文科及第者의 分館과 武科及第者의 始薦은 丁酉節目에 의하여 校書館과 守門將 및 部將으로 천거하여 시행한다.
- (2) 文官은 중 2品을 限階로 하여 左右尹과 戶·刑·工曹의 參議를 許하고 外任은 牧使에 한한다. 淸宦은 英祖代의 예에 따라 臺官에만 許通하고 그 외에는 不許하되 薦圈없이 선임하는各司에는 무방하다.
- (3) 假注書는 三望이 없으면 典籍과 奉常主簿, 直講의 예에 의하며 단지 成均館의 參서관과 더불어 通擬한다.
- (4) 蔭官은 牧使에 한하고 初仕로는 部都事 監役 守奉官 등은 무방하다. 廟社陵殿의 宮官과 桂坊 敎官 등 직위는 丁酉節目에 따라 許容되지 않으나 그밖에는 각 該曹에서 구애치 말도록 한다.
- (5) 武官은 중2품 兵使를 限階로 하나 訓練正 副正 등 通望之職은 不許하고 그 외 각사 및 參下 武兼四山參軍 등은 모두 무방하다.
- (6) 文武官을 막론하고¹⁹⁵⁾ 摠官 西北關 亞將 등은 卿宰重選之職이므로 左右尹과 兵水使를 거치지 않으면 불허한다.
- (7)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既히 門地를 숭상하였으므로 庶類도 그 家閥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한다.
- (8) 文識行誼의 卓異者와 才諳政績의 著見者는 마땅히 常規에 따르지 않고 골라쓰되 一世의 公議에 따라 廟堂과 銓曹에서 稟旨하여 시행한다.
- (9) 지금부터 각도에서는 庶類에게 한 자리를 加定하여 천거하되, 士論을 널리 모아 孝悌力田 經明行修之人을 각읍에서 보고받아 이를 朝廷에 上聞하여 임용하게 한다.
- (10) 외읍의 校院 儒鄉 및 鄉任을 委囑함에는 監司와 守令이 庶類疏鬱之政에 특히 着念하여야 한다.
- (11) 지금 仕路에 疏通한 후에 嫡派의 殘弱으로 말미암아 명분을 毘란하는 자가 있으면 正유절목에 따라 「以擘凌嫡之律」로 처벌한다.

194) 『純祖實錄』 卷26. 純祖 23年 11月 丙子.

195) 여기서의 文武官이란 文科급제자와 무과출신자인 判官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文官의 分館과 武官의 始薦은 종전과 다름없이 嫡庶간에 差待가 있었으나 限品에 있어서 종전의 正三品에서 從二品으로 올라갔다는 것과 淸宦中 臺官이 許容되어 반세기동안 死文化 되었던 英祖 임진처분(通淸)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물론 계미절목 議定 당시 반대론자인 호군 金鱗은 庶類가 비록 淸顯職에는 許容되지 않아도 東西班正職을 고루 거칠 수 있어 陞班되기에 족하며, 常民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판이한데 여기다가 또 淸顯職에 許通하면 명문화족의 嫡子孫과 혼동되어 區別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⁹⁶⁾ 그러나 원로 대신들을 비롯한 많은 고급官僚들이 庶孽의 通淸에 찬성하여 비록 淸宦중 일부에 국한된 자리였지만 庶孽들이 任用되어 地位가 향상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庶類通淸에 반대한 사람까지도 庶類를 士族이라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前世紀와 매우 다른 인식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의식구조가 탈중세적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庶類를 任用함에 있어서도 家閥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규정을 첨가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憲宗·哲宗代에도 집단적인 庶類疏通運動이 거듭되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哲宗 4年 4月 國王과 金大妃는 회정당에 임석하여 庶孽疏通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때의 군신간의 대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⁷⁾

- (1) 領議政 權敦仁은 庶類가 本宗의 華閥, 冷族임을 불문하고 校書館으로 무차별 分館되고 있다고 하면서 「名賢故家之裔」와 「鄉士大夫之後」는 비록 庶類이나 「遐鄉卑微者」와는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도 그들 遐鄉卑微者가 槐院(承文院)이나 國子監(成均館)으로 많이 選入되어 庶類가 도리어 그 밑인 敎서관에 분관되니 이것이 庶類의 至恨이요, 朝廷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인사행정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文槐武宣」으로 庶類를 分館, 始薦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廟官이나 各陵寢祭官으로도 庶類를 뽑아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196) 『純祖實錄』 卷26, 純祖 23年 9月 甲戌.

197) 『備邊司謄錄』 238冊, 哲宗 2年 4月 15日: 「葵史」 『앞의 책』, pp.225~234.

- (2) 左議政 金興根, 右議政 朴永元, 兵曹判書 李嘉愚, 知敦寧 李啓朝, 護軍 禁將 白殷鎮, 同知御將 李景純 등 많은 중신들이 領議政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 (3) 哲宗이 말하기를 비록 서민의 아들일지라도 마땅히 그 才能에 따라 任用해야 하거늘 하물며 庶類인 有才者인 경우에 있어서라 라고 하였다.
- (4) 領相은 진실로 그렇다고 하면서 국가의 用人의 法이 귀천에 있지 않고 그 才藝에 따라야 하는데 庶類인즉 비록 才藝가 있는 사람이라도 選用되지 않으니 어찌 억울하다는 탄식이 없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大王大妃도 天地間에 어찌 이같은 억울한 일이 있는가 라고 하였다.
- (5) 哲宗은 庶孽이 癸未年(1823)에 이미 疏通되었는데 그 동안에 왜 임용되지 못하였는가를 물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있을 직후 哲宗은 庶類를 각별히 임용하도록 하명하였으나¹⁹⁸⁾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아서 同王 4月 8일 領議政 金左根은 文武及第者가 槐院에 分館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은 고사하고 武科출신자가 매우 적체되어 있으니 宣薦을 許容하자고 주장하였다.¹⁹⁹⁾ 그후 庶類 宣薦을 이행하지 않은 行首 宣傳官과 所任宣傳官을 유배하고 庶類인 武科출신자 洪泰圭·金顯成·李鍾麟·徐光烈·金奎淳·李昱永·李熙純·金成集·柳從燮·柳命根 등을 宣薦하였다. 이로부터 매 人事이동 때에 10인을 取할 것을 定式으로 하였다.²⁰⁰⁾ 그리고 同王 5年 正月에는 戶曹判書 金炳冀가 庶類 洪吉謨·李叶求·姜彝五를 절도사로 천거하였다.²⁰¹⁾ 또한 同王 8年 正月에는 掌令 李杓가 上疏하여 庶類인 文科及第者를 分관함에 있어서 그 地閔을 보아 武宣薦의 예에 따라 槐院(承文院)에 分관하도록 청하여 國王으로부터 묘당에서 품의하여 처리하라는 批答을 받았다.²⁰²⁾

이로써 보면 庶孽들은 差待의 마지막 보루였던 「文槐武宣」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大院君이 執權한 후 다시금 이를 막아버림으로서 그들은 10년간 침체의 늪을

198) 『哲宗實錄』 卷3, 哲宗 2年 4月 辛未.

199) 『위의 책』 卷5, 철종 4年 8月 丁酉.

200) 『葵史』 「앞의 책」, pp.235~236.

201) 『葵史』 「위의 책」, pp.236~237.

202) 『哲宗實錄』 卷9, 哲宗 8年 正月 己未; 『備邊司謄錄』 244冊, 哲宗 8年 正月 22日.

해매게 되었다. 그러나 大院君이 실세하자 그들은 축적된 양적인 勢力에 의하여 변화된 질적 여건을 갖고 臺諫을 지낸 바 있던 清宦인 庶孽을 필두로 國王에게 聯疏함으로써 상실되었던 그들의 地位를 회복하게 되었다. 즉, 高宗 11年 3月 5日 次對時에 領議政 李裕元은 庶類通淸이 복구된 것은 실로 盛德事라고 찬양하면서 趙康夏와 더불어 分館降調人 등을, 芸閣에서 槐院으로 陞調시켰던 것이다.²⁰³⁾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庶類들이 官僚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된 요소들이 거의 제거되어 누구도 능력만 있으면 清宦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분관에 있어서도 적출자와 아무런 差待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은 각 法典 속에 있는 嫡庶差待 조항을 말끔히 일소하여 형식적인 差待요인조차 남기지 않도록 高宗 14年 4月 6日 庶類인 官僚(청환)들이 聯疏를 하였고 그 결과 高宗 19年 7月 22日(大院君이 청국으로 납치되어간 직후) 高宗은 다음과 같이 下敎하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있다.²⁰⁴⁾

즉 이제부터는 마땅히 用人之路를 넓혀서 西北人, 松都人, 庶孽, 中人, 胥吏와 軍伍 등을 顯職에 일체 通用하여 오직 才能에 따라 천거함으로써 특이한 才能을 가진 자는 안으로 公卿百官과 밖으로 方伯, 守令으로 가려서 쓰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보아 庶孽은 지역적으로 차별받던 서북인과 개경인 및 계층적으로 兩班 밑에서 굴종하였던 전문기술官僚(中人), 아전 등과 함께 淸顯要職으로 아무 制限없이 任用하도록 된 것이었다.

흔히 大院君 執權時期에 당색, 嫡庶 등 身分계층상의 차별없이 능력에 따라 人才를 登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²⁰⁵⁾ 事實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즉 人事에 있어서의 지역간 및 嫡庶身分상의 差待廢止는 안동김씨 外戚政治時代에 성숙되었다가 大院君이 실각한 후 여흥 민씨 外戚政治時代에 완료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大院君 執權時期는 封建的 身分秩序의 維持에 더욱 노력하였고,

203) 『高宗實錄』卷11, 高宗 11年 3月 5日.

204)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7月 22日: 『高宗實錄』卷19, 高宗 19年 7月 22.

205) 진단학회, 『한국사』 최근세편(을유문화사, 1961), pp.165~172; 李瑄根 『大韓國史』6(韓國出版公社, 1984), pp.24~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6, (탐구당, 1981), pp.58~62; 이선근 『대원군의 시대』(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81), pp.80~85.

嫡庶差待 조치를 후퇴시키는 등 그 반동기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신이 속한 階級이나 환경의 한계성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데 大院君의 生家家系는 인평대군 이후 전통적으로 南人系 嫡出後孫으로 庶孽에 동정적이었던 老論政權의 시책에 호의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黃玟은 『梅泉野錄』 卷 1에서

「雲峴之始得政也 嘗因公會盛氣向諸宰曰 吾欲引千里爲咫尺(宗親登用), 吾欲剗泰山爲平地(老論排除), 吾欲高南大門三層(南人重用)……」²⁰⁶⁾

라 하여 大院君은 재야의 일부, 종친과 南人을 登用하는데 힘썼고 自己 주변 인물인 중하층階級の 일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썼을 뿐이라 하겠다. 반면 王家로 입양하였던 高宗은 老論으로 自處하면서,²⁰⁷⁾ 嫡庶差別 철폐에 앞장서서, 그가 親政을 하게 되자, 지역간의 差待 撤廢와 함께 中庶人들을 중용하는 교서를 발표하고 많은 庶類들을 고위직으로 登用하였던 것이다. 또한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庶孽의 身分上의 地位가 中人과 같아서 官僚로서 營將 中軍 裨將 등 중하급武官직이나 혹은 郡衙의 冊室 學官, 檢書官, 察訪, 監牧官 등 미관말직 밖에 登用될 수 없었는데, 庶類가 날로 번성하여 전국 戶口의 반을 차지하자 옛날과 같이 永久히 禁錮하지 못하고, 淸顯職으로 許通하게 되었으며, 그들중 많은 수가 甲午이후에는 고관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²⁰⁸⁾ 따라서 앞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庶孽들은 甲午改革 이후에 비로소 疏通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通淸되어 있었는데 甲午改革 이후에 그들이 대거 승진하여 고위직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206) 황현 『매천야록』 卷1, 上, pp.3~4 및 9.

207) 황현, 『위의 책』 p.43에 「上以老論自處 待群臣區別三色, 殊貶薄, 若參下官之出六也, 極其淸華, 老論則待教 少論則翰林 南北則注書 以此軒輊 他官類是……老論則曰親舊 少論則曰彼邊 南北曰厥漢」이라고 하였다.

208) 황현, 『위의 책』 卷1, 上, pp.93~94.

〈附錄〉

朝鮮後期 兩班官僚의 任用·昇進·轉補 事例分析*1

1. 序言

朝鮮後期の 官僚制度에 관한 先行研究는 적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兩班 官僚들의 任用·昇進·轉補가 어떻게 행하여졌으며 制度和 現實間의 乘離結果가 어떠한가 하는 점에 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은 많지 않았다.

本稿에서는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教旨와 教牒中 18, 19세기 양반관료 7명의 것 538枚를 분석검토함으로써 그 당시의 관료계의 실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인원의 선정은 무작위 추출방식이었으며 그 이외 인원에 대한 教旨내용도 같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朝鮮王朝는 朱子學的 신분질서하에서 토지경제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용하였던 封建官僚國家였다. 비록 형식적으로 왕이 萬機를 摠攬하는 絶對君主體制였으나, 실제 국정운영의 담당자는 관료들이었다. 또한 在野 士族에게도 광범하게 언로가 개방되어 있어서 儒疏形式으로 국정수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던 고위관료라 할지라도 국가권력을 恣意로 행사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재야사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던 士林出身의 下位官僚(政曹의 郎官, 玉堂, 台諫, 翰林 등)가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컸었다.

그러나 朝鮮後期 老論一黨獨裁政權이 확립되자 다수의 善類들은 재야로 은퇴하고, 중앙정계에는 탐욕스러운 權貴들이 남아서 국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제반 모순이 누적되고 있었다. 역사의 발전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儒

* 이 글은 李鍾日, 「朝鮮後期の 官階官職의 除拜陞遷考」, 『政策論叢』 1卷(1986, 서울 大學校 行政大學院)을 요약하여 再錄한 것이므로 註가 생략되었다. 惠諒을 바란다.

教的인 循環史觀에 젖어 있던 집권관료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능력을 잃고 그저 形而上學的인 理氣哲學의 정신세계에만 멈추어 있었거나 무가치한 詩賦의 암송에만 寧日이 없었다. 더구나 중앙부처의 양반관료들이 朝除夕遞式으로 인사이드가 되고 있어 비록 실무에 의욕이 있는 자들이 있어 말은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여도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의 실무권한은 일에 밝은 中人이나 吏胥에게 돌아갔음은 불가피하였다. 中央吏胥들은 대개 同一官司에 장기근속을 하였고 집권세력과 깊은 인간적인 紐帶關係가 형성되고 있었으므로 정권이 그들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한편 일찌기 중앙정계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갔던 善類官人들의 후손은 代가 내려올수록 빈곤해져서 良人인 농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세기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民亂의 주체는 이들 晝耕夜讀의 농촌지식인 즉 士族出身 농민들이었다. 또한 在野 士族 중에는 朝鮮後期の 정치·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제개혁을 비롯한 제반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였고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을 주창한 실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며, 더구나 고대 周禮思想과 洙泗學的 유교정신으로 회귀하자는 점에서 반동적이란 비판도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의 주장속에서 근대지향적인 民權思想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한국근대화의 맹아와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계기를 거기서 찾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여하간 실학자들의 제반 개혁안은 20세기에 와서야 재평가되었을 뿐 그 당시 위정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당시의 현실적인 인사제도와 그 실제운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2. 朝鮮王朝의 官階·官職體系와 人事權의 行使者

태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의 관제는 麗制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리고 麗制

는 唐制를 모방하여 만들었다고 高麗史 百官志에 明記하고 있다. 唐制는 周禮의 三公(太師·太傅·太保), 六官(天官冢宰·地官司徒·春官宗伯·夏官司馬·秋官司寇·冬官司空)制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秦漢과 魏晉南北朝를 거치는 동안 三師, 三公, 六部(吏·戶·禮·兵·刑·工)로 정착되어 동양각국의 정무기구와 관료조직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九品官階制는 周官 九命制에 연원하고 있는데, 丁若鏞은 經世遺表 天官修制에서 「周公制禮最嚴於大夫·士之等級」이라 하여 大夫와 士(郎官)의 峻別을 강조하고 있다. 唐制와 麗制에서의 文散階는 五品以上이 大夫, 六品以下가 郎(士)이었으나 元나라의 간섭에 의한 高麗 忠烈王 34年の 관계개혁으로 4품이상이 大夫, 5품이하가 낭으로 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조선왕조의 관계체계로 넘어 온 것이다.

조선왕조의 관계는 流品을 정·종 18품으로 나누었고, 6품이상의 경우, 上下 資級으로 다시 나누었다. 西班官僚의 1-2품 資級은 별도로 두지 않고 東班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8品階 31개 資級 중 정3품 通政大夫 이상과 折衝將軍 이상을 堂上官이라 하여 그것이 顯官일 경우, 많은 특전을 부여 받고 있었다. 堂下官은 정3품 通訓大夫 이하와 禦侮將軍 이하를 말하는데, 그중 종6품 宣務郎 이상과 乘節校尉 이상을 參上官 또는 參內官이라 하였고, 정7품 務功郎 이하와 迪順副尉 이하를 參下官 또는 參外官이라 하였다. 堂上 堂下의 구분은 원래 朝議를 행할 때 堂上의 交倚에 앉을 수 있나 없나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라 하나, 조선왕조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이 太宗實錄에 나타나 있다. 즉 堂上官과 郎官이 交倚에 同坐하여 일을 봄으로써 中國制度와 麗制를 잃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郎官은 議事가 있을 때는 升堂하되 堂上관 밑자리에 앉아 일을 본후 本廳에 돌아가서 命을 받들어 公務를 수행해야 한다고 禮曹에서 上疏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朝鮮成宗朝 이후, 郎官權의 강화로 잘 이행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낭관권에 관해서는 뒤에 상술하기로 한다. 그 다음 參上 參下의 구분은 朝參에 참여할 수 있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하나, 太宗實錄에 「前朝參外 不入朝班 今者參外 皆參朝

列」이라 하여 고려때는 參外官이 朝班에 들지 않았으나, 조선에서는 모두 朝班에 참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流品內의 관원에 대한 임용형식은 4품 이상(大夫와 將軍)은 教旨, 5품 이하는 奉教로 되어 있다. 教旨는 처음 官敎라 하였던 것으로, 「施命之寶」라고 하는 璽寶가 押捺되어 있었다. 봉교는 銓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내린 教牒이란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데 「吏曹之印」(文) 또는 「兵曹之印」(武)이 押捺되어 있었다.

관직은 광의로 流外 雜職이나 吏胥職을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으로 流品內의 것만 의미한다. 流品에는 文科를 통하여 입사하는 東班職과 武科를 통하여 입사하는 西班職 뿐만 아니라 山林에서 천거된 隱逸, 雜科를 통하여 入仕하는 전문직 및 門蔭을 통하여 입사하는 蔭職 등이 있었다.

流品內의 관직도 官階와 같이 9品 18階로 되어 있으나 官品과 職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行守法이 생겼다. 上位官階者가 下位官職에 임명된 것을 行職이라 하였고 그 반대의 경우를 守職이라 하였는데 조선후기에 이르러 행직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것이 實職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여하간 流品內의 관직을 實職과 虛職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實職에는 正職과 遞兒職이 있었고 虛職에는 影職과 散職이 있었다.

正職은 職事가 뚜렷한 顯官의 職窠를 의미하는데, 議政府와 經筵, 吏·禮·兵曹 등 政曹의 당상관과 낭관, 옥당과 대간, 承政院 등의 관원, 史官과 翰林 등 華·清·要職과 기타 大小 官司의 관직을 말했는데 이 시대의 관직의 특색은 품계가 높을 수록, 또한 청요직일수록 겸직이 많았다. 겸직의 職窠는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 本職의 職窠였던 것이 특별한 경우에만 겸직으로 되는 것도 있다.

遞兒職은 麗制와 조선국초의 관제에는 없던 것으로 世宗 때부터 제도화한 것이라 한다. 遞兒職의 성립은 麗末 添設職 등으로 인한 관직의 濫授와 虛職化한 軍職에 대한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經國大典에 나타난 遞兒職의 種別은 東班遞兒와 西班遞兒로 대별할 수 있다. 동서반遞兒 중에는 醫譯·算觀·象律·寫字 등 기술 기타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中人階層의 遞兒와 彭

排·隊卒·破陣軍 등 兵種에 속한 賤人 등의 잡직 遞兒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兩班特殊 軍兵의 受職과, 문무양반관료의 임용전후 및 대기발령시, 祿俸을 주기 위하여 활용하는 서반 遞兒(軍銜 遞兒)였다. 특히 朝官의 隨闕敍用을 위한 豫備 遞兒로 활용되는 軍銜 遞兒였다. 특히 조관의 수컬서용을 위한 예비 遞兒로 활용되는 軍銜 遞兒職은 正職의 4·5배가 되었다고 하며 高位官階者가 하위군직을 받아서 官品의 高下觀念에 혼선이 있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은 조선전기 世祖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이에 협조한 多數人에게 官階·官職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한다. 즉 實職은 有限하여 합부로 올려줄 수 없었으나 官階는 무제한으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濫授하다보니 결국 관직 인플레이가 되어, 堂上官階를 가진 자가 심지어 8·9품의 末端軍職까지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후대에서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반계 柳馨遠은 遞兒職에 관해서 「無定祿而四時考講 以其分數 遞相高下 付祿 謂之遞兒」라 하여, 定祿이 없고 四時考講하여 그 성적으로서 高下를 서로 바꾸어 付祿한 것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虛職을 살펴보기로 한다. 影職이나 散官職 등 虛職 중에서는 納粟授職과 老人職이 매우 많았음은 조선후기 戶籍臺帳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納粟이나 老職 등으로 당상관계를 받아도 免賤·除役 등은 논의로 하고 士族으로 陞班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納粟補官은 국가에서 곡식을 받고 벼슬을 판 賣官정책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賤人들까지도 中樞院 僉知事(正三品)의 관호를 가졌고, 무지몽매한 백성들까지도 參判의 資級(從二品 嘉善大夫)을 얻었을 정도로 國家公器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납속보관제도는 일찌기 BC 2세기경 중국의 漢文帝 때부터 확립된 것이며, 그 당시 군신들은 그것을 매우 좋은 재정정책으로 받아 들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말기에 국가재정부족과 飢民賑恤 및 軍糧米를 충당하기 위하여 納粟補官制를 시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서 납속보관문제가 논의된 것은 世宗朝였으나 그 시행은 成宗 때라 하는데 성종실록에 의하면 徐居正의 건의에 의거, 왕은 該曹로 하여금

의논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후 조관들은 찬반양론을 거듭하다가 成宗 16年 8月 壬辰에 이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후 明宗 8年, 경상도 지방의 기민 구제를 위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였으며 선조 26年, 戶曹의 건의에 따라 納粟事目이 공포되고 納粟帖, 空名帖의 매매가 성행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光海朝와 仁朝에 약간의 賣官 사례가 있었고 孝宗代는 주춤하였으나, 顯宗·肅宗年間에는 흉년이 되면 빈번한 賣官賣爵이 시행되고 있었으니 肅宗 16年の 飢饉 때에는 嘉善·通政·同知·僉知·判官·別坐·察訪·主簿·僉使·萬戶·護軍·司直 등 空名帖 이만장을 八道에 分送하여 賣却토록 하였다. 이러한 납속보관정책은 조선후기의 안정기라는 英·正祖時代에도 그대로 존속하였는데 惠政要覽에 의하면, 正祖 卽位年에서 同王 17年 까지 18년간 도합 23,310枚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결과 18세기 말에 이르면 家家戶戶에 教帖이 있을 정도로 그 가치가 폭락하여 願賣者가 없어 강매현상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 다음 老人職에 관하여 경국대전에 의하면 「年八十以上 勿論良賤除一階」라 하여 80세가 되면 良人, 賤人을 막론하고 한 품계를 제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人生七十古來稀인데, 人間八十無賤人이라」는 유교적 인생관에서 나온 것이며, 오랜 전통을 가진 경로사상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겠다. 동양사회에서 경로사상이 형성된 것은 秦漢時代까지 소급하여 생각할 수 있다.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한 후, 全農民을 유효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20개의 官階組織으로 묶어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도 年功으로 加階하여 高령자가 上位爵級에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秦制를 漢帝國이 계승하여 奴婢 등 賤人을 제외한 모든 농민들에게 1級에서 8級까지 관작을 주어서 老少의 尊卑秩序를 확립하여 젊은이는 노인에게 절대복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秦漢代의 官階制度는 「長幼有序」란 유교적 윤리관과 함께 唐代를 거쳐서 高麗에 들어 왔으며 조선국초에 老人職으로 법제화된 것이라 생각된다. 老人職은 世宗朝 이후 조선말기까지 무수히 수여되고 있었음이 조선왕조실록 기타 사료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官階 以外 官職까지 주자면 職窠가 부족하여 影職을 제수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名實이 不附合하

로, 세종 26년부터, 職銜없이 散官(官階)만을 제수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正祖代의 大典通編에 의하면 「常賤老職勿許崇政 曾經正卿外勿許輔國」이라 하여 常民과 賤人에게는 비록 노인직일지라도 崇政大夫(중1품)까지는 줄 수 없게 하였고, 또한 士族官僚라 할지라도 長官級인 正卿(정2품)을 거친 사람 이외는 輔國崇祿大夫(정1품)를 제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소나마 官階秩序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常賤人일지라도 정2품 正憲大夫까지 줄 수 있고 正卿을 거치지 않은 士族에게는 중1품 崇祿大夫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노인이 얼마나 존대받고 있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더구나 조선왕조말 高宗 때 法典인 大典會通에 의하면 「士庶百歲人 直超崇政」이라 하여 百歲만 되면 士人이건 庶民이건 바로 중1품 崇政大夫의 資級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엄격한 朱子學的 신분질서가 유지되었던 사회였으므로 官品의 高下보다, 신분의 청탁을 더 중시하였으므로 외형상은 敬老至上인 듯하였으나 실제상은 젊은 郎官들이 실권을 잡고 국무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특히 吏曹·兵曹·禮曹의 낭관과 承政院 注書 등의 후임자 自薦制와 弘文館 校理 修撰 등의 임명시의 弘文本館錄圈点制, 藝文館 檢閱의 임명시의 翰林本館圈点制, 五品以下(外官인 경우 四品以上 포함) 朝官任用時의 臺諫의 署經權 등으로 인사권의 비중이 왕이나 당상관들에게 보다도 그들 郎僚들에게 더 크게 있었다.

물론 宰相府나 六曹의 堂上官들이 인사권 행사에 전연 관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차적인 인사권행사자인 銓郎과 銓曹를 감시, 감독할 수 있었고 특히 영조 이후에는 2차 심사권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후기 문무 고위관직자의 합의체기관이었던 備邊司의 권한은 강대한 것이었으므로, 英祖 이전에도, 비변사의 銓曹에 대한 통제기능 또한 과소평가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燃藜室記述에 의하면 堂下官을 堂上守令에 임용하자면 三司出身者가 아니면 注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李廷機를 江界府使(堂上守令)에 陞拜시킨 吏曹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하여 備局에서는 同人을 改差하고 吏曹당상을 추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備邊司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당상관을 임용함에는 循資法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臺諫의 署

經도 거칠 필요가 없어 왕이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상 銓郎과 臺諫에 의한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銓郎權의 형성과정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조선 전기부터 인사권을 둘러싸고 상하관료간에 심각하게 대립, 갈등하여 오다가 조선중기에 이르러 당쟁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인데 이러한 현상은 조선왕조 전기 성종 때부터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인사권은 銓曹에 맡겨 행사해야 하는데 吏曹, 兵曹, 禮曹의 郎廳이나 承政院注書들이 동료들을 自薦하고 있으니 政務가 여러 곳에서 나와, 나중에 朋黨化될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郎官權의 확립은 중종 때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天下國家가 굳건히 유지되자면 尊卑의 서열과 上下之分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官爵이 상하로 나누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後進이 선배에게 오만하게 대하고 낭관이 당상관을 모욕하며 小儒가 卿相을 논하니 인륜과 예의가 무너지고 붕괴되었다. 이것은 卑官小臣이 인사권을 가졌고 또한 국가정무가 밑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낭관권의 확립은 士林들의 등장과 연로확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趙光祖 일파의 정계진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비록 己卯士禍로 그들은 숙청되었으나, 재야 지식인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던 이른바 己卯 名賢들의 의지는 후계자들에 의하여 이어지고 있었다. 명종실록에 의하면 밑에 있는 자가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리어 상관이 밑의 사람들을 두렵게 여기며 六卿以上이 무능하게 되어 下官이 모두 獨斷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선조때에 이르러 당쟁이 발생하자 왕은 1583(선조 11년) 7월 分黨之禍가 대개 吏曹郎官의 薦望制度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今後罷其規式」이라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都承旨 朴謹元 등은 上啓하여 郎廳制革罷를 반대하였다. 즉 銓曹의 郎薦制는 법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옛날부터 規例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 금번에 만약 이를 폐지하고 당상관으로 하여금 薦望하게 한다면 混進雜用之患이 많을 것이며, 일시에 淸論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것,

하물며 銓長者(吏判·兵判)는 모두 年老한 先進이라, 新進을 뽑아 臺閣에 배치할 때 만약 郎僚들에게 그 可否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는다면 잘못 用舍할 것이며, 權奸이 죽히 誤國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郎官의 薦望制는 폐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判書와 參判의 임용문제까지 銓郎들이 간여하고 있었다.

仁祖代에 이르면 郎官自薦制의 폐단이 극도에 달하여 이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었으니 燃藜室記述과 인조실록에 의하면 郎薦制度는 吏曹, 兵曹의 당상관을 포함한 兩銓機構 그 자체의 직무를 잃게 하는 것이고, 吏·兵曹의 낭관들이 자천하게 되니 堂下 清要職의 추천과 임용이 모두 낭관의 손에서 나왔으며 이러한 전랑의 권한이 偏專하여 每番의 郎薦時마다 年少한 名流가 서로 뽑어대고, 서로 배척하여 黨論의 근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낭관의 천망권은 그때 폐지되지 않았기에 다시 104년후인 영조 17년(1741)에 銓郎의 通清之規를 혁파하라는 왕명이 있게 되고, 영조 19년(1739)에는 侍從을 거친 사람을 吏曹낭관에 추천하여 임용토록 명령한 것이다. 이로서 전랑의 인사천망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그것이 權貴의 손에 집중됨으로써, 그 후 銓郎은 臺諫과 더불어 별볼일 없는 자리(冗官)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국가의 公器인 관직은 一黨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18세기말 한 때 正祖의 治世중, 인재를 고루 등용코자 한 시도가 있었지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것이 제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9세기 老論系 戚族政治時代에 이르러 관직이 一黨의 전유물에서 다시 權貴數家의 私有物化되었다. 그래서 在野 士民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戚族政權은 말세의 길로 치달게 되었던 것이다.

3. 朝鮮後期 官階·官職의 除拜陞遷 事例分析

조선후기의 老論一黨獨裁政權은 自黨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먼저 郎官 薦望權을 없애, 관료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하고, 臺諫의 傀儡化와 儒疏禁止措置 등으로 언로를 봉쇄함과 동시에 「勿失國婚 崇用山林」이란 黨是 아래 왕

실과 거듭되는 혈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야 불만세력을 높은 벼슬로 희유, 포섭코자 하였다.

재야세력의 대표자를 儒賢·隱逸 또는 山林이란 이름으로 徵召하여 科擧及第出身인 관료들의 윗자리에 앉혔는데, 茶山 丁若鏞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즉 관료로 첫재, 儒賢(經明行修之人)을, 둘째, 科擧出身者(治理才諳之人), 세째, 蔭官을 뽑아야 한다고 하여 그 당시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인식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 儒賢으로 徵召되어 受職한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淸宦과 顯職의 절대다수는 과거출신관료였으므로 本稿에서는 이들의 官歷을 분석하여 관료사회의 일단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姜銑은 1675년 문과급제 당시에 이미 蔭敍로 정5품 通德郎의 官階를 갖고 있었으나 관직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문과급제 2년후인 1677년 3월 29일 비로소 관직을 받았는데 그것도 종9품 龍驤衛 副司勇이란 遞兒職이었다. 그 당시 그의 官階는 이미 정3품 禦侮將軍이었다. 그 후 그는 한 달이 못되어 종7품 副司正으로 올랐지만 6개월후 다시 종9품 副司勇으로 내려 갔다. 2년후 그는 종6품 副修撰, 정6품 正言, 정5품 持平 등 正職과 종6품 副司果, 종5품 副司直 등으로 승진하였지만 2개월후 다시 종6품 副司果로 강임되었다. 1680년~1689년초까지 10년간의 그의 관력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 기간은 庚申大黜陟에서 己巳換局까지의 南人系 추방기로서 아마 姜銑은 南人系 또는 親南人系 인물로서 관직을 받지 못하고 재야에서 때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여하간 姜銑은 문과급제한지 14년후가 되는 1689년 윤3월 淸宦인 校理를 거쳐 1689년 6월 당상관이 되었다. 그는 通政大夫, 刑曹參議가 된지 넉 달만에 承政院 右副承旨가 되었고 거기서 15일, 그 다음 副司直 2일, 刑曹參議 8일, 兵曹參議 7일 등으로 짧게 있다가 遷職되었고, 이어서 左右 副承旨, 同副承旨, 右承旨, 驪州牧使, 左副承旨, 右承旨, 觀察使, 判決事, 右承旨, 左承旨, 右承旨, 遞兒職, 刑曹參判, 遞兒職, 同知中樞府事, 刑曹參判, 遞兒職, 兼副摠管, 兼同知義禁府事, 同知中樞府事, 遞兒職, 漢城左尹, 同右尹, 刑曹參

判, 遞兒職, 刑曹參判 등 순서로 전보되었으니, 일찌기 李睟光이 말한 그대로 가히 朝更暮遞라 할 정도였다. 일부학자는 그것이 芝峰의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한 듯 하였으나, 이번의 教旨分析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그것은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러한 현상은 조선후기의 下代로 내려올수록 더 했다고 생각된다.

그 당시의 士族官僚들은 유교경전에 입각한 고차원적인 理氣哲學 내지 禮學講論이나, 史書에 입각한 治亂의 故事나 王道만 논하면 되는 줄 알았고, 행정·사법의 실무는 中人과 吏胥의 일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所管官司의 직무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것은 경제, 사법, 행정, 의약 기타 기술전문직과 실무직에 종사하던 中人 및 吏胥가 장기근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星湖 李瀾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오늘날 諸官司의 관원이 오직 자주 轉補하여 이익만을 도모하고 公務에 마음을 두지 않아, 무릇 憲章과 條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비비면서 앉아, 吏胥에게 국정을 맡기고 있었다. 公卿大臣이 入對前席에서 반드시 이조에게 물어서 일을 처리하고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俗諺에 이르기를 조선은 서리로 인하여 망한다고 하나 나는 국가가 서리에게 의존하여 존립할 뿐이며 장차 온갖 법도가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원래 경국대전에 의하면 東班京官의 경우 「六品以上仕滿九百, 七品以下仕滿四百五十遷官」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堂上官, 臺諫, 遞兒職, 無緣官 기타 일정 직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운용상 예외가 원칙으로 되고 말았다. 또 燃藜室記述에 이르기를 「我朝則一年兩都目外 隨闕隨差或至逐日 爲政與古異矣」라 하여 조선왕조에서는 일년에 두 차례의 정기 인사 이동 이외의 자리가 빌 때마다 수시로 혹은 날마다 인사이동을 하였으니 옛법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위에 예시한 姜銑의 경우에도 守令·方伯 등 지방관이었을 때를 제외하면 한 보직에서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었고, 한두달 혹은 며칠간 근무하다가 他補職으로 옮겨 갔으니 소관 직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자연히 실무권한이 吏胥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빠른 순환보직 관력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에 거쳐 갔던 보직을 몇번이나 되풀이 해서 보임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위 姜銑의 경우 刑曹參判을 일곱번이나 맡았고, 都承旨 4회를 비롯하여 左右承旨를 수차 맡았다. 그 당시 관료들의 짧은 임기와 잦은 교체 사실을 피상적으로 본 先學들은 職窠가 소수인데 임용후보자가 많기 때문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렇다면 동일인을 이미 거친 직위에 수차 임용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위정자들이 유교적 순환사관에 입각하여 「天運循環無往不復」이란 생각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通德郎(정5품) 鄭雲柱는 1707년에 문과급제하여 2년후 朝奉大夫(중4품)의 官階를 받고, 承文院 副正字(중9품)의 正職을 받았다. 문과급제자의 初入仕의 경우 甲科(3등 이내) 급제 출신자는 實職, 6품-7품에 直受되지만 乙科 丙科출신자는 承文院과 成均館 및 校書館에 분속되어 일정기간 權知로 있다가 正職 9품직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門閥家의 子弟는 承文院을로 소속시켜 이를 槐院分館이라 하였고 시골양반인 鄉儒는 성균관에 소속시켜 國子分館이라 하였으며 庶孳·吏校子姪은 교서관에 분관시켜 芸閣分館이라 하였다. 따라서 鄭雲柱는 승문원에 분관된 점을 보아서 문벌가 출신이었다고 짐작되는데 최종 관계·관직이 당하관에 그치고 말았다. 여하간 그는 副正字로 임관된지 두달만에 資級이 一資 올라 朝散大夫(從4品上)가 되었고 반년만에 정8품 著作으로 승진하였으며, 거기서 다시 반년만에 중7품 奉常寺直長으로 陞資하였고, 官階도 정4품 奉列大夫로 승진하였다. 그는 1710년 한해 동안에 承文院 博士(정7품), 成均館典籍(정6품), 兵曹佐郎(정6품)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그후 그의 官階는 11개월만인 1711년 1월 6월 奉正大夫(정4품상)로 陞資되었으나 20일만에 다시 奉列大夫(정4품하)로 降資되었다. 관직은 兵曹佐郎 3개월만에 禮曹正郎(정5품)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吏曹正郎(정5품)으로 전보되었으나 11개월만에 禮曹正郎으로 복귀하였고 거기서 두달이 못되어 遞兒職으로 옮겨 갔다. 거기서 삼개월후 司憲府持平으로 발탁되었다가 7개월여에 다시 遞兒職을 갖게 되었다. 그는 1년 9개월 동안 副司直·副司果 등 遞兒職을 받았지만 보름간의 高山道察訪을 겸직으로 있었

던 것 이외에는 전연 職事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한편 그후 그의 官階는 西班 資窮인 정3품 禦侮將軍까지 올랐다. 그 다음 그는 珍山郡守, 司憲府掌令(정4품), 三陟都護府使(중3품), 成均館司藝(정4품), 通禮院相禮(중3품), 尙衣院正(정3품), 司憲府獻納(정5품)을 역임하였다. 姜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 하관에서 끝난 鄭雲柱의 경우에도 지방관이었을 때를 제외하면 한 보직에 반년 이상 勤續한 경우가 드물었고 거의 몇달 또는 며칠동안만 근무하다 옮겨지며 이미 거친 보직에 거듭 재임용되었던 사례도 발견된다.

셋째 權瑞東은 1727년 生員身分으로 문과급제한 후, 중7품 奮順副尉 龍驤衛副司直으로서 遞兒祿을 받다가 3년후인인 1730년 성균관으로 分館되어 정9품 從仕郎 成均館 學諭(중9품)에 임용되었다. 그가 성균관으로 分館된 점으로 보아서 시골 선비 출신이라 추정되는데 한달후 養賢庫奉事(중8품), 4개월후 중8품 承仕郎 成均館學錄(정9품), 兼養賢庫奉事로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5개월후 정8품 通仕郎 成均館學正(정8품)으로 또 승진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한 資級이 올라가는데 參下官의 경우 승진소요일수가 450일이란 법규정도는 인식도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31년 9월에서 1740년 5월 간의 權瑞東의 관력은 자료미비로 알 수 없으나 1740년 5월 19일 그는 정6품 承議郎의 官階를 갖고 守職으로 정5품 禮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에 보임되었다가 한달후 관계가 중4품 朝奉大夫가 超資되었으며, 또 2개월후에는 從4品上 朝散大夫로 陞資되었지만 관직은 정6품 兵曹佐郎으로 降任되었다. 이와 같이 그 당시 관료의 전보에 있어 관직의 고하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은 듯 하였다. 그후 權瑞東의 官歷은 14년간의 재야생활후 정3품 通訓大夫에 올라 兵曹正郎, 瑞山郡守, 司憲府持平, 通禮院相禮(중3품), 司憲府掌令(정4품), 通禮院右通禮(정3품) 등 관직을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堂上官階인 정3품 通政大夫에 올라서 遞兒職으로 중5품 副司直을 받았던 것이다.

넷째, 尹著東은 1754년 7월 문과급제후 중9품 將仕郎에서 承政院假注書, 龍驤衛副司正을 거쳐 1년후 중6품 宣務郎, 權知承文院副正字(중9품)에 敍任되었으니 官階가 1년만에 6資級이나 올랐고 그후 그는 한달만에 世子侍講院

說書(정7품)가 되었으니 5품계를 뛰어넘어 陞職한 셈이다. 그러나 그는 4개월 후 遞兒職으로 옮겼다가 1756년 3월 承政院注書(정7품)가 되었으며 또 3개월 후 成均館典籍(정6품)이 되었다. 그 다음달에 그는 정5품 通善郎 兵曹正郎(정5품)으로 승임되었지만 곧 司諫院正言(정6품)으로 천직되었다. 그 후 10년간 그는 言事被罪하여 재야에 있다가(放歸田里) 1765년 3월 資窮인 정3품 通訓大夫로 陞階하여 弘文館副修撰(중6품)이 되었다. 그는 곧 遞兒職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달에 弘文館副校理(중5품)로 승직하였다. 그 후 4개월만에 堂上관으로 승임, 通政大夫 濟州牧使에 보임되었다. 그 후 그의 官歷은 左副承旨(정3품), 副司直, 副司果, 禮曹參議, 大司諫, 副司果, 副司直, 右副承旨, 同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右副承旨, 同副承旨, 副司果, 副司直 등 순서로 1766년 한해 동안에 무려 15차례나 관직이 변동되었으며 이미 거처간 관직에 되풀이 除拜轉遷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767년과 1768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관직명도 兵曹參知, 左·右·同副承旨와 遞兒職, 그리고 淸職中の 淸職인 副提學이 交互로 거듭 제수되었다. 그는 결국 1755년 2월 중2품 嘉善大夫 漢城府右尹이 되었고 이틀후 承政院都承旨가 되었으며 그 다음달 京畿兵水使를 겸했다가, 그해 9월 從2品上 嘉義大夫 京畿觀察使兼巡察使로 되었다. 5년후 그는 같은 官階를 갖고, 중3품 潭陽都護府使를 拜受하였다.尹蒼東의 그후의 관력은 副司直, 漢城府左尹, 刑曹參判, 副司直, 禮曹參判, 副司直兼副總管, 副司直, 大司諫, 都承旨, 兵曹參判 등 순서로 이어진후 遞兒職(副司直)을 받고 正職에서 물러간 것으로 되었다.

다섯째 金在昌은 思悼世子の 외손자로서 正祖의 생질이었다. 그는 光山金氏 閥閥家의 후손이었는데 15세때인 1784년 1월 1일 蔭敍로 중7품 啓功郎 敦寧府直長에 임명된후, 官階가 累進하여 1764년 1월 1일, 중4품 朝奉大夫가 되었으며, 1800년 9월 15일, 정3품 通訓大夫로 資窮까지 올라갔다. 관직은 司僕寺主簿(중6품), 敦寧府判官(중5품), 漢城府判官, 副司果(중6품)를 거쳐 高陽郡守(중4품) 재직시인 1801년 4월 문과급제하여 弘文館副修撰(중6품) 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中學教授에 除拜되었다. 석달후 그는 司諫院正言(정6품)에 승직되었고, 10일 후 遞兒職(副司果)(7일간)을 거쳐

司僕寺正(정3품)에 특진하였다가 한달후 弘文館校理(정5품), 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으로 전보되었다. 그후 그는 문과급제후 3년이 못되는 기간에 무려 40번이나 자리가 바뀌었으며 玉堂과 臺諫 및 群小機關의 長, 그리고 遞兒職 등 數席을 회전하면서 몇번이나 되풀이하여 같은 보직으로 陞降轉遷되고 있었다. 즉 正職과 遞兒職을 빠른 속도로 순환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1804년 2월 28일 그는 正3品上 通政大夫로 陞資한 후, 동년 3월 7일 左·右·同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遞兒職과 各房承旨 및 戶曹參議, 刑曹參議 등 六曹의 堂上職窠를 역시 빠른 속도로 순환하다가 1805년 12월 종2품 嘉善大夫의 資階에 올랐고, 1808년 1월에는 종2품상 嘉義大夫 京畿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 水原留守, 開城留守, 江華留守, 廣州留守, 巡察使로 승진하였다. 3년후인 1811년 1월 정2품 資憲大夫로 陞階한 후 遞兒職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刑曹判書, 工曹判書, 大護軍, 漢城府判尹, 大司憲, 五衛都摠官, 知中樞府事, 知敦寧府事 등의 자리를 돌아가면서 전보한 것이다. 1815년 10월 3일 正2品上 正憲大夫로 陞階된 후에도 그는 같은 자리를 몇 번씩이나 순환하였고 또 1817년 從1品下 崇政大夫로 陞階된 후의 보직현황도 같았다. 결국 그는 1835년 5월 최고의 품계인 정1품 輔國崇祿大夫에 陞階되었다. 그러나 그의 관직은 여전히 兵曹判書, 知中樞府事, 兼判義禁府事, 吏曹判書, 判中樞府事 등 주로 2품직을 行職으로 되풀이 拜受하였다.

만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尹耆東과 金在昌의 官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짧은 재직기간 때문에 본직의 업무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을터인데도, 承旨나 玉堂 등 淸顯職에 임용될 때 일정한 겸직이 부가되어 있었다(예: 都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

여섯째 李培源은 閑良으로서 1728년 10월 무과급제한 사람이었다. 무과는 문과나 生進科와 달라서 응시하는데 있어 신분상의 제약이 별로 크지 않았으므로 士族 이외, 그 庶子, 中人, 胥吏, 良人 등의 出仕路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과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합격자를 대량배출하였으므로 그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實職에 임용되는 경우는 특별한 軍功이 있

거나 혹은 탁월한 武才가 있든지 아니면 문벌가출신이었을 경우에 국한된다고 하겠다. 李培源의 家系는 확인할 수 없으나 宣傳官을 지낸 점으로 보아 士族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다. 여하간 그는 무과급제 5년후 官階가 資窮인 정3품 禦侮將軍까지 올랐고 관직은 龍驤衛副司果(중6품), 訓練院 僉正(중4품), 五衛都摠府經歷(중4품), 宣傳官(정3품-중9품) 등을 거쳐 1735년 7월 25일 정3품 通訓大夫 長興縣監에 이르렀다. 그후 그는 忠武衛와 龍驤衛의 副司果를 거쳐서 1745년 10월 10일 嘉山郡守로 있다가 1749년 3월에 堂上官으로 陞差 正3品上 折衝將軍 三道統虞侯(정3품)가 되었다. 그는 거기서 3개월간 재임하다가 龍驤衛副護軍兼洪川營將과 同兼羽林衛將을 지냈다.

李培源은 그후 1763년 1월 1일 중2품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로 陞資함과 동시에 遞兒職(副護軍)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가 관료로 30년간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實職(正職)에 있던 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그나마 화려한 관직에는 한번도 있어 보지 못하였다. 文武差待政策때문이라 하겠다.

위 사료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후기, 京官들이 진퇴의 無常과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행정, 사법 등의 실무파악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儒敎本末觀에 입각하여 道學·禮學·史學 등과 詞章 이외 분야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자연히 법률, 경제, 천문학, 지리학, 어학, 의학 등 실생활에 긴요한 학문과 행정실무 등은 中人 내지 吏胥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 중인과 吏胥들은 많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我國俗所謂吏胥之國也」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士族들로부터 신분상의 차대와 인간적인 천시를 받아왔을뿐만 아니라, 승진의 길도 막혀 있거나 제한되고 있어 자연히 국가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사명감이 결여되는 등 불건전한 의식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識者들은 吏胥亡國이라 우려하였으나, 星湖의 지적과도 같이 朝鮮은 吏胥가 없이는 잠시도 유지될 수 없는 나라였으니 嚴斷主義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원들의 장기 근속과 吏胥들의 短期循環補職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사실은 언제나 그 반

대로 나타났고 吏胥들의 正職品官으로의 진출방안이 모색되기는 하였으나 士族官僚들의 독점적인 身分維持慾 때문에 19세기 전기까지는 그러한 발상이 실현될 수가 없었다. 사족관료들이 영원히 자기들의 手足으로만 있을줄 알았던 전문직(중인)과 이서들 및 그 후계자들은 그 후 재빨리 근대화 물결을 타고 變轉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금세기 최상의 지배계층의 一圓이 된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4. 結論

이상에서 선학들의 연구업적에 힘입어 조선왕조의 官階·官職體系와 人事權의 實際行使者 및 그 운용상황을 살펴본 후, 여기에 덧붙여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教旨와 奉教牒紙中 관료들의 임용 승진 전보(除拜陞遷)에 관한 것을 무작위로 유출하여 전부 538枚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의 官階體系는 오랜 동양적 전통을 갖고 내려온 것으로서 멀리 周代의 九命官位(公·卿·大夫·士)에서 비롯하여, 魏晉南北朝와 隋唐을 거쳐 고려에 들어온 것이며, 조선왕조는 麗制를 繼受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官品 인플레이 현상이 생기는 등으로 가치가 극도로 低落되었고, 그로 인하여 관품의 고하는 신분의 준비와 불일치하게 되었다.

둘째 관직은 廣義로 流品內의 것 이외 流外雜職이나 吏胥職까지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으나, 조선왕조의 관직이란 주로 流品內의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것을 입사형태에 따라 文官·武官·蔭官·專門職으로 나누고 근무지에 따라 京官과 外官으로 나누었으나 중요한 것은 기능상으로 나누어 본 實職과 虛職인 것이다. 실직은 다시 正職과 遞兒職으로 虛職은 影職과 散職으로 각각 세분하여 볼 수 있다. 보통 影職과 散職을 가진 자를 朝班이라 하지 않았으나, 遞兒職은 正職과 서로 바꾸어 가면서 除拜陞遷한 것이므로 그 중 상당

수는 朝官의 職窠가 되기도 하였다. 虛職중에서는 納粟職과 老人職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은 官階질서의 紊亂化를 촉진시켜 조선후기 관인지배체제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셋째 影職과 散職의 확산은 또한 實職體系內的 위계질서에도 영향을 미쳐 清要職에 있는 당하관들이 老成한 당상관들을 우습게 보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銓郎들은 인사권을 독점하여 대소관인의 인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특히 18세기의 40년대부터 위정자는 銓郎의 人事薦望權을 박탈하여 堂上官들에게 이를 넘겨줌으로써 인사권이 少數權貴의 손으로 집중하게 되어 封建朝鮮의 관인지배체제의 해체를 촉진하였다.

네째 조선후기 京官들의 陞降轉遷은 朝更暮遞식이어서 3년이 못되는 기간 내에 무려 40여회나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었고 보통의 경우에도 한 두달에 한번씩은 보직을 변경하는 예가 많았다. 그 결과 관인들은 소관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봉건조선의 지배층이었던 士族官人들은 그 체제와 함께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다섯째 同一官司에서 장기근속하고 있었던 전문직과 吏胥들은 행정·사법·기술 등 諸般事務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여 국정운영의 토대를 이룬 한편, 富를 축적하여 봉건적 신분질서를 해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반면 清宦顯職의 士族官僚들은 實務에서 유리되고 變轉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전하는 역사와 세계적인 進運 속에서 낙오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여섯째 職品以外 신분상의 품계라 할 수 있는 官階가 따로 있어서, 고위자가 하급관직에 임용되어도 혹은 新補職이 前補職보다 官品이 낮아도 그것이 閑職에서 清要職으로 옮기는 것이면 榮轉이라 생각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관품질서의 문란은 중세적인 신분질서의 동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곱째, 조선후기의 文武差別政策으로 말미암아 武科及第者들은 거의 清要職에 임용되지 않았고 閑職에 머물거나 지방관으로 잠시 나가 있을 정도였으므로 武官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 또한 대다수 武官들과 技術官 등 專門職官僚와 行政實務者들인 吏胥들은 文官, 官人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

있고, 또한 그들의 신분상승은 극도로 제한되어 희망을 잃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국가사회체제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 봉건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四

大典會通卷之一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三

亦為歷辭武守則歷辭原任
將臣○政府堂上不為歷辭

○守令之限年禁錮者

該曹待限滿懸註名下書入

補過年限守令禁錮分棟

○守令於

本邑有田十結壯奴婢十口者改差

關吏治勿拘

○守令之濫率家眷者潛奸邑婢者並摘發罷黜○

殿牌作變邑勿為降號守令亦勿罷職

鄉校位版破毀邑守令亦

勿罷職社壇位版

○空名帖一切防塞

雖當大歛營賑不得已許

之同樞僉樞察訪等帖亦為一切勿許

○荒年賑政非通一道設賑則

勿許首褒加資○乞郡勿論所後本生家並許施

旨玉堂未行

補新除監司歷辭議政

時原

本道向管

堂上

京畿則否兩界外並歷辭吏曹堂上

役二十人以上并其子免役九人以下則每一人免

三年役同驛吏

雜令續臺官帶推者兩司互勘勿許引避監察同○

者帶職出往江外者參謁不參者並勿引避一事再避者勿捧○凡牌招大官外雖

有情病親納闕外違者二品以上重推通政以下禁

推納牌不進者二品以上推考通政以下罷職禁直

徑出者通政罷職堂下官禁推○各司事關變通而

不由廟堂直啓者官員罷職○新除守令歷辭議政

增時六卿及兩局大將增禁時任臺官吏曹堂郎邊

原任守令歷辭備局堂上增備堂臺閣私自分付守令邊將使之勿赴者以制書有違律論翻本道向管堂上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二

啓請擬望○相避之法在下當遞而翰林與春秋官

相避知春秋以下並遞領監事相避則翰林遞注書同○

翰林與注書相避則注書遞○代聽時春坊之兼帶春秋者與春

秋官相避同翰林與領監事相避則並本職遞補本宗從祖孫及

從叔姪並相避妻親同姓三寸叔母姪女夫勿避當宁乙丑定式

鄉吏原凡鄉吏中文武科生員進士者特立軍功受

賜牌者三丁一子中雜科及屬書吏去官者並免子

孫役○連二代立役則雖訴本非鄉孫勿聽二代立及父連二代

代鄉役者○考本邑陳省給攝戶長正朝戶長安逸

戶長帖○厭本役而逃者同類人捕告十人以上免

銓官相避兼臺例付勿拘○京試官敬差官同○宣惠廳提調

郎廳並相避大用原典註○各司例兼提調雖與都提調

提調有相避勿遞宣惠廳提調戶曹判書例兼而與他提調勿避則惠廳郎廳亦於例

兼提調勿避○內三廳五衛將無兵曹句管之事判書外

他堂上勿避內禁衛羽林衛忠翊衛忠壯衛將亦與總管勿避○咸鏡道南

北關及兩南左右道守令於節度使換道則勿避南關

守令於北評事亦同○參外官凡有相避者則換差他司通計

前任外方參外相避同**增**監司兵使都事與守令察訪相避

依原典大小註相避法**補**守令與上官相避則換差他道營將邊將同○內乘依學官

軍官例勿避○玉堂春坊講書院與本曹堂郎相避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一

避一司應避者下位○臺官與兼臺書狀與使臣並當通右位則否

相避○觀察使節度使守令僉使萬戶並交代相避

權管同○三南水軍節度使與統制使畿邑兼營將

守令與守禦使摠戎使北評事與咸鏡道觀察使有

戰船舟師邑守令與水軍節度使該鎮屬邑守令與

營將並相避○統禦使管轄三道相避之法依統制

勿避湖西海西守令於統禦使同○京畿觀察使例

兼兩都畱守畱守與觀察使相避則畱守遞改兩都

亦與觀察使相避○未赴任都事與守令相避原廣州畱守判官同

則都事遞改邊將與未赴任兵水虞○書狀官雖與

候相避則虞候遞改

小人員改名者其祖先或宗宰或罪人明白同名者

外勿聽

相避原京外官本宗大功以上親及女夫孫女夫姊

妹夫外親總麻以上妻親父祖父兄弟姊妹夫並相

避學官軍官則勿避議政府義禁府本曹兵曹刑曹

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部將史官則並避

本宗三才叔母姪女夫四才姊妹夫外親三才叔母

夫妻妾親同姓三寸叔姪叔母姪女夫四寸兄弟

續出繼者於本生親一體相避○婚姻家並相避○

舉子與試官相避依原典大小○兩司官員勿為通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

堂下例啓下後勿捧傳旨直下該曹○堂下官勿論

實職軍職不待受由任意下鄉者禁推○守令覲親

病親掃墳亡妻妻父母歸葬子息成婚六件事外勿

許給由赴舉亦許○軍政田政失時有弊自八月至

給邊地守令察訪並勿許由魚川察增補外守令有

老親者許由○每年一覲親間年一掃墳補父母移

葬祖父母歸葬移葬給假並留二伯叔父母親兄弟

及外祖父母歸葬移葬並給假並留十○陵官有親

病則許由

改名原凡改名者本曹啓移藝文館置簿給文續天

著者雖非正二品特許賜諡儒賢節義外母得格外

堂覆奏者則凡贈職○諡狀呈禮曹時撰進人員既

是無故者則其後雖身故或被罪依例啓下

給假原凡有故者啓達給假宗親則宗簿寺○親親

墳焚黃婚嫁並留七日葬妻父母並留十五日○

凡呈辭者親病則遠道七十日近道五十日京畿三

十日外官則觀察使計程給假過限不還者並改差

己病則卽改差○時享式假服制身病則不啓○有

七十歲以上親者一子八十歲以上親者二**續宗親**

子九十歲以上親者諸子歸養○兵曹同有病者宗簿寺覈實以啓限十日給由簿寺檢舉○

宗親秩卑人員針灸沐浴毋得請假覆朝臣正卿外

辭○堂上親病掃墳呈辭者非曾經二品實職則依

大典會通

卷之一

七十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九

君同○宗姓則宗正卿兼贈功臣嫡長則封君兼贈○推恩人或受贈人中經

吏曹若玉堂則贈吏曹補閣臣贈職閣銜隨品例兼

受贈人文科則雖未經閣職亦許兼贈○受贈人非抄選南臺毋得贈

大司憲祭酒○上輔國人贈上相未資窮宗班受贈則貳相正亞卿隨

批品下○凡相職褒贈筵稟外勿許

贈諡原宗親及文武官實職正二品以上贈諡臣親則

雖職卑亦贈○奉常寺正以下議定并行狀報本曹

禮曹照訖付奉常寺奉常寺移送弘文館東壁以

員更為議定政府舍檢中一員續大提學秩視正二

品雖從二品大提學亦許賜諡○儒賢及死節人表

曾祖贈判書大院君私親之考贈右議政世子私親

之父贈左贊成○王妃考贈領議政以上三代國舅推恩例贈世

子嬪考贈左議政大君妻父贈右議政王子妻父贈

左贊成○世孫嬪考贈右議政○奉命出疆身沒異

域者陞品贈職○除職奉承傳未除職前身死者贈

相當職○新及第未分館前身死者贈相當職登科而殿

試前身死者亦同○醫譯中庶贈職者勿許參判摠管加設

同知贈職者勿許左右尹增原從功臣錄券未頒降

前身死者自己追贈一二三等并同○原從一等等

致仕奉朝賀陞資則勿拘實職隨品贈三代補宗正卿承襲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九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八

歲人加資許其子孫上言

京則漢城府外則觀察使歲首訪問以啓

西夏許年九十上言加資

增常賤老職勿許崇政曾經正卿外勿

許輔國

判敦寧始許授

○士夫一命以上中庶曾經

東西班正職者中官入仕已受祿者年八十待其上

言並許加資

補士庶百歲人直超崇政

應資老人京外抄啓正月

二日

○大小科回榜人加一資

雜科

追贈

原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追贈三代

準已品祖父母曾祖父母各遞降一等○妻從夫職○大君妻父正一品王子君妻父從一品○親功

臣則錄職早贈正二品○一等功臣父贈純忠積德兼義補祿功臣二等純忠積德補祿功臣三等純忠

補祿功臣

續大王私親之考贈領議政祖贈左贊成

並封君

薦狀于仕滿遷階去官散階並兵曹同

老人職原年八十以上勿論良賤除一階元有階者

又加一階堂上官有旨乃授續宗班副守以上年八

十封君之父年七十者歲首加資○侍從臣父閭帥

父年七十者每於歲初吏兵曹抄啓加資而嘉善以

上毋得變品超資法當推恩者雖以立春後年甲行世一從生年加資○新有應推恩

人雖非歲首亦稟行○侍從臣所後父已資窮則許其推恩生

父承重孫之於祖亦同○東西班曾經四品實職以上人員年

八十者令該曹歲首加資○士族婦女年九十者令

該曹抄啓封爵而其夫則毋得因妻贈職○士庶百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八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七

事以開城經歷差送有故則移差傍近守令

穆清

祭

○各陵殿參奉假官以付祿忠義差送

若無忠義則曾經守

墓

差送各陵無該曹差帖私自代直該官及代直人

並施制書有違律新除陵官在外

○香陪書吏揀

擇預定各於本司齋宿供饋給鞍馬增齊陵獻官以

豐德府使差定

坡州牧

厚陵獻官以長湍府使差

定英陵獻官以驪州牧使差定寧陵獻官以竹山府

使差定

編兒原

祿母越階

不授

兒隨下階

如應授正九品職

授從九品之類凡呈都目受通兒職者各其司堂

上提調限前月十日計在多少取才分數十五日呈

祿牌原凡應受祿者每春孟朔給牌兵曹同**續**今以

季朔受職隨給**續**禁推人員未照律前毋得受祿且勿舉擬

差定原凡應差定者錄名啓達享官三品以下及衙前不啓**續**親

臨視學時侍講官經筵領事知事同知事及成均館

知事同知事中無故人員盡數書入講書官則以玉

堂及曾經翰林並七員抄啓○節使迎慰之任毋得

以宗班差定節使差出時大臣有故以宗親儀賓及二品以上擬差○秋曹及

厨院郎廳大祭外勿差祭官○長寧殿獻官以江華

留守差定通津府使預差莊陵獻官以寧越府使差定原州牧使

預差有故則他邑守令推○齊厚陵穆清殿祭執

移差送補橫城縣監預差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七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六

令仕滿一百五十前不得遷轉

補外職不拘

○未經守令

講者不得擬察訪監牧官

補監牧官則否

○未準限守令營

下官及物象地大州牧外雖都政不得啓請移擬○

時任玉堂殿最居中即出其代以軍銜居中者司果

之修撰司直之校理勿拘擬望右職則必啓請蕩滌

○宗簿正判校居中則所兼春秋減下○六曹郎官

居中考則罷職○蔭武守令居下者經二年後更除

本品以下外職經一考始許陞品○越等人不得除

外任而如都事及邊地付祿處不拘

補直閣待教居

中考則遞職○參外蔭官就理則計日削仕

呈辭受由者同

監依牙山例法聖羣山仍許邊地履歷○參奉雖
牙山領運今廢赤梁領運移屬附近鎮將

才準朔計仕居首則序陞奉事直長至直長通計前

仕準一千三百五十始許陞六陰官各歧仕滿者非
生進則出六時必講

五經中一四書中一而兩冊不通則汰去一冊不通
則後都目改講後始許陞六補監役官教官部都事

換差參奉前仕已準四百五十則通計滿九百陞六
未準四百五十則從仕次序陞奉事○參奉換差監

役官教官部都事則前仕毋得通計○文臣參下司錄訓導別檢察訪

仕滿三十朔陞六雖非都政亦許陞補生○魂殿忠

義為陵參奉依殿參奉例計仕廢補今○初仕承傳有

次次陞付之命首仕直長雖未經六品講依特教陞

六例勿拘○說書不計朔出六翰林為說書不
得接用此例○陵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五

○十考十上五考五上者守令望單子懸註後於他邑居下

則削其十上五上若更○居下守令遇赦蕩滌內職

則無礙調用外職則經二年始擬○居中罷黜者雖

經一都目先捧蕩滌及敘用傳旨無得循例擬望○

殿最點下者上以中考施行中以下考施行本曹

廢○雜歧輪回出六而皆於輪回當次後始計仕仕

滿四十五朔許遷轉天文學禁漏官畫員輪回政府

回命課學治腫教授輪回律員筭○牙山縣監法

聖羣山僉使兩年騎船無事領運縣監右職陞敘僉

使邊地守令除授龜山赤梁僉使齊浦萬戶二次無

欠領運營門狀請加資補咸悅縣

林每都目右位一員待其修史許陞六品下位未滿四員則勿

陞○注書在軍職朔數勿計○每五日兩司六曹漢

城府掌隸院開坐日數堂上進不進單子書入○朝

賀朝參及凡一會宗親進不進宗簿寺檢察潛囑府吏托故

不參者初犯收丘史再犯罷職○各司回啓公事過限則承政院察

推京司毋過三十日外○江華分教官仕滿六十朔則

遷轉實職開城府分教官同○無祿官及參外官殿最居中

者前十朔仕日勿計來等殿最前遇赦蕩滌勿為削仕○堂上官及

無褒貶侍講院官員則周年內附過滿五次者啓稟

左遷廢補今增十考十上守令內遷一考日淺九考上者用十上例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五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四

同○文武官勿拘
朔數補五部同

○京各司堂下官仕滿者依守令

瓜滿例遞改

其中有功勞者調用

○堂下守令三十朔堂上守

令二十朔邊地守令周年後始得遷轉他職

侍從十

無得遷轉

增

新通則勿拘朔數懸註備擬訓鍊正同

五朔前

○以時任守令承傳者勿拘朔數遷轉前職時承傳

者則待津限許遷

補

○相換守令外移拜守令勿為

通計前任

亦勿通計

○都政時直長仕日未滿十

日以下者啓稟陞遷○蔭官三十朔陞六品時申計

日之令

桂坊參外官亦同

○蔭官陞六品後遷

詞訟職

戶工曹禁府五部同

經一考始擬守令

未肅拜者勿計

增

詞訟未準六朔移職者更授

○翰

詞訟通計前任中庶經察訪監牧官始擬守令

不在此限○收告身還受者亦以罷職日○凡犯罪
始計○兵曹同經二年限二十四朔

者居下等者置簿憑考兵曹○錄事書吏有故不仕

滿百日無故滿三十日者削仕罷黜二十九日以下

者收贖還仕罷黜後願還仕者聽在喪者喪畢還屬

通計前仕廢今○書吏名簿本曹踏印以考勤慢奸

偽廢今續東班七品以下官朔數相同者他司移差

則通計前仕同西班○久任人員各其司提調該曹堂

上一同磨鍊移文本曹啓聞置簿○各司久任官遷

轉安徐久任以三十朔為限而如監察○刑戶曹守

兆禁府監察掌隸院郎官六朔前毋得遷轉工曹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三

漢城府開城府掌隸院堂下官決訟道數啓聞三朔

內漢城府掌隸院小事則三十道大事則二十道刑

曹小事則五十道大中事則三十道不準者降一階

開城府則不拘道數○每歲季本曹員諸司官員實

仕及雜故觀察使具守令七事實跡啓聞七事農桑盛戶口增

學校興軍政修賦役均詞訟簡奸猾息○周年病滿三十日者議親功

臣十惡外五犯罪者並勿揀赦前啓聞罷職開散人

年乃敘講職○宗親及大小人員凡一會稱病

不進者司憲府宗簿寺檢舉啓聞論罪○褒貶居下

等及犯私罪罷職者經二年乃敘議親功臣居下等者經一年堂上官

進增相今廢○褒貶居中守令圖通者論罷增京司殿最

時以公故及就理未參貶坐者勿置中考依外方例

據實懸頃○宣惠廳濬川司褒貶無領相時左右相

磨勘○北道陵殿官全州肇慶廟慶基殿官江華長

寧殿官褒貶道臣及守臣封進補水原華寧殿官平壤崇仁崇靈殿官同

○王府照律付過還職人考績時憑考黜陟

考課原諸司官員卯仕酉罷日短時辰事緊司則仕

罷後一員留待直宿員宗廟署文昭殿活人署官員

及社稷署有錢穀諸司一員勿與會凡諸司直宿官員本曹直宿堂

下官初昏署名封進又受通行標信○每節季刑曹于承政院巡檢糊罷黜翌日朝還納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二

中於無祿官敘用三中罷職五考三考二考者並一

中勿授右職二中罷職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七品以下官中者其都目

勿遷轉有通兒衙門前銜官中者後等褒貶前勿敘

才○一年四都目者中則越一都目下則越二都目取

堂上官守令一中罷職

續六曹及各衙門褒貶春

夏秋冬等毋得兼行

各司提調老病人外褒貶單子勿為書送親自來勘都提調衙

門則都提調不可親○京司之詞訟錢穀衙門褒貶

往該曹堂上往受作爲四字題目務從嚴明○掌樂院官員以習樂勤

慢爲殿最○觀察使守令褒貶無下考者承政院察

推○守令褒貶時觀察使與節度使相議並考軍政

勤慢觀察使守令並到任滿五十日始行褒貶京畿

三十日○觀察使迤歸則待新使到任日滿封

報觀察使侍從以上則啓聞餘報吏兵曹

解由原

凡除職者考解由兵曹同○濟州牧使則否

增解由勿拘

者毋論特教與啓請當職外不得舉擬○解由未出

人實職不得擬兼職則勿拘兼察訪則否

補經筵官解由

勿拘

褒貶原

京官則其司堂上官提調及屬曹堂上官外

官則觀察使每六月十五日十二月十五日等第啓

聞

司憲府司諫院世子侍講院則無等第○守令則

第報觀察使與兵馬節度使同議濟州三邑則牧使等

第○因推罪犯限內未等第者畢推後其等觀察
使雜通等十考者十上則賞加一階階窮者陞職二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一

經曾經侍從及堂上官則並勿署○五品以下臺官

署經則兩司備三員三員或不備則雖止各二員啓稟仍行而必兩司一時齊會然

後乃齊會一司備員則先行○監察階雖四品以上亦署與都事守令同監察署經先行於

本廳無頃許出後署經兩司監察時已署經則雖初除都事守令者更勿署

經○凡署經人員初次見越則再署再次見越則三

署三署見越則遞○凡告身公故外過五十日未署

出者啓改○凡謚號受點後兩司署經

政案原每三年京外官員具錄出身來歷呈本曹錄

于政案**增**文武蔭曾經實職人員在鄉身故地方官

奉官無碍武臣限從二品兵使如揔管亞將西北關
訓鍊正副正及廟社陵殿官官桂坊教官勿許各道
抄薦才行者一人○哲宗辛
友隨其閱閱許槐院宣薦

告身原凡受職者告身五品以下考司憲府司諫院

署經給之議政府吏兵曹司憲府司諫院掌隸院弘
文館春秋館知製教宗簿寺侍講院都事

守令考內外四祖及己身有痕咎與○司憲府司諫
否署經○都摠府宣傳官部將同

院有故過五十日未署經者啓○未受告身前行公

物故或罷職者其告身已署經到本曹則給之○失

告身者告本曹考覈給立案並兵曹同署經給告
身之法今廢故續典以

署經別
立目

署經續各道都事守令初除者階雖四品以上並署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

限正五品賤妻子孫及賤人為良者限正七品良妾

子之賤妻子孫限正八品孫許於司譯院觀象監子

醫監內需司惠民署圖畫署算學律學隨才敘用

廢惟觀象監尚增良賤妻子孫限品敘用依通擬節

目正宗丁酉○文科之隸芸館武科之薦守部依前

武無礙陵殿廟社宗簿五上司郎官監察禁府都事

官許郡守有治績者許府使未生進及引儀出身限

并無礙都摠府訓鍊副正勿許○五衛將文蔭武皆

續之著顯者拔例甄用廟堂補庶孽疏通更定節目

銓曹稟旨施行○兵曹同補庶孽疏通更定節目

識通清只許臺職蔭官限收使初仕部都事監役守

非曾經寺正者毋得通擬敦寧都正同○禮賓參奉

一窠忠勳府以功臣嫡長忠義衛備三望移本曹擬

差續順康園守○春坊雖曾經兩司更為通清續經

廷勿以外任擬望○宗親儀賓隨資擬敦寧金吾○

蔭官登科直陞堂上者通諫長後始通國子○蔭路

初仕及參上在任遭喪者經外職者否落仕最久者都政

各一人甄用○皇壇守直官久勤者收用

限品敘用原文武官二品以上良妻子孫限正三品

賤妻子孫限正五品六品以上良妻子孫限正四品

賤妻子孫限正六品七品以下至無職人良妻子孫

大典會通 卷之一 六十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九

○前朝王氏子孫各別訪問收用○嶺南北關西關

松都人望單子懸註補濟州同○六品以上陞敘則越

品後毋得通用參外官陞敘則限六品通用補相當

則陞六後用之○監役學生年四十守奉官學生年三十以

上擬差○吏兵曹郎已經四品不得通擬○三司春

坊國子長外任啓請備擬補大司憲則承旨○兼察

訪無啓請直擬內職○六曹兩司於本司經右位則

不得授下位玉堂春坊不拘○三曹正佐郎以生進人擬授

學行則不拘○凡問于大臣差出時罷職及解由未出入

破格備擬本曹啓稟○蔭官參判亞尹勲臣別薦外

孫勿許承蔭○外官之移擬他職者道里遙遠官事

緊急則啓稟除朝辭赴任餘勿輕許○凡在外除職者近

道三十日遠道四十日內謝恩過限者啓達改差咸

鏡北道及三甲五十日六鎮六十日為限過限則啓稟○宗廟署社稷署各陵

宗簿寺司饗院漢城府五部參外官中庶當次則陞

遷後以他司換差尚瑞院則換次備擬景慕宮同司饗院五

部尚瑞院當次無礙○開城府教官還作教授用自辟差送後

又別置分教官減○吏文天文學教授之類勿論

教授又置分監役兒能麼同臚唱引儀年二十

生進幼學年三十以上擬差兒能麼同臚唱引儀年二十

以上擬差○雲臺官勤苦特甚者東西銓揀拔調用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九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八

夫人之父授九品職○世孫嬪之父初付職後即授

七品官○正卿則毋得口傳差出院判義禁本曹亞

三堂八道○兩南觀察使差出時問議廟堂○名官

之以善治善賑當陞嘉善階者通議廟堂後覆啓○

資窮而未經準職者勿許陞堂上資承傳者職未準

資未窮則啓稟○生員進士雖無保舉隨才注擬○

代加者以通德為限將仕以上十四階次○臺

官之直亞長蔭路之直郡守毋得差除武臣之直○

從享先賢功臣儒賢戰亡寃死清白吏嫡長孫外毋

得冒擬初仕父在則其子母○三醫司三品官之子

遞兒祿者陞六○登科過十年者筮稟陞六

除授 **原** 沿邊守令兵曹同議除授京畿喬桐忠清道泰安瑞山舒川海

美保寧庇仁藍浦全羅道濟州長興順天靈巖樂安
珍島扶安沃溝茂長興陽咸平大靜旌義慶尚道金

海寧海蔚山梁山昆陽東萊巨濟南海延日泗川機
張熊川黃海道黃州豐川遂安瓮津長淵康翎江原

道江陵三陟永安道慶源鏡城會寧鍾城穩城慶興
富寧甲山三水端川吉城明川平安道義州江界昌

城朔州龍川楚山碧潼渭原 **續** 大院君奉祀人三代後初授敦

寧都正同敦寧以上隨資例授大王私親奉祀人初

授敦寧正貂帽紅帶一依 都正以上隨資例授並加

武不拘此例○敦寧都正敦寧正當世襲而年幼則
一依宗臣初封例待年乃授初授敦寧正世襲今

廢 ○世子嬪之父初付職後即授六品官大君王子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八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七

正八品階丙科正九品階元有階者甲科第一人加

上官乙科加二階丙科加一階階窮者授準職者

上階其所加與應授階相等者不及者於應授階又

加一階翻元等階如第一以下元階錄此不及

授階者分差成均館承文院校書館權知 ○譯科一

等授從七品敘於本衙門二等從八品階三等從九品

階陰陽科醫科律科一等並從八品二等正九品階

三等從九品階元有階者並加一階所加與應授階

授階者並差續重試人加階依原典文科元有階者

本衙門權知例參外雖乙科以 ○新及第年滿五十者分屬三館

後陞六品補三館參外年 ○功臣嫡長上護軍補大

登科者參外陞六品參上加資增登科前已受司果

以上前銜則不拘年歲或所薦人名實不副年歲冒錄者論罪

一鄉保舉人以貢舉非其人律論觀察使守令罷職○京人之往來鄉曲夤緣冒占者與保舉者同律

○守令可合而無薦者本曹堂上薦擬十考十上五考五上者雖

無薦並擬○應薦不薦者該曹察推○犯賊者薦○主罷職重者削職本曹堂上薦擬之法今廢○

經行被薦直陞六品者免講並依例就講類增廉謹

吏令二品以上各舉所知書送廟堂廟堂會議抄啓

宣祖朝自吏曹選送政府政府請牌招諸宰舉○經行英宗朝乙丑命依肅宗朝故例以此定式

筵官抄選大臣吏曹堂上俱會賓廳抄啓南臺勿以

一銓堂意見遽然通清

諸科原文科甲科第一人授從六品餘正七品乙科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七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六

使者忠勳府薦功臣子孫才堪更任者○凡薦舉者

曾經試才及已行六品以上顯官外四書中一書五

經中一經從自願試取○凡收告身及罷職者每冬

夏季月具罪名啓聞兵曹續吏兵戶曹判書及兩都

留守兩界觀察使廣州補雷義州府尹水原補雷東

萊府使並廟堂薦擬兵批之兩局大將守禦使摠戎

使同時任議政有故則原任舉行禁衛大將濟

州牧使同補會寧江界府使同守禦使廣州留守

兼○東萊府使毋○各道前銜及生進幼學之才行

表著者每式年歲首一鄉人保舉于守令報觀察使

抄薦下三道無過三人上五道無過二人各其名下懸錄其才行生進則年三十以上幼學則四十

錄事每年正月**講**五經中一**製述**啓本牒

書籌楷書諺文行籌

道流五經中一**書籌**楷書續道流今革

書吏每三年以諸邑校生年壯才疎者都護府以上二人郡以下一人無校生則以無役平民

補之濟州及平安求**書籌**楷書行籌安道沿邊各官勿定**書籌**楷書行籌取才今廢

薦舉京外東西班三品以上每三年春孟月各薦

三人三品至無職每年春孟月東班三品以上西班二品

以上各薦堪為守令萬戶者並無過三人若犯賊污

敗常之罪則并坐舉主每年春孟月議政府六曹堂

上官及司憲府司諫院官員各薦堪為觀察使節度

大典會通**卷之一****五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五

取才原

講

並臨文經一書從願事道

製述

書籌

守令

講

四書一經大冊不通

不明律經國大典

增

書籌

三冊不通

進者以不進者及三冊不通

講

者汰去一經大冊不通

兩經國大典

增

書籌

兩冊不通

外教官

每年正月試講入格者勿試而後

者十歲以上者

製述

書籌

四經

官今廢

驛渡不書題

講

經國大典

製述

書籌

摺書行

廢

陰子弟

每年正月功臣及二品以上子孫壻弟

實職

三品者以上子孫壻弟

書籌

摺書行

兵曹都總府憲府許試敘用欲屬錄事者聽

者之

子年二十以上

書籌

摺書行

講

五經中一四書

補

今廢

書籌

書籌

摺書行

減補 六 司署 四續降 歸厚署 四續降書 員二增革 四學 各二續 無加減

五部 各四續降書 員無加減 耆老所 四續無加 減補三 惠民署 二續降書

員活人署 四續降書 員東西各一 讀書堂 三續 備邊司 續 合十六

議政 宣惠廳 續三十四 堤堰司 續一 備經理廳 續四

會合于 扈衛廳 續三書員 訓鍊都監 續二十二書 員一補書員

一十 禁衛營 續十一書員八補 御營廳 續十一書員 八補十二書

員十 守禦廳 續五 合 摠戎廳 續四 捕盜廳 續書 員左

右各 衛將所 續書員 軍職廳 員一 武兼廳 員二 部

將廳 員二 守門將廳 員二 四山 各一 紫門監 續書

員 內需司 續書員 濬川司 續五 三軍門兵曹 漢城府吏兼補八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五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四

四續十九 觀象監 六續降書員 典醫監 六續降書員一司

以諸員差 譯院 六增降書員 世子侍講院 四續 宗學 四續 修城

禁火司 革十續 典設司 員四續降書員一補十書 典艦司 革四續 豐儲

倉 革十續 廣興倉 員十續降書員十五 世子翊衛司 二續無昭

格署 革十續 宗廟署 一以守僕兼 社稷署 員四續降書員六增七

補一 永禧殿 員一 景慕宮 以守僕兼 平市署 降書員八續

補七 司醞署 革八續 義盈庫 書員八續降 長興庫 書員十續降

補六 冰庫 西各一補各二 掌苑署 員四續降書員無加減 司圃署

員十二續降書員 養賢庫 成均吏兼 補四 典牲署 降書員八續

員五 補六 司畜署 員四續降書員二增革 造紙署 書員八續降 典獄署 無加

並經筵二十二補
七並經筵十七

藝文館 十續四
補七

成均館 大司成
一〇十

續二十八
補二十八

訓鍊院 都正一〇十二續
降書員三補四

承文院 十續
降書

員八會書吏
補書員六

通禮院 八續降書
員四補六

奉常寺 十五續降
書員無加

減補二
十一

宗簿寺 十續無加減補
合于宗親府

校書館 十六續
九以諸員十

差會十
補八

司饗院 六續十五補
諸員差無加減

內醫院 四續降書
員二十補

二十
書員

尚衣院 九續
補十

軍器寺 二十續
降

十
書員

內資寺 十六續降書
員六補五

內膳寺 十六續降
書員五

寺 十五續降書
員八補五

禮賓寺 二十續降
書員五

司膳寺 十五續
降

資監 二十九續降書員
二十四補二十

濟用監 二十續降書員
無加減補十二繕

工監 三十續降書員
十三補十五

司字監 二十一續降書
員十一補五

掌樂院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三

○十五

都摠府

都摠管副摠管各一〇三十

漢城府

判尹尹左尹右尹

各一〇三十八

八今為五十二

奎章閣

又政院六房

吏各一人兼差

寫四政院吏兼差

司憲府

大司憲一〇三

十五

水原府

廣州府

開城府

加減補五

十

江華府

五衛將廳

將各一〇四

內禁衛

廳

將各一

廳

兼司僕廳

將各一

員無

忠翊府

合于忠勳府

內侍府

書員二

院

承旨各一〇二

宣傳官廳

書員一

掌隸院

判決

○三十二

尚瑞院

無加減

司諫院

大司諫

十

經筵

補六

弘文館

副提學一〇十二

補二十九

經筵

補六

弘文館

副提學一〇十二

去官○承政院書吏每二日給別仕一仕滿後不
 計都目去官○弘文館冊色書吏每三日給別仕
 一續計仕去官之法今廢以坊民抄定額外各
 司加出者以制書有違律論○各衙門諸司書員
 名色大典後初出宗親府大君各二王子君各一
 今一從時存載錄

議政府 議政贊成參贊各一○
 二十四續議政贊成參贊各一○
忠勳府 君

一○六續無加
中樞府 領事判事知事同知
 減補二續無加
 尉各一○四續

敦寧府 領事判事知事同知
 六續無加減補八
 各一○十八續無加減補二十

義禁府 判事知事同知事各一○
 各一○十八續無加減補二十
吏曹 判書參議

戶曹 判書參判參議各一
 參議各一○二
禮曹 判書參判

兵曹 判書參判參議參知各
 十八續三十
刑曹

判書參判參議各一○四十六續
 七十續減二十一今為四十九
工曹 判書參判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二

禮曹判書參判各一
○七
○刑曹判書參判各一
○七
○兵曹判書參判各一
○六
○工曹判書參判各一

判各一
○五
○都摠府都摠管副摠管各一
○八
○禁衛將二
○巡將二
所各一
○二

司兼司僕將一
○續
○五
○衛將內禁衛將左右巡將兼
司僕將錄事並今廢
○吏房錄事准仕四十五朔

職者東班
增議政府
參贊各一
吏曹戶曹禮曹工曹

各領事一
兵曹刑曹
分差本府吏房掌務各一
中樞府

領事一
輔國知事各一
宗親府
子君各一
大君王
敦寧

府
事一
領
忠勳府儀賓府耆老所
司樞府錄事分

差本府吏房
掌務各一

書吏原
下仕衙門從八品去官後驛渡丞取才入格

者敘用未敘前仍仕其司勤仕者先受職加階及

屬他司通計其仕○一年兩都目仕滿者一百人

典禮署掌簿典事給事攝事各一員戎器署司倉署營作署勘簿管事攝事各一員收支局掌事攝

事各一員典獄局攝事二員義州牧會寧慶源鍾

城穩城富寧慶源江界都護府各都轄司都轄典事

簿給事攝事各一員戎器署司倉署掌事攝事各一員典獄局攝事一員

京衙前

錄事原分屬議政府中樞府東班各衙門則議政

十四加階別仕只用實職不用加階元有階者不

許入屬從六品去官後守令取才入格者敘用未

者聽職西班進兒隨闕敝用一年兩都目宜務郎仕

滿府議政贊成參贊各親府大君王子各一議

樞府領事判事知事同知事各一四〇吏曹判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一

使節度使更考面給○土官雖
去官當次年滿六十方許去官

正官階職 正五品通議郎都務從五品奉議郎

簿正六品宣職郎校簿從六品奉職郎勤簿都轄

正七品熙功郎典事從七品注功郎掌事正八品

供務郎管事從八品直務郎給事正九品啓仕郎

參事從九品攝事

試仕郎攝事

咸興府

員原永興府○都務司都務勘簿管事各一

學署戎器署司倉署營作署勘簿管事各一

員收支局掌事攝事各一員典酒局給事攝事各

一員司獄局攝事二員四部仁興

禮安義興智安各攝事二員評壤

平壤府 都務校

簿各一員典事二員禮署掌簿勘簿典事給事

攝事各一員諸學署戎器署司倉署營作署勘簿

管事各一員酒局給事參事攝事各一員司獄局攝事

各一員典酒局給事參事攝事各一員司獄局攝事

員事二

寧邊大都護府 鏡城都護府 簿典事各一務校

滿三十朔待都政內遷○
令以下有缺還作參奉

令從六品 遷 從五品 參奉二員 從九品 遷 監 從六

補改

崇盛殿增

東明王廟在平壤 直長 無仕滿人則以道

內前銜蔭官或參上文官擬差令
○兩殿直長以下並除肅謝行公

令一員 從六品 參奉一員 從九品 遷 二員 觀察使

差津朔通 補 一員 陞作令

土官職原

以本道人擬啓 京官 加六品 以 觀 察 使

者二人亦授 續 平安道咸鏡道土官職前告身一
人都授上京考渾後除授新告身都封下送觀察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

察訪二員

從六品

大同道

屬驛則

嘉平新

安雲興

林畔

良策

所

車輦加

魚川道

屬驛則

所古開

平長

洞平

田加

北

加

洞央士古

理牛場古

延碧團昌

州大朔小

朔方山

下

加

北

加

加

加

北洞八館龜州

加

加

加

加

加

加

加

加

加

加

縣監五員

從六品

陽德

孟山

泰川

江東

殷山

教授

從六品

員

減

訓導

從九品

員

減

譯學

訓導

六員

從九品

員

減

員

減

員

減

員

減

員

減

從九品

員

減

員

減

員

減

員

減

員

減

崇仁殿

續

續

續

續

續

續

續

續

續

續

鮮于氏備

三望報本

曹擬差滿

三十朔

權作奉事

令

令

令

令

令

令

令

肅川 龜城 中和原郡守 慈山原郡守 宣川原郡

守續鐵山原郡守 龍川原郡守 楚山原作理原郡守

三和原縣令 成從原縣令

庶尹一員從四品 平壤

郡守十二員從四品 祥原 德川 价川 嘉山 郭

山 順川 熙川 碧潼 雲山 博川 渭原

寧遠

判官從五品原六員平壤寧邊安州義州江界定州續并減

縣令六員從五品 龍岡 永柔 甑山 三登 順安

江西

大典會通

卷之一

五十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九

縣監二員

從六品

洪原

利原

原原作城

教授

從六品

訓導

從九品

譯學

訓導一員

從九品

從九品

審藥三員

從九品

檢律一員

從九品

從九品

平安道

觀察使一員

從二品

都事一員

從五品

府尹二員

從二品

平壤

觀察使兼

義州

牧使

大都護府使一員

正三品

寧邊

節度使

牧使二員

正三品

安州

定州

都護府使十四員

從三品

江界

昌城

成川

朔州

陞端川續郡守明川原縣監茂山續新長津續新

厚州續新設

郡守二員從四品文川高原

判官二員從五品咸興增鏡城○原會寧鍾城穩城北

青減續

察訪三員從六品高山道屬驛則南山朔安火燈奉龍

泉蓬臺平原德山續居山道屬驛則咸原新恩平

草原加續酒泉減臨渾雄平明原古站終浦熊輪

口基原麻谷嶺東臨渾雄平明原古站終浦熊輪

耳虛川積生續磁硠黃水呼麟許麟惠山加

城道屬驛則吾村朱村要站石堡懷綏寧安豐山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九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八

教授從六品續訓導從九品續審藥一員從九品檢

律一員從九品驛丞從九品并陞察訪二員

咸鏡道原永安道

觀察使一員從二品都事一員從五品

府尹一員從二品咸興原郡守觀察使兼陞

大都護府使一員正三品永興原府尹降

牧使一員正三品吉州原吉城縣監續陞

都護府使十八員從三品安邊原大都護鏡城北道節使兼

慶源 會寧 鍾城 穩城 慶興 富寧 北

青原南道節度德源 定平 甲山 三水原郡

縣令三員從五品

金城

蔚珍

歙谷

察訪四員

從六品

原

二員

加

二員

平陵道

祥雲道

屬

參

上銀溪道

屬驛

則豐田

生昌

直木

昌道

新安

龍潭

含

春水仁馬奴富林

川減文

山圓

通加

平陵道

屬驛

則冬

含

山木界安仁樂豐新

興史直

交柯

龍化

沃

祥雲道

屬驛

則冬

原興富守山德神達

孝

達

孝

減新

立

加

祥雲道

屬驛則連倉五色降

仙麟

丘竹

汜清

澗

雲

根

明波

大康高岑養珍朝珍

登路

巨豐

貞德

五色

減元

縣監八員

從六品

平康

金花

狼川

洪川

楊口

麟蹄

橫城

安峽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八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七

檢律一員

從九品

驛丞

從九品

陸察訪

江原道

觀察使一員

從二品

都事一員

從五品

大都護府使一員

正三品

江陵

牧使一員

正三品

原州

兼觀察使

都護府使七員

從三品

淮陽

襄陽

春川

鐵原

三陟

寧越

原郡守

伊川

原縣監

郡守六員

從四品

平海

通川

旌善

高城

杆城

平昌

判官一員

從五品

原州

○陵

原二員

江減

判官一員從五品海州○州二員黃

縣令二員從五品新溪文化○牛峯

察訪三員從六品丞原二員麟道加一員麟道文參外金郊道

屬驛則興義金巖寶山安城龍泉劍水青丹道屬

洞仙所串敬天丹林所串丹林減麒麟道屬驛則茶

則金谷溪洞望汀金山剛文羅金麒麟道滿元山延

縣監六員從六品長連松禾康翎殷栗兔山

長淵護府使降都○江陰

教授從六品訓導從九品譯學訓導三員從九

品原一員黃州加審藥二員從九品度使道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七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六

教授

從六品 續 減

訓導

從九品 續 減

四

譯學六員

從九品 續 左水

營漢倭學各一 濟州漢倭學各一 右水營漢倭

審藥三員

從九品 節度使 道

一濟州

檢律二員

從九品

驛丞

從九品 續 并陞察訪 三員

黃海道

觀察使一員

從二品

都事一員

從五品

牧使二員

正三品

黃州

海州

續 觀察使兼

都護府使六員

從三品

延安

平山

瑞興

豐川

谷山

原 郡守 續 陞

瓮津

原 縣令 續 陞水使兼

郡守七員

從四品

鳳山

安岳

載寧

遂安

白川

信川

金川

續 新 設

葵樹道景陽道屬成均 參禮道屬驛則半石鳥原

才鷲谷居山川原 青巖道屬驛則丹巖永申仙巖

瀛原扶興內才 申光利鳥 碧沙道屬驛則可申波青楊江洛昇濟

林青松 原道屬驛則所川達 葵樹道屬驛則昌活東道應

栗洛水德陽 益申蟾居 景陽道屬驛則德奇加林人

縣監二十六員從六品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康津 玉果 高山 泰仁 沃溝 南

平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求禮

谷城 雲峯 任實 長水 鎮安 同福

和順 興陽 海南○原珍原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五

牧使四員

正三品

羅州

濟州

光州

綾州

原綾城縣令

陸

都護府使七員

從三品

南原

長興

順天

潭陽

礪山

原郡守

長城

原縣監

茂朱

原縣監

郡守十三員

從四品

寶城

益山

古阜

靈巖

靈

光珍島

樂安

淳昌

錦山

珍山

金堤

大靜

原縣監

旌義

原縣監

判官二員

從五品

全州

濟州

原五員

羅州光

州南原

減

縣令五員

從五品

昌平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察訪六員

從六品

原道以驛丞

陸

加

三員

景陽道

碧沙道

外

寧禮安 延日 長髻 靈山 昌寧 泗川

機張 熊川 慈仁續新設 英陽續新設

教授從六品 續減 訓導從九品 續減 倭學訓導一員

從九品 浦續 濟浦增 譯學二員從九品 續 漢倭學各一統營 審

藥三員從九品 道一右道 節度使 檢律一員從九品 驛

丞從九品 續 并陞察訪六員

增 新羅始祖廟在慶州 參奉一員本道以朴姓人

全羅道

觀察使一員從二品 都事一員從五品

府尹一員從二品 全州續 使兼觀察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五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四

火肝谷河月蘇山休山新明
德山龍駕金洞水安無訖加
屬驛則秋

勸賓星奇揚川琴川文山作乃長谷省草
勸賓星奇揚川琴川文山作乃長谷省草
屬驛則秋

峴道省峴道屬驛則龍駕雙山內野一門凡於榆
峴道省峴道屬驛則龍駕雙山內野一門凡於榆

訖幽山買田西芝
訖幽山買田西芝
屬驛則秋

德山省法赤項安民報平南驛
德山省法赤項安民報平南驛
屬驛則秋

道黃山
道黃山
屬驛則秋

縣監三十三員
從六
開寧 三嘉 安寧 河陽

龍宮 奉化 清河 彥陽 漆原 鎮海 真

寶 聞慶 咸昌 知禮 安義 高靈 玄

風 山清 丹城 軍威 比安 義興 新

縣令五員從五品 盈德 慶山 固城 義城 南海

察訪十一員從六品 道自如道五員 加六員松羅道 昌樂

丞陞金泉道 省峴道自如道 屬參上 幽谷道屬驛則

承文參外金泉 自如並屬參上 幽谷道屬驛則

通守山洛陽洛東仇彌雙溪安溪大隱知保 安奇

道屬驛則鐵坡青路雲山琴召松蹄青 長水道屬驛

則青通阿火毛良沙里押梁牛谷富平清景仇於

道松羅道屬驛則 柄谷大松望昌 昌樂道屬驛則

保瓮泉幽洞通明安 沙斤道屬驛則 有麟安澗臨

興正守橫浦馬田栗 召村道屬驛則 常令平居富

元碧溪小南平沙 多知南背屯松道丘

虛官栗文和永昌東溪 屬驛則仍浦奴谷

良浦浣沙烏壤德新 輪山渭川德泉掘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三

大都護府使二員正三品 安東 昌原原都護府使

牧使三員正三品 尚州 晉州 星州

都護府使十四員從三品 大丘續觀察使兼 金海 寧海

密陽 善山 青松 蔚山原郡守 東萊原縣令

巨濟原縣令 居昌原縣監 河東原縣監 仁同原縣監

陞順興續前革復設 漆谷增新設

郡守十三員從四品 陝川 草溪 清道 永川 醴

泉 榮川 興海 梁山 咸安 金山 豐基

昆陽 咸陽原郡守 補陞都

判官一員從五品 大丘續增 州晉州星州原五員慶州安東尚 並城

津 懷德 鎮岑 連山 魯城原作尼山 增山

扶餘 石城 庇仁 藍浦 鎮川 結城 保

寧 海美 唐津 新昌 禮山 木川 全義

燕岐 永春 永同 黃澗 青山 牙山

教授從六品 原 訓導從九品 原 五 審藥二員從九品 續

使道 檢律一員從九品 驛丞從九品 原 三員 續

天一殿原隨太一在處推移置 祠參奉二員 增 今廢

慶尚道

觀察使一員從二品 都事一員從五品

府尹一員從二品 慶州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二

判官一員

從五品

公州

○

原四員

忠州

清州

縣令一員

從五品

文義

察訪五員

從六品

道

○

三員

增

栗峯

道

屬承文

參外

金井

連

原道

屬驛

則丹

水山

仁山

坎原

新豐

安富

可興

用

成

歡道

屬驛

則新

恩金

蹄廣

程日

新敬

天

利仁

道

屬驛

則龍

田恩

山榆

楊宿

鴻藍

金井

道

屬驛

則光

時海

谷夢

熊下

川豐

田時

興道

驛丞

屬驛

則昌

德

栗峯

道

屬驛

則長

楊台

郎雙

樹猪

山時

化德

驛增

若嘉

縣監三十四員

從六品

鴻山

堤川

平澤

稷山

懷仁

定山

青陽

延豐

陰城

清安

恩

崇義殿

原

增高麗四王廟在麻田

使

從三品

守

從四品

令

從五品

監

從六品王氏世襲

增并

麗陵參奉一員

從九品三十朔

增增置滿

王氏差

補序陞分奉
常寺直長

忠清道

觀察使一員

從二品

都事一員

從五品

牧使四員

正三品

忠州

清州

公州

觀察使兼

洪州

都護府使一員

從三品

清風

郡守

郡守十四員

從四品

林川

丹陽

泰安

韓山

舒

川 沔川

天安

瑞山

槐山

沃川

溫陽

大興

縣監

報恩

縣監

德山

縣監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一

則樂生駒興金嶺佐贊分行無極康福加川菁
好長足同化海門補良才○菁好長足同化減平

丘道屬驛則綠楊安奇梁文奉安娛賓重林道屬

則慶信盤乳石谷桃源道屬驛則仇和自嶺慶安

道屬驛則德豐楊花新津

縣監八員從六品砥平 抱川 積城 果川 漣川

陰竹 陽城 陽智

教授從六品原十一員即訓導從九品原二十六員

減審藥從九品原檢律一員從九品驛丞從九品原

陞察渡丞從九品原七員碧瀾右道水運判官兼

別將移屬兵曹補碧瀾洛
河並革其餘五渡見兵典

○**原**豐德
補革

郡守十員

從四品

楊根

安山

朔寧

安城

麻田

高陽

金浦

縣令

交河

加平

縣監

縣監

永平

縣令

判官

從五品

五員

左道水運

右道水運

并無

右水

原

運廣州驪州水原

縣令四員

從五品

龍仁

振威

陽川

始興

縣監

陞

察訪六員

從六品

三員

加三員

重林道慶安道

均參州

均參州

均參州

屬迎曙道屬驛則碧蹄馬山東

迎華道

才屬驛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四十

按○良補江陵大都護以已經府使義城臨陂縣

令谷城縣監以已經守令人差出物衆地大○未

經守令雖經內外將勿差邊地守令

京畿

觀察使一員從二品都事一員從五品

府尹從二品一員廣州

牧使三員正三品驪州 坡州 楊州

都護府使八員從三品富平 南陽 利川 仁川

長湍 通津原縣監 喬桐原縣監 竹山原縣監

原縣監 ○江華原都護府使 ○水原原都護府使

配補投印徑歸守令亦即其地定配○海西關東兼營將守令以

堂上差出○兼營將城將獨鎮邑守令及沿邊沿

海不眷率守令面看交代雖罷職拿問仍授本兼印符勿出兼官○內地

兼營將城將獨鎮守令拿問則差兼○支勅時守官勿出代○外地守令同邊地則否

令以私義當避者勿遞令兼官代察○善治守令準職

承傳者若在五六品則先除四品後除授準職○

守令移擬時懸註朔數年滿者毋得移擬○口傳差出時勿以在外人

擬○文蔭武年滿七十者勿差察訪限七十○望○增

諸道各置兼察訪一二員訶察非法許以直啓內

迎曙良才湖西成歡嶺南幽谷黃山湖南登禮海西金郊關東銀溪北關高山關西大同魚川○禮海慶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九

罷○掌試時諸道都事勿以道內人差送○曾經

觀察使節度使者毋得為其道守令南北左右兵使換道則勿

拘○邊地沿海邑守令以文武交差忠清道泰安舒川庇仁藍

浦瑞山全羅道濟州長興咸平大靜旌義慶尚道

金海黃海道豐川長淵遂安康翎咸鏡道慶興慶

源穩城富寧甲山吉州平安道江界定州宣川寧

邊楚山雲山碧潼黃海道長淵咸鏡道六邑平

安道宣川碧潼交差今廢○邊守陞資者十朔前

圖逋則收資雖未滿十朔身死則勿收資○邊守陞資時長官則直為擬差次堂則問

議廟堂邊守陞資即文臣以楚山江界三水甲免不赴者赴任後厭避圖逋者各其地限三年定

陞嘉善之類統制○都事守令之厭避殘薄規

免者準其遞期不敘敘時還除外官曾教官○年

過六十五歲者勿外敘堂上官及未挈家者不在瓜限三年者以六

十七歲為限補瓜限六年者以六十八歲親年七

十歲以上者勿差三百里外遠邑守令續正三品

以上觀察使京職兼差兼府兼牧○凡瓜限觀察

使都事以拜辭日始計節度使營守令察訪以到

任日始計邊將同○觀察使二周年計限京畿一

限十日曾京畿觀察使亦二周年計限曾觀察使非

有拿命及臺啓則雖在罪罷依例封啓都事毋得

代行○各道觀察使關係公事則雖他道守令狀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九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八

慎 職三員
從九品

圖書署 畫員二十

外官職原

階及遷官加階行守並同京官觀察使都

事仕滿三百六十守令仕滿一千八百堂上官及

未挈家守令訓導仕滿九百乃遞移任守令通計

前仕遷官當農月則勿遞春分前不足五十日以

下者遞增訓導○崇義殿職授奉祀一人○畿外

諸陵殿參奉觀察使擇本道人擬啓增即咸鏡道所在陵殿

○教授牧以上則文臣都護府則生員進士中擇

差增廢○永安道增咸鏡道洪原以北平安道博川以

西教官除授時加一階增廢○守令教官托故規

員從七品調夫二員從八品
夫七員從九品曾今并發各殿各宮
色連兒亦隨時加尚衣院一員從八品
減並降作散料工製四員從七品
造

從九品續今廢司僕寺六品調驥一員
從七品曾今并發各殿各宮
監以下各

驥一員從八品保驥一員從九品
從七品曾今并發各殿各宮
監以下各

料軍器寺八品續減一員從七品
從七品曾今并發各殿各宮
監以下各

降作繕工監工造四員從八品
散料工製五員從七品
從七品曾今并發各殿各宮
監以下各

樂師樂生樂工數見禮典
典樂二員從六品典律二員
從七品典音二員正八品副
典聲十員正九品副典聲二
員正七品副典音四員從八
品昭

格署道流十五員尚道一員從八
品續今革掌苑署別監
正八品副慎禽一員從八品
慎果一員從七品慎禽一員
正八品副慎禽一員從八品
慎數三員正九品副

○慎花一員從六品慎果一員
正八品副慎禽一員從八品
慎數三員正九品副

○慎花一員從六品慎果一員
正八品副慎禽一員從八品
慎數三員正九品副

○慎花一員從六品慎果一員
正八品副慎禽一員從八品
慎數三員正九品副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八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七

殿司鑰副司案三員從七品一殿書房色王妃

兒監世大殿洗手水賜間司鋪二員正八品大殿別監

鑰子宮司副司鋪三員從八品二殿別監

兒監司掃六員正九品三大殿別監

水賜兒副司掃九員從九品四殿別監

監世子宮別監洗手水賜間別監從九品五殿別監

一司鑰二副司鑰三司鑰兼察從九品六殿別監

一司鑰二副司鑰三司鑰兼察從九品七殿別監

從九品續今廢降作散料校書館守藏諸員

冊諸員二十司準一員從八品司勘一員從九品

八品司今廢司率夫一員從六品膳夫一員從九品

雜職原

皆四都目馬醫道流畫員則階同正職○授

置掖庭署於諸職之首而仍舊載錄校書館司僕

寺掌樂院圖畫署之時存員數亦移錄於本衙門

之下其餘分番計仕去官仍仕等法及各色遞兒

并皆刪節只仍錄員數品數以為省繁存舊之地

雜職階正六品奉務郎從七品承務郎正八品勉功

任郎正七品奉務郎從七品承務郎正八品勉功

服勤郎從九品展勤郎正九品

掖庭署原掌傳謁及供御筆硯闕門鎖鑰禁庭鋪

二王妃殿司鑰書房色則分二番仕滿六百加階正

六品而止別監則分二番仕滿九百加階正

從七品去官雖別加階至七品仕滿後許去官

司謁一員正六品大兒殿**司鑰一員**正六品大兒殿

司案二員正七品大兒殿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七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六

三略以上者當受職則陞授其餘給仕
給○尚膳二員從二品尚醞一員正三品尚茶一

冊正三員從四品一鷹坊遞兒二尚傳二員正四品尚
客堂上王大妃殿承傳房色薛里遞兒止此尚孤四員

正五品大殿鷹坊弓房王妃殿酒房文昭殿薛里
世子宮長番遞兒止此尚幣四員從五品大殿薛里

庫燈燭房多人薛里監農世子宮薛里遞兒止此
尚洗苑王妃殿燈燭房文昭殿進止世子宮酒房

掌內苑王妃殿燈燭房文昭殿進止世子宮酒房
嬪宮薛里酒房遞兒止此尚燭四員從六品大殿

門差備王妃殿門差備掌務世子宮燈燭房遞兒
止此尚燭四員正七品世子宮門差備各宮薛里

門差備王妃殿門差備掌務世子宮門差備各宮薛里
八品尚門五員從八品尚夏六

員正九品尚苑五員從九品
增大殿長番無定

出入番二十王妃殿出入番二十世子宮長番無定

大殿長出入番二十嬪宮出入番八○各處上
番兼長出入番二十嬪宮出入番八○各處上

奉朝賀原

千五員○功臣則稱某君奉朝賀餘則某官某職奉朝賀本曹及兵曹分授

實行正一品職者功臣正三品功臣從三品功臣嫡長及凡人

從四品實行從一品職者功臣從三品功臣嫡長及凡人

從五品凡人正七品實行正二品職者功臣正四

品功臣嫡長正六品凡人從七品實行從二品職

者功臣從四品功臣嫡長從六品凡人從八品實

行正三品堂上官職者功臣正五品功臣嫡長正

七品凡人正九品實行原為通政以上作散人

付祿之職今則致仕後始付奉朝賀無定數

內侍府原

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共一百

四都目○四品以下依文武官仕數加階三品以

上則有特旨乃授例加至通調長番及出入番者

每日給仕一亦出番講所讀書通給別仕二略通一

粗通半不通削仕三講亦講四書中自願一書三

處小學三綱行實並三處得通五者加階免學辦

亦免五聽講日給別仕一每朔一度講三處依

上項給仕每都日講者則七處誦者則八處俱通

俱誦者六品以上則準職七品以下則守職四通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五

徽慶園

州在楊

令一員

從五品

參奉一員

從九品

各墓

增各墓守衛官忠勲府以嫡長忠義
自辟本曹擬差津三十朔遞

順懷墓

在高陽

守衛官二員

昭顯墓

在高陽

守衛官二員

愍懷墓

在始興

守衛官二員

懿昭墓

在楊州

守衛官二員

孝昌墓

在楊州

守衛官二員

權設職

續

並受司果以下遞兒
祿仕滿九百陞六品

大君師傅

從九品

王子師傅

從九品

王孫教傅

從九品

內侍教官

從九品

童蒙教官

從九品

四員

從九品

仁陵在廣州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綏陵在楊州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景陵在楊州直長一員從七品參奉一員從九品

睿陵在高陽參奉二員從九品

園增 正宗丙申封永祐園置守奉官二員己亥改置別檢參奉己酉定號顯隆園置今參奉

顯隆園在水原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各園增 英宗癸酉始行封園之禮置守奉官

順康園在楊州守奉官二員從九品

昭寧園在楊州守奉官二員從九品

綏吉園在楊州昭寧園昭寧官兼察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五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四

寧陵州在驪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崇陵州在楊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明陵陽在高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翼陵陽在高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懿陵州在楊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惠陵州在楊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元陵州在楊

別檢一員

品從八

參奉一員

品從九

弘陵陽在高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永陵州在坡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健陵原在水

令一員

品從五

參奉一員

品從九

靖陵州在廣直長一員從七品參奉一員從九品

溫陵州在楊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禧陵陽在高直長一員從七品參奉一員從九品

泰陵州在楊直長一員從七品參奉一員從九品

孝陵陽在高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康陵州在楊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穆陵州在楊別檢一員從八品參奉一員從九品

章陵浦在金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長陵河在交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徽陵州在楊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三

英陵州在驪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顯陵州在楊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莊陵越在寧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思陵州在楊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光陵州在楊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敬陵陽在高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昌陵陽在高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恭陵州在坡

令一員品從五

參奉一員品從九

宣陵州在廣

直長一員品從七

參奉一員品從九

順陵州在坡

直長一員品從七

參奉一員品從九

義陵在咸興奉事一員從八品參奉一員從九品

純陵在咸興奉事一員從八品參奉一員從九品

定陵在咸興參奉一員從九品

和陵在咸興參奉一員從九品
道內人備擬受點除肅謝行公

健元陵在楊州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補宗府

祀孫自辟年歲生進幼學並勿拘

齊陵在豐德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貞陵在楊州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厚陵在豐德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獻陵在廣州直長一員從七品參奉一員從九品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二

各陵

續

參奉各二員而一窠則別檢直長令隨時變通以文蔭分差奉事亦中間變通差出而今

罷○德陵以下八陵並以北道人差出仕滿三十朔濟源殿參奉陞差

一奉十二員七員仍作參奉五員分作奉事三直長

一別檢一而別檢以文官差濟源殿參奉二員並

別檢仕滿三十朔陞令令仕滿三十朔待都政移

差京職補別檢作直長○淑陵奉事定陵參奉權

德陵

直長一員

安陵

參奉一員

智陵

直長一員

淑陵

奉事一員

參奉一員

慶基殿在全州令一員從五品參奉一員從九品

濬源殿在永興令二員從六品○計仕遷轉之法詳見各陵註今則甄差依元定朔

數內遷

永禧殿在京城都提調令二員從五品續一員參奉

一員從九品

長寧殿在江華令一員從五品別檢一員從八品

萬寧殿在江華令一員從五品別檢一員參

華寧殿在水原令一員從五品別檢一員參

長生殿在江華令一員從五品別檢一員參

戶禮工三曹郎官兼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一

四學原

掌訓誨所管儒生

中東南西以成均館典籍以下兼_增典籍兼差之例

廢今

各教授一員

從六品_原各二員

以侍從兼差

各訓導一員

員正九品_原各減一員

各殿

續

慶基殿參奉則仕滿九百京參奉陞差_增慶基殿相換

相換之法今廢計仕遷轉依永禧殿長寧殿例肇慶廟同濬源殿參奉今並陞令○英宗辛卯特建肇慶廟於慶基殿北置官如慶基殿例今序于各殿之首

肇慶廟

在全州

令一員

從五品

別檢一員

從八品

文昭殿

_原都提調二員

參奉二員

屬尊宗親提調

員從九品_續今廢

延恩殿

_原提調文昭殿

員從九品_續今廢

提調兼參

奉二員

從九品_續今廢

別提從六品原增減兼教授一員從六品增置

典獄署原掌獄囚副提調一員承旨

主簿一員從六品奉事從八品原增減參奉二員從九品原一員

續加一員

活人署原掌救活都城病人提調一員參奉醫

別提二員從六品原增減參奉二員從九品

瓦署原掌造瓦甄提調一員

別提二員從六品原增減一員

歸厚署原掌造棺槨和賣供禮葬諸事
提調一員原增減革屬繕工監

別提從六品原增減四員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

員減增復置一員
員摠戎使兼

司紙從六品原續減別提三員從六品原補四員續
減二員補加一員

惠民署原掌醫藥救活民庶提調二員○取才分數
多者直長以上一員久

任久任外遞兒兩都目取才居次
者差外任續提調減一員增復舊

主簿一員從六品醫學教授一員從六品原續二員直
長一員從七品奉事一員從八品醫學訓導一員正九品

參奉四員從九品

圖書署原掌圖書提調一員○善畫一員從六品善

繪史二員從九品增續提調禮曹判書例兼篆字
官二員增置○畫員三十員自本曹一年四等薦

狀報本曹
受職牒

受職牒

司圃署原 掌園圃蔬菜 提調一員別提以下七員
原係正六品衙門今從別提

移錄

司圃 正六品 **別提二員** 正從六品 **直長一員** 從七

品續 **別檢** 正從八
增置

養賢庫原 掌供成均館儒生米豆等物 主簿久任

主簿一員 從六品成均館典籍兼 **直長一員** 從七品成均館博士兼 **奉**

事一員 從八品成均館學正兼

司畜署原 掌飼雜畜 提調一員
曹判書例兼 **提調戶** 今革屬戶曹

司畜一員從六品 **提** 二員從六品

造紙署原 掌造表箋咨文紙及諸般紙地 提調二員
續提調一

大典會通

卷之一

三十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九

長興庫原

掌席子油菴紙地等物

任直長以下

員久增

置補原係從五品衙門今從主簿移錄

令

從五品

主簿二員

從六品

直長

從七品

補減奉事一員從八品

冰庫原

掌藏冰

提調一員別坐以下四員

別坐

從五品

別提二員

正從六品

西冰庫各一員別檢同別

檢二員

正從八品

掌苑署原

掌苑園花果

提調一員別提二員

掌苑

正六品

別提二員

正從六品

奉事一員

品續增置

正從四品續減別坐正從五品判官從五品別提正從六品

主簿二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奉事從八品

一員補減參奉二員從九品

典設司原掌供帳幕提調一員提檢以下五員

守正四品提檢正從四品別坐正從五品別提二員

正從六品續減別檢一員從八品

義盈庫原掌油蜜黃蠟素物胡椒等物直長以下一員久任

係從五品衙門今從主簿移錄

令從五品主簿一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奉事

一員從八品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九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八

內膳寺原掌各宮各殿供上二品以上酒及倭野人

供饋織造等事提調一員主簿以上四員久任

廢油醋及素饌供上原係正三品衙門今從主簿移錄

正一員三品**副正**一員三品**僉正**一員四品**判官**

從五品原主簿一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奉事一

員從八品

禮賓寺原掌賓客燕享宗宰供饋等事提調一員提

並六員主簿以上一員久任原提調戶曹判書例

兼原提調以戶曹判書參判擬差原原係正三品

衙門今從主簿移錄
正一員三品**副正**一員三品**僉正**一員四品**提檢**

禁火里門警守家代生打量入屍檢驗等事中東南西北

原係從六品衙門正宗朝辛亥參上都事
改置令今移錄○都事非生進不得差

各令一員從五品都事各一員主簿各一員各都事

一員從九品參奉從九品各

從六品衙門

內資寺原掌內供米糴酒醬油蜜蔬果內宴織造等

事提調一員主簿以上四員久任內宴織造

正正三品副正從三品僉正從四品判官

從五品主簿一員直長一員從七品奉事一

員從八品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七

提調一員

令一員從五品

從五品

主簿一員

從六品增置

直長一員

從七品

奉

事

從八品

減

司醞署原

掌供酒醴

今革

令一員從五品

主簿

一員從六品

直

長一員從七品

奉事

一員從八品

直

典牲署原

掌養犧牲

提調

一員從六品

直

長一員從七品

奉事

一員從八品

判官一員從五品

增置

主簿一員從六品

直

長一員從七品

奉事

一員從八品

直

奉事

從八品

減

副奉事一員

正

參奉

從九品

參奉

從九品

續

五部原

掌管內坊里居人非法事及橋梁道路頒火

景慕宮增 掌守衛宮廟都提調提

令三員從五品 增 一員以文官差

直長從七品 增

奉事從八品 增

濟用監原 掌進獻布物人參賜與衣服及紗羅綾段

布貨線色入染織造等事提調一員主簿以上四

段布貨織造今廢補原係正

三品衙門今從判官移錄

正正三品 原 副正從三品 原 僉正從四品 原 判官

一員從五品 主簿二員從六品 原 直長從七品 原

奉事一員從八品 副奉事一員正九品 參奉從九品 原

平市署原 掌旬檢市塵平斗斛丈尺低昂物貨等事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七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六

品

從五品衙門

昭格署原

掌三清星辰醮祭。提調一員別。提二員令別提並用文官。續今革。令一員從五品別提正從。六品參奉二員從九品。

宗廟署原

掌守衛寢廟。都提調各一員。直長一員。從七品。

令二員

從五品。原一員。續。直長一員。從七品。奉事八。

品原一員續減

副奉事一員。正九品。

社稷署原

掌灑掃壇壝。都提調各一員。

令三員

從五品。原一員。續。加一員。並以蔭官差。直長。從七品。

一員。續。參奉。從九品。續。減。

提檢從四品別坐正從五品別提正從六品

典消司

原

掌消治官關之任。提調一員直長以下監提

事通兒四都目。廢為錄事通兒職。今

提檢從四品別坐正從五品別提正從六品直長
二員從七品奉事二員從八品參奉六員從九品

正五品衙門

典需司

原

掌內用米布及雜物奴婢員別坐別提並二

別坐別提相遞除授書題二十階從六品以下書題遞
兒四都目仕滿五百十四加階從六品去官其中

勤謹備諳司事者三人有特旨仍
仕遞兒和會受職。奴婢革罷

典需一員正五品別坐正從五品副典需一員從六品別提

正從六品典會一員從七品典穀一員從八品典貨二員從九品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五

久任補原係正三品
衙門今從僉正移錄

正一員三品續減

副正一員三品續減

僉正一員三品續減

主簿從四品

主簿

一員從六品

直長一員七品續減

奉事一員八品續增

主簿從八品

主簿

司宰監原

掌魚肉鹽燒木炬火等事提調一員

主簿久任

補原係正三品衙門今從
僉正移錄○炬火今廢

正一員三品續減

副正一員三品續減

僉正一員三品續減

主簿從四品

主簿

一員從六品

直長一員七品續增

奉事一員八品續增

主簿從八品

主簿

從九品續減

興艦司原

掌京外舟艦○

都提調提調各一員提檢
水運判官二員海運判官一

判官屬馬續革屬水運
判官屬馬續革屬水運

豐儲倉原

掌米豆草菴紙地等物。主簿以
上一員久任。續今革屬長興庫

守一員正四品主簿一員從六品直長一員從
七品奉事一員從八品副奉事一員正九品

廣興倉原

掌百官祿俸實職中曾經守令奉事以
外實職戶曹自辟奉事以上仕滿次奉事以下
簿仍用詞訟滿六朔令加設陞付○加設令以下

有缺還作
奉事差出

守一員

正四品

令一員

從五品

主簿

從六品

直長

從七

增置

奉事

從八品

一員○加設令

副奉事

正九品

補減

從四品衙門

司道

掌御廩米穀及內供醬等物

提調一員主簿以上一員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五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四

從五品原

主簿一員從六品

直長從七品

奉事二

員從八品

副奉事一員正九品

參奉從九品

監役官三員從九品

假監役官二員從九品

監役官三員從九品

正四品衙門

宗學原

掌宗室教誨之任。以成均館今革

導善一員正四品 誨二員正六品

修城禁火司原

掌宮城都城修築及宮闕公廨坊里各戶救火等事。都提調一員提調

二員提檢 四員義禁 府經 歷兵曹刑曹 工曹正 郎

各一員兼別提 三員一

漢城府判官兼 今革 提檢正四品 別提正六品 從

一員從五品 員續減 一員 主簿一員從六品 漢學教授四員

從六品 兼直長一員從七品 員續減 一員 奉事二員從八品

三員 員續 副奉事二員正九品 漢學訓導四員正九品 清

學補女真學原在 蒙學倭學訓導各二員正九品 參

奉二員從九品

從三品衙門

繕工監原掌土木營繕提調二員判官以上一員久

計仕陞實官通計假官仕滿九百陞六品員續 提調

一員戶曹判書例兼補原係正三品衙門今從副

正正三品 員續減 副正一員從三品 僉正從四品 員續減 判官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三

○習讀官
三十員

正一員正三品

副正從三品

僉正一員從四品

判官

一員從五品

主簿一員從六品

醫學教授一員從六品

二員

續減一員

直長二員從七品

奉事一員從八品

續減一員

副奉

事二員正九品

續減二員

醫學訓導一員正九品

參奉二

員從九品
續減三員

同譯院

原掌譯諸方言

語都提調一員
外提調二員
目

取才居次者差外任○漢學習讀官三十員○只
解女真譯語者分二番一年相遞○京外諸學訓
導仕滿九百續主簿以
上並以本學出身者除授

正一員正三品

副正從三品

僉正一員從四品

判官

正一員從四品判官一員從五品主簿一員從六品

品原二員減一員天文學教授一員從六品地理學教授從六品

品原一員革天文學兼教授三員從六品內一增置三

學一窠天文地理命課三學輪回一窠仍屬天文

授從六品命課學兼教授一員從六品增置

直長二員從七品奉事二員從八品副奉事一員正九品

三員天文學地理學訓導各一員正九品命課學

訓導一員正九品參奉二員從九品減一員

典醫監原掌醫藥供內用及賜與提調二員取才

上一員久任久任及教授訓導外遞兒兩都目取

才居次者差外任主簿以上並以出身者除授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二

正一員

正三品

僉正一員

從四品

主簿二員

從六品

續加

員直長

從七品

續減

觀象監

原

掌天文地理曆數占籌測候刻漏等事

提調

二員

取才分數多者判官以上一員久任

及教授訓導外通兒兩都目主簿以上一員久任

者除授

入格者

令取才入格者用本業精通者稱肄習官後守

業前銜則依無祿官例

仍仕○禁漏三十員

通者別敘顯官仍仕○禁漏三十員

從六品去官仍仕者

西班通兒一命課旨西班九品

食述者別給西班通兒一命課旨西班九品

兒而止

兼教授或以參外差仕滿四十五朔遷

品而止

轉補

三學輪回之兼教授

專屬命課學作出六窠

領事一員

正一品

領議政

正一員

正三品

副正

從三品

續減

僉

軍資監原**掌軍需儲積**都提調提調各一員主簿以

書例兼補判官奉事自辟及奉事以上陞付之法詳見廣興倉註

正一員正三品副正從三品僉正從四品判官

一員從五品主簿從六品直長從七品

奉事從八品副奉事正九品

參奉從九品

掌樂院原**掌教閱聲律**提調二員解音律者僉正以

員久任解音律隨品兼今廢○典樂二員正六

品副典樂一員從六品典律二員正七品副典律

二員從七品典音二員正八品副典音四員從八

品典聲十員正九品副典聲二十三員從九品樂

師樂生樂工管絃盲通兒自本院一年四等

薦狀報本曹受職牒副典樂一員加設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一

正一員正三品副正從三品僉正一員從四品判官

一員從五品主簿二員從六品

軍器寺原掌造兵器都提調一員提調二員別

續提調二員一員以兵曹判書參判擬差一員武將擬差正陞堂上官僉正判官自辟

正一員正三品副正一員從三品僉正一員

從四品別坐正從五品判官二員從五品別提正

六品主簿二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奉事一員從八品

副奉事一員正九品參奉一員從九品

司膳寺原掌造楮貨及外居奴婢貢布等事提調一員主簿以上一員久任

正一員正三品副正一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僉正一員從七品

正一員正三品 僉正一員從四品 判官一員從五品 主簿

一員從六品 直長一員從七品 奉事二員從八品

副奉事二員正九品 參奉一員從九品

尚衣院 原掌供御衣樹及內府財貨金寶等物提調

副提調一員承旨別坐別提並二員主簿以上一員久任

正一員正三品 僉正一員從四品 別坐正從五品 判官從五品

品原一員續減 主簿一員從六品 別提一員從六品 各一

員續減 直長一員從七品 原二

司僕寺 原掌輿馬廢牧提調二員判官以上二員久任

○理馬四正六品馬醫三正七品 判官主簿一自辟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

調大君王子君外不得授都提調未差時提調一員以宗班擬差主簿以文臣擬差直長非生進則不得差補今屬宗親府

正一員正三品僉正一員從四品續減
主簿一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

司饗院原掌供御膳及闕內供饋等事都提調一員

提調五員一員承旨提舉提檢並四員○主簿以
上一員久任續正嘉禮時差出提舉提檢客使宴

享時
差出

正一員正三品提舉正從三品提檢正從四品僉正一員從四品

判官從五品主簿三員從六品原一員續加直

長二員從七品奉事三員從八品參奉從九品原

內醫院原掌和御藥都提調提調各一員副提調

從三品續增置奉禮正四品原贊儀一員正五品引儀八員

從六品原八員續兼引儀六員從九品假引儀六員增置

員從九品
續增置

奉常寺原掌祭祀及議謚都提調提調各一員正以上六員久任主簿以上六員久任判官一員自辟久任

正一員正三品副正從三品僉正一員從四品

員判官一員從五品主簿二員從六品直長一員從七品奉事一員從八品副奉事一員正九品

均參外參奉一員從九品宗簿寺原都提調二員屬尊宗親提調二員都提

宗簿寺原都提調二員屬尊宗親提調二員都提

均參外參奉一員從九品宗簿寺原都提調二員屬尊宗親提調二員都提

宗簿寺原都提調二員屬尊宗親提調二員都提

大典會通 卷之一 二十

大典會通 卷之一

十九

三員並以蔭差仕滿四十五朔遷轉○寫字官四
 十員以本業入差增參校以下他官兼及吏文習
 讀及校檢以上不計仕遷轉并今
 廢增都提調時原任議政例兼

判校一員正三品參校從三品原校勘從四品原
員教訓續減

續校理從五品原校檢一員正六品原博士二
員正七品續減一員

著作二員正八品正字二員正九品副正字二
員正七品

員從九品

通禮院 **原** 掌禮儀兼官六員擇能臚唱者隨品填差
左通禮院 堂上官有缺以右通禮

不計仕陞授增右通禮院 授則上通禮院 假引儀從除
 授次第不計仕陞兼引儀仕滿三十朔陞六品增

參上引儀六員中二員以會經兼
 引儀善臚唱者擬差以備御前唱

左右通禮各一員正三品相禮一員從三品翊禮一員

簿寺六曹堂下官各一員兼補修撰官以下奎章閣直提學以下官隨品兼補兩司及刑曹堂下官

兼差今廢

領事一員正一品領議政正一品監事二員正一品右議政正一品左知事二員

正二品同知事二員從二品修撰官正三品編修官正三品

從四品記注官正五品記事官正六品至

承文院原掌事大交隣文書並用文官都提調三員

數正一品稱都提調二品以上稱提調副提調無定

提調所參校以下又他官兼無定數吏文習讀

官二十員以下又奉常寺直長以下一員兼久任

○博士以下又奉常寺直長以下一員兼久任

遷轉一年兩都目二員去官○校檢以上有缺以能堪所任者不計仕數以次遷轉續參外官六月則次官分館○製述官二員一文一續博士有實故

大典會通 卷之一 十九

大典會通 卷之一

十八

一員正三品祭酒一員正三品司成一員從三品

品司藝二員正四品司業一員正四品

增直講四員正五品典籍十三員正六品博士三員正七品

學正三員正八品學錄三員正九品學

諭三員從九品

尚書院原掌璽寶符牌節鉞補直長每都目

正一員正三品判官從五品直長一員從七品

副直長一員正八品

太僕館原掌記時政並用文官以下司諫院承文院宗

下議政府舍人檢詳藝文館奉教以下司諫院承文院宗

員正七品兼說書一員正七品增置諮議一員正七品增置

世孫講書院續掌侍講世孫增師傳以他官兼勸讀

或單付○講書院續係從四品衙門今從諭善移錄

師傅各一員從一品左右諭善各一員自堂下三品

品以付增置左右翊善各一員從四品增置左右勸讀

各一員從五品左右贊讀各一員從六品增置

成均館原掌儒學教誨之任並用文官同知事以上

講以上一員久任○博士以下二員兼次以議政府司錄

都目三員去官士願祭酒司業以學行有士

知事一員正二品提學例兼大同知事二員從二品大司成

大典會通 卷之一 十八

大典會通 卷之一

十七

世子侍講院原掌侍講經史規諷道義並用文官副

他官兼續贊善進善以學行有士望者擬差或單

付諮議用別薦而無可合人則問議廟堂勿拘幼

學差出增贊善進善或以他官兼贊善雖至從一

品亦兼○侍講院原係從三品衙門正宗甲辰陞

輔德為堂上正三品官今移錄

師一員正一品 傳一員正一品 貳師一員從一品

左右賓客各一員正二品 左右副賓客各一員從二品

贊善一員正三品 增置輔德一員正三品 兼輔德

一員正三品 進善一員正四品 弼善一員正四品 兼

弼善一員正四品 文學一員正五品 兼文學一員正五品

增置司書一員正六品 兼司書一員正六品 說書一員正六品

校理二員正五品 副校理二員從五品 修撰二員正六品

副修撰二員從六品 博士一員正七品 著作一員正八品

正字二員正九品

秘書省 原掌制撰辭命並用文官提學以上以他官

初授時議政府同吏曹弘文館春秋館本館講通

鑑左傳諸史中入格者用之一年兩都目二員去

官院校書館博士以職加階次遷轉成均館承

領事一員正一品議政 大提學一員正二品 提學一

員從二品 直提學一員正三品都承應教一員正四品

文館直提學至 奉教二員正七品 待教二員正八品 檢

閱四員正九品

大典會通 卷之一 十七

大典會通

卷之一

十六

掌內府經籍治文翰備顧問學並用上官提

官兼○皆帶經筵○副提學至副修撰又帶知製

教以館○六品以直提學以下有缺不計仕數以次

遷轉○以次運轉之法今廢○知製教副提學以

下所帶稱內知製教大提學與吏曹判書相議以

六品以上列為抄啓者稱外知製教至通政仍帶

奎章閣直提學以下時原任亦並帶○通政仍帶

經應教人本館點移文本曹擬授經典翰則不

得授應教以下官副提學典翰有實職為兼銜無

實職為實職亦以原任差檢校提學拜都承旨兼

提學部承旨拜提學遞都承旨兼副提學

則例兼直提學減下○奎章閣檢書官前銜

中二員自本館以兼檢書官自辟付軍銜

領事一員正一品議政大提學一員正二品提學一

員從二品副提學一員正三品直提學一員正三品

典翰一員從三品應教一員正四品副應教一員從四

掌隸院原掌奴隸簿籍及決訟之事司議

判決事一員正三品司議三員正五品司評
四員正六品司議減二員司評減二員

司諫院原掌諫諍論駁並用文官

大司諫一員正三品 司諫一員從三品 獻納一員正五品

正言二員正六品

經筵原掌講讀論思之任及以他官兼並用文官領事

直提侍講官以下弘文館直提學以下官隨品兼

領事三員正一品 知事三員正二品 同知事三員從二品

品 參贊官七員正三品 承提學侍講官正四品 侍讀官正五品

品 檢討官正六品 司經正七品 說經正八品 典經正九品

大典會通

卷之一

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十五

忠翊府原
原從功臣之府
今屬忠勳府

都事二員
從五品

正三品衙門

承政院原
掌出納王命
堂下官並用文官
續承旨勿以外任並擬
○注書隨薦次

自本院望定移送吏曹差出而若乏三望則勿拘
二望或單付○注書有故則假注書差出
分房或與六曹堂上相避則啓稟換房有特旨則
換房○檢律一員啓下待令
兼弘文直提學未弘文錄人母得下批

都承旨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

承旨各一員
正三品
注書二員
正七品
事變假注書一

員
正七品
續增置

持平二員正五品 監察十三員正六品 續減十一員 文三員 武四員

五五 蔭

開城府原掌治舊都

畱守二員從二品 一京 經歷一員從四品 都事從五品

續減 教授從六品 一員 原 一員 續減 文分教官一員

從九品 增置本府生進畱守自辟差 不拘

役各準十五朔交次序陞分奉檢律一員從九品 續增置

江寧府原掌治江都府原 都護府光海戊午陞

畱守二員從二品 一京 經歷一員從四品 分教官一員

員從九品 續 本府生進或檢律一員從九品 續增置

大典會通 卷之一

十五

大典會通 卷之一

十四

理本館自辟○司準十員從八品唱準遮兒司勘

一員從九品補字官遮兒○香室在闕內正殿西

本館參外官一員輪回直宿本館無參外則成均

館參外官代直祝文書寫忠義衛三員禮房承旨

抄啓亦輪直仕滿九百遷轉○香室直宿參外官

仕日最多者郵官差送○判校陞堂上官○司錄

兼差今廢判校一員正三品原他官校理一員從五品兼

校理一員從五品續增置別坐從五品別提正六品

博士二員正七品著作二員正八品正字二員正九品

副正字二員從九品

司憲府原掌論執時政糾察百官正風俗伸冤抑禁

濫偽等事

大司憲一員從二品執義一員從三品掌令二員正四品

所司卷二員五品掌傳命稟啓等事檢書官四員
 五品參外隨品付軍銜佐閣臣校書寫書須籤二
 員五品掌寫校御製奉安御製等事監書六員啓
 下文書應製文字分掌句檢寫字官八員畫員十
 員以差備待令屬本閣檢律一員九品以刑曹檢
 律待令_圖檢書官滿三十朔遷轉兼檢書無定數
 ○司卷須籤
 監書今廢

提學二員

從二品至一品

直提學二員

正三品堂上至從二品

直

閣一員

從六品至正三品

待教一員

正九品至正七品

○外閣

書校

館

原掌印頒經籍及香祝印篆之任

並用文官篆文精熟者三

人隨品兼差提調二員別坐別提並四員○博士
 以下又以議政府司錄一員奉常寺直長以下一
 員兼次次遷轉一年兩都目二員去官_圖提調二
 員一員大提學例兼_圖提調二員內閣提學兼增
 置副提調二員內閣直提學兼校理一員內閣
 直閣兼參外兼官一員內閣待教隨品以付○校

大典會通

卷之一

十四

大典會通 卷之一

十三

留守二員

正二品一京
畿觀察使兼

判官一員

從五品

檢律一員

從九品

廣州府補掌治南城

正二品一京
正宗朝乙卯置留守今移錄

留守二員

正二品一京
畿觀察使兼

判官一員

從五品

檢律一員

從九品

從二品衙門

奎章閣增敬奉列聖御製御筆顧命當宁御真御製

御筆

提學以文衡弘文藝文提學通望人直提學
副提學通望人擬授并以他官兼雖外任

亦兼直閣以曾經玉署人待教以翰圈注薦說書
通望人本閣圈點移文本曹擬授有實職為兼銜

無實職為實職提學以下有闕則以原任差檢校
權察○閣監二員隨品付軍衙守直御真奉安之

澤津梁苑園種植炭木石
舟車筆墨水鐵漆器等事

判書一員正二品 參判一員從二品 參議一員正三品

郎三員正五品 佐郎三員正六品

漢城府原掌京都口帳市廛家舍田土四山道路橋

梁溝渠逋欠負債鬪毆晝巡檢屍車輛故失牛馬

烙契等事判官以上一員久任

判尹一員正二品 左右尹各一員從二品 庶尹一員從四品

品判官一員從五品 主簿二員從六品

一員參軍正七品 引儀兼從八品 減一員從九品 通禮院從九品

水原府補掌治華城原都護府正 宗朝癸丑置留守今移錄

大典會通 卷之一

十三

大典會通 卷之一

十二

刑曹原 掌法律詳讞詞訟奴隸之政 詳覆司 掌詳覆

司 掌律令按覈之事 **學禁司** 掌刑獄禁令之事 **考律**

及教授別提訓導差定與戶曹同 ○ 明律以下 逮兒

判書一員 正二品 參判一員 從二品 參議一員 正三品

郎三員 正五品 佐郎三員 正六品 律學

教授一員 從六品 兼教授一員 從六品 別提二員 從六品

員 復舊 明律一員 從七品 審律一員 從八品

律學訓導一員 正九品 檢律一員 從九品

曹原 掌山澤工匠營繕陶冶之政 營造司 掌宮室

土木工役皮革氈罽等事 **治司** 掌百工制作金銀珠玉銅鐵冶鑄陶瓦權衡等事 **山澤司** 掌山

郎三員正五品 佐郎三員正六品

兵曹原 掌武選軍務儀衛郵驛兵甲器仗門戶管鑰

之政堂下官並用文官 ○武選司 掌武官軍士雜職除授告身祿牌附過給假及武科等事

輿司 掌鹵簿輿輦廐牧程驛補充隊皂隸羅將伴 尚等事 武備司 掌軍籍馬籍兵器戰艦點閱軍士

訓鍊武藝宿衛巡綽城堡鎮戍備禦征討軍官軍人差送番休給保給假侍丁復戶火砲烽燧改火

禁火符信更籤等事 武選司 今稱改色 乘輿司 今稱馬色 兼掌立馬路文武草料又有車色 掌龍

虎營扈輦隊保布 各司 雁立 有 鷹色 掌忠順忠贊忠壯衛簽兵餘丁

番布 箭案色 掌別騎兵保布 給東色 掌關內及動駕時禁喧 ○正郎二員自辟差一二軍色

判書一員正二品 參判一員從二品 參議參知各一員

正三品 正郎四員正五品 佐郎四員正六品

大典會通

卷之一

十二

大典會通 卷之一

十一

判書一員正二品 參判一員從二品 參議一員正三品

郎三員正五品 佐郎三員正六品 筭學教授一員從六品

兼教授一員從六品 別提一員從六品 筭士

一員從七品 計士一員從八品 筭學訓導一員

正九品 會士一員從九品 減一員

禮曹原 掌禮樂祭祀宴享朝聘學校科舉之政官堂下

用文官○ 稽制司 掌儀式制度朝會經筵史官學

校科舉印信表箋冊命天文漏刻國忌廟諱喪葬

等事○ 容司 掌使臣倭野人迎接外方朝貢宴設賜與等

事○ 野人 迎接今廢 判書一員正二品 參判一員從二品 參議一員正三品

正

出差

判書一員正二品參判一員從二品參議一員正三品

郎二員正五品原三員會三員佐郎二員正六品

戶曹原掌戶口貢賦田糧食貨之政版籍司掌戶口

貢獻勸課農桑考驗豐凶及賑貸歛散等事會計司掌京

中支調及倭人糧料等事會計司掌京

仍仕者九百加階正三品而止與未去官者和會

餘教授訓導同會經費司今稱別別房又有前別

賀別營色掌訓局軍兵放料別庫色掌貢物上下

歲幣色掌節使歲幣應辦色掌客使支需銀色掌

金銀郎官二員自辟久任
○筭員三十今為五十六

大典會通 卷之一 十一

大典會通 卷之一

十

罷經歷以十員分作參上參外都事各五員參上一員作武窠參外非生進不得差

例序陞七品

判事從一知事正二同知事從二品

歷從四品都事五員從六品

從九品

正二品衙門

吏曹原掌文選勳封考課之政

雜職贈職除授告身祿牌文錄案等事考勳司掌

定取才改名及賊汚敗常人錄案等事考勳司掌

宗宰功臣封贈諡號享官老職命婦爵帖鄉吏給

參議以國子通望人通擬○權減正佐郎親政時

續減一員直長一員從七品原二員續奉事二員從八品原減

參奉一員從九品原二員

備邊司續總領中外軍國機務○明宗朝初設○都

戶禮兵刑曹判書兩局大將兩都雷守大提學例

兼四員稱有司堂上賄劄調八員兼差八道句

管堂上續禁衛大將守禦使摠戎使例兼○時

任大臣子提調許遮例兼則否續今屬議政府

都提調正一品提調從二品以上副提調一員正

三品郎廳十二員從六品文四員一員兵曹武備

司郎官例兼三員以侍從啓差武八員或

以參外兼參外則仕滿十五朔陞六品

義禁府原掌奉教推鞠之事堂上官四員以他官兼

歷都事今並作參上參外都事參外仕滿九百陞

大典會通 卷之一 十

大典會通 卷之一

九

都事一員從五品

敦寧府原王親外戚之府宗親王姓九寸異姓八寸六寸異姓五寸以上

寸以上親姊妹姪女孫女夫除授先王先后親同

○大君子女婿公主子初授從七品公主王子各降一

等賤妾女婿又降一等禮都正一員加設同知事以大院

君奉祀孫世襲若陸資則隨品加設同知事知事

領事一員正一品王如父初授者亦授禮王如判

事一員從一品知事一員正二品同知事一員從二品都

正一員正三品正一員正三品副正一員從三品僉正從四品

員原二品判官一員從五品主簿一員從六品

一員正五品公事官十一員從六品廳補移置○文二員以

侍從啓差武九員參上五員參外四員參外則仕滿二十朔陞六品司錄一員正八品

二員權減

忠勳府原諸功臣之府堂上官無定數堂上三員

襲君差出兼都事一員以嫡長忠義六品以上前銜人自辟單差

君正一品親功臣王妃君從一品君正二品君從二品經

歷從四品都事一員從五品子孫

儀賓府原尚公主翁主者之府無定數以上

尉正一品尉從一品尚公尉正二品尉從二品尚翁副

尉正三品尚郡初授僉尉正三品尚初授經歷從四品減

大典會通 卷之一 九

大典會通 卷之一

主簿一員

從六品朝官原係宗簿寺

直長一員

從七品朝官原係宗

簿寺

參奉一員

從九品朝官

議政所

總百官平庶政理陰陽經邦國

堂下官並用文官舍

人有缺以檢詳不計仕數陞差刑曹判書三營大

將總戎使四都留守大提學扈衛大將左右捕將

例兼四員稱有司堂上八員兼差八道向管堂上

原任將臣以堂上啓下○時任大臣子堂上許通

例兼則否○**提調**向管修飭各道堤堰水利

○都提調三員正一品時任三公兼提調二員從

二品以上備局堂上中兼差郎廳一員從六品備

邊司郎廳兼提調一員本府有司堂

領議政左右議政各一員

正一品左右贊成各一員

從一品左右參贊各一員

正二品舍人二員

正四品檢詳



君時自辟主簿永作自辟直長非生進則不得差
從他司序陞則換差參奉忠義郎廳各一員亦以
宗姓人永作自辟參奉序陞忠義郎廳並四十五
朔陞六品兼郎廳一員以郎廳前銜人自辟單差

大君 王子 嫡 君 王子 庶 領宗正卿 增置大君 兼

君 正 一 判宗正卿 正 一 品 增置 君 襲嫡長子初授 君 正 二

品世子眾子大君承襲嫡長子初授 知宗正卿 正 二 品 至

孫王子君承襲嫡長子初授 宗正卿 增置 君 長曾孫王子君承襲嫡長子初授

從二品 都正 正 三 正 三 品 孫王子君眾子承襲嫡長子初授

孫初 正 一 員 正 三 品 朝官原係 副正 從 三 品 大君

君眾孫 守 正 四 品 王子君 典籤 一 員 正 四 品 副守

初授 從 四 品 令 正 五 品 典簿 一 員 朝官 副令 從 五 品 監 正 六

大典會通 卷之一 八

大典會通 卷之一

七

耆老所續

太祖朝

肅宗朝

英宗朝入耆社

國初命文臣正二品實職年七十以上許入蔭武不預焉

中無年七十人則以從二品一人啓稟許入槐院國子參外各一員差守直官仕滿九百陞六

正一品衙門

宗親庶補敬奉列聖御譜御真封進兩宮衣櫛統領

璿源諸派有大君王子君時為無階衙門宗親無定數良妾之出降一等賤妾之出又

降一等承襲職父沒乃授親盡則依文武官子孫例入仕宗正卿以諸君及宗姓朝官二品以

有司例兼典籤有大君時自辟典簿有大君王子上無定數啓差都正一員加設以宗姓文官差出

正五品 通德郎通善郎 補宗親同○原宗親

從五品 奉直郎奉訓郎 補宗親同○原宗親

正六品 承議郎承訓郎 補宗親同○原宗親

從六品 宣教郎宣務郎

正七品 務功郎

從七品 啓功郎

正八品 通仕郎

從八品 承仕郎

正九品 從仕郎

從九品 將仕郎

大典會通 卷之一

七

大典會通 卷之一

六

義大夫補正義昭義大夫
儀賓則資義大夫補順義大夫

正三品 通政大夫補宗親儀賓同○原宗親則已
明善大夫儀賓則奉順大夫

上堂上官

正三品 通訓大夫補宗親儀賓同○原宗親則
彰善大夫儀賓則正順大夫

從三品 中直大夫中訓大夫補宗親儀賓同○原
信大夫儀賓則明

信大夫敦信大夫

正四品 奉正大夫奉列大夫補宗親同○原宗親
則宣徽大夫廣徽大

夫

從四品 朝散大夫朝奉大夫補宗親同○原宗親
則奉成大夫光成大

夫

直擬兵判陞一品則亦擬判義禁

東班官階原

正一品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上輔國崇祿大夫

補新增○國舅宗親儀賓○原宗親則顯祿大夫輔國大夫興祿大夫儀賓則綏祿大夫成祿大夫

崇祿大夫

從一品 崇祿大夫崇政大夫補宗親儀賓同○原

德宜德大夫嘉德大夫儀賓則光
德靖德大夫宗德明德宗親則崇憲大夫承

正二品 正憲大夫資憲大夫補宗親則崇憲大夫承

憲大夫儀賓則奉
憲大夫通憲大夫

從二品 嘉義原嘉嘉大夫嘉善大夫補宗親儀賓同
原宗親則中

大典會通 卷之一 六

大典會通 卷之一

五

○金吾堂上拜秋曹則遞金吾秋曹堂上拜金吾

則遞秋曹

三司長官不得兼金吾總管
將臣不得兼兩司長官

○都承旨

陞資憲則以兼都承旨下批○武臣判義禁經兵

判後通擬○卜相時無時任則原任入侍前單受

點加卜待時任出仕

補罷銓郎法

正宗已酉下教

○內閣

提學拜相陞付本閣大提學○留守拜諭善則仍

兼○經筵日講官以提學副提學已通入啓差○

水原廣州留守或以原任大臣除拜○宗姓二品

以上宗正卿隨品下批

大君王子君則領宗正卿
大臣上輔國及正一品則

判宗正卿從二品則宗正卿

正卿從二品則宗正卿

○武將階正二品者

讀為實職以侍從選授增本曹郎廳堂上選擬堂下清望則

使郎廳依前通塞堂上郎廳相議可否無行公郎

官時長官與他堂上相議通清肅宗乙丑下教○復銓郎

法姑許羣請隨時浴革正宗丙申下教○諮議出六後臺望更為通

擬○祭酒贊善進善司業諭善勸讀有實職則為

兼銜無實職則為實職○元子師傅正二品元孫

師傅從二品王孫教傅官制朔數依教官例○代聽時春坊實兼

官皆兼帶春秋銜○知義禁陞一品則以判事下

批雖有時帶判事勿拘陞付○副提學拜弘文提學則遞副提

學弘文提學拜副提學則遞弘文提學同成均大司成亦同

大典會通

卷之一

五

大典會通 卷之一

四

下以上被選人從試等次第付職圈中在夜罷職人員追後召試

焚香回薦應講等舊規一切革罷 ○四館參外勿論免新先後計

其實仕陞遷雖在右位不為來仕者毋得付職 ○文科未分館前

勿通說書 ○宗代未盡之前元無嫡庶之異其子

孫文科弘錄武科宣薦勿為枳礙 ○宦侍及醫譯

毋得授輔國資 ○元子輔養官三員以正一品以

下從二品以上元孫輔養官二員以從二品以下

通政正三品以上本曹問于大臣啓下 ○王世孫

師傅以從一品差出 ○王世孫講書院官四員俱

以弘文館官員兼帶每一員入直侍講會後以左翊善左贊

主抄啓○非曾經政府六曹漢城府堂上則勿抄抄○武臣擇其有材局遠

識者堂上以上注擬正亞卿判尹左右尹承旨通

訓以下交差寺正曹郎非長官則毋得擅擬武承旨通擬時雖外任啓請

○蔭官堂上以上諸曹佐貳及左右尹判決事堂

下寺正做通清例備員通擬○吏曹郎官以曾經

三司通融差出革其主張通清之弊假郎廳毋得啓下○

翰林圈點一依弘文錄例參外人員按榜謄出而

時任翰林及曾經人員齊會三員圈點取次點

以上若債圈則大臣及館閣堂上更爲會圈做宋朝館職召試例領

監事館閣春秋館堂上玉堂人員參考科次取三

大典會通

卷之一

四

大典會通

卷之一

三

以綏德

德改以宜德

正義改以昭義儀賓光德改以靖

德崇德改以明德○宰相以軍務奉命者隨品稱

號

議政則都體察使一品以下則都巡察使從二品則巡察使三品則察理使

○議政

未拜相前兼大提學者仍帶○大提學圈點時無

前任則曾經文衡議政處遣史官受薦○曾經大

提學人雖為提學毋得辭遞○副提學差出時雖

時任銓官啓請備擬○玉堂南牀之望則單付○

副提學都承旨前已兼帶同經筵者有妨坐次同

經筵減下

帶同春秋則修撰官減下諸承旨並同都承旨兼藝文提學則例兼直提學

減下○經筵特進官以文蔭武二品以上抄啓

玉堂長官

官員寫字吏文特異者弘文館官員諸道教官及

通兒職外非經守令者不得陞四品以上階兵曹同

年未滿二十者勿授東班職諸科出身者否○賊吏子及

孫勿授議政府六曹漢城府司憲府開城府承政

院掌隸院司諫院經筵世子侍講院春秋館知製

教宗簿寺觀察使都事守令職失行婦女及再嫁

女之所生勿敘東西班職至曾孫方許以上各司

外用之○凡除授後三品以下員及無祿官本曹

具其來歷啓聞移文議政府司憲府司諫院糾覈

兵曹同續大夫階東班嘉靖改以嘉義宗班昭德改

大典會通 卷之一

二

上仕滿九百七品以下仕滿四百五十遷官宗親

賓府敦寧府各一員外及尚瑞院直長以下通禮院相禮以下司憲府司諫院官員遞兒受職者否

○議政府六曹堂下官並陞敘其餘平敘又加階

有賢能勤勞者及七品以下員不在此限無祿官同堂上官否○六品以上者許加無祿官禁

府堂下官及提舉提檢別坐別提別檢等仕滿三百六十而敘○在任

遭喪者無故作散者言官以公罪作散者通計前

仕兵曹○議政府六曹漢城府承政院掌隸院弘

文館成均館世子侍講院堂下官及諸道都事守

令有缺久任員外雖未滿仕者擇用司憲府司諫

院則勿論久任廣選慷慨言事者注擬○承文院

縣夫人正從二品慎夫人正三品堂上官慎人正
從三品惠人正從四品温人正從五品順人正六
品補已上依文武
官命婦例封爵

文武官妻

貞敬夫人一正從貞夫人二正從淑夫人三正

上品堂淑人三正從令人四正從恭人五正從宜人六正從安
人七正從端人八正從孺人九正從

京官職原

凡職銜先階次司宗親儀賓及忠勳次職

如稱領事之類則如稱領事之類階高職卑則稱行階卑職高則稱

守七品以上不得越三階而守行守字在司上兵曹

○封君王妃父及二品以上宗親功臣承襲

從不及三品以下宗親並用邑號凡單言功臣原○六品以

大典會通

卷之一

大典會通 卷之一

典燈 典彩 典正從八品 奏宮 奏商 奏角九品

品 奏變徵 奏徵 奏羽 奏變宮從九品

世子宮 良娣從二品 良媛從三品 承徽從四品 昭訓從五品

○守閨以下係宮人職 守則從六品 掌饌 掌正從七品 掌書

掌縫從八品 掌藏 掌食 掌醫從九品

外命婦 原封爵從夫職庶孽及再嫁者勿封 改嫁者追奪 ○王妃母世子女及宗親

親二品以上 則大君王子君夫人並用邑號 宗親不用邑號

公主王女 翁主王女 府夫人王妃 奉保夫人大

乳母從一品 郡主王世子女 縣主王世子女

宗親妻 府夫人正一品 郡夫人正一品 郡夫人正一品 郡夫人正一品

大典會通卷之一

仁政殿編輯

吏典

原屬衙門忠翊府內侍府尚瑞院宗簿寺
司養院內需司掖庭署增忠翊府今革補

宗簿寺今屬宗親府

內命婦原

嬪

正一品補有教命則無階

貴人

從一品

昭儀

正二品

淑儀

從二品

昭

容

正三品

淑容

從三品

昭媛

正四品

淑媛

從四品

尚宮

以下

徐容人職

尚儀

正五品

尚服

尚食

從五品

尚寢

尚功

正六品

尚正

尚記

從六品

典賓

典衣

典膳

正七品

典

設

典製

典言

從七品

典贊

典飾

典藥

正八品

大典會通

卷之一

一

大典會通

卷之一 目錄

政案

解由

褒貶

考課

祿牌

差定

遞兒

老人職

追贈

贈謚

給假

改名

相避

鄉吏

雜令





大典會通卷之一

吏典目錄

內命婦

外命婦

京官職

奉朝賀

內侍府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取才

薦舉

諸科

除授

限品敘用

告身

署經

大典會通

卷之一目錄

一

大典會通 卷首

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兼藝文館提學臣朴珪壽

校正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李教鉉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任孝直

監印

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兼知春秋館事臣南秉吉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李冕光

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臣鄭顯裕

奉

教總裁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之館藝文館觀象館兼掌秋館蒙肇臣趙斗淳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李裕元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臣金炳學

纂輯

崇祿大夫行龍驤衛上護軍兼奎章閣提學臣金學性

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臣鄭基世

資憲大夫行龍驤衛大護軍兼知春秋館事臣南秉吉

資憲大夫南綾君兼弘文館提學臣洪鍾序

大典會通 卷首

一

大典會通

卷首 凡例

二

初因者竝具列別單稟裁 睿旨務主簡核

一三典法式中的係變通者外雖或今不遵行者不敢遽然以廢革等字懸註以存慎重之義

一各典法式或有今昔抵牾不同處一從今式載錄

一某衙某制之今革者本典外雖屢出於他典如非緊重處今革二字不得一一懸註

一卷首有 英廟御製御筆屢經摸寫易於失真故今謹以舊版奉印 正廟御製題辭亦謹印并予通編舊序之首

大典會通

卷首

凡例

二

大典會通

卷首

凡例

與革之亦備書者重本始也只以今革今廢等
字懸註

一原續增三典乃不刊之書今不敢有所增刪故
衙門之合屬官階之變通者皆存其舊制逐段
以補字懸註以寓謹嚴之規

一各條下從三典例不書受教字而若關係大刑
政大變通者則特書受教年條

一自增典以前已為遵用不入於增典者亦以補
字添入

一衙門之陞降法制之變通謬例之釐正時措之

大典會通凡例

一以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合部而通編以後受教及稟奏定式今所見行者會粹添補通爲一書

一六典一依舊例先錄經國大典書原字次錄續大典書續字次錄大典通編書增字新補合錄條起頭處以補字陰刻標揭以別先後

一三典皆以本文載錄雖或疑晦不敢改易而明知其漏誤者間間釐正

一分門列目皆仍舊貫官有增減式有因革而減

大典會通

卷首

凡例

一

大典會通

卷首

十四

通編之嘉名肇錫殿號昭揭 資政之故事式遵
 伏念_臣等識本空疎才短撰次因時制作贊一辭
 而何能經世謨猷貽百代而為則所撰大典通編
 六卷謹隨箋以 聞無任激切屏營之至_臣致仁
 等誠惶誠恐稽首稽首謹言乾隆五十年 月
 日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
 賀_臣金致仁等謹上箋

大典會通

卷首

十四

大典會通

卷首

十三

刊之制肆 聖念監 先成憲而臣等承 命分

修橫看變為直看務主簡核古例參以今例不漏

巨纖治以道同顧其揆則一也合於時措豈復分

而二之罅漏補苴間諸條而立目先後錯綜用三

圈而揭標增刪悉奉 睿裁品式寔循舊典畫一

之法令較若敢曰此書頗詳分六之節目燦然竊

幸闕文猶及粵暮年纔成全帙乃此日敢獻 重

宸伊三代損益可知法如是亦足矣倘一部舉行

惟謹治猶運諸掌乎以麟趾關雎之心將期永世

垂法當鴻謨貽燕之日尤喜是年編書卷首新題

規範斯存第緣簡編之各分每患考據之互妨戴
記雖出於儀禮誰能沿流而溯源孔翼不入於古
經蓋難因體而驗用 列聖朝受教並載間多抵
牾而難行續輯錄諸書異編奈此條貫之易眩如
何仍舊政須監于二而折中若將待今允宜統爲
一而垂後恭惟 主上殿下九載臨御庶績咸熙
簡銓衡而詰戎兵畢張治具繕澤梁而蠲賦役浚
軫弊源虞刑惟欽頒典則於郡邑周禮盡在輯儀
式於秩宗由舊章而不愆不忘承 先休而盡善
盡美文謨武烈要闡無窮之圖玉條金科期成不

大典會通

卷首

十三

大典會通

卷首

十二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朝賀

臣金致仁崇政大夫行龍驤衛副司直兼判義禁

府事臣金魯鎮正憲大夫漢城府判尹臣鄭昌聖

資憲大夫行江華府畱守兼鎮撫使三道水軍統

禦使臣嚴壽等誠惶誠恐稽首稽首上言竊以

前聖後聖相承惟貞百度今文古文皆有爰成一

通率乃依行述而不作顧茲原續編大典寔我

祖宗朝宏規 光廟初經邦之謨煥乎綱維之提

挈 英考盡述事之孝譬若琴絃之改調倣制度

於周官六典之條例大備藏關和於夏府一王之

不亦盛乎雖然 聖人心法之精微治化之隆盛
實寓於禮樂政刑之間得其意則不但遵守之必
謹將見推明之益廣不得其意而獨專專於尋類
考例則已著之令式尙懼其時有出入而其未及
著者茫乎不知所從矣在位百執事有志於講明
時王之制者不徒習其書先務得其意然後庶幾
傳于無窮行之無弊而永有以對揚我 聖上特
命纂輯之盛意也歟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
樞府事臣李福源拜手稽首謹序

進大典通編箋

大典會通

卷首

十二

大典會通

卷首

十一

之一時將以垂之萬世是書之名以通編者通諸
編爲一編也雖爲一編而原續與增補標而別之
示先後也分門列目一從原典重本始也官有增
減法有沿革而減與革亦書者存舊觀也改橫看
爲直行刪繁文從比類者便攷檢也是書一出而
前聖後聖之良法美制秩然咸載簡而無漏詳而
不費今昔同異條例剏因開卷瞭然如指諸掌中
外有司之臣按而行之無待乎考掌故詢胥吏矣
斯實我 聖上文理密察之工溢于政教旁及編
纂指授大體裁稟細目以若小卷帙成若大典則

至我 聖祖續典之作而一王制作之盛 列聖
損益之義燦然具矣然而原典爲大全續典爲補
編而編帙旣異不相聯屬祇見其補則無以得其
全也自甲子迄今日絲綸之屬於關和者亦非一
二而諸司謄錄漫無統紀尋流而或昧於源稽往
而或遺於來舉行易眩舞弄多端此通編之所以
不得已也惟我 聖上粵自 御宇圖理之初夙
宵兢兢惟制度是謹惟 命戒是審憲必監 先
謨必裕後講於廈氈之內修於堂皇之上行於宮
府都鄙之間者不惟措諸今必思徵諸古不惟施

大典會通

卷首

十一

大典會通

卷首

十

甲子而先王教令之後於甲子者尚多其敢專
 於近而忽於遠乎且原典續典各為一書艱於考
 據予嘗病之宜取二典及舊今受教通為一編
 其令二三卿宰掌其事大臣總之書既成名曰大
 典通編命臣福源為序臣拜手稽首謹言曰六
 典之名昉於周禮而更後數千年莫之或改蓋取
 象于天地四時敘次于職官憲章六為自然之數
 而典為當然之則也洪惟我朝聖作明述井井
 焉彬彬焉一洗羅麗之陋權輿乎經濟六典大成
 乎經國大典錯綜乎前後三錄會通乎典錄通考

正廟御製大典通編題辭

曰經濟六典曰經國大典曰續錄後續錄曰受教
輯錄曰續大典卽我朝典章也然其書部居多門
有司憚其浩穰乃開局會粹命名曰大典通編遵
先王之法修明之耳小子何述焉詩曰儀式刑文
王之典又曰不愆不忘率由舊章予因是自勗又
爲我世世子孫勗之時予踐阼九年重陽

大典通編序

上之八年臺臣有言 卽昨後受 教可著爲令
式者宜分類編書以便施行 上曰嘻續典成於

大典會通

卷首

十

大典會通

卷首

九

錫書名纔奉前席之 明命若稽章奏受感先正

之格言茲訖功於編摩敢效誠於獻御麟趾至化

祖宗之心法相傳燕翼弘謨子孫之典則斯在空

備乙丙之覽益懋庚甲之猷伏念_臣等俱以空疎

猥掌撰次奉 令承教縱有慚於對揚考典志經

庶無替於遵守所撰續大典六卷謹隨箋以聞無

任激切屏營之至_臣在魯等誠惶誠恐稽首稽首

謹言乾隆九年十一月日大匡輔國崇祿大夫議

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世子師_臣 金在魯等謹上箋

當時而述作有待於今日恭惟 至行純德英謨
毅烈主上殿下躬行曾閔力挽唐虞建極圖治御
二紀而匪懈興功補弊溯百年而畢修撰邦禮而
既定五儀按國制而復修六典職官課試之通變
古例互參軍旅貢賦之更張今法備著減全家餘
存之律天地同仁正免稅流來之規官府壹體親
經 聖手幾廈氈之忘勞悉從 睿裁非游夏之
敢贊承 三后已就之緒成一代不刊之章今文
古文損益雖異 前聖後聖條貫則同寶墨題篇
累十字董勅之訓宸翰弁卷幾百言懷保之誠肇

大典會通

卷首

九

大典會通 卷首

八

惶誠恐稽首稽首上言竊以立經陳紀雖本於
初垂因時制宜必在於 繼述仍三錄而蒐輯續
六編而刊宣言念大典爲書實是 我家成憲周
官之法度甚悉 二聖哀修夏府之關石斯存萬
民準則橫看直敘而品式俱該體約用繁而事情
咸備爲 一王之定制垂百世之宏規第以世級
之漸移未免絜令之隨變當 列祖繼承之際再
行續篇逮 寧考在宥之年又成輯錄雖幸法例
之寢具尚稽典書之粹完先後憲章或有節目之
抵牾中間沿革亦多紀載之闕遺蓋因循未遑於

戒哉書曰好生之德洽于民心茲用不犯于有司
臣敢為 殿下誦焉嘉善大夫行忠武衛副司直
兼藝文館提學臣元景夏拜手稽首謹序
進續大典箋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臣金在
魯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
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臣宋寅明翰忠竭誠奮
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豐原府院君臣趙顯命等誠

大典會通

卷首

八

大典會通

卷首

七

祖聖考是倣是則遂名其書曰續大典以臣景夏
 方任館閣 命為之序臣拜手稽首而言曰夫武
 王周公之達孝不過曰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
 於休我 殷下仁民愛物奉若 先王之政良法
 美度允符周官而 丕顯丕承亶本於闢睢麟趾
 之化此孔聖所稱繼志述事而達孝之至者也而
 况除壓烙滅全徒德意藹然可以迓續景命則漢
 文之除肉刑固不足多而堯舜無刑之治臣將拱
 手而俟矣雖然 聖哲在上而如無明察之官慈
 惠之師奉而周旋則教弛刑紊而無以制治可不

英廟御製續大典小識復勅羣工

今者大典續成意固在也一時令飭優作受教自有律文隨時低昂官吏眩於奉行小民莫能措手輯三錄成績典刪其繁正其要頒此典之後復蹈前轍則纂輯之意焉在此後雖有飭教者若非載於金石之典作爲不刊之文則六曹京外自可舉行俾勿混錄祛其浩繁關係法文者相考 皇朝律與本典續典其無可據然後稟旨定律若有各隨己意任自弛張者備局政院察推一以飭因循混雜一以信頒布續典是歲季冬又題

大典會通

卷首

六

大典會通

卷首

五

漢宋當法 祖宗列聖盛德垂法仁厚世降俗末
舊風漸掃觀今續典大要在茲其要伊何曰寬曰
厚其他節文有司存焉噫浴後昆念茲在茲豈究
細節當察大意若曰此書六典節目是豈予意亦
豈民效昔漢東平居家樂善漢之昭烈勅子爲善
寬也厚也其本卽善今予於此亦有提曉柔懦非
善性善是善省察此際惟誠與敬欽之恤之是乃
敬也實體實遵是亦誠也筆削秋典繼書此文吁
嗟此心可質 蒼蒼噫我後昆其可忽乎莫曰言
教式體訓勅闕逢困敦仲秋上澣題

英廟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

古往今來有國有典經國大典我國典章撰文之
由纖悉序文金科玉條開卷瞭然如我涼德何敢
增撰今者續典只輯三錄大抵自古法久生繁漢
初立法不過三章漢文除刑其繁可知其代若干
猶有此弊其況我朝三百餘年法上生葉奚言漢
時法文日繁綱領漸紊官吏舞弄民莫措手欲撰
續典非今臆料粵昔 兩朝先正獻議今又未遑
復待何時特命設廳續成六典爰命詞臣特製其
文于今題首意蓋濳也考諸往牒漢宋稱厚豈效

大典會通

卷首

五

大典會通

卷首

四

天經地緯第謹奉於 指揮特賜覽觀申飭遵守
啓後人咸罔缺畀仰貽燕之謨監成憲永無愆庶
贊垂鴻之業所撰經國大典六卷謹隨箋以 聞
無任激切屏營之至 臣恒等誠惶誠恐誓首誓首
謹言成化五年己丑九月 日輸忠衛社協贊靖
難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寧城府院君兼
領春秋館事 臣崔恒等上箋

大典會通

卷首

四

大典會通

卷首

三

始巍巍 成功之尤盛秩秩大猷之是經事有夏
 張理難苟襲爰取故典之記載且參新立之科條
 會通悉觀乎舊章裁定皆自乎 睿斷盡祛細碎
 務挈綱維簡以御煩期成不刊之典較若畫一將
 揭無窮之規恭惟 主上殿下 聖敬日躋 聰
 明時又謂底法之作室肯構不憚不忘宐越印而
 圖功惟終善繼善述 躬莅萬幾之始首急六典
 之修撮其要提其綱通紹 先志宐於時適於用
 深愜輿情實迺經國之彝章豈唯納民於軌物臣
 等猥將庸劣濫叨編摩晝度夜思何曾効於毫補

夫寧城府院君兼領春秋館事臣崔恒等誠惶誠
恐稽首稽首 上言竊以聖人經綸天下必待積
德百年之期王者損益時宜蓋爲垂範萬世之計
茲定大典允屬 昌辰竊惟治以道同政由俗革
體國經野周分六卿之官除煩去苛漢約三章之
法皆得設施之當能爲永久之傳載念 盛朝誕
膺景命明哲繼作克恢百王之規模綱紀畢張聿
新一代之制作願纂錄之傷於繁亂而奉行者患
其浩穰 世祖惠莊大王乃聖乃神允文允武掃
羣姦而靖世備嘗艱難乘六龍以 御天大明終

大典會通

卷首

三

大典會通

卷首

二

彬郁郁孰謂大典之作不與周官周禮而相為表裏乎建諸天地四時而不悖考諸前聖而不謬百世以俟聖人而不惑者可知矣繼自今 聖子神孫率由成憲不愆不忘則我國家文明之治豈唯比隆於成周而已乎億萬世無疆之業當益悠久而悠長矣成化五年己丑九月下澣正憲大夫戶曹判書兼藝文館大提學同知 經筵事_臣 徐居正拜手稽首謹序

進經國大典箋

輸忠衛社協贊靖難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

經國大典序

自古帝王之有天下國家也創業之主經綸草昧而未遑於典故守文之君遵守舊章而又無事於制作雖曰漢高籌無遺策而三章之法略存規模史稱唐家萬目俱張而六典之作猶俟中葉況下於漢唐者乎恭惟世祖握符中興功兼創守文昭武定禮備樂興猶孜孜圖理恢弘制作嘗謂左右曰我祖宗浚仁厚澤宏規懿範播在今章者曰元續六典謄錄又有累降教旨法非不美官吏庸愚眩於奉行良由科條浩繁前後牴牾不

大典會通

卷首

一

大典會通

卷首 箋

四

箋以

聞無任激切屏營之至臣斗淳等誠惶誠恐稽首

稽首謹言

同治四年十一月 日大匡輔國崇祿大夫議

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

館觀象監事臣趙斗淳等謹上箋

祖宗一揆之訓庶幾為此書頗詳既告功於稔完庸

效忱於

獻御

體關睢麟趾之意

道之

齊之資

涓涓蠖濩之監善矣美矣參以損益道有原於魯

論觀其會通義則取於義易伏念臣等才乏論

撰誠切對揚煥乎有章俟可知於百代述而不

作贊何敢於一辭所撰大典會通六卷謹隨

大典會通

卷首箋

四

大典會通

卷首 箋

三

筵教之

斟酌折衷務在嚴簡廟啓之真定

頒下克究源流科條炳如丹青悉經

淵鑑筆削合乎規矩仰承

睿裁恭撫

純

憲

括三朝之謀猷耳目所逮別就原續增諸篇而標揭

指掌示斯刪煩撮要尚云少補發凡起例恪遵

前模自堯舜三代以來固知如是法亦足貫

舊章不愆不忘百度惟貞蕭律韓法之次定九功

時敘夷秩垂工之僉諧

澄官方而銓衡平

釐貢制而征賦正禮樂刑政孰非

先哲后垂裕之

謨堂構舊會是乃

後嗣王謹守之事肆因

前席提奏之舉遂

降舊編補輯之

音

大典會通

卷首 箋

三

大典會通

卷首

箋

二

採闕文

明典之最費蒐羅始成完帙信以為金石之畫吏無
眩於奉行昭乎若象魏之懸民不用於輕犯恭
惟

主上殿下

以

達孝

善繼

善述

由

英考之續修本末賅載一王之章程甚悉儀型于天地四時萬民之津則斯存錯綜乎前後三錄雖初垂沿革之際不無更張然密察潤色之工大明終始第念日月之既積尚多律例之可增春秋之移步換形自有旨外之義董子之改絃調瑟莫非時中之宜至於大綱領挈提壹是

心法之傳授若夫小節目出入宜備掌故之證援甲庚之後先易淆間或昔無而今有乙巳之編摩寢遠若爲僣註而俱疏苟欲垂萬世無窮之圖莫如有一通追刊之本唐要之屢煩緝綴旁

大典會通

卷首 箋

二

大典會通 卷首 箋

龍驤衛大護軍兼藝文館提學臣朴珪壽等誠

惶誠恐稽首稽首

上言竊以用聖人心行聖人政

誕撫五百年靈長因我

家法輯我

家書爰奉八十載

教式猗兼總而條貫值累洽而重熙稽茲大典哀

合之功允屬

正宗制作之盛續

光陵之經始洪纖靡遺恢

進大典會通箋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

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臣趙斗淳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李裕元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

筵事監春秋館事臣金炳學崇祿大夫行龍驤

衛上護軍兼 奎章閣提學臣金學性崇祿大

夫議政府右贊成臣鄭基世資憲大夫行龍驤

衛大護軍兼知春秋館事臣南秉吉資憲大夫

南綾君兼弘文館提學臣洪鍾序資憲大夫行

大典會通

卷首箋

一

大典會通

卷首

序

二

矣盡美矣詩曰不愆不忘率由舊章凡我在列
百執事率是以往永守勿替以之庶績凝萬紀
張此誠先復古懿對揚

休命之會也然總究其本我

殿下緝熙于學體之高明博厚文理密察包羅大化
而集成之寔由乎精一心法之所傳授則為萬
世開太平為生民立極其在茲矣於虞盛哉大
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
事監春秋館事 臣 金炳學拜手稽首謹序

上之二年春因相臣

筵奏乙巳以後

教式之未遑刊布者令開局補輯同異條例一遵

兩聖朝續增舊規名曰大典會通劄劄既竣以臣炳

學名恭總裁

命為之序臣拜手稽首颺言曰我

殿下初圖理百度咸舉翼翼乎必祀亶亶乎官人

財賦之絀而制節之戎政之弛而興勵之以至

祥刑之欽衡虞之諧措諸施為修明章程者觀

於是編瞭如指掌先裕後之大經大法盡善

大典會通

卷首

序

二

大典會通

卷首

序

世祖纘有不丕基

前聖

後聖作之述之粹厥羣彙統為一書金科玉條燦然

具備宜無待乎斟酌損益而繼而續編於

元陵甲子通編於

健陵乙巳特因時制宜之小變通耳嗚呼以度越百

王之智繼述

列聖之猷闕文佚章洪纖靡遺惟

祖宗成憲是用兢兢舊行而今廢者存而不刪以寓

敬謹之義作室肯堂之美有以永垂無窮矣

大典會通序

我

朝之經濟大典經國大典遠倣周官制度之書近

津

大明會典

而與虞之惇典夏之關和若文質

三統之百世可知者蓋禮樂刑政有因有革而
其所以立經貽謨則大聖人傳授之精一心法
無有不同焉自我

太祖康獻大王初垂大業迄于

世宗

大典會通

卷首序

一

諸科	一七一
除授	一七三
限品敘用	一七七
告身	一七九
署經	一七九
政案	一八〇
解由	一八一
褒貶	一八一
考課	一八三
祿牌	一九一
差定	一九一
遞兒	一九二
老人職	一九三
追贈	一九四
贈諡	一九六
給假	一九七
改名	一九八
相避	一九九
鄉吏	二〇一
雜令	二〇三

大典會通目次

卷首	大典會通序	………	一一	吏典目錄	………	五七
	進大典會通箋	………	一五	內命婦	………	五九
	經國大典序	………	二三	外命婦	………	六〇
	進經國大典箋	………	二六	京官職	………	六一
	英廟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	………	三一	奉朝賀	………	一二九
	英廟御製續大典小識復勅羣工	………	三三	內侍府	………	一二九
	續大典序	………	三四	雜職	………	一三一
	進續大典箋	………	三七	外官職	………	一三四
	正廟御製大典通編題辭	………	四一	土官職	………	一五九
	大典通編序	………	四一	京衙前	………	一六一
	進大典通編箋	………	四五	取才	………	一六八
	大典會通凡例	………	五一	薦舉	………	一六九

勤於職任

筋力百工

樂府御製

一心乃公
為官擇人

吏典

尚
中
書
纂

乙丑補輯

大典會通

中外印領

史典

大典會通

한국법제연구원

〈譯註者 紹介〉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 東國대학교 大學院(文學博士)
-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委員
- 現 서울特別市廳 市民監査官

- 主要 論文 및 譯註書 -

- 朝鮮時代庶擘身分變動史 研究(1987, 博士學位論文)
- 朝鮮後期の 司馬榜目分析(1990, 法史學研究)
- 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 研究(1990, 國史編纂委員會)
- 大典會通研究 卷首·吏典編(1993, 韓國法制研究院)
- 大典會通研究 戶典·禮典編(1994, 韓國法制研究院)
- 大典會通研究 兵典編(1995, 韓國法制研究院)
- 大典會通研究 刑典·工典編(1996, 韓國法制研究院)
- 大典會通 索引集(1997, 韓國法制研究院)

大典會通 研究 - 卷首·吏典編 -

1993년 12월 26일 初版發行
1999년 2월 27일 訂正版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亞商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02)579-0090, FAX : (02)579-2381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25,0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098-3 93360

